제 1 장 규제개혁 추진 개요

제 1절 규제개혁의 의의 및 추진방향
제 2절 규제개혁 추진체계
제 3절 우리나라 행정규제의 현황

제1절 규제개혁 의의 및 추진방향

1. 규제개혁의 의의

규제개혁은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현대사회에 있어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한 노력' 또는 사회 · 경제적인 변화에 적응하여 정부와 민간이 서로 더욱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규제개혁은 지속적이고 당위적인 사회현상이나, 규제개혁은 이러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확립된 이해관계질서를 재편성하는 속성 때문에 한편으로는 기득권자의 저항과 반발을 야기하므로 쾌도난마와 같은 해결보다는 갈등 조정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가져야 할 것이다.

(1) 공정한 경쟁 촉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경쟁을 촉진하여 세계적인 무한경쟁시대에 국가경쟁력을 높여나가기 위해서 불필요한 행정규제들의 과감한 개혁은 필수이다.

(2) 민간자율과 창의성의 극대화

다양성과 창의성이 높이 인정받는 사회분위기를 만들고 투명한 규제제도의 확립을 통해 공정한 경제활동의 결과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도 규제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

(3)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불합리한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들을 혁파하고 보건, 환경, 안전 등의 분야에서는 오히려 반드시 필요한 규제들을 신설 ·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필요하다.

(4) 부정부패 추방

모호한 규제, 과다한 재량을 인정해주는 불확실한 규제들을 개선함으로써 각종 부정부패와 비리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

(5) 규제제도의 국제화

선진국들의 새로운 규제기법들과 규제개혁기법들을 벤치마킹하여 규제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선진국 진입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여야 한다.

2. 규제개혁의 추진배경 및 경과

우리나라는 과거 정부주도형의 경제성장 전략을 선택하여 주목할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당시 시장은 경쟁의 원리조차 습득하지 못한 불완전한 형태를 띠었으므로, 단기간에 많은 경제주체들에게 경제적 만족을 주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성장전략이 불가피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80년대에 이르러 정부 주도에 의한 경제성장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민간의 성장잠재력이 커감에 따라, 민간의 정부에 대한 각종 개혁요구가 시작되었다. 그중 정부의 합법적 권한인 각종 법령 등에 의한 권한의 재검토 요구, 즉 규제개혁이 중요한 화두로 등장했다.

규제개혁은 정부의 추가적인 재정을 필요로 하지 않고도 민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대폭 신장시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정부가 모든 경제주체들의 행위를 예측하고 통제하기 어렵고, 경제주체들의 경쟁을 통하여 현실적으로 최선의 자원배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규제개혁은 시장경제주체들 간의 공정한 경쟁의 룰을 제시하고 정부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축소함에 따라, 시장 경제주체들로 하여금 선의의 경쟁을 하도록 하고, 정부에 의한 부정부패의 소지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작업으로는, 1993년 「행정쇄신위원회」를 중심으로 약 6,000여건의 규제를 개선하고, 1997년에 설치된 「규제개혁추진회의」를 통해서도 약 100여건의 규제개혁과제를 선정·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의 규제개혁작업은 구비서류 감축 등

단순하고 지엽적인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국한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1998년 이러한 규제개혁의 추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규제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기존규제의 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의 사전심사 등을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다.

3. 참여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전략

참여정부는 선진국 수준의 규제품질 확보를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및 이를 통한 세계일류의 국가경쟁력 달성을 목표로 하여 규제개혁 추진전략을 아래와 같이 전환하였다.

우선 규제개혁 정비방향을 규제건수 감축에서 규제품질 개선에 중점을 두고 양위주의 규제완화가 아닌 규제의 내용과 절차를 개선하여 규제준수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감축하고자 노력하였다.

규제개혁 정비대상은 기존의 단편적 규제정비에서 복합덩어리 규제개혁을 중점 추진하여 여러부처 및 법령에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덩어리 규제를 일괄 정비함으로써 규제개혁의 파급효과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규제정비 방식은 기존규제 틀 내에서의 부분적 개선이 아닌 규제제도 자체를 새로 설계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닌 규제합리화를 통한 실질적인 규제준수 시간과 비용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규제정비 주체 또한, 기존의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위주의 규제개혁으로 전환하여 수요자가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규제개혁을 통해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참여정부는 이러한 수요자 참여하에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민·관 합동의 「규제개혁기획단」을 설치('04.8월)·운영중이며, 이를 통해 마련된 규제개선 방안 확정 및 집행상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 장관회의」 운영하는 한편, 기업현장의 규제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해결하기 위해 「규제신고센타」의 기능을 확대·개편('04.4월)하였으며, 서비스, 토지 등 전문분야의 규제는 이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소유한 부처가 중심이 되어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 추진체계를 보강하였다.

4. 2006년도 규제개혁 추진방향

(1) 기존규제 정비

「2006년도 규제개혁 추진계획」은 2005. 12. 5 규제개혁 추진 보고회의시 시장속도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규제를 정비해 나가겠다는 대통령의 말씀에 따라 시장 변화속도에 뒤떨어지는 규제를 집중 정비해 나가기로 한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여건 변화로 규제의 실효성이 상실되었거나 규제목적이 달성되어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거나 변화속도에 맞추어 개선을 추진하였으며, 아울러 존치가 필요한 규제일지라도 시설·장비가 새롭게 개발된 후에도 기존의 시설·장비를 구비토록 하는 규제 등과 같이 낡은 기준을 찾아내어 시장변화에 맞게 합리적인 개선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복합덩어리 규제 정비는 기업활동 여건 개선, 신산업의 기반 조성, 환경·안전규제의 합리화 및 국민편의 제고에 역점을 두고 민관 합동의 규제개혁기획단을 중심으로 경제단체, 기업인, 일반국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추진하였으며, 특히 규제개혁 과제 발굴 및 개선방안 마련에 있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과제를 중점 정비하는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2)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

2006년도에는 규제개혁이 단순히 중앙정부차원이나 문서상으로 실시되는 데 그치지 않고 규제 개선방안의 신속한 후속조치, 지방자치단체의 규제집행 절차 및 행태 개선, 일선기관 규제 운영실태 집중 점검 등을 통해 국민이나 기업 등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에 따라 규제 개선방안 확정·발표시 구체적인 법령 개정안 마련 및 조치시한을 설정하고 법률사항은 국회와 협조를 통해 의원입법 방식을 적극 활용하여 법령 제개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복합민원을 처리하는 기관의 「부서합심제」 운영을 의무화, 각종 인허가시 따라야 할 질의회신 매뉴얼을 마련하여 애매한 해석, 허가권자에 일임하는 해석, 부실한 설명 등 잘못된 관행을 시정해 나갈 계획을 수립하였다.

(3) 규제품질 관리 강화

규제담당 공무원의 규제영향분석 능력 향상을 위해 규제영향분석 전문 교육과정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규제영향분석 매뉴얼 및 규제대안 매뉴얼 활용을 통한 규제영향분석 능력 제고하는 동시에 한국행정연구원 협조하에 규제영향분석을 위한 분석모형 개발 및 각종 통계 · 연구자료 등 DB 구축 활동을 병행하여 규제영향분석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규제영향분석 책임성 강화를 위해 규제영향분석서를 입법예고시 공표하고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토록 하는 내용의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는 사회 ·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중요규제」의 심사에 집중하고 규제의 파급효과가 적은 「비중요규제」는 부처 자체심사에 일임하는 방안과 이용자 중심 규제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규제 등록제도 개선을 위해 규제등록 단위를 행정행위에서 사업단위로하여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규제를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로 구분하고 이를 진입, 가격, 거래, 품질 등으로 세분류 하는 등 성격별 분류를 추가할 계획을 수립 추진하였다.

(4) 규제개혁 모니터단 구성 등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마인드를 제고해 나가고 협회 등 직접 수요자에 대한 홍보를 통해 국민들이 규제개선 내용 및 효과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규제개혁 관련 전문가와 일반국민을 선발하여 규제개혁 추진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하는 규제개혁 모니터단을 구축 운영할 계획을 수립 · 추진하였다.

또한, OECD Monitoring Exercise 준비를 위해 부문별 전문가 등이 참여한 민 · 관 합동 Monitoring 준비기획단을 운영하여 OECD 질의에 대한 답변서 등을 공동 검토및 실사단 방한에 대비하고, OECD, APEC 등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도 더욱 강화하여 규제개혁관련 국제회의에 참석, 선진국의 규제개혁 동향을 파악하여 우리의 규제개혁 추진에 활용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규제개혁 성과도 적극 설명할 계획을 수립 추진하였다.

제2절 규제개혁 추진체계

1. 개요

(1)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추진기구 구축

1998년 규제개혁 추진체계를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일원화하고, 중앙행정기관별로 자체 규제개혁추진기구를 설치하여 규제개혁위원회와 연계 운영함으로써 범정부적인 규제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있다.

(2) 추진기구

(가) 규제개혁위원회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규제개혁기획단

기업활동을 제약하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다수부처관련 핵심 덩어리규제의 개선을 위해 2004년 8월부터 민관 합동의 규제개혁기획단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다) 중앙행정기관별 규제개혁추진단

기획관리실장, 실·국장,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부처별 규제개혁 추진단은 규제의 신설·강화시 사전심사를 하고, 기존규제에 대한 연차별 자체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라) 지방자치단체

중앙행정기관의 규제개혁 추진체계에 맞추어 지역실정에 맞는 규제개혁추진기구를 설치하고 조례·규칙에 근거한 규제의 정비 및 조례·규칙 제·개정시 사전심사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 규제개혁추진체계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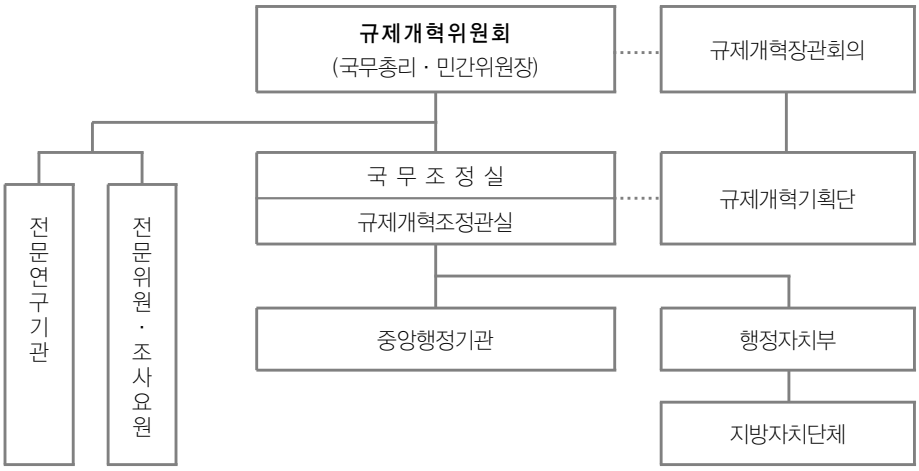

2.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1) 구성 및 기능

(가) 위원회 설치근거 및 목적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의거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의 종합적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활동하고 있다.

(나) 기능

- ○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 및 발전
- ○ 규제의 신설 · 강화 등에 대한 심사
- ○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 시행
- ○ 규제의 등록 · 공표
- ○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
- ○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개선실태에 대한 점검 · 평가 등

(다) 구성

국무총리(당연직 위원장), 민간공동위원장, 민간위원 17인, 정부위원 6인 등 총25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과 위원 명단 >

(2007년 3월 현재)

구 분	성 명	현 직
위 원 장	한 덕 수	국무총리
	정 해 주	(주)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
정부위원 (6)	권 오 규	재정경제부 장관
	박 명 재	행정자치부 장관
	김 영 주	산업자원부 장관
	임 상 규	국무조정실장
	권 오 승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김 선 욱	법제처장
민간위원 (17)	정 진 승	KDI 국제정책 대학원 원장
	최 운 열	서강대 대외부총장
	오 연 천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이 영 남	이지디지털(주) 대표이사
	황 덕 남	세계종합법무법인 변호사
	최 성 래	전 동부한농화학(주) 사장
	박 재 묵	충남대학교 교수
	박 주 현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김 상 열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박 승 오	KAIST 항공우주공학전공 교수

구 분	성 명	현 직
민간위원 (17)	유 경 희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
	김 병 호	자치정보화조합 이사장
	송 보 경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이사
	김 유 환	이화여대 교수
	남 영 숙	한국교원대 교수 (환경교육과)
	정 기 화	덕성여대 약학부 교수
	김 광 원	한국언론재단 사업이사

(2) 회의운영

(가) 소집

위원장은 회의일시 ·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회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회의는 격주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매주 개최한다.

(나) 의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 회의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라) 회의출석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심사 등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 전문위원 및 조사요원도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마) 조정 및 의견청취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해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한 실지조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3) 심사절차

(가) 부처별 규제정비계획 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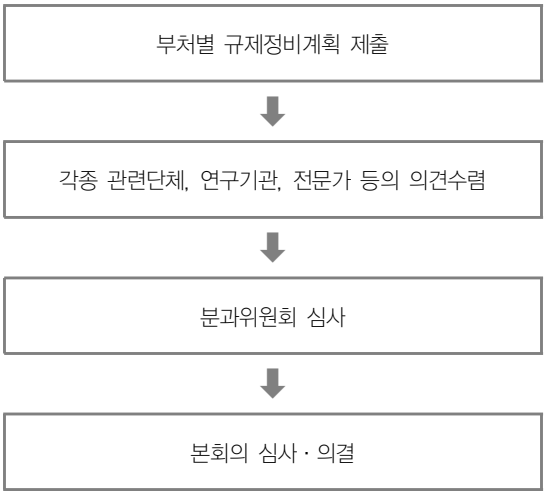

(나) 신설·강화규제 심사

① 일반적인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운영하여야 하며, 해당 분과위원회는 심사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규제가 국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고려할 때 위원회의 규제심사를 받아야 할 규제(중요규제)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중요규제가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써 심사절차를 종결한다.

중요규제인 경우에는 심사 요청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심사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1차에 한하여 15일의 범위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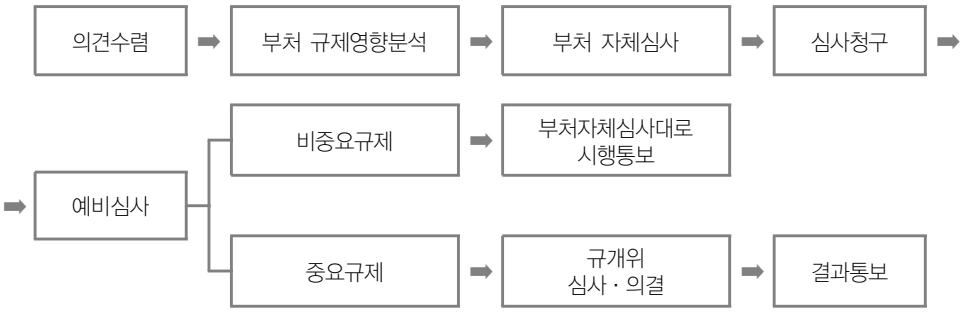

② 긴급한 규제의 경우

긴급한 규제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의견수렴,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평가를 생략하고 이에 대한 사유를 명시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긴급성 여부를 판단하여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영향분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분과위원회는 심사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일반적인 경우의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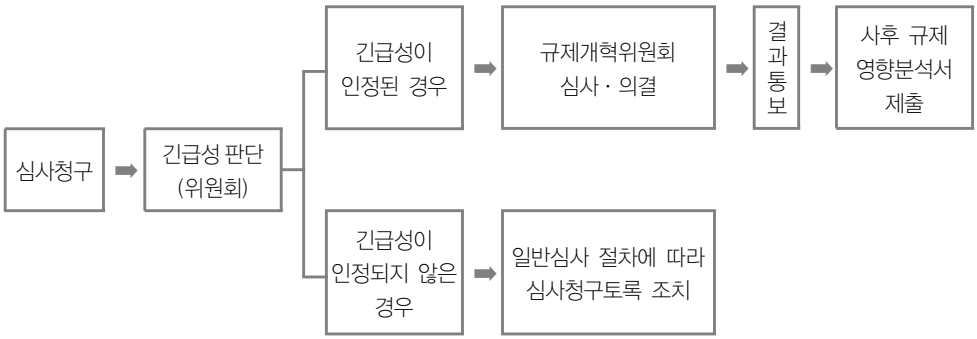

3.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구성 및 기능

(가) 분과위원회 설치근거 및 목적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98.4.18, 행정규제기본법 제28조)

(나) 기능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연구 및 기타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다) 분과위원회의 구성

경제1분과, 경제2분과, 행정사회분과 등 3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과위원회별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한 민간위원 5~6인, 정부위원 3~4인 등 9~10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 분과위원회 구성 >

(2007년 3월 현재)

구 분	분 과 위 원		소 관 부 처
경제1	민간위원	정 진 승(위원장) 오 연 천 이 영 남 최 운 열 황 덕 남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중소기업청, 특허청, 중소기업특별위원회 (13개기관)
	정부위원	재정경제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장 법제처장	

구 분	분 과 위 원		소 관 부 처
경제2	민간위원	최 성 래(위원장) 박 재 묵 박 주 현 김 상 열 박 승 오 유 경 희	과학기술부, 농림부, 정보통신부, 환경부, 노동부, 해양수산부, 기상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10개기관)
	정부위원	산업자원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행정사회	민간위원	김 병 호(위원장) 송 보 경 김 유 환 남 영 숙 김 광 원 정 기 화	교육인적자원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법제처, 국정홍보처, 국가보훈처, 중앙인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고충처리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 국가청소년위원회, 방송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국정원, 대검찰청, 병무청,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청, 문화재청, 소방방재청, 방위사업청 (28개기관)
	정부위원	행정자치부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장	

(2) 회의 운영

(가) 회의 소집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또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당해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나) 의결

분과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 회의공개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해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공익보호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회의 출석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심사 등과 관련하여 소속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전문위원 및 조사요원도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마) 위원회 의결로 의제되는 분과위원회 의결사항

중요규제 여부 및 규제의 긴급성 인정여부의 결정, 기타 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에 심의토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서 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

4. 규제개혁기획단 구성 · 운영

(1) 1기 규제개혁기획단(2004년8월~2006년8월)

기업활동을 제약하고 국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다수부처 관련 핵심 덩어리규제들을 수요자 입장에서 일괄 개혁하기 위해 2년 한시조직으로 기업, 연구원, 경제단체 직원 등 피규제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 · 합동의 규제개혁기획단을 출범시켰다.(2004년 8월)

규제개혁기획단은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을 단장으로 공무원과 민간인의 비율을 각 50%정도로 구성하고, 경제계 및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 현지 실태조사 등을 통한 현실성 있는 수요자 중심의 규제대안 마련, 개별규제 보다는 다수부처가 관련된 덩어리 규제개혁, 기업 · 연구원 등 민간이 개선방안 마련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지난 규제개혁기획단에서는 2년간('04.8~'06.8) 국민제안 현상공모와 기업건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덩어리 규제 정비대상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공장설립, 골프장 인 · 허가, 물류시설투자, 관광 · 레져 활성화,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등 총 48개의 전략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하였다

(2) 2기 규제개혁기획단(2006년8월~)

규제개혁기획단은 '06.8월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그동안 규제개혁기획단이 추진해온 규제정비 성과가 크고, 기업 및 경제단체 등이 직접 규제개혁 추진에 참여하는 민관합동 방식이 수요자 중심 규제개혁에 효율적이라는 평가가 많으며, 기업환경 개선, 국민편의 제고 등을 위해 지속적인 규제개혁 추진이 필요하다는 대한상의, 전경련 등 경제단체의 요청 등으로 활동시한을 참여정부 임기말까지 연장키로 결정하였다.

'06.8.24일 새로이 출범한 2기 규제개혁기획단은 그간 마련된 개선방안이 신속하게 이행되어 기업 및 국민들이 규제개혁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이행관리를 중점 추진중에 있으며, 경제활력과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기업환경 및 행정절차 개선, 국민생활 편의증진 개선 등 신규과제를 발굴하여 정비하는 한편, 이미 개선방안이 마련된 과제중 보완이 필요하거나 추가로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과제에 대한 보완대책을 수립 중에 있다.

5.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추진기구

(1) 중앙행정기관의 규제개혁추진기구

(가) 규제심사위원회

① 기능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설치되어 있는 규제심사위원회는 기존 행정규제의 개선에 관한 사항, 행정규제의 신설 · 강화 등에 관한 사항, 행정기능의 민간위탁 및 이양촉진에 관한 사항 및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 구성

규제심사위원회는 민간인, 전문가 및 공무원 등 10인~20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 중 민간위원의 수가 과반수를 넘도록 하고 있다.

(나) 규제개혁 총괄부서

① 기능

규제개혁 총괄부서에서는 규제개혁업무 총괄조정, 규제개혁추진상황 점검·평가, 정부내 규제개혁관련 부처간 협조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② 구성

정책홍보관리실장을 중심으로 혁신(법무)담당관 등이 담당하고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추진기구

(다) 기능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별로 구성되어 있는 규제개혁추진기구에서는 조례·규칙에 근거한 기존규제에 대한 정비계획를 수립·시행하고, 새롭게 도입되는 규제 또는 기존에 존재하는 규제를 강화하는 경우 규제영향분석에 기초하여 타당성을 심사하고 있다.

(라) 구성

시·도, 시·군·구별로 설치되어 있는 규제심사위원회는 10~20인 내외의 민간인,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규제개혁 추진 체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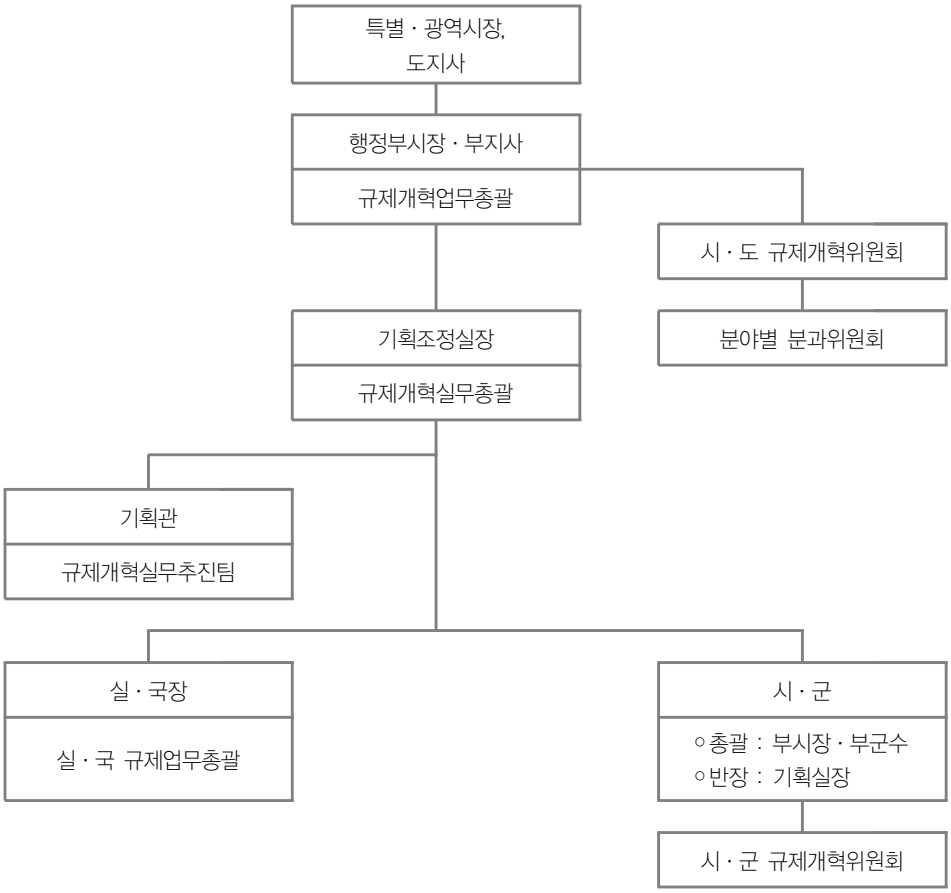

제3절 우리나라 행정규제의 현황

집필자: 양찬희 사무관(T. 2100-2423, ych2002@opc.go.kr)

1. 추진개요

행정규제기본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등에 의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규제사무를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고, 규제개혁위원회는 등록된 규제사무 목록을 공표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사무의 등록·공표에 더하여 등록되는 규제를 전산시스템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웹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국민에게 상시 공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규제등록 및 전산화 계획'을 수립('98.3.23)하고, 전산시스템 개발을 거쳐 '99.2.22 이후 인터넷(http://www.rrc.go.kr)에 규제등록 사무를 외부에 공개하고 있다.

인터넷에 공개되는 규제등록 웹서비스는 정부의 규제사무를 부처별·유형별·법령별로 분류된 통계와 함께 규제 사무명·내용에 대한 용어검색을 통해 관련 규제목록과 내용을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규제신고센터와 연결되어 있어 검색 후 즉시 규제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국무조정실 홈페이지(http://www.opc.go.kr)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였다.

2. 등록대상 규제사무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과 동 법령에 근거하는 고시 등(훈령, 예규, 고시, 공고)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말한다. 규제의 등록단위는 규제사무가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고 하위법령이나 규정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하위법령 이나 규정상의 규제사무를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하위법령이나 규정에서 규제사무를 세분하지 않고 단순히 내용이나 절차만을 규정한 경우에는 상위법령상의 규제사무를 기준으로 등록하도록 하였다.

또한, 규제의 근거규정이 다른 경우는 유사·동일 규제라도 별개의 등록단위로 하고, 동일법령상의 규제조항을 복수의 부처에서 각각 처리하면서(1개기관 허가, 1개기관 협의 등) 국민에게 별도의 신청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규제로 등록토록 하였다.

3. 규제사무의 등록 현황

이와 같은 규제사무 등록기준에 따라 전 중앙행정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행정규제사무를 등록토록 하였는바, 등록된 규제수는 규제등록 초년도인 '98.8월 기준으로 총 10,717건이었다. 이후 기존 규제사무의 폐지와 새로운 규제사무의 신설 등 증감변화를 거쳐 2006.12 현재 최초 등록 대비 2,634건이 감소한 8,084건의 규제사무가 등록되어 있다.

<표 1> 중앙행정기관별 규제수 변동 내역

(단위 : 건, 2006.12.31 기준)

소관부처	최초 (1998/8/31) 등록규제수	규제수 변경					증감 소계	현재등록 규제수 (2006.12.31)
		증가			감소			
		신설	누락등록	기타	폐지	기타		
총계	10,717건	2,475건	891건	1,124건	5,157건	1,967건	-2,634건	8,084건
건설교통부	900건	252건	158건	26건	415건	54건	-33건	867건
경찰청	382건	14건	2건	30건	141건	51건	-146건	236건
공정거래위원회	75건	101건	3건	9건	20건	1건	92건	167건
과학기술부	426건	73건	19건	8건	227건	65건	-192건	234건
관세청	220건	2건	28건	0건	132건	30건	-132건	88건
교육인적자원부	269건	78건	79건	0건	135건	73건	-151건	218건
국가보훈처	85건	18건	3건	4건	45건	9건	-29건	56건
국가청렴위원회	0건	3건	0건	0건	0건	0건	3건	3건
국가청소년위원회	0건	0건	0건	0건	0건	0건	0건	0건
국무조정실	0건	7건	0건	7건	0건	0건	14건	14건
국방부	37건	1건	1건	0건	16건	9건	-23건	14건
국세청	27건	0건	0건	0건	10건	0건	-10건	17건
금융감독위원회	548건	202건	128건	82건	304건	107건	1건	549건
기상청	28건	1건	0건	0건	14건	1건	-14건	14건
노동부	335건	158건	95건	18건	186건	52건	33건	368건
농림부	682건	153건	31건	46건	330건	56건	-156건	526건
농촌진흥청	14건	1건	0건	1건	9건	0건	-7건	7건
문화관광부	401건	94건	55건	22건	161건	136건	-126건	275건

소관부처	최초 (1998/8/31) 등록규제수	규제수 변경					증감 소계	현재등록 규제수 (2006.12.31)
		증가			감소			
		신설	누락등록	기타	폐지	기타		
총계	10,717건	2,475건	891건	1,124건	5,157건	1,967건	–2,634건	8,084건
문화재청	133건	8건	5건	0건	65건	2건	–54건	79건
방송위원회	0건	32건	1건	0건	0건	0건	33건	33건
법무부	88건	51건	0건	0건	6건	7건	38건	126건
병무청	29건	3건	3건	0건	3건	20건	–17건	12건
보건복지부	1,625건	174건	19건	180건	771건	409건	–807건	819건
산림청	254건	24건	10건	58건	118건	85건	–111건	143건
산업자원부	667건	143건	39건	69건	381건	71건	–201건	466건
소방방재청	0건	0건	0건	207건	5건	26건	176건	176건
식품의약품안전청	256건	38건	0건	2건	161건	6건	–127건	129건
여성가족부	0건	13건	1건	48건	12건	1건	49건	49건
외교통산부	40건	8건	0건	0건	7건	6건	–5건	35건
재정경제부	50건	183건	66건	117건	256건	188건	–78건	422건
정보통신부	370건	90건	16건	51건	194건	63건	–100건	270건
조달청	27건	4건	2건	0건	28건	2건	–24건	3건
중소기업청	84건	19건	16건	0건	55건	7건	–27건	57건
중앙인사위원회	0건	0건	0건	5건	0건	0건	5건	5건
철도청	53건	0건	2건	0건	54건	1건	–53건	0건
청소년위원회	23건	4건	0건	15건	1건	0건	18건	41건
통계청	10건	0건	1건	0건	7건	0건	–6건	4건
통일부	57건	5건	0건	0건	18건	23건	–36건	21건
특허청	60건	4건	7건	0건	27건	2건	–18건	42건
해양경찰청	122건	29건	1건	0건	57건	13건	–40건	82건
해양수산부	763건	216건	55건	48건	388건	72건	–141건	622건
행정자치부	484건	47건	8건	9건	183건	198건	–317건	167건
환경부	643건	222건	37건	62건	215건	121건	–15건	628건

제 2 장 기존규제의 정비

제 1절 복합 덩어리규제(전략과제) 정비
제 2절 시장변화속도에 뒤쳐지는 규제 정비
제 3절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제 4절 규제개혁 건의과제 수렴 · 개선

제1절 복합 덩어리규제(전략과제) 정비

1. 추진배경 및 경위

집필자 : 차은철 사무관(Tel. 2100-8755, aja2940@opc.go.kr)

그간 정부는 규제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개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특히 참여정부에서는 규제개혁의 효과를 높이고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양적인 규제개혁 방식보다는 규제의 질적인 품질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으며, 2004년 8월에는 기업활동을 제약하고 국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다수부처 관련 핵심 덩어리규제들을 수요자 입장에서 일괄 개혁하기 위해 2년 한시조직으로 기업, 연구원, 경제단체 직원 등 피규제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합동의 규제개혁기획단을 출범시켰다.

규제개혁기획단은 이러한 설립 취지에 맞추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을 단장으로 공무원과 민간인의 비율을 각 50%정도로 구성하고, 경제계 및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 현지 실태조사 등을 통한 현실성 있는 수요자 중심의 규제대안 마련, 개별규제보다는 다수부처가 관련된 덩어리 규제개혁, 기업·연구원 등 민간이 개선방안 마련에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규제개혁기획단에서는 2년간('04.8~'06.8) 국민제안 현상공모와 기업건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덩어리 규제 정비대상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공장설립, 골프장 인·허가, 물류시설투자, 관광·레져 활성화,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등 총 48개의 전략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확정하였다

규제개혁기획단은 '06.8월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그동안 규제개혁기획단이 추진해온 규제정비 성과가 크고, 기업 및 경제단체 등이 직접 규제개혁 추진에 참여하는 민관합동 방식이 수요자 중심 규제개혁에 효율적이라는 평가가 많으며, 기업환경 개선, 국민편의 제고 등을 위해 지속적인 규제개혁 추진이 필요하다는 대한상의, 전경련 등 경제단체의 요청 등으로 활동시한을 참여정부 임기말까지 연장키로 결정하였다.

'06.8.24일 새로이 출범한 2기 규제개혁기획단은 그간 마련된 개선방안이 신속하게 이행되어 기업 및 국민들이 규제개혁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이행관리를 중점 추진중에 있으며, 경제활력과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기업환경 및 행정절차 개선, 국민생활 편의증진 개선 등 신규과제를 발굴하여 정비하는 한편, 이미 개선방안이 마련된 과제중 보완이 필요하거나 추가로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과제에 대한 보완대책을 수립 중에 있다.

2. 전략과제 추진절차 및 방법

집필자 : 차은철 사무관(Tel. 2100-8755, aja2940@opc.go.kr)

덩어리 규제 정비는 단일한 사항에 대한 개별 규제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하나의 사업, 허가 등에 대해 적용되는 관련 규제들을 일괄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적, 법률적 개념이라기보다 국민이나 기업이 어떤 활동이나 사업을 하는데 관련된 규제의 집합체를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정비한다는 차원에서 수요자 지향적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규제를 등록된 단위별로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된 규제를 전체적으로 검토하여 일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수요자가 느끼는 규제개혁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덩어리 규제의 정비는 정비대상 과제의 선정, 개선방안 마련·확정, 후속조치 이행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수요자 중심의 실질적 규제개혁을 위해 기업 및 경제단체로부터 개선이 필요한 건의과제 접수, 국민들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규제개혁 국민제안 공모 등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이러한 건의과제 및 정부에 지속적으로 개선 건의가 되고 있는 과제 등을 기초로 경제적 파급효과, 기업환경 개선효과, 과제 추진의 시급성, 장기검토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대상 전략과제를 선정하게 된다.

선정된 전략과제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기업, 자치단체 등 현장을 방문하여 규제 운영실태, 관계자 의견 청취, 관계공무원 면담 등을 통해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대상 규제를 발굴하여 검토규제와 관련된 규제 적용 사례, 불합리한 사례 등에 대한 분석, 해당 규제의 근거법령 및 관계법령의 취지, 내용, 이력 등에 대한 검토, 관련 규제를 둘러싼 시장상황, 사회적·경제적 환경 등 정책환경에 대한 검토를 거쳐 개선대안을 마련한다. 마련된

대안에 대해 내외부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최적 대안을 도출하게 된다. 최적 대안을 가지고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관련 사업자, 시민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하여 이를 개선안에 반영한다.

개선방안이 마련되면 개선방안 확정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시작하게 된다. 관계부처 협의는 개선방안에 대한 꼼꼼한 검토와 그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무관 등 실무급 협의부터 시작해서 과장급, 국장급, 1급 등 단계적으로 쟁점에 대한 협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차관회의를 통해 최종 조정하여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확정하게 된다.

확정된 개선방안이 부처에 통보된 후 부처는 개선방안에 대한 세부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규제개혁기획단에 제출하는데 시행령 이하는 원칙적으로 1개월 내에 개선 완료, 법률은 3개월 내에 국무회의 상정 완료할 것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규제개혁기획단은 세부이행계획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이행점검 전담반을 통해 그 이행상황을 중점 관리하고 규제개혁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행현황을 상시적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고 그 상황은 국민에게도 동시에 공개된다. 한편으로 확정된 개선방안은 관련 규제의 수요자 집단인 관련 협회, 관련 전문가 집단 등에도 보내지고, 규제개혁기획단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국민에게도 공개된다.

3. 전략과제 추진실적

집필자 : 차은철 사무관(Tel. 2100-8755, aja2940@opc.go.kr)

규제개혁기획단은 그간('04.8~'06.12) 총 51개 전략과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연도별로 '04년에는 창업 및 공장설립 절차 개선 등 총 8개 과제, '05년에는 신기술 · 신제품 규제 개선, 건설산업 규제 등 총 24개 과제, '06년에는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규제 개선 등 총 19개의 전략과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이하에서는 '06년도에 추진한 19개 전략과제의 주요내용을 소개한다.

< 참고 : 규제개혁 전략과제 추진실적('04.8~'06.12, 총 51개 과제) >

분 야	전 략 과 제
창업 및 경영환경 (11개 과제)	①창업 및 공장설립 ②기업 행정조사 ③법인설립 개선 ④산업단지 ⑤부담금 ⑥표시광고 ⑦사업자 교육 ⑧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⑨조세부과 · 징수 ⑩기업공개 · 시장제도 ⑪경제자유구역 규제
물류 · 유통 (8개 과제)	①물류시설 투자 ②대형유통점 ③항공운송 ④해상운송 ⑤육상운송 ⑥농수산물 유통 ⑦재래시장 활성화 ⑧항공운송(보완)
건축 · 건설 (6개 과제)	①골프장 건설 ②민간SOC 투자 ③건설산업 ④공동주택 ⑤소규모건축 ⑥공동주택(보완)
정보 · 통신 · 방송 · 금융 등 신산업 (8개 과제)	①전자상거래 ②신기술 · 신제품 ③정보통신 ④소프트웨어 산업 ⑤금융산업 진입 · 영업 ⑥공공정보 이용활성화 ⑦에너지 · 네트워크 산업 ⑧금융감독 · 예금보험 제도
교육 · 문화 및 관광 (5개 과제)	①관광 · 레저 규제 ②문화예술 창의성 ③대학행정 규제 ④초중등 교육 규제 ⑤고등교육기관 설립
고용 · 환경 (6개 과제)	①직업훈련제도 ②수질 보전지역 ③4대 영향평가 제도 ④산업안전 · 보건 ⑤환경분야 인허가 등 ⑥폐기물 처리 · 재활용
국민편의 (7개 과제)	①지방자치단체 규제 ②행정내부 규제 ③유사행정 규제 ④교통관련 제도 ⑤국공유재산 관리제도 ⑥옥외광고 ⑦외국인 기업경영 · 생활환경

3.1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규제 개선방안

집필자 : 강진규 사무관(Tel. 2100-8797, k825an@ftc.go.kr)

가. 추진배경

■ 현재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 악화로 대 · 중소기업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

○ 중소기업 CEO가 느끼는 경제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은 계속 확대

*78.4%('03.3) → 89.3%('04.3)〈중소기업중앙회 조사〉

○ 최근 몇 년간 대 · 중소기업간 수익성, 근로자간 임금, R&D 투자액(혁신역량)의 격차도 확대되는 추세

(%)

구 분		'02	'03	'04
매출액대비 영업이익률	대기업	7.5	8.2	9.4
	중소기업	5.3	4.6	4.1
대기업대비 임금수준(제조업)		62.2	60.9	57.2
중소기업의 R&D투자액 비중(제조업)		28.0	23.6	18.3

〈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노동부 각년도 노동통계, 과학기술부 과학기술연구활동조사결과 보고서 각년호〉

■ 아직도 중소기업이 국민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양극화 해소」가 시급한 정책과제임을 감안할 때, 규제개혁 측면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

*'03년말 기준 중소기업은 전체사업체수의 99.4%, 종업원 수의 76.9%, 생산액의 50.6%를 기록하는 등 국민경제의 저변을 형성

〈자료 : 통계청. 2003년기준. 광업 · 제조업 통계조사〉

나. 규제현황 및 문제점

(1) 규제 현황

■ '05.11월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규제 총 7,920건 중 중소기업 활동과 관련되는 규제는 5,751건에 달함

○ 이중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제조업 및 제조 관련 서비스업) 관련 규제는 1,761건으로 파악

■ 상기 관련 규제(1,761건)의 세부 내역을 보면,

○ 부처별 : 33개 부처 · 청 중 환경부(241건), 노동부(173건), 보건복지부(168건), 산업자원부(165건), 건설교통부(135건) 등 5개 부처가 전체의 1/2수준(882건)을 보유

○ 유형별 : 보고 · 신고 등(394건), 기준설정(333건), 행정질서벌(147건), 금지(122건), 허가(95건), 명령(92건), 기타(578건)

○ 업종별 : 전산업(951건), 화학제품 제조업(217건), 음 · 식료품 제조업(181건), 기타제조 및 제조관련서비스업(412건)

■ 규제 근거는 약사법(130건), 식품위생법(67건), 관세법(59건), 산업안전보건법(56건) 등 모두 183개 법률에 규정되어 있음

(2) 문제점

■ 중소기업의 열악한 경영 여건에 비해 과도한 규제 부담

○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의 경우 총생산액의 4.6%를 규제비용으로 부담(중소기업연구원 추정치, '05.9)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중소기업 CEO가 꼽은 정책과제로 규제철폐 및 완화(56.1%)를 자금조달 여건개선(70.4%) 다음으로 선정('04년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 특히, 대기업과 동일 규제를 중소기업에도 획일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중소기업들에게 규제 미준수를 유도하여 불이익을 초래

■ 중소기업 지향적인 규제개혁 시도 부족

○ 규제 개혁 수립 과정에서 중소기업 의견이 상대적으로 반영되지 못하여, 중소기업들의 규제개혁 체감도는 낮음

*규제완화 체감도 조사결과('05.6. 중소기업특별위원회) : '규제가 별로 완화되지 않았다'가 53.1%, '오히려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가 11.3%로 응답

■ 산업단지는 일반적인 개별입지와는 달리 계획적으로 조성·운영되고 있는 지역단위의 기업집합체로서,

○ 적절한 규제집행 체제를 수립하여 자율 준수 규제 방식을 적용할 경우 효율적인 규제집행이 이루어 질 가능성이 높음

*산업단지 현황 : 556개(국가 35, 지방 201, 농공 330), 입주기업의 98%이상 중소기업이며, 전체 제조업 생산의 49.7%, 수출의 71.1%를 차지

다. 개선방안

(1) 규제의 자율 준수 방식 추진

❍ 전통적 지시·관리적인 규제방식을 피규제자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규제 패러다임 변경

■ 산업단지내의 중소기업들이 법령상의 규제를 스스로 준수토록 하고 기업대표 등으로 구성된 자율규제기구에서 이를 확인 · 점검(동 기구와 행정관청이 협약을 체결)

○ 기업이 행정기관의 일률적이고 강제적인 규제 집행에 앞서 스스로 이를 준수토록 하고

○ 행정기관은 자율규제기구를 통하여 이행상황을 확인하거나 문제 발생시 직접 · 확인 점검하고 필요시 행정 조치

*예시 : '소방시설 자체 점검' 규제의 경우 일차적으로 자율규제기구에서 관할 소방관청과의 협약을 체결하여 동 기구로 하여금 입주기업들 스스로의 시행을 유도하게 하고, 소방관청은 정기적으로 자율기구에 대해 monitoring

■ 자율준수규제 운영 방안

○ 자율 규제기구 및 권한

- 입주기업대표 · 전문가 ·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자율규제 집행기구인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실질적인 집행사무는 운영위원회 책임 · 감독 하에 수행하되, 입주기업협의체 · 산단공등 기존 기구를 활용하거나, 신규인력을 고용
- 운영위원회는 규제담당 부처와 협약을 통해 기업들의 규제 이행을 확인 · 점검하여 자율적인 규제 준수 유도
  · 1차적으로 자율규제기구의 책임하에 규제가 이행되나 최종적인 규제 권한은 규제 담당 부처가 현행대로 보유

○ 규제집행방식

- 자율규제기구는 규제담당부처와 적용규제 · 운영방식 · 절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

*동 협약은 규제담당부처가 중소기업특별위원회와 협의하여 기존규제의 범위 내에서 작성

- 개별 기업이 규제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자율규제기구는 협약내용에 따라 자율적인 제재 조치 시행(주의, 경고 등)
  · 이후에도 미 이행시 규제 담당 부처에 통보 (부처에서는 과태료 부과 등 기존 규제에 따른 제재 조치)

○ 기존 규제담당 부처의 역할

- 정기적으로 자율규제기구에 대하여 자율규제지침 이행을 점검(monitoring)하고 필요시 이행관련 자료를 요구

- 점검결과 자율규제지침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을 경우에는 중소기업특별위원회와 협의하여 자율 준수규제를 기존규제 집행방식으로 전환
  ※ 규제담당부처는 중소기업특별위원회와 협의 후 협약 파기
- 또한, 문제발생 등으로 개별기업에 대한 조사 및 감독이 필요할 경우에는 자율규제 기구에 통보하고 기존의 규제 권한 행사

■ 자율 준수 전환 규제

○ 13개 부처 110건에 대하여 자율 준수토록 함

○ 주요 내용

- 보고 · 신고 · 검사 사항 :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생산실적 보고,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 에너지 사용 실적 신고, 단독 정화조의 설치 변경(폐쇄) 신고, 승강기 자체검사 등
- 각종 의무 교육 사항 : 산업안전보건 교육, 건강기능식품 관련 영업자등의 교육 의무, 급수장치 및 저수조의 위생 관리 등에 대한 교육, 수질환경관리인 · 유독물관리자 교육 등
- 기준 · 기록 등에 관한 사항 : 옥외광고물의 표시방법 제한, 건축물의 설계행위 제한, 건축주의 대지안의 조경 의무, 산업안전 표지의 부착, 축산물 가공처리업체의 검사기록부 비치 의무, 오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 기준 등
- 승인 · 허가 · 지도 사항 :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 가설건축물 축조 허가, 도로의 지정 또는 폐지, 변경 허가, 에너지 관리상황 조사 및 관리지도 등
- 고용 의무 관련 사항 : 압축천연가스 충전시설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수질환경관리인의 임명 및 신고 등

(2) 규제의 개선

○ 현 상황에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대해, 규제 준수 부담의 경감이 가능한 규제는 규제의 내용을 개선하여 적용

*예시 : 「건축법 제27조의 건축물 철거 · 멸실 신고」의 경우 현재 멸실 후 15일 이내로 신고하여야 하는 규정을 60일로 개정하여 규제내용을 개선

○ 13개 부처 48건에 대하여 규제 내용을 개선

○ 주요 내용
- 승인 · 인가 사항을 신고로 완화 : 고용보험 일괄 적용의 해지시 근로복지공단의 승인→ 신고, 외화 획득용 원료기재의 양수도 산업자원부 승인→ 신고, 무선국 허가를 승계하는 경우 정보통신부 인가→합병에 의해 승계하는 경우 신고 등
- 신고 · 처리 기간 등의 완화
  · 건축물 철거 · 멸실 신고(15일 이내→60일 이내)
  · 신기술 인정 연장기간 연장(2년→7년)
  · 축산물 가공처리 자체검사원 충원(30일 이내→ 60일 이내)
  · 고용산재보험 일괄적용 사업개시 및 종료 신고(14일 이내→익월 15일 이내)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특별교육(선임 후 6개월이내→1년 이내)
  · 농약제조업자 등의 자체검사 성적서 즉시 제출→30일 이내 제출
  · 화약류 보안 책임자 면허 처리기간(신청일로부터 15일→7일 이내)
  · 인삼류 자체검사 실적 제출 주기(분기→반기)
  · 대기 및 수질오염 물질 측정대행업 변경 등록 및 취소 기한 없음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기한 명기 등
- 보고 · 신고 제출 의무 개선
  · 사료제조업 등록 시설 변경 신고→일부 제조시설의 변경은 신고 생략
  · 체육용구 생산업체의 검사 수용 의무→면제
  · 수입폐기물의 양도 · 양수 신고→서류만 보관하고 신고 의무 면제
  · 폐기물 회수 처리 대상 품목 6개→1개(나머지 품목 회수 · 처리의무 면제)
  ·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의 제조업자는 약사 또는 한의사를 두도록 함→ 의약품 제조업자만 의무부여
- 기타 수수료 감액 등 : 게임 제작업 및 유통관련업자의 등록, 변경 등록시 수수료 부과→변경 등록시 수수료 감액,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부과금 부과→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질배출 부과금을 감액 부과 등

(3) 규제의 적용제외

○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대해 특별한 실익이 없거나 또는 규제의 편익에 비해 준수부담이 과중한 규제는 그 적용을 배제

*예시 :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협동화 단지 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사항은 산업단지의 경우 이미 공장 등이 집단화되어 있으므로 적용 제외

○ 9개 부처 24건에 대하여 적용 제외

○ 주요 내용
- 보고 · 신고 관련 사항 : 보건관리자 및 안전관리자 선임보고, 수산물 생산 · 가공시설 위생관리실적 보고, 고용 · 산재보험 대리인 선임 · 해임 신고(민법상 위임장으로 대체)
- 교육 및 표시 관련 사항 : 에너지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수산물 표준 규격화 표시, 축산물 판매업 영업신고필증 게시 의무
- 기타 사항 : 도로보전 입체구역 내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 대한 행위제한, 불법도로 점용자의 부당이득금 및 과태료 징수 등

(4) 산업단지내 중소기업 규제혁신을 위한 특례법 제정

■ 목적

○ 자율 준수 및 규제 완화 · 적용 제외 등 규제의 특례를 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 산업단지에 적용되는 규제를 일목요연하게 명시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부족한 규제 순응 능력 배양

*'이 법은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대하여 반드시 적용되어야 하는 규제 및 이 법에 의하여 완화 내지 배제되는 규제를 명시함으로써 규제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규제로부터 오는 부담을 경감'

■ 특례법의 구성

○ 부처 합의로 도출된 규제를 아래 예시와 같이 필수 · 자율준수 · 개선 · 적용제외로 구분하여 열거
- 필수규제
  · 제○조(필수규제) 다음에 열거된 규제는 산업단지 내의 중소기업에 적용한다.
    1. 총포 · 도검 · 화약류등단속법 제18조의 화약류의 사용허가
    2. 총포 · 도검 · 화약류등단속법 제20조의 화약류 폐기신고

- 자율준수규제
  · 제○조(자율준수규제)
    ① 다음에 열거된 규제는 산업단지 내의 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이를 준수한다.
      1. 사료관리법 제18조 및 제25조에 의한 관계장부의 비치의무
      2. 약사법 제31조에 의한 동물용의약품 등의 생산 및 판매실적 보고
    ② 규제주관부처에서는 자율규제 이행상황을 확인 · 점검할 수 있으며, 규제가 제대로 준수되지 않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필수규제로의 전환을 중소기업특별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제에 있어서 자율적인 감시의 방법 및 그 검증절차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선규제
  · 제○조(개선 규제) 다음에 열거하는 규제는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개정된 내용을 적용한다.
    1. 건축법 제27조 제2항의 '멸실 후 15일 이내에 신고'는 '멸실 후 60일 이내에 신고'로 한다.
- 적용제외규제
  · 제○조(적용이 제외되는 규제) 다음에 열거하는 규제는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그 적용을 제외한다.
    1.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50조에 의한 협동화단지 조성사업의 실시 계획 승인
- 특례법의 운영 절차 규정
  · 규제의 원상회복 및 신설
  · 규제의 배제 및 완화로 인하여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회적 문제 발생시 해당 부처는 중소기업특별위원회에 규제 원상회복을 요청
  · 중소기업 관련규제를 새로이 신설할 경우, 중앙행정기관은 규제가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실시하여 중소기업특별위원회에 제출
  *규제의 원상회복 및 신설 등의 경우 신속한 처리를 위해 특례조항 명시
- 중소기업 규제완화 평가 및 혁신대상 규제 발굴
  · 매년 중소기업 규제의 완화 및 배제의 이행상황과 효과 등을 평가하여 대통령께 보고

■ 대상단지 선정 절차

○ 자율준수기구의 준수 호응도, 시범 운영 실적 및 운영상황을 평가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선정

○ 선정 절차 : 자율규제 목표와 계획 제시 → 자율규제 운영 신청서 제출(자율운영위원회) → 예비심사(부처 합동) → 규제 자율 실시 시범 운영 → 운영 상황 평가 (부처 합동) → 규제개혁위원회 선정 → 적용 단지 선정 결과 통보

*선정에서 탈락된 산업단지는 자구노력을 유도하여 추후 확대 검토

■ 적용 시한

○ 3년간 한시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그 효과성을 평가하여 확대 적용 및 연장 여부를 판단

라. 향후 추진계획

○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주관으로 당정 협의 실시(2월 중)
- 특례법 제정방식 등 논의

○ 대상단지 선정 절차 완료(상반기 중)

3.2 수질보전지역 규제 합리화

집필자 : 정현영 전문위원(Tel. 2100-8758, chy0920@opc.go.kr)

가. 정책환경 및 추진경위

○ 우리나라의 주요 상수원은 수계 중·하류에 위치하여 각종개발압력이 크고 상수원 오염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음
※ 팔당호 : 한강 중류, 물금 : 낙동강 하류, 대청호 : 금강 중류 등

○ 「4대강 물관리종합대책」 추진 이후 수질개선이 가시화되고 있으나 상·하류 지역간, 이해관계자간 갈등 요인은 상존

- 전국 하천 194개 구간의 수질환경기준 달성률이 '96년 20.0% → '04년 36.6%로 점진적으로 향상

수 계	계	Ⅰ등급	Ⅱ등급	Ⅲ등급	Ⅳ등급	Ⅴ등급
달성/구간수 (%)	71/194 (36.6)	37/120 (31)	18/49 (37)	5/9 (56)	6/8 (75)	5/8 (63)

- 상수원보호구역 · 특별대책지역 · 수변구역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 입지규제로 정부 · 지자체, 상 · 하류 주민간 갈등
  ※ 팔당호 주변 7개 지자체는 관계법상 중복적인 규제의 완화를 지속적 요구
- 4대강 특별법에 의해 수질오염총량제가 본격 실시됨에 따라 산업체 부담 가중 예상

나. 규제현황 및 문제점

■ 관련법률 및 규제현황

○ 5개 부처가 12개 법률에서 수질보전지역관련 개발 · 행위 규제
- 수질환경보전법 : 산업폐수의 배출규제
- 환경정책기본법 : 팔당호 ·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지정 · 규제
- 수도법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 규제
- 4대강 특별법(4개법률) : 수변구역 지정 · 규제, 수질오염총량제
- 기타 법률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체육시설의설치 · 이용에관한법률에서 상수원주변지역의 개발사업 · 행위 제한

○ 규제건수는 총 84건으로 수질오염시설 입지규제, 행위제한,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설정 · 관리 관련 규제가 대부분

합 계	입지규제	행위제한	배출규제	기 타
84건(100%)	18건(21.4%)	15건(17.9%)	28건(33.3%)	23건(27.4%)

■ 지역개발 제한으로 갈등요인 상존

○ 상수원 주변 규제지역 지자체 · 주민이 규제로 인한 지역발전 낙후, 토지이용 제약, 적정 보상미흡 등을 주장

■ 산업입지 · 배출규제 강화로 기업활동 애로 호소

규제분야	관련법률	주요 규제내용
입지규제	수질환경보전법 등 11개 법률	· 각종 규제지역에서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 · 배출시설 허가 · 신고, 원인자부담금 부과
배출규제	수질환경보전법 등 5개 법률	· 업종별 배출허용기준 설정, 오염방지시설설치, 배출부과금 부과, 오염총량규제, 비점오염원 처리시설 설치
지도감독	〃	· 사업장 출입조사, 자료제출, 환경관리인 배치 등

○ 규제지역 및 규제항목 증가, 오염총량규제 등 새로운 규제수단 도입, 행정기관의 중복적 지도 · 단속 등을 주로 지적

다. 개선방안

(1) 수질보전지역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기본방향 ◆ **수질보전을 위한 필요규제는 유지하되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주민불편 최소화**

■ 수계바깥지역을 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에서 제외

○ 수도권 · 중부권의 최대 상수원인 팔당호 · 대청호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90.7월부터 호소 주변지역을 상수원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 · 고시

- 상수원과 근접거리에 따라 Ⅰ권역과 Ⅱ권역으로 구분하여 건축 · 개발 · 공장입지 제한 등 규제

○ 특별대책지역은 오염원이 입지할 경우 호소 수질에 영향을 주는 지역(수계내 지역)에 한하여 지정되어야 하나

- 행정관리의 편의상 읍 · 면 등 행정구역단위로 지정되어 있어 수리학적으로 수계바깥의 일부지역이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규제 받는 불합리한 상황 발생

※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현지조사 결과, 대전광역시 동구 비룡동 일원 249개 필지 483천m^2는 대청호 수계가 아님에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

⇒ 상수원 수질오염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계바깥지역을 특별대책지역에서 제외

① 1단계 : 대청호는 2006.6월말까지 규제지역 조정
② 2단계 : 팔당호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태조사 후 2006년말까지 규제지역 조정

■ 수변구역 규제지역 범위 명확화
○ 4대강 수변구역은 축적 1/5,000 지형도를 이용하여 도면으로 수변구역을 표시하여 고시하고 있으나
- 지형도는 지적도와 달리 개별 필지가 표시되지 않아 경계구역의 경우 규제지역 편입 여부가 불분명하여 지자체의 판단오류 등으로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 발생
※ 상수원보호구역의 경우 규제지역과 비규제 지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내용을 지적 고시하도록 법률로 규정(수도법시행령 제7조제3항)

⇒ 토지소유자가 수변구역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06년말까지 수치정사(數値正射) 지적도를 작성, 인터넷 등에 게재

■ 상수원관리지역 토지매수기준 투명화
○ 수계관리기금을 재원으로 상수원관리지역내 사유지에 대한 토지매수사업을 추진중이나
- 토지매수는 주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사안임에도 주민들이 토지매수관련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워 토지매수사업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저해
※ 토지매수현황 : '05.10월까지 2,933억원을 투입하여 상수원관리지역 면적의 약 1.1%인 1,570만㎡(약 475만평) 매입. '10년까지 1조640억원을 투입하여 50㎢ 매입, '20년까지 4조5,640억원을 투입하여 205㎢(대상토지의 약14%) 매입 예정

⇒ 지역주민이 토지매수지침과 매수대상 토지여부 등을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토지매수관리 및 정보시스템」을 '06.9월말까지 구축, 인터넷에 공개

■ 음식점 등 영업시설 영업권을 매수범위에 포함
○ 상수원관리지역내 사유지 매수는 규제로 인한 재산권 손실보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하는 영업손실을 보상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며
- 이로 인해 수질오염 기여도가 높은 음식점 등의 우선매수 곤란

⇒ 상수원수질보전을 위해 수계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토지매수 범위에 영업권 포함

(2) 산업활동 관련 수질환경 규제 개선

기본방향 ◆ **불합리 · 과중한 수질환경규제로 인한 기업부담 경감**

■ 자연보전권역내 공장입지 규제 개선

○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 성장관리권역 · 자연보전권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면적 5백㎡이상 공장의 신 · 증설을 제한

○ 공장건축면적 산정시 자연보전권역은 제조시설의 부대시설인 사무실 · 창고면적까지 총 건축면적에 합산하여 실질적으로 건축가능 면적이 축소되는 불합리 발생

※ 과밀억제권역 · 성장관리권역에서는 사무실 · 창고면적은 총 건축면적에서 제외

⇒ 수질오염총량제 실시지역에서는 자연보전권역내 공장건축면적 산정시 사무실 및 창고 면적 제외

■ 환경관리 우수 사업장에 정기 지도 · 점검 면제

○ 지자체(시 · 도, 시 · 군), 지방환경청, 검찰 · 경찰 등 관계기관의 중복적인 지도 점검으로 기업은 애로를 호소

○ 일부 지자체는 점검인력 부족으로 법정 점검횟수 기준에도 미달하여 감사원 감사 및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

※ 배출업소 관리인력은 '04년 1,600명으로 '03년 1,722명보다 122명 감소, 1인당 관리대상 배출업소수는 평균 48개소

○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환경 위해도는 낮은 편이나 지도점검에 행정력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비효율적

< 사업장 지도점검 현황 >

구 분	정기지도점검	수시지도점검
점검기관	지자체(시 · 도, 시 · 군)	환경청, 지자체, 관계기관 합동

구 분	정기지도점검	수시지도점검
점검주기	· 청색등급사업장 : 연 1~2회 · 녹색등급사업장 : 연 1~3회 · 적색등급사업장 : 연 3~4회	수시 ※가뭄 · 장마철 등 취약기, 민원발생 · 환경오염지역 등
면제대상	· 환경친화기업 · 자율점검업소 지정업체 · 자율환경관리협약 체결업체 (단, 2년에 1회 이상 정밀지도점검은 실시)	· 환경친화기업

⇒ 3년이상 청색등급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기 지도점검이 면제되는 자율점검업소로 지정

* 환경관련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등 자율환경관리 역량이 우수한 사업장

· 단, 특정유해물질 배출사업장의 경우 5년이상 청색등급으로 하고, 상수원 직접 영향권(상수원 상류 10km 이내)내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기 지도점검 유지

■ 건축허가 신청시 배출시설설치허가 통합 처리

○ 환경오염물질배출 사업장 신설 시 건축허가와 별도로 환경관련법령에 의해 수질오염물질, 대기오염물질, 소음 · 진동 배출시설설치 허가 · 신고를 해야 하나

– 시 · 군의 건축허가신청과 별도 절차로 접수 · 처리되고 있어 사업자 불편 초래

⇒ 건축허가 시 배출시설 설치 허가 · 신고 의제처리

· 건축허가 신청서류에 배출시설 설치허가 · 신고 서류 첨부

■ 수질자동측정시스템(TMS) 설치업소에 대한 배출부과금 산정방법 개선 및 지도점검 감축

○ 산업체가 방류수수질기준 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할 경우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 실제 배출기간 및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1회 측정치를 기초로 초과배출행위가 개선완료일까지 지속된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부과금 산정방식이 불합리

※ 대법원에서도 '91년, '95년, '98년에 배출부과금 산정방식의 위법성 판결

○ 이로 인해 '04년 9건의 행정소송이 진행중이며 배출부과금 징수율도 저조

< 배출부과금 부과 및 징수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도		부과금	징수액(%)
과년도 포함	'04	53,881	6,274(11.6)
	'03	46,231	7,391(16.0)
당해 연도	'04	20,669	4,460(21.6)
	'03	16,989	6,269(36.9)

※ 과년도를 포함한 '04년도 미수납액이 456억원(불납결손액 20억4천만원 제외)이고, 그 중 행정소송 계류(9건)로 징수가 어려운 금액이 143억원으로 31.4%

※ 배출부과금 = 수질기준초과 배출량(일일기준초과배출량 × 배출기간일수) × 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 부과금산정지수 × 부과계수

⇒ ① 폐수의 오염도 및 배출량을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수질자동측정시스템(TMS) 구축

- 1~3종 배출업소와 하·폐수종말처리시설을 주 설치대상으로 하되, 폐수가 상시 흐르지 않아 수질자동측정기기(TMS)를 설치해도 실효성이 없는 배치식 수질오염 방지시설은 설치대상에서 제외

※ 굴뚝자동측정기기(TMS)의 경우 3종사업장까지 설치대상으로 하여 '05년 9월말 현재 총 330개소(설치목표 사업장수 702개)에 808개 설치·운영

②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장에 대한 오염도 및 배출량을 반영한 배출부과금 산정 방법 마련

③ 원격 감시가 가능한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장에 대해 정기 지도·점검 면제

- 단, 측정기기의 정확성과 통일성을 위한 정도검사 실시

④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체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융자금 대상에 포함

※ 수질자동측정기기 평균 부착비용 : 1억7천~2억원

■ 청정지역 배출허용기준 개선

○ 산업폐수의 배출허용기준을 수질등급 달성목표에 따라 청정·가·나·특례지역으로 구분하여 규제하고 있으나

- 청정지역에서 구리 · 수은의 배출허용기준이 수돗물 및 먹는물 수질기준 보다 높은 등 비현실적으로 엄격

⇒ 청정지역의 구리 · 수은 배출허용기준을 수돗물 · 먹는물 수질기준 이상으로 조정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규제 개선

○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 에서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된 원료(용수포함), 부원료 및 첨가제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 생산공정상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되지 않음에도, 미량의 동 물질이 함유된 용수(하천 · 지하수 · 상수도 등)의 사용 자체를 오염행위로 보는 것은 과잉 규제

*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에서는 17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모두 '불검출'되어야 배출시설의 입지 가능, 단 3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경우 폐수무방류시설에 한해 입지 허용

⇒ 용수에 포함된 미량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검출되는 경우 규제대상에서 제외 ·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의 지정 목적을 감안하여 일반 공업용수보다 필요한 만큼 강화하되 먹는물기준보다는 완화한 수준으로 용수의 규제기준 설정

■ 수생태계에 대한 독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배출허용기준 설정

○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상수원 상류등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에 입지를 금지하고 있고 기타지역에서는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관리

○ 특정수질유해물질중 중금속 화합물(구리, 납, 비소, 수은, 6가크롬, 카드뮴, 셀레늄 및 그 화합물)의 경우 함유성분에 따라 유해도에 차이가 있으므로 규제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으나

- 우리나라의 경우 화합물 성분별 유해도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규제기준 적용

※ 독일에서는 중금속 화합물질을 유해도에 따라 세분화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설정

⇒ 수생태계에 대한 독성영향을 고려한 배출허용기준 설정 등 생태독성을 이용한 산업폐수 관리체계 도입

(3) 수질보전지역 관리 효율화

■ 수질오염물질 배출 방지시설 운영비용 지원 확대

○ 낙동강, 금강, 영산강 · 섬진강 유역에서는 배출허용기준 이내 폐수배출업체에 대해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한강유역 사업장에 대해서는 동 지원제도가 없어 사업자의 자발적 환경개선 유인 효과 미흡

※ 수계관리위원회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폐수배출시설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내로 폐수를 배출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낙동강법 제25조, 금강법 제23조, 영산강·섬진강법 제23조)

⇒ 한강유역 사업장에 대해서도 배출허용기준이내 배출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비용 지원

■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 확대

○ 낙동강, 금강, 영산상·섬진강 유역의 경우 주민자율노력으로 수질개선을 한 지역에 수계관리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한강 유역은 동 제도가 없어 수질개선을 하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문제 발생

※ 김해시 대포천의 경우 주민 자발적 노력에 의한 수질개선으로 '05년 주민지원사업비 843백만원 지원

⇒ 한강 유역도 주민자율노력에 의한 수질개선지역을 수계관리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

■ 수질오염사고 취약지점 사고방지대책 강구

○ 상수원관리지역 및 인접지역은 유독물 운반차량의 전복·추락 등으로 인하여 수질오염사고에 상시 노출되어 있으나 사고 발생에 대비한 상수원 보호시설 미비

※ 일반국도의 경우 유독물 운반차량 통행제한 도로를 지정하고 있으나 제한 범위에 한계가 있고, 고속도로의 경우는 교통소통 문제로 제외

⇒ ① 상수원보호구역과 인접한 상류지역, 수변구역, 수질이 양호한 하천(2ppm 이하) 등에 도로를 건설할 경우 사고취약예상지점에 완충저류조 설치 방안 강구

②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경계에서 1km 이내에 위치한 기존 도로 중 사고취약지점에 완충저류조 설치 방안 강구

※ '05.4.15 대청호 상류인 경부고속도로 비룡분기점에서 메틸페놀 수송차량 전복으로 약 4만리터의 유독물이 유출되었으나, 수계 유입부에 설치된 완충저류조에서 차단되어 대형 수질오염사고 예방

라. 향후 추진일정

○ 부처별 세부추진계획 수립 · 제출 : '06.2월
  - 환경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등
○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 이행 : '06.7월
○ 추진 상황 점검 · 평가 및 대책 보완 : 분기별

3.3. 금융산업 진입 및 영업규제 개선방안

집필자 : 손관설 전문위원(Tel. 2100-8795, mymusic@opc.go.kr)

가. 정책환경 및 추진경위

■ 우리나라 금융산업은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과 규제완화 노력 등에 힘입어 건전성이 제고되고, 영업여건도 개선된 것으로 평가됨
○ 금융산업 전반적으로 건전성 개선, 글로벌화(개방화 · 대형화 · 선진제도 도입) 진전 등 성과 시현

○ 은행산업을 중심으로 상당한 규제개선이 이뤄졌고, 최근 증권산업(자본시장)에 대한 규제개선도 본격 추진 중

■ 그러나 세계적 겸업화 · 자유화 추세에 맞는 규제개혁은 여전히 미흡하고, 일부 부문에서는 규제개선 체감도가 상당히 낮음
○ 업종별 진입규제나 상품개발 · 판매방법 등에 대한 규제 상존

○ 특히 업종 특성에 무관하게 건전성 · 투명성 규제 · 감독이 크게 강화된 반면, 규제개혁의 지연 및 속도 차이 등으로 일부 업종은 규제가 상당히 과도한 것으로 인식

■ 전면적 대외 개방화로 외국자본의 자유로운 투자 및 진입이 이루어져 금융산업 및 금융시장에서 외국자본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
○ 외국펀드 및 외국계 금융회사는 자금력과 선진기법을 바탕으로 국내 증시 투자, 주요기업 인수 · 매각, 은행 · 보험업 진출 등 활발
  * 외국계의 금융시장 점유율('03) : 은행 29.4%, 증권 17.1%, 생보 16%, 자산운용 17.4%, 증시(38% ; '05년), 5% 이상 주식소유기업 450개

■ 지속적이고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한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금융산업내 업종간 균형 발전 등이 시급한 상황임

○ 진입 · 업무범위에 대한 칸막이식 제한, 상품 · 가격 · 판매 등 규제로 소비자의 다양한 금융수요 충족 미흡, 금융사 영업방식 낙후

*'04년 금융연관비율(금융자산/명목GNI) : 6.28(미국 8.96, 일본 11.45)

○ 산발적, 선택적 규제완화로 금융산업내 업종간 불균형 발전 양상

○ 규제가 적은 외국자본과의 대등한 경쟁이 어려워 고부가가치 수익기회(M&A, 자산매매 등)는 대부분 외국계 금융사가 차지

나. 규제 현황 및 문제점

(1) 규제 현황

■ 금융회사는 금융업무 영위 · 설립 · 인수 및 영업활동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각 개별업법(은행법, 보험업법 등)을 적용받음

○ 각 법령에는 각각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 제정하는 감독규정 및 감독업무시행세칙 등이 부속

*법령의 제 · 개정은 재정경제부가, 조사 · 감독 등 집행은 금융감독위원회(원)가 담당

○ 금융거래 등 시장을 규율하는 법령(증권거래법, 외국환거래법 등)이 별도 존재하고 금융지주회사법,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산법) 등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률도 다수 존재

■ 금융업에 진입(소유 · 인수 · 설립)하려면 개별업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해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나 허가 등을 얻어야 함

○ 은행 · 증권 · 보험 · 상호저축은행업은 인가, 신용카드업 · 자산운용업은 허가, 할부금융 · 리스 · 신기술금융업 등은 등록이 필요

○ 인 · 허가 기준으로서 대주주 자격요건, 자본금요건, 물적 · 인적 설비요건 등을 요구

○ 산업자본의 은행업 영위 및 은행지주회사 설립 · 전환은 원천 금지

* 비은행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시에도 사실상의 계열분리(금융사의 비금융계열사 보유지분 처분 등)가 필요해 산업자본의 진입을 제한

■ 각 업종별로 고유업무 외의 업무(겸영 및 부수), 자회사로 영위(소유)할 수 있는 업무가 법령에 열거되어 있음

○ 은행업은 예금수신, 보험업은 보험인수, 증권업은 유가증권 위탁매매가 고유업무로 간주(상호간 본체겸영은 제한)

– 투자자문업 · 투자일임업은 자산운용사와 증권회사만 겸영 가능

○ 여타 업무는 당해 업법 등에서 허용되는 경우에만 본체 또는 자회사(15% 이상 출자)를 통해 수행 가능

■ 상품개발 · 영업방식 등은 대체로 자유화되었으나 일부 업종의 경우 상품 개발시 사실상 승인을 요하거나, 특정 영업방식 및 영업범위 등이 제한되는 경우도 존재

○ 주로 보험상품과 관련해 가격(요율) · 약관을 감독기관에서 직접 제한하거나 복잡한 검증절차를 요구

○ 여신전문금융업과 관련해 영업비중, 마케팅 수단 등을 제한

○ 투자자문사의 방법 · 자문대상 등이 제한

■ 자산운용과 관련해 투자대상 · 한도 · 절차 등을 규제하고 있음

○ 외환거래법규상 은행 외 금융업종의 외화자산운용은 극히 제한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하 간투법)상 투자신탁 · 투자회사 및 신탁업법상 신탁회사의 운용대상 등이 비율형태로 제한

○ 금산법 · 공정거래법 등에 의해 SOC 투자 등 투자(출자)행위는 사전 승인 · 신고 등 필요

* 이른바 산업–금융 분리정책에서 파생된 규제임

(2) 문제점

■ 특정 금융업종의 진입(설립 · 취급업무) 자체가 제한되거나, 인적 · 물적 진입조건 설정근거가 불분명하여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문제 발생

○ 은행 및 금융지주회사는 진입을 제한하고 상당한 혜택(지급결제 독점, 고객정보 공유 · 이용, 광범위한 업무범위 등)을 부여한 반면,

○ 비은행업종에 대한 업무 제한, 은행 의존(판매 · 결제) 증가 등으로 국민경제 내 위험보장, 신용공급 등 기능이 위축될 우려

■ 상품 · 영업방식 등 제한으로 적절한 상품개발이나 마케팅이 곤란해 금융사의 위험관리 및 영업 효율화는 물론 소비자 선택기회 제한

○ 보험 가입자의 상이한 위험이나 시장여건 변화를 상품내용에 적시 반영하기 곤란해 보험사 및 일반 소비자의 부담 초래

*자동차보험에 대한 다양한 위험요인의 가격반영 곤란, 생명보험 상품에 대한 사실상의 승인 등

○ 카드사의 정상적 영업활동이 제약되고, 소비자 혜택 제한

*엄격한 모집방식 제한, 경품 제한, 제휴 제한, 이자율 산정방식 제한 등

■ 금융회사의 외화 자산운용, 투자와 관련한 제한으로 효과적 자산운용이 제약되고, 일부 금융사에게 불리한 경쟁여건 조성

○ 여신전문금융회사나 보험사 등은 외화대출 제한으로 외화관련 효과적 자산운용 기회 제한

○ 계열 확장이나 지배와 무관한 SOC 사업참여(지분투자)시에도 승인절차가 필요해 적시 투자가 곤란

○ 사모펀드 설립 등 제한, 간접투자 투자대상 제한 등으로 투자자의 다양한 투자니즈 충족 곤란

다. 개선방안

(1) 금융업 진입 및 영업범위 규제 완화

기본방향 ◆ **기존 취급업무 수행범위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
◆ **신규업무 진입제한 완화를 통한 금융업간 경쟁 촉진**

■ 증권사의 취급 기업어음 범위 확대

○ 증권사는 기업어음(CP)의 중개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취급할 수 있는 기업어음의 범위가 발행자 요건에 따라 제한됨

- 동일한 기업어음 업무를 취급하는 은행, 종금사는 신용평가등급 외에는 별도의 제약이 없어 증권사는 대등한 경쟁이 곤란

⇒ 신용평가기관의 평가시 발행자에 대한 검증이 가능하므로 신용등급조건 외 별도의 발행자 요건은 폐지

■ 보험사의 겸영 · 부수업무 및 자회사관련 규제 합리화

○ 투자회사 · 부동산투자회사의 자회사 운영시에는 금융감독위원회 승인이 면제되는 반면, 선박 투자회사의 자회사 운영시에는 동일한 성격의 자산운용임에도 불구, 승인 필요

⇒ 선박투자회사 자회사의 경우에도 금융감독위원회 승인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개선

○ 겸영 · 부수업무는 보험업과 구분하여 계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구분계리비용이 커 현실적으로 겸영 · 부수업무 수행 지장

- 자산 · 부채 및 수익 · 비용을 일일이 따로 구분 · 기록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며, 실제 구분 자체가 매우 어렵거나 극히 미미한 경우가 대부분

⇒ 재정경제부는 구분계리 의무기준을 상향 조정(예 : 매출 또는 영업수익의 5% 이상)하고 기준이하 업무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현황보고(취급 건수, 금액 등)로 대체하는 것으로 개선

■ 보험사의 연기금 수탁업무 허용

○ 국민연금법시행령(제52조)상 국민연금의 연기금 예탁(운용) 금융기관의 범주에 보험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현 대상 : 은행, 증권사, 투자자문사, 신탁회사, 자산운용회사 등

- 장기자금 안정운용에 적합한 보험사를 연기금 수탁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보험사는 업무 특성상 장기자금 운용 노하우가 풍부하고 안정적 운용을 추구하는 기관투자가임

⇒ ① 국민연금법 시행령상 국민연금 예탁 금융회사에 보험사를 포함

② 재정경제부는 보험사가 연기금위탁운용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투자일임업의 부분 허용 등)을 검토

■ 상호저축은행 등의 취급업무 확대

○ 상호저축은행 등의 취급업무가 여 · 수신 업무로 제한돼 수수료수입 등 대체 수익원이 별로 없음

- 타 금융기관에 비하여 업무가 단순해 경기변동에 취약하고, 고객에 대한 종합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이 어려움

⇒ ① 상호저축은행의 중소기업 저리정책자금의 취급 대행 허용

② 재정경제부는 상호저축은행의 국공채 창구판매 업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상호저축은행 · 새마을금고의 수익증권 판매대행시기 등 수익증권 판매 채널의 단계적 확대일정 검토

■ 투자자문회사 자문대상 범위 확대

○ 투자자문회사는 금융자산(유가증권, 파생상품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자문업무만 가능

- 일부 자산에 대해서만 자문이 가능해 시장에서 수요자가 원하는 포괄적 자문(보험, 부동산 등) 수요를 충족하는 데 한계

⇒ 투자자문회사의 자문대상 범위를 제한하지 않도록 개선(다만, 당해 관련법령에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

■ 부동산투자회사(REITs)의 설립 · 청산 규제 완화

○ 부동산투자회사는 회사형 상품으로서 상법상 주식회사의 설립과 동일한 절차로 설립 및 청산되고 있음

- 예비인가, 본인가의 이원화된 설립인가로 인가가 장기간 소요
- 청산의 경우에도 별도의 예외규정이 없어 상법상 주식회사처럼 장기간이 소요돼 투자자 이익보호에 문제

⇒ 단일 인가로 변경하여 신속한 설립을 지원하고, 청산절차도 간투법상 부동산펀드와 동일화

○ 부동산투자회사 설립시 최저자본금을 250억원 이상으로 규정

- 소규모 부동산투자회사 설립이 곤란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자본금 요건은 100억원

⇒ 최저자본금 요건 완화(예 : 100억원)

■ 은행의 보험상품 판매(방카슈랑스) 규제 완화

○ 은행 등 금융회사의 보험판매 방법 · 형태 · 비율 등에 대해 제한

- 은행 등 금융회사의 보험상품 판매 확대가 곤란

❍ 은행 등 금융회사 창구내 보험상품 판매인의 대출업무 등 취급 금지
❍ 방카슈랑스를 취급하는 금융회사 대리점은 점포별로 2인 이하로만 모집종사자를 둘 수 있도록 제한
❍ 은행 등 금융회사의 보험상품 판매인 이외의 소속 임직원에 의한 상담 또는 소개금지
❍ 방카슈랑스를 취급하는 금융회사는 특정보험사 상품을 25%이상 취급할 수 없음
❍ 금융회사의 보험모집 방법을 점포내(in-bound)나 인터넷 홈페이지로만 제한

⇒ 재정경제부는 은행의 보험상품 판매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검토

(2) 금융회사 상품 영업방식 자산운용 규제 완화

기본방향 ◆ **상품 · 가격 · 영업방식 규제 개선을 통한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보장**
◆ **자산운용에 대한 개별 규제를 최소화하고, 종합적인 건전성 규제와 정보제공 의무로 대체**

■ 보험사 상품개발 절차 간소화
❍ 보험사는 신상품 등 사전 신고상품의 감독당국 신고시 선임계리사 검증서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보험개발원) 확인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함께 제출
*선임계리사 : 보험회사의 상품을 검증하는 업무를 수행
- 보험요율산출기관 검증과정만 15일이 소요돼 보험사는 신상품 개발시 불편을 겪고, 상품개발 자유화의 취지에 위배

⇒ 재정경제부는 신상품 등 사전신고상품의 경우 감독당국 신고시 선임계리사 검증 또는 보험요율산출기관 검증(확인) 중 하나만 거치는 것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 자동차보험관련 예정이익률 설정규제 폐지
❍ 자동차보험에 대해 손보사의 예정이익(마진)은 2% 이내만 인정
- 자동차보험 부문에서 수년간 적자가 누적된 데다 '05.2 책임보험대상 확대로 향후 손보사 손익구조의 급격한 악화 예상

*자동차보험 수지(억원) : -431('02) → -5,785('03) → -3,467('04)

⇒ 자동차보험에 대한 예정이익률(마진) 설정제한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 위험률변경제도(Non-Guaranteed) 확대 허용

○ 의료 및 제약관련 기술발달로 보험사는 보장성 보험상품의 과잉지급 위험(실제 발병률-예상발병률)이 상당히 증가

- 위험율예측 리스크로 인해 다양한 질병보장 상품의 개발에 한계가 있어 생보사의 건전성을 위협하고, 소비자도 이러한 리스크가 반영된 높은 보험료를 납부할 수밖에 없게 됨

⇒ 금융감독위원회는 질병사망보험 등에 대해 위험률변경이 가능한 상품을 신고할 경우 부당하게 억제 · 거부하지 않도록 하고, 필요시 상품개발의 편의를 위해 지침 마련

*상품 판매시 계약자에 대한 충분한 사전 고지 및 별도의 명시적 동의, 해지수수료 면제 등 소비자에 대한 보호장치도 동시에 강구

■ 보험 전화모집시 녹취의 자필서명 인정범위 확대

○ 전화를 이용한 보험모집시 계약자는 자필서명이 면제되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피보험자는 자필서명 필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은 보험계약자에 의한 역선택 위험 방지 취지

- 자필서명 확보를 위한 부담(우편비용 및 인력 등)이 지대하며, 고객도 녹취로 서명을 갈음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자필서명 요청에 불편해 하는 경우가 대부분

⇒ 타인의 사망을 담보하지 않는 보험 등 계약자와 피보험자간 이행상충의 우려가 거의 없는 보험에 한해, 피보험자 녹취도 자필서명으로 인정

■ 보험회사의 타 보험사 상품판매 제한 등 개선

○ 보험회사 및 보험설계사의 타 보험사 상품판매가 금지

- 생 · 손보 상품 교차판매 등 타회사 상품 판매 곤란

⇒ 재정경제부는 보험사의 타 보험사 상품판매와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검토

■ 투자자문회사 자문방법 규제 개선

○ 투자자문회사(금융감독위원회 등록으로 설립)는 고객과 대면하여 자문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의 영업방식만 허용

- 유사 투자자문업자(신고사항)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간행물, 전자우편 등을 통해 자유롭게 영업하는 데 반해,
- 보다 엄격한 감독을 받는 투자자문회사에 대해 동일한 형태의 영업을 제약하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

⇒ 투자자문회사의 유사 투자자문 행위를 허용토록 개선

■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부동산개발 제한 및 펀드운영 규제 완화

○ 간투법상 간접투자기구 및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산의 30%를 초과하여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는 행위 금지

- 자산의 30% 제한으로 인해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를 원하는 소비자의 니즈 충족이 곤란

⇒ ① 부동산투자회사의 부동산 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 확대
② 간접투자기구 중 사모펀드의 부동산 개발 투자한도 확대

○ 일반 부동산투자회사(REITs)의 경우 30%이상 공모를 의무화

- 연기금 등 사모펀드를 선호하는 기관의 투자처를 제한

*기업구조조정 목적의 부동산투자회사인 경우에만 사모펀드 가능

⇒ 연기금에 대해서는 사모펀드 형태로 부동산투자회사 설립 허용

■ 금융사 외화대출 한도규제 완화

○ 외국환거래규정상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대해 취급업무별로 외화대출 한도를 규정하고, 그 한도도 작음

- 신디케이트론 등 새로운 기업 외화대출 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나 한도규제로 인해 탄력적 대응이 곤란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외화대출 한도를 자기자본의 2배 범위내로 확대

○ 보험사는 외국환거래규정상 외화보험료수입 범위내에서만 외화대출이 가능하고, 보험감독규정상 외화거래 범위에도 외화대출이 포함되지 않음

- 외화대출 제한으로 국내외 중장기 프로젝트파이낸싱 등 관련 시장에 참여하기 곤란
- 보험사는 외화표시 채권, 주식 등 외화자산을 대규모로 운용하고 적절한 위험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정부의 외환전산망, 조기경보시스템 등 강력한 모니터링 체계에도 이미 편입되어 유사시 안전장치 즉각 발동 가능

⇒ 우선 보험업감독규정상 보험사 업무에 외화대출을 추가하고, 재정경제부는 외국환거래규정상 보험사의 외화대출 확대방안을 마련

*외화대출 한도제한 가능 : 총자산의 일정비율(예 : 5%)

■ SOC 등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제한 규제 완화

○ 보험사 등이 SOC 민자사업 등과 관련해 관련사업추진체(SPC)의 지분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금산법상 승인절차 및 공정거래법상 신고절차 필요

- 전통적 의미의 주식이나 채권 형태가 아닌 새로운 형태(소유 · 지배권이 없고 당해 사업이나 부동산으로부터의 수익권만을 갖는 형태)의 '지분증권'에 대한 투자가 곤란

*사실상 회사가 아닌 자산에 대한 투자로서 관련시장 경쟁제한이나 계열지배 · 확장과 무관하므로 예외적 접근 필요

- 다수의 금융회사 등이 참여경쟁에 나서는 시장 상황상 금산법상 승인절차(통상 1개월 이상 소요)를 거칠 경우 투자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밖에 없음

*통상 2~3일 이내에 투자자 모집이 완료되고, 정보가 노출

⇒ ① 민자유치 SOC 사업에 대한 지분형태 투자시 금산법상 승인절차를 사후승인으로, 공정거래법상 사후신고로 개선

② 대부분 자산이 실물자산에 투자되는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기준을 마련하여, 기준에 합당한 건에 대해서는 사후승인(금산법) 및 사후신고 (공정거래법)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자산규모, 실물자산 투자한도, 형태 등 기준 및 필요한 사후조치 등 포함

■ 은행 원화유동성비율 규제 완화

○ 은행은 원화유동성비율 산정기준에 따라 동 비율을 100% 이상 유지토록 되어 있음

*원화유동성비율 : 고객의 지급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유동부채(잔존만기 3개월 이내)에 상응하는 유동자산(잔존만기 3개월)을 보유토록 하는 취지

- 산정기준 중 최저예금지급준비금의 비유동자산 분류 등 지나치게 엄격하거나 불합리한 산정기준의 적용으로 은행의 부담 발생

⇒ 원화유동성비율 산정기준을 재검토해 유동자산 · 부채 분류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

■ 중소기업 의무대출제도 개선

○ 은행, 보험사, 종금사 등에 대해 신규대출금 중 일정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자에게 대출하도록 규정

*한도 : 시중은행 45%, 지방은행 60%, 보험사 35%, 종금사 25% 등

*은행의 경우 미준수시 한국은행의 재할인 및 대출시 차별적 혜택 및 경영실태평가시 감점

- 금융회사의 노력과 무관하게 계절적·일시적 요인으로 의무대출비율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 발생

⇒ 금융감독위원회는 중소기업 지원취지에 크게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금융회사의 부담을 보다 완화할 수 있는 방안(예 ; 잔고기준)을 마련

■ 자산운용사 고유계정 자본금 운용규제 완화

○ 자산운용사가 고유재산으로 외화자산 취득, 투자증권의 소유 (국공채, 통안채 투자 등은 가능)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제

- 자산운용 전문회사인 자산운용회사의 자기자산 운용을 못하도록 함으로써 고유재산의 효과적 운용이 제약

⇒ 자산운용회사가 타 자산운용사 설정 MMF 등에 고유재산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용대상 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

(3) 금융회사의 영업여건(제도 인프라) 개선

기본방향 ◆ **미비하거나 미흡한 금융관련 규정의 정비**
◆ **금융업무 수행을 제한하는 기타 규정 개선**

■ 주소 확인을 위한 행정전산망 활용 허용

○ 금융회사는 고객과의 계약이행 등을 위해 중요사안을 통지해야 할 의무나 필요가 크지만 정확한 주소 유지가 곤란

- 중요사안이 적시에 통지되지 못해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가 초래되고, 발송자도 통지와 관련된 직·간접적 비용 부담이 막대함

*우편물 전달(등기반송, 재전송) 비용, 분쟁 처리 및 법률비용 등 발생

⇒ 고객 이익에 필수적인 통지사안에 대해 금융회사가 주소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당해 금융업법에 관련근거를 마련(사안, 요건 등 구체 명시)하고, 행정자치부는 이에 협조(요청시 제공, 시스템 구축 추진검토 등)

■ 방산업체의 화재보험 등 가입관련 방식 개선

○ 방산업체는 한국화재보험협회를 통해서만 화재보험 등 7개 보험에 가입(당해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시설뿐만 아니라 주변 일반시설 전체를 대상)

*한국화재보험협회와 손해보험사간의 손해보험공동인수특별협정에 의해 개별 보험사와의 계약을 제한

*화보협회 경유 보험 : 화재보험, 조립보험, 기관기계보험, 건설공사보험, 동산종합보험, 운송보험, 재산종합보험

- 손보사와의 직접 계약을 금지하고, 화보협회를 경유하게 함으로써 관련기업의 보험료 부담 증가

*업체가 개별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보다 보험요율이 월등히 높으며, 요율산정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도 않음

⇒ 재정경제부는 방위산업업체가 한국화재보험협회를 거치지 않고 손해보험사와 직접 보험계약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되, 방재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화보협회의 경비조달 문제 등을 고려해 개선방안(방법, 시기 등)을 검토

■ 보험대리점의 영업보증금 조정 허용

○ 보험사가 보험판매 대리점으로부터 받는 영업보증금 한도가 대리점의 영업규모 등에 관계없이 법규로 정해져 있음

- 보험대리점의 보증금을 영업규모나 위험에 맞게 조정할 수 없어 금전 사고시 보험사 채권보전 등에 문제를 노정

⇒ 재정경제부는 보험사가 자유롭게 보증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관련규제를 폐지

■ 보험대리점 등록업무 개선

○ 현재 보험대리점 등록 이후 신고사항에 대한 변경 및 수리 업무는 생·손보협회가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나, 보험대리점의 최초 등록업무는 금융감독원이 수행

- 대리점 개설은 등록요건만 갖추면 되는데도 신고사항 변경·수리 업무와 이원화하여 운영하는 것은 비효율적

*보험대리점 및 중개인의 등록·취소 업무의 보험협회 위탁은 제86차 규제개혁위원회('01.11.9)의 확정과제로 심의·의결된 사안임

⇒ 보험대리점 등록관련 업무를 보험협회에 위탁하도록 개선(필요시 대리점 등록관련 진입장벽이 생기지 않도록 기준·요건 개선)

■ 신협·새마을금고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허용

○ 신협·새마을금고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상 자산보유자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부실채권 및 우량자산을 통한 유동화가 불가능

- 부실채권의 일괄정리 및 유동성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수단 부족

⇒ 일정 기준(여신규모, 신용상태 등) 이상인 신협 · 새마을금고의 자산유동화가 가능토록 개선

■ 소재불명 리스차량 등 무단운행차량 관리방법 개선

○ 자동차관련 리스료가 장기 연체되는 경우 대개 리스이용자는 소재불명이며, 리스차량도 무단 양도되어 각종 문제를 야기

* 일명 '대포차'의 형태로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음

- 리스회사 등 차량 소유자가 당해 차량을 등록말소하려 해도 현행 자동차 등록말소관련 규정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무단운행이 조장되고, 리스회사 등의 부담이 가중

* 실소유자는 도로교통법규 위반범칙금을 비롯한 각종 납세의무를 부담

* 일본은 리스이용자가 3년 이상 연체하는 경우 등록말소 가능

⇒ 건설교통부는 무단 점유되고 있는 차량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 해결방안을 마련

■ 카드사의 의료기관과의 제휴마케팅 허용(명확화)

○ 현재 카드사가 고객의 의료기관 이용시 혜택을 부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의료법 저촉여부가 모호

* 대부분의 카드사들이 현재 '본인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비급여대상임)'시 우량고객에게 카드결제대금 할인혜택 부여, 의료비 카드결제시 무이자할부 또는 포인트 적립 등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음

- 의료법 관련규정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해석할 경우 소비자 혜택 및 기업활동 저해

⇒ 보건복지부 국민편익이 크고, 의료법 취지에 크게 벗어나지 않은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관련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 혜택 내용 · 수준, 제공 방법, 안내방법 등 포함

■ 자동차보험 가불금 지급규정 개선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피해자가 가불금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사업자는 이에 응하도록 의무화(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 책임보험 사업자는 추후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명되면 이를 회수하지만 회수가 쉽지 않고, 미반환 가불금 발생시 70%만 보전받음으로써 보험사의 손실로 귀착될 우려

* 회수비용(변호사 · 송달 · 재산조사 등)은 전적으로 보험사 부담

⇒ 보험회사가 가불금에 대해 법적 회수 노력을 다한 경우, 반환받지 못한 가불금을 전액 환급(70% → 100%)해 주는 방안을 마련

■ 자동차보험 의료수가 가산율 합리화

○ 자동차보험의 의료수가는 건강보험의 의료수가에 비해 높은 가산율을 적용받고 있음

*자동차보험의 의료수가 적용가산율(고시가 외에 병원시설 등 차이 반영)이 건강보험보다 평균 7%P, 최고 15%P(종합병원의 경우)가 높음

- 환자 및 진료기관에 의한 허위·과잉 입원, 과잉진료 등 부당 진료행위 및 보험료 청구가 근절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
- 진료 난이도에 따라 진료수가를 차등화하는 상대가치점수제 도입('01년)으로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간 가산율 차등화 사유 소멸

⇒ 자동차보험에 대한 의료수가 가산율을 건강보험 의료수가 가산율과 단일화하는 방안을 검토

■ 주택자금 지원시 우선 저당권 설정권 차별 해소

○ 서민 등에 대한 주택자금(주택건설·주택구입 자금)의 융자시 주택 입주예정자의 사전 동의없는 저당권 설정은 은행에 한정

- 동일한 주택금융 업무를 수행하는 여타 금융회사(저축은행, 보험사 등)에게는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불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주택은행 민영화 및 전 금융권의 주택금융 취급 등 변화된 여건 미반영

⇒ 주택자금 융자시 사전 동의없는 저당권 설정가능 금융기관의 범위를 상호저축은행과 보험회사 등으로 확대

(4) 불합리한 금융규제 체계에 대한 전반적 개선

기본방향 ◆ 각종 불합리한 금융관련 규정의 정비
◆ 규제·감독에 대한 접근방식의 근본적 개선

■ 진입규제 개선관련

○ 금융업종 진입조건으로 관련법령 및 감독규정 등에 인적·물적 요건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인적·물적 기준의 설정 근거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 등 현재의 각종 진입관련 요건이 금융업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우려

⇒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는 각종 금융업 진입과 관련된 요건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진입장벽 등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 업무영역 규제 개선관련

○ 금융업의 경우 각 업종별로 수행할 수 있는 본질업무,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 자회사 범위가 관련법령에 열거되거나 제한되어 있음

- 열거주의에 따라 업무범위를 한정함으로써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하는 데 한계

⇒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는 각 금융업의 본질 · 겸영 · 부수 업무 규정방식을 개선하여 급변 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예시주의, 네거티브 방식 도입 등)을 검토

■ 자산운용 규제 개선관련

○ 금융회사의 자산운용과 관련해 운용대상, 대상별 한도(자산 또는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 보수 등을 규제하고 있음

- 금융회사의 자산운용 및 투자자의 선택기회가 제한되는 문제점 발생

⇒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는 전반적인 재무건전성 규제나 소비자에 대한 공시 강화 등으로 규제목적 달성이 가능한 자산운용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

■ 판매규제 개선관련

○ 금융상품의 판매채널과 관련해 지점 · 대리점 · 판매인에 대한 자격 · 요건, 각 상품별 판매가 가능한 채널 등을 관련법령에 규정

- 소비자의 금융상품 · 서비스 접근편의가 제약되고, 해당 업종에 신규 진입하는 경우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우려

⇒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는 각 업종별로 판매채널 규제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판매채널 다양화에 따른 본사 책임 강화, 안내 · 권유 · 주선 · 계약체결 등 프로세스별 허용범위 등)을 검토

■ 규제체계 개선관련

○ 타 법령에서 인정되거나 규제하는 사안을 금융법령의 명시적 근거없이 감독규정을 통해 제한(또는 허용)하는 사례가 많음

- 주로 공정경쟁, 소비자보호 등과 관련하여 경쟁을 제한하거나 금융회사 또는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발생

⇒ 금융감독위원회는 타 법령에서 인정되거나 규제하는 사안을 금융법령의 명시적 근거없이 감독규정을 통해 제한하는 것에 대해 개선방안을 검토

라. 향후 추진일정

○ 부처별 세부추진계획 수립 · 제출 : '06.3월
  -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위원회 등
○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 이행 : '06.6월
○ 추진 상황 점검 · 평가 및 대책 보완 : 매월

3.4 옥외광고 규제합리화 방안

집필자 : 김상태 사무관(02-2100-8825, 678kst@hanmail.net)

가. 정책환경 및 추진경위

○ 한국의 광고 규모는 세계 10대 시장에 들어갈 정도로 성장
  - '04년 광고비 총액은 약 6조 7천억원 수준이며, 이 중 옥외광고, 세일즈 프로모션 등이 약 9천억원 수준으로 추정

  *옥외광고 등 광고비총액 : ('01) 7,755억원 → ('02) 8,720 → ('03) 9,264 → ('04) 9,237

○ 옥외광고는 기업의 광고활동에서 최근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광고인 동시에 도시문화를 창조하는 문화창조자로 기능
  - 최근 옥외광고는 인터넷 광고와 더불어 TV, 신문에 이어 가장 빈번하게 이용되는 주요 광고매체로 부각

○ 간판 등 전통적 옥외광고 수단에 비해 교통수단, 신소재와 대형빌딩 등을 이용한 광고 등 새로운 옥외광고가 확대되는 추세

○ 국내 옥외광고물은 많고, 크며 자극적인 것으로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으로 인식되어 도시미관으로서의 옥외광고에 대한 관심이 증대
  - 자영업 위주의 산업구조(자영업자 비율 : 36% 이상)*, 높은 인구밀도,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구분이 불명확한 도시구조 등이 간판난립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

  *미국(5.7), 독일(10.8), 영국(12.2), 일본(15.6)

나. 규제현황 및 문제점

■ 관련 법률 및 규제현황

○ 옥외광고 관련 법률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재정경제부 등 10개 부처 26개 법률이 있음

- 주요 법률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과 「제22회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이며, 「방송법」 「도로법」·「청소년보호법」 등이 있음

○ 옥외광고 관련 기본법률인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은 옥외광고물의 종류를 16종*으로 나열하고 종류별로 표시기준을 엄격하게 제한

*가로형간판, 세로형간판, 공연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 간판, 현수막, 애드벌룬, 벽보, 전단,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선전탑, 아취광고물, 창문이용 광고물

○ 광고물의 종류별로 설치 가능한 광고물의 개수, 크기, 설치위치, 소재 및 색깔 등에 대한 세부내용을 규제

■ 광고물 설치 제한등 갈등요인 상존

○ 국제기준(Global Standard)에 맞지 않는 규제체계

- 옥외광고물 종류 및 표시 등의 규제를 법령에서 획일적으로 사전규정하는 「Positive System」으로 선진국에 비해 낙후
- 전반적으로 금지 위주의 법체계 하에 옥외광고를 통한 적극적인 도시경관의 형성을 위한 지원 및 유도에 관한 내용 부재

○ 도시미관 및 경관문화에 대한 고려 미흡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규제로 도시구조 및 가로환경과의 조화 유도에 한계
- 광고물 관리가 건물 전체보다 개별 업소별로 규정되어 업소간의 과당 광고부착으로 광고물 난립의 원인 제공

○ 규제 내용이 지나치게 복잡하여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렵고, 불법광고물 난립의 한 원인으로도 작용

※ 2001년 서울시 옥외광고물 73만개중 26만개(약 35%)가 불법 광고물로 집계(서울시 용역자료, 2002)

○ 종전의 판류형 광고 위주로 규정되어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 잔존
- 형태, 크기 및 색깔 등에 대한 경직적인 규제로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하고, 신소재 등 발달된 IT기술을 활용한 창의적 표현을 제약

※ 외국에서는 Mash Film 등을 사용하여 창문을 광고매체로 적극 활용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창문 광고 면적 제한으로 인해 활용 불가능

※ 국내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옥외광고 설치시 적용할 수 없는 LED 등 IT관련 기술을 이용한 옥외광고물을 외국에 설치한 사례 있음(예 : 미국 라스베가스)

○ 옥외광고 관련 지자체 기능조정 및 이행기능의 미흡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대부분의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나,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도 다수
- 설치허가(신고), 불법광고물 관리 등 업무수요는 많은 반면 지자체 담당공무원의 인력 및 전문성이 부족

※ 서울시 소재 구청의 경우 해당지역에 광고물이 5~6만개 설치

다. 개선 방안

(1) 「네가티브 시스템」의 도입, 규제방식 전환

기본방향 ◆ **현행 특정대상 광고물에 한하여 허용하는 규제체계를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광고가 가능한 방식으로 규제 패러다임의 변경**

■ 실정에 맞는 광고물 설치

○ 시민의 안전 및 공공성과 도시미관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 이외에는 모든 옥외광고물의 설치가 원천적으로 가능한 「Negative System」으로의 전환
- 행정기관은 광고물 설치면적,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Guideline만을 마련
- 광고주 및 옥외광고사업자는 획일적인 규제를 벗어나 창의적인 옥외광고물을 디자인

○ 다만, 일정규모 이상의 옥외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표시허가시 지역의 특성, 창의성, 도시미관 등을 중점적으로 심의함으로써 일시에 규제체계가 전환됨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 중점 추진지역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
-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한 기업도시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혁신도시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06.7월 시행)」에 의한 뉴타운
- 기타 신도시 등 새로이 건설하는 도시(지역)

※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원하는 경우 기존 도시(지역)도 가능하도록 근거는 마련

■ 표시방법의 구체화

○ 현행 옥외광고물 표시방법(시행령 제4장) 적용을 배제하되,

※ 광고물별 개수 및 크기, 위치(층수포함), 사용소재, 색상규제 등

- 건물별 면적총량제를 도입하여 전체 광고물량 증가는 억제
  · 「업소별」·「대상 옥외광고물별」규제방식을 「건물별」로 광고물에 대한 제한없이 전체 광고면적을 규제

※ 면적총량제 적용 대상광고물, 면적기준 등은 용도지역, 광고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책정

○ 다만, 시민의 안전·미풍양속이나 광고물관리 및 공공목적을 위한 공익적·절차적인 규제 등은 현행대로 존치

· 허가 및 신고, 표시금지지역·장소·물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운영(절차관련 규정)
· 옥상간판 및 지주이용광고의 최대높이, 돌출간판의 보도에서의 높이 및 돌출폭, 안전도 검사(안전관련 규정)
· 공공목적 광고물 등의 표시기준, 행정대집행의 특례, 옥외광고업자의 등록 및 교육 등(공익관련 규정)

※ 일선 지자체 옥외광고물 담당자의 경우에도 새로이 건설되는 지역에 대해 면적총량제를 통한 「Negative System」의 도입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새로이 건설되는 도시(지역)에 대하여 Negative System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선

(2) 옥외광고 관련 지원 및 인센티브 부여

기본방향 ◆ **옥외광고물 관리에 적극적인 주민참여 유도, 지자체의 옥외광고물 관리 강화 및 이행능력 도모**

■ 옥외광고 적극적 지원체제 확립

○ 옥외광고물의 설치 및 관리시 도시미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주민참여가 미흡

※ 뉴욕은 주민협의체를 통해 간판문화 · 가로시설물 등 환경개선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일본도 마을만들기('마찌쯔쿠리') 운동 실시(나고야시의 경우 도시재개발 시민 스스로가 아름다운 도시경관 형성, 주거환경 정비계획 운동)

※ 인천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건물주 · 업소주 참여에 의한 자율적인 표시제한 · 완화제도를 도입

⇒ ①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위한 제도 도입 및 관련규정 신설

※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옥외광고물 관리정책이 가능하도록 유도

② 주민참여에 의한 불법광고물 자율감시체제(예 : 불법광고물 관리팀) 등을 도입하고 우수정비 지자체에 대해 incentive* 부여

*담당조직 및 인력확충 등을 통해 옥외광고물 관리와 도시미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

○ 지자체에서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 등의 지원이 없어 사업 추진에 한계

⇒ ① 지자체에서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추진시 국가가 직접 재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 신설

※ 정비사업 추진 시 지역주민, 광고주, 옥외광고 사업자 등의 참여를 명시하여 일방적인 사업추진에 따른 불만요인 완화

② 지자체별로 허가 · 신고수수료 및 과태료 수입을 옥외광고 정비사업의 재원(특별회계)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

※ 재원은 옥외광고물 정비, 옥외광고사업자 교육, 정보화 등에 활용

○ 기초자치단체의 옥외광고물 담당 인력의 부족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옥외광고물의 관리가 곤란

- 법령이 세부적이고 복잡한 반면 옥외광고물 담당자에 대한 교육이 부재

⇒ 기초자치단체 옥외광고물 담당 인력확충 및 교육을 통한 전문성 확보를 위한 기본계획 마련

(3) 옥외광고물과 도시환경과의 조화

기본방향 ◆ **안전을 전제한 옥외광고물의 표시 및 설치기준 합리화**
◆ **옥외광고의 창의성 및 다양성의 보장**

■ 교통수단이용 광고의 자율성 확대

○ 교통수단이용 광고에 대한 면적을 제한(비행선 제외)함으로써 창의적인 표현을 제약

※ 우리나라는 차량의 좌우측면(창문제외) 면적의 1/2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싱가포르·미국·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면적에 대한 특별한 규제가 없음

⇒ 교통수단이용 광고의 좌우측면 면적제한을 폐지
(다만 교통안전 등을 위하여 차량의 전·후면 및 창문은 현행대로 광고면적에서 제외)

※ 주거지역으로의 통행이 많은 「여객운송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마을버스의 적용대상 제외 검토

■ 공사현장 가림막 광고의 허용

○ 대형 건축물의 공사현장 가림막은 도시미관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공사현장의 노출을 막기 위한 기능만 수행

- 현행 규정상 허용대상 광고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가림막 광고는 원천적으로 불가능

⇒ 공사현장 가림막을 이용한 광고물을 허용대상 광고인 가로형 간판으로 규정하고 표시방법에 대해서는 일정요건*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다만, 주거지역은 제외)

*예 : 시공회사 및 건물주에 한하여 1개의 광고물 허용,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 문자표시비율 제한 등

■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의 확대

○ 일정높이 이상의 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 등의 경우 안전도검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시민 및 차량의 안전을 침해

⇒ 안전도검사 대상광고물을 추가

〈예시〉 ①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공공시설물 · 교통시설이용 광고물

②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미터 이상인 현수막지정게시시설

③ 일정규모 이상(가로 10미터이상)의 가로형간판 등

※ 일본 동경도의 경우 허가대상 광고물에 대해서는 모두 안전도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기타 표시규제 합리화

○ 벽면이용광고물*의 영업내용 표시를 광고물 면적의 1/4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 영업내용 여부의 판단기준(예 : 상호, 음식점 메뉴, 로고 등)이 모호하고 현실적으로 규제가 실효성 있게 이행되기 곤란

*벽면이용광고물 : 가로형간판, 세로형간판, 돌출형간판

⇒ 벽면이용광고물의 영업내용 표시면적 제한규정 삭제

○ 건물부지 밖에 지주이용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6미터 이상의 도로변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업소만 가능하여

– 도로변의 크기 등 당해 지역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함

⇒ 6미터 미만의 도로변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업소도 지주이용광고물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

· 무분별한 지주이용간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허용

○ 애드벌룬 및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에 대하여 적색류 등의 표시면적을 제한함으로써 기업브랜드의 광고효과를 제약

– 일부 지자체의 경우 조례에서 옥외광고물의 바탕색으로서 적색 또는 흑색의 사용을 1/2 이내로 제한

⇒ ① 애드벌룬 및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에 대한 적색류 등 면적제한 폐지

※ 다만 전기이용 광고물의 경우 선정성 등을 고려하여 상업지역, 관광단지 등 일부지역에 한하여 면적제한 폐지 검토

② 옥외광고물 바탕색 중 적색 또는 흑색 사용비율 규제를 가급적 자제하여 시행하도록 지자체에 지침시달

(4) 시대변화 부응한 전향적 제도개선

기본방향 ◆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트렌드의 반영 및 옥외광고 영업관련 규제개선**

■ 새로운 형태 및 소재에 의한 광고표시 허용

○ 전광판 광고의 경우 건물의 측면 또는 후면의 4층 이상 벽면과 옥상에만 설치가 가능하며 건물의 정면 설치가 불가

※ 기술개발에 따라 전광판의 두께가 얇아져 안전의 문제는 최소화 되었으며, 옥상보다 건물 정면에 설치하는 것이 오히려 도시미관 및 시각적 개선 효과 기대

⇒ 중심 및 일반 상업지역에 한해 설치하는 전광판 광고의 경우 건물의 정면에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되, 건물별 설치개수는 현행대로 1개에 한정

○ 벽면 전면을 이용한 광고는 벽면이용광고 및 창문이용광고의 표시제한*에 의하여 설치가 불가능

*벽면을 이용할 경우 4층 이상 정면 표시가 불가능하고 창문을 막을 수 없으며, 창문을 이용할 경우에도 창문 면적의 1/2 범위내에서만 가능

⇒ 중심 및 일반상업지역에 한해 벽면 표시면적 제한을 초과하는 옥외광고를 허가대상에 포함

※ 창문을 막는 경우 외부투시가 가능한 Mash Film, LED(Light Emitting Diode)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 무분별한 벽면 및 창문이용광고 설치를 방지하기 위하여 15층 이상의 건물에 자기광고(건물주 포함)에 한하여 1개의 광고만 설치가능하도록 제한(이 경우 옥상간판의 설치를 금지하고, 주상복합건물은 설치대상에서 제외)

■ 옥외광고 영업관련 규제 합리화

○ 전광류 광고시 시간당 표출비율의 30%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공공광고 표출을 강제하여 영업의 자유 침해

*현재 지자체별로 조례에 의해 시간당 표출비율을 10~25%로 규정(서울시의 경우 20%)

※ 방송법상 방송사업자의 경우 채널별로 매월 전체방송시간의 100분의 1 이내에서 방송위원회원회가 고시하는 비율이상 공익광고를 편성하여야 함

※ 미국, 일본 등의 경우 공공광고에 대한 의무편성 비율이 없음
⇒ 전광류 광고의 공공광고 표출비율 완화(예 : 30 → 25%)

■ 기타 불합리한 규제 합리화
○ 도로점용에 해당하는 옥외광고물*의 경우 광고물의 표시 허가 · 신고 수수료 외에 매년 도로점용료를 부과
*광고탑 · 광고판 · 간판(돌출간판 포함) · 사설 안내표지 · 현수막 · 아취 · 기타 이와 유사한 것
–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바닥면적이 아닌 전체 광고면적으로 되어 있고 금액이 과다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
⇒ 간판(돌출간판 포함)에 대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금액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
※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도로점용료 제도개선을 위한 용역 진행 중(3월말 완료)

(5) 중앙 · 지자체간 기능 합리화

기본방향 ◆ 동일한 생활권내 조화된 도시경관의 형성, 지자체의 역할 증대

■ 옥외광고 심의등 합리적 조정
○ 옥외광고는 건축물과 일체로 도시미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광고심의와 건축심의가 연계되지 못함
⇒ ① 신규 건축물에 대한 건축심의시 광고물 관리심의 및 건축심의 절차와 연계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연계시 인센티브* 부여
*설치규제의 일부완화, 사후 광고허가시 심의절차 간소화, 신고대상으로 변경 등
② 건축설계시부터 옥외광고물의 위치 · 규격 · 형태 등을 module화하여 건축물과의 조화 유도
③ 임대업소가 많고 임대수요의 예측이 불가능한 건축물의 경우 건축심의시 간판의 부착위치 및 크기를 함께 심의

○ 동일한 생활권이라도 복수의 기초자치단체가 관련되어 옥외광고물 제도 및 설치기준이 서로 다를 경우 조화된 도시경관 형성이 어려움
※ 청계천로의 경우 각 도로변을 종로구청 및 중구청이 관리하여 서로 다른 옥외광고물

관리제도를 운영하더라도 서울시 및 중앙정부가 이를 조정할 수가 없음
※ 기초자치단체에서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어 오히려 도시 미관을 저해할 가능성
⇒ 중앙정부 또는 광역자치단체에게 옥외광고물 관리 및 조정권한 부여

○ 버스광고의 경우 동일한 내용의 광고물임에도 불구하고 광고대상버스의 차량등록지가 있는 시군구에서 모두 허가 필요
⇒ 허가신청 접수시 관할 지자체 담당자들이 협의회를 구성하여 일괄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

라. 향후 추진일정

○ 부처별 세부추진계획 수립 · 제출 : '06.3월
○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 이행 : 수시
○ 추진 상황 점검 · 평가 및 대책 보완 : 분기별
※ '옥외광고 규제합리화' 관련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2006.2.2)

3.5 정보통신사업의 진입 및 영업 규제 개선방안

집필자 : 강진웅 전문위원(Tel. 2100-8809, zeros100@opc.go.kr)

가. 정책환경 및 추진경위

○ 정보통신사업은 IT산업 가치사슬의 최상단에 위치하여 기기 · S/W · 콘텐츠 등 관련 산업에 전후방 연관효과 지대
- 또한 공공 · 기업 · 가정 · 개인 등 사회 구성원의 정보화 구현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복리증진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

○ 정보통신사업은 그동안 연평균 10%이상 성장해왔으나 근래 들어 시장포화 등의 영향으로 성장둔화 현상
- W-CDMA, WiBro 등 신규서비스가 본격화되면 다소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나,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필요성이 절실한 실정

< 정보통신서비스시장 실적 및 전망 >

(단위 : 조원)

구분	'99	'00	'01	'02	'03	'04	'05	'06	'07
시장규모	21.0	26.7	30.5	33.8	34.7	35.9	36.6	37.7	39.1
성장률	25.0%	27.1%	14.2%	10.8%	2.7%	3.4%	1.9%	3.0%	3.7%

■ 사업내용 측면에서는 디지털화와 네트워크 광대역화에 따라 기술 및 서비스의 융합화 현상 가속

○ 정보통신서비스와 타 산업간 융합(인터넷 금융, 텔레매틱스 등)과 유·무선간의 통합 등 유비쿼터스(Ubiquitous)가 급속히 진행

○ 정보통신서비스 중에서도 음성통신 서비스에 비해 초고속인터넷, 무선인터넷 등 데이터통신 서비스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

*유선통신중 초고속망 서비스 매출액 비중 : 29.5%('04년도)

*무선통신중 인터넷 서비스 매출액 비중 : 20.6%('04년도 ; SKT 경우)

나. 규제현황 및 문제점

■ 관련 법률 및 규제 현황

○ 정보통신사업과 관련한 기본법으로는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등이 있음. 기타 관련 법률로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전기통신망설치 및 보호에관한법률, 위치정보의보호 및 이용에관한법률, 전자서명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지식정보자원관리법 등이 있음

■ 정보통신분야에서는 주파수·번호 등 유한한 자원 배분문제 등을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엄격한 규제 시행

○ 정보화·통신정책·전파방송 분야 등에 총 270개의 규제 시행

< 정보통신 관련 규제 유형 >

진입(구조)규제	행위 규제	성과 규제
· 역무 및 사업자 구분 · 허가 및 주파수배분 · 인수 · 합병 제도 · 퇴출 관련 제도 · 겸업 관련 제도 등	· 요금 및 약관 규제 · 상호접속 규제 · 설비제공 규제 · 회계분리 관련 제도 · 결합판매 관련 제도 · 보편적서비스 제도 · 번호이동성 제도 등	· 경쟁상황 평가제도 · 통화품질 평가제도 · 출연금 관련 제도 · 전파사용료 제도 등

■ 정보통신산업이 타산업의 인프라화함에 따라 기존산업분야와 정보통신과의 경계영역에 관한 규제 등장

○ 전자금융 · 전자상거래 관련 법령, 통신 · 방송융합서비스 관련 법령, 전자정부 관련 법령 등

■ 기존 통신사업분야에서는 시장의 변화속도에 대응하는 규제정비가 미흡하여 경쟁활성화에 차질 초래 우려

○ 통신시장의 융합추세와 경쟁구도 정착에도 불구하고 개별 사업자 중심의 진입 허가 제도를 유지

○ 이용약관 규제를 중심으로 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제약함으로써 사업자간의 실질적 경쟁을 제한

■ 통신사업과 여타 산업 규제원칙간의 충돌 및 상충현상이 발생하여 사업자들에게 중복적 규제부담 초래

○ 통신사업이 상당수준 경쟁 시장화함에 따라 통신사업에 대한 전문규제당국과 일반 경쟁당국간의 중복적 규제사례 발생

○ 정보통신이 여타 산업의 인프라화 함에 따라 정보통신 관련 규제와 기존 사업 관련 규제의 중첩 적용으로 정책혼선 초래

■ 일부 신규서비스 분야에서는 사업 여건의 성숙도에 비해 규제제도의 도입이 너무 앞서 사업 정착에 오히려 저해

○ 시장 도입단계에 있는 사업 영역에 대해 기존 사업규제체제에 버금가는 엄격한 규제 체제를 도입 적용
예)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 위치정보보호법 등

다. 개선방안

(1) 정보통신사업의 진입규제 완화

기본방향 ◆ **신규진입 규제 개선으로 시장활성화**
◆ **인수합병 관련 중복규제 정비로 기업부담 완화**

■ 역무분류 및 허가제도 정비

○ 현행 전기통신사업자 분류제도는 전기통신회선설비 보유 여부와 제공역무(서비스)의 구분에 따른 각종 진입 및 영업규제 시행

< 전기통신사업자 분류표 >

구 분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정 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기간통신역무 제공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회선 설비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 제공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임차하여 부가통신역무 제공
제공 서비스	전화(시내,시외,국제)역무 / 인터넷접속 역무 / 인터넷전화역무 전기통신회선설비임대역무 /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부가통신역무 (기간통신역무 이외의 역무)

– 현행 분류체제는 역무별 칸막이형으로서 신규서비스 등장과 유·무선 통합, 통신·방송 융합 추세 대응에 어려움

*인터넷전화(VoIP)의 역무해석이 명확하지 않아 착신번호 부여, 상호 접속허용 등이 늦어져 서비스 도입이 상당기간 지연

*디지털 미디어센터(DMC) 등 자체 설비를 설치하고 VoD·ISP 등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역무분류 논란

○ 통신시장의 융합 및 경쟁체제 전환 등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사업성 등을 심사하는 허가제도 및 엄격한 영업활동 규제 유지

- 주파수 · 번호 등 한정된 자원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제(주파수 대가할당 등)가 존재하므로, 현행 사업자별 개별심사제도를 적정기준 충족시 진입을 허용하는 제도로 개선

*주요 국가의 경우에도 통신서비스의 구분을 단순화하고, 진입규제는 대폭 완화하는 추세임

- 이용약관 규제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자의 영업활동 규제에 대한 개선도 병행

○ 또한 별정 · 부가통신사업자에게도 금지행위 규제 등에 있어서 기간통신사업자와 동등한 의무를 부과하는 점도 개선 필요

○ 기술 · 시장의 발전에 따르는 다양한 신규 서비스와 관련, 시장성숙전에 도입된 외국에 비해 과도한 진입 · 영업규제 완화 필요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 위치정보보호법 등

⇒ ① 통신사업의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사업자별 규제체제에서 기능별 규제(상호 접속, 번호 · 주파수 할당 등)로 전환 검토

② 통신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규제대상 · 내용 등을 합리화하고 기타 국제적인 입법례 등에 비추어 과도한 규제의 개선 검토

■ 기간통신사업 허가 신청절차 개선

○ 기존의 기간통신사업자가 허가받은 기간통신역무 이외의 다른 역무를 추가 제공하려는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의 변경허가 필요

- 제출서류(사업계획서)의 구성 및 작성양식은 신규허가와 동일

< 변경허가 신청 사업계획서 내용 >

Ⅰ. 법인에 관한 기본사항	Ⅱ. 영업계획서	Ⅲ. 기술계획서
- 법인의 명세 및 조직 - 재무상태 및 자금조달 능력 등	- 시장 분석 및 예측 - 투자 및 재무계획 - 서비스계획 등	- 시스템 계획 - 망구축 계획 - 운용보전 계획 등

○ 사업계획서중 제1권「허가신청법인에 관한 기본사항」을 변경 허가시에도 신규허가와 동일하게 제출하는 것은 불합리함

- 특히 기존 통신사업자에 대해서도 공증받은 법인정관, 법인 등기부등본 등을 부속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변경허가 서류 중 사업계획서 제1권은 본문만 작성 · 제출하고, 부속서류의 제출은 생략하도록 함

○ 또한 제출된 허가신청 서류는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청서 제출 후 내용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심사 (2개월 소요) 종료 후 다시 신청하는 불편 발생
- '06년부터 정기신청제에서 수시신청제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신청서의 수정을 금지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음

⇒ 적격심사 완료 이전에는 제출된 허가신청서의 수정을 허용

■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기간통신사업 허가신청절차 간소화

○ 초고속인터넷 접속역무는 종래에는 부가통신역무이었으나 '04.7월 기간통신역무로 편입되어 정보통신부의 허가대상이 됨
- 기존에 초고속인터넷접속역무를 제공하고 있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System Operator)들은 2년간 허가유예 조치

*현재 전국 77개 방송권역에 119개의 SO가 사업을 수행

○ 기존의 허가신청서류 작성 규정을 획일적으로 엄격하게 적용하면 SO의 기간통신사업자 적기 전환에 지장초래 우려

*향후 5개년간 연도별 시장규모, 시장점유율, 원가계획 등 영업계획과 시스템 구성, 망구축 및 운영, 연구개발등 기술계획 작성이 의무화

○ SO의 기간통신사업자 미전환시 기존 초고속인터넷가입자의 불편(예 : 서비스제공자 변경 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기간통신사업자의 규모 및 역무제공 범위 등을 고려하여 기간통신사업 허가와 관련한 작성서류 및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의무 완화
(예시 : 기술적 적정성 중심으로 심사하고 영업계획 · 재정능력 심사 간소화 및 규모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 의무 적정화 등)

■ 통신사업 허가 · 등록시 조건 부여 개선

○ 기간통신사업 허가 또는 별정통신사업 등록시 역무제공이나 연구 · 개발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
-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 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이나 공정한 경쟁 환경의 조성 등에 취지가 있음

○ 실제 허가시에는 서비스 제공시기, 최초 이용요금, 이용자보호계획,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계획 등의 조건부여

※ 조건부여 사례

·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이고 당기 순이익이 발생한 경우, 매출액의 0.5%를 정보통신진흥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 국제전기통신사업 영위시 일방향 착신 등 타 사업자와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통신사업 진입 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엄격한 규제가 부여되고 있으므로 별도의 조건 부여는 추가적 규제

– 통신사업 진입 희망기업에 대한 시장진입장벽이 될 수 있고 영업활동에 대한 예측할 수 없는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 ① 기속행위인 별정통신사업 등록시의 조건부여 규정 폐지

② 기간통신사업 허가시 부여할 수 있는 조건의 범위를 법정허가 기준 충족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한정

■ 기간통신사업 인수합병의 유형별 절차 간소화

○ 복수의 기간통신역무 중 일부를 분리하여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를 받아야 함

*영업양수 및 합병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치게 함으로써 기업결합신고 의무 면제

○ 영업양수나 인수 · 합병의 경우보다 사안이 경미한 역무분리를 위한 자회사 설립시에 중첩적인 절차를 이행하게 함은 불합리

⇒ 역무분리 자회사 설립시 정보통신부에 승인신청을 하면 정보통신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사실을 통보하고, 사업자의 별도 신고의무 면제

■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인수합병 관련 창구 일원화

○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최대주주 변경 · 합병 · 분할시에는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정보통신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 방송법상에는 변경허가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의 기업결합신고 대상임

○ 향후 SO가 기간통신사업자로 전환할 경우에는 방송법 이외에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인수합병 규제도 추가로 적용받게 됨

– 따라서 SO의 인수합병과 관련하여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공정거래법에 의한 중첩적 인허가 절차가 필요한 경우 발생

*방송법상 전체 SO매출액의 1/3, 사업구역의 1/5이내에서 복수SO가 법제도적으로 허용되는 점 고려 필요

⇒ 방송법상 허용된 범위 내의 SO간 인수합병 인허가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간 창구 일원화

(예시 : 1개 부처에 신고서 접수시 여타 부처에 대한 신고 접수 간주, 접수한 부처에서 타 부처에 대한 신고서 송부 의무 등)

■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취득에 관한 공익성심사제 보완

○ 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취득 등에 대해서는 '국가안보, 공공의 안녕질서' 등 공익을 저해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사

*공익성 심사 대상 : 기간통신사업자 주식의 15% 이상 보유시,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의 변경시 등

○ M&A기법의 발전에 따라 최대주주의 변경 없이 실질적인 지배적 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공익성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규제실효성 저하 우려

⇒ 공익성 심사 대상을 형식적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에서 실질적 최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로 개선(통상교섭 추이를 고려하여 추진)

■ 기간통신사업자의 겸업승인제도 완화

○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 이외에 통신기기제조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 필요

– 겸업제한의 취지는 과거 독점사업자가 통신사업 이외 사업을 추진하다 부실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현재는 수직적 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가 주된 목적

○ 통신기기 제조업체들의 기간통신사업 진입은 과거 금지되다가 '95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진입 허용

○ 통신기기 제조업체의 통신서비스사업 진입은 허용하면서 서비스업체의 기기제조업 진입 제한은 형평성에 문제 야기

*통신기기제조업체는 통신서비스 시장에서의 지배력이 기기제조업으로 전이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 제기

– 특히 계열사를 통한 간접적 겸업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규제의 실효성도 의문시됨

⇒ ① 기간통신사업자의 겸업을 원칙적으로 자유화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하여 승인대상으로 정비

② SO등 소규모 사업자가 겸영하는 사업은 승인대상에서 제외

(2) 신규 서비스 관련 규제 완화

기본방향 ◆ **신규서비스에 대한 중첩적 규제의 개선**
◆ **규제의 실효성이 없는 규정 정비**

■ 위치정보사업과 위치기반서비스사업 겸업 관련 규정 정비

○ 위치정보사업자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신고를 모두 받아야 함

*위치정보사업 :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 (예: 이동통신사업자 등)

*위치기반서비스사업 :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위치정보를 제공받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예: 주변 지역안내 서비스 등)

○ 위치정보사업은 본질적으로 위치기반서비스 제공을 내포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허가와 신고를 중첩적으로 받는 것은 불합리

⇒ 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없이 위치 기반서비스사업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

■ 위치정보사업 변경허가 대상 정비

○ 위치정보사업자가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

– 상호 변경을 정부의 허가대상으로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

⇒ 상호 변경의 경우에는 허가서 재교부 대상으로 변경

■ 개인위치정보 수집중지 요구의 예외 인정

○ 개인위치정보주체(가입자)는 위치정보사업자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등의 일시 중지를 요구할 수 있음

○ 이동통신사업자가 위치정보사업자를 겸업하는 경우, 개인위치정보 수집 중지의 범위와 방식등에 대해 혼선 초래 우려

⇒ 위치정보 수집 일시중지의 정의를 명확히 하도록 조치

(예시 : 이동통신사업자의 교환기에서 LBS시스템으로 위치정보 전달시점을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으로 규정)

■ 이용약관의 신고의무 관련

○ 위치정보사업자,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 이용약관을 정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 기간통신역무에 부수하여 위치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주역무 이용약관과 위치정보 이용약관의 통합규정 허용필요

- 이용자의 입장에서도, 이동통신서비스의 부가서비스로 위치 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통합 규정이 편리한 측면

⇒ 기간통신사업자는 기간통신서비스 이용약관에 위치정보서비스 관련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할 수 있도록 조치

■ 텔레매틱스사업 관련 규제 개선

○ 텔레매틱스 단말기는 전자지도와 위성위치추적시스템(GPS)을 이용하여 무인속도감시카메라 위치 알림기능을 제공하고 있음

*텔레매틱스(Telematics) : 무선통신과 위치추적시스템 등을 결합하여 자동차안에서 교통정보, 사고예방, 차량원격제어 등을 가능하게 하는 자동차 정보통신시스템

○ 텔레매틱스는 불법전파를 이용하여 속도측정기 위치를 탐지하는 장치(레이저 디텍터)와는 구별됨에도 도로교통법상의 불법부착장치로 분류되어 단속 및 처벌대상임

- 텔레매틱스 단말기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생산 판매함

○ 텔레매틱스는 교통사고다발지역 및 위험지역을 안내함으로써 교통안전을 지원하는 기기이므로 합법화 필요

- 도로관리청 · 경찰청에서도 입간판 등을 이용하여 속도감지장치의 위치를 알리고 주의운전을 유도하고 있음

*GPS를 이용하여 안전운행에 도움을 주는 기기에 대하여 규제하는 국가는 없음 (미국, 프랑스, 스위스 등은 레이저 디텍터를 규제)

⇒ 불법 부착장치 중 속도측정기기 탐지용 장치의 범위를 '속도측정기기의 정상적인 전파 작동을 방해하는 장치'로 수정
(국회 계류중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조속히 입법 조치될 수 있도록 협조)

■ IP주소의 할당경로 개선

○ 인터넷서비스에 필수 요소인 IP주소는 지금까지 아시아지역 할당처인 APNIC에 개별업체가 신청해서 할당받다가 인터넷주소관리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창구 일원화

○ 이 경우 개별업체는 APNIC 회원단체로서의 의결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APNIC 의사결정과정에의 참여 제한 우려

- 또한 IP주소의 국가 특수법인에 의한 집중관리는 인터넷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위협요인이 될 수도 있음

⇒ IP주소 할당 관련 효율적인 개선방안 검토

■ 인터넷주소 관리대행자 선정 기준 정립

○ 인터넷주소관리대행자 선정 규정만 있을 뿐 선정 시기, 절차 등이 명확치 않아, 사실상 시장진입 제한에 해당

-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인터넷주소관리대행자를 선정함

○ 제공서비스가 복잡하지 않고 기술적으로도 단순요건만 필요하므로 대행사업자 수를 제한할 필요가 없음

⇒ 일정한 등록요건을 갖춘 경우 사업자 자격을 부여하도록 개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관리대행사업자 선정기준이 불필요한 진입장벽이 되지 않도록 조치)

(3) 정보통신사업의 영업규제 완화

기본방향 ◆ 경쟁촉진을 통한 정보통신사업 활성화 도모
◆ 공정경쟁 여건 조성으로 소비자 효용 증진

■ 통신사업자의 요금규제제도 개선

○ 통신사업의 진입 · 퇴출이 자유화되고 인수 · 합병을 통한 구조조정이 허용되어 통신사업에도 시장경제 원리의 적용 필요

– 시장조정역할을 담당해 온 사전적 규제정책에서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유지 · 감독하는 사후적 규제로 전환 시점

○ 요금제도의 경우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인가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비용인하 유인이 없고 사업자간 경쟁저해요소로 작용

* 현재 KT의 시내전화 · 인터넷접속역무와 SKT의 이동전화역무가 인가 대상이며, 여타 기간통신역무는 신고 대상임

○ 향후 통신사업의 경쟁가속화, 신규서비스 및 융합서비스의 등장 등 환경변화에 따른 역무분류 · 진입규제 개선방안과 병행하여 요금규제 방식 개선 필요

⇒ 지배적사업자에 대한 요금 인가제도 등 현행 요금규제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

■ 이용약관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 정비

○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이용약관이 인가, 신고대상인지 여부를 불문

○ 이용약관은 다수의 계약 상대방이 있는 거래에서 미리 마련한 계약의 일종으로서 기본적으로 사인(私人)간의 계약임

– 사법상의 계약 위반행위 자체에 대해 정부기관이 직접 개입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의 소지가 있음

⇒ 이용약관 위반행위 중 형사처벌이 필요한 경우를 구체화하여 별도 규정 마련

○ 이용약관 신고제가 형식적으로 운용되어 사업자의 이용약관 변경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 발생
- 다양한 마케팅 활동이 제약을 받아 경쟁을 실질적으로 저해하는 결과 초래 우려

○ 금지행위 규정이 이용약관의 신고의무가 없는 별정 · 부가통신사업자에게도 적용되어 불합리함

⇒ ① 이용약관 신고제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지정된 웹사이트 게시 또는 전자문서 제출에 의한 신고대체 방안 등)
② 금지행위로 규제되는 이용약관 위배행위의 범위를 인가 · 신고된 이용약관과 다르게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로 개선

■ 이용약관 인가 처리기간 명확화

○ 이용약관 인가제와 관련, 신청 후 인가처리에 지나치게 장기간 소요되어 인가신청 사업자의 영업활동에 지장 초래(인가신청 처리기간 : 60일)

⇒ 이용약관의 인가신청시 처리기간을 30일로 단축(관련부처 협의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15일내 1회 연장)하고, 인가 불허시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

■ 이용약관 변경명령제도 폐지

○ 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약관이 현저히 부당하여 공공이익의 증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약관 변경을 명할 수 있음

○ 사업자가 금지행위를 할 경우, 사후적으로 통신위원회에 이용약관 변경명령권이 있으므로 사전 · 사후적 중복규제에 해당

⇒ 사전적인 이용약관 변경명령제도는 폐지

■ 이용약관 가인가 제도 정비

○ 기간통신사업자는 새로운 역무를 시험적으로 제공하려는 경우 이용약관의 가인가를 신청할 수 있음
- 이용약관의 신고원칙 전환에 따라 무의미한 제도임

⇒ 이용약관 가인가제도 관련 규정 삭제

■ 통신사업 관련 중복규제 개선

○ 통신사업자의 공정경쟁, 이용자보호 저해행위에 대한 조사 및 처벌에 대해 규제기관간의 중첩적인 조사·처리사례 발생

- 동일행위에 대하여 동일사유로 중복처벌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조사기관들이 다른 사유를 들어 중복처리 사례

*이동통신사가 무선인터넷을 자사 포털사이트에 먼저 개방한 사안에 대해 통신위는 '차별적 취급',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 고객유인'으로 조사

○ 정보통신이 전산업의 인프라화에 따라 전통산업과 통신산업의 결합으로 인한 중복규제 우려도 증가하고 있음

*게임·영상·음반산업과 정보통신산업의 결합, 방송의 VOD 등

⇒ 통신사업 관련 중복규제 및 중복조사에 대한 실태조사 및 방지방안을 강구

■ 보편적 역무 손실 보전금 제도 개선

○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하는 기본적 통신서비스를 보편적 역무로 지정하고, 그 제공에 따른 손실은 사업자들이 분담

*유선전화서비스(시내전화·공중전화·도서통신), 긴급통신용 전화 등

○ 손실보전금은 기간통신사업자들이 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

- 단,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10/100 범위내에서 가중 부담하고('07.1월 시한), 적자 사업자는 50/100 범위내에서 감경 부담

○ 통신서비스 보급이 완료단계인 상태에서 역무간 비용 전가로 요금구조를 왜곡하거나 사업자의 원가절감 유인을 저해하지 않도록 손실보전금 제도의 범위 최소화 및 부담 투명화 필요

⇒ ① 전국 대상 보편적역무제공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손실보전 상한제(일부지역에서 적자라도 전국 원가보상율이 100% 이상인 경우에는 보전 제외) 원칙의 명시

② 전국사업자가 제공하는 보편적역무 구역중 일부 지역에 한정해서 권역별로 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대리점 행위의 사업자 의제규정 명확화

○ 통신사업자의 대리점 등이 공정경쟁 저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통신사업자의 행위로 의제하여 처벌

- 통신사업자가 행위방지 위해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는 예외

○ '상당한 주의'의 개념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통신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음

⇒ 본사에 귀속되는 행위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상당한 주의'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 마련

■ 통신서비스 통화품질 평가제도 개선

○ 매년 정보통신부 주관 하에 통신서비스 통화품질평가 제도를 시행

- 종래에는 정부 주관 하에 통화품질 평가를 시행하다가 '04년부터 통신사업자 자율 측정 후 전문기관이 수시로 검정측정

*주요 측정 항목 : 접속성공률, 통화단절률, 음질불량률

○ 통화품질 측정대상이 되는 통신서비스의 범위를 임의단체인 품질평가협의회에서 임의로 선정하고 있음

- W-CDMA 등 서비스 지역과 가입자 수가 적은 신규서비스의 경우에는 품질평가 의미가 없음에도 대상에 포함

⇒ 품질평가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하고 정보통신부는 품질 표시의 기준만을 정할 수 있도록 개선

■ 고액 정보통신요금 체납정보의 출입국 관리 활용

○ 국내 체류 외국인 및 해외이민자 중에서 고액의 통신요금을 체납하고 출국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 후불제로 운영되는 통신요금의 특성으로 인하여 악의적인 이용자에 대한 통신사업자의 대응수단에 한계

*'05년말 기준 외국인 체납건수 1만2천건, 체납금액 약 67억원임
(건당 평균 체납금액 55만원, 100만원 이상 체납자 비율 약 8%)

⇒ 신용정보 집중기관의 DB에 접속하여 고액의 정보통신요금 체납자의 정보를 필요시 입국심사 참고자료로 활용

■ 기간통신사업 휴·폐지시 승인의무 개선

○ 기간통신사업을 휴·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해산결의에 대한 총사원의 동의는 인가)

- 법원에 의한 정리절차개시 등이 있는 경우 승인이나 인가 절차이행은 규제실효성 없이 불필요한 행정비용만을 유발

- 사업폐지에 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해산결의에 대한 인가를 추가로 받게 함은 불필요

⇒① 법원에 의한 정리절차개시 등이 있는 경우 등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유 마련
② 해산 결의에 대한 총사원의 동의에 대한 인가 폐지

■ 교통기관의 사용권한

○ 기간통신사업자는 무선국 개설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사의 교통수단 사용 및 특수한 설비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

○ 기간통신사업자가 민영화된 상황에서 사문화한 규정임

⇒ 교통기관 사용권 등에 관한 특례규정 폐지

■ 설비이전 비용 부담

○ 전기통신설비가 토지 등의 이용에 방해가 되는 경우 토지소유자 등은 설비 이전이나 방해 제거 등을 요구할 수 있음

*당해 조치가 업무수행상 또는 기술상 곤란한 경우 조치이행의무 면제

- 전기통신설비가 토지 등의 이용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도 이전 등의 비용 전부를 토지소유자 등에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일반국민의 법감정과도 상치

⇒ 전기통신설비가 토지 등의 이용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여 이전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등의 이전비용 부담은 전기통신설비 설치시 토지소유자 등이 받은 보상금을 한도로 함

■ 부가통신사업 폐지신고

○ 부가통신사업자가 사업을 휴폐지할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함

-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부가통신사업의 범위가 확대되고 사업자 수가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실효성없는 제재규정임

⇒ 부가통신사업 폐지 신고 관련 과태료 규정 삭제

(4) 정보통신사업의 설비설치 규제 완화

기본방향 ◆ **불합리한 설비규제 정비로 통신인프라 구축 촉진**
◆ **중복규제 개선으로 불필요한 행정비용 감축**

■ 통신사업용 무선국 허가제도 개선

○ 현행 전파법상 무선국을 개설하려면 개별 무선국별로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무선국의 특성이나 종류에 관계없이 엄격한 허가절차 적용

○ 무선국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도 이동통신사업용 무선국과 일반 무선국을 구별하지 않고 적용
- 무선국별 자의적인 설치 · 운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타 무선국에 대한 혼신방지, 통신보안 등 감시감독에 중점

*허가 심사사항 : 주파수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 설치 · 운용할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적합 여부, 무선종사자의 자격 · 정원배치 적합 여부, 통신사항이 개설목적에 적합 여부 등

○ 통신사업용 무선국은 허가받은 역무범위에서 전체 시스템별로 관리 · 운용되기 때문에 일반 무선국과 별도 취급이 필요
- 주파수 대역할당 과정에서 주파수 용도, 타 무선국과의 혼신여부, 개설목적 적합여부 등에 대해서는 이미 검토
- 사업용 무선국에는 형식등록 ·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급받아 설치하므로 기술기준 적합여부 심사 불필요

○ 특히 통신사업자는 통화품질 유지 · 향상을 위해 자체적으로 철저한 관리를 하므로 사전 규제보다는 사후 감독이 적합

○ 외국의 경우에는 통신사업용 무선국에 대해서는 개별허가제가 아닌 일괄허가제를 실시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미국 · 영국 · 호주 등은 할당된 주파수에 대하여 일괄허가제 실시

*일본은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내에서 사업자가 자유롭게 변경 · 증설

⇒ 이동통신사업용 무선국에 대해서는 개별 무선국별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① 무선국의 신설이나 변경시에는 관할 체신청에 신고

② 무선국은 신고 후 즉시 운용하되, 사후 검사 시행
③ 무선국 공용화 관련 사항은 사업자간 자율협의하여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는 체신청 에서 조정(공용화 조정의 실효성 담보 방안 강구)

■ 도로확장공사에 따른 관로공사의 사업계획서 간소화

○ 통신사업자가 도로를 굴착하여 통신시설을 매설하는 경우 그 점용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함
- 긴급복구공사, 길이 10미터 이하의 공사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업계획서 제출 의무 면제

○ 도로관리청의 도로확장공사로 인한 통신사업자의 지장 이전 관로에 대해서도 도로점용 사업계획서 제출이 의무화
- 이 경우 통신사업자가 별도의 교통통제나 먼지발생대책 등 사업계획서의 첨부서류를 작성하기가 사실상 곤란

⇒ 도로관리청의 확장공사에 부수되는 통신관로공사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첨부서류(교통소통대책 등) 간소화

■ 도로굴착 복구시 원상회복 기준 구체화

○ 도로굴착공사 후의 원상회복공사는 굴착 전 도로의 상태와 같이 복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복구면적 및 방법이 명시되지 않아 원상회복 수준 이상의 과다한 복구비용 소요
- 공사 후 포장면의 미관훼손 등을 이유로 전면 덧씌우기나 전면 재포장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

⇒ 도로 원상복구의 범위를 공사로 인한 도로의 영향권까지로 구체적 명시

■ 통신관로 도로점용 허가위치 조정

○ 통신구(맨홀)은 길어깨 바깥쪽으로 1미터 이상 벗어난 곳에 매설하여야 함

○ 통신구를 길어깨 바깥쪽 1미터 이상에 설치시 외부 노출 및 유실의 우려 등 관리·보안상의 문제점 발생
- 또한 작업구와 통신관로의 점용위치가 상이하여 선형 유지가 어렵고 케이블 포설 곤란 및 통신품질 저하 초래

⇒ 통신구의 점용위치는 보도 또는 길어깨쪽에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적절한 안전대책의 수립을 전제)

■ 도로점용 허가대상 시설물의 조정

○ 전주 이외에 공중선(전선, 통신선)에 대해서는 별도의 점용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도로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 전주 설치·도로점용 목적은 공중선(전선, 통신선)을 설치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중선은 전주의 부속물로 보는 것이 타당

○ 일부 자치단체에서 도로법시행령 규정에 위배해서 공중선에 대해 별도의 점용료를 부과하려는 사례가 발생

⇒ 전주의 점용 허가시 명시된 공중선에 대해서는 별도의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조치(필요시 유권해석)

■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명확화

○ 도로에 통신관로 매설시 일시·영구 점용료를 납부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마다 점용료 산정기준 및 점용일수 산정기준이 다르고, 담당자 임의로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는 사례도 발생

*예) 실제 굴착폭은 0.7m이나 최대 1차선 점용으로 간주

⇒ 도로법령에 규정된 기준대로 점용료를 부과하도록 조치(필요시 유권해석)

■ 지하매설물 위치 표시 설치기준 합리화

○ 도로구역 안에 지하매설물을 설치할 경우, 매설물 상부에 인식표지 및 표지주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토록 하고 있음

- 인식표지(도심) : 100mm의 동합금봉 또는 황동주물
- 표지주(지방) : 150×150×700mm의 콘크리트 또는 석재기둥

○ 도심지역 인식표지의 경우, 규격이 너무 커서 보행자 통행시 미끄럼 사고의 우려가 있고 도시 미관도 저해

- 표지주는 재질관계로 운반, 설치가 어렵고 비용대비 효과 의문

⇒ 인식표지의 규격을 현장여건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하고, 표지주의 재질을 FRP(Fiber Reinforced Plastics; 섬유강화 플라스틱)등 여타 재질도 가능하도록 개정

■ 도시공원내 통신시설 설치 금지 완화

○ 도시공원내에는 전주, 통신구조물 등 통신설비 구축을 위한 점용허가를 일체 불허하고 있음

– 반면, 전주·변전소·가스관·공동구는 설치가 허용

○ 대도시 인구밀집 지역에 초고속인터넷 등 정보통신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도시공원내 여유공간 확보가 필요

– 도로변에 통신설비 설치시에는 도시미관 저해 및 통행지장 초래등 민원 발생 우려

⇒ 도시공원내 설치 가능한 설비의 대상에 통신설비 포함
(전주·가스관등 기 허용설비와 동일한 기준 적용)

■ 해저케이블 보호규정 정비

○ 연안에서의 저인망·통발 등 어로작업 과정에서 해저케이블을 절단 또는 훼손하는 사례가 빈발

– 해저케이블 고장시 국제통신 및 금융전산망, 인터넷망 통신 두절 등으로 경제적, 사회적 손실 초래

*'97~'04년간 총 41회 피해 발생(연평균 약 5회), 총 피해액 270억원(연평균 34억원)

○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전기통신설비 보호관련 일반규정 이외에 해저케이블 관련 규정이 없어 해저케이블 보호에 미흡

– 어민 등 대상 계도 및 홍보활동 등도 근거조항 미비로 애로

* 수저선로 보호구역지정 및 특정행위 금지 관련 규정이 전기통신사업법에 있었으나 일반규정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99년 삭제 (해저 전선로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저선로 손상행위 금지규정은 '01년 전기사업법 개정시 신설)

* 호주·뉴질랜드 등은 해저케이블보호법을 독립법률 형태로 규정하고 있고 미국, 일본 등은 통신법 내에서 규정하고 있음

⇒ 기간통신사업자가 수저선로 표시구역 지정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표시구역 지정시에는 그 구역과 부표의 위치 등을 해당사업자가 공표할 수 있도록 함

라. 향후 추진일정

○ 부처별 세부추진계획 수립·제출 : '06.3월

-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 이행 : '06.6월

○ 추진 상황 점검 · 평가 및 대책 보완 : 매월

3.6 고등교육기관 설립 · 운영규제 개선

집필자 : 전창호 사무관(Tel. 2100-8825, chch5533@opc.go.kr)

가. 정책환경

■ 정보화 · 개방화에 따라 양질의 고등교육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국제경쟁력은 미흡

○ IMD(국제경영개발원) 평가에 의하면 고등교육 진학률은 1위인 반면 고등교육 경쟁력은 최하위 수준

*평가대상 60개국 중 57위('03) → 59위('04) → 52위('05)

○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 충족 미흡으로 해외유학 비용 증가

*해외유학 및 연수비('05년) 지출 : 33.7억 달러('06.2 한국은행)

■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학간 통합 · 개편 등 혁신을 추진 중이나 구조개혁 및 특성화 미흡

○ 고등교육시장 개방은 국내외 대학간 치열한 경쟁을 요구하게 될 것이며 양적 팽창에서 질적 전환의 계기로 작용 전망

*일본 · 중국 · 핀란드 등은 대학 구조조정을 통한 효율성 증대, 산학협력 및 대학특성화 적극 추진 중

■ 고등교육 서비스 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 학생들의 요구수준 향상, 평생교육, 사이버 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대학교육 요구

○ 경제계도 과감한 규제 개선 등을 통한 고등교육 개혁 요구

나. 규제 현황 및 문제점

(1) 규제현황

■ 고등교육기관 및 학생 현황 : 411개 대학 355만명

< 고등교육기관 종류 및 재학생 현황('04) >

구 분	계	대학	전문대	교육대	산업대	방송대	원격대	기타
학교수	411	171	158	11	14	1	17	35
재학생 (천명)	3,555	1,837	897	23	189	291	39	279

■ 관련법률 및 규제현황 : 6개 법률 약 139건

○ 주로 대학의 설립 · 폐지, 학사관리, 학교법인, 인사, 재정 등에 관련

< 고등교육 관련 규제법률 현황 >

대학유형	근거법령
국공립대학	고등교육법
사립대학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전문대학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평생교육, 원격대학	평생교육법,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에 관한 법률, 학점 인정 등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 고등교육 규제에 대한 대학의 인식

○ 정부의 교육규제에 대해서 대학의 자율적 운영을 저해한다고 보는 시각 우세(76.0%)

○ 주로 학생선발(60.8%), 정원정책(61.8%), 등록금책정(58.9%), 재정운영(58.9%)에 관한 규제가 많다고 인식

(2) 문제점

■ 고등교육의 경쟁력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낙후

○ 그간 양적 성장에 지중한 나머지 질적인 측면에 소홀

○ 대학간 경쟁이 학생수 증가에 치우쳐 대학의 질 제고로 이어지지 못하고 교육의 질은 오히려 저하

*대학 미충원율 증가('05년 전문대 17.7%, 일반대 10.1%), 사립대 정원자율화 이후 교수 대비 학생 비율 급격히 감소 현상

■ 경제사회적 요구와 괴리된 인력양성

○ 고학력 인력의 대량배출에도 불구하고 산업체 요구와 동떨어진 인력배출로 산업계 불만 심화

*신입사원이 대학에서 습득한 지식·기술은 기업 필요수준의 26%(전경련, '02.12)

○ 지역·산업별 수요를 감안하지 않고 대학간 차별화되지 못한 백화점식 학과 운영으로 전문인력 양성에 한계

■ 유·무형의 각종 규제로 대학 자발적·창의적 발전동력 저하

○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국내 고등교육 시스템을 경직화·획일화하여 경쟁력 저하 초래(World Bank 분석)

○ 학생수가 격감하고 교육시장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대학 구조조정 필요성이 증가되나 해산·합병 시스템 미비

다. 개선 방안

(1) 고등교육기관 설립 규제 개선

기본방향 ◆ 고등교육 서비스에 민간참여 확대 및 대학간 자율경쟁체제 강화

■ 경제단체 등의 경영전문대학원(MBA) 설립 허용

○ 경영전문대학원은 일반대학원과 달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실천적 이론의 적용·활용을 목적으로 하므로

– 대학 뿐만 아니라 경제분야에 전문지식 및 경험이 축적된 전문기관에도 설립·운영 허용 필요

* 프랑스 파리상공회의소(CCIP)는 경영대학원 등 12개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음

⇒ 일정자격을 갖춘 경제단체 또는 특수법인 등 비영리법인에 경영전문대학원 설립 · 운영 허용

· 경제단체 또는 특수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학교 법인을 통해 경영전문대학원 운영시 설립 요건 대폭 완화

* 비영리법인이 경영전문대학원을 직접 설치 · 운영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 검토시 교육인적자원부는 적극 협조

■ 원격(인터넷) 고등교육시장 경쟁체제 도입

○ 정보화 사회에서 대학들이 통신 · 인터넷을 통한 고등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증대되는데도

– 원격교육에 의한 학사과정의 경우 국립방송통신대학과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에만 허용하고 일반대학에 설치를 제한하고 있으며

– 석사과정의 경우 일반대학에는 원격교육에 의한 석사과정을 허용하면서 원격대학에는 설치 제한

○ 이로 인해 정보화 사회의 중요 고등교육 체제인 통신 · 인터넷 교육시장에 경쟁체제가 조성되지 못한 상황에서

– 해외의 통신 · 인터넷 고등교육이 국내에 진입하고 있으며, 통신 · 인터넷 고등교육의 질에 대한 불만 증가

※ 일본은 학교교육법에서 고등교육기관이 통신제 학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인터넷을 통한 박사과정을 '02.3월부터 허용

※ 원격대학 교수 설문조사 결과, 88%가 사이버 대학과 오프라인 교육의 상호보완(출석수업, 시설이용 등)이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응답(교육인적자원부, 21세기 주력성장모델 원격대학 발전방안연구, '03)

⇒ ① 일반대학에 인터넷을 통한 학부과정 허용

· 일반대학 및 원격대학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07년 법률개정 후 '08년부터 시행

② 원격대학의 법적 근거를 고등교육법으로 이관하고 대학원(석사과정) 과정 허용

· 1단계('06) : 고등교육법 이관

· 2단계('07) : 원격대학에 대한 평가인증제 도입

· 3단계('08) : 원격대학원(석사과정) 설립 허용 검토

※ 대학원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한 원격대학원 인가기준(시설, 교원, 재정 등) 마련

(2) 고등교육기관 운영 규제 개선

기본방향 ◆ 고등교육 자율성 확대 및 불합리한 학사규제 개선

■ 외국대학과 교육과정 공동운영 허용 확대

○ 국내대학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증가하는 해외유학 수요를 흡수하기 위하여 '97년부터 외국 대학과 공동으로 교육과정 운영을 허용하고 있으나

- 고등교육기관 중 대학 · 산업대학 · 전문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에만 허용하고 교육대학 · 기술대학 · 각종학교는 제외하여 외국대학과 공동교육과정 운영 곤란

※ 방송통신대학은 '06.1.31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으로 허용

⇒ 외국 대학과 공동교육에 의한 학위과정을 기타 고등교육기관(기술대학 · 각종 대학 등)으로 확대 허용

■ 전문대학 3년제 학과 설치 자율화

○ 전문대학의 경우 2년제를 원칙으로 하고, 일부 3년제 학과(간호 · 방사선 · 임상병리 · 물리치료 · 치기공 · 치위생 · 작업치료 · 어업 · 기관과)를 제외하고는 3년제 전환을 제한하고 있으나

- 산업기술의 고도화 · 전문화, 직종의 다양화에 따라 2년 수업으로는 산업계에서 필요한 전문기술인력 양성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

⇒ 2년제 학과의 3년제 연장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칙변경만으로 가능하도록 허용 · 전문대학은 학칙변경 내용을 교육인적자원부에 보고

■ 전문대학 졸업후 일반대학 4학년 편입 허용

○ 전문대학의 3년제 학과 졸업 후 4년제 대학 편입시 4학년이 아닌 3학년으로 편입토록 하고 있어 전문대에서 취득한 학점이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 발생

*3년제 학과의 경우 약 120학점을 취득하나 4년제 대학 편입시 약 70학점 정도 밖에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

⇒ 전문대학 이수과목, 학점 등을 고려하여 편입학년을 대학이 자율로 정하도록 허용

■ 대학 신입생 모집단위 설정 자율성 확대

○ 학부과정에서 다양한 기초교양을 습득하고 전문직업교육은 전문대학원 중심으로 한다는 취지에서 대학 신입생 모집을 의·약학계열 외는 복수학과 또는 학부단위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 전문대학원 제도가 미비한 상태에서 학과종류 및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모집단위를 광역화함으로 인해 학부과정에서 공학 등 전문분야 교육 부실초래 우려

※ 일부 대학에서는 모집단위 광역화가 오히려 고등학교 교육을 획일화·표준화하여 교육 발전을 저해한다고 비판

⇒ 그간 학부제 및 모집단위 광역화 정책 운영 성과를 평가하여 개선방안 마련

■ 박사학위 과정 운영 자율성 확대

○ 대학원의 경우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으로 구분하고 있고, 일반·전문대학원의 경우 박사학위 과정을 허용하나 특수대학원은 박사학위과정 운영을 제한

○ 이로 인해 직업인 또는 일반성인이 박사과정에 진학하고자 할 경우 일반·전문대학원에 진학하여야 하나, 통상 주간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직업인에게는 사실상 수학기회가 차단

⇒ 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에 전문대학원 설치한 후 박사학위과정 허용

< 대학원 종류 및 운영현황 >

구 분	목적	설치가능대학	학위과정	학교/대학원수
일반 대학원	학문의 기초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	일반대학	석/박사	160개교 144개 대학원
전문 대학원	전문직업분야 인력양성에 필요한 실천적 이론적용과 연구개발	일반대학, 산업대, 교육대	석사. 단, 학칙에 따라 박사학위가능	177개교 129개 대학원
특수 대학원	직업인·일반성인을 위한 계속 교육	일반대학, 산업대, 교육대, 방송통신대	석사	177개교 635개 대학원

■ 대학 특성화 촉진을 위한 잉여교육시설 매각 허용

○ 백화점식 대학 운영을 지양하고 경쟁력 있는 학과 중심의 대학별 특성화가 지속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 현행 법령상 대학별 특성화 및 대학 규모의 축소 운영 등에서 발생하는 잉여교육시설을 처분하여 이를 해당 대학의 교육활동에 재투입할 수 있는 통로 미비

※ 현재는 ① 학교 이전, 본교와 분교의 통합으로 용도 폐지되는 경우, ② 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특성화를 위해 학교법인간 교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학교기본재산 처분 허용(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 정원감축 등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한 잉여교육시설을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 일부 매각 허용

· 매각 후 수익금 전액은 학교 교육에 재투자

■ 각종 고등교육기관 통합기준 투명화

○ 고등교육기관의 통합은 학교법인 및 재학생 · 교원의 이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에도 통합요건 및 기준 등을 법령에서 정하지 않고, 교육인적자원부의 행정지침*으로 운영하여 (*경쟁력강화를 위한 대학구조개혁방안('04.12)

- 통합과정에서 대학 이해관계자의 이익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거나 교육당국의 자의적 규제 우려

*산업대학-전문대학간 통합의 경우에만 정원감축, 통합 후 교육여건 개선, 연차별 전임교원 확보율 등에 대한 기준 마련('05.10.25, 대학설립 · 운영기준 개정)

⇒ 고등교육기관(대학-대학, 전문대학-전문대학, 대학-전문대학)간 통합기준을 고시로 구체화

· 정원감축, 교육환경 개선조건, 연차별 전임교원 확보율 등

라. 향후 추진일정

○ 부처별 세부추진계획 수립 · 제출 : '06.4월

○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 이행 : '06.9월

○ 추진 상황 점검 · 평가 및 대책 보완 : 분기별

3.7. 조세 부과 · 징수제도 개선방안

집필자 : 이영삼 전문위원 (Tel. 2100-8796,insahn@opc.go.kr)

가. 정책 환경 및 추진경위

■ 우리나라 조세체계는 국세 15개, 지방세 16개 등 총 31개 세목에 달하는 다양한 모습
○ 부과 및 징수절차도 국세, 지방세, 관세별로 다소 상이하게 운영

■ 조세분야 중 세목, 세율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재정의 근간으로서 조세정책적 차원의 접근이 요구되는 사항이나,
※ 세목, 세율에 관한 조세정책은 조세제도의 단순화 및 세부담의 합리적 조정이라는 중장기 기본 목표하에 개선방안을 마련중

○ 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국민에게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절차적인 성격이 강함

■ 다른 행정분야와 달리, 조세의 부과·징수분야는 조세징수권의 실효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행정편의적인 절차운용이 여전하다는 인식
○ 납세의무에 대한 국민의 일방적 이행이 강조되어 다른 분야에 비해 세무당국의 직권적·우위적 조세행정이 지속
※ '00~'03년간 조세불복건수(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가 연평균 15%이상 증가

○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맞지 않게 실제 중요규제사항을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운영함에 따라 세무행정의 투명성 저해
※ 조세법률주의 : 국가는 법률의 근거 없이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법률의 근거 없이 조세 납부를 강요받지 않는다는 원칙

■ 현재의 행정편의 위주의 조세 부과·징수제도를 납세자 편의 위주의 제도로 개편하고 투명하게 개선할 필요

나. 규제 현황 및 문제점

(1) 규제 현황

■ 국세는 부과·징수를 위한 공통적인 조세법률 관계를 규정한 7개 법률이 있으며, 「1세목 1세법주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외)」에 의해 세목별 14개 법률(관세포함)을 제정·운용

○ 관세는 수출입물품의 통관사항 및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관세법에서 규정

법 률		제 정 목 적
공통법률	국 세 기 본 법	국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공통적인 사항과 위법 또는 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규정
	국 세 징 수 법	국세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규정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 관한법률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국세의 지방양여에 관한 사항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의 감면·중과 등 조세특례와 제한에 관한 사항 규정
	조세범처벌법	조세에관한법률에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사항 규정
	조세범처벌절차법	조세에 관한 범칙사건의 간편·신속한 처리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 관한법률	과세자료의 제출·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규정
세목별 세법 (15세목 14세법)		국세청(13) : 소득세법, 인지세법, 법인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주세법, 증권거래세법, 특별소비세법, 교육세법, 교통세법, 부당이득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관세청(1) : 관세법
세법 기본통칙 및 해석편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인지세법, 법인세법, 농어촌특별세법, 부가가치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주세법, 증권거래세법, 특별소비세법

■ 지방세는 세목 및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지방세법(「다세목 1세법주의」 적용)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 규정안된 사항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등을 준용

법 률	제 정 목 적
지 방 세 법 (16세목 1세법)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행세, 농업소득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레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지방교육세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규정

(2) 개선의 필요성

■ 현재 국민생활에서 차지하는 조세의 비중이 증가되고 있어 국민의 입장에서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행정분야로 인식

※ 전경련,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에서 매년 정부에 세법개정을 건의 중이며, 2005년의 경우 건의건수가 338건(부과 · 징수관련 45건)에 달함

○ 특히, 그동안 조세분야에 대한 제도화된 외부통제가 미흡했던 점을 고려할 때
- 조세 부과 · 징수제도 개선은 국민의 입장에서 개선의 체감도를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분야로 판단

■ 그러나, 현행 행정규제기본법에서는 「조세의 종목 · 세율 ·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법률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함에 따라

○ 조세에 관한 사항은 규제의 등록 및 공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등의 대상이 아님

※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관세청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나, 현재 규제로 등록된 사항은 없음

■ 조세정책적 차원에서 결정되는 세목, 세율 등과는 달리 조세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 조세의무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불필요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절차라는 점에서,

○ 조세징수권의 실효성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

(3) 문제점

■ 시대변화에 뒤떨어진 조세절차 운영

○ '국세 · 지방세 납세증명서', '전산처리 생산서류의 실물증빙서류' 등 전자정보화 기술발전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같이 제출 · 보관의무 부담

○ 세정당국간의 부과 · 징수 관련정보공유 부족, 짧은 최소 납부기한 설정 등 징수자 편의 위주의 절차운영

■ 복잡하고 합리성이 미흡한 조세부과 방식

○ 파산채권의 손금 인정 및 면허세 납부시기 등이 납세자 입장을 감안하지 않고 세무당국 위주로 운영

○ 법인세할 주민세 산정기준, 담배소비세 납세담보기준 등 납세기준의 객관성 결여

■ 행정편의 위주의 세무행정

○ 신고·납부기한연장 승인여부 통지기한, 압류해제 기한과 같이 업무처리 기한을 적시하지 않아 납세자에게 불리한 절차 상존

○ 법인세할 주민세의 수정신고기한이 짧고,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등 국민의 권리보호 미흡

■ 세무조사행정의 투명성, 객관성 부족

○ 짧은 세무조사 사전통지기한, 세무조사 현장에서 무리한 조사자료 요구 등 행정편의적인 조사실시라는 의견

○ 무작위 추출방식에 의한 조사대상자 선정, 임의적인 세무조사기간 연장 등 직권적인 세무행정 지속

다. 개선 방안

(1)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납세자 위주의 조세절차 개선

기본방향 ◆ **과도한 서류제출의무 완화**
◆ **납세자 불편을 초래하는 조세절차 개선**

■ 정부기관의 납세증명서 제출의무 폐지

○ 납세자가 정부기관(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받거나 출국시에는 납세증명서를 해당기관에 제출토록 의무화

– 현행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00.10.13 개정)상 행정기관간의 전산정보의 조회로 확인 가능한 경우,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공무원이 직접 확인처리토록 하고 있음

※ 현재,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등 24개 서류에 대하여는 행정정보망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

○ 그러나, 지방세법 · 국세징수법 등 개별법에서는 납세증명서 등 전산 확인 · 조회가 가능한 서류에 대해서도 제출을 계속 의무화하고 있어 실제 민원인의 서류제출 및 불편이 지속

– 아직 금융기관과의 실시간 확인시스템이 구축('08년까지 연계 예정)되지 않아 공무원들의 확인처리(현재 약10일 소요)에 한계

⇒ 납세자가 정부기관으로부터 대금을 받거나 출국할 경우에는 회계관계 공무원 · 공사 직원 등이 체납사실여부를 직접 확인토록 하고, 국민의 납세증명서 제출의무는 폐지('08년부터 시행)

· 체납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시스템 구축 병행 추진

■ 지출증빙서류 실물보관 의무 완화

○ 납세자는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

–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자기테이프 · 디스켓 및 기타 정보보존장치에 의해 보존할 수 있음

○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고 있음에도 법령에 실물보관의무 면제의 명시적 문구가 없어 동일 자료를 중복 보관함에 따라 낭비 초래

※ 기업은 정보보존장치 설치 · 유지와 실물장부 · 서류보관에 따른 이중 비용부담

⇒ 정보보존장치에 의해 증빙이 가능한 장부 및 서류의 실물보관의무를 면제하는 규정 명시

■ 납세고지서 등의 납부기한 연장

○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독촉장, 납부최고서를 송달할 경우 도달일에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했거나 도달일부터 7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것은 「도달일로부터 7일이 경과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하도록 규정

○ 납부기한을 납세고지서 도달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하는 것은 납세금액이 고액인 경우 기한이 촉박하여 납세자 부담

⇒ 납세고지서등의 납부기한을 7일에서 14일로 연장

■ 지방세 전자신고 · 납부 포탈사이트 구축

○ 지방세의 전자신고 · 납부처리는 각 지자체별로 홈페이지를 운영 · 처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합 · 운영하는 포탈사이트가 없음

○ 기업체에서 사업소세, 주민세(법인세할, 소득세할) 등을 전자 신고하는 경우 각 지자체의 홈페이지를 개별적으로 접속하여 처리해야 함에 따라 불편 초래
⇒ 사업소세, 주민세 등 지방세에 대한 「전자신고 · 납부」 포탈사이트 구축 ('07년말 까지)

■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간 정보공유 확대
○ 국세청(국세)과 지자체(지방세)간에는 조세의 부과 · 징수를 위한 과세정보를 요구 · 제공할 수 있으나, 상호간의 정보공유가 원활하지 않음
– 현재 각 기관 간에 공문으로 과세정보가 제공되고 있으나, 처리지연 등으로 국민불편 초래
⇒ 국세청 및 지자체 세무담당자간 정보공유 확대방안 마련
① 국세청과 행정자치부간 정보공유 협약체결 등 단기적인 정보공유 확대 방안 마련 · 시행
② 행정자치부의 표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시('07년말 까지) 국세청과의 정보공유연계 시스템을 포함하여 구축 · 운영

(2) 조세부과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

기본방향 ◆ **납세자 편의 위주로 손금처리 및 납부시기 조정**
◆ **과도하거나 불명확한 부과기준을 개선**

■ 파산채권의 대손처리 시기 조정
○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 파산 등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최종적으로 손실금액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음

○ 그러나,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파산채권을 법원의 파산선고후 파산종결결정 때까지 손금처리하지 못하여 세금계산시 손실발생
– 파산선고 후 종결시까지 최대 5년 이상이 소요되고, 종결 후에도 회수할 채권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가 일반적

⇒ 법인세법상 파산채권의 대손요건을 완화하여, 파산선고일에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개선

■ 면허취득시 익년도 면허세 정기분(1월 1일 기준) 선납 허용

○ 각종의 면허를 받은 자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면허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이 초과하거나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면허는 매년 그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1월 1일 기준 부과

○ 그러나 12월 31일에 처음 면허세를 낸 사람이 1일 후인 다음해 1월 1일에 또다시 1년치 면허세를 내는 경우가 발생

- 면허세 납부금액 보다는 자주 부과함에 따른 번잡함에 대한 민원이 다수 발생

⇒ 납세자가 하반기에 면허를 취득할 경우에는 익년도 면허세 정기분(1월 1일 기준)을 선납할지 여부에 대한 선택권 부여

■ 법인세할 주민세 징수기준을 명료화

○ '법인세할 주민세'(법인세의 10%)의 부과기준이 사업장별 「종업원수」와 「건축물 연면적」으로 되어 있어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별로 신고·납부하고 있으며,

- 각 시·군·구별로 미달세액 발생시에는 가산세 부과

○ 납부총액은 법인세의 10%로 확정되어 있으나, 각 지자체별로 나누어 신고·납부하는 복잡한 안분계산 책임을 기업체가 부담

- 수시로 변경될 수 있는 2개의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지자체별 안분계산이 복잡하고 실제 검증이 어려운 실정

⇒ 「사업장 건축물연면적」, 「사업장별 종업원수」의 기준을 단순화

■ 담배소비세에 대한 납세담보 기준 신설

○ 담배소비세의 납세보전을 위해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는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

- 그러나 구체적 기준이 없어 지자체별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담보제공을 요구함으로써 업체간의 부담차이가 크게 발생

○ 기업의 신용도·세금체납여부 등 객관적인 기준없이 자의적으로 담보제공을 요구함에 따라 업체간 형평성 문제 발생

⇒ 행정자치부에서 납세담보의 요구 또는 면제기준을 지자체에 통보

(3) 납세자를 위한 세무행정 강화

기본방향 ◆ 납세 절차의 합리적 개선 및 형평성 제고
◆ 국민의 권리보호 강화

■ 신고 · 납부기한연장 신청시 승인여부 통지 개선

○ 천재 · 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한내에 신고 · 신청 · 통지 · 납부 등을 할 수 없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기한연장을 할 수 있음

– 행정기관의 장은 납부기한을 연장한 때에는 문서로 지체없이 관계인에게 통지하며, 신청에 대해서는 그 승인여부를 통지

○ 기한연장 신청시 승인여부 통지가 지연되거나 통지되지 않는 경우 효력여부에 대해 명시되지 않아 법적 불안정성 발생

⇒ 기한연장을 신청한 때는 그 승인여부를 '통지'하도록 한 것을 '납부기한내에 통지'로 명확히 규정

■ 체납세금 납부자 등에 대한 "압류해제기한' 명시

○ 체납자에게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 한도안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

○ 그러나, 납부, 부과취소 등 압류해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해제기한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체납자가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도 압류해제가 지연되는 사례 발생

⇒ 압류해제요건 발생시 즉시 처리토록 법령에 명시

■ 국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시 사전통보제도 도입

○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국세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체납국세의 납부를 강제하기 위해 관허사업 제한 가능

○ 사업목적과 직접 관계가 없는 분야에 대해 허가취소를 가능(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하게 하고,

- 체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과도한 피해(비례의 원칙)를 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제도보완 필요

⇒ 사업의 주무관서에 관허사업 불허가 요구시 체납자에게 사전통보하는 제도 도입

■ 법정신고기한 후 신고범위 확대

○ 법정신고기한내(기한은 각 세법에 규정)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로서 '납부해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기한 후 신고를 허용

○ 세액공제나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기한 후 신고 자체가 허용되지 않아 환급세액을 받지 못함

- 기한내 과세표준신고서 미제출에 대한 제재로서 지나치게 과중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약

⇒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납세자의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도 법정신고 기한 후 신고를 허용

■ 법인세할 주민세 수정신고기한 확대

○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법인세할 주민세의 시·군별 안분세액에 오류를 발견한 경우 법인세할 주민세를 신고납부한 날부터 60일내에 수정 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

○ 국세의 수정신고기한은 세무당국이 '결정통지하기 전(최장 5년)까지'이나, 법인세할 주민세의 수정신고기한은 '신고납부한 날부터 60일'로 상대적으로 짧아 납세자에게 불리

세 목	수정신고기한	비 고
국 세	최장 5년 (세무당국이 "결정통지하기 전')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개월내 수정신고시 가산세 50% 감면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한 날부터 60일	60일내 수정신고시 가산세 면제

- 납세의무자에게 시정기회를 부여하는 권리구제기회를 확대하여 조세마찰과 조세징세비용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

⇒ 법인세할 주민세의 수정신고기한을 '부과고지하기 전'까지로 확대

■ 국세환급가산금과 미납가산세의 이자율 차이 축소

○ 국가가 국세를 잘못 부과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되돌려 주는 국세 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은 환급세액의 10만분의 10(년 3.65%)을 적용

- 납세자가 미납한 국세(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증여세 등)에 대한 미납부가산세의 이자율은 미납세액의 1만분의 3(년 10.95%)을 적용

○ 납세자 미납가산세의 이자율(년 10.95%)이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년 3.65%)보다 3배가 높아 형평성에 위배

- 행정우위적인 조세부과행태를 개선하고, 세무당국의 세금부과 잘못에 대한 견제를 위해 이자율 격차 해소 필요

⇒ 미납가산세와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 차이를 축소하는 방안을 강구(장기과제로 추진)

(4) 세무조사 및 절차의 개선

기본방향 ◆ **직권적 세무조사를 지양하고 합리적인 기준 및 절차 마련**
◆ **세무조사의 투명성 제고**

■ 세무조사 사전통지기한 연장

○ 정기 세무조사는 조사 개시 7일 전에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통지하도록 규정

○ 세무조사 사전통지기한 7일은 조사대상자의 준비기간으로는 짧아 조사대상자의 불편 초래

- 대기업의 경우 관련 자료의 양이 방대하고,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총계정원장, 보조장부, 영수증, 세금계산서, 전표 등 각종 증빙서류 준비에 상당기한 소요

※ 외국의 세무조사 사전통지기한 : 프랑스 15일, 독일 2주(대기업4주)

⇒ 정기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한을 연장(7일→10일)

■ 정기세무조사 선정시 무작위추출 방식 제한적 운용

○ 세무조사는 납세협력의무 위반, 불성실·무자료거래 혐의, 탈세 제보 등이 있는 경우의 수시선정과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을 위한 정기선정으로 구분하여 실시

- 정기선정은 최근 4년 이상 미조사시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납세자 이력, 세무정보 등 감안)에 따라 선정하고, 그 밖에는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해 조사대상을 선정

○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한 정기세무조사는 운에 따라 성실납세자가 선정될 수 있어 세무조사의 투명성 · 객관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 세무조사 선정방식중 무작위추출 방식은 제한적으로 운용하도록 명시

■ 세무조사 중 조사공무원에 대한 납세자의 소명기회 부여
○ 세무조사시 조사내용(쟁점이나 주요사항)에 대하여 현장에서 조사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조사공무원에게 직접적으로 소명을 제기할 수 있는 납세자의 권리 미흡

○ 세무조사 완료 후 조사결과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없이 일단 철수하였다가,
- 조사종결 처리 후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납세자의 부담 및 소명 기회가 적어지는 문제 발생

⇒ 세무조사 현장에서 조사내용을 납세자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납세자에게 소명 기회 부여

■ 세무조사 사전통지시 선정사유 통지
○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에는 조사대상 세목, 조사대상 기간, 조사기간, 조사사유(장기미조사, 무작위추출 등) 등을 기재하여 통지

○ 그러나,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통보하여 조사대상자의 불신 초래
- 보다 구체적인 선정사유(신고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 혐의, 위장 · 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 등)를 통보하여 세무조사대상 선정의 투명성 제고

⇒ 사전통지서 내용에 선정사유를 상세히 기재

■ 세무조사현장 요구자료 목록 작성 및 보관 의무화
○ 세무조사현장에서 조사공무원들이 과다하게 불필요한 서류 · 자료 등을 요구함으로써 기업의 부담 발생 및 불만 야기
- 세무조사현장에서 구두에 의한 조사공무원들의 자료요구가 많아 기업실무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는 등 조사권 남용문제 제기

○ 세무조사현장에서 조사공무원의 자의적인 자료요구를 견제하기 위한 내부 통제장치 마련 필요

⇒ 세무조사현장에서의 자료 요구는 모두 서면에 기록을 남기도록 의무화(목록 작성 등)

■ 세무조사기간 연장사유 명확화

○ 세무조사기간은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 의거, 조사유형별 조사기간(7~60일)을 기준으로 업종 및 규모를 고려하여 결정

- 조사범위 확대, 조사유형 전환, 조사개시일에 조사착수 못할 사유 있는 때, 기타 조사목적 수행을 위해 조사기간 연장사유가 있을 때에는 세무조사기간 연장 가능

○ 현행 세무조사 연장사유 중 '기타 조사목적의 수행'은 포괄 규정으로 남용 가능성이 큼

- 세무조사기간의 연장은 납세자의 부담을 직접 발생시키는 사안이므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

⇒ 현행 세무조사기간 연장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라. 향후 추진일정

○ 부처별 세부추진계획 수립 · 제출 : '06.4월

- 재정경제부, 국세청, 행정자치부 등

○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 이행 : '06년 중

○ 추진 상황 점검 · 평가 및 대책 보완 : 분기별

3.8 금융감독 및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

집필자 : 한광석 전문위원(2100-8823, kshan@opc.go.kr)

가. 정책 환경

■ 금융산업은 외환위기 이후 선진 감독제도 도입, 규제완화 노력 등에 힘입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선도업종으로 정착하는 과정

○ 이는 금융산업 구조조정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 대형화 및 금융상품의 다양화 등 금융혁신이 진전된 데 기인함

* 외환위기 이후 금융산업의 경제성장 기여율 현저히 상승
('96~'97년 5.7% → '00~'03년 8.7%)

■ 그러나 과도한 금융검사·감독규제는 금융업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금융산업 경쟁력 향상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음

○ 금융검사·감독규제의 투명성이 저하될 경우에는 법집행에 대한 예측가능성 저해

* WEF보고서('04, 104개국)의 한국 금융산업 평가 : 금융시장 정교성(49위), 은행 건전성(77위), 대출 용이성(81위), 증권거래 관련규제(55위)

* 감사원 설문조사('04년) 결과 금융회사 임·직원의 44.3%가 금융감독원의 제재 조치에 수긍하지 못하고, 64.5%는 권리구제수단이 부족하다고 답변

■ 또한 국제적 정합성 측면에서 미흡하거나 변화하는 시장여건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필요

○ 통합 운용되는 금융감독 및 예금보험제도는 업종별 특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며 금융시장 정상화와 함께 개선의 필요성 대두

나. 규제 현황 및 문제점

(1) 규제 현황

■ 금융감독제도는 '금융감독기구설치등에관한법률'(이하 감독기구설치법)과 각 금융업법 등에, 예금보험제도는 '예금자보호법'에 근거

○ 구체적 감독의 내용은 각 법률에 의해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감독규정,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관한규정'(이하 검사·제재규정) 등에서 규율

* 금융감독원은 각 감독규정에 의거, 금융감독위원회 승인을 거쳐 집행규정인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정·운영

* 한국은행 및 예금보험공사도 관련법 등에서 제한적 감독권(검사권) 규정

○ 예금자보호법은 예금보험제도(부보대상 예금·기관·요율·한도, 예금보험 공사·기금의 운영 등) 전반을 규율

■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업무는 감독기구설치법에 의거해 설립된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 수행하고 있음

○ 금융감독위원회는 감독규정의 제·개정, 인·허가, 검사·제재, 금융감독원 지시·감독 등 업무를,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 업무·재산 검사, 제재(법령 규정시) 등 업무를 수행

○ 금융감독위원회는 정부조직(공무원 조직)으로 위원회(9인) 및 사무국으로 구성되고, 금융감독위원회원장이 금융감독원장을 겸임

○ 금융감독원은 무자본특수법인(민간기구)으로 금융권역별 배분기준에 따라 부과하는 금융회사 분담금 등을 통해 운영재원을 조달

■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는 수시로 가능하며, 검사결과에 따라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음

○ 금융감독원은 자체 판단으로 검사에 착수(검사결과 금융감독위원회 보고)하며, 검사결과 필요시 일부 조치를 직접 결정·시행

* 금융감독원은 부문검사시 일부 검사결과 보고생략 가능, 금융기관 주의·경고, 임원 문책·경고 및 직원 징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조치 등 가능

○ 금융회사의 폐쇄·영업정지·업무정지, 임원 해임권고·업무정지 등 중대조치는 금융감독원 건의로 금융감독위원회가 수행

■ 금융회사가 건전성 기준이나 경영실태평가 결과 일정등급 미만일 경우 법령에 의한 강제적 시정조치가 취해지고 있음

○ 금융감독원은 경영개선권고(부실자산 처분, 자본금 증액, 이익배당 제한 등) 조치권, 경영개선약정서 제출명령권 등을 행사함

* 경영개선요구(영업제한, 조직축소, 임원진 교체, 자회사 정리 등) 및 경영개선명령(주식소각, 합병, 영업양도, 업무정지 등)은 금융감독위원회가 행사

○ 이 밖에 지시·협조요청 등의 다양한 형태로 금융회사에 대해 광범위한 행정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음

■ 현행 예금보험제도는 5개 금융업종별로 보험료율이 차등적용되고 동일업종 내에서는 동일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있음

○ 예금보험제도는 종전 개별법에 근거하여 독립적으로 운영되다가 외환위기 이후 '98.4월 예금보험기금으로 통합 운영

* 예보대상 금융회사 : 은행, 증권, 보험, 종금, 상호저축은행(신협은 '04년부터 제외)

○ '03년부터 25년간 전 업종에 대해 특별기여금 0.1%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음(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 특별기여금)

(2) 문제점

■ 금융감독당국은 감독기구설치법에 따라 금융권역 전반에 대하여 포괄적인 감독권을 행사하고 있으나, 지나친 감독권 행사는 금융산업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

○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을 통제하도록 되어 있으나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감독위원회원장을 겸임함에 따른 한계 발생

○ 각종 제재조치 요건 및 경영실태평가 기준 등이 불명확하게 규정된 경우가 있어 이를 시정할 필요

* 당해 금융회사 정관위반, 감독기관 지시불이행,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등 사유로 임원 '문책경고' 가능

* 추상적이고 불투명한 기준(정성적 판단기준, 가중치·배점 비공개)에 의해 경영실태평가가 이뤄지고, 이를 근거로 적기시정조치 가능

○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해 징벌적 제재를 가하는 것은 당사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

■ 민간기구(금융감독원)의 행정조치권 행사, 불투명한 재원부담 방식에 따른 금융회사의 불만 발생

○ 현장 검사기관의 제재권·승인권, 일부 검사결과에 대한 보고·심의 생략 권한 부여 등으로 견제·감시 미흡

○ 금융감독원 소요예산에 대한 심의·통제(현재 금융감독원이 편성, 금융감독위원회 승인) 미흡 및 합리적 배분기준 미비로 금융회사 불만 유발

* 감독분담금 총액은 '05년 1,585억 원이며 '99년 이후 6년간 연평균 19%p씩 증가

○ 법령의 근거가 미흡한 감독규정이 존재하고, 금융회사의 영업활동을 간섭하거나 제약하는 행정지도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 필요

* 법령의 위임범위를 넘어서거나 포괄적으로 위임된 감독규정 등

■ 금융정책부서 주도로 예금보험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공적자금상환 등을 위한 보험료 징수 등으로 금융회사의 부담 가중

○ 보험료 부과시 금융권역, 금융회사별 특성(건전성·위험수준 등)에 대한 고려가 미흡

* 증권, 보험의 경우 은행에 비해 시스템 리스크의 개연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요율 부과

* 동일한 보험료율 적용으로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 우려 및 건전한 금융회사의 부담 가중에 따른 형평성 문제발생

○ 장래 보험료 부담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목표기금제의 도입 필요
*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목표기금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미국은 추정 부보예금의 1.25%를 목표적립률로 설정
* '05년 금융사가 부담한 예금보험료 총액은 6,628억 원〈A보험사의 경우 당기순이익의 44.8%('03), 29.3%('04) 부담〉

다. 개선 방안

(1) 불투명하고 과도한 감독권한의 조정

기본방향 ◆ 금융검사·감독 권한의 합리적 조정
◆ 금융감독기관의 자의적인 검사·감독 개선

■ 임·직원에 대한 징벌적 성격의 제재수단 개선
○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해 해임권고·업무정지·문책(면직·정직·감봉 등), 주의·경고 등 제재수단 행사
- '제재행위'가 문제를 바로잡거나 지속·확산을 방지하는 '시정'수단이 아닌 '징벌' 수단으로 활용되어 개별회사 경영진에 의해 규율될 영역에까지 감독당국이 개입하는 결과 초래
- 제재종류별 요건이 사실상 동일하고 단지 감독당국의 판단(정상참작 등)에 의해 수준이 결정되게 함으로써, 제재권이 금융회사에 대한 불필요한 통제 권력으로 작용케 될 소지

⇒ 외국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현행 임직원에 대한 징벌적 제재수단을 개선하는 방안 제시

■ 각종 행정조치 등에 대한 권리구제장치 강화
○ 검사·제재·적기시정조치 등 각종 감독과정에서 행사되는 각종 권한 중 상당 부분을 금융감독원이 보유·행사하고 있음

- 각종 시정조치, 명령 등 당사자에게 부담이나 불이익을 주는 사항도 금융감독위원회 규정으로 금융감독원에 위탁된 경우가 있어,
- 금융감독원에 의한 조치의 경우 충분한 권리구제(심의) 기회 보장, 행정행위의 효력 및 책임성 등에서 문제를 초래할 소지

< 금융감독원 행사권한 >

	행사권한 내용	관련규정
회사 · 임원 · 직원 제재관련	– 회사 : 시정명령, 인허가취소 · 영업정지 등 건의 – 임원 : 문책경고 · 주의, 해임권고 등 – 직원 : 문책(면직 · 정직 · 감봉 · 견책 · 주의 등)	감독기구설치법제41조 등 각 업법 (예:은행법 54조 등) 검사 · 제재규정 17조 등,
검사관련	– 검사결과 금융감독위원회 보고생략 – 검사결과 조치 또는 조치 요구 – 조치요구사항 이행 부진시 제재	검사 · 제재규정 제13조 · 제14조 · 제15조
적기시정조치 등 관련	– 경영개선권고조치, 경영개선계획 승인 – 경영개선약정서 제출명령, 협약 체결	각 금융업 감독규정

⇒ 금융회사 또는 관련자에게 부담이나 불이익을 주는 행정조치의 경우, 권리구제에 미흡함이 없도록 관련 규정 정비

■ 경영실태평가 기준 투명화 · 명확화 등

○ 금융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나 제재조치의 근거로 활용되는 경영실태평가의 방법이나 기준설정 등이 금융감독원의 시행세칙에 위임

- 5개 평가부문의 배점이나 가중치가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고, 각 부문의 비계량평가항목이 불투명(추상적)

  * 세부 비계량평가 항목의 평가요소나 항목별 배점의 미공개 및 종합등급(5개 등급)의 결정근거 불투명

- 세부 평가기준이나 그 변경사항이 사전에 명확히 공지되지 않아, 금융회사의 건전 경영 유도기능 미흡(평가주기 · 시기 등도 불명확)
- 평가결과를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거나 승인받는 절차가 없고 당해 금융회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어 금융회사 불편 초래

⇒ ① 금융감독위원회 감독규정에서 경영실태평가의 기준을 정하도록 개선하되, 경영실태평가의 세부시행사항, 평가방법 및 절차, 시장상황의 변동에 따른 수시 변경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함

② 평가기준 및 내용을 최대한 객관화·명확화하며, 기준(점검항목, 배점 등)을 사전에 금융회사에 공개하고 사후적으로 충분한 설명 및 이의제기 절차부여
③ 적기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계량항목과 비계량항목을 적용하되 비계량항목은 객관화·최소화

■ 영업 일부·전부정지 및 폐쇄조치 사유 구체화
○ 개별 금융업법에서 각종 규정·지시 위반, 건전경영 저해 등을 사유로 금융회사 영업 일부를 정지(6월 이내)할 수 있도록 규정
- 금융회사(특히 은행)의 영업 일부·전부정지 조치 등은 회사의 파산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 사안임에도 조치사유가 지나치게 포괄적(예: 예금자 등의 이익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또한 금융기관 영업의 인·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영업 정지 요건 등을 금융감독위원회의 검사·제재규정에 위임
- 조치의 중대성에 비추어 금융감독위원회 규정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고 규정의 내용도 구체성이나 객관성 미흡

⇒ ① 개별 금융업법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영업의 일부·전부 정지 조치 사유를 명확히 규정
② 금융회사 인·허가 및 등록 취소, 영업정지 사유 등은 객관화·구체화하고 가급적 상위 법령에 규정

(2) 불합리한 감독규정·행정지도 등 법체계 정비

기본방향 ◆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규정 개선**
◆ **과도하고 불투명한 행정지도의 투명성제고**

■ 법령상 근거가 불분명한 규정 정비
○ 법령상 명확한 근거가 없이 감독규정으로 금융회사의 업무를 제한하거나, 법령의 위임범위를 넘어서는 감독규정 존재

❍예시
- 신용카드업자의 법인회원 대상 자금융통거래 금지(여전업감독규정 제6조)
- 여신전문회사의 위험관리 조직설치 의무화(여전업감독규정 제13조) 등

○ 법률조항에서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제한규정을 시행령에 두는 경우 존재

❍예시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는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 · 직불 · 선불카드관련 한도를 제한하거나 이용한도 책정시 준수할 사항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

→ 여전법시행령 제7조의2는 위임한 사항 이외에 신용카드업자가 정하는 약관의 내용, 가맹점 관리, 신용정보의 제공 · 이용시 동의절차, 채권추심 준수사항 등 관계없는 사항까지 규정

○ 법령에서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 정하는 기준 · 명령 등에 따르도록 하는 경우 존재

❍예시

– 신용정보법 제20조 (신용정보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 ①신용정보업자등은 신용정보의 수집 · 처리 및 이용 등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부관리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 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 (감독)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거래자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금지사항이나 의무의 내용을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금융감독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개별 회사의 자율성을 침해
– 법령을 위반한 경우 등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일반적 목적만을 규정한 뒤 포괄적인 감독이나 명령권을 부여

⇒ ① 법령에 명확한 근거 없이 감독규정을 통해 금융회사의 업무를 제한하는 감독규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개선방안 마련
② 법률의 위임범위를 넘어서는 각 금융법 시행령 규정을 발굴하여 정비하는 방안 마련
③ 법령에서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금융회사 영업 · 경영에 대한 금융감독 권한을 규정한 조항을 발굴하여 권한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방안 마련

■ 행정지도관련 투명성 제고체제 구축

○ 금융감독기관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형태의 행정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음

❍ 유형 1 : 암묵적 신고억제(자동차보험상품 요율 차등화 신고관련)
- 현행 보험요율은 인적요소(성 · 연령 · 사고경력 등)와 차량 용도별 차등화만 할 수 있고, 차량모델에 의한 차등화 등은 불가능
- 무사고 기간별 할인율(1년 경과시마다 10% 할인) 및 사고시 할증률을 실제 위험에 따라 적용하지 못하고 획일적인 기준에 따라야 함

❍ 유형 2 : 회의소집 후 업계자율 합의 형식 영업제한(신용카드사 고객 포트폴리오 제한)
- 신용카드사 회원분포는 중간등급을 중심으로 유지하고 기타 등급은 상위와 하위 등급으로 반분하여 정규분포 형태를 유지(중간등급 회원분포를 40~50%로 유지) 토록 지도('02.7)

- 과도하고 불투명한 지도행위로 금융회사 영업활동의 자유가 침해되고, 카르텔 등 경쟁제한 행위가 발생할 우려
-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되어 자의적 감독수단으로 남용될 우려

⇒ ① 행정지도(지도 · 지시 · 협조요청 등)를 발하는 경우 충분한 의견수렴 및 검증절차를 거치고 중요한 사항의 경우 금융감독위원회 보고 후 시행하며 행정지도 공개를 제도화(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후보고 가능)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행정지도 사항에 대해 정기적으로(예: 6개월 단위) 금융회사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존폐(연장) 및 규정화 여부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개선

③ 자동차보험 요율차등화 건은 '금융산업 진입 · 영업규제 개선('06.3.7) 과제'에 포함된 '자동차보험 예정이익률 설정규제 폐지'방안과 통합, 개선방안 추진(유형 1)

(3) 금융감독 분담금제도 등 개선

기본방향 ◆ **감독분담료율체계 및 결정방식의 합리적 개선**
◆ **금융감독원 예산 및 감독분담금의 외부통제장치 강화**

■ 감독분담료율체계 합리적 개선

○ 현행 감독분담금 분담료율의 최고한도는 금융회사의 총부채를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금융권역별로 가중치가 부여

* 은행권(3/10,000)에 비해 보험업은 5배, 증권업등 기타는 10배의 가중치 부여(과거 은행감독원에 대한 한은 경비부담으로 은행권은 부담이 적었고 감독원 출범 후에도 동 부담수준 유지로 타 권역의 불만발생)

* 금융감독원의 예산에서 감독분담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67.6%('05년)이며 '99~'05년 기간 동안 감독분담금의 연평균 증가율은 19%p에 달함

구 분		은행	비은행	보 험	증 권	계
2005	분 담 액(억원)	760		484	341	1,585
	분 담 률(%)	47.9		30.6	21.5	100.0
	분담요율(%)	0.683912/1만		2.552574/1만	9.458803/1만	–
2000	분 담 액(억원)	369		200	140	709
	분 담 률(%)	52.1		28.2	19.7	100.0
	분담요율(%)	0.5098/1만		1.7786/1만	4.2132/1만	–

– 명확한 근거나 합리적 기준이 없이 각 금융권역별로 총부채에 5배, 10배의 가중치를 부과하고 있어 금융회사의 불만 발생

– 분담금료율 및 징수방법 등을 감독규정(금융기관분담금징수규정)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고 감독규정 자체도 매년 변경

〈금융권역별 불합리한 부과사례〉

❍ 비은행부문(상호저축은행)은 현재 은행부문과 동일하게 낮은 요율을 부과하고 있으나 위험도를 고려할 때 불합리

❍ 은행, 자산운용사의 신탁재산도 금융감독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담금부과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증권사의 경우, 고객예탁금을 증권금융에 예탁하고 있음에도 증권사의 부채로 간주하여 요율 적용

❍ 감독분담금 산정시 총부채금액에서 지급준비예탁금 중복계산(저축은행중앙회)

⇒ ① 금융권역별로 감독수요 및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부담기준 마련 및 객관적 재무지표에 따른 금융회사별 부담금액 산정방식 제시

· 금융감독위원회는 '06.5까지 분담료율결정 및 배분기준을 정하기 위한 TF를 구성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국무조정실과 협의('06.7한)

② 새로운 요율체계는 시행령에 반영토록 하고 불가피하게 감독규정에 위임하는 경우에도 예측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위임

■ 금융감독원 예산 공시확충 등 통제장치 강화

○ 금융감독원 예산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금융감독위원회 원장의 금융감독원장 겸임에 따른 한계 발생

- 예산·결산 내역도 간략하게 공시되어 감독분담금 납부자들이 관련 정보획득이 곤란

* 감독원 예산규모는 2,445억원('06), 인원은 1,653명('05.12월말)

⇒ ① 예산·결산 및 세부경비지출 내역 등을 행정기관 수준으로 공시

② 예산편성 및 결산과정을 공개하고 이해관계자에 의한 통제장치 마련

■ 유가증권 발행분담금 부과체계 등 개선

○ 금융감독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발행인은 발행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함(은행은 유가증권 수수료 면제)

- 우리나라의 경우 유가증권 발행 수수료율이 주식 0.018%, 채권 0.09%(만기 2년 초과)로 금융선진국에 비해 높음
- 은행권에 대한 면제는 금융업권간 형평성 문제 발생

* 은행채(주식관련사채 포함) 예상 발행분담금 : 연간 약 177억원

⇒ 유가증권의 종류나 발행회사에 따른 발행수수료 부담의 차별문제 해소방안 마련

(4) 예금보험제도 등 개선

기본방향 ◆ **예금보험료 체계의 합리적 개선**
◆ **금융감독 당국 간 협력체제 강화**

■ 예금보험제도 개선

○ 예금보험료는 예금 등의 평균잔액(보험업은 책임준비금 및 수입보험료)을 기준으로 일정비율을 각 금융권역별로 동일하게 부과

- 금융업권별 위험정도에 따른 보험료 부과가 합리적이지만 현행 업권별 보험료 부과기준은 불명확

  *'04년 예보료 납부시, A보험사(1,165억원)에 비해 자산규모가 2배인 B은행은 1,192억원을 납부

- 금융회사의 고위험 선호 등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하고 우량사와 부실사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
- 현 제도는 사전에 정해진 기금적립의 목표수준이 없이 금융회사에 계속 보험료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금융기관의 예측가능성을 저해

⇒ 재정경제부는 제시한 계획대로 예금보험료율 개편을 차질 없이 추진('07년 하반기 중 제도개선을 위한 법령개정 완료)

■ 금융감독 당국간 보완·협력체제 강화

○ 현재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간에는 공동검사와 자료협조 등 금융정보를 공유·협력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금융감독원이 적기시정조치 등을 포함하여 감독권한과 정보를 사실상 독점함에 따른 문제 발생 우려
- 예보는 금융기관 정리에 따른 비용부담주체임에도 부실징후단계에는 참여가 제한되어 손실부담 최소화에 한계가 있음

  * 미국은 공적자금 투입최소화를 위해 FDIC에 적기시정조치권을 부여, 캐나다는 CDIC독자 정기검사 혹은 감독기구의 승인·협의 후 조사 실시

⇒ 금융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관련 검사 진행상황·검사결과 등에 관한 정보공유 및 부실우려 인정기준의 구체화·명확화 등을 포함, 금융감독기관간 협조문제에 관해 관련기관간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국무조정실에 제출

* 단, 공동조사 등으로 인한 금융회사의 추가적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개선방안 마련

■ 예금보험위원회의 자율성 강화

○ 예금보험위원회(이하, 예보위)는 예보의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당연직 위원(5인)과 위촉위원(4인)등 9인으로 구성

- 예금보험은 상호공제의 성격이 있으나 예보위의 위촉위원구성에 있어 이해당사자인 금융권의 의사반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위촉위원의 경우도 정부(재정경제부 장관)의 위촉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예보의 자율성 확보에 한계가 있음

* 현 예금보험제도는 '03년 이후 정부의 지원 없이 민간의 순수한 예금보험료만으로 운용되고 있음

⇒ 예보위의 자율성 강화차원에서 위촉위원의 경우 금융권에서 추천하고 금융소비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인사를 추가로 위촉하는 방안 검토

라. 향후 추진계획

○ 부처별 세부추진계획 수립 · 제출 : '06.5.19

○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 이행 : '06.8.31

○ 추진 상황 점검 · 평가 및 대책 보완 : 매월

3.9 에너지 · 네트워크산업 관련 규제 개선방안

집필자 : 강진규 사무관(Tel. 2100-8797, k825an@ftc.go.kr)

가. 정책환경

■ 1970년대 이후 중화학공업 육성책과 급격한 산업화로 인하여 에너지 소비량이 급격히 증가

○ 우리나라는 에너지소비량 세계 10위(1인당 소비량은 세계 27위)

- '90~'02년간 에너지소비 증가율은 연평균 6.97% 증가

■ 에너지원별 구성비는 석유(47.6%)가 가장 높고, 석탄(23.8%), 원자력(15.1%), LNG(11.2%) 순임

< 우리나라의 1차 에너지원별 소비 추이 >

(단위 : 백만TOE)

구 분	'80	'90	'00	'01	'02	'03
석 탄	13.2	24.4	42.9	45.7	49.1	51.1 (23.8%)
석 유	26.8	50.2	100.3	100.4	102.4	102.4 (47.6%)
LNG	–	3.0	18.9	20.8	23.1	24.2 (11.2%)
수 력	0.5	1.6	1.4	1.0	1.3	1.7 (0.8%)
원자력	0.9	13.2	27.2	28.0	29.8	32.4 (15.1%)
기 타	2.5	0.8	2.1	2.5	2.9	3.2 (1.5%)
(합 계)	3.9	93.2	192.9	198.4	208.6	215.1 (100%)

■ 사업내용 측면에서는 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해 업종별 진입장벽을 설정했으나 부분적인 민영화 · 경쟁도입이 진행 중

○ 도시가스사업과 지역난방사업간 경쟁, 발전부분 한전 자회사분리 및 민간발전회사 허용 등

■ 에너지산업의 특성상 안전 · 환경문제 등과 관련하여 설비의 설치 및 유지 · 관리에 대해 엄격한 규제 시행

○ 기술발전 및 사업여건 성숙 추세에 따라 재검토 필요

나. 현황 및 문제점

(1) 법령현황

■ 에너지 산업분야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법률은 전력 · 석유 · 가스 · 집단에너지 분야 등에서 총 28개임

○ 에너지 · 네트워크 산업분야를 총괄하는 에너지기본법이 '06년 3월 제정 공포됨

○ 그밖에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촉진법 등이 있음

■ 도시가스 · 지역난방 사업 분야에서는 해당 사업분야를 규제하는 개별 법령들이 있음

○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한국가스공사법 등

■ 전력사업 분야는 기본법인 전기사업법 이외에 8개 법률이 있음
○ 한국전력공사법, 전원개발촉진법, 전력기술관리법, 농어촌전기공급사업촉진법,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

■ 석유사업 분야는 기본법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이외에 송유관안전관리법, 한국석유공사법 등이 있음

■ 전파 · 방송등 기타 네트워크산업 관련 법령으로는 전파법,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등이 있음

(2) 규제현황

■ 에너지 산업분야의 경우, 국가 차원의 에너지 이용 효율화 측면을 고려하여 에너지원(源) · 공급권역 또는 공급단계별 독점권 부여
○ 지역난방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의 지역별 독과점 체제

○ 송 · 배전 분야에서의 한국전력공사의 독점 등

■ 독점적 프랜차이즈 체제에 따라, 타 에너지 사업분야의 진출을 제약하는 여러 규제제도 설치
○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취사용 도시가스 공급 제한

○ 구역형 집단에너지사업자(CES)의 한전 사업지역 진입 제한 등

○ 그 밖에 산업간 교차보조(예 ; 지역난방지역 열공급을 위한 발전 손실분에 대한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 현상도 발생

(3) 문제점

■ 요금규제로 인한 가격체계 왜곡으로 시장기능 저하 및 사업자간의 공정 경쟁여건 저해

○ 합리적 근거없는 교차보조나 가격차별 등으로 네트워크 산업간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차등화 하는 제도 존치

*지역난방 열공급을 위한 발전 손실분에 대한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

○ 전력요금의 용도별 원가회수율과 요금체계가 상이하여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 및 소비를 유도하지 못하는 문제 발생

*농업·산업용 저요금으로 전력 다사용 부문에 대한 보조 결과 초래

*주택용 요금 누진제로 구역전기사업자가 주택용 사업만 집중할 우려

■ 독점사업 부문에서는 소비자에 대한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이나 불공정행위에 대한 견제장치 마련 필요

○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거나 불합리한 요금·부담을 부과하는 등 독점체제하의 지배력 남용 사례

*지역난방 구역 내 취사용 도시가스 공급 거부 등

○ 제한된 범주 내에서 경쟁이 가능한 경우에도 경쟁도입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과도한 규제

*집단에너지 고시지역 내 일정 규모 이상 열원(熱源)설치 규제 등

○ 한국전력의 배전부문 독점에 따라 효율적인 요금부과 시스템 개발노력 미흡

*시간별 검침, 원격검침 등 IT기술 활용 시스템 미비 등

■ 또한 과도한 환경·안전 규제로 인해 네트워크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저해하고 소비자에 대한 비용전가 발생

○ 안전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도 형식적인 점검절차를 존치하거나 불합리한 행정절차 규정으로 행정부담 발생

*도시가스관 매설지역의 경우 15Km마다 안전점검원 선임 의무화 등

○ 에너지·네트워크 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산지관리법·도시공원법등 다수 법령에서 중첩적인 규제 부과

*완충녹지 지역에 대해서도 전주의 지중화 의무 부과 등

■ 통신 · 방송 등 여타 네트워크산업의 경우, 새로운 주파수 자원의 발굴 지원과 신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제도 미흡
○ 민간 창의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보완 필요

다. 개선방안

(1) 에너지산업 진입규제 개선

기본방향 ◆ **불합리한 에너지사업 진입 규제 개선**
◆ **에너지 이용 효율화 및 소비자 선택권 보장**

■ 집단에너지사업자 선정 절차 개선
○ 지역난방사업이 실시되기 위해서는 먼저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의 지정 · 공고가 필요
–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의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우
– 행정기관 · 정부투자기관 등이 주택 · 산업단지 등의 개발사업 계획 수립을 위해 협의한 결과 타당성이 있을 경우 등

○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 선정이 정부부처나 공기업 위주로 진행되어 민간사업자의 참여기회 보장 미흡
⇒ 지역난방사업자 또는 참여희망자가 신청하는 경우 집단에너지공급대상 지역의 지정을 검토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또한 집단에너지 공급 지역 지정시 개발사업 시행자(지자체, 토공, 주공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음
– 집단에너지 사업 관련 주요 이해 당사자인 에너지사업자 등의 참여는 배제
⇒ 집단에너지 공급지역 지정시, 에너지사업자등의 의견 진술기회 보장방안 마련

○ 집단에너지사업 허가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에 설명태도 감점규정이 있어 공정하고 자유로운 평가 저해 우려
– 상대방 사업자 또는 사업계획서에 대한 비교 또는 비판,
– 사업계획서 내용과 다른 설명을 할 경우 등

⇒ ① 사업계획서 설명태도 관련 감점 등 자의적 평가의 소지가 있는 항목을 삭제
② 소비자에게 유리한 공급조건 제시에 대한 평가항목 추가 및 비중을 강화하는 방안 강구

■ 지역난방구역내 취사용 도시가스 공급 관련

○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내 취사전용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도시가스사업자들이 사업성을 이유로 공급을 기피

- 취사전용의 도시가스는 사용량이 적어 설비투자비 및 관리비 감안시 경제성이 없어 공급 곤란하다는 입장

○ 이에 따라 대상지역내 주민들이 LPG 등 타 연료를 사용하는 등 불편 초래

*해외의 경우에는 취사용으로 전기를 주로 사용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전기요금 누진제 등으로 채택 곤란

⇒ 택지개발사업자나 지역난방사업자 등이 취사용 가스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가스사업자에게는 공급의무 부여(도시 가스사업자가 택지개발사업자등이 설치한 가스설비를 이용하여 공급할 경우 초과이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하되, 공급의무 미이행시 공급구역 조정후 별도 사업허가 가능하도록 규정

■ 집단에너지 고시지역 내 폐열사용 규제 관련

○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보일러 등 열생산시설을 신·증설하고자 할 경우 허가 필요

- 소형 열병합발전설비의 폐열을 열 생산설비로 유권 해석하여 폐열사용을 금지함으로써 설비 도입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음

○ 동일한 개념인 소각장 폐열의 경우는 지역난방 고시지역 내에서도 열생산 시설이 아닌 설비로서 사용인정을 받는 반면에 열병합발전은 일반 열생산 시설로 유권해석하고 있어 도입 불가

*부천터미널 : 전력 최대수요 관리 및 에너지절감 시설로서 비상발전 겸용 열병합 발전기 도입검토 중 배열이용 불가 판정을 받고 검토 중지

⇒ 비주거용 소형 열병합발전의 폐열활용 시설은 열생산시설 범위에서 제외(관련시설 설치시 지역난방사업자와 협의 의무화)하는 방안 검토
(열생산설비 신설규제로 인해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과 집단에너지 설비이용에 따른 이익이 균형을 이룰수 있도록 개선)

■ CES사업의 공급능력기준 및 구역제한 완화

○ 분산형 전원개발을 통해 발전소의 신규건설 수요 억제 및 원활한 전력수급 보장을 위해 구역형 집단에너지(Community Energy Supply System : CES)사업 도입

○ CES사업 설비 요건이 공급구역 전력수요(최대전력)의 70% 이상으로 지나치게 엄격하여 진입장벽으로 작용

○ 또한 한전의 기존 사업구역에 대해서는 CES사업이 허용되지 않고 신규 지역에 한해서만 CES가 가능하여 사업추진에 한계

⇒ ① CES사업 허가시 시설용량 기준을 완화하거나 전력수요 산정방식을 개선하여 진입장벽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한전의 배전망 미보유 구역에 대한 CES사업 허용 명확화

② 전력시장의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금제 및 전력 보완공급약관 검토 후 개선방안 마련

■ CES사업 관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

○ CES사업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사업허가를 받으면 전기사업법에 의한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나,

- 공급규정(약관)의 경우에는 전기사업법과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인허가절차를 각각 적용

⇒ 공급규정 관련 중첩적 인허가 절차 개선

(2) 에너지사업자간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 개선

기본방향 ◆ **에너지사업자간 공정경쟁 여건 조성**
◆ **독점사업 분야에서의 우월적 지위 남용 억제**

■ 기존 도시가스 공급지역에 대한 지역난방 공급 관련

○ 지역난방사업자가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이외에도 난방을 공급하여 기존 도시가스사업자와 마찰 초래 발생

- 이 경우 주로 열전용 보일러(HOB)방식을 통해 난방만 공급

○ 산업자원부 공고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상 지역난방사업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지역에서만 사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이 구속력이 없어 지역난방의 대상지역외 공급에 관하여 논란 초래

⇒ 소비자가 난방방식을 용이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

■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한 간접보조 관련

○ 한전 발전자회사는 지역난방사업자에게 낮은 가격으로 열을 공급하는 대신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지원을 받고 있음
- 경제적인 급전과 무관하게 열공급 우선 가동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회수하지 못하는 원가 상당금액을 지원

*남동발전의 경우 '04년 245억원, '05년 285억원을 각각 지원받음

○ 이에 따라 지역난방사업자와 도시가스사업자간 공정경쟁 문제 및 전기소비자의 열소비자에 대한 보조문제 발생

⇒ 열제약 발전에 대한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 단계적 폐지 방안 검토

■ 열전용보일러(HOB)용 가스 직공급 관련

○ 지역난방사업자의 용량 100mW 이상 열병합보일러(CHP)용 연료는 한국가스공사에서 직도입하나, HOB용 연료는 도시가스사를 통해 소매가로 구입

○ 동일한 발전 용도의 천연가스 구매선이 이중화됨에 따라 중복배관 문제 등 발생

⇒ 시설용량 및 용도에 관계없이 지역난방사업자가 한국가스공사에서 LNG를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 검토
(과도한 가스공급 관련 규제로 경쟁의 왜곡이나 설비투자의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

■ 열병합발전기 송전접속설비 이용방법 개선

○ 열병합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송전사업자인 한국전력에 공급하기 위한 송전설비의 설치비용을 열병합발전사업자가 부담하고 있음
- 반면 한전의 발전 자회사(한국수력원자력 등 6개사로 한전이 100% 지분소유)가 필요로 하는 송전설비는 한전이 설치

○ 이에 따라 열병합발전회사(민자 발전회사도 동일)는 전력의 생산 원가에서 한전의 발전 자회사보다 원천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인해 불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한국지역난방의 송전접속설비 비용 약 200억원

⇒ ① 한전의 발전자회사와 민간 발전사업자간에 공정한 경쟁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송전망 접속비용 부담방안을 마련(한전이 소유하고 있는 발전자회사의 접속설비에 대한 조속한 비용정산절차 이행)

② 공용접속망 구성의 최적화를 위해 관련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한전과 발전회사간의 합리적 접속비용 부담 개선방안 마련

(3) 에너지산업 가격규제 개선

기본방향 ◆ **불합리한 교차보조 · 가격차별 제도 개선**
◆ **에너지 이용 효율화 및 소비자 선택권 보장**

■ 천연가스(LNG) 도매요금 관련

○ 천연가스의 도매요금은 원재료비와 공급비용으로 구성되며, 소매요금에도 반영되어 관련 산업에도 영향을 미침

– 공급비용은 개별 원가주의 원칙에 따라 조정

< 용도별 도시가스 도매공급비용 >

(단위 : 원/㎥)

구 분		도매 공급비용
발전용	동절기	37.59
	하절기	18.55
	기 타	28.07
주택난방용		87.57
일반용		35.01
산업용		24.84
열병합용(자가용)		18.69
집단에너지용	동절기	65.84
	하절기	0
	기 타	24.84

○ 천연가스의 공급비용은 소매용도별 차등보다 계절별 차등요인이 월등히 높음에도 소매용도별로 지나치게 과도한 차등 부과
- 연료비 측면에서도 도시가스용과 발전용은 수요패턴이 계절별로 상이하므로 수급 조절비용 감안 필요

⇒ 현행 용도별로 세분화된 도시가스 도매공급비용을 천연가스의 저장비용 및 네트워크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한 공급비용체계로 개선하는 방안 강구

■ 지역난방에 대한 열요금 상한제 규제 개선

○ 지역난방 열요금 중 고정비에 대해서는 상한제 규제를 적용, 요금상한은 요금상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

○ 요금상한제의 운영 경직성 및 정부의 요금통제로 사업자의 사업성 저해요인으로 작용
- 상한요금은 1999년 이후 계속 동결되어 있어 조정이 필요

⇒ 열요금 중 고정비에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조정

■ 지역난방의 열요금 연료비 연동제 개선

○ 지역난방사업자의 열생산 요금은 연료비 연동제에 의해 매년 2월, 8월 두 번에 걸쳐 조정

○ 지역난방의 연료비 변동시기와 열요금 반영시기가 불일치하여 열공급 사업자가 일정기간 인상분을 부담
- LNG 특소세 인상, LNG 수입부과금 환급율 조정 등 세금, 부과금 변동에 의한 연료비 인상요인도 사업자가 부담

⇒ 세금, 부과금 등 정부방침에 의한 비용 변동분은 열요금에 즉시 반영하고, 연료비 변동에 의한 비용 변동분은 가능한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전력요금체계 개편방안 강구

○ 전기요금체계는 전기 사용 용도별로 요금체계를 달리 설정하고 있으나 용도별 원가 회수율이 상이하여 용도별 교차보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

○ 이에 따라 구역전기사업자는 평균원가가 높으면서 원가회수율도 높은 부분에만 사업을 하고자 하는 유인 발생

*주택용의 경우 평균원가가 높고 누진요금제로 되어있어 전력소비가 많은 계층이 밀집한 주택지역에 진출하고자 하는 유인이 특히 큼
- 이는 국가 전체의 에너지 사용 효율을 감소시킬 수 있어 구역전기사업에 대한 과다한 규제를 초래하고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가진 구역전기사업자의 진출을 방해

○ ESCO 사업자(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경우 에너지 소비량이 많아 에너지 절감효과가 클 수 있는 산업부문보다 누진제로 인해 요금절감 효과가 큰 주택부문에 집중하는 결과 초래
⇒ 누진제 완화 등을 포함하여 공급원가비용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요금체계 개선계획 및 실시간 원격검침 도입방안 마련

(4) 에너지산업 설비규제 개선

기본방향 ◆ 기술발전 추세 등을 반영한 규제수준 합리화
◆ 중첩적 규제절차의 통합으로 처리기간 단축

■ 가스시설 시공감리 규제 개선
○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시공감리는 가스안전공사에서 독점하고 있어 감리일정 조율, 감리원 부족 등의 애로 발생
- 공사현장 다량 발생시 감리원의 잦은 현장이동으로 일부공사 작업지연으로 민원 발생
⇒ 저압배관으로 수용가 인입공사, 단순연결 등 단구간(5m) 공사는 상주시공감리 대상에서 제외

■ 안전점검원의 선임기준 개선
○ 배관길이 15km마다 안전점검원 1인 선임이 의무화된 바, 중복으로 매설하는 배관에 대해서도 총 연장길이를 적용
⇒ 중복배관의 경우에는 1개의 배관 길이로 산정

■ 시공자 보험가입 한계의 명확화
○ 도시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온수보일러와 그 부대시설의 설치 및 변경공사를 하는 시공자는 보험가입이 의무화

○ 보험가입 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재갱신 여부 및 횟수, 시공사의 부도나 사업폐지시의 갱신 책임자 등이 불명확
⇒ 시공자의 보험가입에 대한 의무 및 범위를 명확히 제시

■ 공사계획의 승인/신고 개선
○ 현행 공사계획 승인 및 신고 대상 구간이 본관 및 공급관을 20m 이상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공사로 되어 있음
*기술검토 → 공사계획 승인(신고) → 시공감리 절차 필요

○ 현장 공사가 단구간 공사가 많음에도 공사계획 승인(신고) 관련 인허가 과정 소요시간 지체로 가스공급 지연
⇒ 승인 및 신고대상 공사구간의 범위를 적정한 수준으로 완화

■ 가스차단장치 설치 개선
○ 도로에 따라 매설된 배관에서 가스 사용자의 토지까지 분기되는 배관(관경65㎜이상)은 가스 차단장치 설치가 의무화
- 차단장치는 도로상에 위치한 분기점 부근에 설치

○ 차단장치를 도로상에 설치시 차량통행 등으로 접근이 어려워 긴급 상황 발생시 초기 대처에 지장 초래
⇒ 가스 차단장치 설치 장소를 가스사용자 토지안의 밸브조작이 가능한 장소 또는 분기점 부근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설치 및 유지관리비용은 사업자 부담 조건)

■ 압력조정기 설치 기준 개선
○ 현행 공동주택 등에 압력조정기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음
- 중압 이상으로서 전체 세대수 150세대 미만
- 저압으로서 전체 세대수 250세대 미만
○ 이에 따라 압력조정기를 설치하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지역 정압기를 설치해야 하는 문제점 발생
- 지역 정압기 설치부지 확보 곤란 및 설치비용 과다 소요
⇒ 공동주택 등에 대한 압력조정기 설치 기준을 적정한 수준으로 완화하되, 설치 및 유지관리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 위험물탱크 변경허가 절차 개선

○ 50만 리터 이상 옥외저장탱크의 주요설비를 변경할 때에는 기술검토(소방검정공사)를 받은 후 변경허가(소방서) 필요

*기술검토 처리기간 20일, 변경허가 기간 4일

○ 기술검토를 거친 변경허가 사항은 소방서에서 별도 검토 없이 소방 · 경보 등의 사항만 확인하면 되므로 허가절차 간소화 필요

– 변경허가 시 필요한 심사사항에 대한 세부적 · 전문적 검토를 소방검정공사에 위탁한 것이 '기술검토' 임

⇒ 기술검토 처리기간 중에 변경허가 절차를 진행하여 인허가 소요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업무지침 작성 · 보급

○ 옥외저장탱크 일부 교체 시 기존 판의 해체작업은 기술검토 및 변경허가 완료 후에 가능하여 추가적인 공사일정 소요

⇒ 기존 탱크의 교체를 위한 단순 해체공사는 변경허가(기술 검토)서류 접수 후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지침 작성 · 보급

■ 변경허가 면제 대상 조정

○ 위험물탱크 밑판이나 옆판을 겹침 · 육성하는 경우(정비), 표면적의 10% 미만 공사에 한해서만 변경허가를 면제함

– 이러한 공사는 기존철판 부식부위에 덧씌우기 등 단순작업이므로 탱크의 안전성에 직접 관련이 없으며 빈번하게 발생

⇒ 변경허가 면제 대상을 적정한 수준으로 완화

■ 옆판공사의 기술검토 면제

○ 위험물 탱크의 옆판을 교체하는 경우, 표면적의 10% 이내 공사에 한해 기술검토를 면제하고 있음

– 기존 설계에 대한 기술검토 후 설치된 옆판을 조각 단위로 교체하는 경우, 다시 기술검토까지 받아야 할 사항은 아님

⇒ 기술검토 면제 범위를 적정한 수준으로 완화(단, 탱크 밑판과 직접 연결된 옆판 부분은 현행 규정 유지)

■ 기타 기술검토 면제 대상 명확화

○ 기타 기술검토 면제대상 공사에 '소방검정공사가 부분적 변경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음

- 기술검토 면제 여부를 위탁기관인 소방검정공사의 판단에 맡기는 것은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 있음

⇒ 기타 기술검토면제 대상 공사의 범위를 지침 등으로 명확화

■ 가스안전공사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 확인 평가제도 개선

○ 액화석유가스의 종합적 안전관리대상자는 매년 1회 가스안전공사의 SMS(안전성향상계획) 감사를 수검토록 되어있음

- SMS 심사시 우수한 평가를 받아도 매년 평가를 받아야 하므로 안전관리우수사업에 대한 별다른 유인으로 작용하지 못함

*산업안전공단의 PSM(공정안전관리) 준수감사는 평가등급(P · S · M 등급)에 따라 준수감사 주기가 변동

⇒ SMS 심사 평가등급에 따라 감사주기가 변경되도록 개선

■ 폐기물 처리기준 현실화

○ 절연유의 첨가제로 사용되는 PCBs(폴리염화비닐)에 대한 관리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여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초래

⇒ 국제기준 등을 감안하여 관련기관간 협의를 통해 PCBs 처리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 대용량 변전소 건설을 위한 산지관리 과련 규제 완화

○ 대용량 변전소가 님비시설로 인식되어 주거지와 일정거리를 유지한 산지에 건설할 수밖에 없으나 산지관리법에서 규정한 설치요건이 엄격하여 부지확보에 어려움 발생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입지요건 :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 이하일 것, 전용산지는 당해 산지의 표고의 50/100 미만에 위치할 것 등

*산지 중에서도 자연경관보전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생태보전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등으로 지정된 부지에는 변전소 건립 불가

- 규제를 충족하는 입지가 있다고 하여도 발전소에서 최종 목적지까지의 최단경로에 위치하지 않아 더 많은 변전소 및 송전철탑 건립으로 산지를 더 많은 훼손하는 결과 발생 가능

*대규모변전소는 중간 가압을 위해 40~80km 단위로 건설되어야 함

- 대용량 변전소 건립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전력의 적기공급에 지장을 초래하고 고액의 비용으로 건설한 발전설비를 사장시키는 문제 발생

*2009년 가동예정으로 건립중인 신고리 원자력발전소(예정공사비 : 3조 5천억)의 경우 변전소 부지확정 지연으로 가동지연 위기

⇒ 대용량 변전소 건설 관련 산지관리법의 제한을 완화
(전원개발 관련 법령 등을 개정하여 반영하되, 구체적 개선방안은 산업자원부와 산림청이 협의)

■ 농업진흥구역내 변전소 건설 제한 완화

○ 농업진흥구역내의 전기공급설비 설치가 농지법에서 허용됨에도 농지업무 편람에서 변전소 건설행위를 제한하는 모순 발생

⇒ 농업진흥구역내에서 변전소 건설 허용

■ 완충녹지내 송전선 건설 규제 완화

○ 녹지지역에서는 전주 · 전선 · 변전소에 해당하는 전기공급시설은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으나 송전용 철탑은 설치 불가

*점용허가를 받는 경우에도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지하매설이 원칙

- 주로 공단지역 도로주변에 지정되는 완충녹지에 대해서는 전선의 지상설치를 허용하여도 완충녹지 설정목적을 위배하지 않으며 사람의 통행이 적어 경관보호 목적에 의한 지중화 필요도 적음
- 전선의 지중화 강제는 과도한 비용 유발(지상설치:7~8억원/km, 지중화:28~87억원/km)하고 사고 발생시 복구 지연으로 인근 공단에 큰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음

*군산 소재 군장산업단지에 대한 전력공급설비 설치를 위한 (완충)녹지점용허가가 지중화 필요에 대한 이견으로 2년째 표류

⇒ 완충녹지 등에서의 송전설비 설치시의 비용 ·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방안 마련

■ 변전소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 변전소 건설시 건축연면적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일정금액의 부담금을 부담

- 변전소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 기반시설로 분류되어 있고 변전소의 설치가 다른 기반시설의 설치를 유발하지 않음에도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함은 불합리

⇒ 변전소를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

■ 발전사업용 LNG의 안전관리부담금 부과 적정성 검토

○ LNG 수입업자가 발전사업자에 발전용으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분만큼 안전관리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으나, 발전사업자가 발전목적으로 자체 수입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부담금을 부과(3.9₩/m^3)

- 동일한 발전에 대해서 수입업자를 매개하느냐에 따라 부담금 부과여부가 달리 결정됨은 불합리

⇒ 발전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부담금 부과 여부의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 (발전사업자간 부담금 부과의 형평성 확보)

(5) 기타 네트워크산업 관련 규제 개선

기본방향 ◆ **불합리한 설비규제 개선으로 산업경쟁력 증대**
◆ **타 사업자 대비 불공정한 규제 완화**

■ 입찰불참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기준 완화

○ 국가 등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경우 입찰자가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회계연도 중 3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 전자입찰 시행 역사가 짧아 입찰불참 사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경우 선의의 피해자 발생 가능

⇒ 전자입찰에 대해서는 입찰불참과 관련한 부정당업자 제재 면제

■ 공개경쟁입찰 준용 계약방식에 대한 승인제도 개선

○ 정부투자기관이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과 다른 계약방식을 도입하는 경우 주무부장관을 경유 재정경제부 승인을 받아야 함

- 공개경쟁입찰 방식의 틀 내에서 거래의 특수성에 따라 새로운 계약 방식 도입시 관련 절차를 모두 거치게 함은 불필요

*공개경쟁입찰방식 준용 예 : 역경매 제도, 다수공급자물품계약 제도 등

⇒ 공개경쟁입찰을 준용한 계약방식의 선택은 재정경제부 장관의 승인 없이도 허용하되 그 내용을 재정경제부장관에 사후통보(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시 감사원에 통보)

■ 전력선통신모뎀 인증 문제 개선

○ 방사잡음 전계강도 허용한계를 초과하는 통신기기에 대해서는 인증을 불허
*방사잡음 전계강도 허용한계 설정은 전파간섭 방지를 목적으로 함

○ AM 라디오 주파수 대역(526.5~1,605.5kHz)에서는 직접적인 방사잡음 전계강도 측정이 불가능하여 전도잡음 전계강도를 통한 간접적인 측정방법에 의존
- 측정장비 자체에서 나오는 전도잡음으로 인해 전도잡음이 과다 측정되어 대부분의 전력선통신모뎀이 인증을 받지 못하는 문제 발생

⇒ AM 라디오 주파수 대역에서의 방사잡음 전계강도에 대한 객관적 측정 방법을 마련하고, 정확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다양한 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 기업 개발 전파기술의 처리 기준 및 절차 마련

○ 전파관련 신기술·신제품 개발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개발의 성공 여부는 불확실에 노출
-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신기술의 자체 개발에 따른 위험 부담이 대기업에 비해 가중되는 측면이 있음

○ 특히 전파관련 기술·제품 개발시 관련 기술기준의 변경요청 등에 대한 처리절차가 미비하여 예측가능성을 저해

⇒ 기업이 개발한 신기술과 관련한 기술기준·표준에 대한 신설이나 변경 요청의 처리 및 결과 통보 절차규정 마련

■ 자가설치 TV시청설비의 선택권 보장

○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는 TV시청을 위한 안테나 및 수신선로를 개별설치하지 않고 공시청 수신설비(MATV; Master Antenna TV)를 설치하고 있음
- MATV 설비는 건축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된 댁내설비로서 공동주택 주민 소유의 시설

○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MATV설비를 선점한 경우 위성방송 전환이 사실상 곤란하고, 관련 기술기준 정비가 미흡
- 주민의 방송매체 선택권을 심각하게 제한할 우려

⇒ 소비자의 방송선택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기술기준 정비 등 개선방안 마련

■ 소출력 중계기 설치 규제 개선

○ 통신 · 방송용 중계기 중 공중선전력 밀도(출력)가 10mW/MHz 이하인 경우에는 신고없이 개설할 수 있음

- 구내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고, 실외 설치시는 신고 필요

○ 소출력 중계기는 전파음영 구역에 제한적으로 설치되는 기기로서 실내 · 외를 구분하여 규제할 필요가 없음

- 가입자용 단말기(200mW)보다 출력이 낮기 때문에 다른 무선기기에 혼선 초래 우려가 없음

⇒ 소출력 중계기는 설치장소에 관계없이 신고하지 않고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

■ 무선국 설치 허가(신고)관련 전자민원 처리절차 개선

○ 무선국 설치 허가 · 신고 등을 위한 전자민원 접수는 각 지역 체신청의 홈페이지상의 양식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만 허용

- 허가 · 신고 할 무선국이 다수인 경우에는 전담인력이 온라인상에서 각 무선국별 허가 · 신청서를 일일이 입력하는 불편

⇒ 전자민원 접수는 다운로드 받은 신청서식에 직접 입력한 후해당 파일을 첨부하여 체신청에 접수하는 방식 허용

라. 향후 추진 일정

○ 부처별 세부추진계획 수립 · 제출 : '06.5.19.

○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 이행

- 법률 · 시행령 개정사항 : '06.8.31.까지 국무회의 심의완료
- 시행규칙 · 고시 개정사항 : '06.7.31.까지 개정 완료
- 기타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사항 : '06.6.30.까지 검토결과를 국무조정실(규제개혁기획단)에 제출하여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에 관해 별도 협의

○ 추진상황 점검 평가 : 후속조치 이행완료 이후 매월

3.10 초 · 중등교육 규제 개선방안

집필자 : 전창호 사무관(Tel. 2100-8825, chch5533@opc.go.kr)

가. 정책환경

■ 그 동안 의무교육 확대, 중·고교 평준화, 교육인적자원부문 투자확대 등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인 결과 국민들의 교육기회 확대와 균등화, 공교육 여건 개선 등에 상당한 성과 시현

○ 중등학교 진학률이 '05년도에 97.2%(IMD, 세계 6위) 수준에 달하는 등 국민들의 교육기회가 크게 확대

○ 학급당 학생수 및 교원 1인당 학생수가 계속 감소 추세

구 분	학급당 학생수(명)		교원1인당 학생수(명)	
	1998	2005	1998	2005
초등학교	35	32(21.6)	27	25(16.5)
중학교	41	35(23.9)	21	19(14.3)
고등학교	49	33	22	15(13.0)

*( )안은 OECD평균(2003)

■ 그러나, 한편으론 지식·정보화 사회의 급속한 진전에 맞추어 학생 및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충족시키면서

*학생의 교육만족도 지수(KEDI, 2005) : 초등 71.5, 중 60.6, 고 58.6

○ 우리 교육의 대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집중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지속적으로 제기

*'한국의 산업은 제3물결, 교육은 제2물결, 혁명적 변화 필요'
(앨빈 토플러, 2006 한국경제, 신년 대담)

나.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 새로운 학교제도 도입 등을 통한 학교체제의 다양화

○ 대안학교('98), 특성화고('98), 자율학교('98),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02) 등 새로운 유형의 학교를 제한적으로 도입

*'05년도 : 대안 25교, 특성화 76교, 자율 93교, 자립형 사립고 6교 등

○ 학교선택권 제고를 위해 다수 평준화지역에서 선지원 후배정 제도 도입

■ 공교육 내실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추진

○ EBS 수능강의('04), 수준별 이동수업('04), 방과후 학교('05), 사이버 가정학습('05) 등 공교육 내실화 정책 추진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 : 18%('03) → 32%('04) → 50%('05)

■ 지역 및 학교단위의 교육 자율성 확대 추진

○ 학교운영위원회 사학 확대 설치('00), 교육청 및 단위학교로의 권한 위임* 확대 등 추진

*학칙 제·개정 승인제 폐지, 학력인정학교 및 자율학교 지정권한 교육청 이양 등

(2) 문제점

■ 학교 운영의 자율권 인정 부족

○ 교사의 교재 선택, 교육과정 개발 및 재구성, 각종 수업의 편성 및 운영 등 교육운영에 있어서 학교의 자율권이 미흡

○ 단위학교에 제공되는 학력평가 정보를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학교의 진학 및 장학활동에 어려움 존재

■ 학교의 적극적 교육 혁신노력을 위한 여건 미흡

○ 학교의 교육관련 정보 공개가 미흡하여 개별 학교 중심으로 교육혁신 노력이 일어날 수 있는 유인이 부족하고,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도 제약

○ 단위 학교가 학업성취도 등의 교육목표를 달성하였는지에 대한 책무성 평가 체제 미흡

■ 학생·학부모의 학습권 보장 미흡

○ 초등학교 입학시 학생의 발달 상황에 따른 학부모의 취학 선택을 과도하게 제한

○ 초·중학생의 해외 유학을 금지하여 자녀에 대한 학부모의 학습권을 지나치게 제한

다. 개선방안

(1) 학교 운영의 자율성 제고

기본방향 ◆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제고함으로써 학생,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수요를 반영하는 현장중심의 교육혁신 유도**

■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 확대

○ 국어, 수학은 1-10학년 동안 영어, 사회, 과학은 3-10학년 동안 수준별 학습을 하도록 규정하고 수학과 영어 7-10학년의 경우 단계별 수준별로 국어, 사회, 과학, 영어 3-6학년의 경우 심화·보충형 수준별로 운영하도록 규정

- 실제 어떤 학년부터 수준별로 교과 운영을 할 것인지는 학교장이 학생들의 학습 진행 상황을 보아가며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

⇒ 수준별 교과 운영 시기는 학교장이 결정토록 허용

○ 재량활동 편성 및 운영에 대한 일률적인 규제로 인하여 지역 특성 및 학교 실정을 감안한 탄력적 운영이 곤란

- 초등학교 : 연 68시간(초1 60시간)중 정보통신기술교육을 34시간*(초1 30시간, 50%) 이상 편성토록 의무화

  *5-6학년은 재량활동이외 특별활동, 교과활동 활용 가능

- 중·고등학교 연 136시간(고1 204시간)을 교과 재량활동 102시간 (고1 170시간), 창의적 재량활동 34시간으로 편성 의무화
- 교재는 검인정(교육감) 도서를 사용

< 재량활동의 내용 >

재량 활동	교과 재량	선택 과목 학습 활동(한문, 컴퓨터, 생활외국어 등)
		국민 공통 기본 교과의 심화·보충 학습 활동
	창의적 재량	범교과 학습 활동(인성, 환경, 경제, 성, 통일 교육 등)
		자기 주도적 학습 활동(주제탐구, 체험, 지역행사활동 등)

⇒ 재량 활동시간의 편성·운영 및 교재 사용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개선

*초등학교 정보통신기술 교육시간 운영 개선 등

○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의 편성 및 운영
- 현행 법령상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으며 교육청 지침 등에 의거 학교장 자율로 시행토록 함
- 그러나, 일선 학교 교장들은 결정 권한 여부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교원단체의 반발 및 민원 발생 우려 등을 이유로 이들 수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데 소극적

⇒ 정규교육과정외 보충수업, 자율학습 등 추가적 수업의 실시 여부 및 방법의 결정은 학교장의 권한(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필요)임을 법령에 명시

■ 고등학교의 학력평가 활용 확대 및 자율 결정

○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교육 정상화 및 사교육비 경감 등을 위해 사설기관 시행 모의고사에의 학교단위 참여를 금지
-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전국 시도교육청 주관 전국연합학력평가와 교육과정평가원 주관 수능 모의고사를 시행

※ 전국연합학력평가(평가원 포함) : 고1-2학년 4-5회, 고3학년 5회('06)

○ 그러나, 일선 학교는 이로 인해 학생들에 대한 교육 실시 및 진로 지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
- 전국연합학력평가 등 실시 후 제공되는 표준점수 백분위 및 등급 구분 점수로는 학생 진로지도에 상당한 애로
- 이에 따라 일부 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을 위반하여 사설기관 모의고사에 참여(1인 1회당 7,000~8,000원)하고 그 결과를 활용

※ 사설모의고사 : 표준점수 백분위와 등급 구분점수 이외 전국 석차, 과목별 석차, 예비지원 대학학과에 대한 정보, 영역별 진단 등 제공

○ 동 규제는 학교 교육 운영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개선 필요
전국연합학력평가 및 교육과정평가원 시행 모의 수능시험의 제공 정보 범위를 단위 학교의 장학 및 진학 활용에 충분한 수준으로 확대

※ 일반계 · 실업계 성적 분리, 영역별 석차 제공 등

(2) 학교 교육의 책무성 제고

기본방향 ◆ **학교의 교육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고, 교육 수요자에게 학교의 교육운영관련 정보를 공개 등 단위학교의 책무성 제고**

■ 학교의 교육운영 관련 정보공개 확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의무를 정하고 있음에도 학교는 학교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학생, 학부모 등의 교육수요자 및 외부 일반에 대하여 정보를 공개 하지 않거나 매우 미흡

- 대부분의 학교는 학교 연혁, 교사 성명 등의 기본 정보 이외 상세한 교육운영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음

○ 이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미흡 및 학교 교육의 질 향상 노력 부족 등 초·중등 교육혁신 정책의 실효성을 저하시키는 제약 요인으로 작용

- 학생 및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제고를 위해 고교 입학시 선지원 후배정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개별 학교의 교육운영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합리적인 학교 선택이 곤란
- 학교별 자율적인 교육운영 강화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학교운영 및 교육운영과 관련한 정보 부족으로 위원회의 활성화가 곤란
- 개별 학교의 교육운영 관련 정보 미공개로 학교간의 교육관련 정보교환 부족 및 새로운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학교간의 경쟁 유인 감소

⇒ 학교 정보공개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마련, 시·도교육청에 통보하여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공개 수준 및 내용, 방법 등을 학교평가 및 기관평가에 반영

· 공개 정보 : 학교교육계획, 평가기준, 교원현황, 교육과정 편성·운영 세부 내용, 입학생들의 선지원 비율, 학생활동, 과목별 학습 발달 상황, 예·결산,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사항 등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확대

○ 현재 초·중등교육법령에 의거, 교육인적자원부 및 교육과정평가원 공동주관으로 매년 1회 전국단위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

- 각 교과별 학력을 우수/보통/기초/기초미달의 4단계로 구분하고, 성별·지역별 성취도 차이 산출

※ ('04년도) 10.20-21일 초등학교 6학년 1%, 중학교 3학년 1%, 고등학교 1학년 3%를 대상으로 전국에 걸쳐 910개교, 총 30,731명을 표집하여 5개 교과(국, 영, 수, 사회, 과학)에 대한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

○ 그러나, 현행 학업성취도 평가는 초중등학교가 교육목표를 충실히 달성하고 있는지를 진단하여 학교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책무성 평가 취지에 미흡
- 초중등 학교 및 학생의 일부만을 평가대상으로 함으로써 학교 교육운영의 자율권을 확대시키면서, 그에 상응하는 학업성취를 위한 단위 학교의 책무성 평가에는 소홀
- 학교별 학업성취도 수준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학교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노력 유인 저해
- 개별 학생이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학생과 학부모가 정확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학업성취도를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

⇒ '07년부터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대상을 확대
*대상 학년은 현행 초 6학년, 중 3학년, 고 1학년에서 단계적으로 확대

■ 자율학교, 특목고 등에 대한 사후평가 강화

○ 교육체제의 다양화 및 특성화를 위해 특수목적고, 자립형 사립고, 자율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등의 제도를 도입하고, 일반학교보다도 큰 폭의 자율권을 부여
- 그러나, 일부 학교는 입시 위주의 교육에 치중함으로써 당초 설립 취지를 위배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개선 조치가 미흡하고
- 동 학교들이 당초의 설립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사후평가를 엄격히 함으로써 이들 학교의 책무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

※ 특수목적고 등이 설립 인가 후 엄격한 사후평가 또는 책무성 평가가 없어 입시 위주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치중

⇒ 특수목적고, 자립형 사립고, 자율학교 등의 교육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정기적 사후평가 강화 방안 마련하여 시·도교육청에 통보하고 시행 여부를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

※ 단위 학교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청에 보고토록 하되, 평가 위원 중 위원장 및 일부(1/3~1/2)위원을 외부인사로 구성. 교육청은 5년 주기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평가 등

■ 각종 평가의 실효성 제고 및 학교부담 완화

○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평가 계획에 의거, 시·도교육청에서 초·중·고등학교에 대하여 주기적인 학교평가 실시

※ 2003년부터 5년 주기로 평가를 실시(자체평가보고서를 사전에 분석하여 1일간 현장방문 및 평가)

– 시·도교육청은 이외에도 단위학교에 대해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 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 학교 경영 및 교육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도 실시

○ 그러나, 학교평가의 경우 법령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실시토록 되어 있어 시·도교육청에게 학교평가를 위임하토록 법적 근거를 보강할 필요가 있으며,

– 시·도교육청이 실시하는 학교평가, 장학지도, 종합감사가 내용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음에도 각 부서에 의하여 별도로 실시되어 학교 부담이 가중되고

– 학교평가 및 감사 결과가 장학지도에 통합적으로 연계·활용되지 못하여 평가·감사의 효율성도 저하

⇒ 학교 평가에 대한 시·도교육감의 실시 근거를 규정하고, 학교평가·장학지도·종합감사와 연계 방안 수립

※ 학교평가–장학지도 연계 방안 검토〈장학사가 평가위원으로 참여하여 학교평가와 장학지도를 동시에 실시, 학교평가·장학 결과의 공유 등〉, 학교평가·감사의 중복 최소화 등

(3) 학교 설립 및 운영 등 규제 합리화

■ 학교설립 기준의 대폭 위임

○ 초·중등학교 설립시 필요한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에서 일정 기준을 설정하여 운영

– 동 법령은 초·중등학교 신규 설립시 3,500~4,000평 정도의 대규모 학교 부지를 확보토록 규정

○ 그러나, 법령에서 학교 설립기준을 일률적으로 규정함으로써

– 학교를 신규로 설립할 필요성이 있는 도심 지역의 경우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설립에 대규모의 막대한 재원이 소요

– 각 지역별로 지역사정을 감안하여 다양한 유형의 학교가 설립되지 못함으로써 일부 지역의 경우 학교 공급 부족 및 학급 과밀화를 방치하게 되는 결과 초래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빌딩형 학교(운동장없는 고층빌딩), 도심형 소규모학교(자투리땅 등을 활용), 아파트형 학교(아파트 건립시 일정 공간을 소규모 학교로 설계 등)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설립기준을 조례로 위임

⇒ 지역 실정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학교설립을 위해 학교설립 기준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대폭 위임

※ 대통령령은 교사, 체육장, 교사·교지의 소유주체, 수익용기본재산 등 필요 최소한의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기준도 하향 조정

■ 초등학교 입학시 입학시기 선택권 확대

○ 현행 초·중등교육법령상 초등학교 입학 대상을 만 6세에 달하는 당해 년도 3.1일부터 다음 해 2.28일생으로 제한

- 이에 따라 같은 학년 학생 간에도 연령차이가 최대 1년에 달해 원활한 학교생활 적응이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고

※ 청주시의 경우 06년 취학 예정자 중 입학 유예자가 10.5%로 1,2월에 태어난 만6세 어린이들이 대부분(국민일보, 2.15)

- 자녀의 발달이 조숙하여 조기 입학을 원하는 학부모도 1년을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다수 있음

※ 현재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한하여 학교의 장이 취학 의무 유예 결정

- 또한, 빠른 1~2월생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 후 만 19세가 되지 않아 청소년보호 연령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나 행복추구권 등에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 발생

⇒ 자녀의 발달 상황에 따라 학부모가 입학 시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1.1일 기준으로 생년월일이 만6세 전후 일정기간(예시:1년) 미만에 속하는 아동에 대하여는 학부모에게 입학선택권 부여

■ 조기 해외 유학 허용

○ 현행 '국외유학에관한규정'상 초·중학교 의무교육 대상 학생의 경우 자비 조기 유학을 불인정

- 이에 따라 초·중학생이 자비 해외유학을 갈 경우 비합법 유학생으로 분류하여 정원외 관리(장기결석 처리)

※ 정원외 관리를 위하여 학생이 유학을 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초기 3개월을 결석으로 처리하고, 같은 기간 내 2회 이상 「학부모 내교 통지서」 발행 등 불필요한 절차 진행

○ 그러나, 이는 교육이 개방되고 조기 해외유학이 계속 증가하는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로서 개선 필요

- 현재에도 조기 유학생의 경우 귀국후 일반 귀국자 자녀와 같이 편입 처리하여 해외 유학기간을 의무교육 일부로 인정
- 다만, 학생생활기록부에 사고결로 처리 · 기록되어 고교입시 등에 있어서 불이익만 가할 뿐 실익이 없음

< 조기유학 학생 현황 >

(단위 : 명)

연도별	초	중	고	합 계
1998	212	473	877	1,562
1999	432	709	698	1,839
2000	705	1,799	1,893	4,397
2001	2,107	3,171	2,666	7,944
2002	3,464	3,301	3,367	10,132
2003	4,052	3,674	2,772	10,498
2004	6,276	5,568	4,602	16,446

- 또한, 현행법하에서는 불법 상태를 방치하는 결과만 초래

※ 조기유학 금지에 대한 규제준수도 조사 결과 학부모 대부분이 준수되고 있지 않다(73.4%)고 생각하고 있고, 무분별한 조기유학 감소 방안으로 '성공과 실패 사례를 널리 알려 부모들이 신중하게 판단하게 함'을 가장 최선의 방안으로 제시(한국교육개발원 김홍원, 2005)

⇒ 조기 해외 유학 금지 규제 폐지

■ 단위학교의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정비

○ 각 단위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 시 · 도교육청의 지침 등에 의해

- 교육과정위원회, 인사자문위원회, 예·결산소위원회,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급식위원회, 선도위원회, 기자재선정위원회, 각종 교과협의회 등 10~20여 개의 위원회 및 협의회를 설치·운영

○ 이에 따라 소규모 학교의 경우 모든 교사가 각 위원회 및 협의회 위원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 수시로 개최되는 위원회에의 참석으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까지 어려움을 초래하는 사례 발생

○ 단위학교는 현행 위원회 및 협의회를 별도로 모두 설치·운영할 실익이 적으며, 위원회 구성에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
※ 설문조사 결과 교원의 66.5%가 각종 위원회·협의회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역 및 학교급에 따라 설치 및 개최 회수 등에서 차이는 있으나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
⇒ 성격이 유사한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를 5개내외의 위원회로 통합

라. 향후 추진일정

○ 부처별 세부추진계획 수립·제출 : '06.6월
○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 이행 : '06.9월
○ 추진 상황 점검·평가 : '06. 4/4분기

3.11 기업공개 및 시장제도 개선방안

집필자 : 전문위원 빈재익 (Tel 2100-8795, jipins@opc.go.kr)

가. 정책환경

○ 자본시장에서는 기업의 출자지분이 상품으로 거래되며 가장 효율적인 거래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국제적 경쟁이 치열
- 기업은 거래소 또는 기타 거래시스템을 통하여 여러 종류의 주식을 발행·유통하여, 지속적인 성장에 필요한 재원조달

- 투자자는 기업 및 주식에 대한 다양한 투자기회를 확보할 수 있어 효율적인 자본시장은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중요

○ 우리 경제는 '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업부문의 구조개혁을 통하여 자본시장의 건전성·투명성 확보에 주력
- 그 결과 '98년(-6.9%) 이후, 경제성장률은 5%대로 회복되었으며, 기업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대폭 강화
- 그러나 자본시장간 경쟁체제 미비로 자금조달 수단이 다양하지 못하며, 그 결과 자본시장의 중개기능도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

< 국가별 GDP 대비 시가총액 비교 ('05.5월말 기준) >

국가	한국	미국	일본	영국	대만
대상 거래소	KOSPI + KOSDAQ	NYSE + NASDAQ	TOKYO + OSAKA	LONDON	TAIWAN
GDP 대비 시가총액 비율	72.0%	138.0%	120.1%	130.4%	144.9%

※ 출처 : 대우증권 투자분석부, 2005.7월

○ 거래시장 간 경쟁 도입, 다양한 주식 발행 허용 등 기업공개 및 시장제도 개선을 통하여 기업 자금조달의 원활화 및 투자자에 대한 양질의 투자 기회 제공을 도모할 필요

나. 규제 실태와 문제점

○ 기업의 주식발행 및 관련 시장에서의 거래에는 상법, 증권거래법,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등의 관련 규정이 적용됨
- 다만, 상법의 관련 규정은 사인간 거래에 관한 규율로서 직접적인 정부의 규제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 기업공개시 회사는 증권거래법 및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의 규정에 따라 주로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거쳐 상장 추진
- 유가증권 및 코스닥시장이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의해 독점 되고 있어, 기업이나 투자자를 위한 서비스 개선 경쟁압력 부재

– 비상장기업의 경우에도 증권업협회가 운영하는 프리보드에 독점되고 있으며, 거래방법 등은 법령으로 제한

○ 상장기업은 증권거래법 및 금융감독위원회 규정 등에 따라 각종 상장유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나, 이들 요건 중 수시공시의무 등이 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

○ 기업은 상법, 증권거래법 등의 규정에 따라 법정준비금 적립, 스톡옵션제도 운영 조건 등에 관하여 엄격한 규제를 받는 실정
– 특히 관련법령은 스톡옵션 행사가격 및 수량조정이 가능한 경우를 엄격히 제한하여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경우 발생

○ 현 상법은 발행가능한 주식의 종류와 조건을 엄격히 제한하여 기업이 다양한 내용과 조건이 붙은 주식을 발행하는데 한계

다. 개선방안

(1) 주식 거래시장간 경쟁 활성화

■ 현황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선물시장 운영은 법에 의하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이하, 증선거래소)에서 독점(증권거래법 제2조 제12항 및 제14항,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15조 제2항)
– 증권거래법은 증선거래소법에 의해 설립된 증선거래소가 개설하는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만을 인정

– 증선거래소법은 거래소가 아닌 자는 상기시장 또는 유사한 시장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경쟁을 원천적으로 제한
*외국의 경우 한 국가 내에서 다수 거래소간, 다수 거래시스템 간 경쟁이 존재

○ 매매방법의 경우, 증권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 외에서 이루어지는 장외거래는 다수거래자간의 경쟁매매방식을 적용할 수 없도록 규제

< 외국 증권거래소 및 거래방식(예시) >

	거래소	거래방식
미 국	· 전국거래소(NYSE, Amex 등 7개) · 지방거래소(Boston, Chicago 등) · 협회운영(Nasdaq), 증권사 개별 운영(IBDTS) 등 다양	· 경쟁매매(주로 전국거래소), 상대매매, 시장조성인, ECN 등이 혼합
일 본	· 전국 및 지방거래소(동경 등 5개) · 협회운영(JASDAQ) 등 다양	· 경쟁매매(전국 및 지방거래소) · 경쟁매매와 시장조성인 제도 혼합(JASDAQ) 등 다양

■ 문제점

○ 현재 거래소 상장기업들은 투자자보호와 경영투명성 향상을 위한 각종 제도 도입이 상장기업의 부담으로 작용

– 다수 거래소 및 시스템간 경쟁이 이루어질 경우, 상장기업 부담 감소를 위한 노력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큼

○ 또한 우리나라는 장외주식거래방법을 세부적으로 제한하여 거래소를 통하지 않는 대안적 거래시스템이 발전 못하는 실정

– 프리보드 등 장외시장의 경우 매매방법이 상대매매 방식으로 한정되어 있어 시장 활성화 제한요인으로 작용

※ 코스닥시장의 경우 경쟁매매를 도입('96.7월)한 이후, 일평균 거래종목이 30종목에서 93종목으로, 거래대금은 14억원에서 33억원으로 증가

< 증권 거래방식 간 차이점 비교(경쟁매매 vs. 상대매매) >

구 분	경쟁매매	상대매매
거래방법	· 다수매매자간 일정한 조건에 따라 집단적으로 거래 체결	· 매수자와 매도자간 개별적 교섭에 따라 거래 체결
장/단점	· 유동성 및 투명성이 높으며,거래비용이 작음 · 세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며, 거액거래의 시장충격이 큼	· 유동성이 작은 경우에도 개별 교섭 및 책임 하에 거래 가능 · 투명성이 낮고 거래비용 높음
적용시장	·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 프리보드, 장외시장
운영주체	· 한국증권선물거래소	· 증권업협회

– 외국 거래소의 경우, 투자자의 성향과 대상종목의 특성을 감안하는 다양한 거래방식을 도입하여 투자자 유치를 위해 노력

■ 개선방안

○ 거래소간 경쟁 및 대안적 거래시스템을 통하여 상장비용을 절감하고, 거래상 편의 및 재원조달의 용이성 제고

① 상장주식 매매에 있어 다양한 거래시스템 활용 허용

– 증권사들이 대안적인 거래시스템 구축시 거래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② 프리보드를 포함하는 비상장주식의 장외시장 거래 활성화

– 다양한 매매방식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증권업협회의 시장운영 독점폐지 등을 검토하여 종합적인 장외시장 활성화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하여 추진

③ 장내시장과 장외시장 간 거래관련 차별적 과세 개선

– 증권거래세는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과세개편방안 검토하여 ②의 장외시장 활성화 방안에 포함

※ 증권거래세는 유가증권/코스닥 시장의 경우 약 0.3%, 프리보드/장외시장의 경우 0.5%

④ 상장채널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거래소간 경쟁도입을 위한 개선방안 검토

– 증권거래시장의 신규개설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 등을 검토

(2) 상장관련 부담완화를 위한 시장제도 개선

■ 공시위반에 대한 행정제재의 시효제도 도입

○ 공시의무 등의 위반과 관련해서는 시효가 존재하지 않아 법적 안정성 저해 및 금융감독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 공시위반 제재에 대하여 보고서 미제출 3년, 허위공시 5년 등 5년 이내를 원칙으로 하는 시효를 도입

* 공시내용, 성격 및 영향이 공시종류에 따라 상이하고, 위반 시에도 민사, 형사, 행정상 다양한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어 공시위반에 대한 소멸시효를 획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 따라서 위법사항의 중대성 및 해당법률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 사안의 종류에 따라 소멸시효를 달리 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

■ 회계 감리결과 인터넷 공시제도 개선

○ 현재, 금융감독원장은 증선위의 모든 감리결과 지적내용 및 조치내용을 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규정

- 모든 감리결과 지적내용을 일괄적으로 공시하는 경우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남소 우려

⇒ 감리결과, 부실회계처리의 규모, 고의성,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경미한 경우에는 공시 및 관련기관 통보 생략

■ 정기보고서 내용 개선

○ 정기보고서 서식 중에는 시장점유율처럼 정보로서의 가치가 낮거나 원재료 구매가격처럼 기밀 누설소지가 있는 항목 존재

○ 감사 또는 감사위원 선임시 등 일부에 대하여만 의결권이 제한되는 경우에도 기재함에 따라 투자자 오해 소지

○ '파생상품 등에 관한 사항' 부분의 경우 거래상대방을 기재토록 하고 있으나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외환시장처럼 거래상대방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발생

① 기업의 기밀이나 공시가치가 낮은 사항을 보고대상에서 제외

② 일부 사안에 대하여만 의결권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제한되는 경우를 '증권거래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하여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주식 수'에 정확히 명시할 수 있도록 개선

③ 거래상대방을 특정하기 어려운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서는 일부 사항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

■ 수시공시 운영체계 개선

○ 수시공시 의무사항은 현재 증권거래법령, 금융감독위원회 규정 및 거래소 규정 등에 혼재하여 규정

- 금융감독위원회는 투자자 보호 등 법령의 목적 및 위임에 따라, 거래소는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각기 수시공시 사항을 규정

※ 금융감독위원회는 증권거래법 ·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44개)을 포함 71개 사항을, 거래소는 금융감독위원회 규정사항 포함 134개 사항을 각각 규정

○ 그러나 규정 적용 · 해석상 이견발생 및 시스템 호환성 문제 등으로 기업의 불편 및 업무수행 지연 등의 문제점이 발생

– 이러한 문제점은 주로 공시시스템, 등록 · 인증방식 및 공시서식 간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됨

⇒ 금융감독원은 거래소와 협의하여 상장법인의 공시작업시 중복입력 및 통계처리 불편 등이 없도록 이중입력 방지 및 편의성 제고 방안 마련

■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비상장법인 공시규정 완화

○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비상장법인에 대한 공시의무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관련 법 및 규정 등을 통하여 세부적으로 규정(2005.4.1 시행)

– 금융감독위원회는 기업의 공시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비율기준 완화, 누계기준 폐지 및 수시공시사항 축소 등을 시행(2006.4.1)

– 상장사의 공시의무 완화추세에 맞추어 비상장회사의 공시의무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누계기준의 건별기준 대체, 공시대상 거래금액 한도 상향조정 등 비상장법인 공시의무를 완화하는 방안 추진

※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애로사항 실태조사 및 기업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07년중 공시의무 완화방안을 검토 · 추진

■ 재무제표의 확정 및 공고제도 개선

○ 재무제표는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통해 확정되며, 승인 시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

– 그러나 이사회 결의에 의한 중간 · 분기배당제도 및 결산실적 수시공시제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의 재무제표 확정은 이사회에서 작성한 재무제표를 확인하는데 그치는 실정

○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의 경우, 신문이나 관보 등 전통적인 공고방법 보다는 홈페이지 등을 통한 전자적 공고방법이 이해관계인들이 보다 쉽게 접근 ·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

① 상장법인의 재무제표 확정 개선(주주총회→이사회)
②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후 신문 및 관보를 통한 재무제표 공고 폐지(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한 전자적 공고로 갈음) 및 금융감독원 등이 운영하는 포털사이트를 통한 전자공고제도 운영 검토
③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법인의 주주총회 소집공고 방법 다양화
: 일간지 뿐만 아니라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한 전자적 공고 추가

■ 자본시장 퇴출규제 완화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관한법의 규정에 의한 정리절차 개시를 신청한 경우 당해 회사의 주권은 상장폐지 (유가증권상장규정 제80조 제9호)
- 상장이 폐지되는 경우, 직접금융의 통로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기업의 회생이 아니라 오히려 도산을 촉진할 수 있음

○ 정리신청을 상장폐지로 연계할 경우 해당 기업 및 동 기업의 주주에게 중대한 재산권의 침해가 발생하며,
- 잠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현재 투자자의 재산적 손실을 감수토록 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제기 가능

⇒ 자본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퇴출기준을 강화해 온 정책방향을 감안하여 상장폐지 기준은 유지하되 회사 정리신청에 따른 상장폐지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장외시장을 활성화하여 대안시장을 마련해 주는 방안 검토

(3) 기업 자금운용의 자율성 확대

■ 자기주식제도의 합리적 개선
○ 회사가 주식배당, 전환사채 및 인수권부 사채의 권리행사 등을 할 경우, 신탁 계약된 자사주를 사용할 수 없어 신주 발행 불가피
- 이는 자사주 운용상 회사의 자율성을 과다하게 침해하는 사례

○ 상장회사는 자사주 처분에 있어 장중 대량매매에 따른 주가하락 등 시장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간외 대량매매' 활용
- 시간외 대량매매의 호가 범위는 '당일종가와 당일종가로부터 2호가 가격단위 낮은 가격'의 범위 내로 엄격히 제한(장중 자사주 매도 호가범위 : 직전가격의 10호가 이내)

※ 호가 가격단위란 가격대별로 호가할 수 있는 최소단위의 가격
- 예 5,000원 미만 주식은 5원, 10,000원 미만 주식의 경우에는 10원
- 호가 범위의 과도한 제한으로 거래 불성립 가능성 증가

○ 상장법인이 자사주 신탁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체결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 계약기간 중 해지하는 경우, 법적 해지제한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위원회 신고서 기재내용 미준수로 처벌

⇒ ① 주식배당,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권리행사, 합병 시 주식교부의 경우 자기주식교부 허용
② 매도주문 호가 범위 확대(당일종가와 당일종가로부터 2호가 가격단위 낮은 가격범위 → 일반적인 시간외 대량매매 호가범위 및 장중 자사주 매도 호가범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호가범위를 확대)
③ 자사주 신탁계약의 체결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에는 만기 전에 해지하더라도 사전 공시한 경우에는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해지로 해석하여 규정 위반에서 제외

■ 법정준비금제도 개선

○ 현행 상법에서는 매 결산기 이익 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자본의 2분의 1까지 적립하도록 규정
- 이는 채권자 보호를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자본의 1/2까지 적립하는 것은 기업 재무관리의 신축성을 저해하며,
- 법정준비금 적립한도가 낮거나 아예 적립제도 자체가 없는 타국에 비해 우리 기업들에게 경쟁상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

※ 일본은 1/4, 독일과 프랑스는 1/10까지 적립; 미국과 영국은 해당제도 없음

○ 이익준비금은 자본결손을 전보할 때 자본준비금에 비해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나, 이익준비금과 자본준비금은 적립 후에는 기능상 차이가 없으므로 사용 순서 규제는 무의미

⇒ ① 법정준비금의 적립한도 축소(자본의 1/2→1/4)
② 이익준비금 우선 사용 폐지

③ 법정준비금의 합계액이 적립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용도 확대(자기주식의 취득, 주주에 대한 분배 및 손실처리 등)

■ 스톡옵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스톡옵션은 원칙적으로 행사 수량의 조정이 불가능하나, 예외적으로 주식분할 및 병합의 경우에는 상법상 조정 가능

〈재정경제부 해석 증권 41298-214(2002.4.17), 상법 제329조의 2, 상법 제440조〉

- 그러나 최근 판례에서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을 경우, 상법 에서 열거하지 아니한 행사수량 조정 등도 가능하다고 판시

(서울지방법원 제22민사부 2003.2.28 선고 2002가 합 68916 신주발행무효사건)

- 무상증자 및 자본감소시 수량을 조정하지 않을 경우, 스톡옵션 권리자 및 주주간 이해관계 변동이 생기므로 개선 필요

○ 스톡옵션 행사로 인하여 법인이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교부시로부터 5일 이내에 처분결과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

- 그러나 자사주 처분내용은 정기보고서에 공시되는 사항이므로 처분결과가 중복 보고되는 문제가 있어 개선 필요

⇒ ① 스톡옵션 부여 당시 결의한 경우, 무상증자 및 자본감소시 행사수량 조정 허용
② 스톡옵션의 행사로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자기주식처분결과보고서 면제

■ 손해배상 산정기준 합리화

○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은 청구권자가 '유가증권을 취득함에 있어 실제로 지급한 금액에서 변론종결 당시의 시장가격과의 차이'를 원칙적인 배상의 기준금액으로 규정

- 그러나 항소심 변론종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게 되어 시장상황 등 다른 많은 요인들이 주가에 반영되므로 이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할 수 있음

⇒ 손해배상액 산정시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가 배상될 수 있도록 개선

(4) 주식 등 관련 상품 다양화

■ 다양한 주식발행 허용

○ 현 상법은 주주평등의 원칙상 발행 주식의 종류, 조건을 제한하여 기업이 신속하고 다양하게 자금을 조달하는데 애로요인

- Global standard에 따른 자본시장 통합이 대세인 상황에서 자본시장 구조가 경직적일 경우 자본의 급속한 이탈 우려
- 미국, 영국, 일본 등은 회사가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다양한 주식 발행이 가능토록 하여 신속한 자금조달을 장려

< 각국의 주식발행 관련 제도 >

국가	주요 내용
미국	① 정관에 의하여 다양한 종류의 주식발행이 가능 ② 이익배당, 잔여재산분배의 우선권 및 기타 권리내용의 차이에 따라 여러 종류의 주식으로 구분하여 발행 가능
영국	① 정관에 의하여 다양한 종류의 주식발행이 가능 ② 회사법상 1주 1의결권이 원칙이나, 정관으로 의결권 내용을 달리 규정 가능 (무의결권, 일부무의결권, 복수의결권 주식 등)
일본	① 배당내용이 다른 보통주 발행 가능 ② 의결권 내용이 다양한 주식 발행 가능(일부무의결권 주식 등) ③ 기타 주식매입, 강제전환조건부주식 등의 다양한 주식발행 허용

⇒ ① 일부 의결권제한 주식의 도입

· 경영권방어에 필수적인 사항만 의결권 제한을 두고 나머지 일반사항들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부여하는 주식

※ 기업은 경영권에 영향이 없는 자금 유치가 가능하며, 투자자는 일정한 통제수단을 가지면서 낮은 가격에 투자 가능

② 강제전환 · 상환부 주식의 도입

· 회사가 주주의 의사를 묻지 않고 강제로 주식의 성격을 바꾸거나, 현금으로 상환할 수 있는 주식

※ 회사는 경영권 위협을 방어하면서도 외부자금을 용이하게 조달 가능

③ 주식 매수권 주식의 도입 검토

· 일정한 행사가격과 일정한 행사기간 내에 발행회사로부터 일정한 수량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첨부된 주식

※ 경영권 위협 없이 자금조달이 가능하며 적대적 M&A 대응수단으로 활용 가능

④ 무액면 주식의 도입

· 100원으로 규정된 최저액면가액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주식을 발행할 때마다 발행가액을 정할 수 있는 주식

※ 자금 필요시 액면가 이하로의 주식발행이 가능

■ 석유선물 도입을 위한 제도적 환경 개선

○ 국내 석유수요를 감안할 때 경제주체가 석유제품 가격 변동 위험을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석유선물 도입 필요성 제기

- 석유제품시장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수평거래금지*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시장에 의한 가격결정이 제한될 가능성

*'수평거래금지제도'란 (a) 정유사, 대리점, 주유소 등 동일한 영업범위의 판매업자간 석유제품의 거래 또는 (b) 상위업자가 하위업자로부터 석유제품을 조달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제도

- 공급자와 대리점, 주유소 등 유통과정에 참여하는 주체들이 참여하여 합리적으로 가격이 형성될 수 있는 환경조성 필요
- 선물시장에의 석유선물도입을 통하여 석유선물가격이 석유제품거래의 기준가격으로 작용, 석유제품 가격 예측가능성 제고

⇒ 석유제품 선물거래 도입 관련 제도개선 필요사항에 대하여 도입의 타당성, 도입 여건, 석유선물거래 도입이 석유현물시장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포함, 중장기적으로 검토

라. 향후 추진일정

○ 부처별 세부추진계획 수립 · 제출 : '06.7.3

○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 이행

- 개선방안 마련 등으로 별도 시한을 정하지 않은 사항 : '06.7.30까지 개선방안(중장기 검토 사항은 검토계획)을 국무조정실에 제출

○ 추진상황 점검 평가 : 후속조치 이행완료 이후 매월
※ 상법 개정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에서 검토하되, 최종 개정안 마련시 규제개혁기획단과 협의

3.12 산업안전 · 보건규제 개선방안

집필자 : 안태전 전문위원 (Tel. 2100-8799,antjeon@opc.go.kr)

가. 정책 환경 및 추진 경위

■ 산업안전 · 보건규제는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사회적 규제」로 인식
○ 산업재해 발생율이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 '82년 3.98%에서 '00년 0.73%로 감소하는 등 크게 개선

■ 그러나, 최근 산업재해 개선추세가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사업장 규모별로 산업재해 발생이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 최근 산업재해 발생율(연도/만명당 발생수) : '01년/0.77 → '03년/0.90 → '05년/0.77

※ '05년 업체규모별 재해율 : 50인 미만 69% (재해빈도 1.17), 300인 미만 87% (재해빈도 0.93), 1000인 이상 7% (재해빈도 0.40)

○ 노동계는 '97년 기업활동규제완화를위한특별조치법 시행으로 산업안전 규제가 과도하게 완화됨에 따른 부작용임을 주장

○ 업계는 실제 안전효과는 거의 없으면서 이행부담이 큰 과도한 규제의 추가적인 완화를 주장

■ 근로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사업장 현실과 맞지 않는 과도하고 획일적인 규제를 완화하는 「규제 합리화」 필요

○ 또한, 투입비용에 비해 개선효과가 적은 규제에 대하여는 경제적 측면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 제기

나. 규제 현황 및 문제점

(1) 규제 현황

■ 산업안전 · 보건기준을 확립하고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법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지정, 작업장 관리규정 작성, 안전 · 보건상 조치의무, 근로자 준수사항, 유해 · 위험기계 방호조치, 유해물질표시, 작업환경측정 등을 규정

○ 그 밖에 전기 · 가스 · 에너지 · 유해화학물질 · 소방시설 · 건설기술 등 각 분야별로 총 18개 법률에서 안전관련 규정을 명시

■ 분야별로 근로자의 안전 · 보건, 가스 · 전기 · 에너지 등 분야별 관리, 유해화학물질 관리, 소방 · 위험물 등 총 465건의 규제가 존재하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근로자의 안전 · 보건규제가 핵심

합 계	근로자 안전 · 보건	분야별 관리	물질 관리 (유해화학물질)	소방 · 위험물
465건(100%)	108건(23%)	116건(25%)	120건(26%)	121건(26%)

■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회적 규제이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비용이 소요되어 경제적 부담이 발생

○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대부분 작업여건이 양호하고, 정부의 최소기준보다 높은 안전 · 보건수준을 상당수 유지

○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규제 수혜자인 근로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작용하나, 영세 기업주에게 부담요소로 작용

(2) 문제점

■ 유사한 성격의 중복 규제 상존
○ 유사목적 표지의 이중 게시, 중복기능의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등 이중 부담의 규제

○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의무화되어 있는 작업장에 국소배기장치 자체검사 의무화 등 부처간 중복성격의 규제

■ 사업장 여건상 적용이 곤란한 비현실적인 규제 존속
○ 작업여건상 효과는 적으나 부담이 과도한 안전규제

○ 안전기준이 서로 달라 사업장 현장에서 혼란 발생

■ 과도하거나 실질적 형평성에 맞지 않은 규제 존속
○ 외국에 비해 현저히 높은 환경기준에 따른 과도한 비용 발생

○ 기업규모 등을 감안하지 않은 획일적 규제로 인한 실질적인 형평성 결여

■ 일단 기준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운영하여 기업부담 증가
○ 기존 공장 시설 변경시 강화된 새로운 시설기준이 모든 시설에 적용됨에 따라 기업부담 발생

○ 산업재해 통계가 외국에 비해 넓게 인정됨에 따라 국제경쟁력 약화요인으로 작용

다. 개선 방안

(1) 중복되는 규제의 해소

기본방향 ◆ **중복적 성격의 규제의 통합 또는 완화**
◆ **각 부처별 중복 규제 해소**

■ 물질안전보건자료 · 관리대상유해물질 안전보건표지 게시 중복개선

○ 화학물질을 제조 · 운반 · 저장 · 사용하는 사업주는 당해 물질의 명칭 · 인체에 미치는 영향 · 취급주의사항 등을 기재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하여 게시하도록 의무화

- 한편, 사업주는 화학물질 중 관리대상유해물질(168종)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명칭 · 인체에 미치는 영향 · 취급주의사항 등을 기재하여 게시하도록 의무화

○ 유사내용(명칭, 인체영향, 취급시주의사항, 보호구, 응급조치요령)의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리대상유해물질 안전 · 보건표지가 중복 게시되어 기업부담 발생

⇒ 동일한 장소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게시하는 경우 관리대상유해물질 안전 · 보건표지(명칭 등)의 게시의무를 면제

■ 국소배기장치 자체검사의무 면제

○ 작업장 내 건강에 해로운 물질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국소배기장치를 가동하고, 연 1회 자체검사를 실시토록 의무화(노동부 소관)

- 인체에 유해한 가스 · 증기 · 소음 등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를 6월에 1회 이상 측정하도록 의무화

※ 이와 별도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가동시간 · 운영상황 등을 매일 기록 · 보존토록 의무화(환경부 소관)

○ 일괄처리시설인 국소배기장치의 배출시설(대기오염방지시설과 배기구)에 자동계측기가 설치돼 상시 관리되는 경우에는 국소배기장치 자체검사 의무화는 사실상 불필요

- 국소배기장치 자체검사(연 1회)외에 작업장 내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 측정(연 2회)이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작업장 내 환경관리는 제도상 현재도 가능
- 환기시설 고장 등 시설관리는 업체 자율관리가 바람직

⇒ 대기오염방지시설이 자동계측기를 통해 상시 점검 · 관리되는 경우로서

· 작업환경측정(유해인자 측정)결과가 최근 1년(2회 측정)간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국소배기장치 자체검사 의무를 일정기간(예 : 1년간)으로 면제

■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 · 안전관리계획 통합작성 개선

○ 석유정제품 · 화학제품 제조업, 건설업 등에 대해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작성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 건설공사에 대해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양자의 작성대상이 동일한 경우 통합 작성하도록 허용

○ 안전관리계획서는 작업내용 · 상황이 수시로 변하는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공종(공사의 종류, 공사의 진행절차) 위주로 작성하고 있으나,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공종이 아닌 재해유형별로 작성하도록 의무화하여 양자를 실제 통합 · 운영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공종별로 작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실제 통합 ·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

⇒ 유해위험방지계획서(첨부서류)를 공종별로 작성할 수 있도록 개선
(시행시기는 '07년 3월부터 시행)

■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제도의 개선

○ 사업주는 근골격계 부담작업(단순 반복작업, 중량작업 등)에 대해 작업장 신설후 1년 이내 최초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 근골격계 질환자 발생시, 신규작업 · 설비 도입시, 근골격계 부담 작업량 또는 공정 변경시에는 수시로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
- 한편, 매 3년마다 작업장 전반에 대해 정기유해요인조사를 실시토록 의무화

○ 최초유해요인조사를 토대로 사업장내 작업환경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수시유해요인조사를 통해 보완해 나갈 수 있으나,

- 매 3년마다 획일적으로 정기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중복성격이 있는 과도한 규제

⇒ 노사협의를 거쳐 정기유해요인조사와 수시유해요인조사를 통합하거나, 정기유해요인조사 실시주기를 연장(예 : 매 5년마다 실시)하는 방안 검토 (중장기 과제)

■ 준비작동식밸브 스프링클러와 자동화재탐지설비 중복설치 배제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공장 및 창고시설 등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 자체 화재감지·수신·경보 기능이 있는 준비작동식밸브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경우에도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면제규정이 없어 혼선 발생
⇒ 자동화재탐지설비 기능과 성능(감지·수신·경보)을 보유한 준비작동식밸브 스프링클러 설치시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의무 면제규정 마련

(2) 사업장 여건상 비현실적인 규제의 개선

기본방향 ◆ 사업장 여건상 적용이 곤란한 과도한 규제의 현실화
◆ 개념정립 및 상이한 기준 일치로 규제의 투명성 확보

■ 도장공장내 경보장치 설치의무 폐지
○ 인화성 물질의 증기, 가연성 가스 또는 가연성 분진이 존재하여 폭발·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 도장공장의 경우 작업시 증기발생에 의한 경보장치 오작동으로 작업지장이 초래되고, 페인트 분진에 접착돼 경보장치의 기능이 발휘되지 않는 등 실제 여건이 미반영된 비현실적 규제
※ 도장공장은 모든 전기설비의 방폭형 설치의무화, 공장내 화기작업 금지, 환기시설 설치의무화 등 특별관리하고 있어 화재 발생위험은 크지 않음
⇒ 도장공장의 경우 방폭형 전기기계·기구 설치시에는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 설치의무를 폐지

■ 화재위험도가 낮은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화재감지기 설치기준 완화
○ 가공공장·기계조립공장·주물공장 등 화재위험도가 낮은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옥외소화전 및 연결살수설비의 설치를 면제하고 있으나, 화재감지기 설치는 의무화

○ 소방대상물의 특성상 천장이 높은 공장은 화재감지기 설치 및 관리유지가 어렵고, 화재와 무관한 원인(열기, 먼지, 수증기 등)에 의한 오작동시 생산활동에 막대한 차질 초래

⇒ 화재 위험도가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감지기 설치효과가 적은 특정소방 대상물(예 : 프레스공장, 주조공장 등)에 대하여는 화재감지기 설치의무를 면제

■ 안전난간의 발끝막이판 설치요건 명확화

○ 작업자 추락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때에는 안전난간 발끝막이판은 바닥면 등의 표면으로부터 10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하도록 의무화

- 다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 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한 장소는 제외하도록 규정

○ 그러나, 낙하·비래(飛來) 위험이 없는 장소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이 없어 관계기관 점검시 지적요인이 상이한 경우가 발생하여 혼란 초래

- 통행용 발판(족장), 건널다리(Bridge), 실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안전난간 등이 낙하, 비래 위험이 없는 장소인지(발끝막이판 설치 필요성)여부에 대해 해석상 차이 발생

⇒ 낙하, 비래 위험이 없는 장소 등에 대한 적용기준을 지침으로 시달(예 : 작업장소로 사용되지 않는 안전난간의 경우 제외) (노동부)

■ 크레인 전용탑승설비 구명줄 설치규정 개선

○ 크레인에 전용 탑승설비(달기구)를 설치해 고소작업을 하는 경우 탑승근로자 추락방지를 위하여 안전대(안전벨트) 및 구명줄 설치를 의무화

○ 크레인 작업시 구명줄 설치는 작업여건상 설치가 곤란하거나 다른 위험발생 가능성이 커 과도한 규제로 작용

⇒ 크레인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여 고소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대 또는 구명줄을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변경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규제 완화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이 많은 사업장의 경우 차량종류별, 작업방법별, 화물의 종류별로 매 작업시마다 작업계획서를 작성토록 의무화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과도한 규제

- 작업계획서의 작성내용이 당해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 작업별 이동경로, 차량기계 등의 종류 및 능력, 화물의 종류 및 형상 등 매우 복잡하여 많은 불편을 초래

⇒ 작업계획서 작성내용을 해당 위험요인, 위험요인발생시 대책 등 필수적인 사항만을 기재할 수 있도록 간소화

○ 매 작업별 별도의 작업지휘자 지정, 유도자 배치 의무화는 과도한 인력배치가 요구되는 비현실적인 규제
⇒ 작업지휘자가 유도자를 겸임할 수 있도록 허용

■ 사다리 설치 규제 개선
○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의 등받이울 규정은 외국 및 국내 다른 기준에 비해 엄격하여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사다리에 등받이울을 설치해야 하는 과도한 부담 발생

❍ 미국 A.N.S(American National Standard)
– 수직사다리의 경우 약7.3m(20피트) 이상 사다리에 대해 2.1m~2.4m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수직사다리 뒤쪽의 벽(WALL)등이 900㎜ 이내일 경우 등받이울로 인정

❍ 산업안전공단기술지침(KOSHA CODE:크레인 접근통로 및 방책 설치기준)
– 수직 사다리의 구조는 높이 5M 이상인 구조에 한해 2.5M 지점부터 등받이 울을 설치하도록 규정

⇒ 국제기준에 적합한 사다리 등받이울에 관한 규정 마련(예 : 7m 이상 수직사다리의 경우 2.1m~2.4m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

○ 외국 선주사에서 설계도면으로 요구한 선박의 사다리 구조가 국내기준과 상이할 경우, 작업시는 국내 규정에 맞는 작업용 사다리를 설치한 후, 본선용 사다리를 재설치할 필요
– 선박당 수백 개의 사다리 재설치시 비용, 시간면에서 부담이 커 국가경쟁력 저하 요인으로 작용

⇒ 구명줄 설치 등 추락위험예방조치를 한 경우 건조선박의 본선용 사다리에 대한 예외규정 적용

■ 이동용 사다리에 대한 안전규정 명확화

○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상 계단의 안전기준은 사다리의 안전기준보다 엄격하나, 계단과 사다리에 대한 명확한 정의규정 미비

※ 계단의 안전기준 : 강도(500Kg/㎡ 하중 견딜 수 있는 강도, 폭(1m 이상), 계단참(3m 마다 너비 1.2m 이상 계단참)

※ 사다리식 통로 안전기준 : 견고한 구조, 발판간격 동일, 미끄럼 방지조치, 사다리 상단 60cm이상, 기울기 80도이하 설치, 계단참(10m 이상시 5m 마다 계단참), 폭은 30cm이상(이동용 사다리 경우)

○ 사업장 감독시 계단과 이동용 사다리의 판단기준이 불명확하여 업계의 혼란 및 부담증가 초래

- 사업장에서 이동용 사다리로 통용되고 있는 A형 발판사다리(Stepped Ladder) 및 통행용 서비스 타워를 감독기관에서는 고정된 설비인 계단으로 해석

⇒ 이동용 사다리의 경우 사다리규정 적용 관련지침 마련 (다만, 사다리에서 작업실시시는 작업대 규정을 적용)

■ 사다리 작업의 기준 일원화

○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제20조제1항제5호)에서는 '사업주는 사다리식 통로를 설치하는 때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상 올라가도록' 규정

○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노동부고시 제2005-35호)에서는 '사다리는 작업장에서 위로 1미터 이상 연장되어 있도록' 규정이 각각 상이하여 혼란발생

※ 가설공사 : 본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본공사에 앞서 임시 시설물 및 안전설비 등 기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 사다리 작업기준을 명확하게 일원화(예 :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3) 과도하거나 획일적인 규제의 합리화

기본방향 ◆ **과도한 규제 완화로 기업부담 완화 및 기업경쟁력 제고**
◆ **획일적 규제 완화로 실질적 형평성 제고**

■ 도장시설 탄화수소(THC) 배출허용기준 개선

○ 2005년 1월 1일부터 도장시설에 대한 탄화수소(THC : Total Hydro-Carbon) 농도 규제를 시행(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 그러나, 현행 농도기준은 외국에 비해 과도하며, 실제 현재 사업장 도장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대기오염 방지시설(활성탄 흡착탑 방식)로는 기준 충족이 불가능한 실정

- 현행 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RTO(Regenerative Thermal Oxidizer : 축열식 연소설비)가 유일한 대안이나 막대한 설치·운영비용, 설치공간 확보, 기타 기술적 문제로 설치 곤란

⇒ 고농도 연속공정(예 : 조선업종 전처리도장)이외의 도장시설에 대하여는 배출허용기준을 완화

· 배출허용기준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와 비용·효과분석 후 구체적인 완화방안을 마련하여 관계장관회의에 보고

※ 전처리공장 : 후판 녹방지를 위해 일반도장에 앞서 강판 방청제를 도포하는 연속공정으로 기계에 의해 자동 분무되는 소형공장(고농도 THC발생)

■ 작업환경측정횟수 주기연장 개선

○ 사업주는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에 대해 매 6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하도록 의무화

- 작업환경 측정결과, 우수업체는 측정주기를 연장하고, 미달업체(유해인자 초과업체)는 측정주기를 단축

○ 그러나, 노출기준 1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노출기준에 미달하는 모든 단위작업공정의 유해인자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주기연장을 허용치 않고 있음

- 모든 단위작업공정의 유해인자에 대한 형식적인 작업환경 측정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과다한 기업부담으로 작용

※ 기준초과 유해인자에 대해 집중 관리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

※ '03.7.7일 이전에는 작업환경이 양호한 사업장에 대하여 단위작업공정별, 유해인자별로 측정주기를 연장하였음

⇒ 일정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공정의 유해인자의 경우에는 단위 작업공정의 유해인자별로 작업환경측정주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변경

※ 구체적인 유해인자별 측정주기 연장기준은 연구용역과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결정하되, '08년 1월 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

■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제도 개선

○ 유해 · 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장별(대상기업 724개)로 3년마다 이행상태를 평가하여 P, S, M 등급으로 구분하여 차등관리중

○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수준 평가기준, 평가등급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해당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 등을 유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노동부의 내부기준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평가기준 등의 객관성, 형평성, 투명성 제고 필요성 제기

⇒ 이행상태 평가제도에 관한 평가기준, 평가등급 등을 고시 등을 통해 공개하여 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

■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 시행 개선

○ 사업주는 근골격계질환으로 요양결정을 받은 근로자가 연간 10인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5인 이상 발생 사업장으로 발생 비율이 그 사업장 근로자의 10% 이상인 경우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시행하여야 함

※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 : 유해요인조사, 작업환경개선, 의학적 관리, 교육 · 훈련,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근골격계질환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 그러나, 연간 10인 이상의 요양결정을 받은 근로자가 있는 경우는 사업장 규모 · 업종 구분없이 획일적으로 예방관리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하므로 대규모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

※ 대규모 기업의 경우 예방관리프로그램 시행시 수억원의 비용 발생

⇒ 사업장 규모에 따른 발생 비율을 감안하도록 장기적으로 개선

(4) 규제운영의 합리성 제고

기본방향 ◆ **기업현실을 감안한 탄력적 규제 운영**
◆ **불필요한 규제 개선으로 기업의 자율성 확대**

■ 공장 증축시 일부 시설의 소방시설기준 적용 완화

○ 특정소방대상물을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시설 전체에 대해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예 : 옥외소화전,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의 추가설치)을 적용하도록 의무화('04.5.30 시행)

※ 특정소방대상물 :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판매시설, 영업시설, 업무시설, 공동주택, 공장, 지하상가, 지하구, 문화재 등

- 다만, 방화구획(내화구조로 된 바닥과 벽, 갑종방화문으로 구획)으로 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에 대하여는 종전 기준을 적용

○ 기존 공장내 일부 작업공간을 활용한 간이시설(종업원복리시설 등) 설치시 또는 공장외부에 캐노피 증축시에도 기존 시설 전체에 대해 강화된 기준이 적용돼 과도한 기업부담 발생

- 방화구획의 설치가 곤란한 소규모 간이시설이나 캐노피를 추가설치하는 경우에도 바닥면적이 증가되는 '증축'으로 보아 전체 시설에 대해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을 적용

⇒ 화재위험도가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내부에 방화구획 설치가 곤란한 소규모 간이시설이나 외부 캐노피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조치

■ 소방시설업 등록업무 처리기간 단축

○ 소방시설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은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부하도록 하고, 소방시설업 등록대장에 기재하여 관리

○ 등록기준의 적정여부 심사 및 실사기간이 실제 소요되는 시간(통상 10일 이내 소요)보다 길어 업체부담으로 작용

⇒ 소방시설업 등록업무 처리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

■ 소방시설 착공신고 규정 완화

○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설비 · 구역을 증설하는 경우, 기존 소방시설 전부 · 일부를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착공신고를 하도록 의무화

○ 교체 · 보수시 착공신고토록 되어 있는 특정소방설비(수신반, 소화펌프, 동력(감시)제어반)의 경우 착공신고완료 후에만 공사를 시행할 수 있어 고장 발생시 긴급대처 곤란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수신반, 소화펌프, 동력(감시)제어반)을 긴급 보수할 경우에는 사전 착공신고를 사후 완공신고로 대체

■ 위험물시설의 용도폐지 신고제도의 개선

○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등의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폐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시 · 도지사에게 신고토록 하고, 위반시에는 50만원~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용도폐지 신고는 통상 시설폐쇄후 신고가 필요한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사업종료후 상당기한 경과되고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국민의 실제 부담이 커 민원 발생

⇒ 위험물 용도폐지 신고의무에 대한 교육 · 홍보를 강화하고, 과태료 부과금액을 인하

■ 위험물시설의 변경허가기준 개선

○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등의 위험물시설의 위치 · 구조 또는 설비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면제사항 이외에는 모두 시 ·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허가면제사항 : 건축물 주요구조부 외의 것을 부분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밸브 · 압력계 · 계량장치 또는 안전장치를 변경하는 경우, 전기설비 또는 전동기구를 철거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조명기구의 교체 중 전기설비의 교체를 동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13개 항목

○ 통상 반드시 변경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만을 규제(negative방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반대로 명시된 사항이외는 모두 변경허가(positive 방식)받도록 되어 있어 과도한 규제로 작용

– 경미한 사항을 허가받아야 하는 부담과 허가대상여부에 대해 일선부서간에 차이가 발생해 투명성 저해 및 혼선 발생

⇒ 위험물시설에서 변경허가가 필요한 사항만을 변경허가대상으로 정하도록 변경 (positive 방식 → negative방식)

■ 건설업 연차공사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변경

○ 건설공사의 경우 「총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의무화
- 그러나, 연차공사(장기계속공사)의 경우 년도별 공사규모와 관계없이 「총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단년도 공사규모에 비해 안전관리자가 과다 배치되는 문제 발생

⇒ 연차공사(장기계속사업)의 경우 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을 시행기간을 감안하여 축소할 수 있도록 변경

■ 산업재해 통계기준의 개선

○ 사업주는 사망자,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때에는
- 당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

○ 재해관련 통계자료는 조선업 등의 대외 입찰참가자격 평가자료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나,
- 재해통계산정기준이 외국에 비해 불리하여 대외수주 경쟁시 경쟁력 저하요인으로 작용
- 현재 산업재해는 '4일 이상의 요양'의 경우 통원치료 및 투약기간까지 포함하고, 경미한 재해도 예외없이 포함하는 등 지나치게 넓게 집계
- 기업들은 불이익 방지를 위해 경미한 재해는 공상 등으로 처리하여 은폐함으로써 실제 정확한 통계자료 유지 곤란

⇒ ① 산재발생 기록·유지 대상과 보고대상을 구분하여 경미한 재해에 대해서는 사업체에 자체 기록·유지의무만 부과

② 재해율 산정시 포함하는 재해의 범위는 현행 '요양'기준에서 '휴업'기준으로 변경
※ 시행시기는 '07년 3월부터 시행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 미개최에 대한 처벌 합리화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정기회의는 매 3월마다 소집하도록 의무화하고, 미개최시는 과태료(100만원)로 제재

○ 일방 당사자의 불참 등 사업주의 귀책사유없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3개월 마다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에 대한 예외가 없어 업체부담 발생 우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정기회의가 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개최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제재를 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지침 시달(노동부)

■ 타워크레인 설치검사 일정 단축

○ 크레인, 리프트, 승강기, 압력용기, 프레스, 보일러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검사기관(산업안전공단)에게 검사희망일 15일전에 신청하여 설계 · 완성 ·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고

– 감사기관은 검사신청일의 접수일 부터 15일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합격 · 불합격 판정을 하도록 규정

○ 건설공사의 경우 계절 및 기후의 영향이 커 타워크레인 설치시기를 정확히 사전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으나, 검사희망일의 사전 신청기간은 지나치게 길어 업체 부담 발생

– 검사신청일에 수검준비를 못 맞추는 경우 검사실시가 사실상 5일 이상 지연됨으로써 공기지연 등 경제적 부담 발생

⇒ 건설업 타워크레인에 대해서는 검사인력 등을 충원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사희망일 10일전에 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

라. 향후 추진일정

○ 부처별 세부추진계획 수립 · 제출 : '06.7월

– 노동부, 소방방재청 등

○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 이행 : '06.8월

○ 추진 상황 점검 · 평가 및 대책 보완 : 매월

3.13 사업자교육 개선방안

집필자 : 강진규 사무관(Tel. 2100-8797, k825an@ftc.go.kr)

가. 추진배경

■ 중앙행정기관 장이 소관업무 관련 자격 취득자의 자질 향상, 영업 종사자 및 일반 국민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하여
○ ①국가자격 취득자, ②국가공인 민간자격 취득자, ③특정업종 사업자(종사자)에 대해 사업 · 업무관련 교육 의무를 부과

■ '05년말 현재 보건복지부 등 16개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118개 법률에 의거 총 232종의 교육과정을 운영 중
○ 중앙행정기관 장은 지방자치단체에 교육의 일부를 위임하거나 사업자단체 · 협회 · 대학 등에 위탁하여 실시

○ 교육은 자격 취득시 또는 영업 개시전에 이루어지는 사전교육과 자격취득 등 이후 이루어지는 보수교육으로 구분

■ '05.9.27.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각종 사업자교육 개선 추진방향」을 논의
○ 교육 전반에 걸쳐 (i)교육의무 부과 필요여부 검토, (ii)교육의 실효성 제고 및 (iii)교육의 편의 제고 방안을 마련키로 함

나. 사업자 등에 대한 평가

■ 긍정적인 측면
○ 국민의 안전 · 보건 확보 등에 기여
- 사업자 등에 대한 안전 · 위생교육 등을 통해 이들 사업자의 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이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 · 보건 확보 등에 기여

■ 부정적인 측면
○ 교육의 형식적인 운영
- 일부 교육은 내용이 환경변화에 뒤떨어지거나 형식적으로 운영(자격 취득시 교육내용 반복 등)되어 교육의 실효성 저하

○ 이론 위주의 집합교육 지속
- 교육이 대부분 법령 · 이론 및 정신 교육 위주의 집합교육 방식으로 실시되어 사업자 등의 영업활동에 부담으로 작용

○ 교육실시기관 독점화에 따른 문제
- 특정 사업자단체가 일부 교육을 독점적으로 수행하여 교육내용 등에 대한 교육 대상자의 의견이 충분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교육이 회원 가입 강제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도 발생

다. 개선방안

(1) 의무교육 필요성 재검토

기본방향 ◆ **국가에 의한 교육실시 필요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필요성이 미약한 교육의무는 폐지 · 개선**

■ 자격취득자에 대한 보수교육 재검토

○ 국가자격 취득자의 업무가 국민의 생명 · 건강 · 안전 등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적은 분야에서도 보수교육을 의무화
- 그러나, 이들 분야의 경우 보수교육 이수를 강제하기보다는 자격취득자가 시장에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발적으로 기술 개발 및 전문성 제고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 일부 교육들은 교육이 형식화될 뿐만 아니라, 단체가입 · 회비강제 수단으로 이용되면서 다수 민원이 제기

* 규제개혁위원회는 「사업자단체 규제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98년에 국가기술자격 및 국가자격 중 일부 자격(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등)에 대해 보수교육 의무를 폐지키로 결정한 바 있음

⇒ 업무가 국민의 생명 · 건강 · 안전 등에 직접 관련이 적은 국가자격 취득자의 경우 일률적인 보수교육 이수 의무 폐지

※ 다만, 자격관리기관(정부, 협회 등)이 자격취득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시 희망자에 한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허용

*또한, 자격취득시나 영업종사전에 실시하는 교육 및 실무수습은 존치

< 보수교육 폐지대상 국가자격 현황 >

소관부처	자격종목
관세청(2)	관세사[관세사법], 보세사[관세법]
금융감독위원회(2)	보험계리사 · 손해사정사[보험업법]
농림부(1)	경매사[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관한법률]
문화부(5)	호텔경영사 · 호텔관리사 · 호텔서비스사 · 관광통역안내사 · 국내여행안내사[관광진흥법]
재정경제부(2)	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세무사[세무사법]

○ 업무가 국민의 생명 · 건강 · 안전 등과 직접 관련된 국가자격 취득자의 경우 보수교육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 영업종사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이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자격 취득자의 전문성 제고, 국민의 생명 · 건강 · 안전 확보 등에 실효성은 적으면서 자격 보유자에게 시간 · 비용 부담을 초래

※ 일부 보수교육의 경우 교육이수율이 매우 저조하고, 보수 교육 미이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경고 또는 자격정지 등의 제재조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

*교육이수율('04년) : 물리치료사 40.9%, 방사선사 29%, 의무기록사 54.7%

⇒ 업무가 국민의 생명 · 건강 · 안전에 직접 관련이 큰 국가자격 취득자의 경우에도 취업, 고객유치 등을 위해 스스로 전문성 유지 · 제고노력을 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① 영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보수교육 의무를 면제

② 영업 종사시에도 정기 교육보다는 중요 정책의 변경, 급격한 기술변화 등 특별히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교육을 실시하도록 개선

*자격관리기관은 홈페이지, 메일 등을 통해 자격취득자에게 정보습득 기회를 제공하고 필요시 희망자에 한해 자율교육(워크숍 등) 실시

*교육이수율 제고를 위해 교육참가자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 권고
(예 :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의 교육이수건수 · 일수 · 비용 등을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 평가시 평가항목에 반영하고 있음[의료법 § 47의2])

< 개선대상 국가자격 현황 >

소관부처	자격종목
보건복지부 (20)	①의료법 : 의사 · 전문의 · 치과의사 · 한의사 · 간호사 · 간호조무사 · 조산사 · 안마사 ②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 물리치료사 · 방사선사 · 의무기록사 ·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 · 치과기공사 · 치과위생사 · 안경사 ③약사법 : 약사 · 한약사 · 한약조제사 ④응급의료에관한법률 : 응급구조사
해양수산부 (6)	기관사 · 운항사 · 통신사 · 항해사[선박직원법] 구명정수 · 의료관리자[선원법]

■ 특정 업종 영업자 · 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 폐지

○ 식품, 공중위생 등 특정 업종 영업자 · 종사자에 대해 보수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 형식적 교육 반복, 교육참여자의 관심저조 등으로 교육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사업자 등에 부담으로 작용

⇒ 식품영업자 등에 대한 정기 보수교육을 폐지하고 영업 개시 및 법규위반 등 특별히 필요한 경우* 교육 실시

※ 필요시 행정기관 지도 · 점검시 교육, 교육 · 홍보자료 개발 · 보급, 서비스가 우수한 사업자에 대한 홍보 강화 등 실시

*(예시)(i) 국민의 생명 · 건강 ·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중대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ii)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iii) 시도지사가 국제적 행사나 대규모 특별행사 등을 위하여 소관 부처 장관에게 교육실시를 요청한 경우 등

① 식품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식품위생법 § 27]

*식품제조 · 가공업, 즉석판매제조 · 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 · 판매업, 식품보존업, 용기 · 포장류제조업,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영업 · 일반음식점영업 · 단란주점영업 · 유흥주점영업 등)

– (현행) 매년 위생교육(3시간)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개정 법령에 대한 해설 외에는 영업개시전 교육과 유사한 교육을 반복하고 있어 매년 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낮음

*교육내용 : 식품위생법령 및 주요 개정내용, 식중독 예방 및 위생관리, 세무·경영관리 등
*'04 이전 : 영업허가·신고, 행정처분시에만 교육이수 의무 부과
→ '04.1월 법개정시 매년 보수교육을 받도록 강화

② 유흥주점영업 종사자 위생교육[식품위생법 § 27]
- (현행) 유흥주점영업 종사자는 매년 2시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나, 교육대상자 파악이 어려우며 업소별 교육이수도 부진
- 유흥주점영업자(매년 3시간 교육)가 위생확보, 서비스질 제고 등을 위해 종사자에게 자체교육을 실시토록 함이 바람직

③ 공중위생영업소* 영업자 위생교육[공중위생관리법 § 17]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
- (현행) 관련 법령해설 등 면허취득시 또는 영업개시전에 실시하는 업무지식 교육과 유사한 교육(매년 4시간)을 반복
*'04 이전 : 영업신고, 행정처분시에만 교육 의무 부과
→ '04.1월 법개정시 교육 강화(규개위는 '03년 교육강화 반대)

④ 선원 등에 대한 안전교육[선원법 § 106]
- (현행) 선장이 모든 선원에 대하여 선상에서 소방·구명정훈련 등 비상시에 대비한 교육을 자체 실시토록 의무화하는 한편,
  · 이와 별도로 항해사·기관사·운항사·구명정수 등에 대해 상급안전(구명정·소화·응급처치) 보수교육 이수의무를 중복 부과(5년마다 국제선 : 3일, 국내선 : 2일)
  · 또한 정부는 선박이 안전관리체제 수립 및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인증서 발급)하고 필요시 개선 조치 부과

*외국의 경우 선상에서의 자체 안전교육·훈련 실시의무 외에 별도의 보수교육 이수의무 없음
- (개선) 일정 기간(예 : 최근 5년내 1년이상) 승선한 선원에 대해서는 상급안전 재교육 이수의무 폐지

■ 실효성이 미약한 사전교육제도 폐지

○ 일부 사전(신규)교육의 경우 상위 안전책임자가 있어 별도 교육의 필요성이 낮거나
- 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수요의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기업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는 사례 존재

⇒ 화약류취급보조원 등에 대한 사전교육제도 폐지

① 화약류취급보조원 안전교육[총포 · 도검 · 화학류등단속법시행령 § 26]
· 화학류취급보조원은 화약류제조 · 관리 보안책임자의 지시 ·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어 감독자에 의한 현장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며 '97년 이후 교육실적도 없음

② 간호(조무)사 조산 · 피임시술 교육[모자보건법 § 13]
· 최근 조산 · 피임시술을 의사가 직접 행함에 따라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에 대한 조산 · 피임시술 교육 필요성 감소

*조산교육 : 80년대 초반 교육 종료, 피임시술 교육 : 99년 교육 중단

■ 기타 교육대상자에 대한 부담 경감

○ 일부 내용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교육과정간 통합교육 실시

⇒ 폐기물 처리자 및 배출자 교육과정 통합[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34]

*처리자교육 이수 대상인 업체 배출자교육 면제

○ 교육대상자가 상당수준의 관련 지식을 보유한 경우 교육이수 의무를 면제하거나 교육시간을 단축

⇒ 동일 업종내 전직 근로자(건설업 제외) 등의 산업안전 · 보건교육시간 단축[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8]

① 동일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내 타 업체로 전직하는 경우 채용시 교육 8→4시간 단축

② 특별교육(유해 · 위험작업 수행시)을 이수한 자가 이직후 1년이내 타 업체의 동일 작업에 배치되는 경우 특별교육 16→8시간 단축

○ 과도하게 편성된 교육주기 · 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

① 자동차 판매 등 영업직 근로자에 대한 안전 · 보건교육시간을 생산직 기준에서 사무직 기준으로 단축(정기 : 매월 2→1시간)[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8]

②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 또는 기관의 방사능방재업무 담당직원 보수 교육[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 36] : 매년 8→4시간

③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작업장 등의 영업자 보수교육 [축산물가공처리법 § 9] : 매년 8→4시간

④ 승강기자체점검자 보수교육[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 17 및 § 20] : 3년마다 8→4시간

⑤ 산업표준화 품질관리 담당자 양성교육[산업표준화법 § 36의2] : 116→100시간

⑥ 폐기물처리 담당자(환경보전협회 교육대상) 보수교육[폐기물관리법 § 40] : 3년마다 14→6시간

⑦ 소음진동기술인 보수교육[소음진동규제법 § 50] : 3년마다 14→6시간

⑧ 실내공기질관리자 신규 · 보수교육[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 § 17] : 3년마다 8→6시간

⑨ 토양환경기술요원 신규교육[토양환경보전법 § 23의14] : 40→35시간

⑩ 개성공단 · 금강산지역 비상주 공사근로자에 대한 북한방문 안내교육[남북교류협력에 관한법률 § 24] : 통일교육원 소집교육(3시간) → 남북출입사무소 영상교육(10여분)

○ 교육대상자가 배정된 시간에 교육이수가 어려운 등의 경우 교육이수 유예기간 부여 또는 실질적 업무책임자 지정 · 참석 허용(법적 근거 마련)

⇒ 건강기능식품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 : 영업허가(신고)전 대표자의 교육 이수 의무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영업 허가(신고)후 3개월까지 교육** 이수 및 종업원중 내규상 지정된 위생책임자 참석*** 허용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 13, 식품영업자 위생교육은 00년 기실시]

* 도서 · 벽지 소재, 영업 준비 등
** 건강기능식품제조업 · 수입업 : 8시간, 판매업 : 4시간
*** 일부 건강기능식품의 대표자는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고 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 업무를 종업원에게 위임

(2) 교육의 실효성 제고

기본방향
- **교육방법을 다양화하고 교육의 자율성을 제고하여 사업장 실정에 적합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유도**
- **교육운영에 대한 평가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교육대상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교육이 내실있게 이루어지도록 유도**

■ 교육대상자에 따른 교육의 차별화

○ 일부 교육의 경우 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교육내용 · 시간 등을 획일적으로 구성하여 교육의 실효성 저하

⇒ 교육대상자의 업무경력, 과거 교육 이수 횟수 등을 고려하여 교육내용, 시간 및 주기를 차등화

① 원자력사업자 및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 단체 · 기관의 방사능방재업무 담당자 교육[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 36] : 3회 이상 방사능 방재교육 이수시 교육시간 단축(매년 8→2시간)

②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작업장 등의 영업자 교육[축산물가공처리법 § 9] : 영업기준을 준수하고 일정기간(예 : 2년) 교육이수시 재교육 면제

③ 유 · 도선사업자(종사자) 안전교육[유선및도선사업법 § 24]
: 자격증 소지, 업무경력 등을 고려 교육시간 및 내용 차등화

④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업무 종사자 교육[수상레저안전법 § 16]
: 재교육시부터 교육시간 단축(매년 24→16시간)

■ 교육업무 자치단체 위임

○ 일부 교육은 교육내용 구성, 교육대상 관리 등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에도 중앙행정기관에 교육이 과도하게 집중

⇒ 지역산업 · 특성 등과 관련되어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교육 업무는 자치단체에 위임

① 가축 인공수정사 교육[축산법 § 12] : 농림부 → 시도
(시 · 도의 축산기술연구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지정)

② 유 · 도선사업자 안전교육[유선및도선사업법 § 24]
: 해양경찰청 및 시도 → 해양경찰서 및 시군구

■ 교육실시기관 복수 지정을 통한 경쟁 촉진

○ 일부 교육의 경우 특정 사업자단체가 교육을 독점하고 있어 교육내용 및 구성 등이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교육대상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함

– 또한 교육기관의 독점화로 인해 수강료, 교통비 등 교육비용에 비해 교육의 질이 저하된다는 의견도 제기

⇒ 교육기관을 복수로 지정하여 교육대상자의 선택권 제고 및 기관간 경쟁을 통한 교육서비스의 질 제고 유도. 필요시 교육기관 지정 · 등록요건 정비

① 식품영업자 위생교육[식품위생법 § 27] : 업종별로 세분화된 교육과정 통합 및 교육실시기관 복수 지정

② 일반경비원, 특수경비원, 경비지도사 등 교육[경비업법 § 11, § 13, § 27]
: 교육기관 확대 지정

③ 축산물가공영업자, 검사업무종사자 등 축산물영업자 위생교육[축산물가공처리법 § 9] : 교육기관 복수 지정
*현재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서만 교육 실시

④ 주택관리사(보) 교육[주택법 § 58] : 교육기관 복수 지정
– 대한주택관리사협회(1) → 대한주택공사 등 추가 지정

⑤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 교육[산업표준화법 § 36의2] : 교육기관 복수지정을 위한 법령상 교육기관 지정요건(인력, 시설 등) 마련
*현재 한국표준협회에서만 교육 실시

■ 교육에 대한 평가 강화

○ 일부 교육의 경우 교육이수자 등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교육대상자의 의견을 반영한 교육 개선 미흡

⇒ 교육대상자가 일정수(1천명)이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부처는 교육내용·방법 등이 수요자의 입장에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평가시스템 마련

※ 교육평가제도를 마련 예정인 교육과정

- 자동차검사자 선임시 교육[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92]
- 중개업자 실무교육[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 34]
- 경영·기술지도사 교육[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 32]
- 유·도선사업자등의 안전교육[유선및도선사업법 § 24] 등

(3) 교육대상자의 편의 제고

기본방향 ◆ **교육대상자의 편의를 적극 반영하여 교육운영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교육인적자원부담 경감 및 교육효과 제고 도모**

■ 순회교육 확대

○ 일부 교육장소가 특정 지역에 제한되어 있어 원거리에 위치한 교육대상자의 비용 증가 및 불편 초래

⇒ 교육수요를 조사하여 교육계획인원이 일정 수(예 : 50여명) 이상이 되는 경우 연간 교육계획에 순회교육 적극 반영

① 자동차검사자 선임시 교육[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92]

② 승강기 안전교육[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 16의2] 등

*승강기관리자·자체점검자·검사자·실무기술인력 등

■ 원격교육 적극 도입

○ 교육내용이 법령·이론·정신 교육 중심으로 되어 있어 온라인 교육 등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나, 집합교육만을 실시하여 원거리에 위치한 교육대상자들의 과도한 부담 초래

- 현장실습 외의 교육에 대해서는 인터넷, CD-ROM 등을 통한 원격교육을 활성화할 필요

*(예) 한국감리협회에서는 인터넷 원격교육을 집합교육과 병행 실시('04.10)

⇒ 집합교육은 신기술 습득 등을 위한 현장실습 중심으로 구성하고,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원격교육시스템 도입을 적극 추진

① 중개업자 실무교육[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법률 § 34]
② 총포소지 허가전 교육[총포 · 도검 · 화약류등단속법 § 22]
③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원자력법 § 105]
④ 전기공사기술자 양성교육[전기공사업법 § 19]
⑤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에 관한 교육[산업표준화법 § 36의2]
⑥ 영유아 보육시설종사자 교육[영유아보육법 § 23]
- 영유아 보육시설의 장, 보육교사에 대한 직무 · 승급 교육에 대해 인터넷을 통한 원격교육시스템 도입

⑦ 경영 · 기술지도사 교육[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 32]

(4) 기타 제도 개선

■ 교육 관련 규정의 명확화

○ 일부 교육 근거법령의 경우 사업주나 종사자의 교육이수 의무 여부가 불분명하여 기업에 혼선 초래

*(예시)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경우 안전 · 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나, 업체명이나 대표자(고용주) 변경후 근로자의 고용이 승계될 경우 새 사업주의 교육실시 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가 불분명

⇒ 사업주나 종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근거 법규의 불분명한 규정들을 명확하게 정비

① 근로자 채용시 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 31]
- 업체명이나 대표자 변경후 고용이 승계될 경우 사업주의 채용시 교육실시 의무가 면제됨을 명확히 함

② LPG자동차 정비 · 폐차업 종사자 교육[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 31]
- LPG자동차를 정비 · 폐차하는 자는 중 LPG 연료계통 등 관련 부품 · 장비를 정비 · 폐차하는 자로 한정

○ 사업주 등에 대한 교육은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령에서 교육의 기본적인 내용을 규정할 필요가 있으나,
- 일부 교육의 경우 근거법령에 교육내용 및 최소 의무교육시간 등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음

⇒ 근거 법령에 교육운영의 기본적인 사항(교육내용 ·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① 자동차검사자 선임시 교육[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92]
- 교통안전공단 및 자동차정비조합연합회가 자동차정비업체 검사자에 대해 자율적으로 실시하던 교육에 대하여 교육시간, 내용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법규에 명시

② 급수장치 및 저수조 위생관리 교육[수도법 § 21조의5]
- 교육주기만 명시되어 있던 것을 현재 운영중인 교육시간을 토대로 법규에 교육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

③ 영유아 보육시설 종사자교육[영유아보육법 § 23]
- 보육시설의 장, 보육교사의 교육주기를 명확히 규정

■ 과태료 수준의 형평성 제고

○ 유사한 법정 교육에 대하여 교육 이수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가 상이하여 형평성 문제 제기

⇒ 유사한 법정교육 이수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수준을 형평성 있게 조정

① 가스안전 전문* 및 특별**교육[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 31]
- 액화석유가스 관련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를 도시가스, 고압가스 관련 법과 동일하게 완화(300→100만원)

*액화석유가스 관련 가스판매시설 및 검사기관 기술인력, 사용시설, 운반책임자, 가스시설시공업자

**액화석유가스 관련 배달원, 충전시설의 충전원, 자동차정비 · 폐차업소종사자, 가스운반자동차운전자

② LPG자동차 운전자 교육[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 31]
- 자동차 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 완화(300→20만원)

③ 공중위생영업자 위생교육[공중위생관리법 § 17]
- 공중위생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료를 식품위생교육과 동일하게 완화(30→20만원)

■ 기타 :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 31]
○ 사업주(관리자)가 당해 사업장 종사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기교육 의무를 획일적으로 부과함에 따라 교육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문제점 발생
⇒ 사업주가 매월 1~2시간 실시토록 되어 있는 교육을 분기별로 3~6시간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라. 향후 추진계획

○ 부처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 · 제출('06.7월)
- 각 세부 과제별로 자체 완료 시기 설정

○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 이행('06.10월)

○ 추진 상황 점검 평가('07. 1/4분기)

3.14 외국인 기업경영 · 생활환경 규제개선

집필자 : 서경숙 사무관(Tel. 2100-8807, ipromise@opc.go.kr)

가. 정책환경

○ 고용창출과 신기술 도입 등을 위하여 세계 각국의 외국인투자 유치 경쟁은 격화되고 있으나 전체 투자액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

< 전 세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UNCTAD >

(단위 : 순유입기준, 억불)

구 분	'99	'00	'01	'02	'03	'04
전 세 계	10,868	13,880	8,176	6,788	6,330	6,481

- 투자결정시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비경제적 요인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

*경제적 요인 : 내수시장 규모 및 성장가능성, 생산비용, 투자수익률 등
비경제적 요인 : 노사관계, 정부정책(제도적 요인), 교육, 의료 등

○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적극적인 투자유치 정책추진으로 외국인투자금액이 '04년 이후 매년 100억달러 이상의 호조세를 보임에 따라 일정궤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나
※ 외국인투자건수/규모 : ('02)2,408건/91억 → ('03)2,564건/65억
→ ('04)3,073건/128억 → ('05)3,666건/116억
- 외국인투자 잠재력을 평가하는 FDI 잠재력지수는 '03년 20위로 아직 다소 낮은 수준이고 경제규모 대비 투자비중도 8.1%로 세계평균(21.7%)보다 저조한 실정
*FDI잔액/GDP비중(UNCTAD '05년 보고서) : 싱가폴 150.2%, 말레이시아 39.3%, 영국 36.3%, 중국 14.9%, 대만 12.8%, 미국 12.6% 한국 8.1%

○ 한편,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투자기업에 비해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 최근 KT&G와 칼 아이칸 간의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외국인투자제한 업종 확대, 경영권 방어장치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

나. 규제현황 및 문제점

■ 규제현황

○ 외국인투자자 및 투자기업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국인과 동일한 대우를 보장
- OECD 등 국제규범에서 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인투자의 제한을 받지 않음

〈 외촉법상 외국인투자 제한사유(OECD 자본자유화규약 근거) 〉
❍ 국가의 안전보장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
❍ 대한민국의 법령에 위반하는 경우

○ 우리나라의 외국인투자 자유화율은 99.8%('06.2월)로 외국인 직접투자 제한업종은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관한규정」에서 고시

- 타 법령 또는 고시 등에서 내국인에 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는 등 외국인투자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매년 통합공고 실시

*외국인 직접투자 제한업종 : 미개방(2개/TV방송업, Radio 방송업), 부분개방(26개/한국통신 등 통신업, 한국전력 등 발전·송전·배전, 신문 발행업, 항공·운송업 등)

○ 외국인투자 관련 기본법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있음
- 동법은 외국인투자 자유화를 원칙으로 하되, 제한업종과 제한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 인정범위 및 절차, 외국인투자에 대한 입지지원, 현금지원 등의 지원내용과 절차 등을 규정

※ 조세감면에 관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별도로 규정
- 아울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지원센터(Invest KOREA) 설치를 규정

○ 일정지역을 정하여 외국인투자를 보다 촉진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의지정 및 운영에 관한법률」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관한 특별법」이 있음

○ 외국인투자 및 경영 관련, 외국인투자기업을 차별적으로 규제하는 법률은 없으나,
- 노사관계법, 세법 등의 법률의 일부 규정은 다수 외국의 경우와 달라 외국인투자 유치에 영향을 주고 있음

○ 외국인 생활환경분야는 대부분의 법률이 관련되어 있으나
- 특히, 외국인 생활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률로는 「출입국관리법」, 「초·중등교육법」,「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등이 있음

■ 문제점

○ 외국인투자 지원제도는 경쟁국에 비해 뒤지지 않으나 관련 행정권한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불편 초래
- 외국인투자 지원을 위해 설치된 Invest KOREA의 기능은 파견된 공무원들의 직접 처리권한이 없어 대부분의 업무가 상담·알선·대행에 그치고 있으며 행정업무는 출입국관리, 관세 등 일부 업무에 한정

○ 외국인들의 자녀교육, 의료환경, 주거조건 등은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여 투자 잠재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 특히, 좋은 외국인학교의 부족이 외국인들이 서울근무를 기피하는 큰 요인이 되고 있음

※ 서울 17개, 홍콩 62개, 싱가포르 26개교
- D-7 비자(주재 체류자격) 발급을 위한 일부 조건이 외국인기업 임직원 파견에 불편 초래

○ 혈당측정검사지는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약국에서만 판매하도록 하고 있어 외국인투자기업(내국기업 포함)의 영업상 지장 초래

다. 개선방안

(1) 실효성 있는 One Stop Service 시스템 구축

기본방향 ◆ **편리한 외국인투자 행정지원 여건 조성**
◆ **외국인투자 고충처리 기능 강화**

■ 외국인투자지원센터(Invest KOREA)의 기능강화

○ 외국인투자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KOTRA에 외국인투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 파견공무원들이 직접처리 권한이 없어 대부분의 업무가 상담·알선·대행 위주로 수행되고 있으며
- 파견공무원들이 부서권한을 위임받아 직접 처리하는 민원은 일부 관세 및 출입국 관련 업무에 불과

※ 직접처리 민원사무(7개,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별표1)
· 현물출자완료확인, 체류자격부여, 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기간연장허가, 재입국허가,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 등(사업자 등록은 제반 여건미비로 미실시)
- 투자유치에 긴요한 주요부처(재정경제부, 정보통신부 등)는 직원을 파견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이 미흡

〈 파견 기관(15개기관/19명) 〉
❍ 중앙정부(10/14) : 산업자원부(3), 건설교통부(1), 법제처(1), 환경부(1), 해양수산부(1)
법무부(2), 과학기술부(1), 노동부(2), 국세청(1), 관세청(1)
❍ 지자체(4/4) : 충청남도, 충청북도,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각 1명
❍ 유관기관(1/1) : 한국산업단지공단
※ 현재 파견공무원 18명중 12명이 별도정원

※ 재정경제부(조세감면 사전확인, 국·공유재산의 임대 관련 상담 등), 정보통신부(IT첨단기술사업 유치지원, 고도기술수반사업 관련 상담 등)
⇒ 외국인투자 관련 민원 집중처리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① 외국인투자지원센터에 직접 민원처리 권한을 부여하여 실질적인 One Stop Service가 가능하도록 개선
· 파견공무원에게 처리권한을 위임하여 현장에서 조치하도록 하고, 필요시 외국인투자지원센터에 출장소(분소) 설치

〈 Invest KOREA 파견공무원 우선 권한위임추진 업무 〉
❍ 조세감면 사전확인(재정경제부장관)
❍ 사증발급인정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근무처 변경·추가(법무부장관)
❍ 외국인등록, 체류지변경신고(관할출입국관리사무소장)
❍ 사업자등록(관할세무서장)
❍ 법원등기(관할등기소장)

② 재정경제부, 정보통신부 등의 파견을 확대하여 기능수행을 뒷받침하되 추가파견 인력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조정하여 결정

■ 외국인투자지원센터 파견공무원의 인센티브 강화
○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전문성을 갖춘 우수한 공무원들이 외국인투자 유치 행정지원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 우수공무원들의 파견확대를 위한 인센티브제도가 미흡하여 파견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
⇒ 우수공무원의 파견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방안 마련 시행(인사상 우대조치 방안, 외국인투자유치포상금 확대지원방안 등)

■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기능강화

○ 규제 심사·정비를 주관하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외국인투자 관련 민간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외국인투자 규제개선에 애로

*외국인투자옴부즈만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5조의2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의 애로사항과 관련한 정보수집, 외국인투자제도의 개선방안 마련 및 관계행정기관에 이행건의 등을 수행

– 또한 외국인투자지원센터와 중앙행정기관·시·도 등에 설치된 외국인투자진흥관실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이 미흡

※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6조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 시·도·자치구에 외국인투자 관련 민원을 원활히 처리하도록 독려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정·설치

〈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의 기능 〉

❍ 외국인투자진흥센터에서 이송된 민원사무처리의 독려 및 점검

❍ 외국인투자 관련 민원신청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 민원사무 대행

❍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 또는 건의사항의 접수·조사 및 처리 등

⇒ ① 외국인투자 관련 전문가인 옴부즈만을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 추진

② 중앙행정기관·시·도(외국인투자진흥관실)가 각종 외국인투자 관련 고충 또는 건의사항 접수·조사·처리결과를 외국인투자지원센터에 통보토록 의무화(분기 1회)

(2) 불편한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기본방향 ◆ **외국인학교 설립제도의 개선**

◆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비자 발급요건 개선**

■ 외국인학교 설립 주체 개선

○ 외국인학교의 설립주체를 외국인에 한정하고 있어 내국인 및 공공기관에 의한 외국인학교의 설립이 제한(다만, 교육인적자원부 지침에 의하여 귀화한 내국인은 설립이 가능)

– 따라서 지자체가 외국인학교 설립을 추진하는 경우 직접 설립할 수 없어 외국인 관련 단체 등에 위탁

⇒ 일정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 및 공공기관도 외국인학교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개선

○ 주재 체류자격(D-7) 요건의 개선
- 본사 등에서의 1년 이상 근무 경력을 주재 체류자격 요건으로 요구함으로써 외국기업의 주재원 파견에 제약으로 작용

*주재 체류자격(D-7) : 외국의 공공기관, 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 지사, 기타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지사, 자회사, 주재사무소 등에 필수 전문인력으로 파견되어 근무하고자 하는 자

⇒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D-7 요건의 최소근무 제한규정 적용 제외

(3) 불합리한 투자환경의 개선

기본방향 ◆ **외국인투자관련 사업절차의 개선**
◆ **투자유치를 저해하는 제도의 정비**

■ 고도기술수반사업 조세감면신청 절차 개선

○ 고도기술수반사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신청하여 이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이의신청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신청인의 불만 초래

〈 고도기술수반사업의 조세감면결정 절차 〉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조세감면 신청 → 재정경제부장관은 주무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실시 → 주무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10일 이내 의견통보 → 재정경제부장관은 20일 이내 감면여부 결정 통보

⇒ 조세감면 결정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 의료기기 분류 개선

○ 의료기기인 혈당측정용기기는 약국 및 의료기기판매점에서 판매가 가능하나, 필수 부속품인 혈당측정검사지(Strip)는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약국에서만 취급
- 관련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국내 외국기업의 영업활동에 지장 초래

⇒ 혈당측정용기기의 부속품인 혈당측정검사지(Strip)를 의료기기로 분류하여 의료기기 판매점에서도 판매가 가능하도록 개선

라. 향후 추진일정

○ 부처별 세부추진계획 수립 · 제출 : '06.8.10

○ 관련 법령 등 후속조치 이행

3.15 환경부문 인 · 허가, 신고 등의 행정관련 개선방안

집필자 : 박종복 전문위원 (Tel. 2100-8758, guidian@opc.go.kr)

가. 정책환경 및 추진경위

■ 규제개혁기획단은 기업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각종 영향평가제도 등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야기하는 환경관련 규제의 개선을 추진

○ 실효성이 적거나 검토대상에 비해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는 교통 · 재해 · 인구영향평가 폐지

○ 동 · 식물상, 수질 · 대기질 등에 대한 4계절 현장조사 대신 국가 환경 DB자료를 활용,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기간 대폭 단축

○ 팔당호 · 대청호 유역에 지정되어 있는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중 수질오염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계바깥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제외 등

■ 한편, 이러한 환경보전을 위한 각종 제도의 내용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인 · 허가, 신고, 보고 등 각종 환경관련 행정의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

○ 민원인 불편해소를 위해 온라인 인 · 허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개선 노력을 하여 왔으나, 아직도 중복되거나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는 행정절차가 상당수 존재

나. 규제현황 및 문제점

■ '06.6월말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환경부문 규제는 인·허가 30개, 승인 21개, 신고 44개, 보고 21개 등 총 116개 수준

■ 환경관련 인·허가, 신고 등과 관련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제기

○ 관련되는 규제 기준간의 일관성 미흡
- 도로변 고층 공동주택의 소음에 대한 규제기준간 일관성 부족으로 다수의 민원 발생 및 도로관리상 어려움 초래

○ 인·허가, 신고 등의 중복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 가중
- 보전지역 주변이 아닌 지역의 개발사업에 대하여도 환경영향평가의 경관검토와 별도로 자연경관영향심의 실시
- 일부 사업은 특정공사(생활소음·진동 발생공사)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등 유사한 내용의 신고를 반복

○ 사업자의 행정부담 경감을 위한 절차 간소화 필요
- 인·허가후 변경 허가·신고 등의 경우 서면 신고를 요구하고 동일한 내용을 중복 신고토록 하는 사례도 다수
- 기본배출금 산정시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예정배출량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사업자에 불필요한 부담 야기

다. 개선방안

(1) 인·허가 등 규제기준의 합리화·명확화

기본방향 ◆ **관련 규제기준간의 일관성은 제고하면서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는 규제기준은 합리적으로 조정**

■ 도로변 고층 공동주택 소음 규제기준 개선

○ 도로변 고층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과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소음도 규제기준이 상이

- 주택법 : 1층 실측소음도(실외)와 5층 예측소음도(실외)의 평균치가 65dB(A)이하 이거나 도로변에서 50m 이격할 것
- 환경정책기본법 : 도로변 주거지역의 경우 최대소음도(실외)가 주간 65dB(A), 야간 55dB(A)이하일 것
- 주택법은 공동주택의 1-5층에 한해 소음도를 측정·규제하는데 비해, 환경정책기본법은 전층을 대상으로 규제

○ 도로변 공동주택에 대한 상이한 규제기준 설정에 따라 다수의 민원 발생 및 도로시설 관리상 어려움 초래

- 소음이 심한 도로변 공동주택주민(6층이상 거주)들의 경우 환경정책기본법상 소음도 규제기준을 근거로 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소음저감 조치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원 및 소송을 지속적으로 제기

*2000년 도로변 주거지역의 낮소음도는 64~72dB(A) 범위로 9개 도시 중 대전, 원주, 춘천을 제외한 6개 도시가 환경기준(65dB(A) 초과

- 한국도로공사는 교통흐름 개선 등을 위해 도로확장이 필요한 경우에도 도로 신설로 간주되어 주변 공동주택주민의 소송 제기시 소송에 불리해 질 것을 우려, 도로 확장에 소극적

○ 이에 따라 정부차원에서도 적정 규제 소음도 및 소음측정 방법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하였으나('02.1월 규개위 의결) 관계부처간 이견으로 추진이 지연

- 환경부는 환경정책기본법상 기준을 전체 층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주장하였으나, 건설교통부는 동 기준을 달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별도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

*공동주택 건설시 공간확보 비용을 감안할 때 도로에서의 50m 이격이 어려우며, 고층 건립추세 감안시 방음벽을 높이는 데에도 한계가 있고 소음저감을 위한 거대시설에 따른 부작용(경관, 일조, 대기) 우려

⇒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소음도 규제에 대해 '07년말까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개선

① 주택법상 실외 소음도 측정방법을 현행 1~5층 기준에서 공동주택 전체층으로 확대하고, 소음도 기준은 현행 65dB(A) 유지

*이격거리 확보 요건은 삭제

② 다만, 창을 닫고 생활이 가능한 설비*를 갖춘 주택의 경우 6층 이상에 대해서는 실내소음도 기준(창호를 닫은 상태에서 45dB(A) 이하) 적용도 허용

*적정한 환기시설 및 온도조절 장치 등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누출검사 개선

○ 그간 1,000㎥이상의 액체위험물 옥외탱크 저장시설에 대해서만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목측시험, 배관누설시험, 비파괴시험 등 누출검사 포함)를 의무화하였으나(위험물안전관리법)

– '06.7.1일부터 모든 특정토양오염물질* 지하저장시설과 1,000㎥ 미만 지상저장시설에 대해서도 토양오염도 검사뿐만 아니라 누출검사가 의무화(토양환경보전법 개정 '05.6)

*석유류, 카드뮴, 비소, 수은, 납, 아연, 니켈, 불소, 유기인화합물, 페놀, 트리콜로로에틸렌 및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등

※ (경과조치) 2006.7.1을 기준으로 15년 이상 경과한 시설은 2007.6.30까지, 10년 이상 15년 미만 경과한 시설은 2008.6.30까지 누출검사를 받아야 함

※ (누출검사 방식 및 주기) 개방식에 의한 비파괴방식은 6년 주기, 가압 또는 감압시험에 의한 간접방식 : 4년 주기

○ 이와 관련, 업계(정유 · 석유화학업계)는 1,000㎥ 미만 지상저장시설에 대한 누출검사 의무화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

① 저장물 누출시 토양오염 방지시설 구조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지상저장시설에 누출검사를 의무화하는 불합리

– 일부 지상저장시설*의 경우 액상물질 누출시에도 지하로 침투되지 않고 육안으로 누출여부 확인이 가능

*(예) 저장탱크아래 oily sand, 콘크리트 구조물, vinyl sheet, 누출확인 파이프 설치 → 저장물 유출시 육안관찰 가능

② 지상저장시설 누출검사를 시행할 경우 공정의 연속성 및 여유설비 부족으로 일부 공장 가동을 중단하는 것이 불가피

*누출검사를 위해서는 저장물을 외부로 반출하는 것이 불가피

*(여수 · 울산 · 대산산업단지) 사업장별로 통상 10~50개의 지상 저장탱크(대부분 10년 이상 된 시설)를 보유하고 있으며, 누출검사에 3~30일 소요 예상

③ 비파괴검사(누출검사)를 위해 내용물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자원손실은 물론 환경사고의 위험이 오히려 증폭될 우려

⇒ 향후 1년간('06.7.1 ~ '07.6.30) 누출검사 시행 결과를 토대로 1,000㎥ 미만 지상 저장시설에 대해 누출검사 방법 개선*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 마련('07년 상반기중)

*저장물 반출 없이 시행할 수 있는 누출검사 방법 도입 등

■ 임목폐기물 분류방법 개선

○ 임목폐기물*은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폐법) 시행 전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자가처리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에 의해 재활용되어 퇴비 원료, 토지개량제 등으로 사용

*임목폐기물 : 벌목, 벌근 등에 의해 발생하는 나무뿌리, 잔가지 등

○ 건폐법 시행 후는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임목폐기물에 대해서도 건설폐기물로 분류

– 건설현장에서는 임목폐기물과 폐목재 등이 발생하나 처리방법 · 재활용용도 등이 상이

< 임목폐기물 및 건설현장 폐목재 비교 >

구 분	임목폐기물	건설현장 폐목재
발생원	도로공사, 산지개발 등	재건축, 재개발, 신축현장 등
성 상	원목, 나무뿌리, 잔가지, 껍질 등	거푸집, 가설재, 해체재, 바닥재, 폐가구류 등
재활용제품	톱밥, 우드칩	파티클보드, 합판
재활용용도	토질개량제, 퇴비, 잡초제거	책상, 싱크대, 문틀
주사용자	과수농가, 축산농가, 농민 등	목재회사, 합판회사, 보드회사 등

○ 이에 따라 임목폐기물은 분리발주 대상에 포함되어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독점 처리함으로써 처리비용이 증가되고 사업자 부담이 가중

⇒ 건설폐기물 중 폐목재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나무뿌리, 잔가지 등 임목폐기물은 건설폐기물에서 제외

■ 건설오니의 재활용방법 개선

○ 건설오니는 탈수 · 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이하로 사전처리한 후 매립처리되고 있는 반면,

-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시멘트, 콘크리트 제조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의 경우 수분함량 70%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일반토사류와 혼합하여 재활용하도록 규정

*건폐법상 건설오니는 굴착, 지하구조물 등의 공사시 연약지반을 안정화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를 말함

○ 사업장폐기물과 유사한 성상인 건설오니가 건설폐기물로 분류되어 매립처리 됨으로써 재활용되지 못하고 사업자부담 및 매립장 수명단축 요인으로 작용
⇒ 건설오니에 대한 재활용기준 및 방법 등의 규정 마련

(2) 중복되는 절차의 개선

기본방향 ◆ **중복되는 인허가, 신고 등을 정비하여 사업자의 환경관련 행정부담 경감**

■ 각종 환경영향평가 관련 제도의 실효성 제고

○ 개발사업 관련 환경보호를 위한 제도가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자연경관심의로 다기화되어 제도의 실효성 저하 및 혼란 초래

<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검토제도 간의 문제 >

○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해 시행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 행정계획 및 소규모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 : 행정계획이 구체화된 후 시행되는 대규모 개발사업

○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가 각각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분리·운영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

- 대규모 사업의 경우 대부분 사전환경성검토가 실시된 지역에 다시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됨에도 상호간의 연계가 미흡해서 제도의 목적 달성이 효율적이지 못함
- 소규모 사업의 경우 환경정책기본법에서 규제함으로써 개발단계가 유사한 영향평가 대상사업과 이원적으로 관리

- 특히, 소규모개발사업의 경우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함으로써 벌칙규정이 미비하여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제기

*'06.6월 임시국회시에도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 제고 등을 위해 '통합환경평가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음

○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일관성 ·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

< 자연경관영향 심의제도 >

○ 각종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자연경관영향을 사전에 분석 · 예측하고 저감방안을 마련토록 함으로써 개발사업에 따른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 환경영향평가제도에서 경관요소를 별도로 분리하여 자연경관영향 심의 제도를 도입('06.1 시행 자연환경보전법)
- 다만, 사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자연경관영향 심의는 사전 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와 연계하여 운영

○ 그간 자연경관심의제도 운영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

①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과 상충시 조정 곤란

- 자연경관영향심의기구의 심의 · 의결내용과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이 상충될 경우 양자의 조정에 어려움 존재

· 경관이 다른 요소들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검토되지 않고 별도 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결정됨으로써 환경영향평가내의 제반 평가항목이 사업 전체적인 관점에서 검토되는 데 지장 초래

*환경영향평가 요소 : 대기, 지질, 수질, 생태환경, 토양, 보건, 경관, 인구, 주거, 산업, 교육 등

② 자연경관심의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 과다

- 자연경관영향 심의자료 작성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이 동 제도 도입시 예상했던 수준 보다 크게 증가

③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통합적 운용 측면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상당부분을 별도의 자연경관영향 심의 대상으로 선정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 환경영향평가 항목 중 다른 요소(건강, 생태계, 사회영향평가 등)에 대하여도 유사한 제도 신설 요구가 증가할 가능성

○ 결과적으로 경관영향심의제도가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단계에서 분리·운영되면서 별도 심의에 따른 실익보다는 비용부담이 과다

⇒ '07년 하반기중 자연경관영향 심의제도 운영성과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환경관련 영향평가제도 개선방안을 검토

■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영향평가 중복시행 개선

○ 특별시·광역시·도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시행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외의 사업에 대해 일정 범위*안에서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향평가를 실시(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4)

*국가시행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기준 규모의 50% 이상 사업, 50% 미만 사업 및 국가시행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업은 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한 범위

○ 그러나 서울시의 경우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과 같이 국가시행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서 협의를 완료한 사업에 대해서도

- 동 사업지구 내에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시 지방자치단체와 다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도록 하여 사업자에게 부담 (평가항목 중복, 공사지연 등) 초래(서울시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 별표1)

*서울 상암지구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03.3월 국가시행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쳤으나, 동 사업부지내에 위치하고 있는 '첨단 IT콤플렉스 신축공사(152,569㎡)'가 서울시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되어, 공사 중인 지역에서 별도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의 협의절차(2005.5-2005.8)를 다시 진행

⇒ 국가시행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지구내의 건축물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

■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특정공사 사전신고 일원화

○ 비산먼지 발생사업 및 특정공사(생활소음·진동 발생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 시행전에 방음·방진시설 및 저감방안 등을 포함한 신고서를 각각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제출

< 비산먼지 발생사업 및 특정공사 사전 신고내용 >

구 분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 상 사 업	연면적 1,000㎡이상 건축물 축조 · 해체 공사 또는 토목공사 등 10개 사업	연면적 1,000㎡이상 건축물 해체 공사, 토목건설공사 등의 공사로서 특정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
관련법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동법시행규칙 제62조제1항	소음 · 진동규제법 제25조, 동법시행규칙 제33조제2항
억제시설 설치 및 조치기준	야적, 수송 등 10개 배출공정에 대해 방진막, 방진시설, 세륜장 등 설치	공사장의 방음벽 · 방진시설 설치 및 저감대책 수립
서류작성 항 목	신고인, 소재지, 비산먼지발생억제 조치사항 등 8개 항목	신고인, 소재지, 특정장비 사용 공사기간 등 12개 항목, 방음 · 방진시설 설치내역 등 4개 구비서류
	중복 서류 : 공사개요, 공사장 위치도, 방진벽, 방음 · 방진시설 등	
처리기간	4일	4일

*특정장비 : 항타기 · 항발기, 공기압축기, 브레이커, 굴삭기, 발전기 등 11종

– 이와 관련, 비산먼지 발생 신고대상 사업인 경우 대부분 특정공사 신고 대상 장비를 사용하고 있어 사업자에게 서류 중복작성 및 신고에 따른 불편을 초래

⇒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시 방음대책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하면 특정공사 사전신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

■ 고체입자상물질저장시설의 신고 개선

○ 사업자는 고체입자상 물질저장시설(더스트회수용 저장시설 등)의 경우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 · 신고시 첨부서류 중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내역서'에 포함(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6, 방지시설 부대시설)하여 신고하고 있으나,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도 '고체입자상물질 저장시설'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규정함에 따라 다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 · 신고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사업자에게 불편 초래

*'고체입자상물질'은 입자의 크기가 지름 1㎜ 이하인 것에 한한다.

⇒ '다른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부대설비로 허가 · 신고된 고체입자상물질저장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 · 신고 면제

(3) 인허가, 신고 등의 행정편의성 제고

기본방향 ◆ **온라인 인허가 시스템 등을 통하여 사업자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 적극 발굴**

■ 온라인 시스템 활용 확대

○ '06.6월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환경부문 행정규제 건수는 인허가 30개, 승인 21개, 신고 44개, 보고 21개 등 총 116여개 수준

○ 환경관련 인허가, 신고 등과 관련하여 절차의 복잡, 자료 중복 제출 요구, 서면신고 요구 등으로 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

– 전자정부 통합전자민원창구(www.egov.go.kr), 지자체 홈페이지 등 다양한 인터넷 창구가 존재하나 인지도 및 활용은 미약한 실정임

< 통합전자민원창구 환경부문 민원 신청건수(2005) >

민원사무명(총23개)	신청건수
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 신청 등 15개 사무	0
오수처리시설의 개선 완료 보고 등 6개 사무	1
소음진동 배출시설 가동개시일 변경신고	3
소음진동 배출시설(방지시설)의 조치명령(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 등) 이행보고	5
합 계	14

< 직접신고 사례 >

– 가동개시 신고 : 대기오염 · 폐수 · 소음진동 배출 · 방지시설 설치(변경)후 가동전 가동개시 서면신고 의무화

– 사업자는 배출시설 등의 설치허가 신청시 제출한 가동개시 예정일의 변경여부에 관계없이 가동개시 신고 의무 부담

*사업자는 배출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을 보존토록 되어 있어 사후적으로도 실제 가동일 확인 가능

○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 :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소재지, 임시차량 증차 등 단순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신고 의무화

–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www.wms-net.org)에서 신청가능한 민원이나 실제 사용되지 않고 있음

*허가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임

⇒ 환경부문 인·허가, 보고, 신고 등과 관련하여 온라인시스템 활용 확대방안*을 마련하여 '06.9월말까지 규제개혁기획단에 제출

*중복신고 간소화, 온라인 처리업무 확대 등

■ 대기·수질오염물질 배출부과금 산정자료 제출 간소화

○ 환경부장관은 기본배출부과금 산정에 필요한 오염물질 배출량 파악을 위해 해당 사업자에게 부과금 부과기간중 예정배출량과 확정배출량관련 자료 제출요구 가능

< 기본배출부과금 부과 절차 >

예정배출량 자료제출 (사업자)	➡	오염도검사 결과통보 (관할기관)	➡	확정배출량 자료제출 (사업자)	➡	부과금 산정 및 부과 (관할기관)
– 반기시작 후 30일 이내 • 1, 7월말		– 분기 1회 이상 오염도 측정 – 오염도 분석 후 10일이내 통보		– 반기종료 후 30일 이내 • 7, 1월말		– 확정배출량 자료 제출 기간 종료 후 60일 이내 • 8–9월말, 2–3월말

○ 기본배출부과금은 확정배출량에만 근거하여 부과됨에도 부과금 산정에 필요하지 않는 예정배출량 자료 제출까지 요구함으로써 사업자의 불필요한 행정부담 야기

– 이에 따라 사무를 집행하는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예정배출량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않는 등 업무처리의 형평성도 저하

⇒ 사업자에 대하여 기본배출부과금 부과금 산정을 위한 예정배출량 자료제출 의무 면제

라. 향후 추진일정

○ 부처별 세부추진계획 수립·제출 : '06.08월

○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 이행

○ 추진 상황 점검·평가 : 후속조치 이행완료 이후 매월

3.16 폐기물 처리 · 재활용 규제 개선방안

집필자 : 박한누리전문위원 (Tel. 2100-8757 phnrphnr@opc.go.kr)

가. 정책 환경 및 추진 경위

■ 폐기물 발생량은 '93년을 기점으로 점진적 증가추세 이며 재활용 및 소각처리 비중이 증가

○ 생활폐기물1)은 '95년 쓰레기 종량제 도입 후 크게 감소하였으나, '99년 이후 발생량이 점차 증가

○ 사업장 폐기물2)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크게 증가
1) '04년 발생량 50,007톤/일(1인당 1.03kg), 2) '04년 발생량 261,660톤/일

○ 지속적인 폐기물 감량화 정책으로 폐기물 처리방법으로 재활용이 크게 확대되고 매립처리 비율이 낮아지는 반면 소각처리는 점진적 증가

■ 그간 산업계에서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지속 요구

○ 폐기물 규제는 원자재 조달, 제품생산, 폐기 전반에 걸쳐 환경비용을 유발하여 기업 경쟁력의 영향 요인으로 작용

○ 최근 전자제품, 자동차 등 EU의 폐기물 관련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국내에서도 관련법률 제정을 추진하는 등 향후에도 폐기물 분야 환경규제는 지속 강화 될 전망

나. 규제 현황 및 문제점

(1) 규제 현황

■ 폐기물처리 관련 기본법으로 폐기물의 배출 · 수집 · 운반 · 처리 전반을 규제하는 「폐기물관리법」이 있으며

○ 이외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등 7개 법률

■ 규제건수는 총 86건으로 산업 · 건설 폐기물, 폐기물 재활용,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규제가 대부분임

합 계	산업폐기물	건설폐기물	재활용	생활폐기물	기 타
86건(100%)	25건(29%)	22건(26%)	16건(18%)	11건(13%)	12건(14%)

(2) 문제점

■ 복잡 · 다기한 폐기물 관련 규제로 기업 활동 애로 호소

○ 규제항목 및 내용 증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등 새로운 규제수단 도입, 행정기관의 중복적 지도 · 단속 등

< 산업분야 폐기물 주요규제 내용 >

규제분야	주요규제 내용
산업폐기물	· 폐기물부담금, 사업장폐기물의 배출 · 수집 · 운반 · 처리, 방치폐기물 처리 등
건설폐기물	· 건설폐기물의 수집 및 처리, 재활용, 방치폐기물 처리 등
폐기물 재활용	· 생산자책임재활용, 재활용부과금, 재활용 용도제한, 포장폐기물 규제 등

■ 규제 위주의 명령과 통제(Command and Control) 방식에 의존하여 산업체의 자율 개선 노력 저하

○ 시장원리에 의한 유인 제도, 인센티브 부여 등 자발적 저감을 유도하기 보다 행정편의적 직접규제 방식에 과도하게 의존

○ 폐기물부담금 등 일부 경제적 수단들도 기업현실과 동떨어진 방식으로 운영되어 유인수단으로서의 기능 미흡

■ 효율적인 폐기물 회수 및 처리 체계 미흡

○ 국가 차원의 효율적인 폐기물 회수 및 처리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지 않아 생산자에게 과도한 처리 책임 부과

○ 생산자책임재활용 등 사업자 중심의 재활용체제 미흡

다. 개선 방안

(1) 산업폐기물 관련 규제 개선

기본방향 ◆ **폐기물의 적정 관리를 위한 필요 규제는 유지하되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국민 · 산업계 불편 최소화**

■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부과기준 개선

○ 제품의 폐기단계에서 재활용이 어려워 환경오염 등 폐기물 관리상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 재료 · 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폐기물부담금을 부과

< 폐기물부담금 개요 >

구 분	내 용
근 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목 적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유해물질을 함유하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의 제조 · 수입자에 대하여 그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부과
부과대상	살충제, 유독물제품, 화장품, 부동액, 껌, 1회용 기저귀, 담배, 플라스틱 제품
부 과 액	'04년 6,613건 385억원, '05년 9,235건 472억원
수입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

○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의 경우 국내 생산자에게는 합성수지 투입중량 기준으로 부과하나, 수입업자에게는 합성수지 투입량을 파악하기 어려워 수입금액 기준(0.7%)으로 부과하여 고부가 제품 수입업자에게 불리

⇒ 국내 · 외 플라스틱 제품의 폐기물부담금 부과기준을 합성수지 투입량으로 일원화

■ 폐합성수지를 지정폐기물 규제 대상에서 제외

○ 플라스틱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합성수지는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이 크지 않아 재활용이 가능하나 지정폐기물로 규제되고 있어 재활용에 애로

*사업장폐기물중 특히 환경에 유해한 물질로서,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폐유, 폐유독물, 폐주물사 등 20종의 폐기물. 법령에서 정한 엄격한 처리방법에 의해 처리(화학적처리, 고온소각 등)하여야 하고 재활용이 제한됨

⇒ 폐합성수지의 위해도를 조사하여 위해도가 낮은 경우 지정폐기물에서 제외하고 일반 사업장폐기물로 관리
· 일반 사업장폐기물 처리 절차에 따라 수집, 운반, 처리

■ 건설폐기물 수집 · 운반업 허가기준 완화
○ 건설폐기물을 수집 · 운반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폐기물 수집 · 운반업 허가를 받아야 하고
– 허가요건으로 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또는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3대 이상을 갖추고 이중 1대는 적재능력 15톤 이상 차량을 포함토록 하고 있음

○ 건설폐기물 수집 · 운반업은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만을 하는 영세업체로서
– 차량의 적재능력은 용역수주 물량에 따라 필요시 업체 스스로 확보할 것이므로 이를 강제로 구비토록 하는 것은 과도한 진입제한으로 영세업체에 경제적 부담 초래
⇒ 건설폐기물 수집 · 운반업 허가기준 중 적재능력 15톤이상 차량 1대 확보 의무 폐지

■ 건설폐기물 수집 · 운반 용역이행능력 평가제도 폐지
○ 배출자가 건설폐기물을 위탁 처리할 때 적격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기 위해, 환경부가 수집 · 운반업체의 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는 용역이행능력 평가제도가 '07년부터 시행 예정
*최근 3년간 용역이행실적, 자본금, 기술능력, 경력, 신인도 등을 기초로 평가하며 업체는 수행능력을 평가받기 위해 매년 환경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환경부는 건설폐기물협회에 업무를 위탁하고 협회는 수수료를 받고 업체의 수행능력을 평가). 수행능력 평가결과는 금액으로 공시되어 업체 수주한도에 직접 영향

○ 건설폐기물 수집 · 운반업은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단순 영업으로
– 업체의 수행능력은 별도 평가 없이도 업체가 보유한 '차량대수'를 기준으로 쉽게 판단 가능하므로 수행능력 평가제도의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 매년 평가의 기초자료를 작성 · 제출하고 평가비용을 지불하여야 하는 영세업체 (전국 약1,300개)에 과도한 행정적 · 경제적 부담 초래
⇒ 건설폐기물 수집 · 운반업자에 대한 용역이행능력평가 제도 폐지

■ 지정폐기물 옥외보관 허용

○ 폐유 및 폐유기용제 등 지정폐기물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거 드럼 등의 용기에 담아서 허가된 옥외저장소에 보관이 허용되고 있으나

–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옥내보관창고가 아닌 경우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함에 따라 양 법률의 규제 내용이 달라 기업에 혼란 및 불편 초래

⇒ 폐유 등 지정폐기물을 드럼 등 안전용기에 보관하여 외부 유출 우려가 없을 경우 옥외보관 허용

· 단, 소량이라도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방류턱 설치

■ 소량 지정폐기물 보관량 확대

○ 사업장에서 연간 2톤 미만으로 소량 발생되는 지정폐기물의 경우 최대 1년 이내 처리하여야 하나

– 소량 폐기물의 경우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려 하여도 경제성이 낮아 기피하는 경우가 많고 소량 처리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용이 증가하여 기업 애로 요인으로 작용

⇒ 소량 배출 폐기물 최대 보관량을 현재 2톤 → 3~5톤으로 확대

■ 소량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작성 간소화

○ 지정폐기물이 발생하는 사업장에서는 폐기물 관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폐기물 종류별 보관량 및 보관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폐기물 보관용기별로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나

– 생산현장에서 매일 배출되는 소량의 폐기물에 매일 보관표지를 새로 작성하는 것은 기업에 과도한 불편 초래

⇒ 소량 배출 지정폐기물의 경우 보관표지 작성을 간소화하고 관리대장에 세부내용을 기록하는 것으로 대체

· 관리대장에 폐기물 종류, 배출일자, 배출량, 보관량을 기록

■ 지정폐기물 수탁확인서 작성 폐지

○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당해 폐기물을 위탁 처리하는 경우

– 폐기물처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폐기물처리업자로 부터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받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 폐기물을 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수탁확인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시 · 도 확인을 받아 폐기물을 처리토록 하고 있음

○ 배출자가 각 단계에서 작성해야 하는 '수탁처리능력확인서'와 '폐기물수탁확인서'는 작성내용이 대부분 동일하여 업체에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

⇒ ① 폐기물 수탁확인서를 폐지하고 폐기물수탁처리능력 확인서 이용으로 대체
② 폐기물 위탁자가 적법한 폐기물처리업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 인터넷에 폐기물처리업체 현황 공개

■ 산업체 방치폐기물 처리 규정 합리화

○ 산업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하지 않고 방치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처리 책임을 부과하고 있으나

- 사업장 등을 인수한 권리승계인이 우선 처리토록 하고 있는 건설폐기물에 비해 공제조합에 과도한 책임 부과

⇒ 폐기물 처리업자가 방치 산업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한 경우 사업장 등 권리 승계인이 먼저 처리 책임을 지고 2차적으로 공제조합이 처리 책임을 지도록 개선

※ 「폐기물관리법」의 방치폐기물 처리책임 승계 규정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동등하게 규정

(2) 폐기물 재활용 관련 규제 개선

■ 재활용 폐기물에 대해 폐기물부담금 감면

○ 폐기물부담금은 제품의 폐기단계에서 재활용이 곤란한 경우 그 처리비용에 상응하는 비용을 제품 제조업자에게 부과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나

- 제품이 폐기되지 않고 재활용되는 경우에도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어 제도 취지에 맞지 않고 사업자의 자발적인 재활용 동기를 약화

⇒ 사업자 스스로 또는 사업자단체를 통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재활용량에 상응하는 폐기물부담금 감면

※ 부담금 감면 시 재활용이 촉진되어 연간 830,682톤의 폐플라스틱이 재활용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연간 2,955억원(실처리비 적용) 추정

■ 재활용 목적의 폐전자제품 수출 허용 품목 확대

○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품의 생산자에게 생산량의 일정비율을 의무적으로 회수·재활용하게 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를 시행중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 전자제품 종류(10종) : TV, 냉장고, 가정용 세탁기, 에어컨디셔너(자동차용 제외), 개인용컴퓨터, 오디오(휴대용 제외), 휴대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 생산자책임재활용 방법으로 폐전자제품을 재활용 목적으로 타 국에 수출하는 것도 인정하고 있으나, 대상품목이 컴퓨터 모니터로 제한되어 있어 타 전자제품의 경우 수출을 통한 재활용이 곤란

⇒ 재활용 목적의 폐전자제품 수출 허용 품목 확대

■ 석탄재 재활용 촉진을 위한 품질규격 제정

○ 석탄발전소에서 연소 후 남는 석탄재는 연간 약 595만톤이 발생되어 시멘트 원료 등 각종 건설자재로 재활용되고 있으나

- 재활용 용도가 KS 등 품질규격이 마련되어 있는 용도로만 제한되어 석탄재 발생량의 약 42%(연간 249만톤)가 재활용되지 못하고 매립되어 자원낭비 초래

⇒ 석탄재 재활용 용도에 대한 한국산업규격(KS) 등 표준규격 확대

· 블록, 벽돌 등 콘크리트 2차 제품에 대해서는 '07년말까지 KS 규격 제정

· 구조용으로 사용되는 레미콘용 골재에 대해서는 안전성 시험을 거친 후 KS 규격 제정

※ 재활용 용도 확대시 연간 약 100만톤의 석탄재 재활용 가능

(3) 생활폐기물 처리 관련 규제 개선

■ 주택수리 등 소규모 공사폐기물 처리 절차 간소화

○ 건축공사, 주택 개보수 등에서 발생하는 공사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처리하기가 곤란하여 처리절차가 까다로운* 건설폐기물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으나

*행정기관에 폐기물배출신고를 한 후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수집·운반·처리과정에 폐기물 인계서(4매) 작성 필요

- 건설폐기물 처리방법은 대규모 건설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방법으로 일반인이 배출하는 소량의 공사폐기물 처리에는 부적합하여 소량 공사폐기물 처리에 불편 초래

⇒ 소규모 공사장폐기물 처리절차 개선방안 마련

· 지자체 등으로 하여금 소규모 공사장 폐기물 처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처리절차 간소화

■ 하수 슬러지 육상처리 확대 및 재활용 확대

○ '05년말 현재 전국 294개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 슬러지*의 약 77%(5,423톤/일)가 해양에 배출 · 처리되고 있으나

*하수처리 과정에서 남는 침전물 찌꺼기(하수 오니)

– 폐기물 투기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2008년부터 하수 슬러지의 해양배출이 단계적으로 금지될 계획으로 해양배출 규제 강화에 따른 처리대책 마련 시급

< 하수슬러지 해양배출 단계별 금지계획(환경부 · 해양수산부) >

구 분	규제내용
2008.2월부터	해양배출 폐기물 검사방법 및 기준강화로 슬러지 발생량의 약 21% 가량이 해양배출 금지 대상
2011.2월부터	해양배출 폐기물 검사방법 및 기준강화로 슬러지 발생량의 약 79% 가량이 해양배출 금지 대상
2012.1월부터	하수슬러지의 해양배출 전면 금지

⇒ 하수 슬러지 육상처리 확대 및 재활용방안 강구

· 슬러지 함수율에 따라 선별 매립허용, 고형화 처리 및 재활용 시설 확충

라. 향후 추진일정

○ 부처별 세부추진계획 수립 · 제출 : '06.7월

– 환경부, 산업자원부 등

○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 이행 : '06.12월

○ 추진 상황 점검 · 평가 및 대책 보완 : 분기별

3.17. 경제자유구역 규제 개선방안

집필자 : 김희석 사무관(Tel. 2100-8805, kimhs@opc.go.kr)

가. 정책환경

○ 세계 각국의 외국인투자 유치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의 경쟁상대국가들은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각종 특구를 도입하는 등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빠르게 변신
- 중동 두바이, 중국 푸동, 싱가폴 등은 조세감면(법인세 인하), 외환거래 자유화 등 규제완화로 외국인 투자유치

○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투자 촉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제도를 도입('03)
- '동북아 중심지 전략'의 핵심사업으로서 공간자원을 활용하여 국가의 전략적 성장거점으로 개발하기 위해 추진
- 현재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 3개 구역을 지정하여 개발 중이며, 경기도·충청남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도 추가 지정을 요청

○ 현재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은 초기 단계에 불과하여 아직까지 본격적인 외자유치는 추진되지 못하는 상태
- 실제 외국인투자는 개발단계 투자에 한정되어 있으며, 그 밖의 투자는 일부 외국인 기업들이 관심을 표명하는 수준

○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신속하게 추진되지 못할 경우 동아시아 허브 경쟁에서 뒤질 우려

나. 규제현황 및 문제점

■ 규제현황

○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기본법인 「경제자유구역의지정 및 운영에관한법률」은 개발사업 시행, 외국기업 지원, 규제예외사항, 생활여건조성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에서는 교육기관의 설립규제를 완화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개발절차, 개발과정의 제반 인허가 의제 등 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 외국인투자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 및 자금지원,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지원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고령자 고용의무, 파견근로자 고용규제, 수도권 규제 등의 적용을 배제하고
-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외국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하고, 외국학교법인의 분교 설립을 허용하면서 설립초기에 재학생의 30%까지 해외거주 요건없이 내국인학생 입학을 허용

○ 상기 법률에서 경제자유구역의 규제완화 및 지원을 위해 특별하게 다르게 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법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대부분의 국내법이 실제 규제로 작용
- 특히, 경제자유구역 개발과정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규제법률은 환경 · 교통 · 재해영향평가법, 산지관리법, 농지법 등이 있음

■ 문제점

○ 법에 특별히 규정한 사항이외에는 일반규제 적용으로 일반지역과 큰 차이가 없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한계
- 경제자유구역은 환경보전대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함에도 환경영향평가, 건축심의 등이 과도하게 엄격하여 개별사업추진에 장애
- 외국인 의료기관, 교육기관에 대해서도 국내의 일반규제가 대부분 적용되어 영업활동 및 시설입지 등이 제한됨으로써 외국인 생활여건 조성에 걸림돌로 작용

○ 경쟁국에 비하여 전반적인 투자여건이 열악하고 규제 완화 부족으로 경제자유구역의 조기 활성화에 애로
- 경제자유구역의 성장거점화에 필요한 다른 개발지역보다 유리한 정부지원 및 세제 해택 미흡
- 산업용지가 분양위주로 공급되어 초기투자비 부담이 낮은 임대를 선호하는 외자기업의 유치에 한계

○ 경제자유구역은 「지정은 쉽고, 개발은 어렵게」 되어 있어 사업추진 지연 및 개발사업자의 부담 증가

- 경제자유구역 지정시(개발계획 확정시) 사전 입지규제 검토가 미흡하여 사업추진 과정상 부처반대 등으로 사업지연
- 실시계획 승인시 인허가가 의제처리되고 있으나 창구단일화에 그치고 있어 처리기간 단축효과는 미미

○ 경쟁국의 특구와 경쟁할 수 있는 수준까지 경제자유구역청의 사업 추진력 확보 부족

다. 개선방안

(1)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기업부담 경감

기본방향
- **환경영향평가 및 건축심의 부담 완화**
- **외국인 생활에 불편이 없는 의료 및 교육환경 조성**
- **외국인 주거여건 개선**
- **조세 및 부담금 부담 경감**
- **장기임대방식의 산업용지 확대**

■ 경제자유구역내 소규모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면제

○ 환경영향평가는 통상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이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대상사업별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될 규모를 명시〈영향평가법시행령〉

〈대상사업 및 규모〉
- ❍ 도시개발, 아파트지구개발 : 25만㎡이상
- ❍ 대지조성, 택지개발, 도시재개발, 학교 : 30만㎡이상
- ❍ 산업단지 등 공업용지 조성 : 15만㎡이상
- ❍ 도로 : 신설의 경우 4km(도시계획구역은 폭 25m, 개발제한구역 3만㎡이상 포함), 확장의 경우 10km(2차선 이상)
- ❍ 매립 : 30만㎡이상(항만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내 3만㎡이상)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 별도 규모에 대한 명시가 없음

○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포함되어 있으나, 규모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 이미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친 소규모 개발사업의 경우에도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일반사업보다 과도하게 규제

⇒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경제자유구역 대상사업의 규모를 명시
– 경제자유구역은 지정시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 사전 환경성검토를 실시한 점을 감안하여 면제범위 규정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평가항목 중복 개선

○ 환경영향평가 실시대상은 도시개발, 산업단지개발, 도로건설 등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이며 사업별로 지형 · 지질, 수질, 대기질 등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서를 작성
※ 영향평가법령에 17개 사업유형에 총 73개 대상사업 명시
– 사업시행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실시계획 승인 전에 승인기관(환경부)과 협의를 완료하여야 함

○ 이미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조성된 매립지 위에 택지개발, 도로건설 등 개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환경영향평가를 처음 실시하는 일반사업과 동일하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
– 매립사업의 평가항목과 개별사업의 평가항목이 중복되어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작용
– 신규 조성된 매립지 위에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의 불필요한 부담 완화를 위해 평가항목 최소화(예 : 대기질, 수질, 폐기물, 소음, 진동 등으로 한정)가 바람직
⇒ 경제자유구역내 매립지 위에 개별사업 추진시에는 스코핑(scoping)제도 도입 등 환경영향평가 항목을 최소화하는 방안 강구

■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시 경제자유구역의 특성 감안

○ 사업시행자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승인기관)에 제출하면 환경부는 전문기관(한국환경정책 · 평가연구원)과 주민이 추천한 전문가(환경운동가 등)의 의견을 듣고 경제성과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협의의견을 통보

○ 환경부는 개발보다는 환경보전을 중시하고 있어 환경전문가의 과도한 요구를 실제 조정하는 데는 한계

- 경제자유구역내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의 경우 성장거점개발이라는 경제자유구역의 사업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다른 사업과 동일하게 검토함에 따라 사업추진에 차질 발생

⇒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결과를 승인기관에 통보하기 전에 경제자유구역청장과 사전 협의하는 절차 마련

-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이 개발사업을 현저하게 변경하거나 보완에 장기간 소요되는 의견이나 조건이 포함된 사업 등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에게도 의견제출 기회 부여

■ 인천경제자유구역내 공장설립시 중복적 건축심의 폐지

○ 실시계획 승인시 지구단위계획은 시·도지사의 협의를 거쳐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의해 확정

- 지구단위계획에는 산업용지내의 설립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용적율, 건폐율, 외관, 색채, 건축선 등이 규정

※ 인천광역시 건축조례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 지구단위계획상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건축물에 대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함

○ 지구단위계획 확정이후 공장설립과정에서 건축주는 지구단위계획에서 확정된 동일한 건축사항에 대해 별도로 시·도 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를 중복적으로 거쳐야 함

⇒ 인천경제자유구역내 공장설립시 받도록 되어 있는 건축주의 개별 건축심의를 폐지

■ 특별건축구역 시범적용 추진

○ 건축가의 창의력 극대화 및 지역특성에 적합한 랜드마크 건축물 조성(지역 명소화)을 위해 특별건축구역 제도 도입을 추진 중

- 특정지역에 대해 높이·사선·건폐율 제한 등을 해제하고 용적율·용도지역 등 최소기준만 준수, 건축심의로 조정

○ 경제자유구역내 국제업무지구, 관광·레저지구, 상업지구 등에 창의적인 랜드마크 건축물 건설 유도를 위해 시범지구 지정

⇒ 경제자유구역의 일부지역을 특별건축구역 시범지구로 지정

■ 외국교육기관 잉여금의 해외송금 허용방안 검토

○ 비영리 외국학교법인이 분교나 제2의 캠퍼스 형태로 설치하는 경우 결산상 잉여금에 대한 해외송금을 불허
- 다만, 원인거래가 있는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예 : 기자재 또는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제공시)에는 해외송금 허용

○ 결산상 잉여금에 대한 해외송금을 불허함으로써 외국 명문사학의 국내진입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 경제자유구역내 비영리 외국학교법인의 결산상 잉여금에 대해 학사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안에서 해외송금을 허용하는 방안 검토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의 취득부동산 비과세
○ 학교나 평생교육단체의 비영리사업자가 공익사업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등의 지방세를 비과세

○ 그러나, 경제자유구역내에 설립하는 비영리법인인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음에 따라 국내학교법인과의 형평성문제 발생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이 공익사업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각종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등)를 비과세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 설립기준 완화
① 외국교육기관이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경우 강의실 · 실험실습실 · 도서관 등 교사(校舍)에 대한 임차확보 허용
-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사이외에 교지를 별도로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설립기준상 교사를 건물의 일부에 임차확보하는 것은 불가하고 단일건물의 전체 임대만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

○ 국내 전문(경영 등)대학원의 경우 교사를 건물의 일부에 임차확보하는 것은 허용하나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의 대학원대학에 대하여는 불허하여 경제자유구역내 교육환경 개선에 한계
- 해양수산부와 광양청에서 건물의 일부에 임차로 추진중인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 광양분교(STC-Korea)의 경우 설립 곤란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이 대학원대학을 설립하는 경우 건물 일부를 교사로 임차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이 경우 교지확보는 면제토록 명시)

② 교사 최소면적 기준을 학생정원 200명(대학원 기준)으로 제한함으로써 소규모 대학원의 경우에도 과도한 교사면적 확보가 요구되어 경쟁력있는 소규모 대학원 유치에 장애

※ 교사(교육기본시설 · 지원시설) 기준면적 산출식 : 학생 1인당 교사 기준면적(인문사회〈12㎡〉, 자연과학〈17㎡〉, 공학 · 의학〈20㎡〉) × 계열별 학생정원

⇒ 경제자유구역에 소규모 외국대학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교사의 최소면적기준을 완화(예 : 학생정원 200명에서 100명으로 완화)

■ 외국의료기관의 외국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사용 허용

○ 국내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수입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 또는 신고 필요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이 본국에서 사용하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품목별로 허가(신약의 경우 허가기간은 약 10~12개월 소요)를 받은 후 사용해야 함

- 외국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하면서 외국기준에 의해 사용되고 있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해 엄격히 제한하는 것은 외국의료기관의 의료활동을 실질적으로 제약하는 결과

⇒ 외국의료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해 도입하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수입허가 절차 간소화 방안 마련

■ 의료기관의 환자유치 및 광고관련 규제 개선

○ 의료법에서는 일반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 · 알선 · 유인 ·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

※ 제주특별자치도에 개설된 외국의료기관은 외국인 환자를 소개 · 알선하는 행위가 가능

- 특정의료기관 또는 특정의료인의 기능, 진료방법, 조산방법, 약효 등에 대한 대중광고, 사진, 방송 등을 금지

○ 외국의료기관의 경우 외국인 환자의 유치를 위한 활동이나 경제자유구역내의 광고 허용시 수익기반 마련 가능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제한적 범위내에서 환자유치 활동이나 광고를 허용하는 방안 마련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전용약국에 대한 영업제한 철폐

○ 외국인은 보건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는 경우 경제자유구역에 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나

- 외국인 전용약국에 종사하는 약사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을 조제 또는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제

○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된 외국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내국인이 인근에서 의약품을 구입하기 곤란

⇒ 경제자유구역내의 외국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은 내국인의 외국인 전용약국 이용 허용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전용주택 임대 확대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기업 · 외국교육기관 · 외국인전용의료기관(약국 포함)의 종사자에게 민영주택공급물량의 10%내에서 특별공급이 가능

- 개발사업자가 일반분양이 아닌 특별분양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에 불과하여 실제 외국인 정주여건 조성에 기여할 것인지 여부는 불투명

○ 외국인의 경우 단기근무 특성과 비용부담면에서 주택소유보다 임대거주를 선호함에도 수익창출이 용이한 분양위주로 주택을 공급하고 있어 외국인 정주여건 조성에 한계

- 고급 임대주택은 장기적으로 사적시장에서 공급되어야 하나, 단기적으로 외국인 거주여건 조성을 위해 저렴한 고급 임대주택공급이 필요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 공급확대방안 마련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종사자 특별분양 관련 규정 명확화

○ 경제자유구역내 특별공급 대상자인 무주택세대주인 외국인 종사자에 대한 세부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특별 공급시 운영상의 혼란 초래

⇒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외국인종사자에 대한 특별공급 세부자격기준 (무주택자, 외국인, 종사자 등) 마련

■ 조세감면 제도 개선

○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5년간(3년 100%, 2년간 50%) 법인세, 소득세를 감면중

- 외국인 투자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업이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여 7년간(5년 100%, 2년 50%) 법인세, 소득세 등을 감면

  * 제조업(3천만불 이상), 관광업(2천만불 이상), 물류업 · SOC(1천만불 이상) 등

○ 그러나,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복잡한 지정절차를 거쳐야 하며, 지정절차에 장기간 소요(통상 6~12개월 소요)

- 우선 시 · 도지사가 지정(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야 함

⇒ '07년말까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지정요건과 감면절차를 합리화 · 단순화하는 방안 마련

■ 부담금 감면 확대

○ 경제자유구역의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50%를 감면

○ 경제자유구역은 집중개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농지와 산지전용억제 목적의 부담금 부과는 면제해 줄 필요

- 일반지역의 산업단지, 중소기업 공장 등은 부담금이 면제되나,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단지 등은 시설의 종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0%만 감면되어 역차별 발생

○ 또한, 부담금의 실제 부과금액이 매우 커 각종 용지의 조성원가 상승요인으로 작용

⇒ 경제자유구역내의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대상시설 중 일반지역에서 100% 감면되는 부과대상시설은 100% 감면되도록 조치

■ 저가 장기임대방식의 산업용지 확대

○ 경제자유구역내 산업용지(IT, BT 단지 포함)는 대부분 분양방식 위주로, 저가 장기임대 방식의 산업용지 공급은 극히 일부

- 일반지역의 산업단지는 임대전용의 「New Biz Park 제도」가 '06년부터 도입되어 최장 50년간 저가의 공장용지를 공급중이나 경제자유구역에는 아직까지 미도입
- 산업자원부는 외국인투자기업 임대단지와 자유무역지역 임대단지를 통해 저가(조성원가의 1%) 장기임대(50년) 공장용지를 제공하고 있으나, 경제자유구역내 임대단지의 비중(0.8%)은 미미

○ 현재 분양위주의 산업용지 공급으로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비용을 상승시켜 외국인투자기업 유치에 걸림돌

- 중국, 대만 등 투자유치경쟁국보다 임대료 등이 비싸 초기 투자비용측면에서 경쟁력 상실

※ 중국(북경 3,857원, 상해금교 4,466원), 대만(신쥬 4,628원, 타이난 23,802원), 베트남(탕롱 4,628원, 롱빈 2,645원) 등(원/평/연)

○ 투자파급효과가 큰 세계적인 외국인 투자기업을 선별하여 유치하기 위해서는 저가의 장기 임대단지 공급이 필수적

- 외국인 투자기업은 초기투자비용이 적고 사업전환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방식을 선호

⇒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용지 공급을 현재 '분양방식' 위주에서 저가의 '장기임대방식 확대'로 전환·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무조정실과 협의

-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하여 추진

■ 경제자유구역내 과밀억제권역의 취득세·등록세 중과부담 해소

○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와 공업지역은 제외)안에서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공장 신·증설을 위한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세·등록세를 3배 중과

※ 경제자유구역 중 인천 청라지구, 송도지구(7-11공구) 등은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

○ 경제자유구역내 과밀억제권역에 입주하는 국내기업의 경우 취득세·등록세가 3배 중과되어 경제자유구역의 초기 활성화, 산업클러스터의 형성에 저해 우려

-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과 개발사업자의 경우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일정기간(최대 15년까지) 감면되고 있으나, 감면기간 경과후에는 과밀억제권역안은 3배 중과

⇒ 인천경제자유구역내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중과부담 해소

(2) 행정절차 개선을 통한 사업추진 원활화

기본방향
- **입지·기본계획 등 필수규제의 사전검토로 신속한 개발 추진**
- **실시계획 승인시 인허가 의제처리 확대**
- **실시계획 처리절차 간소화**

■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확정시 필수규제 사전검토 강화

○ 현행 경제자유구역법상 구역 지정시 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 일부 개별법에 의한 지구(구역 · 단지) 지정, 사업(개발)계획 수립이 있는 것으로 간주 〈경제자유구역 지정효과〉

- 법에 의해 지정효과는 부여되고 있으나, 관계부처와의 협의절차규정은 없음

○ 구역 지정 후 개별사업자가 개별사업 추진 과정(실시계획 승인시)에서 관계부처 반대로 인허가가 보류되어 사업추진지연 및 포기사례가 발생

- 개발계획 수립 및 확정시 향후 개발사업의 인허가 기준충족 가능성에 대한 관계부처와 사전검토 · 협의절차가 없어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애로 발생
- 입지규제 및 각종 기본계획 관련사항은 사업초기단계(구역지정 및 기본계획수립)에서 사전 검토해야 할 필수규제사항에 포함함으로써 개발사업 추진상 문제발생을 예방할 필요

⇒ ① 구역 지정(개발계획 확정)시 입지 · 기본계획 등 필수규제 사전검토를 위해 관계행정기관 협의절차를 신설

※ 구역지정을 위한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상정 전에 관계부처에 개발계획 검토절차를 마련하여 지정효과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보전산지나 우량농지 전용 등의 개발장애요인 사전 검토

②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의 승인 등 필수규제 사항은 구역 지정효과에 추가

■ 개발계획 변경시 처리기한 단축

○ 개발계획 변경절차는 사업시행자가 변경요청을 하면 해당 시 · 도에서 개발계획 변경(안)을 작성, 재정경제부에 변경을 신청

- 경미한 개발계획을 제외한 모든 개발계획 변경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비공식 자문위원회 포함)와 재정경제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통상 7개월 내외 소요
- 이는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법정 처리기한이 없고, 변경(안)을 심의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위원회가 연간 2~3회 개최되는 것도 그 원인

⇒ 개발계획 변경 처리기한(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월 이내)을 법령에 명시하고,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수시개최 방안 강구

■ 경미한 개발계획 변경의 범위정비 및 권한위임

○ 현행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재정경제부장관이 변경 승인

〈경미한 개발계획의 변경 범위〉
① 행정구역 변경 등으로 당해 경제자유구역 명칭 변경
② 경제자유구역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의 면적변경
③ 수용 예정인구수의 100분의 10 미만의 변경
④ 개발사업의 목표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개발사업의 세부계획 변경
⑤ 지형 또는 지질 사정으로 인한 주요 기반시설계획의 변경
⑥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의 변경
⑦ 그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그러나, 경미한 개발계획의 범위가 좁고 승인대상에 단순 사실관계 변동까지 포함하여 사업지연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관계규정이 모호하여 자의적 해석 우려
- 각종 영향평가심의 등 개별법령에 의한 심의결과를 개발계획에 반영하는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
- '사업시행자의 주소 변경'도 개발계획 변경승인 대상이 되며,
- '면적변경 기준'을 구역 전체면적이 아닌 지구별 면적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목표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의 개발사업 세부계획 변경'에 대한 가이드 라인이 없어 자의적 운용 소지

⇒ ① 경미한 개발계획의 변경승인 권한을 현행 재정경제부장관에서 시 · 도지사(최종 경제자유구역청장)로 위임
② 개발계획 변경시 경미한 사항의 범위를 확대
③ 자의적인 운용 가능성이 있는 규정을 명확화
④ 현행 경미한 개발계획 변경사항 중, 단순한 사실관계의 변동에 해당하는 사항은 개발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갈음

■ 의제처리 관련 협의제도 개선

① 실시계획 승인전 관계부처 사전협의는 30일 내에 회신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대부분 30일을 훨씬 초과
- 현행 의제처리제도상 통상 '인허가업무 창구단일화'의 의미로 해석되어 각종 인허가 처리기간 단축에는 한계 발생

⇒ 법정협의기간 준수를 위해 관계행정기관에서 협의기간(30일)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 없는 것으로 간주

② 재정경제부가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36개 법률에 의한 65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의제처리)
- 실시계획에 인허가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부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함

○ 인허가 의제처리 시 관계부처에서 이견을 제시할 경우 이를 실무적으로 조정하는 시스템이 없어, 실시계획 승인(일부 인허가 조건부)을 받고도 사업추진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

○ 실시계획 승인(변경승인 포함)을 위한 인허가 의제처리 시 관계부처 합동심의(예: 관련업무 담당국장 참석)를 통해 사전에 의견을 조정하는 절차 마련 필요
- 합동심의에서도 이견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 경제정책조정회의(경제부총리 주재) 또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상정하여 문제 해결

⇒ 실시계획 인허가 의제처리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심의제」 도입

■ 실시계획 승인시 의제처리되는 인허가 사항 확대

○ 개발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현행 36개 법률에 의한 65개 인허가를 의제처리하고 있음

○ 경제자유구역내에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는 의제처리되는 인허가 사항을 추가할 필요

⇒ 실시계획 승인시 의제처리되는 인허가 사항 확대

〈의제처리 추가사항〉
① 농지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 · 해제
② 소하천정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정비계획,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점용허가

■ 인허가 의제처리사항 권한위임

○ 개발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 포함)을 얻은 경우에는 36개 법률에 의한 65개 인 ·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의제처리)

- 그러나, 의제처리는 관련규정을 적용 배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청당시 관련 개별법상 「인허가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재량(기속재량)행위의 경우 관계부처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지역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거나 소극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추진 곤란
- 관계부처의 판단에 장기간 소요가 예상되는 사항은 독립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

⇒ ① 의제처리 대상 중 '농지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 등의 권한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서 시·도지사(최종 경제자유구역청장)로 위임
② 시·도지사의 보전산지전용허가 위임범위 확대
(현행 1만㎡~20만㎡ → 3만㎡~50만㎡)

■ 실시계획 승인절차 개선

○ 시·도지사는 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개발계획을 확정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함
-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실시계획 승인(변경)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

○ 당초 수립한 개발계획의 범위내에서 세부적으로 작성하는 실시계획도 개발계획과 동일한 절차를 거치도록 함에 따라 과도한 시간 소요

⇒ ① 실시계획 승인시 처리기간을 단축(현행 6개월⇒5개월)
② 실시계획 승인권한을 단계적으로 현행 '재정경제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위임
- 일정규모미만 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권한은 2007년부터 위임
- 2010년까지 실시계획 승인권한을 전면 위임

■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류 제출 간소화

○ 개발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도면 포함)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

① 실시계획승인신청서(9개 항목) 주요내용
·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위치 및 면적
· 소요토지의 확보 및 이행계획

· 국토계획법에 따라 작성한 지구단위계획, 인허가 의제내용

② 주요 첨부서류 및 도면(14개 항목)
· 위치도 및 용지도
·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 자금계획, 토지의 매수·보상계획, 환경영향평가서
· 인허가 의제처리시 관계행정기관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
– 인허가 의제처리를 위한 부처협의시 관계부처는 개별법령에 의해 세부 실시설계도서 등 각종 서류를 요구

○ 실시계획승인신청서 작성시 구체적 매뉴얼이 없어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을 파악하고 자료를 작성·제출하는데 애로와 자료보완에 많은 시간 소요(빈번한 보완요구 발생)
⇒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표준매뉴얼(서식 및 의제처리시 제출서류종류, 처리절차 등 포함)을 작성·보급

(3)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개선방안

기본방향 ◆ 경제자유구역청의 사업 추진력 강화
◆ 경제자유구역청의 사업활동 지원

■ 경제자유구역청의 자율성 강화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과 제도운영은 중앙정부(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지구신청과 개발계획 작성은 지방정부(시·도지사), 개발 및 관리운영은 경제자유구역청이 각각 담당

○ 경제자유구역청은 지자체의 하부조직(출장소, 조합)으로서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역할 수행이 사실상 곤란
– 조직·인력·재정의 한계로 인하여 푸동, 두바이, 싱가폴, 홍콩과의 경쟁이 어렵고, 국가차원의 성장거점 특구로 발전하는 데에도 제약
– 구역청 인력의 약 80% 이상이 2년 미만의 단기파견 지방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조직의 안정성 확보 곤란, 전문성 부족, 자율적 인력운영상 한계
⇒ 경제자유구역청의 자율성 확대방안 마련

■ 국가적 차원의 조정기능 강화

○ 경제자유구역내에서 각종 개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부처의 정책적 이견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

– 각 부처의 소관 법령상으로 개발이 곤란(입지규제)하거나 개별법령상 각종 위원회의 반대, 인 · 허가의 소극적 처리등으로 사업추진을 포기하거나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 다수

○ 관련부처의 이견사항 발생시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부담 가중, 구역 전체의 개발계획 지연

⇒ 사업추진상 정책적 이견사항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직접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

■ 경제자유구역청운영특별회계 도입

○ 경제자유구역의 사업비는 국고, 지자체, 민간의 투자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자체 예산은 통상 일반회계로 편성 · 집행

– 다만, 부지매각 수입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별로 특별회계를 일부 운영

※ 현재 해당 시 · 도에서 운영중인 특별회계

구분	회계명칭	'06 예산	설치근거	비고
인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송도)	3,987억원	지방공기업법 인천광역시도시개발사업설치조례	지방의회 의결
광양	율촌산단조성사업특별회계	571억원	지방재정법 제9조 전라남도사무위임조례	조합회의 의결

○ 경제자유구역청이 독립된 회계를 갖고 있지 않아 탄력적 투자가 곤란하며, 구역내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이 타지역의 사업에 전용될 우려 발생

– 경제자유구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발이익이 구역 내로 재투자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

⇒ 경제자유구역청의 재정운영의 독립성,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 도입

■ 사업부지 매각방식 변경

○ 대규모 매립지를 일괄적으로 개발사업자에게 매각함으로써 실제 개발이익이 대부분 개발사업자에 귀속

- 매립지 매각시 단순히 조성원가와 물가상승률을 감안, 산정한 금액으로 매각함에 따라 개발사업자에게 저가 매각

○ 대규모 개발이익이 개발사업자에게 귀속됨에도 수의계약 형태(외국인투자촉진법 근거)로 매각되어 국부유출 및 특혜시비 우려

- 대규모 매립지의 일괄매각방식과 공공기관의 개발사업 시행 후 소규모 단지의 분양매각 · 임대방식의 장단점을 검토할 필요

⇒ 대규모 사업부지의 매각방식 전환방안 강구 및 대규모 매립지 매각시 계약체결 이전에 재정경제부와 사전 협의 의무화

■ 경제자유구역청의 자체 재원조달 확대방안 강구

○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은 지방채 발행한도액 범위안에서 가능

-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재정규모와 채무규모 등을 기준으로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지자체별로 부여하고, 한도액내에서는 행정자치부의 승인없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 자율적으로 발행 가능
  · 다만,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등은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발행 가능
- 경제자유구역청은 지자체 소속기관으로서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한도의 제약을 받아 채권발행에 한계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사업의 재무적 타당성 등을 감안하여 구역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자본을 조달해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규제를 개선할 필요

- 현재 대부분의 사업은 예산상 한계, 채권 발행상 제약 등으로 직접개발 또는 공영개발보다는 일괄분양방식으로 추진

⇒ 해당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과 별도로 경제자유구역개발채권 발행 허용

라. 향후 추진일정

○ 부처별 세부시행계획 수립 · 제출 : '06.12
※ 외국의료기관의설립 · 운영에관한특별법(가칭)의 제정은 6개월 이내 국회 제출

○ 관련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 이행점검 및 평가(매월)

3.18 공동주택 규제개선방안(Ⅱ)

집필자 : 백종도 사무관(Tel. 2100-8824, e-mail : bajdo@opc.go.kr)

가. 정책 환경

○ 2003년 이후 국토이용체계 개편(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통합 등)과 도심내 건축규제 강화 등으로 민간택지 공급이 위축
- 정부는 민간부문 공급위축에 대처하여 공공택지개발을 확대하고 있으나, 수도권 주택공급실적은 '02년 37.6만호 이후 지속 감소하여 '05년 19.8만호, '06년 1~9월중 9.5만호 공급

※ '10년까지 수도권에 년 30만호가 신규로 필요하나 년 3만호의 공급부족 발생

구 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0~'05평균
수도권	240,985	304,396	376,248	297,289	205,719	197,901	270,423
(서울)	(96,936)	(116,590)	(159,767)	(115,755)	(58,122)	(51,797)	(99,828)

○ 11.15 부동산 안정화방안 등으로 공공부문 택지공급계획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나, 부동산가격 안정기조 내에서 공동주택 관련 규제개선을 통해 민간택지 공급 활성화 필요
- 주택가격 안정 및 서민의 주거환경 개선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토지이용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

<주택건설실적 중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비율>

(단위 : 천호, %)

구 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주택건설실적	529.8(100)	666.5(100)	585.4(100)	463.8(100)	463(100)
-공 공	127.9(24.1)	123.7(18.6)	120.5(20.6)	124.0(26.7)	141(30.5)
-민 간	401.9(75.9)	542.8(81.4)	464.9(79.4)	339.8(73.3)	322(69.5)

○ 아직도 주택건설 관련기준 등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로 인하여 주택공급기간 장기화, 분양가 인상요인 등이 잔존
  - 주택공급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주택건설 관련 인허가 절차 및 기준 합리화 필요

나. 규제현황 및 문제점

(1) 규제현황

■ 주택공급 및 건설에 관한 기본법은 주택법과 건축법이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건축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17개부처 82개 법령이 있음

○ 공동주택사업의 절차는 토지확보 → 사업계획수립 → 사전협의 · 건축심의 → 사업승인 → 착공 · 분양승인 등의 순서로 진행되며, 사업기간은 토지확보를 제외하고 약 65주 소요(450여일)

■ 주택관련 규제는 단계별로 토지이용(택지개발) → 사업승인 · 분양 →시공 · 건축 → 세제 · 관리 분야 등에서 약 500여건이 있음

○ 토지이용은 '선계획-후개발' 원칙의 국토이용체계 개편에 따라 4개 용도 · 21개 지역 · 28개 지구로 세분화하여 규제

○ 사업계획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및 건축 · 환경 및 교통영향 · 문화재 등 각종 심의절차를 거쳐야 함

○ 시공 · 건축 부문에서는 층수 제한, 도로폭 제한 및 각종 건설 및 설치기준 등이 존재

○ 세제 및 주택관리와 관련하여 취·등록세, 각종 부담금 및 승강기 정기검사 등의 규제가 있음

■ 그동안 공동주택 관련 규제개혁을 지속 추진하여 왔으나, 토지이용·주택건설기준 등의 분야에서 주택공급 위축요인으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규제가 아직까지 상존

(2) 문 제 점

■ 주택수요가 많은 기존 시가지의 주택용지가 이미 고갈된 상태이며, 준농림지 폐지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토지이용규제 강화로 수도권의 신규 택지확보 곤란

○ 정부는 기존 도심의 광역적 재정비, 공공택지 개발 확대 및 개발밀도 상향조정 등을 통해 공급확대정책을 추진중이나, 실질적인 주택공급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

○ 도심내 개발밀도 및 재건축 요건 강화 등으로 인한 주택공급 감소를 대체할 수 있는 신규 민간택지 공급방안 마련이 시급

■ 주택건설과 관련한 각종 심의 및 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주택공급기간이 장기화됨

○ 그동안 중복절차 및 과도한 규제를 중심으로 30건의 규제개혁과제를 발굴·개선('05.3 규제개혁 장관회의)하여 왔으나,

○ 일부 절차(경관 및 도시계획 심의 등)의 심의기간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사업기간 및 주택공급기간의 장기화 초래

■ 주택건설기준 등 현행의 규제기준 중 일부 불합리한 규제로 인하여 사업추진 애로 및 분양가 인상 요인 등으로 작용

○ 변경된 여건에 맞게 관련규정이 적기에 정비되지 않아 사업자 및 입주자 등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사례 발생

다. 개선방안

(1) 주택용지 공급 활성화

■ 주택건설사업으로 인한 학교용지 확보방법 개선

○ 300세대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개발사업의 시행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 · 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 지역이 협소한 경우에는 시 · 도 교육감과 협의하여 인접한 지역에 학교용지를 확보하여야 함

※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사업지역의 협소로 인하여 개발사업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 지연, 고가의 토지매입 등의 부작용 발생

– 또한, 학생수 감소 등 여건변화에 따라 학교설립이 지연될 경우 경제적 손실 발생

⇒ 개발사업자가 택지 인근에 학교용지를 확보해야 하는 경우 사업자는 용지부담금을 부담하고, 용지는 관할 교육청이 확보

– 시 · 도 등 관련 행정기관이 용지 확보에 적극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교육인적자원부 주관으로 마련하고, 필요시 관련 법령을 개정

■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제도 합리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되는 도시계획위원회는 관련공무원과 토지이용 · 주택 · 교통 · 환경 등 도시계획 전문가로 구성 · 운영되고 있으나,

– 구체적인 심의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특정 민원 또는 일부 견해에 의해 사안이 결정되거나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

< 사례 >

❍ Y시의 경우 :

–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 획일적인 용적률(200%이하)을 강요하거나, 기반시설 부담을 과도하게 요구

❍ H시의 경우 :

–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제정 · 고시하면서 기반시설부담구역 내는 용적율을 280%까지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상급기관에서 용적율을 230%로 하향조정을 요구하자, 이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대로 의결하여 사업자에게 통보, 사실상 사업추진 포기

※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회의록 공개요청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 · 시행중이나, 사업자 부담은 여전

※ 일부 지자체의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사업자가 제안설명 등을 임의로 하는 사례 있음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사업자가 원할 경우 사업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절차와 사업내용 변경 · 추가부담 요구 등의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지방도시계획조례 준칙' 제정 · 시행

(2) 주택건설사업 규제 합리화

■ 자연경관영향심의제도 개선

○ 개발사업으로 인한 자연경관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자연경관영향심의」제도 도입 · 시행중

– 당해 개발사업 등이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보전방안 등을 사전환경성검토서 또는 환경영향평가서에 포함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

※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 개정('04.12.31) 및 시행('06.1.1)

< 자연경관영향협의제도의 주요내용 >

구 분	자연경관영향 협의	
	환경부 심의	지자체 검토
대상사업	○ 보전지역(자연공원, 생태 · 경관 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주변 – 0.3~2km 이내의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 ○ 일반지역 –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중 3만㎡ 이상인 개발사업 등 – 44개 환경영향평가협의 대상사업	○ 보전지역 주변 – 0.3~2km 이내의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아닌 개발사업 〈의무검토대상〉 ○ 일반지역 – 그 밖에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개발사업 〈권장사항〉
절 차	○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절차와 같이 진행하되, 별도 심의	○ 인 · 허가절차와 같이 진행
협의시기	○ 사전환경성검토 요청시 ○ 환경영향평가협의시(본 평가서)	○ 개발사업의 인 · 허가시
심의검토 기관	○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환경부) ○ 자연경관심의위원회(지방환경청)	○ 지방자치단체 자연환경담당부서 (인 · 허가부서 또는 도시계획부서)

○ 자연경관영향심의에 따른 사업비용 · 협의기간을 단축하여 사업자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주택공급 활성화

⇒ 중대한 보완사항이 아닌 경우 평가서의 사후보완을 조건으로 심의완료 조치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 마련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등에 대하여 심의기준 및 절차를 간소화

(예시 : 현황조사 및 경관예측시뮬레이션 생략 등)

☞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 심의지침(환경부 예규, '05.12.30) 개정

■ 아파트단지내 도로의 도로폭 개선

○ 주택단지내 도로의 폭은 기간도로 또는 진입도로에 이르는 경로에 따라 단지안의 도로를 이용하는 세대수에 따라 결정토록 규제하고 있으나,

- 지하주차장의 경우 주차장 입구를 아파트단지의 주출입구 부근에 설치하여 지상에는 조경시설 및 보도로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현실과 맞지 않아 불합리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에서 단지내 도로폭을 정하고 있으나, 현재는 규정 제정시와 달리 지하주차장 설치가 확대되어 도로확보율이 과도한 측면이 있음

❍ 세대수 : 도로폭

- 100세대 미만 : 4m이상,
- 100~300세대 : 6m이상
- 300~500세대 : 8m이상,
- 500~1,000세대 : 12m이상
- 1,000세대 이상 : 15m이상

⇒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현행 아파트단지 내 도로기준이 과도하므로 주택단지의 실정에 맞춰 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

단, 단지내 소방, 비상용 차량, 이삿짐 차량 등의 비상시에 대비한 순환도로 등은 적절한 수준으로 확보

☞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개정

(3) 아파트단지내 문고시설 설치기준 개선

○ 현재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 별표1의 기준에 적합한 문고를 설치토록 하고 있으나,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제5항

❍ 문고 설치기준(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 별표1)
- 시설 : 건물 33㎡ 이상, 열람석 6석 이상
- 자료 : 1,000권 이상

- 문고설치시 도서 종류(소설류, 잡지류, 만화류, 전집류 등)에 따른 가격차가 커서 사업자와 입주자간에 분쟁의 소지가 많음

⇒ 자료수와 함께 가격기준을 제시하여 분쟁 소지를 제거하고 자료의 내용은 사업자와 입주자간에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자료의 활용도 제고
(가격기준 : 도서평균가 등, 자료내용 : 어린이용, 주부용 등)

☞ 문화관광부 장관이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하도록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제5항 개정

(3) 불합리한 제도 · 절차 개선

■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 개선

○ 현재 건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과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의 '주택성능등급 인정(에너지분야)'과 산업자원부의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제도가 있음

❍ 근거
- 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기준(건설교통부 고시)
-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정(산업자원부 고시)

- 건설교통부는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산업자원부)을 득할 경우 주택성능등급 중 에너지분야 인정을 득한 것으로 간주
- 반면, 산업자원부는 주택성능등급 중 에너지분야 인정(건설교통부)을 득하더라도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하지 않고 있음

○ 상기 두개의 인증제도가 인증목적 및 평가방법 등이 상이하더라도 사업자에게 혼선과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많으므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 개선 필요

⇒ 건물의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방안을 일원화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와 산업자원부가 협의하여 통합고시 제정

■ 공익사업에 따른 철거건물 양도시 부가가치세 부과 개선

○ 공익사업을 위한 건물수용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 여부가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아 불분명

*현재 법령해석에 의해 철거건물 수용시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을 이전등기(양도)한 후 시행자의 책임하에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에 과세

- 공익사업시행자와 건물소유주간에 마찰 및 민원발생으로 인한 공공사업 지연 초래

❍ 판례(서울행정법원 2004구 합 9906, 2004.8.12)

- '수용에 의한 건물철거시 이를 과세대상인 '부가가치가 창출된 경우'로 보기 어려우므로 보상금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따라서, 건물수용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여 불필요한 공공사업관련 마찰 해소

⇒ 공익사업 시행과 관련한 철거건물 수용시 부가가치세 비과세 대상을 관련법령에 명확히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개정

■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시 공람 제도 개선

○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시 주민공람공고일이 이주대책기준일이 되고(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21조) 있으나, 주민공람기간 14일이 지난 경우 일반인이 공람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민원발생

- 택지개발예정지구내 주민들이 거래하고자 하는 토지의 주민공람공고일을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 민원 사전예방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기간을 표시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는 관련법령에 반영하고, '08년까지 관련프로그램을 개발·시행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시 반영

라. 향후 추진일정

○ 부처별 세부추진계획 수립·제출('07.1.12)

○ 관련법령 정비 및 후속조치

- 시행규칙 이하 개정사항은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
- 시행령 이상은 원칙적으로 2개월 이내 국무회의 상정

3.19 항공운송 규제 개선방안

집필자 : 김주경 전문위원(Tel. 2100-8798, jookkim@opc.go.kr)

가. 정책환경 및 추진경위

○ 항공운송규제는 항공기 항행의 안전과 항공시설 설치·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다른 운송산업 분야보다 엄격한 규제
- 우리나라의 경우 90년대 말에 발생한 많은 항공사고를 계기로 안전·보안관련 규제를 크게 강화

○ 개방된 경쟁시장인 항공운송산업의 경우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성 확보 및 고객 신뢰도 제고는 항공사의 사활문제
- 세계적 항공사와의 전략적 제휴확대 등으로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항공안전 확보는 항공운송사업자의 필수적 과제
- 국내 항공사의 경우 안전운항 확보를 위한 투자 확대와 자체 안전점검시스템 강화하여 2000년 이후 안전운항

※ IOSA 점검 결과, 국내항공사 2년 연속(05년, 06년) 무결점 인증획득

○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정부규제에서 탈피하고 항공운송업계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이 국제경쟁력 확보에 오히려 효과적

※ 세계 각국은 자국 항공운송산업의 육성을 위해 영업활동 등에 대한 규제완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 항공안전 관련규제는 유지하면서 현실과 맞지 않는 과도하고 획일적인 규제를 완화하는 등 규제 합리화 필요

❍ Global Standard를 감안하여 항공운송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항공안전 확보 및 국가경쟁력 제고

나. 규제현황 및 문제점

○ 항공운송 관련 기본법으로는 항공운송사업 면허, 항공기 등록 및 운항 등을 규정한 '항공법'이 있으며,

-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 출입국관리법, 관세법 등 21개의 관계법령이 있음

○ 관련 규제는 총 145건으로, 항공기 운항에 따른 인허가 및 영업활동 관련 규제가 대부분을 차지

합 계	영업활동	인 · 허가 등	통관 · 출입국	세제/부담금
145(100%)	51(35.2%)	50(34.5%)	21(14.5%)	20(13.8%)

○ '05년 2월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항공운송산업 규제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영업활동, 인허가, 통관 · 출입국, 세제 · 금융지원 등에 규제개선 효과가 있었으나,
- 공항의 운영 · 관리, 항공정비 분야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여전히 존속하여 이를 새로이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발생하고
- 영업활동 및 인허가 분야에서도 규제완화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이를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

○ 공항이용 및 공항개발 분야에 과도한 규제 상존
- 자가용 항공기의 김포공항 이착륙 허용시간대(07:00~22:00)가 일반여객기의 시간대(06:00~23:00)보다 짧아 불편 발생
- 공항개발사업 추진시 시행허가단계와 실시계획 승인단계에 중복적으로 설계도서를 요구하는 등 개발사업자의 부담 존속

○ 국제적 기준보다 엄격한 제도 운영으로 과도한 비용 발생
- 항공정비사와 항공조종사 형식한정자격 시험제도 등이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항공사의 인력수급에 애로 발생
- 비행경력있는 신입조종사(군 조종사)의 대형 항공기 직접 배치가 지나치게 제한되어 대형기 부조종사 수급에 애로 발생

○ 영업활동에 대한 과도한 행정규제로 기업부담 증가
- 운임신고제 노선의 경우에도 신고수리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실제 사전 인가제와 동일하게 운영
- 수리용 항공부분품에 대한 관세 담보제공 의무 부과, 일시 회항 국제선 항공기에 대한 엄격한 출입국 관리 등 획일적 운영으로 불필요한 기업부담 발생

다. 개선방안

(1) 공항운영 · 관리규제 합리화

기본방향 ◆ **공항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
◆ **공항시설 운영 · 관리규제 개선**

■ 자가용 항공기의 김포공항 이착륙 이용시간 확대

○ 자가용 항공기의 김포공항 이착륙(운항) 허용 시간대가 일반여객기의 이착륙 허용 시간대보다 짧아 불편 발생

※ 김포공항 일반여객기 운항허용시간 : 06:00~23:00
자가용 항공기 운항허용시간 : 07:00~22:00

⇒ 자가용 항공기의 김포공항 이착륙 허용 시간대를 일반여객기의 이착륙 허용 시간대와 동일하게 확대

■ 공항개발사업의 승인서류 간소화

○ 한국공항공사가 공항개발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건설교통부(지방항공청)으로부터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를 받고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야 함

❍ 공항개발사업시행허가 신청서류

1. 사업계획 및 설계도서 1부.
2. 총사업비 및 산출내역서 1부.
3. 사업자금 조달계획서 1부.
4. 1/5,000이상 지형도 또는 이에 준하는 일반평면도, 지적평면도와 인접지를 포함하는 계획평면도

❍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서류

1. 위치도 및 허가구역을 표시한 평면도
2. 공사설명서
3. 계획평면도 및 설계도
4. 공사예정표
5. 자금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6. 환경영향평가서(「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7. 기타 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기재한 서류

○ 사업초기 단계인 시행허가 신청시에 세부적인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어

- 허가내용에 경미한 변경이 있을 경우 재설계를 하여야 하는 등 절차복잡 및 공사 추진에 애로

※ 설계도서의 종류(건축법) : 시방서, 설계도면, 공사내역서, 구조계산서

- 실시계획 승인시에도 설계도를 요구하여 중복제출문제 발생

⇒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시에는 기본설계 내용을 제출토록 하고, 실시계획 신청시에는 설계도서를 제출토록 조치

☞ 항공법시행규칙 제265조 개정

■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 대상사업기준 완화

○ 한국공항공사가 공항개발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경미한 공항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와 실시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

❍ 경미한 공항개발사업의 범위

1. 「건축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개량 및 유지 · 보수사업
2. 냉난방 · 운송 · 승강 · 소화설비 등 기계설비시설의 교체 및 유지 · 보수사업
3. 영 제10조제1호의 각목 중 항행안전시설, 통신시설 및 전력시설의 교체 및 유지 · 보수사업
4. 토목시설의 유지 · 보수사업. 다만, 활주로 · 유도로 · 계류장의 포장개량공사가 수반되는 것을 제외

○ 경미한 공항개발사업의 범위가 지나치게 제한되어 한국공항공사가 신속하게 유지보수를 해야 할 사업의 지연 우려

- 항행안전과 직접 관련이 없는 Land-side지역의 캐노피 설치, 건축물의 대수선(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물의 기둥 · 보 · 내력벽, 주계단의 구조 또는 외부형태를 수선 · 변경 또는 증설)까지 승인 받도록 과도하게 규제

⇒ 경미한 공항개발사업의 범위를 확대

※ 예 :항공안전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land-side지역에서의 캐노피의 설치와 건축물의 대수선 등

☞ 항공법시행규칙 제265조의2 개정

■ 공항 항공기 소음대책사업 기준 일원화

○ 공항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시의 항공기 소음대책기준(환경부 소관)이 항공법상 항공기 소음대책사업 기준과 불일치하고 공항별로도 차이가 심하여 혼선 발생

※ 항공기소음대책 사업기준 (항공법 시행규칙 제271조)

· 방음대책 필요 : 75~95 WECPNL(웩클) 지역

· 이주대책 필요 : 95 WECPNL 이상 지역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단위 : WECPNL)

구분	인천공항 ('92.5.22)	양양공항 ('96.3.29)	무안공항 ('99.11.27)	김제공항 ('02.2.21)	항공법시행규칙 ('93.4)
방음대책	70~75	70~80	70~95	70이상	75~95
이주대책	75이상	80이상	95이상	95이상	95이상

– 인천공항의 경우 2010년경 운항편수 증가시 75 웩클 이상 초과가 예상되어 과도한 부담발생 우려가 있으며,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기준은 외국에 비해 과도한 수준

※ 일본의 이주대책 기준 : 90 웩클 이상 지역

⇒ 향후 환경영향평가시 적용하는 소음대책기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공법상 소음대책기준을 적용하도록 환경영향평가관련기관에 시달

(2)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규제개선

기본방향 ◆ **국제적 기준을 감안한 규제의 합리화**
◆ **과도하거나 행정편의적 규제의 개선**

■ 항공정비사 형식한정 자격시험제도 개선

○ 건설교통부는 일정 자격을 갖춘 항공사를 항공정비사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보유기종별 형식한정 변경교육을 실시토록 해당 항공사에 위임

– 해당 항공사는 학과교육과 실기교육을 실시하고, 3~6회의 자체교육평가 후 합격자에 한하여 수료증을 교부

○ 그러나, 학과에 대하여는 별도로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학과시험에 별도로 응시토록 규제

- 자체 학과시험과 교통안전공단 시험간에 평가내용상 큰 차이가 없어 실효성이 적고, 교통안전공단 시험의 대기시간이 과다(분기 1회 실시)하여 정비인력의 적기 확보에 지장

※ 항공정비사 한정자격제도는 ICAO 규정상 의무사항이 아님. 따라서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기종별 한정자격을 구분하지 않거나, 항공사의 자체 기종별 자격제도만을 운영

⇒ 항공정비사 자격시험 중 형식한정 자격시험은 폐지하고, 항공정비사 자격평가는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정비조직의 정비훈련프로그램으로 운영

■ 항공조종사 형식한정 자격시험제도 개선

○ 운항승무원이 비행임무 수행을 위해서는 자격증명에 추가하여 해당 형식 항공기에 대한 형식한정자격을 취득해야 함

❍ 조종사 양성훈련과정은 「지상훈련 → 모의비행훈련(비행훈련) → 형식한정자격 취득 → 운항경험」의 순서로 진행

○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정기시험은 년 4회에 불과하고, 임시시험은 경비과다 등을 이유로 매년 시험횟수가 감소함으로써 항공사의 조종사 인력운영에 애로 발생

※ 형식한정시험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2006년의 경우 정기시험 년 4회, 임시시험 년 4회 실시 예정

- 형식한정자격 취득까지 약 50여일이 소요되고 자격 취득이후 다시 운항경험과정을 진행함에 따라 과다한 시간 소요 등으로 조종사의 기량 유지 · 관리에 지장 초래

⇒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조종사 한정자격심사의 실시기간 단축방안 마련
(예 : 응시신청 후 일정기간(1개월) 이내 시험실시 의무화, 발급기간 단축 등)

☞ 항공종사자 자격시험요령(항공안전본부 고시) 개정

■ 항공조종사 운항자격 심사제도 운영개선

○ 항공기 운항조종사는 그 기량과 조종경력 등에 따라 기장과 부기장으로 구분되며, 일정자격시험을 거쳐 운항자격 부여

- 부기장 승격 및 기장 정기검사 등 일부만 항공사 소속 위촉심사관에게 위임하고
- 기장 승격시험, 기종전환 기장에 대한 운항자격 심사, 항공사 위촉심사관에 대한 위촉, 부정기심사 등은 정부소속 운항자격심사관이 실시

○ 정부 심사관(총 11명)의 심사 인력 부족 등에 의한 심사기간 지연(통상 10일 이상 지연) 등으로 항공사의 부담 초래

※ 미국(FAA), 일본(JCAB)등 선진국에서는 민간항공사 소속 조종사 중 일정자격자를 선발하여 위촉심사관으로 임명하고 이들을 활용하여 항공사가 스스로 자격심사 제도를 운영

※ 정부 심사관은 기장 승격시험 등 항공사가 처리할 수 있는 업무에 관여하는 것 보다 신규노선 심사, 사고비행 조사 등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

⇒ 정부소속 운항자격심사관이 실시하는 항공조종사 운항자격 심사를 항공사 위촉 심사관이 실시토록 전환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강구

☞ 운항자격심사업무규정(항공안전본부 훈령) 개정

■ 비행경력있는 신입조종사의 대형기 직접 배치 제한을 완화

○ 건설교통부에서는 항공기 승무원 양성시 소형기에서 대형기 순서로 양성하도록 운영('97.7.6 항공안전강화대책)

- 따라서 비행경력이 있는 신입조종사(통상 비행시간 1,000시간 이상)는 대형기(B747, B777 기종)에 직접 배치하지 못하고 소형기종 또는 중형기종에 우선 배치한 후 일정 비행경력과 교육훈련과정을 거친 후 대형기에 배치해야 함

○ 최근 국제선 대형기 도입이 증가하고 있어 대형기 부조종사 수요가 많고, 고속철도와 저가 항공사 출현으로 중소형기 부조종사 수요는 적어 대형기 부조종사 수급에 애로 발생

- '97년 이전에 중소형기를 거치지 않고 대형기에 직접 배치된 신입경력 비행사(70명)의 경우에도 운영상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음

⇒ 조종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대형기 직접 배치 제한의 합리적 완화방안 마련

※ 예 : 별도의 훈련과정 운영시에는 조종사의 중·소형기 조종시간의 단축(현재 1년)을 인정하거나 기종별 조종경력요건을 다르게 하는 등 승인기준 완화

(3) 영업활동 규제개선 및 지원

기본방향 ◆ **과도한 영업활동규제 완화**
◆ **국내항공운수·정비산업의 대외경쟁력강화 지원**

■ 항공운임 신고절차 개선

○ 국제항공노선의 운송요금(여객 · 화물)은 국가간의 항공협정에 따라 인가 또는 신고제로 운영

❍ 주요노선별 운임 인허가 제도 ('06.10월 현재)
- 운임신고제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룩셈부르크,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13개국
- 운임인가제 : 일본, 중국, 홍콩, 싱가폴, 인도, 네델란드 등

– 운임신고제 운영국가의 경우 대부분 항공운임은 항공사들이 자율 결정하고 문제 발생시에만 정부가 사후 통제

○ 우리나라는 신고제 운영노선의 경우에도 '운임신고 수리' 절차를 거치게 하여 실제 사전인가제와 동일하게 처리

※ 항공운임 · 요금 신고절차 (처리기간: 접수후 7 근무일 이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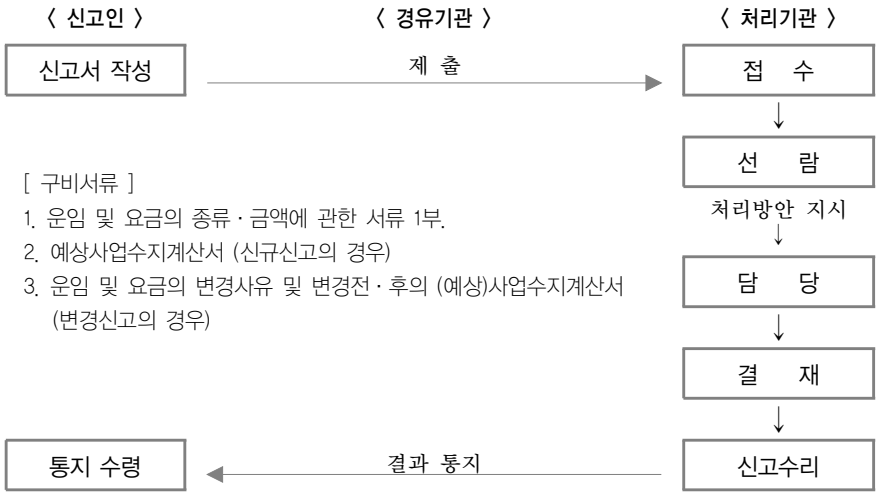

※ 미국 등 운임자율운영국가에서는 신고 후 익일부터 즉시 유효한 운임으로 인정

– 실제 신고운임과 인가운임을 동시에 제출 · 처리되고 있어 신고운임 처리가 실제인가 운임과 동일하게 처리

⇒ 신고운임 처리와 인가운임 처리를 분리 처리하고, 신고제의 취지에 맞도록 신고운임제도를 개선

☞ 항공법시행규칙 제284조 별지서식 개정

■ 일시회항 국제선 항공기의 입국절차 개선

○ 기상악화 등으로 국내의 다른 공항으로 일시 회항한 국제선 항공기가 체류시간 장기화(1박) 등으로 인해 탑승객 입국조치와 승무원 교체가 필요한 경우 발생

○ 목적지 공항이 아닌 국내의 다른 공항에 입국 조치된 승객과 교체승무원이 출국조치없이 국제선 항공기를 탑승 · 운항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확하지 않아 혼란 발생

- 항공기의 운항자격요건 변경(국제선 → 국내선)과 화물의 보세운송처리, 목적지 공항으로 이동시 출입국 처리절차, 검역처리 등에 대하여 관계부처간 처리방향이 달라 혼선 발생

⇒ 일시 회항 국제선 항공기의 경우 항공기의 운항자격요건 변경없이 계속 운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 화물의 보세운송처리, 출입국 처리절차, 검역처리 등에 대하여는 처리규정을 명확하게 마련

☞ 일시회항 국제선 항공기에 대한 부처별 처리지침 시달

■ 항공기용 원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항공기 제조 · 수리를 위하여 수입되는 항공기용 부분품은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

- 항공기용 원재료(알루미늄 판, 페인트 등)에 대해서는 관세는 면제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는 과세

○ 그러나, 항공기용 원재료는 항공기의 기능 유지 및 수리를 위해 수입하여 직접 사용하며, 항공업체는 부가세 영세율 적용업체로서 사후 전액 환급

- 부가가치세 납부 후 사후 전액 환급을 받으므로 행정력 낭비 및 업체 불편 초래

⇒ 항공기용 원재료 중 타용도로 전용이 사실상 곤란한 원재료는 항공기 부분품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면제

- 구체적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은 품목별로 검토하여 결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제8호 개정

■ 일시 수입되는 수리용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담보제공의무 폐지

○ 항공기의 수리를 위해 일시 사용되는 항공기 엔진 및 부분품이 재수출조건으로 국내 일시 반입될 경우 관세는 면제되나,

- 이 경우 일시 수입기간동안 이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

① 항공기 부분품을 수입하는 때는 관세 납부 및 담보제공의무를 면제(농특세 20% 부과)하고 있으나,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때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 어 과도한 부담

※ 항공기 엔진의 경우 1기당 담보요구액이 13억원 이상

- 항공기 부분품은 전용가능성이 없어 사후관리대상도 아닌 실정을 감안할 경우 일시 수입 사용되는 항공기 엔진 및 부분품에 대한 담보제공 의무화는 과도

⇒ 항공기 수리를 위해 재수출을 조건으로 일시 수입 사용되는 항공기 엔진 및 부분품에 대하여 담보제공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07.8월까지)

② 공휴일에 항공기 고장 등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납세보증보험증권의 발급이 곤란하여 담보 제공에 애로 발생

⇒ 항공기 수리를 위해 일시 수입 사용되는 항공기 엔진 및 부분품에 대하여는 공휴일에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후(예 : 익 영업일 이내)에 담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변경

③ 현재 신용도가 높고 관세법 위반사실이 없는 성실기업에 대해 담보제공을 생략할 수 있는 신용담보제도를 운영중

- 현재 신용담보 한도액을 전년도 납부액의 45/365 수준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성실기업의 담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신용담보 한도액을 확대할 필요

⇒ 신용담보 한도액 확대(예 : 전년도 납부액의 70/365 이상)

■ 인천국제공항의 토지사용료 산정방식 개선

○ 인천국제공항의 토지사용료는 당해 토지의 부동산가(당해년도 공시지가)의 10/100 이상을 부과하도록 운영

○ 그러나, 개별 공시지가와 사용요율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업계의 부담 증가

< 인천공항 개별공시지가 인상률 추이 >

(단위 : 원/㎡당)

구 분		2002년	2005년	비 고
민자시설유치 (임대) 지역	화물청사	18만원	39만원	+ 116%
	격 납 고	16만원	31만원	+ 94%
	국제업무단지	30만원	56.1만원	+ 87%

※ A항공사는 인천공항 항공화물터미널의 토지사용료가 인천공항이 개장한 2002년 대비 약 3배 증가

< A항공사 인천공항 토지사용료 납부 추이 >

(단위 : 억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화물청사	9.3	16.2	24.0	27.6
기 내 식	5.9	9.2	16.3	18.3
격 납 고	7.8	17.6	21.3	24.0
계	23.0	43.0	61.6	69.9

⇒ 인천국제공항 민자유치시설에 대한 토지사용료 산정방식 개선

– 토지사용료(임대료)가 매년 10%이상 인상될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상 임대료의 과도한 인상 제한규정의 취지를 감안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 과징금 부과제도의 개선

○ 정기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법을 위반하여 사업정지를 명해야 하는 경우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가능

○ 과징금 부과대상이 '~유사한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때'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자의적 해석(적용)우려 발생

❍ 사례 : 항공법 시행규칙 제297조 '별표32: 위반행위의 세부유형'

1. 나. (24)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때
2. 나. (17)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때
3. 나. (8)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때

⇒ 과징금 부과대상의 포괄적 규정은 삭제하되, 필요한 사항은 명확하게 나열
☞ 항공법시행규칙 제297조 별표32 개정

■ 인천공항의 비상복구장비 확보방안 마련

○ ICAO에서는 공항활주로내 기동불능항공기 발생에 대비해 비상복구장비(공기부양식 이동장비, 구매비용 약 4.5억원)를 확보·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권고

- 그러나, 비상복구장비는 자체 보유 뿐 아니라 인근 국가로부터 비상시 임차사용 가능토록 허용됨으로써 개별 항공사(인천공항의 경우 약 60개 항공사 취항)는 자체 구매를 기피

❍ 그 동안 (주)대한항공이 87년 구매한 장비가 국내에 있었으나, 동 장비가 내구연한(12년)이 경과하여 현재는 사용불가
❍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항공이 지역별 장비공급자로 지정되어 있으나, 도입시 3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규정상 기동불능 항공기 처리와 관련해 당해 공항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장비 및 인력 등에 관한 정보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복구책임이 원칙적으로 개별 항공사에 있음을 이유로 구매 기피

○ 공항운영자와 항공운송사업자간의 부담 회피로 사고발생시 공항운영의 정상화 지연 우려

❍ 공기분양식 이동장비는 항공사에게는 활주로내 사고 발생시 기체의 손상없이 항공기를 수평 복구시킬 수 있는 필수적인 장비이며, 공항운영자에게도 단시일내 공항 활주로 정상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장비

※ 다른 국가의 비상복구장비 확보 현황
· 공항당국 확보국가 : 24개국 35개 공항
· 항공사 확보국가 : 18개국 25개 공항 (11개 지역공급자)

⇒ 인천공항 비상복구장비 확보방안 마련

라. 향후 추진일정

○ 부처별 세부시행계획 수립 · 제출('07.1)
- 시행규칙 · 고시 등은 1개월 이내 개정 완료
- 법률 · 시행령은 2개월 이내 국무회의 심의 완료

○ 관련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 이행점검 및 평가(매월)

4. 전략과제 규제 개선방안 후속조치

집필자 : 윤병일 서기관(Tel. 2100-8797, yoonbi@opc.go.kr)

가. 개요

정부는 기업 경영활동을 제약하거나 국민생활의 불편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획기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04년부터 매년 복합 덩어리 규제개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06년말 까지 마련된 총 51개 전략과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각 부처에서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규제개혁에 있어 후속조치는 규제개혁의 마무리 단계로서 규제과제의 발굴이나 개선방안 마련 등의 중간과정도 중요하나, 규제 개선방안이 시행되어야 그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라 볼 수 있다. 규제과제 후속조치는 먼저 관련법령이 규제과제의 본래의 취지대로 정비 여부 및 그 법령정비로 인하여 실제 규제대상이었던 국민, 기업 등 수요자에게 시행(적용)되는지 여부 등을 관리하게 된다. 규제개혁 후속조치 진행절차 및 후속조치 이행현황 등은 다음과 같다.

나. 후속조치 진행절차

국무총리 주재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확정된 개선방안은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선방안에 대한 세부과제별 추진계획을 해당 부처에서 수립하게 된다. 세부과제 추진계획은 개선방안 이행을 위한 법률과 대통령령인 경우에는 개선방안 확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국무회의 심의 완료를 목표로 하고, 시행규칙 등 자체 추진이 가능한 것은 1개월 이내에 개정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게 된다.

각 부처에서 수립한 세부과제 추진계획은 규제개혁기획단과 협의를 거쳐 '규제정비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공개되어 진다. 이렇게 등록된 모든 세부과제는 추진계획에 따라 추진하되, 사회적 합의 불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부처는 추진계획 변경을 국무조정실(규제개혁기획단)에 요청하게 되고, 필요한 경우 추진계획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규제개혁기획단은 세부과제 추진계획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당초 기한내에 과제를 완료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철저한 이행관리를 하게 된다. 이를 위하여 규제개혁기획단 내 이행관리 전담부서인 이행관리팀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 이행관리팀은 전략과제별 전담 외에 부처별로도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세부과제 추진계획이 수립되면 먼저, 해당부처에서는 세부과제별로 담당부서와 책임자(국장급, 과장급)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각 부처 규제총괄부서는 자체점검체계를 구축하여 매월 추진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또한, 세부과제별 과제의 추진상황은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에 입력하게 되고, 규제개혁기획단에서는 이 시스템을 통하여 매월 추진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세부과제는 과제별로 추진기한을 설정하는 데 그 기한을 넘기는 경우에는 지연과제로 분류하고, 지연과제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 부처는 10일 이내에 지연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을 국무조정실(규제개혁기획단)에 제출한다. 국무조정실은 지연과제에 대한 지연사유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 등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하며, 그 결과에 따라 이행시한 등을 조정한다. 국무조정실에서는 지연과제의 지연사유가 부처이기주의, 업무소홀, 업무태만 등의 사유로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 책임자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게 된다.

다. 후속조치 이행현황

규제과제는 전략과제와 세부과제로 용어를 구분하는 데, 전략과제는 경제에 파급효과가 크고 다수부처가 관련된 과제를 말하며, 전략과제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과제를 세부과제라고 한다. 대략적으로 전략과제 1건당 세부과제는 평균 30건 정도다. 2006년 12월 31일 현재, 규제개혁 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확정된 전략과제 51건이고, 이에 따른 세부과제는 1,473건이다.

(1) 전략과제별 이행현황

2006년 12월 31일 현재, 전략과제는 51건으로 유사행정 규제개선 과제를 제외한 50건 중 100% 완료된 전략과제는 4건이다.

< 전략과제별 이행현황 >

구 분	과제총수	이 행 완 료 율				
		100%	99~81%	80~61%	60~41%	40%미만
건수	50	4	11	10	9	16

(2) 세부과제별 이행현황

2006년 12월 31일 현재, 전략과제(50건)에 대한 세부과제는 1,473건이며, 이중 장기검토 과제 49건을 제외한 기한설정 과제 1,422건 중 965건(67.9%)을 완료하였다.

< 세부과제별 이행현황 >

과제총수	장 기	기 한 관 리					
		계	완 료	미 완 료			
				소계	정상	지연	재설정
1,473	49	1,422 (100%)	965 (67.9%)	457 (32.1%)	145 (10.2%)	145 (10.2%)	167 (11.7%)

참고로, 세부과제별 이행완료율은 2005년 12월말(51.7%, 384/743건)에 비해 16.2%P 상승한 것이다.

(3) 부처별 이행현황

2006년 12월 31일 현재, 기한설정 과제(1,422건)에 대하여 해당부처는 재정경제부 등 40개 부처이며, 이중 세부과제를 100% 완료한 부처는 통일부 등 13개 부처이다.

라. 향후 조치계획

규제개혁기획단에서는 앞으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가 보다 원활하고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관계부처회의, 차관회의 등에 이행상황 보고 등을 통하여 부처이행을 독려 · 지원하고,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추진상황을 실시간 국민들에게 공개하며, 개선방안 확정 후 예상치 못한 장애 등으로 추진이 곤란한 과제는 현황을 파악하여 중점 관리하되, 실효성 있는 추진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참고 : 부처별 이행현황 >

(2006.12.31 현재)

부처	세부과제	장기과제	기한관리(A)	완료(B)	정상추진	지연	기한재설정	완료율(%,B/A)
재정경제부	110	4	106	33	28	36	9	31.1
교육인적자원부	44	1	43	25	13	4	1	58.1
과학기술부	28	0	28	27	0	0	1	96.4
국무조정실	9	4	5	3	1	1	0	60.0
통일부	1	0	1	1	0	0	0	100.0
외교통상부	2	0	2	2	0	0	0	100.0
법무부	22	1	21	8	5	4	4	38.1
국방부	1	0	1	1	0	0	0	100.0
행정자치부	98	10	88	58	8	2	20	65.9
문화광광부	80	1	79	62	1	7	9	78.5
농림부	75	5	70	57	1	7	5	81.4
산업자원부	98	0	98	67	16	12	3	68.4
정보통신부	93	1	92	55	4	13	20	59.8
보건복지부	73	1	72	44	0	10	18	61.1
환경부	109	1	108	70	26	2	10	64.8
노동부	87	4	83	62	9	9	3	74.7
여성가족부	2	0	2	1	1	0	0	50.0
건설교통부	204	7	197	138	9	11	39	70.1
해양수산부	69	0	69	53	2	3	11	76.8
기획예산처	11	2	9	9	0	0	0	100.0
공정거래위원회	29	0	29	19	1	6	3	65.5
금융감독위원회	54	0	54	48	1	5	0	88.9
중앙인사위원회	6	1	5	5	0	0	0	100.0
중소기업특별위원회	2	0	2	0	2	0	0	0.0
법제처	3	0	3	3	0	0	0	100.0
국세청	16	0	16	6	10	0	0	37.5
관세청	7	1	6	4	2	0	0	66.7
조달청	2	0	2	2	0	0	0	100.0
기상청	1	0	1	1	0	0	0	100.0

부처	세부과제	장기과제	기한관리(A)	완료(B)	정상추진	지연	기한재설정	완료율(%,B/A)
병무청	3	0	3	3	0	0	0	100.0
경찰청	21	4	17	9	1	3	4	52.9
소방청	19	1	18	10	2	5	1	55.6
문화재청	2	0	2	2	0	0	0	100.0
산림청	10	0	10	7	0	1	2	70.0
중소기업청	45	0	45	43	2	0	0	95.6
특허청	2	1	1	1	0	0	0	100.0
식품의약품안전청	20	1	19	16	0	2	1	84.2
해양경찰청	4	0	4	4	0	0	0	100.0
방송위원회	10	0	10	5	0	2	3	50.0
철도청	1	0	1	1	0	0	0	100.0
합 계	1,473	51	1,422	965	145	145	167	67.9

제2절 시장변화속도에 뒤쳐지는 규제 정비

1. 개 요

행정규제기본법 제20조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2006년도 개별규제정비」의 기본원칙은 규제목적이 달성되었거나 행정여건 변화로 규제의 실효성이 상실된 규제는 폐지, 지식정보화, 전자정부화, 급속한 기술발전 등 시장변화에 맞지 않는 규제의 내용 등을 완화 및 개선, 환경·안전 등 존치가 필요한 규제도 규제준수의 비용 및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규제기준 및 절차 등을 합리화 등을 설정하였다.

중점 검토대상 규제로는 시장구조가 경쟁체제로 변화되었음에도 아직 잔존하고 있는 진입제한 등 경쟁제한 규제,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부담을 주는 규제, 연령·학력·국적 등에 의한 사회참여 규제, 기술발전 등 여건변화에 뒤떨어지는 불합리한 규제기준 및 법령 미근거 규제,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및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확인이 가능한 민원서류 제출 규정, 타당성이 떨어지거나 모호한 규제기준 및 중복규제 개선 등을 설정하였다.

세부적인 개별규제정비를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정비지침」을 각 부처에 시달('06.1월)하였으며,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소관규제를 전면 재검토하여 1차로 정비대상과제(863건)를 발굴하였으며, 1차 결과에 대해 관계부처와 국무조정실 합동으로 정비대상과제를 추가 발굴·보완하여 2006년도에는 총 1,413건을 규제정비(정비율 17.6%) 대상으로 확정하였으며, 2006년도 규제개혁 평가 결과 추가 발굴과제를 포함 총1,442건(당초 1,183, 추가 259)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졌다.

2. 개별규제정비 주요 내용

① 시장구조가 경쟁체제로 변화되었음에도 아직 잔존하고 있는 과도한 진입제한 등 경쟁제한 규제 정비

▸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을 본점이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 일원(11개 구역)으로 제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6조)

⇒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을 광역화(11개→6개 구역)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영업활동을 활성화

▸ 전문 소방시설 설계, 감리등록자 만이 제연설비에 대한 설계 · 감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

⇒ 전문소방시설 설계, 감리업자 및 일반업등록자에게도 제연설비 설계 · 감리를 적용

▸ 부동산투자회사의 자금차입 및 사채발행 한도를 자본금의 2배 이내로 제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9조 등)

⇒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출석 주주의결권의 2/3이상 찬성 등)시 2배를 초과할 수 있도록 완화하여 경영의 자율성을 확대

② 사회 · 경제적 환경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과도하게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부담을 주는 규제 정비

▸ 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병역의무자(18세~35세)가 국외여행시에는 병무청장의 허가 (병역법 제70조)

⇒ 24세 이하의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허가제도 폐지

▸ 공인 민간자격 취득한 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 민간자격 관리자에게 등록 및 갱신 등록(자격기본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15조)

⇒ 자격등록 및 갱신등록제도 폐지

▸ 노인 · 장애인 등이 주로 사용하는 20km미만의 저속차량 등의 운전시에도 원동기 또는 운전면허가 필요(도로교통법 제80조)

⇒ 시속 20km 이하의 저속차량에 대한 운전면허 면제

▸ 병역 대체 근무를 하고 있는 전문연구요원의 지정업체 전직 제한기간을 최소 2년으로 규정(병역법 시행령 제85조)

⇒ 전직 제한기간을 1년 6월로 단축하여 지정업체 선택권 확대

▸ 전기공사기술자 등급변경을 위해서는 소정의 양성교육훈련을 받아야 함(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의 4)

⇒ 하위등급 기술자가 상위등급 요건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양성교육훈련 면제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도입으로 행정내부 확인이 가능하거나 인터넷 등을 활용 가능한 경우 서류제출 또는 신고의무 등을 폐지

▸ 인 · 허가 등의 경우 토지 · 건물 · 법인 등기부등본 등 서류제출

⇒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 제출 생략

*토지매수청구시 토지대장 및 토지등기증본 제출의무 폐지(개발제한구역지정 · 관리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11조)

*건설업등록신청시 법인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제출 의무 폐지(건설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2조)

▸ 병역을 미필한 병역의무자(18세~35세)의 국외여행 귀국신고 의무 (병역법 제70조)

⇒ 출입국관리시스템 공동이용 귀국여부를 확인하고 별도 귀국신고는 폐지

▸ 병역을 미필한 병역의무자가 국외여행 허가 기간을 연장받기 위해서는 재외공관 직접 방문 필요 (병역법 제70조)

⇒ 인터넷을 통해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신청이 가능토록 개선

④ 중복규제 등 타당성이 떨어지거나 모호한 규제기준 개선

▸ 방사성 비상대응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를 「원자력법」 및 「원자력시설등의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에 의거 중복검사 (원자력법 제23조의 2)

⇒ 「원자력시설등의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에 따라 1회만 실시

▸ 동일 영업자가 식품포장처리업과 식육판매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에도 개별기준에 따라 별도의 시설을 갖추어야 함(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29조)

⇒ 냉동 · 냉장시설 등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설치를 생략하여 불필요한 부담을 방지

▸ 군사시설 보호구역내에서 주택 등의 신 · 증축 허가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 부대장과 협의 필요 (군사시설보호법제10조)

⇒ 유형별 협의 이행기간을 설정하여 협의업무의 투명성 제고

▸ 건설업자의 시공능력 평가시 건설공사 실적, 재무상태, 기술능력 등을 합산 평가하나 가중치의 적정성 등이 문제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

⇒ 건설공사실적 · 재무상태 등의 적정 반영비율을 산정하는 등 시공능력의 적정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⑤ 연령, 학력, 국적 등에 의한 사회참여 차별규제 정비

▸ 초 · 중등학교 교장 및 유치원 원장의 자격인정기준으로 연령제한(만 32세 이상 62세 이하)을 규정 (교원자격검정령)

⇒ 교장 등의 자격인정기준 중 나이제한 규정 삭제(학력, 경력 등 기준은 현행 유지)

▸ 자유무역지역 입주허가 결격사유에 미성년자 포함 (자유무역지정 및 운영에관한 법률 제12조)

⇒ 미성년자도 능력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입주가 가능하도록 개선

▸ 경제자유구역내 설립되는 외국인 교육기관의 학교부지 등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 외국교육기관 학교부지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국내 교육기관과 동일하게 비과세 대상에 포함

⑥ 기술발전 등 여건변화에 뒤떨어지는 불합리한 규제기준 및 법령 미근거 규제 개선

▸ 선박의 소유자는 법인대표자 등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관할 해운관청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 (선박법 시행규칙 제10조 등)

⇒ 변경등록대상에서 법인대표자를 제외하고 전 지방청에서 변경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

▸ 전자민원 이용시에도 방문민원과 동일한 수수료 적용 (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 법률 제38조)

⇒ 전자민원 이용에 대한 수수료를 감면

▸ 특허 절차는 기간연장만 가능하여 법정기간 경과 이전에는 특허 인정여부의 결정 곤란 (특허법 제15조)

⇒ 서류제출기간을 요청에 의해 단축할 수 있도록 개선

< 2006년도 개별규제정비계획 및 결과 >

부처명	계 획	실 적	
		당초	추가
건설교통부	200	185	12
공정거래위원회	19	19	2
과학기술부	43	43	12
교육인적자원부	40	26	3
국방부	9	9	0
금융감독위원회	142	129	26
노동부	79	64	2
농림부	73	71	0
문화관광부	32	9	4

부처명	계 획	실 적	
		당초	추가
법무부	7	1	4
국가보훈처	15	11	0
보건복지부	46	29	65
방송위원회	4	4	3
산업자원부	60	49	2
여성가족부	2	0	9
외교통상부	9	4	11
재정경제부	61	48	4
정보통신부	56	52	0
통일부	7	4	0
해양수산부	70	66	10
행정자치부	26	26	6
환경부	137	122	33
경찰청	61	55	0
관세청	34	33	3
국세청	6	6	2
기상청	6	6	0
문화재청	19	19	1
소방방재청	35	24	0
병무청	5	5	0
산림청	22	17	10
식품의약품안전청	9	7	28
중소기업청	10	10	3
청소년보호위원회	2	2	0
특허청	10	10	1
해양경찰청	18	18	3
소계	1,374	1,183	259

제3절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1. 추진개요

중앙부처 차원의 적극적인 규제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아직 만족도가 높지는 않은 실정이다. 그 원인 중에는 국민과의 접점에 있는 일선 지자체의 규제개혁에 대한 불만도 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각종 규제가 집행되는 지자체의 규제개혁을 본격 추진함으로써 현장에서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실질적으로 제고하고자 하였다.

2. 규제집행절차 및 행태개선

(1) 지자체 규제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

지자체 규제개혁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국조실, 행정자치부, 관련 전문가들로「지자체 규제개혁 T/F」를 구성('06.2)하여 운영중이며,

국조실에 각 지자체별 담당관을 선정하여 지자체 규제개혁추진상황 점검, 지자체 요청사항 처리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자체를 지원하였다.

'06.6.4 민원사무처리법시행령을 개정하여 복합민원에 대한 부서합동심사제(부서합심제)를 의무화함으로써 민원을 신속히 처리토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지자체 공무원들이 체계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지자체 규제개혁 업무매뉴얼」발간하여 배포('06.7)하였다.

(2) 중앙부처의 규제개혁사항이 지자체에 신속 전달되도록 개선

중앙의 규제개혁 성과가 지방에 신속 전달 집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최근 2년간 지자체

위임법령 제·개정 목록을 지자체에 전파하여 관련 자치법규를 신속히 정비토록 조치('06.3)하였다.

또한 법령 제·개정시에 규제변동 내역 및 지자체 관련사항을 자동적으로 지자체에 통보토록 시스템화('06.2)하였다.

(3) 규제개혁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지자체 대상 규제개혁교육 대폭 확대

그간의 규제개혁 교육은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2006년에는 지방규제개혁 강화차원에서 지자체의 규제개혁 교육을 본격 추진하여 61회에 걸쳐 총 8,500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4) 지자체 등록규제 표준화 추진

지자체별로 상이한 등록규제를 표준화하기 위하여 16개 시·도 등록규제 4,519건(평균 282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공통 적용이 가능한 표준규제로 광역시는 116건, 도 61건을 선정하였다.

표준규제를 바탕으로 광역시도에서는 자체 등록규제에 대한 검토를 거쳐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5)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불합리한 규제개혁 업무실태 및 집행관행 개선을 위한 현지점검

지자체 규제개혁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기 위하여 2회에 걸쳐 16개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현지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 결과 지자체의 규제개혁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자체 규제개혁과제 발굴, 기업애로해소, 규제교육 확대 등 자발적으로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자치법규 정비 지연, 폐지된 규제의 관행적 집행 등 일부 사례가 지적되었다. 앞으로 점검결과를 정부합동평가시 지자체 규제개혁 평가에 반영하여 지자체 규제개혁이 더욱 강력히 추진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6) 지자체 건의과제 등 적극 처리

'06년 전라남도 등 지자체 및 지역 상공단체로부터 총 141건의 규제개혁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64건을 개선(수용율 45%)하는 등 수요자 위주의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하였다.

3. 성과

'06년 지자체 규제개혁을 본격 추진한 결과, 지자체의 규제개혁에 대한 인식과 노력이 상당히 제고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지자체 규제개혁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고 중앙부처-지자체간 체계적인 협조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향후 계획

< 중점추진방향 >

❍ 지자체의 규제개혁 인식이 제고됨에 따라 광역자치단체 중심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자체의 자율적 · 지속적 규제개혁에 대해 지원 협력 강화해야 할 것임.

(1) 지자체 공무원의 규제업무에 대한 인식 및 전문성을 제고

지자체에 대한 규제개혁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규제개혁에 대한 전문성 및 실무역량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국조실은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가 담당토록 함으로써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교육내용도 지자체의 교육수요를 반영하여 규제업무실무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교육의 현장성을 강화하고 규제개혁 추진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기 위한 워크샵도 상 · 하반기 각 1회씩 개최할 계획이다.

(2) 불합리한 규제집행 관행 및 행태개선 지속 추진

불합리한 규제개혁 업무실태 및 집행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자체 규제개혁 이행실태를 정기 점검(상·하반기 각 1회)하되 국조실은 주로 광역자치단체에 대해서만 점검토록 하고,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점검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복합민원 부서합심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3) 지자체 등록규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

광역자치단체 규제표준모델을 지자체에 보급하여 일제 정비를 추진하되 표준규제에 대하여는 지자체별로 규제를 등록하고 표준규제에 해당되지 않는 나머지 규제에 대하여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 정비하도록 하고

정비결과를 지자체별 웹사이트에 On-line 공개함으로써 주민이 손쉽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4) 중앙부처·지자체간 협조체계 강화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규제변동사항을 분기별로 파악하여 지자체에 전달함으로써 자치법규의 신속한 정비를 촉진하고 지자체의 규제심사 지원 요청시 국무조정실에서 심사방향 등 협조 지원할 예정이다.

(5) 지역차원의 규제개혁 건의사항 적극 수렴 및 처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상공인의 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폭넓게 수렴하여 제도개선 추진하고 일선 지자체의 규제 관련 건의과제를 중앙부처 규제정비로 환류함으로써 규제의 적실성 제고하고 건의과제에 대한 부처 의견 수렴을 거쳐 검토·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참고>

지자체 규제 표준모델 개발 관련 참고자료

1. 현행 시도별 등록규제 현황

○ 규제는 총 4,519건으로 평균 282건이나, 지역별 차이가 큰 실정

서울 325, 부산 416, 대구 282, 인천 354, 광주 508, 대전 353, 울산 232, 경기 117, 강원 401, 충북 349, 충남 193, 전북 218, 전남 20, 경북 190, 경남 369, 제주 192

2. 규제표준모델 적용 기준

① 표준규제 등록
○ 여러 지자체에 등록된 규제로서 전 지자체에 적용이 가능한 규제
○ 상위법 위임에 따라 조례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는 규제

② 규제 폐지
○ 상위법 위임근거가 없거나 상위법이 폐지된 규제
○ 행정서비스에 대한 댓가로서 부과하는 수수료, 점·사용료 등

③ 규제는 존치하되, 표준규제 제외
○ 성격상 일부 지자체에만 적용되는 규제 등

3. 유형별 표준규제 현황

유 형	표 준 규 제		유 형	표 준 규 제	
	시	도		시	도
건설	1	1	환경	12	6
주택 · 건축	24	13	문화공보	16	16
토지 · 지적	3	2	운송물류	7	3
보건 · 위생	3	3	해운항만	1	1
국토도시개발	22	1	소방민방위	5	4
수산	5	2	사회복지	1	1
수자원	2	1	체육청소년	1	–
경찰 · 교통	10	4	총 계	116	61
에너지	3	3			

제4절 규제개혁 건의과제 수렴 · 개선

1. 개요

각종규제로 인한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의 불편해소와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한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개혁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중심의 규제개혁 등으로 인하여 일부에서는 여전히 핵심적인 규제 정비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도 여전하여 기업과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규제개혁 체감도는 높지 못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경제 활성화와 국민 · 기업의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하여 수요자 ·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기로 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규제개혁 건의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경제5단체로부터 주기적으로 건의과제를 수렴하여 이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기업애로의 원스톱처리를 위해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국민들의 규제애로 및 규제관련 건의사항을 제안받아 처리하는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핵심 · 덩어리규제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한 국민제안 현상공모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일반국민 · 기업들의 규제개혁 건의과제를 총 망라하여 제안 받아 규제개혁기획단의 전략과제 및 각 부처별 개별추진과제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2. 경제단체 건의과제

집필자 : 양찬희 사무관(Tel. 2100-2423, ych2002@opc.go.kr)

(1) 건의 개요

규제개혁위원회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경제5단체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2000년부처 17차례에 걸쳐 1,093건의 규제개혁 건의과제를 접수하여 이 가운데 543건(49.7%)을 개선하였다.

2006년에는 4월과 11월에 총 179건의 과제를 접수하였고 이 중 74건(41.3%)을 개선하였다.

(2) '06.4월 건의과제 처리 경위 및 결과

(가) 1차 검토

총 94건의 건의과제 중 1차로 67건에 대해 34건(51%)을 개선하였다.

건의내용	소관	검토결과
Ⅰ. 공장입지 부문		
Ⅰ-1. 자연보전지역 공장부지증설 제한 완화	건설교통부	수용곤란
Ⅰ-2. 자연보전지역내 증설허용부지면적에서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제외	건설교통부	수용곤란
Ⅰ-4. 농공단지의 건폐율 상향 조정	건설교통부	수용곤란
Ⅰ-5. 모호한 산지전용 규정 개선	산림청	일부수용
Ⅰ-6. 농림지역내 농산물 가공처리시설 증축 허용	건설교통부	일부수용
Ⅰ-7. 수도권 공장이전을 위한 개발허가제한구역 지정 해제	〃	수용곤란
Ⅰ-8. 기업의 연구소 신축에 따른 과밀부담금 납부 개선	〃	장기검토
Ⅰ-9. 공장밀집지역 공업지역 지정	〃	수용
Ⅰ-10. 국가산업단지 내 녹지비율 제한 개선	〃	수용
Ⅰ-11. 도시계획 조정시 토지용도 변경	〃	수용
Ⅰ-12. 기존 공장용지에 대한 자연녹지 지정 해제	〃	수용곤란
Ⅱ. 주택·건설 부문		
Ⅱ-1. 장기계속공사 계약제도 개선	기획예산처	수용곤란
Ⅱ-2. 실적공사비 적산제도의 합리적 시행	건설교통부	일부수용
Ⅱ-3. 기반시설부담금제도 적용 완화	〃	수용
Ⅱ-4. 재건축사업의 소형평형 의무건설 규제 완화	〃	장기검토
Ⅱ-6. BTL 사업의 민간제안 허용	기획예산처	수용곤란
Ⅱ-7. 소규모 BTL사업의 운영사 제외	〃	수용곤란
Ⅱ-8. BTO 등 민자사업의 최소자기자본비율 완화	〃	장기검토
Ⅱ-11. 건설공제조합 건설공사손해공제 취급 허용	건설교통부	장기검토
Ⅱ-12. 공동주택의 명칭변경 금지	〃	수용곤란

건의내용	소관	검토결과
Ⅱ-13.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매도청구제 개선	〃	일부수용
Ⅱ-14. 주택사업 추진지역의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지양	건설교통부	수용곤란
Ⅱ-16. 분양가상한제 적용택지의 금융비용 보전	〃	수용곤란
Ⅱ-17. 정비사업의 시공보증제도 개선	〃	수용
Ⅱ-18.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선	〃	수용
Ⅱ-20. 재건축 결의요건 완화	〃	수용곤란
Ⅱ-21. 단독주택재건축사업 일반분양분 입주자모집 시기 조정	〃	수용곤란
Ⅱ-24. 분양보증수수료 산정방식 개선	〃	일부수용
Ⅱ-25. 주택사업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	행정자치부	수용곤란
Ⅱ-26. 자연경관영향협의제도 개선	환경부	일부수용
Ⅱ-27. 도시가스공급자에 대한 주택단지 내 간선시설 설치비용 부담의무 해소	건설교통부	일부수용
Ⅲ. 공정거래 및 금융 부문		
Ⅲ-1. 기업도시 사업시행자의 자기자본 및 투자자금 20% 이상 확보시점 연기	건설교통부	수용곤란
Ⅲ-2. 외부회계감사법인 대상기준 상향조정	재정경제부	중장기검토
Ⅲ-3. 공개법인과 비공개법인 합병관련 등록기간 단축	〃	수용
Ⅲ-4. 천연가스 특별소비세 면제와 수입부과금 인상계획 재고	산업자원부	수용곤란
Ⅲ-5. 우수 중소·벤처기업의 육성을 저해하는 신용평가제도 개선	재정경제부	기수용
Ⅲ-6.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등 지원활성화 촉구	중소기업청	일부수용
Ⅲ-7. 수입부가세 납부 유예제도 도입	재정경제부	수용곤란
Ⅲ-8. 관세법 중 첨단 제품 품목분류오류 가산세 제외 신설	재정경제부	수용곤란
Ⅴ. 노동·안전 부문		
Ⅴ-2. 보훈대상자 고용명령에 대한 애로사항 개선	국가보훈처	일부수용
Ⅴ-3. 고충처리위원 임명의무조항 폐지	노동부	일부수용
Ⅴ-4. 노조규약의 법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제도 도입	〃	일부수용
Ⅴ-5. 중소기업의 의무고용기준 완화	노동부 산업자원부	일부수용 수용곤란
Ⅴ-9. 비상근근로자의 건강보험의무가입에 따른 기업부담가중 개선	보건복지부	수용곤란
Ⅵ. 유통·물류 부문		
Ⅵ-1. 화물운수종사자 자격증명 관련 규제 완화	〃	수용
Ⅵ-3. 모듈트레일러 등록 허용	〃	장기검토
Ⅵ-4. 화물운송 위·수탁증 교부의무제도 개선	〃	수용곤란

건의내용	소관	검토결과
Ⅵ-5. 차량 대차 제한 완화	〃	수용곤란
Ⅵ-6. 사업용 화물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산정 방식 변경	환경부	기수용
Ⅵ-7. 제한차량 운행허가 규제 완화	건설교통부	수용
Ⅵ-8. 대형구조물 운송관련 규제완화	〃	수용곤란
Ⅶ. 환경 부문		
Ⅶ-1. 생활소음 규제기준 중 「낮」 시간범위 조정	환경부	수용
Ⅶ-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상 '소각능력'의 해석기준 명확화	〃	기수용
Ⅶ-3. TMS(굴뚝자동감시체계) 설치 및 운영비용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부담 완화	〃	일부수용
Ⅶ-4. 배출허용기준 초과의 판단기준(순간농도 기준)을 일평균으로 변경	〃	수용곤란
Ⅶ-7. 상수원보호구역내 일정 시설의 설치 허용	〃	수용곤란
Ⅶ-8.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보류	〃	장기검토
Ⅶ-10. 질소배출업체에 대한 기준강화 유예	〃	일부수용
Ⅶ-12. 보일러 먼지 배출허용기준 동일화	〃	수용
Ⅶ-13. 환경, 안전관련 감독기관과 조사 일원화	〃	기수용
Ⅶ-15.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토양오염검사 정비	〃	수용곤란
Ⅶ-16. 대기 방지시설에 적산전력계 설치기한 연기	〃	수용
Ⅶ-18. 행정기관의 폐기물 관리체계 일원화	〃	장기검토
Ⅶ-20. 폐기물 보관기간의 합리화	〃	수용
Ⅶ-23. 종이기저귀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	〃	일부수용
Ⅶ-24. 중소기업의 대기 기술자격소지자 고용의무 개선	〃	기수용
Ⅶ-26. 중소기업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적용 제외	소방방재청	일부수용

(나) 2차 검토

규제개혁기획단 전략과제와 관련된 27건에 대한 검토결과 15건(56%)을 개선하였다.

건의 내용	소관	검토결과
1. 민자도로의 통행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재정경제부	수용곤란
2.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의 취·등록세 면제	행정자치부	수용곤란
3. 노동부 감독대상 선정 차등적용	노동부	수용곤란
4. 타워크레인 임대업의 안전보건기준 완화	노동부	일부수용
5. 재해율 산정대상 재해범위 조정	노동부	일부수용
6.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검토자격자 확대	노동부	수용곤란
7. 화장품 병행수입 규제 완화	보건복지부	수용곤란
8. 제조관련 안전관리 검사 및 교육제도의 개선	산업자원부 환경부 노동부	수용 기수용 일부수용
9. 중소기업 의무보수교육의 개선	환경부	일부수용
10. 유독물 신고제도 개선	환경부	일부수용
11. '저소음건설기계의 사용'의 행정처분의 유보	환경부	일부수용
12. 환경관련 레포트 제출요구 완화	환경부	수용
13.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의 누출검사 완화	환경부	일부수용
14. 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기준 개선	환경부	수정수용
15.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부과 개선	환경부	수용곤란
16. 건설폐기물 보관 및 수거체계 개선	환경부	기수용
17. 재활용 의무 이행 방법 개선	환경부	수용
18. 건설폐기물 재활용 신고 및 처리업 허가	환경부	일부수용
19. 산업폐기물의 배출기준 및 처리관련 규제개선	환경부	일부수용
20. 1만㎡미만 소규모 공장설립관련 규제완화	환경부	수용곤란
21. 주택분양보증 취급기관 다양화	건설교통부	장기검토
22. 택지개발사업의 농지전용협의 시기 조정	건설교통부	장기검토
23. 국민주택기금 이자율 인하	건설교통부	일부수용
24. 재건축조합 시공자 선정시기 조정	건설교통부	수용곤란
25. 입주금중 잔금납부방법 개선	건설교통부	수용곤란
26. 기업도시 관련 출자총액제한 적용제외 범위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수용
27. 개별법에 의한 SOC 민간투자사업 시행 법인의 출자총액제한 적용 제외	공정거래위원회	수용곤란

(3) '06.11월 건의과제 처리 경위 및 결과

총 85건의 건의과제 중 25건(29.4%)을 개선하였다.

건의내용	소관	검토결과
Ⅰ. 세제 · 금융 부문		
1) 설비투자 활성화를 위한 리스기준 개선	재정경제부	수용곤란
2)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시기와 방법 개선	재정경제부	수용곤란
3) SOC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재정경제부	일부수용
4) 연결납세제도의 도입	재정경제부	중장기검토
5) 국내 제작 곤란한 설비 및 기술 도입시 관세감면 확대	관세청	수용곤란
6) 상속세 할증과세 폐지	재정경제부	수용곤란
7) 가업상속지원제도 실효성 제고	재정경제부	수용곤란
8) 임시 공사현장 사무실에 대한 취득세 폐지	행정자치부	수용곤란
9) 유류세 및 환경개선비용부담금 개선	재정경제부 환경부 기획예산처	수용곤란
10) SOC민간투자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재정경제부	수용곤란
Ⅱ. 대기업 · 공정거래 부문		
1) 조건 없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폐지	공정거래위원회	일부수용
2) 임원별 보수내역 공개 재검토	재정경제부	중장기검토
3) 준법감시 시스템 도입 기업에 대한 양벌조항 적용제외 특칙 도입	법무부	중장기검토
4) 준재판상 경영판단존중원칙 마련	법무부	중장기검토
5) 주총관련 정기적 등기의무의 변동시 등기의무제 변환	법무부	중장기검토
6) 법령상의 남소유발조항 정비	법무부 재정경제부	일부수용
7) 지배구조 모범기업 다양화	공정거래위원회	수용곤란
8) 내부거래위원회 및 후보추천위원회 기준 완화	공정거래위원회	일부수용
9) 소유지배괴리도 기준 완화	공정거래위원회	수용곤란
10) 소유지분에 간접지분 포함	공정거래위원회	수용곤란
11) 소유지분에 비영리 법인(재단 등) 지분 포함	공정거래위원회	수용곤란
12) 외국인투자기업 예외인정 기간 폐지	공정거래위원회	중장기검토
13) 특수목적회사(SPC)에 대한 출자의 예외인정	공정거래위원회	중장기검토
14) 지주회사 지분율 요건 완화	공정거래위원회	기수용

건의내용	소관	검토결과
15) 지주회사 전환 기준 개선	공정거래위원회	수용곤란
16) 자회사 주식 소유비율 산정제도 개선	공정거래위원회	중장기검토
Ⅲ. 공장입지 부문		
1) 과밀억제지역내 기존공장의 신·증설 제한 완화	산업자원부	수용곤란
2) 과밀억제지역에서 성장관리지역으로의 공장이전 허용업종 확대	산업자원부	수용곤란
3) 성장관리지역내 공장증설 허용업종 확대	산업자원부	수용곤란
4)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기업 입주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허용	재정경제부	중장기검토
5) 대형세탁업의 산업단지 입주 허용	산업자원부	수용
Ⅳ. 노동·안전 부문		
1) 고용·산재보험 부담완화	노동부	일부수용
2)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도입절차 완화	노동부	수용곤란
3) 고용허가제 제도 보완	노동부	일부수용
4)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 산출시 해상직 근로자 제외	노동부	수용곤란
5) 장애인 고용관련 수상운송업의 적용제외율 제고	노동부	중장기검토
6) 중량물 취급작업시 작업계획서 작성항목 간소화	노동부	수용
7)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감독제도 개선	노동부	일부수용
8) 선박의 본선용 사다리식 통로에 대한 안전기준 적용 제외	노동부	수용곤란
9) 소규모 제작차에 대한 안전시험 면제	건설교통부	수용곤란
10)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변경	노동부	수용곤란
11) 육아휴직 장려금 및 대체인력 채용장려금 제도 개선	노동부	일부수용
12) 육아휴직 장려금 상향조정 및 산전후 휴가급여 전액지원	노동부	중장기검토
13) 유기비료 생산업체에 대한 소독설비 설치의무 면제	농림부	중장기검토
14) 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의무교육면제 현행 유지	노동부 산업자원부	중장기검토
15) 프레스·리프트 정기검사 면제 현행 유지	노동부 산업자원부	중장기검토
16)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의무면제 현행 유지	노동부 산업자원부	중장기검토
17) 산재요양자의 부당이득금 사업주에게 부과 배제	노동부 보건복지부	수용
Ⅴ. 주택·건설 부문		
1) 대기업과 중소건설업체 및 지역건설업체간 공동도급 활성화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일부수용
2) 지방 주택수요 진작을 위한 주택관련 규제 개선	건설교통부	일부수용

건의내용	소관	검토결과
3) 건설업체 중복처벌 개선	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일부수용
4) 주택성능등급 표시대상 주택규모 완화	건설교통부	수용곤란
5) 국민주택기금 융자지원 확대	건설교통부	수용곤란
6) 일반건설업자간 하도급제한 규정 개정	건설교통부	수용곤란
7) 주택건설 사업용 농지취득 규제 완화	농림부	일부수용
8) 시공보증자 등의 사용검사 신청사유 확대	건설교통부	수용곤란
9) 공장기능 상실된 준공업지역 개발 활성화	건설교통부	중장기검토
10) 제안비용 보상 확대	기획예산처 건설교통부	중장기검토
11) 기업도시 내 주택의 1세대 1주택 특례 허용	재정경제부	수용곤란
12) 기업도시 내 도로 · 상하수도 등 광역기반시설 설치 지원	건설교통부	일부수용
13) 기업도시 지방세 감면에 대한 공통기준 수립 요망	건설교통부	일부수용
14) 택지개발지구의 공동주택용지 분양조건 개선	건설교통부	수용곤란
15) 도시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지취득 규제 완화	건설교통부 농림부	수용
16)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수용요건 완화	건설교통부	수용
17) 건축물의 높이 제한시 공원범위 완화	건설교통부	수용
18) 하자보수소송시 법원하자감정 관련제도 개선	건설교통부	수용곤란
19) 공동주택 층높이 기준척도 개선	건설교통부	수용곤란
20) 관리지역내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률 완화	건설교통부	수용
21) 개발행위허가 대상 주택건설사업 규모 확대	건설교통부	수용곤란
22) 주택사업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 부담 완화	행정자치부	수용곤란
23) 도시개발사업 민간시행자의 임대주택용지 공급비율 적용 완화	건설교통부	수용곤란
24)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주거용지비율 완화	건설교통부	수용곤란
25)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 완화	금융감독위원회	수용곤란
26) 대지조성 등록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개선	건설교통부	일부수용
27) 특수목적회사(SPC)의 주택건설실적 산정 규정 마련	건설교통부	수용곤란
28) 소방공사 감리원 배치기준 개선	소방방재청	수용
29) 주택후분양제 적용대상 확대 및 조기시행 철회	건설교통부	수용곤란
30) 사설화장장 등을 기반시설에서 제외	건설교통부	중장기검토
Ⅵ. 유통 · 물류 부문		
1) 불평등 계약조건 개선	조달청	수용

건의내용	소관	검토결과
2) 수입쌀 배정업무 이원화	농림부	수용곤란
Ⅶ. 관광 부문		
1) 관광호텔의 재산세 가산율 적용폐지	행정자치부	수용곤란
2) 대도시 관광호텔의 교통유발부담금 폐지	건설교통부	중장기검토
3) 관광호텔산업 부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적용	행정자치부	수용곤란
Ⅷ. 환경 부문		
1) 환경관리비 관련 규정 개선	건설교통부	수용곤란
2) 환경분쟁 조정시 보상금 지급의 제도적 근거 개선	환경부	수용곤란

3. 국민제안 공모

집필자 : 차은철 사무관(Tel. 2100-8755, aja2940@opc.go.kr)

가. 추진배경

규제개혁기획단에서는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고 수요자 중심의 과제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굴하여 참여정부 복합덩어리 규제 개혁의 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04년, '05년에 이어 '06에도 규제개혁과제 국민제안 공모를 실시하였다.

경제인, 전문가, 학생, 시민단체, 공무원(특히 지방공무원) 등 나이 · 직업 · 성별, 개인 및 단체, 외국인 등을 불문하고 불합리하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로서 경제활동을 제약하거나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형식에 구애없이 제안토록 하였다.

나. 공모 현황

2006년 1.16~2.28까지 실시된 규제개혁과제 국민제안 공모에서는 총 874건의 국민제안이 접수되었으며, 이 가운데 기본요건 검토 결과 정책제안이나 단순 민원성을 제외한 규제개혁과제는 462건이었다.

다. 공모 심사

심사기준은 창의성, 완성도, 적정성(개선 필요성 · 시의성), 실현가능성, 기대효과(파급효과, 시간 · 비용절감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심사위원은 기획단의 민간전문위원 16인으로 예비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규제개혁 과제 462건을 대상으로 137건을 선정하였으며, 1단계로 선정된 137건에 대해 부처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토대로 39건을 본심사(위원 : 기획단내 과장급, 민간전문위원) 대상으로 상정 하였다.

본 심사에서는 전문성과 경력 등을 고려한 경제계 2인, 규제전문가 2인, 규제개혁기획단 및 조정관실 국장 3인 등 8인으로 구성된 「국민제안심사위원회」(위원장 : 규제개혁기획단장)에서 본 심사에 상정된 39건에 대해 개별위원별로 부여한 점수를 합산 평균하여 21건을 선정하고, 관련부처의 검토의견 등을 토대로 과제의 해결 가능성, 유사 제안사례 여부 등을 검증 후 최종 수상제안 16건을 결정하였다.

라. 공모 심사결과

최우수상 1개, 우수상 5개, 장려상 10개 등 총 16개 과제를 우수제안으로 선정하였으며, 수상자에 대하여는 상장 및 상금(최우수상 3백만원, 우수상 각 1백만원, 장려상 각 5십만원)을 수여하였다.

ㅇ 최우수상(1)
- 실업계고교의 현장실습시스템 개선 및 산업체간 협력 기능인력 확보

ㅇ 우수상(5)
- 민방위 교육통지서 등기우편, 이메일 등 전달방법 다양화
-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 하반기 실시 및 졸업예정자 자격부여
- 해외규격 인증사업의 지원기준 개선(기술품질에 대한 평가비중 확대 등)
- 군사시설보호구역내 건축행위시 관할 군부대의 사전협의 대상 구체화
- 비산먼지발생 사업신고와 특정공사 사전신고의 중복민원 통합처리

ㅇ 장려상(10)
- 건설현장 임목폐기물 처리시 전문처리업자의 이동식 임목파쇄기 이용 허용
- 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황열)를 접종기관에서 일괄 발급토록 개선

- 인터넷사이트 회원가입 · 탈퇴 약관을 이용한 불공정 거래행위 방지
- 방위산업체 (동원)자원 중복조사 관련 주관부서 지정으로 업체부담 경감
- 인피 교통사고 조사 처리과정의 절차 간소화
- 수출신고 정정 신청시 제출서류 간소화
- 철강재 설치업과 강구조물 공사업간 재하도급 문제 개선
- 의료기관 개설 허가(신고)사항의 변경허가(신고) 대상 중 간호사 제외
- 전국 어디서나(읍 · 면 · 동) 전입신고 가능토록 개선
- 학교환경위생 상대정화구역 지정기준 개선

마. 후속조치

선정된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기획단의 전략과제 또는 부처의 개별 정비과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우수제안을 포함한 133건을 관계부처에 송부하여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하였다.

4. 규제신고센터 운영

집필자 : 최성규 사무관 (Tel. 2100-2431, skyu@opc.go.kr)

가. 개요

정부는 1998년 규제개혁위원회 출범과 함께 규제개혁과제의 선정과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규제신고센터를 설치하여 국민이나 기업들로부터 인터넷 · 전화신고 · 방문접수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규제개혁관련 제안사항을 접수하여 왔다.

그러나 기업의 경우, 현장에서 발생하는 개별적인 기업애로를 파악하여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규제개혁을 통해 법과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해도 소극적인 법 적용이나 행정편의 위주의 집행으로 그 효과를 떨어뜨리는 사례가 많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4년 4월 기업규제 관련 애로사항을 전담 처리하는 기업애로해소센터를 설치하고 접수된 민원을 소관부처에 이첩하지 않고 센터에서 직접 검토 및 관련기관 협의, 현장확인 등을 거쳐 해결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애로해소센터의 처리방식이 국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게 되자 2006년 3월에는 그간 각각 운영되어왔던 규제신고센터와 기업애로해소센터를 규제신고센터로 통폐합하여 일반국민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모두 처리토록 하되 조직과 민원처리방식은 기업애로해소센터의 것을 유지토록 하였다.

< 행정규제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 제출방법 >

- 우 편 : 서울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308호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 방 문 : 규제신고센터(서울 종로구 수송동 146-1 이마빌딩 308호)
- 전 화 : 02-722 - 9797, 02-2100 - 2431
- ＦＡＸ : 02-2100-8872, 인터넷 : http://www.rrc.go.kr

나. 규제신고 처리상황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신고센터, 기업애로해소센터 등 민원수렴 창구를 통하여 1998년부터 2005년까지 8년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총 10,855건의 규제개혁제안을 접수하였다. 그중 인터넷접수가 5,650건(49.7%)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우편(29%), 전화(8.5%), 팩스(7.2%), 방문접수(5.6%) 순이었으며, 특히 2006년의 경우 인터넷 접수가 전체건수의 59%를 차지하는 등 인터넷 국민제안 비율이 갈수록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 접수방법별 규제개혁 제안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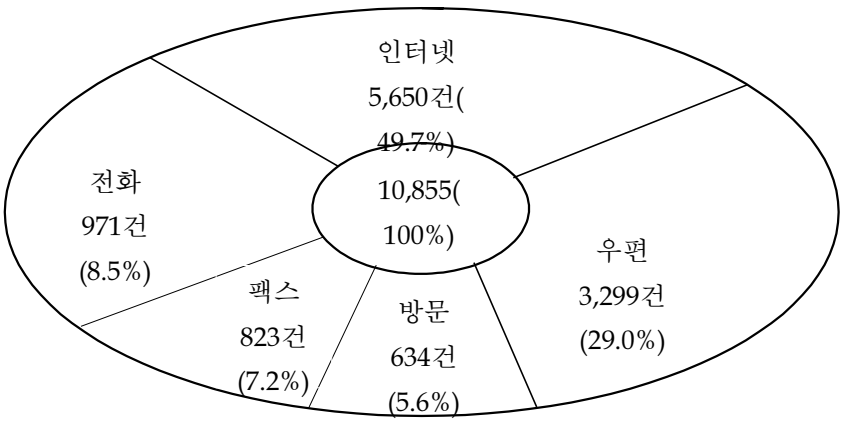

2006년도에 규제신고센터로 접수된 규제개혁 관련 건의사항은 522건으로서 그중 501건에 대하여 처리를 완료하고 21건은 처리중에 있다. 처리완료된 501건 중 61.5%에 해당되는 308건은 실질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규제개혁 의제로 채택하기에는 현실성이 부족하거나 제도로서 일반화하기 어려운 193건은 정책참고사항으로 관리하고 있다.

< 규제신고 처리실적(2006) >

접수건수	완 료			추진중	해소율
	계	해 소	정책참고		
522	501	308	193	21	61.5%

규제개혁 건의사항이 반영되어 신고자의 애로사항이 해소된 308건중 60%에 해당되는 185건은 법령 또는 제도개선으로, 19%에 해당되는 57건은 집행기관의 규제집행에 대한 시정으로 이어졌으며 나머지 21%에 해당되는 66건은 단순 질의나 동일민원 성격의 건의사항으로서 상담창구에서 즉결 처리하였다.

< 규제신고사항의 해소유형('06.1~12월) >

구 분	계	법 · 제도개선	집행개선	기타
건 수	308	185	57	66
비 율	100%	60%	19%	21%

규제신고사항을 소관 부처별로 보면 건설교통부, 환경부, 재정경제부 소관사항이 약 50%를 차지하고 있어 국민생활과 밀접하거나 국민의 관심이 많은 분야에 대한 의견수렴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규제신고사항의 소관 부처별 분포('06.1~12월) >

구 분	합 계	건설교통부	환경부	재정경제부	노동부	지방자치단체	식품의약품안전청	기 타
건 수	522	188	43	22	17	12	8	232
비 율	100%	36%	8%	4%	3%	2%	2%	44%

규제신고사항은 일반 민원과 달리 처리기간을 정하지 않고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신고사항은 각 처리담당관들이 민원인의 입장에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지속적으로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민원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2006년도 신고건수의 76% 정도는 30일 이내에 처리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규제신고사항의 처리기간 분석 ('06.1~12월) >

구 분	합계	7일이내	30일이내	30일이상
건 수	501	125	261	115
비 율	100%	25%	52%	23%

다. 평가 및 향후계획

2004년 4월 기업애로해소센터 설치 이후 현재의 규제신고센터에 이르기까지 3년간 총 1,539건을 접수하여 1,518건을 처리하면서 60% 이상의 민원 해소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어 규제신고센터의 기능이 정부내에서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 관련 의견수렴 및 해결 창구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 규제신고 처리실적(2006) >

연도	접수건수	처리완료			추진중	해소율 (%)
		계	해소	정책참고		
계	1,539	1,518	919	599	21	60.5
2004년	307	307	185	122	–	60.2
2005년	710	710	426	284	–	60.0
2006.12월	522	501	308	193	21	61.5

앞으로도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규제개혁 제안제도에 대한 홍보를 한층 강화하고, 규제신고센터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보다 내실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기업애로 해결사례

■골리앗 크레인 증설 관련 고도제한 완화 건의

(가) 건의요지

현대삼호중공업에서 규제신고센터에 조선 호황기에 선박 수주량을 늘리고, 고부가 가치선(LNG선등) 건조를 위하여 높이 107m 골리앗 크레인을 증설코자 하나, 군용항공기지법상 고도 제한(45m)으로 불가능

- 현대삼호중공업(전남 영암) : 연간 매출액(2조3천억), 건조능력(26~30척), 종업원수(9,000명), 세계5위 조선전문기업

➲ 골리앗 크레인의 증설이 가능하도록 고도제한 완화 건의

(나) 관계기관 입장

《 국방부 》

○ 군용항공기지법에 저촉되므로 설치를 허가할 수 없으며, 법령개정은 비행 안전에 위험이 증대하게 되므로 수용 곤란

- 다만, 목포공항 기지를 무안공항('07년 개항예정)으로 이전하기로 할 경우, 재검토 가능

《 전라남도 · 산업자원부 》

○ 현대삼호중공업의 건의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국방부와 전라남도가 합동으로 구성한 「비행안전검증자문회의」에서 조사한 결과, 인근에 134m 갈마산이 있고, '94년 골리앗 크레인 3기(115m 2기, 90m 1기)가 이미 설치되어 운영중이며 골리앗 크레인의 증설에 따른 비행안전 위험이 크게 증대되지 않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므로 고도제한을 완화하는데 큰 문제없음.

- 목포공항 규제 완화로 주변 대불산단 · 삼호산단, 목포신항 등 기업들의 대형 크레인 설치 및 고층 시설물 신 · 증축 가능→서남권의 획기적인 발전 계기
- 규제완화지역 입주기업(53개)이 향후 5년간 1조5천억을 투자할 것으로 예상되며, 5년 후 연 5조원 매출, 18,500여명 고용 창출 등 기대(전남도 추정)

(다) 해소방안

○ 2006년 8월부터 10여 차례 관계기관(국방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전라남도 등) 회의를 개최하여 목포공항 주변의 고도 제한을 완화하기로 관계 기관간 합의 도출

- 국방부 : 現 지원항공작전기지인 목포공항을 헬기전용기지겸 비상활주로로 기지의 종류를 변경하여 현대삼호중공업(주) 등 목포공항 주변 기업에 대한 고도 제한 완화
- 건설교통부 : 무안공항에 해군 고정익 비행기 1~2대의 이용 동의

☞ 국방부에서 「군용항공기지법 시행령」 개정 공포(2007.4월)

■해양경찰공무원 채용자격 규제완화 건의

(가) 건의요지

전문대학졸업자로서 국제통역가이드 자격을 취득하여 외국어통역가이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해양경찰공무원에 응시하려고 하였으나, 채용공고에서 일반공채 분야는 교육법에 의한 고교졸업이상 자격이면 가능한데 외국어분야(특채)에는 4년제 대학졸업 이상을 정하고 있어 불합리

➲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전문대학졸업생도 응시할 수 있도록 개정 건의

(나) 관계기관 입장

《 행정자치부 · 경찰청 》

○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34조 제5항에 의하면 시행령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학사학위 소지자를 경위이하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국가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법에 의하면, '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임용할 경우에는 특별채용 할 수 있다' 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시행규칙상의 학력제한은 재검토의 여지가 있음

(다) 해소방안

○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제한의 수준이 법령에서 정한 내용보다 강화됨으로써 학력에 따른 자격제한이 신설되는 결과를 초래한 경우로서 이는 마땅히 시정되어야 함.

☞ 관련부처에서 민원인의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관계 시행규칙 개정

■영유아보육시설인가지침 관련 규제완화건의

(가) 건의요지

「영유아보육법」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5조2항에 의하면 보육시설의 인가시는 설치기준 및 보육수요를 확인한 후 인가토록 하여야 함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가처리지침을 작성하면서 법령에 위임의 없는 거리제한(직선거리 150m) 규제

➲ 지자체 영유아보육시설인허가 지침 개정 건의

(나) 관계기관 입장

《 관련 지방자치단체 》

○「영유아보육법」 제11조제1항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육시설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지침을 제정, 시행함

(다) 해소방안

○「영유아보육법」의 취지는 지역의 보육대상 아동수, 지역 보육시설의 정원 및 현원 현황, 현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시설 현황(예:2층 이상 보육시설 중 비상재해대비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등에 대한 보육실태조사 및 보육시설이 없는 취약지역 등 지역적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유아보육법령 및 지침에서 정한 기준 범위내에서 지역별 자체 기준을 마련토록 한 것임.

○그러나, 해당 법령에서 보육시설 간 거리제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음에도 자치단체의 지침에 보육시설간의 거리를 정량화하여 제한하고 있는 것은 보육시설 이용권역별 보육수요와 지역에 따라 공급과 수급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는 바 적절한 기준이라고 볼수 없음

☞ 관련부처와 협의 후 해당지자체에 영유아보육시설 인가지침 개정토록 권고

■산전 · 후 휴가급여 지급방법 개선 건의

(가) 건의요지

자녀의 주민등록등본상 출생일과 병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의 출생일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용보험센터에서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음

➲ 관계법령의 근거없이 민원인에게 부당한 불편을 초래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출생일이 일치하지 않아도 휴가 급여 지급토록 개선 건의

(나) 관계기관 입장

《 노동부 》

○ 임신, 출산등으로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사업주는 여성근로자에게 산전후 휴가를 부여하도록 근로기준법제7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산전후휴가급여 제도를 실시하는 것임

(다) 해소방안

○ 산전후휴가는 출산에 따른 모자보건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실제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그 휴가의 급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자녀의 주민등록등본상 출생일과 실제 출생일이 일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실제 출생일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마땅히 출산후휴가급여가 부여되도록 하여야 함.

☞ 관할 고용보험센터에 출산 후 휴가급여 지급토록 권고

■단독주택 발코니 구조변경 지침 개선 건의

(가) 건의요지

'05년도에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 허용 이후 안전이 사회문제화 되자 건설교통부가 고시를 제정하여 발코니 안전규제를 강화하였으나
당초부터 스프링쿨러의 설치대상이 아닌 소규모 주택의 발코니를 구조 변경하여 거실로 사용시에도 화재탐지기를 설치토록 하는 것은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 및 불편 초래

➲ 단독주택의 발코니 등을 구조변경하여 거실로 사용시 화재탐지기 설치 규정 개선 건의

(나) 관계기관 입장

《 건설교통부 》

○ 건설교통부는 발코니를 거실용도로 확장하는 경우 발코니에 자동화재탐지기 설치를 의무화(발코니등의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하면서 적용대상 건축물의 범위에 대해서는 규정된 바 없으므로 모든 건축물에 적용된다고 해석해옴

(다) 해소방안

○ 그러나 동 고시의 규정 및 건설교통부의 해석은 관계법령 및 현실여건과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어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상 연면적 1천㎡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만 자동화재탐지기 설치를 의무화(제15조, 별표 4)하고 있으나
○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 절차 및 설치기준」에 의해 단독주택 발코니를 확장할 경우 거실은 자동화재탐지기가 필요 없는데 발코니에만 화재탐지기를 설치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 안전강화의 당초 취지는 살리되, 관계법령 및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명확히 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하여야 할 것임.

☞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개정

■폐기물처리시설(소각로) 설치 규정 개선 건의

(가) 건의요지

탕정단지의 폐기물 발생 예상량은 소량(14톤/일)이므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된 완화규정을 적용받아야 하나 개정령 시행 후 최초로 실시계획 승인 등을 얻는 산업단지부터 적용한다는 부칙의 단서조항으로 기존산업단지는 적용 제외되어 소각로를 설치하여야 하는 부담 발생

- 개정령에 의하면 50톤/일 이상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에 한하여 소각로를 설치하거나 인근 산업단지 등과 공동으로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음

➲ 단서조항을 폐지하거나 완화규정을 기존 산업단지에도 적용 또는 발생 폐기물이 50톤/일이 되는 시점까지 유예

(나) 관계기관 입장

《 환경부 》

○ 개정 시행령의 소급 적용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문제점 발생 및 혼란을 막기 위하여 적용 시기를 개정령 시행 이후로 정한 것임

(다) 해소방안

○ 동 시행령 개정 취지는 산업단지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대상 및 기준 완화로 산업단지 입주기업 부담을 경감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불합리한 점과 미비점을 개선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도모하는 것이므로

○ 소각시설을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의 관리가 용이하고, 어느 정도 경제성 및 폐열 이용이 가능한 규모(50톤/일)의 경우에만 설치하도록 완화한 것임

○ 기존 산업단지라 하더라도 개정령 규정의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 완화규정을 적용하여야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

☞ 개정령 시행일 이전에 실시계획 승인을 얻은 산업단지 등에도 완화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학원 수강료 환급제도 개선 건의

(가) 건의요지

학원 등록 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수업을 받을 수 없어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학원의 수강료 환급 거절, 과다한 위약금 요구 및 도산 · 폐업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고 있음

➲ 교습개시 이전에는 개강 3일전에 취소하여야 환불이 가능하며, 교습개시 이후에는 환불되지 않는 규정은 불합리하므로 제도개선 건의

(나) 관계기관 입장

《 교육인적자원부 》

○ 학습자의 수강 중단에 따른 학원의 재정적 손실과 현행 수강료 반환기준에 따른 학습자의 과다한 부담 등을 고려하여 수강료 반환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방안 마련이 필요

(다) 해소방안

○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교습개시 이전에는 전액 환불토록하고 교습개시 이후에는 수강 잔여기간에 대하여 반환토록 개선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대한 법률 시행령」개정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영업소 이전 신고 개선 건의

(가) 건의요지

건강기능식품 수입업 영업소를 서울 ○○구에서 경기 ○○시로 이전하는 내용의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관할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관할이 다르므로 폐업 후 신규 등록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함

➲ 관할 행정관청이 다르다는 이유로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영업소의 이전 시 폐업 후 신규 등록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관청의 업무 편의를 위한 규제에 해당된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건의함

(나) 관계기관 입장

《 보건보건복지부 · 식품의약품안전청 》

○ 관할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다른 타 시 · 도로 건강기능식품수입업 영업소의 소재지를 이전할 경우 폐업 후 신규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는 민원인의 불편이 초래될 뿐 아니라 불필요한 비용이 추가되는 것으로 개선이 필요함.

(다) 해소방안

○ 특별히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이 불필요한 사항임에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할구역을 달리하는 이전신고에 대하여 폐업 후 신규신고토록 하는 사항은 행정편의만을 고려한 과도한 절차라고 판단되므로, 부동산중개업 및 여행업의 경우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같이 기존 영업소 소재지 관할관청 또는 이전지 관할관청 1곳에 이전신고만으로 가능토록 처리하고 있는 예를 참조하여 개선되어야 함.

☞ 보건보건복지부에서「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개정 추진

■여권 대리 수령시 여권 명의인 신분증 제시제도 개선 건의

(가) 건의요지

동일인이 여권의 발급신청과 수령을 대리할 경우에도 본인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신청시와 수령시 공히 제시토록 요구하는 것은 중복규제임

- 여권의 수령은 우편을 통한 택배로도 가능한 바, 택배를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무방하므로 대리인의 방문 수령과 우편 택배 수령간 모순되는 부분이 발생됨

➲ 여권 신청 당시 위임장을 가지고 신청한 대리인(위임받은 사람)에게는 여권 명의인의 신분증이 없어도 여권을 수령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함

(나) 관계기관 입장

《 외교통상부 》

○ 여권의 부정사용 또는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신청 · 발급되고 본인에게 교부하기 위하여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임

(다) 해소방안

○ 여권의 부정사용 및 악용 방지를 위하여 철저한 확인이 가장 바람직하나, 어차피 여권의 대리 수령이 가능하다면 신청을 대리한 동일인이 수령을 대리할 때에도 여권 명의인의 신분증을 제시토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절차라고 판단되므로 개선이 필요함.

☞ 외교통상부에서는 여권의 신청을 대리한 사람은 여권 명의인의 신분증 제시 없이 여권의 수령을 대리할 수 있도록 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여권의 신청 수령방법) 제2항을 개정 추진

■건설업체 등 종사자의 소방기술 경력인정 건의

(가) 건의요지

소방기술자가 건축사법,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주택법 등에서 규정한 등록업체에 소속되어 소방시설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불합리한 경력인정제도임

➲ 소방설비기사와 소방설비산업기사를 취득한 후 약 16년간 근무하였는데도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건의함

(나) 관계기관 입장

《 소방소방방재청 》

○ 업종별 고유성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타 업종에서 쌓은 유사경력의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사안임

(다) 해소방안

○ 소방과 유사한 업종(건설, 전기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소방설비기사(산업기사) 자격취득자에 한해서 소방과 관련된 해당 경력을 일부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

☞ 소방소방방재청에서는 해당경력의 50% 범위 내에서 인정될 수 있도록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을 개정

■고속도로 요금소 통과 차량 요금 수납 관련 제도개선 건의

(가) 건의요지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과 관련하여, 통행료를 계산하지 못하고 요금소를 통과하여 고속도로 사무소에서 요금을 계산할 경우 고속도로카드 및 신용카드로 되지 않고 현금으로만 계산하도록 하여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

➲ 고속도로 카드 및 신용카드로도 통행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 건의

(나) 관계기관 입장

《 한국도로공사 》

○ 고속도로 정상 진입 시에는 고속도로카드 및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고 요금소 통과 후 통행료 납부 시에는 현금만 수납하는 것은 도로 이용자들이 납득할 수 없는 수납 체계이므로 개선이 필요함

(다) 해소방안

○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영업소 사무실에서 전자카드로 통행료를 수납할 수 있는 시스템을 '06년 12월 중에 완료하고 '07년 1월부터 운영하기로 하였고, 신용카드를 이용한 전자카드 구입 · 충전 편의를 위하여 LG카드와 신한카드사와 협의하여 한 장의 카드로 통행료 지불이 가능한 일체형 신용카드를 '06년 12월중에 출시하고 BC카드사 등 타 신용카드사와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신용카드사용을 확대하기로 함.

■제2종 보통면허로 택시운전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건의

(가) 건의요지

택시업계에서는 운전자 부족으로 차량운행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있는바, 자가용 운전자에게만 허용하고 있는 제2종 보통면허소지자들도 택시운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인력부족으로 인한 택시업계의 어려움 해소

➲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도 택시운전을 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 건의

(나) 관계기관 입장

《 경찰청 》

○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도 제1종 보통면허소지자에 비해 운전능력 등이 떨어지지 않으므로 승용차인 택시 운전이 가능한 면허를 제1종으로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함.

(다) 해소방안

○ 면허의 종류간 불필요한 차별을 철폐하고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의 취업기회 확대 및 택시업계의 인력난 해소차원에서 2종 보통면허 소지자도 택시운전을 할 수 있도록 개선

☞ 도로교통법 개정 추진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건축사 의무설계 제외 건의

(가) 건의요지

건축법에서 소규모 건축물의 증축에 대하여도 건축사가 설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설계비용으로 인해 서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음

➲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증축 시에는 건축사가 설계를 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건의

(나) 관계기관 입장

《 건설교통부 》

○ 건축의 기능 및 안전성 등의 확보를 위하여 각종 건축물을 건축사로 하여금 설계토록 하고 있으나 공사가 비교적 단순한 소규모 서민주택의 대수선 등은 건축사의 설계대상에서 제외 가능

(다) 해소방안

○ 건설교통부에서는 85제곱미터 미만의 증축·개축·재축과 3층미만 20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의 대수선에 대하여 건축사의 설계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으로 건축법을 개정

☞ 건축비용 90%까지 절감 예상

■주택관리업 영업정지 처분 과징금 대체 건의

(가) 건의요지

주택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지연으로 ○○○도 ○○시로부터 영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받아 현재 관리중인 공동주택에 대한 계약해지는 물론 앞으로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신규 수주를 하지 못하게 되는 등 과도한 법집행으로 사업에 어려움이 있음

➲ 영업정지(1월)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하여 줄 것을 건의

(나) 관계기관 입장

《 건설교통부 》

○ 주택법 제5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규정에서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절차법에서도 행정처분시 처분 내용을 사전통지 하여 민원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였어야 하나 ○○시에서는 이에 대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주택관리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근거로 영업정지 처분한 것은 부당한 것으로 검토됨

○ 주택법 제54조제2항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가 제1항제2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주택법시행령 제70조제5항 : 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영업정지기간 1일당 3만원을 부과하되, 영업정지 1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과징금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 해소방안

○ 당해 행정처분청인 ○○시에 관련법령에 따른 절차의 이행(의견청취 등) 및 행정처분 내용의 재검토 권고

☞ ○○시에서는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고 과징금 ○○만원을 부과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관련 제도개선 건의

(가) 건의요지

부동산 거래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토지 또는 건물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기간이 짧아 신고 지연으로 많은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문제점이 있음.

➲ 신고기간 연장 및 과태료 부과금액의 인하 건의

(나) 관계기관 입장

《 건설교통부 》

○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기간이 현실적으로 준수하기 어렵고 과태료가 사안에 비하여 가혹하다면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다) 해소방안

○ 신고기간을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과태료는 취등록세의 3배 이내에서 500만원 이하로 조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계약이행보증보험 관련 법령 개정 건의

(가) 건의요지

국가계약법령상 보증보험증권 등에 의한 계약보증기간을 계약기간 종료일까지만 지정하여도 계약기간내 발생한 보증사고에 대하여 2년간 보증금 청구가 가능함에도 추가적으로 60일의 보증기간을 설정하여 보증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토록하고 추후 환급받는 등 번거로운 절차 문제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및 관련 회계예규 개정시 반영 요구

(나) 관계기관 입장

《 재정경제부 》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55조,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4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의 보증기간을 설정함에 있어 계약이행의 지체중에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보증기간을 60일을 추가 설정

(다) 해소방안

○ 보증기관(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에 확인한 결과,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보증사고에 대한 보증이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2년임을 감안할 때 계약기간을 초과하는 추가적인 보증기간 설정은 불필요하다고 판단

☞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에서 현재의 보증기간의 만료일을 계약기간의 종료일까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적극 수용하여 「국가계약법시행규칙」 및 관련 회계예규 개정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을 지정폐기물 항목에서 제외 건의

(가) 건의요지

일반업종에서 발생하는 폐합성수지 및 폐합성 고무는 일반폐기물로 지정되어있으나 합성수지 제조업 및 합성고무 제조업에서 발생되는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는 특정오염물질 등이 거의 없는 양질의 화학물질이나,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어, 폐고무 등이 대부분 소각되는 등 국가적 차원의 자원 낭비 문제

➲ 폐합성고분자화합물(폐합성고무 및 폐합성수지)을 재활용이 용이 하도록 지정폐기물 종류에서 제외 요망

(나) 관계기관 입장

《 환경부 》

○ 합성수지제조업 및 합성고무제조업에서 다량 발생되는 폐합성수지와 폐합성고무는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로 분류되었고, 기타 업종에서 발생되는 동종 폐기물은 일반폐기물로 분류되어 운영되고 있음.

○ 또한,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지정증명, 폐기물적법처리입증 정보시스템에 관한 고시 등 규정이 까다로워 동폐기물의 재활용이 어려운게 사실임.

(다) 해소방안

○ 환경부에서는 관련단체 · 업계의 건의사항 등을 수용하여 「폐기물관리 규제개선방안 연구」용역에 폐합성수지 등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의 지정폐기물 분류체계를 재검토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추진

☞ 환경부에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

■영화촬영용 총기류의 수입 및 임대허용 건의

(가) 건의요지

영화 및 방송용으로 특수제작된 촬영용 총기(프롭)는 총신이 밀폐되어 있는 공포탄 전용으로 사용되는 총기이며 우리나라에 등장하는 총기들은 대부분 외국에서 비싼 보증금과 대여료를 지불하고 빌려오는 현실이며 이 프롭들은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하면서 반복적으로 빌려와야 하는 실정임

➲ 영화촬영용 프롭 총기류를 수입구매후 장기보관하면서 영화 및 방송업체에 임대가 가능하도록 건의

(나) 관계기관 입장

《 경찰청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하 총단법) 시행령 제14조「총포등의 종류 및 용도별 소지허가의 범위」에 소지허가의 근거는 없으나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프롭 총기류의 수입 및 소지허가는 경찰청장의 허가로 가능하나

○ 프롭 총기류를 영구적으로 수입 구매하여 자체적으로 보관하면서 임대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의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다) 해소방안

○ 형식이 권총, 소총과 유사하고 간단한 조작으로 실제 총기로 사용할 가능성과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어 임대업자에게 도난, 피탈 등 방지를 위한 총기관리 책임부여 규정을 마련하여 프롭 총기류의 영구적 수입 및 임대업 허용방안 마련

☞ 경찰청에서는 총단법 제12조(총포등 소지허가) 제2항의 규정과 동법시행령 제14조(총포등의 종류 및 용도별 소지허가의 범위) 개정시「영화소품용 총기」항목 신설로 법적 근거를 마련 추진

■해상호텔 및 부유구조물 관련법령 제정 건의

(가) 건의요지

관광진흥법 및 국가해양관광 진흥 전략이 마련되어 있으나 해양관광 관련시설(해상호 및 부유식 구조물)의 건축 법령 기준 및 등기에 관련된 법령이 마련되지 못하여 해양관광 사업추진이 불가

➲ 해상호텔 및 부유구조물의 재산권 행사를 위한 관련 현행법을 개정 또는 관련법 제정 건의

(나) 관계기관 입장

《 해양수산부 》

○ 공유수면에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허가, 등기 및 재산권 설정, 안전관리 등에 대한 근거법령이 없어 사실상 공유수면에 건축물 설치는 불가능한 실정

○ 여수엑스포,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등 해양공간 활용에 대한 수요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공유수면에 부유식 건축물의 설치에 따른 법적 근거마련 필요

(다) 해소방안

○ 해양수산부에서 가칭 「해상건축물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타당성 등 전반적인 기본계획 용역시행('06.6~12월), 입법안 마련 및 관계부처 협의('07년 하반기)

제 3 장 신설 · 강화규제의 심사

제 1절 개요
제 2절 재경금융 및 공정거래분야
제 3절 산업자원분야
제 4절 건설교통분야
제 5절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분야
제 6절 농림 및 해양수산분야
제 7절 환경분야(환경부)
제 8절 교육 및 문화분야
제 9절 노동 · 여성 · 청소년분야
제10절 보건복지분야
제11절 통일 · 외교 · 국방 · 국가보훈분야
제12절 일반행정분야

제1절 개 요

규제개혁위원회는 분과위원회(경제1분과, 경제2분과 및 행정사회분과) 및 본회의를 거쳐 2006년도에 각 부처가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하는 규제 총 1,076건을 심사하여 이중 245건(22.8%)에 대해 철회 또는 개선을 권고하였다. 각 부처는 철회 또는 개선권고 된 대상규제에 대해서는 이를 법령에서 삭제 또는 개선하는 등 규개위의 권고를 이행하였다.

< '06 부처별 신설 · 강화 규제 심사 결과 >

부처	법령수	심사규제수	2006년도 규제심사결과		
			철회권고	개선권고	원안의결
재정경제부	19	74		1	73
금융감독위원회	7	26			26
공정거래위원회	1	4		1	3
산업자원부	23	79	1	2	76
중소기업청	4	7		1	6
특허청	1	2			2
건설교통부	39	117	9	30	78
과학기술부	9	40	4	11	25
정보통신부	13	38	1	17	20
기상청	2	6			6
농림부	12	61	1	16	44
산림청	4	22		9	13
해양수산부	39	96		25	71
해양경찰청	2	5			5
환경부	40	103	3	21	79
교육인적자원부	9	46		11	35
문화관광부	21	47		12	35
문화재청	1	3	1	2	
방송위원회	5	12	1	2	9

부처	법령수	심사규제수	2006년도 규제심사결과		
			철회권고	개선권고	원안의결
노동부	18	50	2	9	39
여성가족부	2	9		4	5
국가청소년위원회	3	11		2	9
보건복지부	45	135	6	16	113
식품의약품안전청	17	20	1	7	12
통일부	2	4			4
외교통상부	1	1		1	
국방부	12	1		1	
국가보훈처	3	1		1	
행정자치부	8	25	2	3	20
소방방재청	7	20		4	16
경찰청	1	5		2	3
법무부	1	2		2	
국무조정실	1	3			3
중앙인사위원회	1	1			1
계	373	1,076	32	213	831

제2절 재경금융 및 공정거래분야

1. 재정경제부

집필자 : 오정우 사무관(Tel. 2100-2428, yhope002@opc.go.kr)

가. 2006년도 신설 · 강화규제심사 개요

❍ 2006년도에는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금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테러자금억제를 위한 법률,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수산업자신용보증법 시행규칙, 관세사법, 사회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등 19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18건, 강화 56건, 등 총 74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74건 중 1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 7건은 조건부 동의, 1건은 존속기한을 설정하였고 나머지 65건은 원안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재정경제부의 2006년도 총 신설규제는 32건임

< 재정경제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업법 등 7개 법률 개정안	제289차 경제1분과 (2006.2.10)	원안의결 13 조건부동의 7	신설 14 강화 6 *중요 20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제294차 경제1분과 (2006.4.28)	원안의결 9	신설 7 강화 2 *비중요 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294차 경제1분과 (2006.4.2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자금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303차 경제1분과 (2006.8.17)	원안의결 12	신설 4 강화 8 *비중요 12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테러자금억제를 위한 법률 제정안	제303차 경제1분과 (2006.8.17)	원안의결 1	강화 1 *중요 1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303차 경제1분과 (2006.8.17)	원안의결 3	강화 3 *비중요 3
농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제305차 경제1분과 (2006.9.1)	원안의결 1	강화 1 *중요 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제306차 경제1분과 (2006.9.28)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관세사법 개정안	제307차 경제1분과 (2006.10.26)	원안의결 2 개선권고 1	신설 2 강화 1 *중요1, 비중요2
사회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309차 경제1분과 (2006.11.8) 제173차 본회의 (2006.11.8)	원안의결 4	신설 4 *중요2, 비중요2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제310차 경제1분과 (2006.11.13)	원안의결 15	강화 15 *중요4, 비중요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312차 경제1분과 (2006.12.8) 제175차 본회의 (서면의결)	원안의결 1 존속기한 1	신설 1 강화 1
계	–	원안의결 73 개선권고 1	신설 34 강화 40 *중요31, 비중요43

나. 2006년도 신설 · 강화규제 세부심사 내용

(1)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상호저축은행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신설 14, 강화 6)

■심사내용

○ 대주주 · 계열사와의 거래시 이사회 사전의결 의무화(신설)

– 금융기관이 대주주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신용을 공여하거나 대주주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미리 이사회의 의결(재적이사 전원 찬성)을 거쳐야 함

☞ 신설되는 규제는 대주주등과의 거래를 △대주주 등에 대한 자산운용한도 제한, △거래내용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 및 공시 의무 등을 통해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주주에게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거래절차까지 이사 전원의 찬성을 요구하고 있어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지만, 은행 · 보험업권에 적용되고 있는 규제를 비은행 부분까지 확대해 모든 금융권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규제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규제차익을 예방할 필요성이 있어 규제의 도입을 허용하되, 신용공여를 허용하면서 이사 전원의 찬성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과잉규제에 해당하므로, 외국의 입법례 등을 참고하여 은행 · 보험 등 모든 업권에서의 의결정족수를 적정수준으로 완화(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것을 조건으로 원안동의 함

○ 사외이사 선임비율 및 감사위원회 전문성 강화(신설 1, 강화 7)

-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사)은 사외이사를 3인이상 두어야 하며,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함
- 감사위원중 1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하여야 함

☞ 사외이사 선임비율 및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규제는 금융회사의 경영 및 회계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실시하고 있고, 사외이사 선임비율 강화 등이 금융기관의 경영 투명성 제고를 통해 고객 등 이해관계인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규제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다만, 선물업계의 경우 총자산 규모가 타 금융업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에서 적용대상이 되는 선물업자의 규모를 결정할 때 '선물회사의 특성, 금융기법 등' 을 감안해 규제가 선물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적용대상 규모를 적정하게 결정 할 것을 권고

○ 금융회사 보유 자기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시 이사회 사전의결 의무화(신설)

- 금융회사가 보유한 계열회사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고 공시토록 함

☞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계열회사 의결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객과 대주주간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고, 금융기관이 자기계열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현행 제도가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규제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2)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신설 7, 강화 2)

■심사내용

○ 금융지주회사 요건 해당시 동 사실 보고의무 및 금융감독위원회의 시정조치권 등 (안 제5조의2, 신설)

- 자회사 주식의 가액 증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금융지주회사 요건*에 해당된 자는 동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고 일정기간 내에 금융지주회사 인가를 받거나 금융지주회사 요건을 해소해야 함

*회사의 자산총액중 동 회사가 지배1)하는 금융기관2)의 주식가액이 50% 이상을 차지

1) 30%이상의 지분 보유, 임원선임 등을 통해 지배력을 행사하는 최대주주

2) 은행, 증권, 보험 뿐만아니라 대부업, 전당포, 보험대리점 등도 포함

☞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면서 당사자의 보고 의무 및 금융감독위원회의 시정조치권을 신설한 것으로서 동 규정이 도입되더라도 피규제자는 업무처리에 따른 행정비용 외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금융지주회사 요건에 해당되나 금융지주회사 인가를 받지 않는 경우 특별한 해소절차 없이 바로 형사처벌

○ 유사상호 사용 금지 (안 제5조의 3, 신설)

- '금융지주회사' 명칭은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금융지주회사로 인가받은 회사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시 처벌

☞ 비금융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 명칭을 사용하여 국민을 오도할 가능성을 차단한 것으로서 규제영향 미미하고 은행법 등 금융관련 법령에 서 같은 취지의 규정 이미 시행중에 있으며 동 규정이 도입되더라도 규제로 인한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 자본금의 감소 또는 정관의 변경시 신고 (안 제6조의2, 신설)

- 금융지주회사가 자본금의 감소 또는 정관의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미리 신고

- 금융감독위원회는 신고 받은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금융지주 회사의 건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지주회사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도입한 규정으로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규제 이미 시행중에 있으며 행정비용 등 다소간의 비용요인이 있으나 금융지주회사의 건전성 강화에 따른 사회 경제적 이익 증가가 이를 상회

○ 지배주주 변경시 출자자 자격요건 일부 적용 (안 제6조의3, 신설)

-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지배주주가 되려고 하는 자에 대해 금융지주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출자능력,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등의 출자자 자격요건을 갖춘 후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함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않고 취득한 주식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는 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또한 동 주식에 대해 의결권 제한

☞ 주식 취득을 통하여 지배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부적격자의 금융업 진출을 사전에 차단할 것으로 기대되고 증권거래법 등에서는 같은 취지의 규정 이미 시행중에 있으며 부적격자의 주식취득 제한에 따른 규제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금융지주회사의 건전성 강화에 따른 사회 경제적 이익 증가가 동 비용요인을 상회

○ 임원의 자격요건 (안 제38조, 신설)

-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적기 시정조치를 받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금융기관의 임직원(동 관련 책임 있는 임직원)은 그 적기 시정조치 등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금융지주회사의 임원이 될 수 없음
- 금융지주회사의 임원은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로서 금융지주회사의 공익성, 건전경영 및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자이어야 함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은행 등) 임원이 될 수 없는 자가 금융지주회사의 임원이 되는 불합리를 시정하려는 것으로 은행법 등에서는 같은 취지의 규정 이미 시행중에 있으며 도덕성, 전문성을 갖춘 임원의 선임을 통한 사회 경제적 이익 증가가 이사 자격 제한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을 상회

○ 사외이사 선임비율 강화 (안 제40조, 강화)
- 사외이사의 수를 이사 총수의 과반수로 확대(제1항)
- 현재는 사외이사의 수를 이사 총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규정
- 사외이사추천위원회는 사외이사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제2항)

☞ 증권거래법 개정안 등에서도 사외이사 선임비율 강화하고 있으며 대주주 등에 대한 이사회 견제 기능 강화 등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이익이 규제비용을 상회

○ 감사위원회 구성 강화 (안 제41조 제2항, 강화)
- 감사위원회 위원중 1인 이상을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구성

☞ 감사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통하여 금융지주회사의 회계 및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대주주 및 경영진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

○ 감사위원회 위원후보의 추천(안 제41조의 2, 신설)
- 감사위원회 위원후보는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하며 이 경우 후보추천위원회는 재적 사외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은행법에 이미 도입된 제도로서 금융지주회사가 은행을 포함하여 다수의 금융기관을 지배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감사위원회를 은행 등 여타 금융기관 수준으로 강화하려는 것으로 별도의 규제비용 발생요인 없음

(3)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관한 법률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 신용정보 제공사실의 통보요구 등(시행령안 제13조의2 제2항 및 제4항, 강화)
- 종합신용집중기관, 신용조회업자 및 기타 금융감독위원회가 지정한 신용정보업자 등은 소비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신용정보 제공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일정기간마다 1회 이상 무료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정보제공 내역을 제공하도록 하는데 비용이 발생하지만,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기위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처리 · 정보통신 설비를 갖추어야하기 때문에 관련 시스템 설치에 따른 부담이 크지 않은 반면, 정보주체가 일정 기간마다 1회 이상 무료로 자신의 신용정보 제공 내역을 조회함으로써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해 신용정보가 오 · 남용되는 것을 예방 할 수 있고, 신용정보업자들도 무료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홍보 확대 효과 등을 통해 유료회원이 확대될 것이라 판단하여 이를 수용하는 상황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원안대로 처리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신설 4, 강화 8)

■심사내용

○ 금융투자업 인가 (안 제 12조, 강화)
-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함

☞ '동일기능에 대한 동일규제' 원칙 및 여타 금융투자업이 인가제인 점을 고려할 때 집합투자증권의 매매 · 중개업자에 대해서도 인가를 받도록 함이 타당하며 업역간에 존재하는 규제차익을 해소

○ 금융투자업자 대주주 변경 승인 (안 제23조, 강화)
- 대주주 변경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투자일임회사, 투자자문회사, 신탁회사 등 여타 금융투자업자로 확대

*금융투자업(6개) :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및 신탁업

☞ 규제대상의 확대로 규제가 강화되는 점이 있으나 특정 대주주에 의한 경영폐해를 방지하고 규제대상이 대주주로 제한되며 금융감독위원회 승인만 거치면 되는 것으로 비용발생도 거의 없음

○ 이해상충 관리체제 구축 (안 제43조, 신설)

–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간 등의 이해상충 관리를 위해 금융투자업자에 대해 내부관리(internal controls)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의무화

*상시적으로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정확히 파악·평가하며,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하도록 하는 시스템

–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투자자에 대한 고지를 의무화

–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까지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낮춘 후 금융서비스를 제공

☞ 이해상충의 관리는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의 질서유지에 중요한 장치로서 금융투자업자의 기존 내부통제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어 추가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규제수준도 금융선진국의 예를 참고하여 정하였음

*입법례 : 영(COB 2.4)(COB 5.3.5), 호주(FSRA 945A), 싱가폴(SFA 123.(k)), 홍콩(SFO 168.(2).(h)), 日(證法 32조②), 독(證法 31조(1).2, 32조(1),33조(1).2.)

○ 적합성 원칙 및 고객파악의무 (안 제45조, 강화)

– 적합성의 원칙 및 고객파악의무를 모든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적용

*적합성원칙 :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에 등에 비추어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는 원칙

☞ 금융투자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선진국 수준의 투자권유 제도(공통 영업행위 규제)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투자자 보호에 중요하며 적용빈도가 높은 증권회사와 투자자문사의 경우 이미 적용해 왔으며, 동 제도 적용을 통한 사회적 이익 증가가 업무처리비용 증가를 상회

*입법례 : 英(COB 5.3.5), 호주(FSRA 945A), 싱가폴(SFA 123), 홍콩(SFO 168.(d)), 日(금판법 7조, 證法 43조), 獨(證法 31조)

○ 금융투자상품 설명의무(안 제46조 및 제47조, 강화)
- 증권회사의 설명의무를 법으로 이관하고, 여타 금융투자업자에 대해서도 확대적용

☞ 금융투자업자 모두에게 적용함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동 적용에 따른 사회적 편익이 비용증가를 상회할 것으로 판단되며 미국, 영국, 일본 등 금융선진국에서도 시행중인 제도임

*입법례 : 미(SEC Rule 9b-1), 영(COB 5.4.2G, 5.4.3R), 일 (금융상품의판매등에관한법률 제3조)

○ 부당권유행위 금지 (안 제48조, 강화)
- 적용대상을 모든 금융투자업자로 확대하는 한편 금지행위도 확대

· 투자자의 요청을 받지 않고 방문 · 전화 등 실시간 대화의 방법에 의한 권유의 금지 (불초청권유 금지)
· 권유받은 투자자가 거부의사를 표명하였음에도 권유를 계속하는 행위 금지 (재권유의 금지)

☞ 원하지 않는 투자권유로 인한 투자자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고 무분별한 투자권유로 인한 투자자의 재산권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금융투자업자의 내부 투자권유 준칙을 통해 효율적으로 시행가능하며, 영국, 호주등 금융선진국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임

*입법례 : 영(FSA 56), 호주(FSRA 992A, 992AA)

○ 신탁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 금지 (안 제103조, 신설)
- 여타 사업자에 맞춰 신탁업자의 행위제한 규정을 신설

〈금지행위〉

· 신탁계약을 위반한 신탁재산 운용행위
· 운용방침 등을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빈번한 매매행위
· 인위적인 시세형성을 위한 매매행위

· 특정 신탁재산의 이익을 해치면서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신탁재산으로 고유계정과 거래하는 행위 등

☞ 다른 금융투자업자와 마찬가지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탁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규제하려는 것으로 규제로 인한 비용증가는 없으며 오히려 거래의 투명성 제고로 자본시장의 발전에 기여

○ 투자설명서 교부의무(안 제117조제1항, 강화)
– 청구여부에 관계없이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을 취득하는 자에게 투자설명서를 미리 교부하여야 함

☞ 증권의 모집 · 매출에 있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발행공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전문투자자 등에 대하여는 교부를 면제하고,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교부하는 방식도 허용함으로써 발행자 입장에서 큰 부담이 없음

○ 발행인에 대한 주식등의 대량보유보고서 송부(안 제141조, 신설)
– 대량보유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한 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발행회사에 송부

*대량보유보고(5% rule) : 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5%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5%이상 보유하고 있는 자가 1% 이상 비율이 변동된 때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에 동 사실을 보고하는 제도

☞ 대량보유보고서는 기업의 지배권 향방에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보고서이므로 적대적 M&A 등에 대한 적절한 대응기회 부여를 위해 해당기업에 송부하도록 함이 타당하고 대량보유자가 단순히 사본 1부만을 해당기업에 송부하므로 큰 부담이 없으며, 미국 · 일본 등에서도 동 제도 운용

*일본 금융상품거래법 제27조의27, 미국 34년 증권거래법 제14조(d)

○ 은행의 부도정보 통보의무 (안 제154조제5항, 신설)
– 은행은 상장법인에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실을 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함

☞ 부도는 증권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하나로서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신속히 시장에 알릴 필요가 있으며 현재 은행은 부도발생시 금융결제원에 부도내역을 통보하고 있는데 동 내역을 거래소에 제공할 경우 별도의 비용 발생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의결함

○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 (안 제190조, 강화)
- 미공개정보이용이 금지되는 내부자 범위에 계열회사의 임직원과 당해 법인과 계약체결을 교섭중인 자(그 임직원 포함) 등을 추가
-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대상 증권을 당해 법인이 발행한 증권 외에 당해 법인이 발행한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신종증권*도 포함

*주가연계증권(ELS), 주식워런트증권(ELW)

☞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계열회사의 임직원과 같이 해당기업의 미공개정보를 알 수 있는 자를 내부자에 추가하고 ELS 등 새로운 형태의 금융투자 상품을 이용한 내부자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단속강화를 통해 시장의 투명성 및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나 금융감독당국의 업무량 증가외 별도의 비용 요인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 시세조종행위의 금지 (안 제192조, 강화)
- 현물에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선물(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 및 기초자산에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시세를 조종하는 행위도 규제대상으로 추가

☞ 기존 시세조종 규제에 더하여 금융혁신에 따른 신종금융상품의 등장에 따라 증가하는 새로운 유형의 시세조종 행위를 규제하여 시장의 건전성 및 투자자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금융감독당국의 업무량 증가외 별도의 비용 요인 없으므로 원안의결함

(5) 테러자금의 억제를 위한 법률 제정안(강화 1)

■심사내용

○ 테러자금 동결제도(강화, 안 제4조 내지 제6조)
- 현행 동결제도(테러관련자 지정 및 거래 제한)를 테러자금억제법안에 규정하고
- 현행 동결제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은 테러관련거래에 대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테러혐의거래 또는 테러혐의거래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테러혐의 거래자의 금융거래를 정지 또는 제한

☞ 테러관련자 지정 및 금융거래의 제한에 관한 규정은 현재 재정경제부 고시로 운영되던 것을 법률로 규정한 것으로 강화되는 규제 내용은 없으며, 법무부·외교통상부장관 등과의 사전협의 등 절차를 합리화하였음. 테러자금동결명령제도는 테러방지와 관련하여 국제적 부담의무인 테러자금 동결을 국내제도상 수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테러자금 동결명령에 관한 규정은 테러관련자의 지정·고시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몰수·추징 등 현행 제도가 테러자금에 대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동결명령 제도의 남용방지를 위해 법무부, 금융감독위원회 등과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법원의 보전명령이나 무죄판결, 불기소처분시 동결명령 즉시 철회하도록 하였으며 동결명령에 대한 국회 보고 등 세부절차를 마련한 점을 고려하여 원안의결함

(6)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강화 3)

■심사내용

○ 카지노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안 제2조 제1항 및 제2항, 강화)
- 카지노 사업자를 법적용 대상인 '금융기관등'에 포함하고, 카지노에서 사용되는 칩과 금융자산과의 거래를 '금융거래'로 간주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카지노 사업자가 취급하는 원화거래에 대해서도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카지노 업소(외국인전용 16개, 내국인출입가능 1개)는 총 17개로 피규제자수가 적고, 자금세탁 방지의무 이행(관련보고 등)에 따른 비용발생도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행 제도로는 카지노를 이용한 원화 자금세탁방지가 어려운 점과 FATF 40+9 권고사항 및 주요국의 입법례를 고려할 때 필요성이 인정됨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정부간 기구)

○ 강화된 고객알기제도(제5조의2제2항, 강화)

- 금융기관등은 고객유형 및 거래유형별로 자금세탁의 위험정도를 스스로 평가하여 그에 따라 차등화된 고객알기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그 조치내용 · 절차 · 방법 등을 업무지침에 반영할 의무 부담

☞ 금융기관들이 강화된 고객알기제도를 적용하기 위해 업무지침에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것으로 제도 도입 비용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피규제자가 일반 국민이 아닌 금융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FATF 40+9 권고사항으로 금융기관은 위험도가 높은 유형의 고객, 거래관계 또는 거래에 대해 강화된 고객주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금융기관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과태료 상한의 상향조정(제17조 제1항, 강화)

- 금융기관등이 혐의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 등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감독 · 검사시 명령 · 지시 등에 불응한 경우 그 의무위반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의 법정 상한을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

☞ 금융기관의 의무 이행 등을 확보하기 위한 과태료로 규제대상 및 연간 규제비용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타 법령의 사례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8조제1항) : 2천만원
- 은행법(제69조제1항) : 5천만원

(7)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개정안(강화 1)

■심사내용

○ 농협 · 수협 · 산림회원조합에 대한농신보(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출연의무 부과(제1의2조, 제1의3조, 강화)

- 농협 · 수협중앙회외에 농협 · 수협 · 산림 회원조합을 추가
- 출연기준대출금 : 상호금융자금대출금 중 일반대출금 및 자립예탁대출금
- 출연요율 : 0.027%

☞ 농신보의 재정난 심화로 인해 농신보의 보증지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회원조합을 출연대상에 포함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회원조합의 요율인하 요청에 따라 농신보 출연대상인 회원조합의 경영상의 부담을 고려하여 출연요율을 당초 0.03%에서 0.027%로 인하한바 있고 모든 회원조합이 기금정상화에 소요되는 재원의 일부를 분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동의함

(8)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신설 3)

■심사 내용

○ 연금수급권의 보호 (안 제 43조의7, 신설)
- 연금을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

☞ 역모기지제도*는 고령자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사망시까지 노후 생활자금을 연금형식으로 지급받는 제도로 종신거주·종신지급이 목적으로 일시적 사정 악화로 인해 연금수급권을 양도, 담보제공하거나 압류당하는 경우 고령자의 기본적인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령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확보를 위해 도입 필요

*국민연금(제54조), 공무원연금법(제32조) 등에서도 동일한 내용 규정

○ 후순위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안 제43조의8, 신설)
- 소유주택을 담보로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역모기지대출 보증(연금보증)을 받은 자는 동 주택에 대한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 설정행위, 전세권 설정 또는 임대행위, 처분행위 등 재산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연금보증을 받은 자는 담보주택이 주택금융공사의 동의 없이는 양도, 제한물권 설정, 압류 및 임대차 등을 할 수 없는 재산임을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 하여야 하며 부기등기일 이후 해당 행위를 할 경우 이를 무효로 함

☞ 역모기지 가입자의 소유주택에 대한 권리행사 제한 정도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으나 역모기지 제도의 도입취지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동 규정 도입이 불가피하며 역모기지 대출 구조가 근저당 설정대상주택의 가치 변동·존속에 근거하여 설계하고 있어 근저당 설정 대상 주택의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지

않을 경우 대출금의 변동 · 중단 등으로 안정적인 제도운영이 불가능하고 역모기지대출인은 필요한 경우 역모기지대출을 상환하고 동 주택을 이용한 다른 자금융통 수단 선택이 가능하며 제3자에 대한 대항 등 권리관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권리제한 내용을 소유권등기에 부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

○ 연금보증부대출 취급기관의 출연의무 (안 제59조의3, 신설)
- 역모기지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그 대출금의 10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 출연하여야 함

*역모기지대출을 위한 보증재원

☞ 금융기관은 역모기지대출을 통해 무위험수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연금보증재원 확충에 일정부분 기여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보증으로 신용위험이 거의 없는 대출 수익 획득 가능. 향후 10년간 금융기관 출연금 예상규모도 10억원에 그쳐 크지 않은 편

(9) 관세사법 개정안(신설 2, 강화 1)

○ 관세법인의 설립 요건(안 제17조의2 내지 제17조의3, 신설)
- 관세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 관세법인은 업무수행시 관세청장에게 등록
  · 사원 관세사는 3인 이상이어야 하며, 사원이 아닌 관세사를 포함하여 5인 이상
  · 최소 2억원 이상의 자본금 등이 요구됨

☞ 관세사법인의 대형화를 통해 관세사법인의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관세사법인은 72개(소속 관세사 292명)이며, 총 관세사 수도 1,070여명으로 규제 대상이 크지 않으며 관세법인 자본금 요건을 강화(2억원 이상)한 것은 관세법인을 유한회사 형태로 운영하고 부실한 관세법인 난립을 막기 위한 것이며 공인회계사법이나 세무사법에 의한 법인설립에도 유사한 자본금 규정을 두고 있음

○ 관세법인의 소속 관세사등의 경업 금지 (안 제17조의5, 신설)
- 관세법인의 소속(사원)관세사는 자기(제3자)를 위하여 그 관세법인에 속하는 업무를 하거나 다른 관세법인의 소속(사원) 관세사가 될 수 없음

- 관세법인의 소속(사원) 관세사이었던 자는 법인에 소속한 기간 중에 그 관세법인이 수행한 업무를 할 수 없음
- 다만, 당해 관세법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경업금지 대상에서 제외
- 관세법인 소속 관세사가 본연의 직무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며 세무사법 등에도 유사한 규정이 있고, 피규제 대상이나 규제비용이 크지 않음

○ 합동사무소의 사무소 수를 1개로 제한(안 제9조제3항, 강화)
- 합동사무소는 1개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음

※ 유예기간(제9조제3항은 '08.1.1부터 시행)을 둠(부칙 제1조)

☞ 주로 지역업체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설치되는 분사무소를 폐지하면 해당 업체와의 거래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게 될 가능성이 많아 영업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높고 영세한 합동사무소의 경우 일정한 설립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관세법인으로 전환이 어렵다는 점에서 기득권 보호가 필요하므로 이 법 시행 이전에 설치된 합동사무소의 분사무소는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설치되는 합동사무소에 한하여 사무소를 1개로 제한하도록 개선 권고

(10) 사회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신설 4)

■심사 내용

○ 유사명칭 사용금지(안 제27조, 신설)
- 공단이 아닌 자는 '사회보험징수공단'이라는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사용 금지하고 유사명칭 사용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공단과 동일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하려는 자가 규제대상으로 피규제자 및 규제비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공단이 아닌 자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예상되는 납부자의 혼란 및 피해 등 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 필요성이 인정됨

○ 보험료의 납기 전 징수(안 제39조, 신설)
- 보험료 납입의무자에게 다음 사유 발생시 납기전이라도 보험료 징수할 수 있음

· 국세, 지방세 및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 시
·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 시
· 파산선고, 경매개시, 법인해산 시

☞ 납기전 징수제도의 적용대상을 보험료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며 피규제자 수 및 규제비용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보험 납입의무자에게 보험료 징수가 불가능한 사유발생시 보험료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납부하도록 고지하는 것으로 보험료 일실방지를 위해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

○ 인적사항 공개 등 보험료체납자에 대한 조치(안 제44조 및 제45조, 신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보험료 등의 총액이 1억원이상인 체납자에 대해 인적사항 · 체납액을 관보, 정보통신망 등에 공개할 수 있음(안 제44조)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중인 경우 비공개

- 공개 여부심사를 위해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 설치
- 인적사항 공개시 공개대상자에 통지하고 소명기회 부여
- 공단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 ·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음(안 제45조)

※ 행정심판 또는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그 밖에 체납처분 유예 등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

☞ 현재 4대보험 체납액은 9.5조원에 이르고 있어 직접 징수 수단 외에 효율적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할 수 있는 간접 강제 수단 필요하며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체납자 등의 자료제공은 체납자의 신용에 불이익을 줌으로써 자진납부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국세, 관세, 지방세 징수에도 동일제도가 운영되고 있고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유지 및 보험재정의 건전성 도모를 위해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기업의 일시적 사정에 의해 체납하는 선의의 체납자가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으므로 선의의 체납자에 대한 피해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령 제정 시 이를 반영하고 법시행 1년 후에 본 제도의 보험료 징수율 제고효과를 실증적으로 파악하여 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조건으로 동의 함

○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안 제44조, 신설)

-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 대상 : 1년 이상, 500만원 이상 체납자 및 1년에 3회 이상, 500만원이상 체납자

- 자료요청은 최소한도에 그쳐야하며 정보제공 시 금융기관은 제공된 금융거래정보의 주요내용 등을 거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 공단은 금융실명거래법 상 금융정보제공 대상이 아니어서 고의적인 납부회피 시에도 재산상태파악이 곤란하여 효율적 징수가 어려움이 있어 공단에도 금융정보제공을 가능하게 하여 보험료의 적기징수 및 자진납부를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기관에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500만원 이상 체납자로 한정하고 금융거래정보의 누설·제공시 5년이하 징역 및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및 남용방지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규제개혁장관회의('05.8.30) 시 공공정보 활성화 방안으로 결정된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동의함

(11)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강화 15)

■심사 내용

○ 거래확인을 위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거래내용 등(안 제7조)

- 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거래내용의 대상기간을 거래기록의 보존기간(제12조)*과 같게 규정

  *중요기록은 5년(보조업자는 3년), 비중요기록은 1년,

- 제공대상 거래내용의 종류 및 범위는 거래계좌의 명칭, 거래의 종류 및 금액,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출금 동의에 관한 정보 등 거래내용 확인에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 서면제공의 경우 요청방법, 절차 등을 약관에 규정하여야 함

☞ 분쟁발생 등에 대비, 자금거래와 관련된 내용확인 가능기간을 가능한 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제공대상이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으로서 정보생성과 관련한 추가비용 발생이 거의 없고 거래내용의 서면제공과 관련한 요청방법, 절차 등을 약관에 반영함으로써 소비자의 편의 증진

○ 추심이체시 서면에 의한 출금 동의(안 제10조)

–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추심이체를 위하여 미리 받는 출금동의는 ▲지급인으로부터 서면에 의해 받거나 ▲수취인이 지급인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출금동의를 받아 이를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에 의함

☞ 자금지급과 관련하여 당연히 필요한 절차를 선언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출금동의의 방법을 서면형식으로 정함으로써 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전자화폐의 발행 · 환금방법 및 절차(안 제11조)

– 무기명전자화폐*는 5만원 이하로 함

*실지명의 또는 예금계좌를 연결하여 관리하지 않아도 되는 전자화폐

– 전자화폐의 발행자는 무기명전자화폐를 제외하고는 전자화폐 발행 또는 교환시 반드시 중앙전산시스템을 경유해야 하며 발행 · 교환에 관한 사항을 기록 · 관리 해야함

– 전자화폐발행자는 원칙적으로 전자화폐 발행이 이루어지는 모든 장소에서 전자화폐 보유자의 교환요구에 응해야 하며(무기명전자화폐만 발행하는 자는 예외 적용 가능) 전자화폐를 현금 또는 예금계좌로 즉시 지급해야 함

☞ 무기명으로 발행 가능한 전자화폐의 권면액을 이용자의 소비규모, 불법자금수단으로의 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5만원으로 설정하였고 전자화폐는 현금과 동일시되어 자금세탁 · 뇌물공여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 중앙전산시스템 경유를 통해 발행, 교환에 관한 사항을 기록할 필요가 있으며 환금성은 전자화폐의 본질에 속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모든 장소에서 전자화폐의 교환이 이루어짐이 타당

○ 거래기록의 보존기간 및 방법(안 제12조)

– 금융기관,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중요기록은 5년, 비중요기록은 1년간 보존하여야 함

*동일한 기록을 생성·보존하는 전자금융보조업자는 3년

– 금융기관 등은 거래기록을 전산정보 처리조직에 의하여 전자거래기본법 제5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 보존해야 함

*문서의 내용이 열람 가능하고 송수신한 그대로 또는 같은 형태로 재현 가능하도록 보존할 것 등

☞ 전자금융거래 기록을 일정기간 보존하도록 하여 전자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후 분쟁발생시에 대비하려는 것으로 법에서 정한 기간(5년) 이내이고 전자적 수단에 의해 기록을 보존하므로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도 거의 없음

○ 전자지급수단의 발행과 이용한도 제한 (안 제13조)

– 전자지급수단 한도 설정

· 무기명전자화폐 : 5만원
· 기명식전자화폐 및
· 선불전자지급수단 : 50만원
· 직불전자지급수단 : 1억원*
· 전자자금이체 : 100억원*

*전자금융업자와 이용자간에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 이용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음

☞ 전자지급수단 발행한도 설정으로 전자지급수단 이용의 활성화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소비자의 예상치 못한 손해 발생 방지, 부정한 목적의 사용 방지 등을 위해서는 한도 설정이 필요. 특히 무기명전자화폐의 경우 적절한 한도설정이 긴요

○ 분쟁처리를 위한 담당자 지정 등 (안 제14조)

-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하여 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연락처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게 해야 함
- 이용자의 분쟁처리 신청시 15일 이내에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함

☞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분쟁발생시 이용자 보호 및 그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활성화를 위해 이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의 대부분이 분쟁처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어 추가적인 비용 부담은 크지 않음

○ 전자금융업의 허가 또는 등록면제 (안 제15조)

- 결제대금 예치업무*와 전자고지수납업무**를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을 필요로 하는 전자금융업무로 규정함

*소비자가 재화 등을 공급받을 때까지 거래의 안전을 위해 제3자가 결제대금을 예치받는 업무

**수취인을 대행하여 수취할 자금을 지급인에게 고지하고 자금의 수수 · 정산을 대행하는 업무

- 마일리지형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체가 금융감독위원회 등록을 면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상환잔액 전부에 대해 지급보증 · 보증보험 · 공제에 가입하여야 함

*마일리지를 기초로 한 선불전자지급수단

- 등록이 면제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가 임직원의 위법 · 부당한 행위로 지급불능상태가 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약관변경 권고, 계약내용의 시정 · 보완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하는 것과 관련하여 임직원의 위법 · 부당한 행위로 인해 지급불능이 되는 경우 명확화

· 이용자 · 가맹점에 대한 환급 또는 정산이 불가능한 경우, 접근매체의 위변조로 이용자 · 가맹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등

☞ 결제대금예치와 전자고지수납업무는 자금을 직접 수납하므로 일정 자격을 갖춘 자만이 업무를 영위하도록 함이 타당

결제대금예치업자의 경우 등록을 하고도 추가적으로 발행잔고의 10%에 대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마일리지형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체의 규모 등을 고려시, 소비자보호를 위해 보험가입 등을 전제로 등록을 면제함이 타당하며 대규모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함에도 불구하고 재무상태 등과 관련하여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게 되면 당해 업체의 재무상태가 일시에 악화되는 경우 이용자에게 큰 피해 발생 우려

○ 전자금융업자의 자본금 요건 (안 제17조)

–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자본금(출자총액, 기본재산) 요건을 정함

· 전자자금이체 : 30억원
· 직불 · 선불전자지급수단 : 20억원
· 전자지급결제대행 : 10억원
· 결제대금예치업무 : 10억원
· 전자고지수납 : 5억원 등

☞ 전자금융업자로서 등록을 하는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도록 하여 무분별한 전자금융업자의 남설 및 소비자 피해 발생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법에서 전자자금이체업무, 직불 ·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 관리업자 20억원 이상, 대행업자 등은 5억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자본금 요건에 의해 진입장벽이 발생할 수 있으나 현재 영위업자의 자본금 및 유사법령 등을 고려*할 경우 적정한 것으로 판단

*현재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결제대행업무 수행 업체중 최저자본금 업체가 각각 20억원(한국문화진흥), 10억원(뱅크타운)
결제대금예치 사업자의 기준에 관한 고시 제1호(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0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은 10억원으로 한다.
미국의 McVey와 Brown이 추정한 전자자금 고지 · 수납시스템 구축 직접 고정비 : 평균 40만달러

○ 허가 · 등록을 위한 재무건전성 기준 (안 제18조)

– 전자금융업 허가 · 등록을 받기 위해 요구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구체화

· 허가 및 등록 신청자가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검사를 받는 금융기관인 경우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재무건전성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비금융기관인 경우에는 자기자본 · 출자총액 · 기본재산에 대한 부채총액 비율이 200% 이하여야 함

– 허가, 등록과 관련한 주요출자자의 개념을 명확화

·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
· 지분율이 10% 이상인 자
· 임원의 임면 등과 관련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등

☞ 재무건전성 기준은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규정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등 금융관련 법령에서 유사한 내용을 정하고 있으며 금융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일반적인 주요출자자의 개념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 3(신용카드업 허가의 세부요건), 간투법시행령 제13조 제3항(허가의 세부요건) 등에서 유사하게 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6조의2(신용카드업의 허가에 필요한 재무건전성 기준)

○ 허가 · 등록 신청자의 결격사유 (안 제19조)
– 신청에 의해 등록이 말소된 법인의 등록말소 당시 대주주로서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 허가 · 등록 신청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대주주'의 개념 명확화

·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자부터 순차적으로 그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에 달하는 때에 그에 포함되는 주주 또는 출자자 모두

☞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의 진입을 제한함으로써 경쟁이 제한되는 측면은 있으나 대상자가 극히 일부에 제한되는 반면에 일부 자격미달자에 의한 전자금융업 남설을 차단함으로써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전자금융업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가 크게 제고되며 유사법령인 여신전문금융업법령에서는 허가 · 등록 금지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비해 당 사안에서는 이를 1년으로 규정함으로써 규제가 상당폭 완화

○ 허가 · 등록 신청방법 등(안 제20조)
- 법에서 위임한 허가 · 등록 신청서 기재사항 및 관련 첨부서류 명시

☞ 허가 · 등록시 일반적으로 요청되는 기재사항 및 서류들로 여신전문금융업법령* 등에도 유사한 내용 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조(허가 · 등록의 신청), 동 시행령 제3조의 2(허가 · 등록의 첨부서류)

○ 전자금융업 가맹점 계약 해지기준 (안 제23조)
- 가맹점이 ▲전자금융거래정보내용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가맹점 준수의무를 위반하여 형의 선고 또는 세무관서로부터 서면통보를 받은 경우 전자금융업자는 지체없이 가맹점계약을 해지하여야 함

☞ 가맹점이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위반하는 경우 적용할 계약해지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 강화. 법에서 정한 사유를 구체화 한 것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제6조의12)에서도 동일한 내용 규정

○ 경영지도기준 (안 제24조)
- 전자금융업자의 건전경영을 지도하기 위한 경영지도기준을 구체화

· 세부적인 경영지도기준으로 허가 · 등록요건 및 자본금 유지, 자기자본, 자기자본 대비 미상환잔액 비율, 안전자산비율, 유동성부채 대비 유동성자산 비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함

☞ 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으로, 일반적으로 금융업자에게 요구되는 기준이며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등 여타 법령에서도 유사한 내용 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제19조의 7(경영지도의 기준) 법 제53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의 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기자본의 보유기준에 관한 사항

2. 대출채권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보유하는 자산의 건전성 분류 및 운용기준에 관한 사항
3. 충당금 및 적립금의 적립기준에 관한 사항
4. 위험관리 및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 합병 · 해산 · 폐업 등의 경우 인가심사기준 등 (안 제25조)

– 허가를 받은 전자금융업자가 합병, 해산, 폐업하거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 양수하는 경우 받아야 할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와 관련하여 그 기준을 설정

· 다른 전자금융업자와 합병하는 경우 ▲전자금융산업의 효율화와 신용질서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합병에 따른 영업계획 및 조직운영계획이 적정할 것 등

· 해산 또는 전자금융업무의 폐지의 경우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 및 재무상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 할 것 ▲이용자 등의 보호와 신용질서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등

☞ 허가를 받은 전자금융업자의 지위가 변경될 수 있는 합병, 해산 및 영업의 양도 · 양수의 경우 다시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허가제의 유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금융기관 합병 등에도 유사한 규정* 적용

*은행법시행령 제24조의4 (합병등의 인가) 등

○ 과징금 (안 제26조)

– 법에서 정한 업무정지명령대상(과징금 부과 대체 가능) 기준을 구체화하는 한편 위반정도, 위반횟수 등을 참작하여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을 가감할 수 있게 함

☞ 규정 위반정도, 위반횟수 등을 참작하여 업무정지기간 또는 과징금 금액을 가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제21조)에도 동일한 규정 시행중

(1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 소액수의계약 대상금액 상향 조정 및 참여대상자 제한 기준마련(시행령제26조제1항 제5호 및 제30조, 시행규칙 제33조, 신설)

– 소액수의계약 대상금액 상향조정

· 일반공사 : 1억원 이하2억원이하
· 전문공사 : 7천만원 이하1억원 이하
· 전기공사등 : 5천만원 이하8천만원 이하
· 물품 · 용역 : 3천만원 이하5천만원 이하

– 소액수의계약 중 2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G2B)에 공고 후 동 장치를 통해 견적서를 제출받아 수의계약대상자 결정

– 견적서 제출대상자를 현장이 위치하는 광역자치단체(시 · 도) 소재업체로 제한가능, 다만 현장이 위치하는 시 · 군에 5인이상의 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시 · 군 소재 업체로 제한 가능

☞ '98년 이후 계속 유지되고 있는 소액수의계약 대상금액을 물가변동율을 감안하여 소액수의계약 대상금액을 상향조정하고 조달처의 전자정보처리장치(G2B)를 통한 견적서 입찰방식을 도입하여 수의계약의 투명성제고하려는 것임 견적서 제출 대상에 지역제한을 둔 것은 현재 수의계약이 공사장이 소재한 지역의 업체와 체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G2B에 의한 방식 도입시 모든 지역으로 입찰이 개방되어 지역영세업체의 건설물량 유지가 어려워져 지역영세업자의 수주난이 심화 될 우려가 있어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G2B에 의한 입찰제도가 도입되어 수의계약영역에서도 투명성이 확보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안의결함

○ 지역업체와의 공동계약 대상금액 상향 조정(시행령 안 제72조 제3항, 강화)

– 지역 업체와의 공동계약 대상금액을 현행 추정가격 50억원 미만에서 고시 금액* 미만으로 상향조정

*고시금액(국제입찰 개방대상금액)
- '05.1~'06.12 : 84억원
- '07.1~'08.12 : 약 75억원 예상

☞ 최근 지역건설업체의 수주물량 감소로 지방건설 경기 위축되고 있어 지역경기 활성화가 필요하고 국가기관의 경우 지자체의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금액에 비해 매우 적으며

※ 광역단체 : 252억원 미만
동 규제강화안에 대하여 관련업계의 반대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됨

※ '03년에 재정경제부의 대상금액인상안(본 시행령 개정안)이 규개위에서 철회 권고되면서 지역제한입찰제도와 대상금액이 동일하게 되어 본제도의 실효성이 상실되었으므로 대상금액의 조정이 필요
다만, 본 규개위는 본질적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사항으로서 대상금액 축소를 의결한 당초 규개위의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고 공동도급제도의 경쟁제한적 요소들이 장기적으로 지역업체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며 기업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획일적 규제보다는 장기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시장친화적 방식을 모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므로 3년간의 규제존속기한을 설정하여 시행하고 제반 상황변화를 고려하여 규제존속여부를 재심사하도록 함

※ '98년 10월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개혁차원에서 대상금액을 축소(75억원→50억원)하기로 결정하였고 이후 재정경제부에서 대상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동 시행령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제227회 경제1분과위('03.11.14)에서 철회권고

2. 금융감독위원회

집필자 : 오정우 사무관(Tel. 2100-2428, yhope002@opc.go.kr)

가. 2006년도 신설 · 강화규제심사 개요

❍ 2005년도에는 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전자금융거래규정 개정안, 은행업감독규정, 간접투자자산운영업감독규정, 선물업감독규정, 여신전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 7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14건, 강화 12건 총 26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24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2건은 조건부 원안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금융감독위원회의 2006년도 신설규제는 14건임

< 금융감독위원회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개정안	제304차 경제1분과 (2006.8.24)	원안의결 3	강화 3 *비중요 3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제304차 경제1분과 (2006.8.24)	원안의결 5	강화 5 *비중요 5
전자금융거래감독규정 제정안	제313회 경제1분과 (2006.12.14)	원안의결 12 조건부동의 2	신설 14 *중요3, 비중요11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제313회 경제1분과 (2006.12.1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간접투자자산운용업 감독규정 개정안	제313회 경제1분과 (2006.12.1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선물업감독규정 개정안	제313회 경제1분과 (2006.12.1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여신전문금융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	제313회 경제1분과 (2006.12.1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 1
계	-	원안의결 26	강화 1 *비중요 1

나. 2006년도 신설 · 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상호저축은행감독규정 개정안 (강화 3)

■심사내용

○ BIS비율 보고와 관련하여 자산총액이 3천억원 이상인 상호저축은행은 반기별로 외부감사인의 검토보고서를 첨부*(강화)

*현재는 결산보고시에만 외부감사인 보고서 첨부

☞ 현재 분기 및 반기 BIS비율은 상호저축은행이 자체 산정 · 보고함에 따라 관대화 경향 및 대주주의 부당압력 가능성 등으로 적정성이 다소 미흡하여 수신금리상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상호저축은행의 안정성에 대한 일부 불신이 상존하고 있어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됨

○ 현행 경영개선명령 대상에 더하여 경영개선권고를 받고 주요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이 곤란하여 경영개선권고 조치 당시보다 경영상태가 크게 악화되어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경영개선명령 대상으로 추가(강화)

☞ 경영개선권고 상태에 있는 상호저축은행이지만 경영상태가 크게 악화되어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울 경우에는 곧바로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단계적 적기시정조치를 이용한 대주주 등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고 경영개선 가능성이 없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조기 구조조정 추진으로 부실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 경영개선요구 기간을 원칙적으로는 현행과 같이 1년 이내로 하되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받은 상호저축은행이 6월 이내에 조치내용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영개선요구 기간을 6월 이내로 단축하는 한편 이행촉구조치 요건을 경영상태가 충분히 개선되지는 않았지만 이행기간 동안 현저한 경영개선 실적이 있고 단기간 내에 경영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강화(강화)

☞ 처음부터 요구조치를 받은 저축은행과의 형평성 제고하고 권고기간(6월)을 합한 1년의 기간은 경영정상화를 위한 기간으로 충분한 데다 증자·부실채권의 회수 등으로 경영정상화가 임박한 경우 이행촉구 조치를 통해 6개월간 정상화 기간 연장 가능하며 이행촉구 조치 대상을 단기간내 경영개선이 가능한 경우로 명확화 함으로써 감독당국의 자의적 판단소지를 최소화 하고 최대주주 등의 경영정상화 노력을 유도

(2)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 (강화 5)

■심사내용

○ 국내법인이 해외에서 발행하는 증권의 경우 당해 유가증권 및 당해 유가증권의 전환권, 신주인수권 등의 행사로 발행될 주권을 당해 유가증권의 발행 후 1년 이내에 거주자가 취득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지 않는 경우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 그 동안 국내법인은 해외증권 발행시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관행 또는 해석에 의하여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었으며 해외증권은 외국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발행되기 때문에 국내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없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었으나 유가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해외에서 발행된 유가증권(CB·DR 등 포함)이 단기간 내에 국내시장으로 유입됨으로써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고 국내에서 발행하는 경우와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고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충분히 공시되지 않은 유가증권이 국내에서 유통됨에 따른 국내투자자 보호 필요성 대두

○ 외국법인에 대해서도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시 예비상장심사결과서류를 첨부하도록 함

☞ 향후 외국법인 등의 국내상장(외국법인의 상장이 시작될 '06~'07년 중 16개(전체 상장업체의 1%) 내외, 이후 매년 5개 이내로 추정)에 대비하여 외국법인 등의 예비상장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위험요인을 투자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동 증권 가격 형성 등의 객관성,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내법인과 외국법인간의 동등대우 원칙을 실현하려는 것이나 증권선물거래소가 외국법인 등에 대해 통보하는 예비상장심사결과서류를 유가증권신고서에 단순 첨부하는 것으로 추가 비용

발생이 거의 없음

○ 외국법인 등은 발행인을 대리할 권한을 가진 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동 대리인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리인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확약서를 첨부하여야 함

☞ 외국법인 등이 대리인을 지정하지 않거나 대리인이 불성실하게 업무에 임할 경우 부실공시 등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며 특히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대리인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국내투자자가 허위공시 등을 이유로 외국법인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묻고자 할 때 소송진행 등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 실제 규제대상은 유가증권을 모집·매출하는 외국법인중 비상장 유가증권을 모집·매출하는 외국법인이 해당되나 현재는 전무한 실정

※ 미국, 일본 등 외국의 경우에도 유사한 규정 도입

○ 신탁계약에 의해 보유중인 자기주식 장외처분시 공시의무를 부과(강화)

☞ 신탁에 의해 자기주식을 매입하여 주가를 상승시킨 후 사전공시 없이 가격을 할인하여 장외에서 대량으로 매도하고 동 주식의 매수자가 장내에서 즉시 이를 다시 매도할 경우 선량한 투자자의 피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등 정보의 비대칭성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 방지가 있으며 공시의무부담 가중은 있으나 그 영향이 미미한 데다 신탁에 의해 보유중인 자기주식 처분만을 별도로 구분할 실익이 없음

○ 현행 제한에 더해 외부평가기관이 특수관계인이 아니지만 합병당사회사의 감사인인 경우에 외부평가를 제한(강화)

☞ 외부평가를 의무화한 것이 평가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평소 특정 기업과 감사계약을 맺고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그 회사와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형성될 소지가 있어 동 평가기관에 의한 평가는 공정성을 확보하기가 곤란

(3) 전자금융거래감독규정 개정안 (신설 13, 강화 2)

■심사 내용

○ 주요 출자자가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인 경우 자기자본이 출자금액의 4배 이상으로 하는 등 전자화폐발행업 허가시 주요출자자 요건을 명확화(신설)

☞ 전자화폐발행업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주요출자자의 요건을 구체화하여 자력이 불충분한 자에 의한 전자화폐발행업체 남설 방지 및 불건전 자금의 유입을 차단하려는 것으로 전자화폐업의 진출입에 관한 규정이지만 금융관련 법령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요건으로 규제로 인한 사회 · 경제적 영향이 크지 않아 원안의결함

○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의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허가 · 등록시의 최소자본금 요건 항상 충족, 자본잠식이 되지 않을 것, 전자화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체의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비율은 항상 20% 이상 유지, 총자산 대비 안전자산 비율 유지 등 경영지도기준을 정함(신설)

☞ 전자금융업자의 건전성이 저하될 경우 금융시장의 혼란 및 소비자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전자금융업자의 자본적정성 및 자산건전성 등에 대하여 감독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으며 여타 금융관련 법령에서도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유사한 기준을 설정, 운용하고 있고 자본금 확충, 안전자산 및 유동자산의 일정 수준 유지로 인해 자산운용이 제한을 받을 수 있으나 자산운용의 건전성 등은 금융업자의 기본적인 의무이므로 추가적인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나 각종 경영지도비율이 현재 영업 중인 업체들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그 적정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 않은 점을 고려, 규정 시행 후 일정 기간(1년)이내 적용결과 및 적정성 등에 대한 재검토 · 보고를 조건으로 원안동의

○ 전자화폐발행업자의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비율 등을 기준으로 ▲경영개선권고(자기자본대비 미상환잔액 비율 20%미만 등) ▲경영개선요구(10%미만 등) ▲경영개선명령(5%미만 등) 등의 조치를 취함(신설)

☞ 전자화폐발행업자가 부실화 될 경우 환금 요청의 급증 등으로 전자금융시장의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어 전자화폐발행업자의 자본적정성 등이 일정수준이하로 저하될 될 경우 금융감독당국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며 적기시정조치 시행시 전자금융업자의 자율성이 크게 제약을 받을 수 있으나 전자금융업의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의 손해발생 방지를 위해 규제도입이 불가피하나 자기자본대비 미상환잔액

비율 요건의 경우 그 적정성이 검증되지 않아 규정 시행 후 일정기간(1년) 이내 적용결과 및 적정성 등에 대한 재검토 · 보고를 조건으로 원안동의

○ 전자금융업자 등이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을 위한 보험 · 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시 보상한도 또는 적립액은 다음 각 금액 이상이어야 함(신설)

- 시중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용사업부 : 20억원
- 기타 은행, 체신관서, 여전사, 수협 신용사업부 등 : 10억원
- 증권회사, 선물업자 등 : 5억원
- 보험사 등 기타 금융기관 : 1억원 (연합회, 중앙회 등이 한도액 이상으로 대표로 가입하는 경우 산하기관은 가입한 것으로 간주)
-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체 : 2억원
- 기타 전자금융업자 : 1억원

☞ 전자금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위한 이행담보장치 마련하려는 것으로 과거 손해배상 규모 등을 고려하여 배상발생 가능액 및 보험가입액을 산정하여 비용발생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는 반면 이용자 보호 정도는 크게 향상

○ 금융기관 등은 전자금융업무 등을 영위함에 있어 인력운용, 시설보호 등과 관련하여 금감원장이 정하는 최소한의 안전대책을 설정 · 운용하여야 하고 보안성 확보가 필수적인 경우에는 보안성 심의를 요청해야 함(신설)

☞ 일반적으로 전자장치 · 설비를 운영하거나 금융업무 등을 영위할 때 요구되는 보안 수준을 규정하고 최소한의 장치 · 설비 기준을 정한 것으로 추가적인 비용 발생이 거의 없는 반면 안전성 확보를 통하여 이용자의 손해 발생을 방지하고, 전자금융 업무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

○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시행일 1월 전에 내용을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는 한편 이용자의 전자우편 주소로 통지하도록 하고 전자금융거래 약관을 제정 ·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약관 및 관련서류를 시행예정일 45일 전까지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원장은 이를 심사하여 변경 권고할 수 있음(신설)

☞ 법에서 정한 '약관변경시 시행 1월전 약관 게시 및 고지의무'와 관련하여 그 방법을 정한 것으로 약관이 불리하게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변경된 때에는 이용자의 피해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감안, 통보요건을 더욱 강화한 것으로 일간신문에 공고시, 소규모 비용이 발생하나 전자적 금융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의 보호 등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이 이를 상회

○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업무를 영위하는 소규모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자 등은 업무개시 1월 이전에 등록면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 및 이에 대한 소명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함(신설)

☞ 등록면제 남용 및 면제기준의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는 한편 등록면제 대상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효과적인 감독을 위해 사업체 관련 기본적 사항을 미리 파악해 둘 필요

○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전산업무 종사경력이 2년 이상인 임직원 5명이상, 전자금융업의 원활한 영위를 위하여 필요한 전산기기 및 각종 프로그램을 보유할 것, 전산자료 손실에 대비한 백업(back-up) 장치 구비, 전산실 안전성 확보 및 적절한 보안대책 수립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함(신설)

☞ 전자금융업의 영위를 위한 최소한의 인적 · 물적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당연성이 인정되며 현재 대부분의 전자금융업자들이 이미 기준을 충족하여 영업중

○ 전자금융업자로 허가 ·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검사를 받는 금융기관 중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의 경우 해당법령의 경영개선권고 · 요구 · 명령의 요건이 되는 재무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것,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검사를 받는 금융기관중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금융기관의 경우 부채비율이 200% 이내일 것 등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신설)

☞ 전자화폐발행업자의 경우 전자화폐의 범용성 등을 고려, 요건을 다소 강화하는 등 시행령에서 정한 전자금융업의 영위를 위해 필요한 재무기준을 구체화

○ 전자금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업계획 요건을 충족해야 함(신설)

- 영업개시 후 3개년간 추정재무제표 · 수익전망이 과거 수익상황 등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고 그 내용이 당해 신청회사의 영업계획에 부합할 것
- 가맹점 공동이용망 가입 등을 통해 회원이 전자화폐를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는 수준의 가맹점을 확보할 수 있을 것
- 영위하고자 하는 영업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투자자보호나 건전한 금융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을 것
- 향후 조직 및 인력 운영 계획이 적정할 것

☞ 전자화폐발행업자가 법 제28조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 신청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와 관련하여 사업계획의 기준을 구체화하여 전자화폐발행업자의 난립을 막고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자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자금융업의 건전성을 확보

○ 신청에 의해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전자금융업자는 신청 이전에 가입자 보호조치 계획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위원회는 동 계획이 가입자 보호에 불충분한 경우 보완 요구가 가능(신설)

☞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신청에 의한 등록말소시 등록말소에 따른 가입자 보호조치 내역' 제출과 관련, 사전에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필요시 금융감독위원회에 보완 요구권을 부여함으로써 가입자 보호 실효성을 제고

○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가맹점 수수료 등을 가맹점에 통보할 때 개별 서면 내지 전자우편을 통한 통보, 일간신문에의 공고, 영업장 ·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가맹점에 통보하여야 하고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가맹 관련 지급수단의 결제를 3회 이상 거부한 경우, 세무관서로부터 해당 가맹점의 폐업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여야 함(신설)

☞ 법에서 가맹점에 알리도록 정한 사항의 주지방법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통보방법을 적용한 것으로 비용발생 등의 부담이 거의 없으며 가맹점계약 해지사유를 정하면서 '기타 이에 준하는 해지사유 사항'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도록 한 데 대해 이를 구체화한 것임

○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보조업자와의 제휴 · 외부주문시 ▲기기설치 장소에 대한 통제, 금융기관과 이용자간 암호화정보 해독 및 원장 등 중요 데이터 변경 금지 등의 안전성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전자금융보조업자는 감독원장이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와의 제휴 · 외부주문과 관련한 계약서 등기타 전자금융업무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신설)

☞ 전자정보업과 금융업 영위시 요구되는 보안, 설비, 업무절차 등에 관한 일반적 기준을 규정하여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한 자료 확보를 통해 간접적으로 안정성 기준 준수를 유도하려는 것으로 전자업무 또는 금융업무 영위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규제로서 전자금융업자에게 특별히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음

○ 금융기관 및 전자금융업자는 전산기기 또는 통신회선 등의 장애로 10분 이상 전산업무가 중단 또는 지연된 경우, 전산자료 또는 프로그램의 조작과 관련된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 중대한 정보기술부문의 사고 및 전자금융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신설)

☞ 금융기관 등의 전자금융사고 발생시 사고원인 및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여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특별한 비용요인은 없고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및 대국민 금융서비스가 제고될 것으로 판단됨

(4)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 대손충당금 적립률 상향조정 및 적립대상 확대(강화)
- 정상, 요주의 여신의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상향 조정

< 대손충당금 적립률 변경 내역 >

(%)

	기업		가계		신용카드	
	현행	변경	현행	변경	현행	변경
정상	0.5	0.7	0.75	1.0	1.0	1.5
요주의	2.0	7.0	8.0	10.0	12.0	15.0
고정	20.0	좌동	20.0	좌동	20.0	좌동
회수의문	50.0	좌동	55.0	좌동	60.0	좌동
추정손실	100.0	좌동	100.0	좌동	100.0	좌동

- 현재 은행의 대손충당금 설정시 일부만 대상이 되고 있는 '미사용약정'을 전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자산에 포함

< 미사용약정 충당금적립대상 변경 내용 >

	현 행	개 정(안)
기업여신	정상분류 미사용약정	모든 미사용약정
가계여신	정사분류 미사용약정	
신용카드	정상분류 미사용약정 (단, 최근 1년간 사용실적이 없는 계좌 제외)	

- 적립률도 기업 0.5%, 가계 0.75%, 신용카드 1%에서 상기 변경된 적립률 적용으로 변경

< 미사용약정 충당금 적립률 변경 내용 >

(%)

	현 행	개 정(안)
기업여신	0.5	각각 상기 자산건전성에 따른 변경 적립률을 적용
가계여신	0.75	
신용카드	1.0	

☞ 신BIS제도 도입('08년 시행예정)에 대비, '05.12월 대손충당금 적립대상을 확대(모든 지급보증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정상' 분류 미사용약정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데 이어 금번에 다시 대손충당금 최저적립률을 일부 상향 조정하는 한편 충당금 적립대상을 더욱 확대하고 신BIS제도 등과의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면서 경영실적이 양호한 시기에 충당금을 확충함으로써 향후 경제여건 변화시의 은행 손실 흡수능력을 제고. 충당금 적립부담 증가(약 2.5조원)로 이익처분과 관련한 은행의 자율성이 제약되는 측면이 있으나 충당금의 성격이 향후 신용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유보자금으로 외부로 유출되거나 소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규제로 인한 비용발생은 거의 없음

(5) 간접투자자산운용업 감독규정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 국내에서 판매가능한 외국간접투자증권의 대상을 확대한 반면 외국간접투자증권의 국내판매시 준수해야할 운용기준을 일부 강화

☞ 개정안에서는 그 동안 국내에서 판매가 금지되었던 부동산, 외환 또는 상품 등에 투자하는 외국간접투자증권 및 국내기관투자가가 50%이상 출자한 외국자산운용회사가 설정하거나 운용하는 외국간접투자기구가 발행한 간접투자증권의 국내판매를 허용하는 반면, 외국자산운용사가 국내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간접투자증권이 준수해야 할 기준(적격기준)은 국제적 정합성에 맞춰 강화하고 적격기준 일부 조항의 준거가 되는 'EU 펀드규제 지침'의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였으나 개정안과 같이 규정이 변경되더라도 국내 판매 외국 간접투자증권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으며 분산투자 유도를 통한 동일인 집중리스크 등의 축소, 보증행위 금지를 통한 신용위험 노출 방지 등으로 국내투자자 보호수준이 제고됨

(6) 선물업감독규정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 영업용순자본에 가산할 수 있는 후순위차입금의 최저만기를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강화하고 현재 금지되고 있는 후순위차입금의 조기상환을 일정 기준을 설정, 동 기준

부합시 허용하고 후순위차입금 상환시 상환액을 영업용 순자본에서 일시에 차감하는 현행 방식을 후순위차입금의 잔존만기가 1년 미만인 시점부터 분기별로 25%씩 차감하는 방식으로 변경(강화)

☞ 후순위차입금을 영업용순자본에 가산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장기 · 안정적 자금조달을 통해 보완자본으로서의 기능을 부여하고자 한 것이나 후순위차입금의 만기가 1년으로 되어 있어 보완자본으로서의 장기 · 안정적 성격이 훼손(업체들은 만기 1년 단위로 차입하여 만기를 연장하는 방식을 선호)되어 단기 후순위차입을 통한 영업용순자본비율의 개선을 차단함으로써 후순위차입금의 보완자본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선물업의 경영효율화를 촉진. 다만, 만기 장기화로 인해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덜어주기 위해 자본적정성이 일정수준 이상일 경우 조기상환을 허용하는 한편 만기도래시 후순위차입금을 일시에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함으로써 영업용순자본비율이 급변하는 문제점을 개선

(7) 여신전문금융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 신용카드사의 자본적정성 지표인 조정자기자본비율 산출시 분모인 조정 총자산에 포함되는 유동화자산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상향 조정

☞ ABS(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은 신용카드사의 중요한 자금조달 수단이나 신용카드사가 ABS를 이용하여 과도하게 자금을 조달할 경우 경영여건 악화시 상환부담의 증가로 경영위기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유동화자산에 대한 자본적립률 상향조정을 통해 과도한 ABS발행을 규제할 필요가 있음

3. 공정거래위원회

집필자 : 손선미 사무관(Tel. 2100-2466, blissl@opc.go.kr)

가. 2006년도 신설 · 강화규제심사 개요

❍ 2006년도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대해 신설 2건, 강화 2건 총 4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4건 중 1건에 대하여는 개선 권고, 3건은 원안대로 의결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299차 경제1분과 (2006.6.9)	개선권고 1, 원안의결 3	신설2,강화2 * 중요1,비중요3

나. 2006년도 신설 · 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신설2, 강화 2)

■심사내용

○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강화 (강화)
- 가맹희망자를 「계약체결을 위해 상담 · 교섭하는 자」로 정의
- 가맹본부는 '계약체결 또는 가맹금 지급일 중 빠른 날의 14일 전'에 정보공개서 제공
-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미 제공 시에도 가맹금을 반환토록 함.

☞ 서면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등 가맹희망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 가맹계약 갱신 거절 제한(강화)

① 가맹본부는 다음 사유에 한해 계약 갱신 · 연장 거절 가능
- 계약상 금전지급 · 담보제공 위반
- 신규사업자에 적용하는 계약조건 · 영업방침 불수용시
- 기타 주요 영업방침(시행령 규정) 위반

② 계약 만료일 90일전 거절 사유를 기재한 서면통지 및 계약조건 수락여부에 대한 서면확인 필요

☞ 갱신거절 사유 중 제2호는 가맹본부가 예외적 계약조건을 내세워 갱신거절을 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이를 다음과 같이 수정토록 개선권고

가맹계약을 갱신하거나 연장할 당시에 가맹본부가 갱신 또는 연장을 희망하는 가맹점사업자나 신규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설정 또는 부과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제출안 제13조 제1항 제2호
: 가맹계약을 갱신·연장할 때에 가맹본부가 신규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적용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않는 경우

○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관련 사업자단체의 가입 · 결성을 방해하거나 이를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됨. 위반시 시정조치 및 과징금(매출액 2% 한도) 부과 가능(신설)

☞ 상대적 약자인 가맹점 사업자의 교섭력을 확보하여 거래당사자간 동등한 지위를 보장하고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 가맹본부는 신청서, 정보공개서 등을 갖추어 광역지자체장에게 등록 · 변경등록토록 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자료 공개 가능. 등록 · 신고 의무 위반시 1억원 이하 과태료 부과 (신설)

☞ 가맹본부 입장에서 다소의 절차적 비용이 소요되나, 가맹본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상대적 다수인 사업희망자들을 보호하는 편익이 클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의결

제3절 산업자원분야

집필자 : 심진홍 사무관(Tel. 2100-2429, simddang@opc.go.kr)

1. 산업자원부

가. 2006년도 신설 · 강화규제심사 개요

❍ 2006년도에는 대외무역법, 해외자원개발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전기사업법,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산업발전법, 전자거래기본법 등 23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21건, 강화 19건, 내용심사 39건 등 총 79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79건 중 1건에 대하여는 철회 권고, 2건에 대하여는 개선 권고하고, 76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 산업자원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제288차 경제1분과 (2006.1.24)	원안의결 1	강화 1
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06.2.28)	원안의결 1	강화 1 * 비중요 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291차 경제1분과 (2006.3.3)	원안의결 3 개선권고 1 철회권고 1	신설 3 강화 2 * 비중요 3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예비심사 (2006.3.3)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 비중요 1
대외무역법 개정안	예비심사 (2006.3.15)	원안의결 8	신설 8 * 비중요 8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06.4.14)	원안의결 4	강화 1 내용심사 3 * 비중요 4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294차 경제1분과 (2006.4.28)	원안의결 3	내용심사 3 * 비중요 3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해외자원개발사업법 개정안	제295차 경제1분과 (2006.5.12)	원안의결 2	신설 2 * 비중요 2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296차 경제1분과 (2006.5.19)	원안의결 6	강화 4 내용심사 2 * 비중요 5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296차 경제1분과 (2006.5.19)	원안의결 6	신설 1 강화 2 내용심사 3 * 비중요 6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제298차 경제1분과 (2006.6.2)	원안의결 2	신설 2 * 비중요 2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298차 경제1분과 (2006.6.2)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 비중요 1
전기사업법 개정안	제301차 경제1분과 (2006.7.20)	원안의결 5	신설 1 강화 1 내용심사 3 * 비중요 5
계량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301차 경제1분과 (2006.7.20)	원안의결 3	강화 2 내용심사 1 * 비중요 3
해저광물자원개발법 개정안	제302차 경제1분과 (2006.8.10)	원안의결 4	신설 3 강화 1 * 비중요 4
산업발전법 개정안	제305차 경제1분과 (2006.9.1)	원안의결 2	신설 1 강화 1 * 비중요 2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306차 경제1분과 (2006.9.28)	원안의결 7	내용심사 7 * 비중요 4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	〃	원안의결 2	강화 2 * 비중요 2
화학무기의금지를위한특정화학물질의제조 · 수출입규제등에 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	원안의결 6	내용심사 6 * 비중요 6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정 제정안	제308차 경제1분과 (2006.11.2)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 비중요 1
수출입공고 개정안	제309차 경제1분과 (2006.11.8)	개선권고 1	강화 1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지원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제312차 경제1분과 (2006.12.7)	원안의결 4	내용심사 4 * 비중요 4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안	제314차 경제1분과 (2006.12.21)	원안의결 4	내용심사 4 * 비중요 4
계	–	원안의결 76 개선권고 2 철회권고 1	신설 21 강화 19 내용심사 39 중요 7 비중요72

나. 2006년도 신설 · 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개정안(강화 1)

■심사내용

○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의 재원 확충을 위해 원유 · 석유제품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리터당 14원에서 16원으로 인상하고 '원유대비 공적 의무 동등부과' 원칙에 따라 천연가스 및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수입부과금 인상(강화)

☞ '06년도 주요사업 재원의 부족에 따라 이미 예산에 반영되어 국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사업의 신뢰성 및 계속성 측면에서 인상이 불가피함. 다만, 수입부과금의 부과목적과 다르게 에특회계 재원이 사용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 부과금 부과 · 징수 목적에 부합되게 운용될 수 있도록 검토 · 개선할 것을 조건으로 원안의결

(2) 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강화 1)

■심사내용

○ 효율관리기자재 대상품목에 식기건조기를 추가(16개→17개 품목)하고 전기세탁기 및 식기세척기의 에너지소비 효율기준을 강화(강화)

☞ 식기건조기의 경우 공동주택, 맞벌이부부의 증가 등으로 인해 보급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에너지효율대상품목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고 전기세탁기와 식기세척기는 실제 사용시간보다 플러그가 꼽힌 채 대기하는 시간이 더 많아 낭비적인 요소가 있어 대기전력의 절약 필요성이 있음. 효율대상품목지정과 효율기준 강화방안에 제조업체 등이 동의하였으며, 소비자에게 에너지 소비효율 정보제공과 고효율제품의 보급확대를 통한 에너지 절감,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한 기준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3, 강화 2)

■심사내용

○ 과징금을 체납하더라도 사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를 '전국 또는 특정 지격의 석유수급 및 가격안정에 차질이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로 규정(신설)

☞ 일률적인 사업정지로 나타날 수 있는 석유수급의 불안전 및 국민생활 불편과 법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인정되어 원안의결

○ 품질기준위반 석유제품 등에 관한 공표사항에 '행정처분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신설)

☞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기관의 처분내용을 제공하여 경미한 법규위반자와 중대한 법규위반자에 대한 공표사항에 차별성 부여한 것으로 원안의결

○ 석유대체연료의 성능평가기관의 지정기준으로 검사인력, 검사장비 등을 규정(신설)

☞ 지정에 필요한 인적 · 물적 요건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석유제품 품질검사기관 또는 자체검사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과 비교할 때 과도하지 않고 석유대체연료의 성능검증체계를 마련하여 개발을 촉진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 수수료를 1리터당 0.3원이하에서 0.5원 이하의 범위로 정하도록 변경(강화)

☞ 품질검사기관의 원활한 품질검사를 위하여 적정한 예산확보가 필요하므로 자동차용 휘발유, 등유 등의 품질검사 수수료 인상은 동의하나, 석유대체연료 품질검사 수수료는 석유대체연료의 개발촉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석유대체연료가 상용화 될 때까지 현행 0.3원으로 유지하도록 개선권고

○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석유판매업자는 매월 내수출하량, 출하금액 등을 기재한 내수판매기록부를 작성해 보고하도록 함(강화)

☞ 정부의 '97년 유가자유화 정책취지와 배치되고 내수판매량과 총판매금액은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로 엄격한 보호가 필요하며 석유공사가 실시하고 있는

가격모니터링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기업에 부담을 주고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로 철회권고

(4)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내용심사 1)

■심사내용

○ 석유대체연료가 석유사업법('04.10.23, '06.1.1 시행)에 도입됨에 따라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기준 및 성능평가기준 등 세부사항을 고시(내용심사)
- 바이오혼합연료유(경유+바이오디젤), 바이오디젤, 유화연료유(중유+물+유화제)에 대한 적정한 품질수준 유지를 위해 품질기준 마련
- 바이오혼합연료유(디젤자동차용), 알코올혼합연료유(가솔린자동차용), 유화연료유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의 제작차배출허용기준 등을 고려하여 성능평가기준 마련

☞ 석유대체연료의 이용 및 보급을 위해 석유사업법에 반영되어 관련 기술사항을 고시하는 것으로 시범보급사업, 공청회, 전문가회의 등을 통해 품질기준 등을 마련하였고 석유제품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이기 때문에 기존의 동일용도의 석유제품에 대한 기준을 준용하여 설정한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5) 대외무역법 개정안(신설 8)

■심사내용

○ 물품 등을 제조 또는 수출입 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당해 물품 등이 전략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전략물자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당해 전략물자와 관련된 사실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신설)

☞ 유엔안보리결의1540('04.4월)에 따라 우리나라도 전략물자의 생산, 사용, 비축, 운송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수출, 통관, 환적 등에 따른 확산가능성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법제화할 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전략물자 확인 및 신고의무 등을 부과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 수입자 또는 최종사용자가 당해 물품 등을 대량파괴무기 등의 제조·개발·사용 및

보관 등의 용도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전략물자로 전용 가능한 물자는 수출허가를 받아야 함(신설)

☞ 현행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을 법에 상향 규정하는 것이며 전략물자와 유사한 성격으로 수출허가의 필요성이 있는 물품을 지정하여 고시('03년부터)하고 있으므로 원안의결

○ 수출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출된 전략물자를 산업자원부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압류할 수 있고 국제기구 및 외국정부의 협조요청 등에 따라 그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국내를 경유하거나 국내에서 환적이 이루어지는 내국 및 외국 전략물자를 압류할 수 있도록 함(신설)

☞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수출된 전략물자를 통제하기 위한 것으로서미국, 유럽, 일본 등 전략물자통제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주요국가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원안의결

○ 전략물자를 중개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 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신설)

☞ 전략물자 중개와 관련된 국제문제 발생시에 대비하기 위한 사후적 관리 수단으로 국제적인 불법수출에 연루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적 중개를 예방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 전략물자 수출통제 업무와 관련된 자는 당해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지득한 사실을 해당업체 동의 없이 외부에 공표하는 것을 금지(신설)

☞ 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전문가에 대해서 비밀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제3자에게 노출될 경우 해당기업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 수출허가 규정위반자 등 전략물자거래 부적격자에 대해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략물자의 수출 또는 수입을 금지할 수 있음(신설)

☞ 현재 시행령에서 1년 이내의 제한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법에 상향 규정하고 무역제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는 것으로 미국, 유럽, 일본 등 전략물자통제체제하에서 거래부적격자에게는 3년내외로 제한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원안의결

○ 누구든지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우리나라 것으로 위장하고, 이 물품을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판매하여서는 안 됨(신설)

☞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근거만 있고, 위·변조 및 허위표시에 대한 제재 근거가 누락되어 이를 규정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 단순한 위반자에 대한 처벌 경감목적으로 전략물자 해당여부 확인의무 위반자에게 교육명령 등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함(신설)

☞ 현행 벌칙규정을 차등화하기 위한 것으로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1회에는 처벌을 경감하고, 경미한 과실인 경우 과태료 부과로 처벌을 완화하여 원안의결

(6)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개정안(강화 1, 내용심사 3)

■심사내용

○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제작사는 버스에 고압용기를 장착하기 전에 용기 외면에 사용상 지장이 있는 흠·부식·우그러짐 등의 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강화)

☞ 현행 기준에는 용기를 버스에 장착하기 전에 용기 외면 결함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기준이 없어 CNG버스에서의 용기파열사고의 우려가 있음. CNG버스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수많은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CNG버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원안의결

○ 완속충전설비의 제조 및 검사기준 마련(내용심사)
- 재료, 구조, 충전호스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

- 역류방지장치, 완충탱크의 안전장치, 보조안전장치, 과충전방지장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설치
- 내압성능, 기밀성능 등에 적합할 것

☞ 자동차용 압축천연가스 완속충전설비가 특정설비대상에 포함('06.2.6)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동 설비의 제조 및 검사기준을 규정하는 것이며, 동 기준은 가스안전공사의 연구용역을 통해 일본기준을 기초로 교수, 업계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한 것으로 원안의결

○ 용기잔류가스회수장치의 제조 및 검사기준 마련(내용심사)
- 구조, 치수, 겉모양은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 내압성능, 기밀성능, 연소성능, 압축기성능 등에 적합할 것
- 용접, 비파괴기준에 적합할 것

☞ 액화석유가스용 용기잔류가스회수장치의 제조 및 검사기준은 건설교통부의 요청에 의해 동 제품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해왔던 성능인증기준을 토대로 교수, 업계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규정한 것으로 원안의결

○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 확인방법으로 서류심사와 관련자면담을 통해 평가주기를 규정(내용심사)

☞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의 확인 · 평가주기 차등제도가 도입('06.2.6)됨에 따라 평가등급(A~D등급)에 따라 평가주기를 차등화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7)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심사 3)

■심사내용

○ 법률 개정으로 시행되는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제도 운영상 세부사항과 표시 의무사항을 규정한 것임(내용심사)

☞ 인증제도는 재제조업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율사항이며 인증심사비용도 정부지원으로 업체부담이 없으며 위임범위내에서 적정하게 규정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의결

○ 국내인정기관에 대하여 반기별로 업무규정의 변경사항, 인정업무 운영실적 등을 보고토록 규정(내용심사)

☞ 법률 위임에 따라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인증현황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피규제자에 대한 부담수준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 환경경영체제 인증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실태조사 방법 및 부실인증 신고센터 설립·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내용심사)

☞ 환경경영체제 인증 전반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하여 부실인증의 실태 및 원인을 파악하고자 실태조사 관련 세부사항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8) 해외자원개발사업법 개정안(신설 2)

■심사내용

○ 산업자원부장관은 해외자원개발 투자회사 및 투자전문회사의 업무와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신설)

☞「선박투자회사법」,「부동산 투자회사법」 등에 따른 실물 투자회사에 대한 주무부처의 감독과 같이 해외자원개발 투자회사 및 투자전문회사에 대한 감독의 실효성을 위해 자원개발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주무부처의 감독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원안의결

○ 해외자원개발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운용전문인력 외에 해외자원개발 전문인력을 확보하도록 규정(신설)

☞ 자산운용의 전문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해외자원개발 자산운용회사는 자산운용의 전문성 외에 유전, 가스전 등 자원개발사업의 전문성을 보유한 인력이 필요하므로 원안의결

(9)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4, 내용심사 2)

■심사내용

○ 에너지이용효율을 강화하기 위해 에너지사용계획 협의대상을 공공부문은 에너지 사용시설 5천TOE/2천만KWh이상에서 2천5백TOE/1천만KWh 이상으로, 민간부문 에너지 사용시설 1만TOE/4천만KWh이상에서 5천TOE/2천만KWh 이상으로 확대(강화)

☞ 대규모 국민임대주택사업 추진, 고유가 상황 등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시설 설치의 강화를 위해 협의대상 확대 필요성은 인정됨. 다만, 2002년부터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제도가 민간부분까지 확대된 이후 규제로 인한 비용 및 효과에 대해 전문기관에 의한 규제영향분석 등 종합적 검토를 실시한 후 2008.6.30일까지 규개위에 보고하고 동 규제의 존치 등에 대해 재심사를 청구하도록 조건부로 원안의결

○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5년마다 에너지진단을 받도록 하고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진단신청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10개월 이내에 진단기관 및 진단일정을 정하여 진단기관의 장에게 에너지진단을 신청하도록 함(내용심사)

☞ 법률에서 위임한 에너지진단주기 3년 이상의 범위내에서 진단주기를 규정하였으며 진단주기가 도래한 해당 사업자가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및 신청절차를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의결

○ 기준평균에너지소비효율에 미달하는 자동차 등 평균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 · 수입 · 판매업자에게 부과된 개선명령의 이행절차를 정함(내용심사)

☞ 개선명령이 부과된 자동차 제작사 등이 개선명령을 이행하고 정부가 이를 관리하기 위한 절차를 보완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 에너지진단의 효율성 강화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해 개선명령 이행실적을 보고하도록 하고 진단기관에 대한 지정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강화)

☞ 기존에 규정된 개선명령 사후관리 등을 보고 및 검사조항에서 명확히 하기 위하여 추가한 것이고 진단기관의 지정기준 적합여부를 지정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적합여부에 대한 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의결

○ 에너지진단 신청자는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의 합계액으로 산출된 에너지진단 수수료를 납부(강화)

☞ 에너지진단 수수료 산출방법 및 기준을 마련하여 진단업체의 가격경쟁으로 인한 진단일정 및 소요인력 조정 등의 품질저하 원인을 예방하여 진단효과 및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

○ 에너지진단 미이행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강화)

☞ 과태료를 에너지진단 수수료 수준으로 정하여 진단주기내 진단실시를 유도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10)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1, 강화 2, 내용심사 3)

■심사내용

○ 전력신기술의 시험시공을 권고받은 발주자가 권고받은 대로 시험시공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도록 규정(신설)

☞ 신기술 보급확대를 위해 시험시공을 권고하고 미이행시 기존방식과의 비교·분석 자료 등 사유를 제출토록 하여 신기술 보급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타 법령에도 유사한 규정이 있어 원안의결

○ 설계감리의 업무범위를 관련법령, 기술기준, 설계기준 및 시공기준에의 적합성 검토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내용심사)

☞ 설계감리 업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등 동 제도를 운영중인 타 법령과 같은 수준으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 공동주택의 공공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도지사가 전력시설물공사의 감리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위임한 사항을 정함(내용심사)
- 시 · 도지사가 감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모집공고를 하도록 함
- 시 · 도지사가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주택건설공사의 규모 및 대상은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으로 함
- 시 · 도지사가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업자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세부 평가기준을 정하도록 함

☞ 주택건설공사 감리업자의 모집공고 절차, 공사감리용역의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모집 및 선정절차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 설계감리사 자격기준에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 기술사 1인 이상이 포함되도록 함(강화)

☞ 기술사제도의 실효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사를 우대하는 방안(기술사제도 개선방안, '05.11월)에 따라 이미 개정된 타 법령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정한 것으로 원안의결

○ 공사감리완료보고서의 제출을 의무화하고 내용 및 제출방법 등을 위임(내용심사)
- 공사감리를 완료한 감리업자 등은 공사감리용역계약서 사본, 공사감리 용역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전력기술인단체에 제출하도록 함
- 전력기술인단체는 공사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한 감리업자 등이 공사감리완료필증의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동 필증을 발급하도록 함

☞ 부실감리 방지를 위해 공사감리용역의 수행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공사감리완료보고서의 제출에 따른 절차 및 구비서류를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의결

○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등급 중 특급기술자는 기술사만 인정하고 기능장·기사·산업기사는 고급까지 인정하며 학력·경력자에 대해서 초급만 인정하고 순수 경력자의 기술등급은 삭제(강화)

☞ 학·경력 기술사 제도는 '73년부터 부족한 기술사 대체인력 확보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기술사 자격의 실효성 저하 및 기술사 수급혼란을 초래함. 승급사유가 발생되는 전력기술인 또는 감리원의 반대의견이 다소 있으나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우대방안 취지에 따라 개정함이 타당하여 원안의결

(11)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신설 2)

■심사내용

○ 가스도매사업자는 설비능력의 범위내에서 배관시설 이용규정에 따라 자가소비용 직도입자에 대한 가스배관시설 이용제공을 의무화(신설)

☞ 가스공급설비 공동이용제의 조속한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가스배관시설 이용제공 의무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이용제공 거부시 산업자원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통해 동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가스공급중단에 따른 피해 방지가 필요하여 원안의결

○ 무분별한 천연가스의 직도입으로 인한 수급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해 자가소비용 직도입자의 천연가스 수입계약의 물량, 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기가 소비할 목적으로 도입한 천연가스의 제3자 처분금지(신설)

☞ 사업계획 조정으로 인한 천연가스 도입시기 지연 비용은 미미하며 무분별한 직도입을 방지하여 국가전체적인 천연가스의 수급 안정성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12)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내용심사 1)

■심사내용

○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을 위해 재정능력, 인력·기술 및 장비에 관한 기준을

정함(내용심사)

- 재정능력 : 상법상 주식회사로 납입자본금이 300억원 이상, 정부투자기관 및 비영리법인을 제외한 동일인이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지 않을 것
- 인력 · 기술능력 : 정보통신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갖추고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15인 이상의 인력
- 시설 및 장비 : 전자무역문서의 송 · 수신의 중계 및 보관설비, 전자무역기반시설의 보호설비, 시스템 관리 및 복제 · 저장설비, 전자무역문서의 증명서 발급설비, 해외연계에 필요한 설비 등

☞ 현행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을 준용한 것이며, 납입자본금을 300억원으로 상향조정(현행 50억원)한 것은 전자무역기반시설 구축비용(약 298억원) 등을 감안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 기반사업자의 지정절차도 국가전자무역위원회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공공성을 강화하고 있어 원안의결

(13) 전기사업법 개정안(신설 1, 강화 1, 내용심사 3)

■심사내용

○ PC방, 콜라텍, 수면방 등 신종 자유업종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전기안전점검을 받도록 함(내용심사)

☞ PC방 등 신종자유업종의 경우 허가, 등록, 신고 등의 절차가 불필요하여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않고 영업을 개시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전기안전점검 의무화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업자등록신청 전에 전기안전점검을 받도록 법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 원안의결

○ 재량행위 투명화 차원에서 전기사업의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 사유를 구체화(내용심사)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등

☞ 전기사업의 허가취소 또는 사업정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재량행위의 남용을 방지한 것으로 원안의결

○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이후 중요 변경사항에 대하여 신고하도록 함(강화)

☞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는 전기설비별 기본정보 및 전기안전관리자 관리로 기술실명제를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으나, 선임신고 이후 변경 사항을 알 수 없어 전기설비별 정확한 기본정보를 유지하기 곤란하므로 선임신고 이후 중요 변경사항을 신고하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등록 또는 신고 사항중 변경사항에 대하여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토록 하고 있으나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기한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명시하고 등록기준 미달시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것을 미달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때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내용심사)

☞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등록 또는 신고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여 행정처분을 합리화한 것으로 원안의결

○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전기안전관리 관련업자의 사업장 또는 이들이 전기안전관리를 하는 전기설비의 설치장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신설)

☞ 전기안전관리업무 관련업자의 등록기준 유지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관리·감독 기능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14)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2, 내용심사 1)

■심사내용

○ 계량증명업의 등록시 설비 및 시설요건만 규정하고 있으나 기술인력 1인 이상을 등록요건으로 추가하고 기존 사업자도 '07년말까지 지정교육기관에서 전문교육을 이수토록 함(강화)

☞ 계량에 대한 기본지식이 없는 자가 계량증명 행위를 함으로써 증명 결과에 대한 신뢰성 저하 및 분쟁이 빈발하고 계량증명행위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계량증명업자의 등록요건에 최소한의 인력기준이 필요하므로 원안의결

○ 형식승인 및 검정이 의무화되어 있는 법정계량기로 곡물수분측정기, 속도측정기, 이동식 축중기를 추가(강화)

☞ 사회적 필요성 및 공공성이 강한 측정장비 3종을 법정계량기에 편입한 것으로 곡물수분측정기는 농산물의 품질평가에 있어서 수분측정은 매우 중요하고, 속도측정기는 속도위반,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갓길통행위반을 단속하는 무인속도위반 단속시스템의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며, 이동식 축중기는 과적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및 노면 보호를 위해 화물 차량의 총중량을 계량하기 위한 장비로 과적 차량의 고속도로 운행이 지속 발생하여 법정계량기로 포함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 법정계량기 형식승인기관의 지정 요건으로 형식승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검사설비, 검사인력 등을 규정하고 동 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을 정하고 동 처분시 지체없이 공고하도록 함(내용심사)

☞ 형식승인기관 지정요건으로 설비 및 인력기준과,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으로 단계별 처분기준 등을 법률의 위임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원안의결

(15) 해저광물자원개발법 개정안(신설 3, 강화 1)

■심사내용

○ 탐사권자는 광상을 발견했을 경우 7일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채취권 설정을 출원하며 해저조광권자는 해저광업활동 중 취득한 모든 지질조사자료와 해저광업활동 등의 진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강화)

☞ 경제적 가치가 있는 광상 발견에 대한 정부의 최종 확인 없이 일방적으로 언론에 발표하여 선량한 투자자에게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사례가 있듯이 광상 발견 및 해저광업활동 등의 진행상황을 보고하게 하여 허위 사실의 유포를 방지할 필요가 있어 원안의결

○ 해저조광권자는 해저조광권 설정 출원시 제출한 탐사 · 채취 계획서, 자금계획서 등이 변경된 경우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신설)

☞ 허가조건 유지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출원시 제출한 서류가 변경될 경우 신고하는 것으로 신고를 위한 비용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의결

○ 해저조광권자가 해저광업활동 중 취득한 모든 탐사 · 채취 및 지질조사자료의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신설)

☞ 해저광업권은 국가만이 소유할 수 있고 주요 산유국도 동 자료의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있으며 기존 지질조사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특별히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원안의결

○ 해저조광권자는 해저조광구에 설치한 탐사장비 등을 허가기간이 끝난 경우에 장비를 수거하여 원상회복을 하여야 함. 국가는 허가가 만료된 조광권자의 설치장비 등에 대해 우선적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해저조광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러한 매수권 행사에 응하도록 함(신설)

☞ 조광권자의 원상회복 의무는 원인자 부담에 따라 당연히 실시해야 되는 사항이며, 설치장비에 대한 국가의 우선 매수권 행사는 해저광물자원개발이 장기적으로 중단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

(16) 산업발전법 개정안(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등록취소 또는 시정명령 사유에 해당하여 건전한 운영 등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이 관련 임 · 직원에 대하여 해임, 직무정지, 경고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구조조정조합의 경우도 동일하게 금융감독위원회가 관련 임 · 직원에 대하여 해임, 직무정지, 경고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강화)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등에 창업투자회사, 투자회사 등의 임 · 직원에 대한 제재 조항이 있고 회사 전체에 대한 등록취소 또는 시정명령과 함께 위법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통해 보다 책임있는 경영을 유도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 전문회사가 경영 및 자산건전성 기준에 미달한 경우 출자자 보호 등을 위해 자본금의 증액, 이익배당의 제한 등 경영개선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신설)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등에 창업투자회사, 투자회사 등에 대한 경영개선조치 조항이 있고 일반 자산운용사와 같이 자산건전성 유지를 위한 시정조치 규정을 마련하여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17)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내용심사 7)

■심사내용

○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 · 품질표시,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공산품에 대하여 법령 위반시 판매중지, 개선명령, 파기 또는 수거명령 등의 기준을 정함(내용심사)

☞ 법률 개정(2005.12.23)으로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 · 품질표시를 의무화하는 등 공산품 안전관리제도가 강화됨. 안전인증 대상 공산품 등의 제조업자 등에 대하여 법령 위반시 개선명령 등의 세부 기준으로 기존 규정을 준용하는 수준으로 원안의결

○ 공산품 안전관리를 위하여 제조업자 등에게 제조시설 및 자체검사설비 현황, 자체검사기록, 생산 · 판매 및 판매처 현황 등에 관하여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도록 함(내용심사)

☞ 법률에서 자료제출 또는 보고의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설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 안전인증 대상이 되는 공산품으로 18개 품목을 선정(내용심사)
- 가속눈썹, 가스라이터, 가정용 압력냄비 · 압력솥, 물놀이기구, 보행기, 비비탄총, 승차용안전모, 어린이놀이기구, 운동용안전모, 유모차, 유아용침대, 인라인롤러스케이트, 자동차용어린이보호장치, 자동차용재생타이어, 킥보드, 휴대용예초기날, 물휴지, 모터달린보드

☞ 제품검사와 공장검사를 병행하는 안전인증 대상 공산품으로 소비자 위해정도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결과와 중소기업계, 소비자단체의 의견수렴을 통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선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 자율안전확인 대상 공산품으로 47개 품목을 선정(내용심사)
- 기존 안전검사 대상 품목 중 18개와 안전검정(임의) 대상 품목 중 자율안전확인 대상 품목으로 19개 선정(롤러스케이트, 물탱크, 반사안전조끼, 보냉용기, 빙삭기, 스케이트보드, 스키용구, 식탁용품 · 주방용품, 완구(비작동완구), 유아용 삼륜차, 침대 매트리스, 학용품 등)
- 기존 품질표시(권고) 대상 품목 중 안전확인화학제품, 연질염화비닐 호스, 일회용 기저귀, 합성수지 주방용품 등 4개 품목을 자율안전확인 대상으로 함
- 고령자용 보행보조차 · 보행차 · 지팡이, 디지털 도어록, 어린이 귀금속 악세사리, 유아용 캐리어 등 6개 품목을 자율안전확인 대상으로 신설

☞ 자율안전확인 제도는 제품검사만으로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공산품에 적용하는 것으로 조사결과와 중소기업계,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존 안전검사 대상과 함께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품목을 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의결

○ 안전 · 품질표시 대상 공산품으로 14개 품목을 선정(내용심사)
- 기존 안전검정(임의) 대상 품목 중 소비자의 안전주의가 필요한 제품으로 안전 · 품질표시대상 대상 품목으로 4개 선정(가죽제품, 간이빨래걸이, 텐트, 보안경 등)
- 기존 품질표시(권고) 대상 품목 중 가구, 섬유제품, 습기제거제, 합성수지제필름, 화장비누, 화장지, 선글라스, 안경테 등 8개 제품을 안전 · 품질표시 대상 품목으로 함
- 가정용 공구, 면봉 등 2개 제품을 안전 · 품질표시 대상으로 신설

☞ 객관적인 조사결과를 활용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안전 · 품질 관련 정보제공이 필요한 품목을 선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의결

○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안전성의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안전인증기관에서 실시하는 정기검사의 세부사항을 규정(내용심사)
- 검사내용 : 안전인증서에 기재된 제조공장의 공산품 생산 여부, 안전기준 준수 여부, 제조설비 등
- 검사방법 : 사전에 제조업자 등에게 검사일자, 검사대상 등을 통지

- 안전인증기관의 정기검사 후 그 결과를 기술표준원장,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문서로 통지

☞ 기존 안전검사대상공산품에 대해 실시하던 정기검사 규정을 준용하여 검사방법 등을 규정하고 검사내용을 명시함으로써 피검사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 부정한 방법에 의한 안전인증, 정기검사의 거부 · 방해 · 기피 등의 경우 안전인증을 취소하고 제품검사 또는 공장심사 기준에 부적합, 자체검사 미실시, 안전인증 미표시 등의 경우 안전인증표시의 사용을 금지함

☞ 안전인증 취소 등의 세부기준을 정한 것으로 위반행위에 따라 인증취소, 인증표시 사용금지로 차등 적용하여 조치행위를 사안별로 구분하고, 위반행위의 경중과 횟수에 따른 조치기준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18)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강화 2)

■심사내용

○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지정기준 중 하나인 시설 · 장비의 안전운영 여부를 전자거래진흥원에서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 시설 및 장비를 변경하는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진흥원에서 안전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함(강화)

☞ 필요한 경우 시설, 장비 등에 대해 수시검사를 할 수 있으나, 기술발전 속도를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정밀한 점검이 필요하여 원안의결

○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전자문서보관 등 업무를 양도하거나 다른 공인전자문서보관소와 합병할 경우 또는 업무를 폐지할 경우 이를 이용자에게 통보하고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 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함(강화)

☞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업무의 연속성 유지,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양도, 합병, 폐지 등 업무의 변경사유 발생시 신고하고 업무를 인계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원활히 하고 배상에 따른 보관소의 경제적 불안정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가입 의무가 필요하여 원안의결

(19) 화학무기의 금지를 위한 특정화학물질의 제조 · 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내용심사 6)

■심사내용

○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제조신고시 제조목적, 제조량, 폐기방법을 신고토록 하고, 신원증명서, 사업장내 시설도면, 보관방법 등을 제출토록 함(내용심사)

☞ 법에 따라 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신고에 필요한 내용과 절차를 규정한 것이며 전염병예방법 등 타 법령에 의한 신고의무와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의제처리 규정을 두는 등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 생물작용제 등의 보안관리책임자의 직무 · 책임, 보관시설의 공사, 사용자의 의무이행 등 보안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을 규정(내용심사)

☞ 생물작용제 등이 외부로 유출되어 생물무기 개발이나 테러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권고사항으로 되어있는 보안관리계획의 내용, 실행절차 등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 수출허가 절차는 대외무역법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연구, 의료목적 등의 경우에 수입을 허가함. 수입허가 신청시 수입계약서, 수입물품 용도설명서 등을 제출토록 하고 인도 · 인수시 수출입허가증 사본과 선하증권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함(내용심사)

☞ 생물작용제 등이 외국으로 수출되거나 국내로 유입되어 생물무기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에 따라 수 · 출입 허가와 인도 · 인수신고시 세부절차와 요건, 제출서류를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의결

○ 생물작용제 등을 보유한 날로부터 30일안에 신고하고, 보유신고자는 매년 정기적으로 2월 15일까지 보유현황을 신고하도록 함. 생물작용제 등의 보유신고시 보유경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보유량 증대(감소)에 관하여 예측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내용심사)

☞ 생물작용제의 특성상 스스로 번식할 수 있으므로 보유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법에서 위임한 보유신고의 세부내용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원안의결

○ 생물작용제 등의 신고제조자와 보유신고 의무자에 대해 2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시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내용심사)

☞ 생물무기금지협약은 화학무기금지협약과 달리 국제사찰제도가 없으므로 국제협약의 이행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정기 또는 수시검사의 세부규정 마련한 것으로 원안의결

○ 월별제조량 및 보유량 등을 장부에 기록하여 5년간 보존하고, 자료요청시 10일이내에 제출하도록 함. 지위승계나 폐지신고시 제조 신고필증, 양도신고시 양수자가 신고제조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폐기신고시 폐기방법을 설명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함(내용심사)

☞ 법에 따라 장부에 기록할 내용, 자료제출 절차를 적정하게 규정하고 생물작용제 등의 신고제조자의 지위승계, 제조폐지, 양도 · 폐기시 생물작용제 등의 불법적인 유출을 방지하고자 신고시 필요한 제출서류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 원안의결

(20)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정 제정안(내용심사 1)

■심사내용

○ 무역자동화 사업자 지정제도가 전자무역 기반사업자 지정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세부 지정요건을 정함(내용심사)
- 전자무역 기반사업자의 인력요건 중 정보통신기사 등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규정

- 전자무역 기반사업자의 설비요건 중 전자무역문서 송·수신의 중계설비 등이 갖추어야 할 요건의 세부사항을 규정
- 전자무역 기반사업자로 지정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신청서 중 업무방법서, 사업계획서, 일반현황 등의 세부내용을 규정

☞ 전자무역 기반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기반사업자 신청자의 운영능력과 공공성 등을 판단하기 세부기준으로 기존 규정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21) 수출입공고 개정안(강화 1)

■심사내용

○ 수입제한품목에 철강재 83개 품목을 추가(2009.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

☞ 중국산 철강재의 수입급증에 대비하여 수입정보의 조기 파악을 통해 협상시 주요 정보로 활용하고자 미국, EU 등에서 시행중인 철강 수입 모니터링 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인정됨. 다만, 수입신고 기간, 절차 등에 관한 세부규정인 수입승인 요령을 이해관계자인 한국철강협회가 공고하는 것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으며, 승인이란 용어가 수입제한 등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철강수입업체의 개별정보가 노출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산업자원부 고시로 수입신고요령을 정하고 특별한 승인절차 없이 신고만으로 수입이 되고 수입신고 자료가 통계목적 이외에 활용되지 않는 점을 동 요령에 명시하도록 개선권고

(22)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내용심사 4)

■심사내용

○ 지정요건 중 무역피해를 입은 기간을 법적 최소기간인 6개월로 하고, 전년도 동일 기간의 매출액 또는 생산량과 비교하여 피해의 심각성(25% 이상 감소) 여부를 판정. 무역조정기업 지정 신청시 무역조정계획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은 2월이내에 서면으로 지정여부를 통보(내용심사)

☞ 법률의 위임에 따라 무역조정기업의 세부 지정기준을 규정한 것이며 무역피해 판정을 위한 피해의 기간을 법적 최소기간인 6개월로 규정하고,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청 후 2개월 이내에 지정 여부가 결정되도록 하는 등 무역피해 기업의 지원을 위해 규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 무역조정근로자 지정요건 중근로시간이 단축된 경우를 2개월이상 근로기준법상 1주간 근로시간의 70% 미만으로 정함. 노동부장관은 무역조정근로자 지정 신청 후 1월 이내에 지정여부를 통보(내용심사)

☞ 법률의 위임에 따라 무역조정근로자의 세부 지정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무역조정근로자 지정 요건인 실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을 근로기준법상 1주간 근로시간인 40시간의 70%(28시간) 이하의 근무가 2개월 이상 계속된 경우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청 후 1개월 이내에 지정 여부가 결정되도록 하는 등 무역피해 근로자의 지원을 위해 규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 융자지원을 받은 무역조정기업에 대해 융자지원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기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회수 요건을 ▲자금지원 신청서류의 내용이 실제 기업의 현황과 현저히 다른 경우, ▲무역조정기업 지정이 취소된 경우, ▲기업 스스로 자금의 조기상환을 신청한 경우 등으로 정함(내용심사)

☞ 법률의 위임에 따라 부정하게 지원받은 경우 이를 반환하는 세부기준을 규정한 것이며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기업을 방지하고 정비지원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타 법령의 유사한 규정을 준용한 것으로 원안의결

○ 무역조정기업 등의 보고사항으로 기업의 생산액, 매출액, 수출액 등 자격요건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무역조정 이행상황 등으로 정함. 착수 또는 완료 보고서와 별도로 매 회계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무역조정계획의 이행실적보고서 제출(내용심사)

☞ 법률의 위임에 따라 무역조정기업 등의 지원에 따른 보고의무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이며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성공적인 무역조정계획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23)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안(내용심사 4)

■심사내용

○ 대량살상무기의 제조 등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 상황허가를 받기 위해 수출계약서, 수입증명서, 물품의 용도와 성능을 표시하는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함. 평화적 목적으로 사용 여부, 군사·외교적 민감성 등을 상황허가 기준으로 규정. 중개허가를 받기 위해 계약 관련 서류, 중개에 관련된 자에 관한 설명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함(내용심사)

☞ 법률의 위임에 따라 상황허가와 중개허가의 신청, 심사기준, 면제조건 등 세부절차를 규정한 것이며 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신청후 15일이내에 허가 여부가 결정되도록 하여 수출업자 및 중개자의 부담을 완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 전략물자 해당여부를 확인받기 위해 물품 등의 기술적 특성명세서, 용도와 성능을 표시하는 기술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함. 통제품목과 비교·검토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 보관대상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함(내용심사)

☞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전략물자 확인에 필요한 제출서류 및 보관대상 자료 등을 정한 것이며 대량살상무기와 관련이 없어 확인, 관련서류 보관 등이 불필요한 품목을 정하고 전략물자수출입관리정보시스템에 저장된 자료는 보관의무를 면제하는 등 기업의 부담을 완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 전략물자별로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명칭, 규격, 통제번호,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 대한 내용 등을 신고. 전략물자를 국내에서 거래할 경우 상대방에게 통제번호, 수출시 허가가 필요한 점 등을 서면으로 통보(내용심사)

☞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전략물자의 제조·수입자의 신고 및 상대방에게 통보에 관한 세부내용 및 절차를 규정한 것임. 국제적 기준(유엔안보리 1540호 결의)에 맞는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를 갖추고 유사 업체가 동일한 확인을 중복적으로 이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

○ 전략물자 확인의무 위반시 조치내용을 대표자의 확인서 및 이행서약서 제출, 교육의 이행명령으로 정함(내용심사)

☞ 전략물자의 확인의무 시행에 따라 확인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제도시행 초기단계에서 처벌에 앞서 제도이행을 유도하는 규제방법이 합리적이므로 원안의결

2. 중소기업청

가. 2006년도 신설 · 강화규제심사 개요

❍ 2006년도에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시행령 · 시행규칙 등 4개의 법령에 대해 내용심사 7건 등 총 7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7건 중 1건에 대하여는 개선 권고, 6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 중소기업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정안	예비심사 (2006.2.3)	원안의결 3	내용심사 3 * 비중요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06.2.28)	원안의결 2	내용심사 1 * 비중요 1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안	제299차 경제1분과 (2006.6.9)	개선권고 1	내용심사 1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306차 경제1분과 (2006.9.28)	원안의결 2	내용심사 2 * 비중요 2
계	–	원안의결 6 개선권고 1	내용심사 7 중요 1 비중요 6

나. 2006년도 신설 · 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정안(내용심사 3)

■심사내용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지정추천 신청은 관련조합, 대표조합 또는 중소기업자 10인 이상이 연명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장에게 제출. 신청서에는 해당 제품과 관련된 산업현황, 내수 및 공공조달시장 규모, 생산업체수 등 경쟁제품의 지정타당성 검토를 위한 자료를 첨부하도록 함(내용심사)

☞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제도는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폐지하면서 도입된 과도기적인 제도로서, 현행 단체수의계약제도를 준용하되 경쟁제한성을 감안하여 물품지정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기존절차를 준용하여 규정하여 원안의결

○ 중앙회장의 경쟁제품 추천 요건으로 국내 생산중소기업이 10개 이상이고, 공공기관의 연간 구매실적이 5억원 이상일 것으로 함. 중앙회장의 추천제외요건으로 관련법령의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로부터 적발된 사실이 있는 제품, 대표조합 또는 관련조합 2/3 이상이 지정제외를 요청하여 지정제외된 제품, 중앙회장이 추천한 제품 중 최근 2회계년도 기간내에 주요 구매기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지정제외 요구가 있어 중소기업청장이 지정제외한 제품 등으로 함

☞ 10개 이상 기업이 참여하는 제품을 선정하여 제품공급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신규지정은 하지 않도록 하여 보호정책에서 경쟁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 추천제외 요건은 관계부처 등으로부터 적발되거나 지정제외요청이 있는 경우 제외토록 하여 제도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등 현행 단체수의계약제도를 준용한 것으로 원안의결

○ 중소기업청장이 연도 중 경쟁제품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유로서 입찰시 물량 및 가격담합, 고의적 유찰 등의 부당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및 수사기관에 의한 조사·수사결과 부당행위가 인정되어 지정제외를 요청하는 제품, 지정추천 신청시 지정사유 등을 허위 또는 과장하여 제출함으로써 지정된 사실이 확인된 제품 등으로 정함(내용심사)

☞ 지정제품이 연도 중 부당행위나 허위 또는 과장에 의한 지정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연도 중에라도 지정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여 경쟁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토록 하는 것으로 필요성 인정되어 원안의결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안(내용심사 1)

■심사내용

○ 중소기업청장이 창투사 · 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한 검사 시 요구할 수 있는 서류와 검사를 할 수 있는 요건을 시행령에서 구체화(내용심사)
- 검사할 수 있는 서류 : ① 창투사의 법인 등기부등본,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확보하고 있는 사무실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② 창업투자회사의 주주명부, 창투조합의 출자자명부, 창투사 및 창업투자조합의 거래계약서,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투자조합의 총계정원장, ③ 창업투자회사 및 창업 투자조합이 거래한 회사의 주주명부 및 법인 등기부 등본 등
- 검사할 수 있는 경우 : ① 창업투자회사의 중요사항에 대한 변경내용을 등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② 창업투자회사의 경영 및 자산 건전성 기준의 미달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

☞ 법에 규정된 검사가 가능한 요건에 맞춰 검사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를 최소한으로 규정함으로써 예측가능성 및 투명성 확보하고 법에 규정된 사유 이외에 법적 의무사항 준수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타당성 인정되어 원안의결

(3)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안(내용심사 1)

■심사내용

○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에 출연하는 기준이 되는 금융기관의 대출금 범위와 출연의 방법, 시기 등을 규정(내용심사)
-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규정을 준용하여 재정자금 대출금, 가계대출금, 외화대출금 등을 제외한 대출금으로 규정

- 금융기관은 매월말 현재 출연금 기준 대출금의 월중평균 잔액의 1000분의 0.4를 다음달 말일까지 지역재단 및 재단연합회에 출연

☞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기관으로 그간 자치단체의 출연과 정부보조금으로 보증재원을 조성하였으나 정부보조금은 2008년부터 중단될 계획임. 정부보조금의 대체재원으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과 같이 동 재단에도 금융기관의 출연금을 배분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 개정되었음. 다만, 출연금의 규모에 있어서 기존 정부보조금과 비교하여 볼 때 연간 922억원의 출연금 징수는 과도한 측면이 있으므로 동 개정안의 출연금 비율을 낮추도록 개선권고

(4)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내용심사 2)

■심사내용

○ 등록대상 임시시장의 범위를 임시시장 토지의 면적이 1천㎡ 이상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이상으로 정함. 임시시장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점포의 분양계획이 포함된 임시시장의 운영 및 관리계획, 임시시장 구역을 표시한 도면 등을 첨부하여 등록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내용심사)

☞ 현재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에서 임시시장을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설하도록 하고 있으나, 임시시장의 개설요건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없어 시·군·구에서 집행상 애로가 있는 상황임. 임시시장의 개설요건으로 시장정비사업기간동안 입점상인의 임시영업에 필요한 경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토지 또는 건물의 연면적이 1천㎡ 이상인 임시시장인 경우에는 시장의 관리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일정 서류를 갖추어 등록하도록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 임시시장 등록 위반시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차등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경우 경과일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 차등화(내용심사)

☞ 임시시장 등록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무분별한 임시시장의 개설을 방지하고 정부 및 지자체의 자금지원을 받은 시장·상점가에 대해 자금의 집행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예산집행의 적정성 확보하며 법률의 위임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를 적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3. 특허청

가. 2006년도 신설 · 강화규제심사 개요

❍ 2006년도에는 변리사법 시행령 등 1개의 법령에 대해 내용심사 2건 등 총 2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2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 특허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안	예비심사 (2006.4.18)	원안의결 2	내용심사 2 * 비중요 2

나. 2006년도 신설 · 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변리사법 시행령(내용심사 2)

■심사내용

○ 특허청장은 변리사회에 대하여 총회 등의 개최결과를 보고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 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내용심사)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법무사법 시행규칙 등 유사입법례와 비교해 볼 때 규제정도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 변리사회 회칙변경시 인가를 받기 위해 인가를 받으려는 회칙, 회칙변경이 회칙의 정함에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제출하도록 함(내용심사)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법무사법 시행규칙 등 유사입법례와 비교해 볼 때 규제정도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제4절 건설교통분야

건설분야집필자 : 천현숙 전문위원(Tel. 2100-2465, hchun922@opc.go.kr)
손선미 사무관 (Tel. 2100-2466, bliss@opc.go.kr)
교통분야집필자 : 이정기 사무관 (Tel. 2100-2467, hansan@opc.go.kr)

1. 2006년도 신설 · 강화규제심사 개요

❍ 2006년도에는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법, 용산민족공원 특별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39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57건, 강화 53건, 강화 · 신설 1건, 내용심사 6건 등 총 117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17건 중 9건에 대하여는 철회 권고, 30건에 대하여는 개선 권고하고, 78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건설교통부의 2006년도 규제는 총 24건임.

< 건설교통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안	제287차 경제1분과 (2006.1.8)	원안의결 3	신설1, 강화2 *중요1, 비중요2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개정안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제288차 경제1분과 (2006.1.24)	원안의결5	신설1, 강화4 *중요2, 비중요3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제288차 경제1분과 (2006.1.24)	개선권고1	강화1 *중요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제288차 경제1분과 (2006.1.24)	원안의결2	내용심사1, 강화1 *중요1, 비중요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제289차 경제1분과 (2006.2.10)	개선권고 1 원안의결 1	신설1, 강화1 *중요1, 비중요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제290차 경제1분과 (2006.2.17)	개선권고1	내용심사1 *중요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제290차 경제1분과 (2006.2.17)	원안의결3	강화2, 내용심사1 *중요2,비중요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제291차 경제1분과 (2006.3.3)	개선권고 1	신설1 *중요1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	제292차 경제1분과 (2006.3.31)	조건부 원안의결 2	신설2 *중요2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293차 경제1분과 (2006.4.21)	원안의결 4 개선권고 1 철회권고 2	신설4 강화 · 신설1 강화2 *중요4, 비중요3
삭도 · 궤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295차 경제1분과 (2006.5.12)	원안의결 5	신설1, 강화3, 내용심사1 *비중요5
도시재정비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제297차 경제1분과 (2006.5.26)	원안의결2	신설2 *중요2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제297차 경제1분과 (2006.5.26)	원안의결1	강화1 *비중요1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	제298차 경제1분과 (2006.6.2)	원안의결 3 개선권고 1	강화4 *중요1, 비중요3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	제299차 경제1분과 (2006.6.9)	원안의결1 조건부원안의결1	신설2 *중요1, 비중요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제300차 경제1분과 (2006.7.6)	철회권고 2 개선권고 5 원안의결 4	신설3, 강화8 *중요9,비중요2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제301차 경제1분과 (2006.7.20)	철회권고 1 원안의결 2	신설2, 강화1 *중요2, 비중요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301차 경제1분과 (2006.7.21)	원안의결 1	강화1 *비중요1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제302차 경제1분과 (2006.8.10)	원안의결 3 개선권고 1	강화4 *중요2, 비중요2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안	제302차 경제1분과 (2006.8.10)	원안의결2	신설2 *중요1,비중요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제304차 경제1분과 (2006.8.24) 제170차 본회의 (2006.9.7)	철회권고1 원안의결3 개선권고1	강화5 *중요4,비중요1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제304차 경제1분과 2006.8.24 제170차 본회의 (2006.9.7)	개선권고1	신설1 *중요1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	제304차 경제1분과 (2006.8.24)	원안의결1	신설1 *비중요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제304차 경제1분과 (2006.8.24)	원안의결 1	내용심사1 *비중요1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개정안	제304차 경제1분과 (2006.8.24)	원안의결 2	강화2 *비중요2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제305차 경제1분과 (2006.9.1) 제170차 본회의 (2006.9.7)	개선권고3 원안의결3	강화4, 신설2 *중요3, 비중요3
항공안전 및 보안에관한법률 개정안	제305차 경제1분과 (2006.9.1)	개선권고 1	강화1 *중요1
골재채취법 개정안	제305차 경제1분과 (2006.9.1)	원안의결 3	강화2, 신설1 *비중요3
철도사업법 개정안	제305차 경제1분과 (2006.9.1)	원안의결 1	강화1 *비중요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306차 경제1분과 (2006.9.28)	개선권고 1	신설1 *중요1
도시철도법 개정안	제306차 경제1분과 (2006.9.28)	원안의결 2	신설2 *중요1, 비중요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306차 경제1분과 (2006.9.28) 제171차 본회의 (2006.9.28)	원안의결 3, 조건부원안의결 2, 개선권고 3, 철회권고 2	신설10 *중요10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제307차 경제1분과 (2006.10.26)	원안의결 1	신설1 *중요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307차 경제1분과 (2006.10.26) 제173차 본회의 (2006.11.8)	개선권고 2	신설2 *중요2
측량법 시행령 개정안	제308차 경제1분과 (2006.11.2)	원안의결1	강화1 *비중요1
용산 민족 · 역사공원 조성 및 주변지역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제311차 경제1분과 (2006.11.23) 제174차 본회의 (2006.11.23)	원안의결 2, 개선권고 3, 철회권고 1	신설6 *중요6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제311차 경제1분과 (2006.11.23)	개선권고2	신설2 *중요2
항공법 개정안	제312차 경제1분과 (2006.12.7)	개선권고 1 원안의결 5	신설3, 강화3 *중요1, 비중요5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제314차 경제1분과 (2006.12.21)	원안의결 2, 조건부 원안의결 1	신설2, 내용심사1 *중요3
계	–	원안의결 78 개선권고 30 철회권고 9	신설57 강화 · 신설1 강화53 내용심사6 중요70

2. 2006년도 신설 · 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신설 1, 강화 2)

■심사내용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 도시환경 정비사업(구 도심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2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 공동주택 건축사업을 추가(강화)

☞ 같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 재건축사업과, 「건축법」에 의한 주상복합주택 건축사업에는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도시환경 정비사업으로 건설되는 주상복합주택 건축사업은 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유사 사업간 형평성을 상실. 따라서,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도시환경 정비사업에 의한 주상복합주택 건축사업에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해 존속기한을 설정(5년)한 현행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율 규정의 적용시한이 '06.4.29 만료되므로 그 존속기한을 3년간('09.4.29까지) 연장 설정(신설)

☞ 광역교통시설부담금제도는 수도권 및 대도시권의 생활권 확대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확충재원 확보를 통해 교통난 완화 등에 기여하여 왔는바 갈수록 복잡화 · 과밀화되는 수도권 등의 교통문제를 광역적 차원에서 해결해 나가기 위해 광역교통시설 관련 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필요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제도의 계속적 운용이 필요하며 부과율 또한 강화하지 않고 현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원안의결

※ 다만, 그동안의 부담금운용에 따른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을 검토하여 1년이내에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

○ 사업지구의 면적이 100만㎡(30만평)이상 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 인원이 2만명 이상인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되어 있는 현행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 사업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복합화물터미널 건설사업을 추가(강화)

☞ 경제자유구역에서 재경경제부장관의 승인으로 시행되는 개발사업은 택지개발·도시개발과 같은 내용의 사업으로서 광역적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며, 복합화물터미널은 2가지 이상의 운송수단간 연계운송 기능을 수행하는 물류기지로서 화물운송에 따른 광역적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임(유통단지개발사업과 유사). 그러나 이들 사업은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대상 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광역교통 수요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기 어렵고, 유사 사업간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대상 사업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2)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안(신설1, 강화4)

■심사내용

○ 주택법 개정('05.12.23)에 따라 분양가상한제를 85㎡이하에서 모든 평형으로 확대됨에 따라 85㎡이하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기간을 5년내에서 10년내로 확대하고 85㎡초과주택에 대해서도 5년 이내 전매제한기간 도입. 청약과열 우려가 높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은 그 외의 지역보다 전매제한기간을 길게 설정(강화)

☞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분양원가를 기준으로 시가 이하로 공급되므로, 단기 전매에 의한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수요 억제와 실수요자 위주의 주택공급체계 확립을 위해 규제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됨.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 85㎡이하에서 모든 평형으로 확대됨에 따라 85㎡초과 주택에 대해서도 전매제한기간 도입 필요성이 인정되며 분양가 상한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 주택법 개정('05.12.23)으로 분양가상한제의 적용범위를 85㎡이하 주택에서 모든 평형으로 확대함에 따라, 기존에 85㎡이하 주택에만 적용되던 재당첨제한도 모든 평형으로 확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강화)

☞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당첨된 자에 대해 일정기간 다른 주택을 분양받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특정인의 과도한 시세차익 취득기회 제한과 청약자들에게 균등한 기회 보장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됨. 이미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고 있는 85㎡이하 주택에 대해 재당첨 제한제도가 적용되고 있으므로 새로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85㎡초과 주택에 대해서도 재당첨 제한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안의결

○ 공공택지내 85㎡초과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청약예금 가입순위대로 공급하되, 제2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의무를 부여하여 주택채권을 가장 많이 매입하는 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과도한 청약과열 방지를 위해 시군구에서 실제 분양가격이 주변시세의 90% 수준이 되도록 채권매입액 상한을 결정 · 제시하도록 함(강화)

☞ 주택법 개정으로 공공택지내 분양가상한제가 85㎡이하 주택에서 모든 평형의 주택으로 확대됨에 따라 새로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85㎡초과 주택의 분양가와 주변지역 아파트 가격의 차이로 과도한 시세차익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청약자가 제2종 국민주택채권(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의무화하여 이를 국민주택기금으로 환수할 필요성 있음. 85㎡이하 소형주택은 전매제한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고 있으므로 85㎡초과 중대형 아파트의 경우에만 주택채권을 매입하도록 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 주택관리업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500세대를 기준으로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바 이를 임대사업자에게까지 확대하도록 함(신설)

☞ 임대사업자도 임대주택의 관리를 위해서는 관리직원을 채용하여야 하는바, 관리직원(관리소장)을 전문자격자로 배치하는 것이 관리의 효율 및 비용 면에서도 유리하며 이미 임대사업자가 관리사무소장을 주택관리사 등으로 배치하고 있는 경우가 39%에 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원안의결

○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2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를 공급할 때에 건축주의 소속근로자 및 당해 사업부지의 소유자에게 당해 주상복합아파트를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건축주의 소속근로자에 대한 주상복합아파트 우선공급제도를 폐지하고, 당해 사업부지의 소유자에 대한 우선공급제도는 유지(강화)

☞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선호 증가, 주상복합아파트의 공개청약제도 정착 등으로 소속근로자에 대한 우선 공급제도를 존속케 할 필요성이 약화되었으며 건축주가 건축회사 소속근로자에 대한 우선공급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존치 필요성이 낮고 악용소지가 높은 소속 근로자 우선공급제도를 정비하여 일반국민에게 주상복합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원안의결

(3)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강화1)

■심사내용

○ 자연보전권역안에서의 연접개발 행위에 대한 제한조항 추가. 자연보전권역안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수차에 걸쳐 연접하여 개발(이하 '연접개발'이라 한다)함으로써 사업의 전체면적이 법 13조에서 정하고 있는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되는 사업(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녹지지역을 제외한다) 및 개발진흥지구안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제외)을 포함. 사업종류는 택지조성사업, 공업용지조성사업, 관광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복합단지개발사업 등임(강화)

☞ 동 개정안의 실효성 제고차원에서, 연접개발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행정기관 및 사업시행자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연접개발 기준의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한 이후, 동 개정안을 시행토록 권고. 동 개정안중 제14조제2항(일괄심의요청)은 행정편의적 조치로서, 현실적인 사업운영 및 실효성을 감안하여 임의조항으로(~요청할 수 있다) 하도록 개선권고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내용심사1, 강화1)

■심사내용

○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하되 경우에 따라 토지취득가액의 5/100에서 10/100까지 차등적용(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10/100,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한

경우: 7/100,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는 경우: 5/100,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경우: 7/100)(내용심사)

☞ 동 개정안의 이행강제금 부과율을 차등화하는 것은 동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농지법 등 현행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농지나 임야를 취득조건인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의 당해 토지가 속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서의 의무거주기간을 6월이상에서 1년이상으로 강화(강화)

☞ 동 개정안은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투기적 거래방지라는 소기의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임. 농지와 임야 모두 사전거주요건 도입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농지 · 임야취득자중 토지거래허가 위반건수(211건)를 대상으로 사전거주기간 분포 분석결과, 사전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토지거래위반비율이 현저히 낮아져, 사전거주기간과 토지거래위반비율간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음.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실효성 및 정부정책기조(8.31부동산종합대책)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동 개정안을 원안의결하되 '06년말까지 규제순응도 조사결과를 규개위에 보고하도록 함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자동차 손해배상 의무보험 가입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적발한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당해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함 (신설)

☞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과태료 부과 제도 등이 있으나 미가입 차량은 증가 추세이며 과태료 납부율도 32% 수준에 불과함. 또한, 미가입 상태에서 차량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도 연 3만여 건으로서 전체 교통사고의 12~13%에 이르고 있는 점으로 보아 현행 재제수단 만으로는 보험가입률 제고 및 사고피해 감소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의무보험 미가입차량의 운행을 억제하기 위한 강제수단으로서 번호판 영치제도의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 유사입법 : 지방세법 제196조의12(자동차세 체납차량의 등록번호판 영치)
*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및 미가입률
  · 169만대('03년)→200만대 ('04년)→205만대 ('05년)
  · 10.5% ('03년) →12.1% ('04년) →12.2% ('05년)

○ 보험사업자 등은 자기와 의무보험 계약을 체결한 자의 의무보험 가입사실 및 해지사실, 자기와 의무보험 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계약 종료 후 자기 또는 다른 보험사업자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실을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이 규정에 위반하여 자료 제공을 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공을 지연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공한 보험사업자 등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강화)

☞ 보험사업자 등의 부주의로 인한 오류발생량을 줄이고 정확한 자료 관리를 위해서는 보험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의무보험 가입사실 뿐 아니라 가입후 해지사실, 계약기간 만료 후 미가입 사실에 대해서도 통지하도록 의무를 강화함과 아울러 의무위반 보험사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도 법 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자기와 의무보험계약을 체결한 자가 당해 계약종료 후 자기 이외에 다른 보험사업자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실까지 통지하도록 의무화 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로 판단되므로 '자기 또는 다른 보험사업자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실'을 '자기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실'로 수정하고 과태료 처분에 있어 보험사업자 등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범위가 불명확하여 처분청의 주관적 판단이 작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하위법령 개정시 그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개선권고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내용심사1)

■심사내용

○ 종전에는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분할이 도시지역에만 한정되었으나, 비도시지역의 토지분할도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법률개정 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분할의 대상지역을 녹지지역 · 관리지역 · 농림지역 ·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분할로

확대(내용심사)

☞ 동 개정안은 '05.12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가 개정됨에 따라, 동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는 내용심사 사항임. 동법 제56조의 도입취지는 기획부동산업체들의 비도시지역내 토지의 소규모 분할매매에 의한 토지투기 방지에 있으며 동 개정안중 종전의 녹지지역이외에 추가된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비도시지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건축행위가 가능한 최소면적 미만이거나 산림형질변경 · 농지전용등이 불가능하여 개발자체가 곤란한 지역의 경우는, 단순매매를 위한 토지분할을 제한하여 피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개발행위허가 기준인 〈별표1의2호 라목(1)〉중 (가)와 (다)요건(가:건축행위, 다:토석채취)은 탈법적인 토지분할 · 매매 방지를 위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 별표1의2호 라목(1)〉중 (나)요건(토지 형질변경)은 투기방지를 위한 동 개정안의 취지에는 부합하는 반면, 법 제정이전 공유지분 소유자의 지분분할 등 불가피한 경우까지도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로 판단되므로 투기목적이 아닌 불가피한 토지분할의 경우를 구제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두어 운용하도록 개선권고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2, 내용심사1)

■심사내용

○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를 당해 토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 · 군 또는 읍 · 면 및 연접한 시 · 군 또는 읍 · 면지역에서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소유하는 토지로 하고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20㎞이내 지역에 거주요건은 삭제하여 요건을 강화(강화)

☞ 토지보상비 급증에 따른 부동산 투기방지와 채권보상 활성화를 통한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동 개정안의 필요성은 인정됨. 현행 규정중 당해 토지가 소재한 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20km는 정확한 실측곤란에 따른 민원증대 등

현실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따라서 토지보상비 급증에 따른 부동산 투기방지 등을 위한 동 개정안의 정책취지를 감안하여, 부재부동산소유자의 요건 중 거리요건을 삭제하는 동 개정안에 대해 원안의결

○ 현재 부재토지소유자에 대해 3천 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채권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 채권보상 대상지역 및 사업, 사업시행자, 보상금액 등을 구체화. 대상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속한 시·군·구 및 연접 시·군·구, 사업시행자는 토공·주공·관광공사·지방공사, 대상사업은 유통단지, 관광단지, 도시개발, 국민임대주택,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이며 보상금액은 [1억원+양도소득세 상당금액] 초과금액임(내용심사)

☞ 동 개정안은 동법 제63조제3항(의원입법, '05.12 공포)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상지역·사업·금액 등을 규정한 내용심사 사항임. 동 개정안의 대상지역·시행자·대상사업 및 보상금액 수준은 채권보상의 실효성 확보와 부동산투기 억제라는 정책목적 달성차원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 토지보상액 산정시 현재 감정평가업자간 평가액 차이가 30%이상 발생하는 경우에 다른 2인 이상의 평가업자에게 재평가를 의뢰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감정평가업자간 평가액 차이가 10%이상 발생하는 경우에 다른 2인 이상의 평가업자에게 재평가를 의뢰하도록 함(강화)

☞ 토지소유자 추천에 의한 감정평가 부실 및 부작용을 해소함으로써 보상평가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필요성은 인정됨. 동 개정안의 적정성 판단을 위해 국내 토지보상액 산정현황 자료와 외국의 경험적 연구를 종합 검토한 결과, 대체로 적정한 감정평가오차 범위가 ±10%~±15%수준으로 나타났음. 토지소유자 추천에 의한 부실감정평가 방지 및 보상평가의 신뢰성 제고등 정부의 정책취지를 고려하여, 동 개정안에 대해 원안의결. 다만, 동 개정안은 실행과정에서 감정평가업자간 가격담합소지 및 민원 증대 등 부작용 발생이 예상되므로, 사업시행자 및 토지소유자추천에 의한 현행 보상평가자 선정제도등에 대한 보완대책 필요

(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신설 1)

■심사내용

○ 건설교통부장관은 자동차사고 후유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시설을 건립하여 의료재활사업 등을 수행할 수 있으며,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재활시설 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등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신설)

☞ 동 규제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재활시설 운영자를 선정하고 재활시설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로서 도입이 필요한 규제라고 인정되나, 시정요구 미이행 사항 중 지정취소에 해당하는 중대사안에 대해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조문에 적시하여 요건화하고, 취소요건에 이르지 않은 정도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별도의 의무이행 확보수단을 마련하도록 하며, 사정변경으로 재활시설 운영업무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지정취소가 가능하도록 한 것은 '사정변경' 또는 '공익'이라는 용어가 추상적 · 다의적 개념으로 법적용의 일관성 및 예측가능성 등의 확보가 곤란하므로 하위법령(시행령 · 규칙)에서 이를 구체화하도록 개선권고

(9)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신설 2)

■심사내용

○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사유 추가 (신설)
- 수요예측 등 타당성조사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때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객관적인 적용기준(지표 · 변수 선정, 부실판단시점, 예측과 결과의 오차범위 등 핵심요소)을 하위규정에서 구체화 하고 부실벌점 부과와 차별화된 기준(엄격한 기준 등)을 적용한다는 조건부로 원안의결

○ 건설업자 등에 대한 부실벌점 사유 추가 (신설)
- 수요예측 등 타당성조사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때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객관적인 적용기준(지표 · 변수 선정, 부실판단시점, 예측과 결과의 오차범위 등 핵심요소)을 하위규정에서 구체화 하는 조건부로 원안의결

(10)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신설 4, 강화 · 신설 1, 강화 2)

■심사내용

○ 감정평가사 자격등록 · 갱신 및 등록거부 · 취소요건 규정(신설)

① 자격등록 및 갱신
-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
- 등록에 필요한 신청절차, 구비서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등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함
- 등록 및 갱신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감정평가협회를 거쳐야 함

② 자격등록의 거부 요건
1. 제24조(결격사유)의 해당자
2. 제23조의 실무수습을 받지않은 자
3. 제47조의 감정평가심의.징계위원회가 자격등록거부를 의결한 경우
4. 이 법에 의해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유예기간 만료된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거부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제3호에 해당하여 등록취소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③ 자격등록의 취소 요건
1. 제24조(결격사유)의 해당자
2. 제47조의 감정평가심의.징계위원회가 자격등록취소를 의결한 경우
3. 사망한 경우
4. 제29조에 의해 자격 취소된 경우

☞ 법무사, 공인회계사 등 현행 국가전문자격사의 자격등록관리제도를 준용한 수준으로 원안의결

○ 감정평가법인의 회계처리 기준 및 절차(신설)
- 감정평가법인은「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법률」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함
- 감정평가법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법률」 제1조의2제1호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매 사업년도 종료후 3월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및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등을 준용한 것으로 원안의결

○ 감정평가업자는 의뢰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원하는 수준으로 감정평가가격을 미리 제시 · 약속하는 등 감정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신설)

☞ '감정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훼손시켜서는 아니된다'는 현행 동법 제37조 제1항의 내용과 중복적이며 자의적 해석가능성이 높아 철회 권고

○ 감정평가사의 보수교육 의무화(신설)
-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감정평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함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은 감정평가협회에서 실시

☞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 업무이해 및 새로운 감정평가서비스에 대한 습득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하는 규제이나, 이는 감정평가사가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자율적으로 준수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과도 상충되므로 철회 권고

○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강화(1년내→2년내) 및 과징금 부과(강화 · 신설)
- 건설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업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심의.징계위원회의 의결에따라 그 등록 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2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수 있음

- 건설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업자가 등록 또는 설립인가취소 및 업무정지를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등록취소등의 처분이 이해관계인 등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등록 취소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5억원이하(감정평가사무소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수 있음

☞ 부실 · 허위평가에 대한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며 법무사법 · 변리사법등 유사입법례를 준용한 수준으로 원안의결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과태료 현실화(100만원 이하→500만원 이하)(강화)

1. 제32조제3항 또는 제3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42조의규정에 의한 업무처리상황 등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허위로 보고한 자

☞ 현행 규정(100만원이하)은 동법 제정당시인 '89년이후 변화가 없어 징계의 실효성을 거두기 곤란하며, 동 개정안의 과태료 수준(500만원이하)은 현행 유사입법례에 비해도 과도하다고 보기 곤란하므로 원안의결

○ 감정평가사 결격사유에 다음사항 추가(강화)

- 금고이상의 실형의 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 감정평가와 관련이 없는 사유로 형을 받은 경우까지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개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높은 과도한 규제로 판단됨. 동 개정안의 결격사유를 감정평가업무와 관련하여 제재를 받는 경우에 한정하도록 개선 권고

(11) 삭도 · 궤도법 시행령 · 시행규칙(신설 1, 강화 3, 내용심사 1)

■심사내용

○ 삭도 · 궤도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건설공사용으로 일시적으로 가설한 삭도 · 궤도를 법 적용대상에 포함(강화)

☞ 그간 동 시설이 제도권 밖에서 방치된 채 수년간 사용됨으로써 인명피해를 수반한 사고가 발생하였고, 설치건수 대비 높은 사고율(약30%)과 사고시 인명 피해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검사 등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 삭도 · 궤도법상 처분가능 대상으로 규정된 위반 행위별로 과징금 · 과태료 금액 및 허가취소 · 사업정지 기간 등 결정(내용심사)

☞ 동 개정안의 처분대상 위반행위는 「재량행위 투명화 추진방안('05. 법제처)」에 따라 동법 개정시 반영된 조치임. 위반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신설항목의 부과금액이 동 법상 한도 내에서 현행 과징금 · 과태료 수준을 준용하여 산정된 점을 고려하여 원안의결

*위원회 보충의견
· 위반행위 중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자가 신고한 공사계획기간 내에 준공하지 아니한 때'에 대해 「과징금 200만원」과 「허가취소」가 모두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법제처 심사시 검토 · 수정

○ 삭도 · 궤도 사업의 준공검사 신청서 제출시 「부품(밧줄, 전동기, 감속기, 활차축) 시험성적서」를 첨부토록 함(강화)

☞ 부품의 사전점검을 위한 것으로 안전성 강화와 사고 예방을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됨. 시험성적서는 부품 제작 · 가공 · 수입시 첨부되므로 별도 비용이 발생되지 않는데 반해, 부품 파손에 의한 사고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안전성 강화의 편익은 클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의결

*「부품파손에 의한 사고」가 전체 삭도사고의 약 21%에 해당(총 38건 중 8건)

○ 삭도 · 궤도시설에 대해 3월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6월마다 시장 · 군수에게 보고토록 함(강화)

☞ 삭도·궤도시설의 점검·정비가 전적으로 사업자 자율에 맡겨져 있어 점검이 부실·형식화될 우려가 있어 현행 실시중인 검사 결과를 관할관청에 보고토록 하는 조치이므로 검사에 따른 별도 비용이 없으며, 시설 안전이 사용자 안전과 직결되는 점을 감안할 때 점검 내실화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점검부실로 인한 기계 오동작 등의 사고 : 12건(삭도사고 총 38건)
*외국 유사사례(일본) : 삭도시설 점검기록을 장기보존토록 하고 관할관청 감사시 이를 확인

○ 추락, 밧줄절단, 충돌, 5인 이상 부상 및 사망사고로 삭도 운송 중단시 사업자의 관할관청 보고를 의무화하고, 이에 대해 관할관청이 안전전문기관과 사고조사반을 구성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함(신설)

☞ 중대사고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사고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 보고 및 조사시스템을 체계화하고자 하는 것임. 피규제자는 업무 처리에 따른 행정비용 외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한편, 원인분석을 통한 사고재발 방지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등에 유사입법례가 존재하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의결

*현행 규정상 삭도사고시 사업자 조치의무는 사고처리(응급조치, 가족통보, 유류품 보관)가 전부임
*유사입법례
- 도시철도 운전규칙 제7조(운전사고 등의 보고)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6조(철도사고 등의 보고)
-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의3(사고보고 의무 및 사고조사)

(12) 도시재정비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2)

■심사내용

○ 기존 도시지역은 재개발 등으로 노후주택을 정비하고 새로운 주택을 공급하여 왔으나 현행 재개발 사업방식이 1만평 내외로 도로, 공원, 학교 등 기반시설 확충이 곤란하여 계획적 주거환경 개선에는 한계가 있어왔음. 따라서 15만평 이상으로 재정비촉진

지구를 지정하여 광역적 정비를 통해 교통, 교육, 문화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높은 주거수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이 제정. 그러나 투기수요 유입에 따른 지가 상승은 광역적 정비를 위해 필수적인 기반시설부지 매입비의 급격한 증가를 초래하여 사업추진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법에서 위임한 재정비촉진지구내 토지거래허가 요건을 20㎡ 이상으로 강화(신설)

☞ 투기수요 유입에 따른 지가 상승은 광역적 정비를 위해 필수적인 기반시설부지 매입비의 급격한 증가로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며, 재정비촉진지구를 부동산 투기장화하는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나 현재 주거지역내 토지거래허가의 대상 규모는 180㎡(54평,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소형토지지분이 많은 뉴타운 사업지구의 경우 거래허가대상이 적어 실효성이 낮음. 따라서 이보다 규모를 대폭 낮추어 효과적이고 강력한 투기억제정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50% 범위 안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은 1순위가 무주택기간과 당해 재정비촉진지구가 위치한 시 · 군 · 구에 거주한 기간이 각각 1년 이상인 자, 2순위는 당해 재정비촉진지구가 위치한 시 · 군 · 구에 거주하는 자, 3순위는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함(신설)

☞ 도시재정비촉진법에서는 재정비사업의 촉진과 주택공급의 확대를 위해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 층수제한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특례로 인한 개발이익이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정비촉진법상의 특례로 증가하는 용적률의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중형임대주택을 인근시세의 90% 이하로 공급하게 되므로 임차인의 자격 등을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안의결

(1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1)

■심사내용

○ 월세 중개수수료 산정을 위한 거래가액 산정방식 변경
- 기존 : 보증금 + 월세 × 100
- 개정 :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동일, 단 거래가액 5천만원 미만의 경우 서민보호를 위해 보증금 + 월세 × 70의 산식 적용

☞ 월세 거주 저소득가구 등의 중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로 원안의결

(14)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강화 4)

■심사내용

○ 건설공사 안전점검 종합보고서 제출의무 및 위반시 과태료(강화)
- 건설공사 안전점검 종합보고서 작성 · 제출의무를 법률에서 정함
- 건설공사 안전점검 종합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 종합보고서 제출의무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규정하고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 확보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의결

○ 품질검사전문기관이 시험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한 때에는 등록관청(지방국토관리청)이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강화)

☞ 시험성과를 조작하거나 시험을 하지 아니하고 시험성적서를 발급(시험성적서를 허위로 발급)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으로 원안의결

○ 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였으나, 그 미달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취소
- 감리전문회사가 소재지를 변경하고 50일이내에 변경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 등록취소(강화)

☞ 규제의 목적에 대한 수단이 비례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많으므로 개정안의 등록기준 미달시 등록취소를 1년이내의 업무정지사유로 변경토록 개선권고

☞ 개정안의 소재지 변경등록 미이행시 등록취소를 1년 또는 6월이내의 업무정지사유로 변경토록 개선권고

○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요건에 적합하게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를 하고, 감리전문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 신고의무, 영업양도 등에 따른 신고의무,

등록취소 처분 등을 받고 용역발주자에게 통지의무, 소속감리원의 처분사항 통지의무 미이행자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토록 규정 (강화)

☞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시 제재할 수 있다는 포괄 규정을 삭제하면서 동시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구체화하여 제재유형별로 적시한 것으로 원안의결

(15)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신설1)

■심사내용

○ 기반시설부담금의 구체적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것임. 개별공시지가의 시군구별 평균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년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 중 정상적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에 해당하는 필지를 제외한 토지의 시군구 별 도시 및 비도시지역 각각의 면적가중평균금액임. 기반시설부담금 산정을 위해 적용할 지역별 용지환산계수는 주거지역 0.3, 상업지역 0.1, 공업지역 0.2, 녹지 및 비도시지역 0.4,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는 별표 3에서 정한 바와 같음. 또한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축허가사항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연면적이 증가되거나 기타 부담금의 금액증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허가 등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변경된 내용에 따라 부담금을 재산정하여 부과하여야 함

☞ 기반시설부담금제도는 8.31 부동산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어 이미 행정적, 사회적으로 널리 공감대가 형성된 바 행정환경 측면에서도 제도 도입에 문제가 없으며 기반시설 중에서도 국민 누구나 필수기반시설로 인정하는 도로, 공원, 녹지, 학교, 상 ·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의 7개 시설에 한정(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 53개)하여 국민이 최소한의 부담으로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또한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용도지역별 환산계수',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 '시군구 별 개별공시지가의 평균' 등은 별도 연구용역을 통해 객관적이고 기술적으로 검증된 수치 및 계수이며 시군구 공시지가 평균을 적용하여 지역 상황에 맞는 융통성있는 부담금의 부과가 가능함. 다만,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를 도시규모별로 차등화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 제도를 1년 정도 시행해보고 도시규모별로 특성반영 정도를 파악하여 재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되므로 조건부 원안의결

(16)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신설 3, 강화 8)

■심사내용

○ 택시 면허기준 중 수송력 공급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여 택시의 지역별 총량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강화)

☞「택시지역별총량제」는 궁극적으로는 공급과잉, 운송원가 상승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택시업계 정상화를 도모하는 조치임. 동 개정안은 이러한 택시지역별 총량제의 법적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나 택시 면허권이 시·도지사에 위임되어 있으며(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제1호) 택시사업이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되, 시·도지사에게 총량제 준수여부에 대한 재량을 부여할 필요

*'94년~'04년 중, 일일대당 수송인원은 26% 감소한 가운데 택시면허 대수는 25% 증가

⇒ 신설되는 단서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토록 개선권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수송력 공급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산정기준을 정하여 면허업무에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구체적 문구는 법제처에서 수정 가능

한편,「총량제」(건설교통부 지침명)라는 용어가 공급량 자체에 대한 절대적 수치 제시의 의미로 오해될 소지가 있음

⇒ 향후「총량제」용어를 공급량 산정시 면허권자에게 재량을 부여하는 가이드라인의 의미를 갖도록 개정할 것을 조건으로 함(예:면허기준, 산정기준 등)

또한, 총량 산정요소가 되는 실차율·가동율 등의 적정성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인 만큼, 추진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지침을 합리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갈 필요

⇒ 추진결과 및 지침 보완·발전 결과를 '09년말까지 규개위에 보고하는 것을 조건으로 함

○ 운수종사자 입 · 퇴사현황을 운송사업자가 조합에 통보(내달 5일까지)하고 조합은 시 · 도지사 및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내달 10일까지)하며, 통보의무 미이행시 5백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강화)

☞ 종사자 현황은 자격요건 확인, 안전 교육실시 등에 활용되어 대중교통 운행의 안정성 및 서비스 제고의 기초가 되는 자료이나, 보고현황 및 관리상태가 매우 부실하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사업자가 이해에 상충되는 자료 제공을 기피하게 되는 점을 감안할 때 보고의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태료 처분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다만, 사업자의 보고시한을 익월 5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자료를 파악 · 취합하고 보고를 완료하기에 사업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공휴일이 포함된 경우도 고려되지 않았음. 또한 조합에서 정부로 이원화된 통보 창구(시 · 도지사 및 건설교통부장관)를 일원화하고 정부내부에서 자료를 공유토록 함으로써 민간의 절차적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보고시한을 재검토하여 연장 조정하고, 보고체계를 변경토록(조합 → 시 · 도지사, 시 · 도지사 → 건설교통부장관) 개선권고

○ 건설교통부 장관, 시 · 도지사는 운송사업자에게 원활한 운송 및 서비스개선을 위하여 현행 사업계획 변경, 노선 연장 또는 변경, 운임 · 요금조정 등 개선명령이외에 노선 단축 명령도 가능하도록 함(강화)

☞ 현행 노선의 연장 · 변경 외에 노선 단축도 가능케 함으로써 대중교통 운행을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한 조치임. 장거리 및 과밀 · 중복 노선, 굴곡 등 난(難)노선 단축으로 운행 시스템 효율화 및 시민의 교통편익 증대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서울 종로는 총 18개의 노선이 중복 경유
*도봉로 간선 축에서 5개 회사가 시 · 종점만 다르게 319대의 버스 운행

○ 건설교통부 장관, 시 · 도지사는 운송사업자에게 천재지변, 노사분규 등으로 대중교통 운행이 곤란할 경우 대체교통수단을 운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위반시 과태료(500만원 이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강화)

☞ 대중교통은 다수 서민의 이동수단으로서 생업을 비롯한 기초생활 영위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운행 중단 시 사회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이에 여객운송 대체수단을 합법적으로 동원하기 위한 동 규제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불가항력적 천재지변 등 특수한 상황에 대비한 위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측면의 편익도 인정됨. 또한 대체수단 제공 사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입법화를 함께 추진 중인 점을 고려할 때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손실보상 관련규정 개정추진
· 동법 제24조제2항(손실보상 의무)의 보상대상에 동 개정내용(제1항 제11호)을 포함

○ 여객운수종사자 자격시험제도(여객운수관계법령, 서비스, 지리숙지도 등)를 버스업종까지 확대하고, 시험관리주체를 시 · 도지사에서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변경(강화)

☞ 시험과목 중 「지리숙지도」는 택시와 달리 정해진 노선을 운행하는 대다수 버스에 필요성이 크지 않은 과목이며, 「여객운수 관계법령」, 「서비스」는 교육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 또한 택시운송사업은 지역별 특성에 따라 사업 여건이 매우 다른 특성이 있어 자격시험 시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중앙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현재의 추세를 감안할 때 현행 규정 유지가 바람직하므로 동 규제의 철회를 권고

*운수종사자는 여객 서비스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음 (동법 제27조,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 9)

○ 자동차대여사업의 사업계획변경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관련조항(제11조)를 준용하면서 동조 「제3항(사업계획 변경의 제한)」만 누락되어 있어 자동차 대여사업에 대해서도 사업계획 변경 제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강화)

☞ 자동차 대여사업자는 운송사업자와 같이 등록 · 신고에 의해 사업계획변경이 가능하나, 이에 대한 제한규정은 준용하지 않음으로써 형평성 문제 야기. 특히 감차명령을 받은 즉시 증차 목적의 사업계획 변경 등록이 가능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을 감안할 때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 및 유사사업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 시 · 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합이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거나, 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한 조합의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정관변경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강화)

☞ 개정안 중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거나」 부분은 재량행위 투명화라는 당초 취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추상적인 표현으로 자의적 해석에 의한 불합리한 규제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거나」 부분을 삭제토록 개선권고

○ 건설교통부 장관, 시 · 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합 또는 연합회에 대해서도 운임 · 요금조정, 운송약관의 변경명령이 가능하도록 함(신설)

☞ 현행 규정상 동일한 개선명령이 개별사업자에 대해 가능하며, 개정안의 피규제자 또한 궁극적으로는 개별사업자라는 점에서 중복규제에 해당. 또한 사업자 단체는 요금조정 등을 사업자에게 명령할 수 있는 법령상 권한이 없어 실제 추진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어 동 규제를 철회토록 권고

○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공제조합의 운영위원회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공제조합에 대한 정부의 지도감독을 강화(신설)

☞ 여객자동차 사고의 손해배상은 동법 규정에 의거한 공제조합에서 처리토록 되어 있어, 조합의 부실운영은 대국민 피해보상과 직결되는 점과 현행 보험업법 등을 준용한 수준임을 고려할 때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다만, 공제조합 부당행위는 단체의 부대사업이라는 형태에서 상당 부분 비롯되는 만큼, 시행상황을 살펴 조합의 형태 개선 등을 검토할 필요

⇒ 이후 시행상황을 점검하여 규개위에 보고토록 하되('08년 상반기중), 개선 미흡시 별도 법인화 등 다른 방안을 검토 · 추진하는 조건으로 원안의결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감면받은 부가가치세(50%)를 목적외 사용시 면허 · 허가 취소, 6개월 이내 사업정지, 사업계획변경 등 처벌이 가능하도록 함(신설)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4)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액의 50%를 경감하고, 이를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에 사용토록 규정

☞ 부가가치세 감면분의 부당사용은 국가가 특수 목적 실현을 위해 경감해준 세금을 횡령하는 행위임. 감면분 미지급, 일방적 집행 등 사업자의 부당사용으로 노사갈등이 야기되고 있으나, 법적근거 미비로 이에 대한 처벌이 곤란한 점을 고려할 때 조세질서 확립 및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판단되므로 원안의결

*감면분 미지급 사업자에 대한 송파구청의 사업일부정지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가 법적 근거 부재를 이유로 기각

○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득한 때 등의 사유로 택시운전 종사자격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도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강화)

☞ 개인택시는 운영 자율권, 높은 수익성 등 법인택시에 비해 운행여건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만큼, 무사고 경력 등 운전기사의 자질에 있어서도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면허 취소 후 일정기간 경과시 법인택시 종사 및 개인택시 사업 취득 자격이 다시 생기는 점을 감안할 때 생업 종사에 대한 과도한 침해는 아니라고 사료되어 원안의결

*1년 경과후 종사자격시험 응시 가능(자격 재취득시 법인택시 취직 가능)
*사업면허 재취득 제한기간(2년) 경과 및 무사고경력(통상 3년) 충족 시 개인택시사업면허 취득 자격 회복

(17) 자동차관리법(신설 2, 강화 1)

■심사내용

○ 자동차 부품 등의 제작·수입자는 그 부품 등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인증하여야 하며 허위·부정 및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자기인증 시 제작·판매를 중지토록 하고, 자기인증 의무를 위반하여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부품 등을 판매한 자에 대해 과징금(매출액의 0.1% 한도)을 부과(신설)

☞ 국회,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자동차에 대한 「자기인증제도」를 자동차 부품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생명과 직결되는 자동차 부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소비자의 권익과 편의를 도모하는 조치임. 영세업체에게는 자기인증에 따른 부담이 있을 수 있겠으나, 비용이 안전 확보라는 편익을 상회하는 수준은 아니라고 추정되므로 원안의결. 다만, 불필요한 부담의 최소화를 위해 품목 선정 등에 업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하위법령 개정 시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을 조건으로 함

○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 부품으로 운행한 경우 과태료 부과(강화)

☞ 자동차 및 부품은 그 전문성을 감안할 때 소비자가 안전 적합성 여부를 인지하기가 매우 어렵고 정비과정 등에서 충분한 정보 없이 사용하게 될 가능성도 있음. 안전기준 미달 상품이 유통되는 것은 제작 · 판매 과정상의 관리강화를 통해 해결할 문제로, 소비자는 오히려 피해자인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바, 운행자에 대한 과태료는 제작 · 유통과정에서의 부실을 피해자인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문제가 있으므로 동 규제의 철회를 권고

○ 자동차 제작자등은 자동차 소유자 또는 소유하였던 자가 결함 사실의 공개 전 3년 내에 시정대상인 결함을 수리하기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그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신설)

☞ 리콜 대상 결함을 사전 시정한 경우, 소비자간 형평성 차원에서 제작자가 이를 보상함이 타당하나, 그간 관련규정 부재로 결함을 조기에 인지한 소비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 동 개정안은 제작자가 자체 귀책사유에 의해 발생한 수리비용을 부담하게 한다는 점에서 현행법령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3년'의 기간은 「민법상 업무 관련 채권」의 시효를 감안하여 산정한 것으로써 원안의결

*미국 : '03.12월부터 리콜 보상제도(recall reimbursement) 시행

(18)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1)

■심사내용

○ 학 · 경력건설기술자에 대한 기술등급 인정 범위 축소(강화)
- 특급은 기술사만 인정, 기사 · 산업기사는 고급까지 승급 가능, 학 · 경력기술자는 초급만 인정

☞ 학 · 경력 인정기술자제도는 건설경기 호황으로 부족한 건설 기술자의 대체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을 고려하여 원안의결

(19) 주택공급규칙 개정안(강화 4)

■심사내용

○ 민영주택 등의 우선공급 대상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재건축 대상이 되는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 · 공급하는 경우 사업부지 소유자에 대한 우선공급 규정 적용 제외(강화)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 대상사업을 건축법에 의한 주상복합사업으로 추진시 사업부지 소유자에 대한 주택의 우선공급 제한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 사업주체의 주택 공급 시,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3자녀 이상을 둔 무주택세대주에게 그 건설량의 3퍼센트 범위안에서 주택을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토록 함(강화)

☞ 저출산으로 인한 성장잠재력 약화 문제 해소를 위한 출산장려 인센티브사항으로 원안의결

○ 85㎡ 초과주택을 특별공급 받는 경우 당해주택이 속한 단지에서 일반공급되는 해당 주택면적의 당첨자에 대한 평균적인 제2종 국민주택채권매입 예정액만큼 채권을 매입할 의무 부과(강화)

☞ 85㎡ 초과주택을 특별공급 받는 경우 일반공급 되는 당첨자와 형평성을 맞추고 일반 분양주택과의 가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보완 사항으로 원안의결

○ 현행 시장 등은 사업주체로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안의 승인신청일로부터 5일이내에 사업승인토록 되어있으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경우 분양가의 적정성검토를 위해 「분양가상한제자문위원회」를 개최, 심의하여야 하므로 분양승인 소요기간을 15일 이내로 정함(강화)

☞ 분양승인소요기간은 가급적 짧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원칙적으로 10일 이내로 하고 불가피할 경우 추가로 5일까지 연장 가능토록 개선권고

(20)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정(신설2)

■심사내용

○ 주거환경정비사업에 있어서 건설업자등(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의 개별적 홍보행위·홍보목적 금품제공을 금지하고 합동홍보설명회를 통해서만 홍보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함(신설)

☞ 현재는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홍보방식에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시공자의 개별적 조합원 방문과 금품수수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비용발생은 조합원 부담의 증가는 물론 일반분양가 상승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개별홍보행위의 금지는 시공업체의 홍보방식에 대한 제한으로서 조합원의 시공자 선정에 대한 직접적 규제는 아니며 시공자와 조합간의 이면거래 발생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차원에서 홍보방식에 대한 제한필요성이 인정됨. 합동홍보설명회는 개별기업의 자금동원능력 차이에 따른 홍보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홍보를 유도하기 위해서도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 시공자선정을 위한 조합총회시 서면의결권의 의사정족수 산입을 제한하고 조합원의 과반수가 참석한 경우에만 총회구성이 가능하도록 하며 건설업자 등 관련자의 동의서 징구 금지(신설)

☞ 시공자선정은 정비사업에 있어서 결정적이고 매우 중요한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조합총회의 조합원 참석률은 10%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서면결의서를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로 인정하여왔기 때문이며 시공자선정을

위한 총회구성 및 의결요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시공자의 사전 개별적 홍보를 통한 시공자와 조합집행부간의 담합가능성을 차단하고, 조합원 직접 참여를 통해 조합원의 의사를 공정하고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서 개정안에 원안의결

(21) 개발이익환수에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강화5)

■심사내용

○ 동일인이 연접 개발시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전체 면적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바 이 경우 '하나의 사업'임을 판단하는 동일인의 범위를 현재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서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까지 포함하도록 확대(강화)

☞ 현재 동일인 범위에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포함되어있으나 이를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 시부모)과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 며느리)까지 확대하는 것은 법에서 위임된 동일인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이며 배우자 혈족 중 배우자 직계존속만을 동일인에 포함시켜야 하는 근거도 미약함. 또한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연접지역에서 하나의 사업을 시행 시 양자간 명의신탁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기는 하나 명의신탁이 분명하다면 이는 명의신탁을 금지하는 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철회권고

○ 현재 준보전산지를 개발사업 총면적의 70% 초과하여 개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부담금의 50%를 감면하고 있으나(법 제7조제2항) 감면대상 사업 중 '판매 및 영업시설과 창고시설 설치사업'은 민간의 영리적 사업이므로 감면대상에서 제외(강화)

☞ 준보전산지를 개발하여 판매 및 영업시설과 창고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감면대상으로 하였던 것은 과거 산지이용촉진차원에서 도입된 것으로 현재 시점에는 타 개발사업에 비해 특혜의 소지가 있으므로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안의결

○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은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최근 개별법으로 신설된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비수도권 공업용지 제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공업용지 · 투자진흥지구 · 특별개발우대사업 제외), 지역특화발전특구특화사업(중소기업 공장용지 제외), 평택시 및 국제화계획지구개발사업, 경륜장 · 경주장설치사업 등도 부과대상사업으로 추가. 또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에 '개발행위허가 등에 의하여 시행하는 건축물의 건축'(제10호)과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건축물의 건축'(제9호)외에 건축을 수반하지 않으면서 개발행위허가 등에 의하여 지목을 변경하는 사업도 포함(강화)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은 2002.1.1 이후 부과가 중지(수도권은 2004년)되어 왔으므로 그동안 신설된 사업을 부과대상에 추가할 필요성이 있으며 금번 개정안에서 추가되는 토지개발사업들은 토지개발로 인해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전형적 토지개발사업으로서 개발이익 환수라는 동 법 입법취지에 부합되므로 원안의결

☞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토지형질변경 등 개발행위 시행시 건축물의 건축이 없더라도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되며 '개발행위허가에 의해 지목을 변경하는 사업'은 개발행위허가와 지목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토지개발 사업이므로 부과대상사업으로 하는 것이 동 법의 입법취지에 부합되므로 원안의결

○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은 개발사업의 인가일인 것이 원칙이나 토지 취득 후 인가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이용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을 개시시점으로 함. 또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특별법,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지역특화발전특구에관한규제특례법, 경제자유구역의지정운영에관한법률,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등의 권역 · 구역 · 특구 등과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지정 등의 토지이용계획을 개시시점이 토지취득일이 되는 토지이용계획에 포함(강화)

☞ 개시시점을 취득시점으로 하는 토지이용계획에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특별법, 기업도시개발특별법 등의 권역 · 구역 · 특구 등을 포함하는 것은 그동안 개발부담금 부과중지로 인해 개발부담금 환수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토지개발이익을 적정 환수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고자 하는 법 목적에 부합되며 기존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과의 형평성 제고차원에서도 개정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 납부의무자가 부담금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증명하여 실제 매입가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신고필증 사본, 「부동산등기법」 제67조에 의한 등기필증 사본, 「공증인법」에 의한 증서등본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강화)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등과 연계하면 납부의무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부동산거래시 접수된 신고번호 입력만으로 부동산거래자료 확인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전산화된 정보자료 이용을 통하여 매입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추가하여 납부의무자의 편리성을 제고하도록 개선권고

(22)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신설1)

■심사내용

○ 「8.31 부동산제도개혁방안」 후속대책(3.30 정책)의 일환으로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이행하여야 하는 신고의무사항에 기존의 실거래가액 이외에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을 추가(신설)

☞ 당초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에서만 운영되던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가 '06.1.1부터 전국의 모든 주택에 대해 시행됨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의 효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지적 시장관리 필요 차원에서 동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됨. 그러나 국세청 훈령(1344호)에 의해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의 자금출처조사가 이미 시행되고 있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제도의 시행으로 선의의 일반 국민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주거나 개인 금융정보제공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따라서 소득세법상 고가주택으로 분류되는 실거래가 6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시행하도록 개선권고

(23)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신설1)

■심사내용

○ 재건축 초과이익 산정에서 제외되는 개발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적정성을 확인하는 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발비용은 납부의무자가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회계감사를 받은 후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시하여야 하며 납부의무자가 제시한 비용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건축비 등에 비추어 적정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시군구 위임)이 외부 전문기관에 회계감사를 의뢰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 개발비용의 적정성을 확인하도록 함.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등으로 '개발비용 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음(신설)

☞ 개발비용이 과도하게 산정될 경우에는 초과이익이 실제 발생한 것보다 축소되어 부담금 부과의 실효성이 약화되므로 개발비용산정의 정확성을 기할 필요가 있음. 재건축조합에서 제출한 개발비용 산정내역을 검증절차 없이 그대로 인정할 경우 부담금 부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재건축조합에서 편법 또는 불법적으로 개발비용을 부풀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발비용산정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한 확인절차가 필요하므로 원안의결

(24)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안(내용심사 1)

■심사내용

○ 건설교통부령에 위임된 토지분할제한지역내 예외의 경우를 구체화(내용심사)

1. 상속에 의한 토지를 상속자간에 분할하는 경우
2. 지적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3. 기존 묘지를 분할하는 경우
4. 국 · 공유의 잡종재산중 매각 · 교환 또는 양여하고자 하는 경우
5. 토지분할 제한지역내의 주민간에 농업 · 축산업 · 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여 상호 교환 · 매각 · 매수하는 경우

☞ 토지분할 제한지역 고시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의결

(25)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강화 2)

■심사내용

○ 이층구조 승합자동차에 대한 안전기준 도입(강화)

☞ 이층버스는 청계천 등에서의 관광편의를 위해 서울시에서 도입 요구('06.1월)한 것으로 비상시 안전과 승하차시 편의를 위해 승강구 및 연결 통로에 대하여 유럽기준(ECE Regulation)을 준용한 수준으로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화재에 대비하여 위층에 별도로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서울시에서 2대 정도를 수입 추진중이며, 타 지자체에서도 일부 도입 가능
*소화기 추가설치 비용은 버스 대당 약 17,000원

○ 자동차 등록번호판 규격별로 조도측정 기준을 세분화하고 조도 측정점의 위치를 개선하는 등 현행 기준을 보완하여 조도기준 개선(강화)

☞ 자동차 등록번호의 야간 시인성(알아 볼 수 있는 정도) 확보를 위해 번호판 크기와 형태에 적합하도록 조도기준을 개선한 것으로 EU와 동일한 긴 규격(520×110mm)에는 EU 기준을 준용하고, 기타 규격은 미국·EU의 측정공식을 반영하는 등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어 원안의결

(26)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강화4, 신설2)

■심사내용

○ 건설산업정보망에 연계할 자료의 범위에 건설업자의 보증사업 이용정보, 건설인력의 수급상황을 포함하고, 자료요청 대상기관에 건설관련 보증사업 수행기관과 건설인력 관련단체를 추가. 이는 건설업자의 건설보증 이용실적과 공사수행 정보를 연계하여 다단계 하도급을 확인·시정하고, 건설인력 육성시책의 수립 및 추진에 활용하기 위한 것임(강화)

☞ 건설산업정보의 종합적 관리와 건설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임. 건설산업정보망과 건설관련 보증이용실적, 건설인력 관련정보를 연계하여 다단계 하도급 해소 등 건설산업의 투명성 강화와 건설전문인력 육성시책 추진에 활용하도록 원안의결

○ 발주자가 하도급관계의 적정성에 관한 심사를 함에 있어, 현재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에 관한 심사가 계약이후에 이루어져 사후적 시정요구만이 가능한 점이 한계임. 따라서 하도급자 선정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와 부조리 해소를 위하여, 원도급 건설사가 제출하는 하도급계획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함(신설)

☞ 하도급부조리에 대한 사전적 방지시스템 구축 및 원도급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부터 하수급인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나 모든 공사에 대해 입찰 및 계약단계에서 하도급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은 건설업체에 대한 지나친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시행령 등에서 대상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시행령에서 동 제도의 적용대상 범위를 저가하도급문제에 대한 시정이 특별히 필요한 공사 등으로 한정하는 근거를 제시하도록 개선권고

○ 원도급사 파산, 대금지급확정판결, 대급지급보증서 미교부 등의 사유 발생시 현재는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임의조항으로 하고 있으나 이를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조항으로 개정(강화)

☞ 현재 발주자와 수급인간 합의, 확정판결, 수급인의 파산, 지급보증서 미교부 등을 임의적 지불사유로 정하고 있으나 이를 의무적 지불사유로 변경하여 하도급대금에 대한 하수급인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본 개정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하도급법에서 정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관한 조항과 비교시 하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 대한 규정이 누락되어 있음. 따라서 본 개정안이 하도급법의 유사 규제보다 강화된 측면이 있어 원도급 건설업체의 대금수급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하도급법의 유사규제와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하수급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도록 개선권고

○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명령 대상에 발주자가 저가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적정성을 심사한 결과 부적정한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와 도급계약시 건설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료를 별도로 산출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추가(강화)

☞ 법령상 기규정된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고, 과징금과 같은 징벌적 규제가 아니라 행정명령을 통하여 위반사실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원안의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건설업자의 폐업사실이 확인되어 등록말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강화)

☞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건설업자의 폐업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청문을 생략하는 것이므로 원안의결

○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재하도급하는 것에 관하여 현재는, 행정기관의 점검과 단속을 통하여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통하여 처벌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건설현장에서 불법재하도급을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원수급인의 적극적 관리를 통하여 재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하여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이 불법재하도급을 하지 않도록 관리(현장소장의 통상적인 공사관리업무 범위내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원수급인이 불법 재하도급을 지시 또는 묵인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수급인이 불법 재하도급으로 제재받은 경우에 한함)(신설)

☞ 원수급 건설사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계획·관리·조정하여 시공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어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도 본질적 업무내용에 포함되며(「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관리 및 조정에 관한 지침」참조) 따라서 하수급인의 불법재하도급에 대하여 원수급인이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동 규제 도입으로 건설공사 전반을 계획·관리·조정하는 원수급 건설사의 불법재하도급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질 경우 불법재하도급 방지와 하도급질서 확립에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음. 다만 원수급 건설사가 불법재하도급을 지시 또는 묵인한 경우의 처벌규정은 행정제재 대상이 되는 '묵인한 경우'에 대한 요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원수급자가 불법재하도급이 발생한 경우를 알고 있었거나 방치한 사실을 처분청이 확인한 경우에 한해 처벌할 수

있도록 처벌요건을 명확히 하고 해당 경우를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개선권고

(27)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강화 1)

■심사내용

○ 현재 운항 중 항공기에만 적용하고 있는 항공기 내 승객의 안전유지 협조 의무를 계류 중 항공기에 확대 적용(강화)

☞ 계류 중 상태에서 승객의 안전유지 의무위반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부재로 사태 발생시마다 임의 대응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다수의 선량한 승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수단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동 규제의 확대 필요성이 인정됨. 그러나 현행 운항 중 의무사항 규정은 위반 시 고액의 벌금 및 징역조치와 연계되어 있는 바, 계류상태에서는 안전성이나 기내환경에 대한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극단적인 경우 승객의 하기조치 등이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규제는 하되 위반 시 제재는 운항중인 경우와 법문상 규정을 별도 분리할 것을 개선권고

(28) 골재채취법 개정안 (강화2, 신설 1)

■심사내용

○ 골재채취업 등록취소 · 영업정지 처분대상 추가(강화)

① 등록취소 대상 추가
-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한 경우

②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6개월 이내) 대상 추가
- 승인 없이 허가내용을 변경하여 골재 채취
- 허가 내용과 달리 골재 채취
- 지정기간 내 채취구역 복구 등 미조치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거나 채취중지명령을 위반하여 골재를 채취한 때

☞ 처분대상에 추가된 내용들은 허가 · 영업정지 · 채취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고의적으로 위반한 사항들로서, 이에 대한 제재는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 골재채취구역 복구에 하자 발생시 복구의무를 부여하고, 하자보수보증금(복구공사비 총액의 10% 범위 내)을 미리 예치(신설)

☞ 하자 복구에 대한 의무 부여로 책임감 있는 복구공사를 유도하는 한편, 하자 발생시에는 토지소유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이의 복구를 신속하고 합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 허가취소 대상에 「채취중지명령을 받은 자가 중지기간 중 골재를 채취한 경우」를 추가(강화)

☞ 위법행위 등에 대한 처분으로서의 채취중지 명령을 또다시 위반한 경우를 제재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가청렴위 의견을 반영한 조치임을 감안하여 원안의결

(29) 철도사업법(강화 1)

■심사내용

○ 화물 송하인의 운송장 기재내용(화물 품명 · 중량 · 용적 · 개수)에 따른 운임이 정상운임에 부족한 경우 송하인에게 그 부족운임과 부족운임의 5배 이내 범위의 부가운임 징수(강화)

☞ 운송장 내용과 다른 화물 운송시 부당운임으로 인한 운송질서 문란 외에도 과적 · 위험품 취급 소홀 등에 의한 안전상 문제가 발생 가능하므로 부족운임 및 부가운임 징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확한 운송장 기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외 유사입법례를 고려하였으며 구 철도법상의 부가운임 징수 규정을 준용한 조치로써 원안의결

*현재는 「철도화물운송약관」에 의거 징수

– 부족운임 및 그 3배(위험품은 5배)의 부가운임 징수(제23조)

*舊 철도법('05.7.1 폐지) : 부족운임 5배 이내 부가운임 징수 규정(제38조)

(30)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1)

■심사내용

○ 질병에 의한 교체 감리원에 대해 일정기간 감리PQ 참가 및 타 현장배치 금지(신설)

☞ 질병 사유 철수 후 3개월 이전에 완치되었으나, 당초 공사가 준공된 경우 선의의 피해가 발생 가능하므로 선의의 피해 방지를 위한 예외단서를 추가할 것을 개선권고. (또한 법률적 근거가 논란이 될 수 있으므로 향후 건설기술관리법 개정 시 관련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거나 동 규제 내용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는 것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 바람.)

(31) 도시철도법(신설 2)

■심사내용

○ 도시철도의 선로 · 전력설비 · 정보통신설비 등 도시철도시설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 · 관리하여야 함(신설)

*도시철도시설(법 제3조제3호)

· 도시철도의 선로, 역사 및 역무시설,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시험 · 연구시설 등

☞ 도시철도의 안전운행과 이용객의 안전 및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철도시설에 대해서 체계적인 안전기준을 설정하여 설치하고 유지 ·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성이 인정됨. 그러나, 도시철도법 제3조제3호에 규정된 도시철도시설 전부에 대하여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은 그 시설의 종류와 내용에 비춰 볼 때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건설교통부령으로 안전기준을 정할 때 그 대상이 되는 시설을 안전운행에 필요한 시설로 한정할 것을 조건으로 원안의결

○ 도시철도시설 제작자등이 도시철도시설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성능시험을 받도록 함(신설)

☞ 도시철도시설에 대한 성능시험을 통하여 도시철도시설의 품질 및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3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신설 10)

■심사내용

○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 도입(신설)

☞ 일률적으로 모든 사업자에 대해 정기적 재신고를 의무화한 것은 과도한 규제로 판단되어 삭제토록 개선권고

○ 부동산개발전문인력의 사전교육 이수를 의무화(신설)

☞ 종사자의 전문성은 일회성의 교육과정 이수에 의해 확보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되나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동 규제를 3년 동안만 시행하는 조건으로 원안의결

○ 미등록사업자가 표시 · 광고행위를 하는 때에는 등록사업자로 오인할 수 있는 사항의 표시 · 광고행위를 금지(신설)

☞ 소비자에게는 적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의사 결정을 돕고, 사업자에게는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의 유인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 부동산개발업의 양도시의 신고 의무화(신설)

☞ 양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양도제도의 악용으로 등록제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 등록사업자는 매년 사업실적과 부동산개발전문인력 보유현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신설)

☞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은 개별 사업시마다 가능할 것이므로 정기적 보고 의무를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판단되나, 업계 내실화 유도를 위해 3년 동안만 실시하는 조건으로 원안의결

○ 등록기준 심사, 부동산개발의 적정성 판단을 위한 부동산개발업자 실태조사(신설)

☞ 실태조사가 가능한 경우가 「 ----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등으로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조사기간 · 방법 등도 구체화되어 있지 않음. 조사가 가능한 경우, 조사기간 및 방법 등을 하위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하고, 하위규정 위임을 명문화하도록 개선권고

○ 부동산개발업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무(신설)

☞ 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하더라도 사업자의 협조나 행정기관간 정보공유에 의해 추진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철회권고

○ 부동산개발업자에 대해 허위 · 과장정보 유포, 전화 ·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한 부동산 구매 강요 등의 행위를 금지(신설)

☞ 속칭 「기획부동산」으로 명명되는 사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규제로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동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동의

○ 동법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신설)

☞ 위반행위의 조사가 가능한 경우를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로 포괄적으로 규정. 해당내용을 구체화하여 열거토록 개선권고

○ 부동산개발 관련 협회의 인가, 지도 · 감독(신설)

☞ 사업자들의 자생적 단체인 협회를 법정할 필요성이 의문시되며, 오히려 담합조장, 이익집단화 등 이로 인한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어 부동산개발업자의 단체 관련사항을 규정한 제5장을 철회할 것을 권고

(33)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 감리전문회사의 하자보증 의무화 (신설)

☞ 현재도 관행상 하자보증이 이루어지고 있어 업체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하자 담보기간 등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업의 예측가능성 및 행정투명성을 제고하는 등의 효과가 기대되어 원안의결

(3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 시행규칙(신설 2)

■심사내용

○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화물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1차 위반차량 운행정지 10일, 2차 위반차량 운행정지 20일, 3차 위반차량 감차조치 등 행정처분하거나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신설)

*화주가 밴형화물자동차에 동승할 경우의 화물기준 : 현행) 화주 1인당 40kg, 8만m^3 → 개정안) 20kg, 4만m^3

☞ 밴형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대부분 차량 1대를 갖고 사업을 하는 형편을 감안한다면 3차 위반시 감차처분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허가 취소(사업 퇴출)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과중한 처분으로 판단되므로 행정처분을 일부 경감(예 : 3차이상 위반시 감차처분 대신 위반차량 영업정지 30일)하고 3차이상 위반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액을 상향 조정(예 : 30만원 이상의 과징금)하도록 개선권고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양도 · 양수신고서 첨부서류에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추가(신설)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고 화물자동차의 불법 주차로 인한 민원을 예방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 · 양수시에도 차고지 설치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은 타당성이 인정됨. 그러나,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 · 양수시 차고지를 포함하여 양도 · 양수하는 경우에도 예외없이 차고지설치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므로 양도 · 양수 계약서 사본 등으로 차고지의 양도 · 양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차고지 설치 확인서 제출을 면제하도록 개선권고

(35) 측량법 시행령 개정안(강화1)

■심사내용

○ 초급기술자 및 초급기능사를 제외한 학 · 경력에 의하여 인정된 기술자제도를 폐지하고 특급기술자는 기술사만 인정.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는 고급까지 승급 가능하고 학 · 경력기술자는 초급만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 단, 기 배출된 학 · 경력기술자의 법적지위는 계속 인정(강화)

☞ 지형 및 공간에 대한 정보처리전문인력의 종합적 관리와 육성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임. 학 · 경력 인정기술자는 과거 건설경기호황으로 부족한 건설기술자 대체인력 확보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이나 현재는 공급과잉으로 인한 수급불균형 심화로 국가기술자의 고용불안정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21C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수한 기술사 양성 · 활용차원에서 개정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36) 용산 민족 · 역사공원 조성 및 주변지역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신설 6)

■심사내용

○ 공원 관리에 장애가 되는 이용자의 행위 제한 및 과태료 부과 (신설)
- 용산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말라죽게 하는 행위
- 심한 소음 또는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 동반한 애완동물 등의 통제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그 밖에 용산공원의 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등

☞ 다중시설 내에서 당연히 준수되어야 할 내용으로 도시공원법 등의 유사 입법례를 준용한 것이며, 위반시 과태료(10만원 이하)는 경범죄처벌법상 경범죄행위자에 대한 벌금과 같은 금액으로 적정한 수준이라 판단되어 원안의결

○ 용산공원안에서 공원외 시설이나 공작물 등을 설치 하고자 할때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함 (신설)

☞ 용산공원이 국유재산이며 다중이용 공공시설임을 감안할 때, 공작물 설치 · 토지 형질 변경 등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됨이 타당하며, 허가는 이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로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한 투기방지 조치 및 인접지역의 무질서한 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 제한 (신설)

☞ 제시된 방안들은 모두 기존 개별법에 의해 대체될 수 있는 내용이며, 용산구는 「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투기지역」 등의 조치를 적용받고 있는 상황임. 상징적인 의미 외에 실효성이 없어 철회토록 권고

※ 다만 건설교통부, 서울특별시장 등에 대한 선언적 책무조항으로 대체

○ 사업시행자는 타인의 토지 출입 및 일시사용 가능 (신설)

☞ 타인토지 출입 요건이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 규정. 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과도한 재량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구체화하도록 개선권고

○ 토지보상법 규정에 의한 적절한 보상을 전제로 필요한 토지 등의 제반권리를 사용 또는 수용 (신설)

☞ 사업지구 외에 인접 토지 · 건축물에 대해서도 수용 · 사용을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요건 또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로 매우 추상적임. 국민의 사유재산 침해로 직결될 수 있는 내용인 만큼, 그 요건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명시토록 개선권고

○ 동법 위반자에 대해 사업중지, 허가취소 등의 처분 (신설)
-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자
-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허가 · 지정 · 승인 등을 받은 자

☞ 조치대상 행위와 조치내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토록 하며, 조치내용을 각각의 위반 행위별로 명확히 제시하도록 개선권고

(37)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신설2)

■심사내용

○ 대형건축물에 부과되는 과밀부담금을 감면받은 후 당해 건축물을 감면대상이 아닌 건축물로 변경하는 경우 추징 근거 마련(신설)

☞ 과밀부담금 납부 회피를 목적으로 제도를 악용하는 등의 탈법 사례를 근원적으로 방지할 필요성이 있으나 과밀부담금 감면 이후 추징에 대한 근거규정 부재로 부담금 부과시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 발생하고 있으므로 추징 근거 마련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 단 특정 시설로부터 해제를 사유로 인해 과밀부담금 추징시 건축이후 소유권변경으로 인해 건축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담금 납부의무자에 대해 법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을 부과기준일로 하고 있는 현재 규정으로는 해제로 인한 부담금 부과시 부과기준일이 명확치 않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되어야 하므로 과밀부담금 추징 시 납부의무자 및 부과기준일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개선권고

○ 정비발전지구는 공공기관 이전지역과 노후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현행 수도권 규제가 선별적으로 완화하여 적용하는 제도로서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자치구의 구청장은 동 지구내에서 정비발전지구계획에 일치하지 않는 개발행위에 대해 제한할 수 있음

☞ 정비발전지구에 대한 수도권규제의 완화로 인해 정비발전지구 지정 자체가 부동산 투기 또는 난개발 등의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개발행위 제한이 없을 경우 산발적인 건축행위로 인해 사후에 불필요한 보상이나 철거 등이 이루어질

개연성이 높음. 따라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지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구전체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일시적인 개발행위허가제한 조치 필요성이 인정됨. 그러나 개발행위 제한여부가 자치단체 장의 재량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제도도입의 실효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정비발전지구계획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개발행위에 대해 자치단체장이 허가를 해서는 안 되는 분명한 의무를 부과하도록 개선권고

(38) 항공법(신설 3, 강화 3)

■심사내용

○ 항공훈련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된 항공훈련기관에 대한 처분 기준 등을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강화)

☞ 항공훈련기관 지정 제도는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에 명시된 국제기준을 이행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써 내실 있는 항공훈련 시행으로 인적요소로 발생할 수 있는 항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항공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 항공운송사업자 등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립한 항공안전프로그램에 따라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용하도록 함(강화)

☞ 항공안전관리체계를 최근 개정된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의 표준 및 권고사항에 부합되도록 체계적으로 개편하여 국제기준을 충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타당성이 인정되나,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수립 · 운용 대상자를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위임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개선권고

○ 외국인 국제항공운송 사업자는 당해 국가에서 발급한 운항증명 및 운영기준 사본을 탑재하고 운항하여야 하며, 동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운영기준 준수여부를 검사 할 수 있도록 함(신설)

☞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의 기준에 따라 항공기 등록국가에서 발행한 운항증명, 운영기준 사본을 항공기에 탑재하여 운영토록 함으로써 외국인 국제항공운송

사업자의 안전규정 준수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 외국인국제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하여 항공법 제40조(의무무선설비), 제41조(항공계기 등의 설치 · 탑재 및 운용 등), 제47조(주정음료 등), 제70조제1항(항공교통업무), 제119조(운송약관 등의 비치), 제122조제3호 · 제4호 · 제5호 · 제6호를 추가 준용(강화)

☞ 국내에 운항중인 외국 항공사 중에는 최근 안전에 문제가 되고 있는 저가항공사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이들 항공사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 및 점검 중 발견된 안전저해 요인에 대한 신속한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것을 감안하여 마련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 면허 · 증명 · 인가 · 검정 또는 검사를 받고자 하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등은 수수료 외에 검정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과 전문검사기관 직원이 현지 출장할 경우 이를 위한 여비를 검사를 받는 자가 부담토록 함(신설)

☞ 예산회계법 제41조(수입대체경비) 및 예산회계법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국가가 특별한 역무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그 비용을 받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 운항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등 항공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신설)

☞ 항공안전장애 보고 제도를 악용하거나, 건설교통부 장관이 인가한 운항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한 자 등에 대한 처분기준을 신설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적정한 처분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39)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 (신설 2, 내용심사 1)

■심사내용

○ 법에서 위임한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내 시장 · 군수 · 구청장 등의 허가사항을 구체화(내용심사)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 절토 · 성토 · 정지 ·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 흙 · 모래 · 자갈 ·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 토지분할, 죽목의 벌채 및 식재
-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 관련법령 제시, 적용범위 설정 등으로 내용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등의 입법례를 준용한 수준임을 감안하여 원안의결

○ 외국인 교원의 자격 기준 제시 및 외국인 강사에 대해 시 · 도 교육감이 시행하는 4주 이상의 연수 의무화(신설)

- 「초 · 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의 중등학교 교사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자국법에 의하여 교원자격을 취득하고, 교원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혁신도시 지원이라는 정책적 고려에 비추어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필요성과 외국인이라는 신분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자격기준은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연수대상 외국인에 대해 자국학위 외에 별도 검증이 없다는 점에서 연수는 국내 교사로의 기본 능력과 소양 함양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과정으로 이해되어 원안의결

○ 학교시설용지 · 의료시설용지 등과 같은 특수시설용지에 대해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신설)

☞ 특정시설의 차질 없는 설립을 위해 해당 토지 공급시 대상자의 자격에 일정한 제한을 둘 필요성은 인정되나 구체적 제한 기준 및 대상토지의 범위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대상용지 및 용지별 공급대상자의 자격기준을 추후 건설교통부장관이 구체적으로 정하여 제시하는 조건으로 원안의결

제5절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분야

1. 과학기술부

집필자 : 강창권 사무관(Tel.2100-2455, kcg0103@opc.go.kr)

가. 2006년 신설 · 강화규제 심사 개요

❍ 2006년도에는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규칙 제정안, 기술사법 개정법률안,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법 제정안, 원자력법 시행령 개정안, 원자력법시행규칙 개정안,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령 관련 고시 제정안,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 등 9개 법령에 대해 신설 22건, 강화 4건, 내용심사 12건, 누락 2건 등 총 40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중요규제 16, 비중요규제 24건)

❍ 심사대상 40건 중 11건에 대하여 개선권고, 4건에 대하여 철회권고 하였고, 25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과학기술부의 2006년도 총 신설규제는 22건임

< 과학기술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규칙 제정안	제244차 경제2분과 (2006.3.15)	원안의결 1 개선권고 9 철회권고 4	신설14 *중요13, 비중요1
기술사법 개정법률안	제248차 경제2분과 (2006.4.26)	원안의결 3	신설2, 강화1 *비중요3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법 제정안	제248차 경제2분과 (2006.4.26)	원안의결 2	신설2 *비중요2
원자력법시행령 개정안	제253차경제2분과 (2006.6.7)	원안의결 2	내용심사 2 *비중요2
원자력법시행규칙 개정안	제254차 경제2분과 (2006.6.13)	원안의결 4 개선권고 1	내용심사 5 *중요1, 비중요4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령관련고시 제정안	제254차 경제2분과 (2006.6.13)	원안의결 3	내용심사 3 *비중요3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제256차 경제2분과 (2006.7.5)	원안의결 5 개선권고 1	신설4, 강화2 *중요1, 비중요4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261차 경제2분과 (2006.8.30)	원안의결 1	내용심사1 *비중요1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6.5.9)	원안의결 4	강화1,내용심사1 누락2 *비중요4
계	–	원안의결 25 개선권고 11 철회권고 4	신설 22 강화 4 내용심사 12 누락 2 *중요16, 비중요24

나. 2006년도 신설 · 강화규제 세부심사 내용

(1)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규칙 제정안 (신설 14)

■심사내용

○ 안전관리책임자 등의 지정 (신설)

– 안전관리책임자 지정

· 지정대상 : 연구원 수가 30인 이상, 연구원 5인~30인 미만 중 최근 3년간 중대사고 1회 이상 발생 연구실 등

· 지정요건 : 안전관리전담부서 신설, 실질적으로 안전관리 총괄자

· 담당업무 : 안전관리업무 총괄 등

– 안전관리자 지정

· 지정대상

30인 이상~100인 미만 : 1인 / 100인 이상~1,000인 미만 : 2인 / 1,000인 이상 : 3인 (매 1,000인 초과 시 1인 추가)

· 지정요건 : 안전관련 기사, 고압가스, 전기, 소방시설 등 안전 실무경력자 등

· 담당업무 : 사고 원인조사, 재발방지, 사고예방 순회점검 등

-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 지정대상 : 모든 연구실
  · 지정요건 : 연구실책임자 또는 연구실 소속 단위연구용역책임자
  · 담당업무 : 안전교육, 안전점검 등

- 안전관리자등 지정 보고
  ·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담당자 지정이후 14일 이내 과학기술부에 보고

☞ 연구실의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안전관리자 등의 지정 · 운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안전관리담당자의 지정대상, 자격 등 지정요건, 지정사항 보고의무는 법령에 위임근거가 없으며, 유사입법례인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이 법률에서 규정할 사항이므로 삭제할 것을 권고

※ 삭제대상 : 영 제6~8조, 규칙 제8조

○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신설)
- 작성 대상 : 연구자수가 5인 이상인 연구주체
- 작성 시기 : 사유발생 후 30일 이내
- 내용 공지 : 규정 작성 · 변경 시에 연구종사자에게 즉시 게시 공지
- 작성 내용 : 안전관리조직 및 직무, 안전교육, 사고조사 및 비상조치, 보험가입 및 보고, 안전관리시스템 감사, 기타사항

☞ 안전관리규정 작성의 세부사항 규정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으로서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므로 원안의결

○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신설)
-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구성
  · 위원장 포함 15인 이내의 위원
  ·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안전관리담당자 또는 연구실책임자 등

-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운영
  · 정기회의 : 매분기

· 임시회의 : 필요시(과반수이상 요구)
· 의사결정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협의
· 회의결과 : 게시 등을 통해 공지

☞ 법 6조에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두고, 세부사항을 위임하였으나, 위원회가 임의규정으로 연구주체가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최소한도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따라서, 매분기별 정기회의는 매분기를 삭제하여 정기회의를 자율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개선권고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신설)
– 안전점검 실시
· 일상점검 : 위험성 여부 매일 점검
· 정기점검 : 1회/1년, 연구실 전반
· 특별안전점검 : 연구주체 및 과학기술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

– 정밀안전진단 실시
· 진단대상 : 과학기술부 고시로 정함
최근 3년간 중대사고 발생 연구실/ 중대결함(§ 17)이 있는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부실 연구실
· 진단주기 : 1회/1년
· 진단명령 : 과학기술부장관의 안전사고 발생시 특별정밀안전진단 실시 명령
· 특별정밀안전진단 방법 : 정밀안전진단전문기관 대행 또는 과학기술부 인정 시 자체 수행 가능

☞ 연구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특별안전점검'은 연구주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도록 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개입 근거를 삭제할 것을 권고

또한 영 제11조 정밀안전진단 대상 중 '최근 3년간' 중대사고 발생 연구실은 '최근 3년 이내'로 명확히 규정하고, 영 제11조제3항 특별정밀안전진단 실시명령은

법률에 위임 근거가 없어 삭제할 것을 권고 따라서 '특별정밀안전진단' 방법은 '정밀안전진단'으로 변경할 것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자격 (신설)
- 안전점검 실시 자격 : 안전관리자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자격자
- 정밀안전진단 실시 자격
  · 안전관리 직무분야 기술사
  · 건설안전 · 가스 · 산업위생관리 · 소방설비 · 일반기계 · 전기 · 화공기사로서 안전진단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별표 2의 안전관리자 자격기준을 갖춘 자로서 실무경력 3년 이상
  · 정밀안전진단 전문기관(§ 14)

☞ 연구실 안전점검 실시를 할 수 있는 자격자로서 안전관리자를 지정할 경우

규칙 제3조에 30인 미만 연구주체는 안전관리자를 두지 않도록 하였으나, 이들 연구실에도 자격을 갖춘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규정하여 상충되고

또한 규제사항 1번 검토의견과 같이 법률에 위임근거가 없으므로 안전관리자 관련 사항은 삭제할 것을 권고

다만, 법률 규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추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할 것을 권고

○ 정밀안전진단전문기관의 지정 및 취소 등 (신설)
- 정밀안전진단 전문기관 지정
  · 별표3의 인력 · 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기관에서 신청

- 전문기관 지정 결격사유
  · 금치산자 · 한정치산자
  · 전문기관 지정 취소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이법 위반으로 집행유예기간중인 자

- 전문기관 지정 취소 등

·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취소 또는 6월 이내 영업정지
① 허위 · 부정하게 지정받은 경우
② 1년간 3회이상 영업정지 처분
③ 타인에게 상호 및 지정서 대여
④ 인력 · 시설 · 장비등 지정요건 미달
⑤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연구실에 중대한 결함 등을 야기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
⑥ 영업정지처분기간 중에 점검을 실시
⑦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하게 점검
⑧ 최근 2년간 정당한 사유 없이 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실적이 없을 때

– 전문기관 지정신청 서류
·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 전문분야별 기술인력 자격 서류등
· 관련 시설 · 장비 보유현황
· 사무실 보유사실 증명서류
· 최초 1년간의 사업계획서

– 전문기관 지정 및 변경
· 전문기관 지정 시 지정서 교부
· 지정내용 변경, 휴 · 폐업 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부에 제출

– 지정취소에 따른 경과조치
· 지정 취소 또는 영업정지 당시 이미 착수한 안전점검 등은 수행 가능. 다만 처분 사실 공지 의무
· 연구주체의 장은 처분 사실 인지 후 20일 이내에 당해 계약 취소 가능

☞ 연구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위하여 정밀안전진단 전문기관 지정, 결격사유,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사항은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나,
'산업안전보건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 유사 입법례와 같이 전문기관 지정, 결격사유, 지정 취소, 지정취소에 따른 경과조치 등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지정요건 및 절차 등은 하위법령에 위임할 사항으로, 삭제할 것을 권고

○ 안전점검 ·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평가 및 공표 (신설)

– 안전점검 · 진단결과 평가 및 공표

· 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주체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 실태조사 등을 기초로 안전관리 체계 등에 대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음

※ 법 제10조는 연구주체의 장이 보고하고,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

· 평가결과 우수 연구실에 연구비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 평가기준, 절차 등은 고시로 정함

☞ 안전점검 결과보고 등 평가를 바탕으로 안전관리 우수 연구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시행하는 주기적인 평가와 이에 대한 공표는, 법 제10조에서는 과학기술부장관은 보고를 받되, 평가 및 공표에 대한 업무를 위임받지 않았으므로 삭제를 권고

다만, 법령의 제목은 '평가'가 아닌 '활용'으로 바꾸고, 제출된 점검결과 등을 검토하여 우수 연구실에 안전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할 것을 권고

○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비 (신설)

– 안전 및 유지관리비 계상

·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를 계상하고 매년 예산확보 내역을 과학기술부에 보고

※ 예산 계상은 2007년 예산부터 적용

· 안전 및 유지관리비는 개인보호구 구입, 교육,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험료 등에 사용

· 과학기술부가 고시하는 사용내역서 작성

– 안전관련 예산의 반영

· 안전관련 예산은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2% 범위 안에서 계상

☞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 및 유지관리비 계상, 사용용도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나,

과학기술부에 매년 예산확보 내역을 보고토록 하는 것은 연구실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나, 법률에 위임근거가 없으므로 향후 법률에

규정할 것을 조건으로 동의 또한 안전관련 예산은 인건비 총액의 2% 범위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다만, 기업연구소의 경우에는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5조제1항에 의한 신고 시 동 보고사항을 포함시켜 보고 의무 신설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개선 권고

○ 보험가입 (신설)

-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구실 사고 상해보험 · 사망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고 14일 이내에 과학기술부장관 에게 신고하여야 함
  ※ 보험 미가입시 2천만원이하 과태료
- 보험금은 사망은 1인당 1억원 이상, 상해부상은 1인당 상해급별 보험금액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함

☞ 연구실의 사고 발생시 보상을 위해 보험가입 의무화에 따른 보험가입 후 14일 이내 과학기술부에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연구실의 보험가입을 유도하여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므로,

안전 및 유지관리비 확보내역 보고와 같이 보고사항으로 변경하고, 향후 법률에 근거를 마련할 것을 조건으로 동의

아울러 기업연구소의 경우에는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5조제1항에 의한 신고 시 동 보고사항을 포함시켜 보고 의무 신설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개선 권고

○ 연구활동 종사자에 대한 교육 · 훈련 (신설)

- 안전관련 교육 실시
  · 자체 교육 실시(실시 확인 가능)
  당해 연구주체 안전관리자/ 안전교육기관 강사요원 이수자/ 안전교육기관 지정요건 인력해당자/ 안전교육 경력이 있는 조교수 이상
  · 과학기술부 지정 안전교육기관에 위탁
  · 교육대상 · 시간 · 내용은 규칙에 위임

- 교육과정 및 시간 등
  · 교육과정 : 정기 교육, 채용 시 교육, 연구내용 변경 시, 특수분야 교육

· 교육시간 : 교육과정별 10분~8시간 이상으로 규정

☞ 법 제18조는 연구주체의 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도록만 규정하고 있어, 과학기술부 지정 안전교육기관으로 안전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과학기술부 장관의 안전교육기관 지정 및 교육 위탁에 대한 근거가 없고, 안전교육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등은 법률에서 정할 사항으로 삭제를 권고

○ 교육 · 훈련기관의 지정 (신설)

– 안전교육기관의 지정

· 인력 · 시설 · 장비 요건 규정

· 과학기술부에 지정신청 및 지정서 교부

– 교육기관 지정취소 등

·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 거부 시, 부정하게 교육수료증 교부, 지정요건 미비 등의 경우 지정취소 또는 6월 이내 영업정지

– 교육기관 지정신청 서류

· 정관 및 법인등기부 사본, 자격 증명서류, 1년간 사업계획서 등

– 교육기관 지정 및 변경

· 교육기관 지정 시 지정서 교부

· 지정서 분실, 훼손 등의 경우 재교부

· 휴 · 폐업, 지정취소 시 지정서 반납

☞ 과학기술부장관의 안전교육기관 지정제도는 유사입법례와 같이 안전교육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등의 사항은 법률에서 규정할 사항으로, 안전교육기관 관련 사항은 삭제할 것을 권고

○ 안전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신설)

–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안전교육이수 의무 부과(영 제24조)

· 지정 후 3월 이내 안전교육 이수, 매 2년마다 보수교육 이수 의무

· 과학기술부장관은 중대사고 발생시 연구주체의 장 및 안전관리담당자에 대한 특별교육 실시 명령

- 안전교육 실시방법 등
  · 교육방법 : 안전교육기관 교육이수
  · 교육종류 : 직무교육, 특별교육
  · 교육시간 : 안전관리책임자 6, 안전관리자 신규 30, 보수 20시간 등

☞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이수의무 부여, 특별교육 실시 명령 등은 유사입법례와 같이 법률에서 규정할 사항으로 삭제할 것을 권고

○ 건강검진의 실시 (신설)
- 연구주체의 장은 매년 연구 활동 종사자에 대한 건강검진 실시
- 중금속, 유해화학물질 노출 등 특수건강검진대상 종사자는 업무종사 전 건강검진 실시
- 건강검진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한 기준을 따름

※ 연구주체의 장은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위험이 있는 연구 활동 종사자에 대해 정기적인 건강검진 실시

☞ 법 제18조는 치명적인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위험이 있는 연구활동 종사자에 한정하여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토록 규정하였으나,
규칙 제18조제1항은 모든 연구종사자의 건강검진 의무화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근거조항을 법 제18조제4항에서 제18조제3항으로 수정할 것을 권고

○ 과태료 (신설)
- 과태료 부과절차, 경감 등
  · 위반행위 조사 · 확인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을 서면으로 납부 통보
  · 10일간의 구술 등 진술기회 부여
  · 과태료 징수는 국고금관리법 적용
  · 과태료 금액
  · 정밀안전진단 미실시 : 2천만원/ 상해보험 등 미 가입 : 2천만원/
    안전관리규정 미게시 등 : 5백만원
  · 위반행위 등을 고려, 50%이내 경감

☞ 법률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과태료 부과 시 위반동기 및 결과 등을 감안하여 실효성 있도록 과태료

관련사항을 법제처 심의과정에서 재검토할 것을 권고

(2) 기술사법 개정법률안 (신설 2, 강화 1)

■심사내용

○ 기술사의 계속교육 (신설)
- 과학기술부장관은 기술사가 국가간 기술사 자격의 상호인증에 필요한 국제기준을 유지하고, 그 직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유지 · 향상할 수 있도록 계속교육을 실시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유사한 내용의 교육을 받은 기술사는 교육 이수로 간주 다만 교육내용은 국가간 상호인증에 필요한 기준 유지
- 사용자는 기술사의 계속교육 필요경비 부담
- 계속교육의 대상 · 방법 · 기준 ·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 과학기술 발전과 직무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전문지식 향상, 국가간 기술사 자격의 상호인증 및 국제 통용성 제고, 기술사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하여 기술사의 계속교육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 관계부처에서 제기한 유사 · 중복교육 이수문제는 다른 법령에 의한 교육을 인정하여 교육이 중복되지 않도록 규정함

○ 기술사의 신고 (신설)
- 과학기술부장관은 국가간 기술사의 상호인증과 고급 과학기술인력의 육성 · 활용 시책 수립 · 시행을 위해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사에게 근무처 · 경력 · 학력 등을 신고하게 할 수 있음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되는 기술사 제외
- 기술사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근무처 및 경력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 · 관리하며, 기술사의 신청에 따라 근무처 및 경력 등 증명서 발급
- 기술사는 신고 또는 변경신고 시 근무처, 경력 등의 허위신고 금지

☞ 고급 과학기술인력인 기술사에 대한 국가차원의 종합적 육성 · 활용대책 수립과 공신력 있는 경력증명서 발급 등을 위하여 근무처 · 경력 · 학력 등의 사항을 기술사로 하여금 신고토록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다른 법령에 의해 신고 받는 기술사에 대해서는 중복 신고를 피하도록 제외하고, 관련 협회, 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통해 관리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 과태료의 부과 · 징수 (강화)

〈 현행 〉

– 과태료 : 50만원

· 직무수행과 관련한 설계도서 등에 서명날인하지 않거나 해당 기술 분야 또는 자격종목을 명시하지 아니한 사무소등록 기술사

· 신고태만 · 허위신고 사무소등록 기술사

· 보고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보고한 사무소등록기술사

·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사무소등록기술사

〈 개정 〉

– 과태료 : 500만원

· 직무수행과 관련한 설계도서 등에 서명날인하지 않거나 해당 기술 분야 또는 자격종목을 명시하지 아니한 사무소 등록 기술사 (450만원 인상)

· 기술사가 아닌 자가 서명날인한 자(신규)

– 과태료 : 100만원

· 신고태만 · 허위신고 사무소 등록 기술사 (50만원 인상)

· 보고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사무소 등록 기술사 (50만원 인상)

·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사무소 등록 기술사 (50만원 인상)

· 근무처 및 경력 등을 허위 신고한 기술사 (신규)

· 기술사사무소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로서 기술사사무소 또는 이와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신규)

· 직무수행실적을 허위로 제출한 사무소 등록 기술사 (신규)

☞ 기술사의 책임과 윤리를 강화하여 기술용역 시장의 발전을 유도하고 공정한 기술사 경력관리를 위하여 과태료 금액 인상이나 허위 신고 등에 대한 과태료 신설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3)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법 제정안 (신설 2)

■심사내용

○ 핵융합장치 등의 허가 및 방사선안전 관리에 관한 기준 등 (신설)
- 핵융합장치 및 관계시설 건설 · 운영자는 과학기술부장관이 허가
- 핵융합장치등을 건설 · 운영자 방사선안전관리 및 품질보증 기준 준수
- 제1항 및 2항의 핵융합장치등의 허가 및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등은 원자력법 준용

☞ 동 법률제정안은 핵융합에너지개발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방사선이 발생되는 핵융합장치 및 관계시설의 건설 · 운영시 안전관리를 원자력법을 따르도록 규정하는 등 방사선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므로 원안의결

○ 비밀유지의무 (신설)
-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 금지 또는 이 법의 목적 외에 이용 금지
  · 직무 종사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또는 공무원

☞ 핵융합 연구 및 개발 관련 사항에 대한 비밀누설 금지 규제는 국가의 신인도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타 법령에 비추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의결

(4) 원자력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심사 2)

■심사내용

○ 원자력통제교육 실시 (내용심사)
- 교육대상자
  · 발전용 원자로설치 · 운영자, 연구용 원자로등 설치자, 핵연료주기사업자 또는 핵연료물질사용자의 종업원으로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 업무수행자
  · 핵연료주기관련 연구개발과제 책임자

- 교육종류 및 시간
  · 교육종류 : 신규교육, 보수교육
  · 교육시간
  〈발전용 원자로 설치 · 운영자 등〉
  신규교육 : 16시간 이상/ 보수교육 : 매년 8시간 이상

〈핵연료주기관련 연구개발과제 책임자〉
신규교육 : 8시간 이상/ 보수교육 : 매년 4시간 이상

-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방법 및 내용 등 필요사항은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함
  ※ 원자력교육 실시의무를 법률에 규정한 것은 원자력관련 업무 수행자에 대해 원자력통제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IAEA 안전조치협정 및 추가의정서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국제적인 핵 투명성을 제고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

☞ 원자력법 개정에 따라 원자력사업자 등은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교육대상자는 시행령에, 교육시간 등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규제대상과 규제비용을 고려할 경우 비중요규제에 해당하여 원안의결
※ 규제대상 및 비용
- 규제대상 : 연간 140명(원자력 종사자 등)
- 규제비용 : 연간 924만원

〈재심의〉
다만, 시행규칙 제106조의2 제3항의 교육방법 및 내용 등 필요사항은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기보다는 법률에서 위임한 바대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내용이 마련되는 대로 재심의토록 할 것

○ 원자력관계사업자 비용부담금 산정기준 및 징수방법 (내용심사)
- 비용부담금은「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적용 산정. 필요시 사업자등 의견 청취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과학기술부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과학기술부의 승인 후 사업자 등에 부담시킴
- 매년 세부산정기준,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의 비용부담에 관한 규정을 과학기술부장관이 승인
- 과학기술부장관은 규제대상 사업규모 및 비용부담 등을 감안하여 부담금 조정 가능
- 부담금 납부금액 · 기한 · 장소 등 고지

☞ 원자력법 개정에 따라 원자력관계사업자등이 부담하는 비용의 산정기준, 징수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기존 과학기술부의

승인으로 시행하고 있던 비용부담 규정의 부과요건을 시행령에 반영한 사항으로 비중요규제에 해당하므로 원안의결

(5) 원자력법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심사 5)

■심사내용

○ 원자력통제교육 실시 (내용심사)
- 교육종류 및 시간
  · 교육종류 : 신규교육, 보수교육
  · 교육시간
  〈발전용 원자로 설치 · 운영자 등〉
  신규교육 : 16시간 이상/ 보수교육 : 매년8시간 이상, 3회 이상 보수교육 이수자 매년 2시간 이상
  〈핵연료주기관련 연구개발과제 책임자〉
  신규교육 : 8시간 이상/보수교육 : 매년 4시간 이상, 3회 이상 이수자 매년 2시간 이상

- 교육방법 및 내용
  · 방법 : 이론교육 원칙, 실습 병행
  · 내용 : 원자력통제 법령, 국제협약, 원자력통제정책, 핵물질 등 안전 조치 등
〈당초 안〉
-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방법 및 내용 등 필요사항은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함

☞ 원자력법 개정에 따라 원자력사업자 등은 원자력통제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교육종류와 방법, 시간 등에 대해서 시행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그 범위 내에서 시행규칙에 규정한 것으로 과학기술부에서 수정하여 제출한 교육방법 및 내용에 동의

○ 발전용원자로 등 건설허가 관련 기술능력요건 (내용심사)
- 원자로 건설에 필요한 조직 및 부서를 구성하고,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부여할 것
- 안전사항 검토를 위하여 공학적 · 기술적 지원조직을 갖출 것

- 발전소 건설에 요구되는 지식 및 경험을 갖춘 종사자를 선임할 것
- 발전소의 건설경험을 수집 · 분석하여 설계 및 건설에 반영할 것
- 안전 관련 구조물 · 계통 및 기기 안전기능과 안전관련 시험 및 검사계획을 수립할 것

☞ 원자력법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현행 고시로 운영하던 발전용원자로 등 건설 허가 관련 기술능력을 시행규칙에 상위 입법화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서, 기술능력 요건이 현재 허가 받은 사업자가 충족시킬 수 있는 최소 요건으로, 규제대상(한국수력원자력) 등을 고려할 경우 비중요규제에 해당되어 원안의결

○ 핵연료주기사업 허가관련 기술능력 (내용심사)

- 정련사업 조직 및 부서 구성, 업무수행 요구되는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부여
- 정련사업중 안전관련사항 검토를 위해 공학적 · 기술적 지원조직을 갖출 것
- 정련사업 수행에 요구되는 지식 및 경험을 갖춘 종사자를 선임할 것
- 안전 관련 주요 구조물 및 설비의 안전기능과 안전관련 시험 및 검사계획을 수립할 것

☞ 원자력법에 핵연료주기사업의 허가기준으로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을 확보하도록 규정하여, 이에 따른 기술능력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서 규제대상(2개,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원자력연료주식회사) 등을 고려할 경우 비중요규제에 해당되어 원안의결

○ 방사성물질 등의 운반 시 사고의 조치 (내용심사)

- 비상대응계획 수립 · 시행 대상자
  - · 발전용원자로 운영자, 연구용원자로 등 설치자, 핵연료주기 사업자 및 폐기시설 등 건설 · 운영자
  - · 방사성물질을 운반하는 허가사용자 및 업무대행자

- 비상대응계획 기재사항
  - · 비상대응 조직, 권한 및 의무
  - · 사고보고 절차
  - · 사고유형에 따른 조치계획

☞ 원자력법(제89조)에 방사성물질의 포장 · 운반 중에 발생 가능한 사고에 대비하여

비상대응계획을 수립 · 시행하도록 하고, 관리대상 및 비상대응계획 기재사항 등 세부사항을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함에 따라 법의 위임범위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 IAEA의 「방사성물질 안전운반규정』을 반영, 국제기준에 적합하도록 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 시 비용이 발생하나 사고예방 및 사고발생 감소에 따른 편익이 더욱 큼(규제비용 약 36백만원/년, 규제대상 1,052기관)

○ 방사성물질 등의 포장 운반 검사대상 (내용심사)
- 사용후핵연료를 운반하는 경우
- 방사선규칙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운반 승인된 운반물
- 운반하는 방사성물질의 수량이 A1 또는 A2 값의 30배 초과하는 운반물
- 정기적으로 포장 및 운반검사를 받는 자 이외의 자가 운반 신고한 방사성물질 등

☞ 법률의 위임범위 내에서 방사선물질 등의 포장 및 운반검사의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서, 비중요규제에 해당되어 원안의결

(6)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령 관련 고시 제정안 (내용심사 3)

■심사내용

○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 사용내역서 작성에 관한 세부 기준 (내용심사)
-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시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비를 계상하고 사용내역서 작성

☞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서 위임한 내용을 고시에서 구체화한 것으로,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내역서 작성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한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전문기관이 분야별로 갖추어야 할 점검장비의 기준 (내용심사)
- 기계, 전기, 화공 · 소방 · 가스, 산업 · 위생 · 기타 등 4개 분야로 구분하여 분야별 장비명 규정
  · 기계 : 진동측정기 등 6종
  · 전기 : 집전식전위측정기 등 5종

· 화공 · 소방 · 가스 : 열선풍속계 등 6종
· 산업위생 · 기타 : 분진측정기 등 5종

☞ 시행령 제8조 및 제11조의 별표에 규정된 점검장비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이 수행할 업무분야에 따라 필요한 장비기준을 정한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 연구실 안전점검지침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내용심사)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내용 및 점검결과의 보고항목 등에 대해 규정
– 정기점검, 특별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따라 5개 등급으로 안전상태를 분류하고 사후조치

등급	상 태
1	문제가 없고 안전성이 유지된 상태
2	경미한 결함이 발견되었으나 안전성에 영향은 없으며, 경미한 보수가 필요한 상태
3	결함이 2보다 취약하고 전체적인 안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일부 보수 및 보강이 필요한 상태
4	결함이 심하게 발생하여 긴급보수, 보강이 필요하여 사용에 제한을 하여야 하는 상태
5	심각한 결함이 발생하여 안전상 위험발생 가능성이 커서 즉시 사용금지하고 개선해야 하는 상태

☞ 법 제7조 및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안전점검지침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계획수립, 장비, 점검방법 등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시 규제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타당성이 인정되며 비중요규제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7)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신설 4, 강화 2)

■심사내용

○ 엔지니어링관련 신고 및 관리제도 도입 (신설)
– 엔지니어링기술자로 인정받고자하는 자는 요건을 갖추어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 및 변경신고
– 엔지니어링사업자는 그 소속 엔지니어링기술자에 대한 취업 및 퇴직사항 등을 과학

기술부장관에게 보고
- 신고사항에 대한 변경사유 발생시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
  · 양도 · 양수 및 합병 · 분할 등 사유발생시
  · 변경 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종전 60일 이내)

☞ 엔지니어링기술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도입하여 엔지니어링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제도를 마련하는 것으로,

엔지니어링기술자 신고제도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제도(선택적 규제사항)로 엔지니어링서비스업의 발전과 기술 인력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며 엔지니어링사업자의 변경사유 발생시 종전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에 신고토록 하는 것은 2중 취업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며 타 법령과의 균형성을 고려한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됨

또한 사업자로 하여금 그 소속 엔지니어링기술자에 대한 취업 및 퇴직사항 등을 보고토록 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부담을 주는 사항이기는 하나, 엔지니어링산업은 그 특성상 기술인력 의존도가 높아 기술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취업지원 등이 동 산업 발전의 핵심적인 사항이므로 필요한 규제라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 엔지니어링사업자 및 기술자의 제재 (신설)
- 엔지니어링사업자가 타인에게 성명 또는 상호 대여, 신고증 대여 및 기술자의 경력증대여 · 상호대여 · 이중신고 행위금지
-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등을 한 경우 효력 상실 처분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 성과품에 서명 · 날인한 엔지니어링기술자가 부실설계 등을 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업무정지

☞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요건으로 일정기준이상의 기술 인력을 요구하고 있어 기술 인력의 명의를 대여하거나 서류상 복수의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등, 불법 · 불공정한 수주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의 타당성이 있음
엔지니어링사업자의 부정신고, 명의대여 등에 대한 제재는 정당한 사업자 보호 및 일반국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여,
엔지니어링기술자의 부실설계 등에 대한 제재는 성과품의 품질보장을 위한 것으로

필요한 규제로 판단되며, 타 법령에서도 유사하게 규정되어 비중요규제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 엔지니어링사업의 부실측정 및 손해배상제도 도입 (신설)

- 발주청은 부실성과품을 발생 및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타당성조사의 잘못으로 손해를 발생케 한 경우 부실 정도를 측정하여 부실벌점 부여

- 하자있는 시설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
  · 엔지니어링사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및 대가에 계상

☞ 부실성과품 방지를 위하여 불성실한 업무수행자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 이에 따른 입찰참가제한 등의 제재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부실성과품 발생에 따른 손해에 대비코자 보험 · 공제가입을 유도하여 시설물 자체손해와 확대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수 있는 사후보완제도도 필요함

다만 부실성과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자의적 운영 시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는 바,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할 것을 개선권고

○ 시정명령 · 보고 및 검사제도 (강화)

- '행정조치'를 '시정명령'으로 변경하고, 과학기술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 및 필요사항에 대하여 지시
  · 신고사항 보완하지 않은 때(추가)
  · 입찰평가기준 위반하여 입찰참가(추가)
  · 위탁기관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 등에 위반
  · 보고 · 검사와 서류관리 · 보존을 불성실하게 한 때
  · 위탁기관이 1년 이상 승인 없이 사업을 전부 또는 일부 중단한 때

- 위탁된 권한사항 보고 · 검사
  ·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위한 조사 · 검사
  · 검사공무원의 권한 증표 제시의무, 관계기관의 자료제시요청, 업무상 비밀 유지 의무

☞ 기존의 행정조치를 시정명령으로 변경, 행정행위를 명확히 한 것이며 불분명하고 포괄적인 규정을 개선하여 시정명령 범위를 한정하고, 신고사항 미보완 시 등 시정명령 대상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시정명령의 대상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여 규제 합리화를 위한 것으로서 타당성이 있고 비중요규제에 해당하므로 원안의결

○ 수수료 제도
- 권한 위탁된 업무의 위탁기관에 수수료 납부
  · 사업자 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
  · 기술자 신고 및 경력증 발급 신청

☞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법정 수수료 징수를 위한 규정으로 타당함

위탁기관의 수수료 징수에 대한 유사 입법례가 있어 비중요규제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 엔지니어링사업자 벌칙제도 (강화)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100만원→500만원〉
  · 근무처 및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기술사/ 서명 · 날인을 허위로 한자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자/ 서명 · 날인을 하지 않은 자/ 조사 · 검사를 방해한자

☞ 현행 과태료 금액은 예방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경미하고, 관련 법령간 형평성을 고려할 경우, 타당성이 있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8)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내용심사 1)

■심사내용

○ 원자력손해 배상책임 승낙시 정부승인 등 (내용심사)
·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 관한법률 제16조제3항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승인 및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원자력사업자가 원자력사고로 인한 원자력손해의 피해자에 대하여 그 배상책임을 승낙하고자 정부에 승인 신청할 때 제출할 사항과
· 원자력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제기된 때 정부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는 것임

※ 다음 8가지 항목을 보고토록 규정
1. 원자력사고 발생의 때와 장소
2.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3. 원자력사고의 상황
4. 원자력사고의 증인이 될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
5. 원자력손해의 내용 및 추정액
6. 원자력손해의 처리 현황 및 계획
7. 손해배상의 청구금액 등 그 주요내용
8. 손해배상 청구의 소가 제기된 관할법원, 원고, 피고, 청구취지 등 그 주요 내용

☞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 관한법률 제16조에 규정된 「배상책임승낙시 정부승인 등」은 기 등록된 규제이며 제3항에서 승인 ·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규정한 내용으로 원자력사업자가 원자력사고와 관련하여 정부에 승인 신청 시 제출하거나 소제기시 보고할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한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9)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1, 내용심사 1, 누락 2)

■심사내용

○ 기술력 평가기관 지정기준 (누락)
– 현행 : 과학기술부 고시로 지정기준 규정
– 개정 : 시행령(제2조)에 지정기준 규정
· 평가전담인력 2인 이상 고용할 것
· 기술의 기술성 · 상업성 · 시장성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팀 구성 · 운영

☞ 현행 고시에 있는 기술력평가기관 지정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규정하는 것으로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 기술료 징수 보고 및 사용용도 (누락)
- 기술료 징수결과 및 사용실적 보고
  · 징 수 시 : 징수일로부터 15일 이내
  · 사용실적 : 다음연도 3.31일까지

- 기술료 사용용도
  ① 연구개발사업 참여 연구원 보상
  영리법인 : 전문기관 납부금액을 제외한 정부지분의 50% 이상
  기타 법인 : 정부지분의 50% 이상
  ② 전문기관에 대한 납부
  영리법인 : 전문기관 납부금액을 제외한 정부지분의 30% 이상
  기타 법인 : 정부지분의 20% 이상
  ③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등

☞ 개정 법률(법 제7조)에 정부가 지원하는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연구결과를 사용 · 양도 · 대여 · 수출시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료 징수 시 과학기술부에 보고, 기술료 사용용도의 구체적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규정하는 것으로서, 기술료 징수 등의 보고는 적정하며 기술료 사용 용도의 세부적 사항은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등의 납부비율과 동일 수준으로 원안의결

○ 전략기술수출의 승인 (내용심사)
- 수출 승인 시 조건을 부가하는 경우
  · 기술의 인도 조건, 대금 결제기간, 기타 거래상의 특성 등에 의하여 승인 유효 기간을 정해야 하는 경우
  · 입증 서류의 사후보완이나 추가제출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전략기술 수출 승인 이후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

☞ 현행 「전략물자 · 기술 수출입 통합공고」 고시로 운영되던 관련사항을 법 개정에 따라 상위 입법화하는 것으로서, 원안의결

○ 신기술인증 및 기간연장 승인 (강화)
- 신기술인증 신청서류 추가

〈현행〉

1. 기술 및 제품설명서
2.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3. 국제표준기구(ISO) 인정서
4. 산업재산권 및 국내외 공인인증실적자료 또는 제품시험성적서
5.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증빙자료

〈개정〉

6. 공인기관의 선행기술조사 보고서
7. 신기술 상용화개발 사업계획서(상용화개발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되, 세부내용은 과학기술부가 정함)

- 신기술 인증기간 연장 신청기간 변경
  · 인증기간 연장 신청은 현행 인증기간 종료 4월전에서 5월전으로 변경

☞ 부처별로 분산된 신기술 인증 제도를 신기술인증(NET)으로 통합됨에 따라, NET 인증을 사용하게 되는 건설교통부, 환경부 등에서도 신기술 인증 심사 시 이미 선행기술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타인의 특허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선행기술조사 보고서는 필요하며, 신기술상용화개발 사업계획서는 중소기업청·산업자원부의 요구에 의해 기업의 상용화개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의결

아울러, 신기술 인증기간 연장신청을 4개월 전에서 5개월 전으로 변경하는 것은 심사의 정확성을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

2. 정보통신부

집필자 : 남상중 사무관(Tel.2100-2454, s2492979@opc.go.kr)

가. 2006년 신설·강화 규제심사 개요

○ 2006년도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중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사업법중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기반보호법중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개 법령에 대해 내용심사 32건등 총 38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중요 22건, 비중요 15건)

○ 심사대상 38건중 17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 1건은 철회권고, 20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정보통신부의 2006년도 총 신설 규제는 6건임.

< 정보통신부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지원을 위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안	제245차 경제2분과 (2006.3.23~3.25)서면심사	원안의결1	내용심사1 *중요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	제246차경제2분과 (2006.4.12) 164차 본회의 (2006.4.21)	개선권고10	내용심사10 *중요10
전파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252차 경제2분과 (2006.6.7)	원안의결5	내용심사5 *비중요5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252차 경제2분과 (2006.6.7)	개선권고1	내용심사1 *중요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예비 심사 (2006.6.22)	원안의결2	내용심사2 *비중요2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중 일부개정법률안	제260차 경제2분과 (2006.8.23)	원안의결4 개선권고1 철회권고1	신설5 내용심사1 *중요4 비중요2
전기통신사업법중 일부개정법률안	제259차 경제2분과 (2006.8.16) 제169차 본회의 (2006.8.17)	원안의결1개 선권고3	내용심사4 *중요4
소프트웨어진흥법시행령 개정령안	제259차 경제2분과 (2006.8.16)	원안의결1 개선권고1	내용심사2 *중요1 비중요1
정보통신기반보호법중 일부개정법률안 예비심사	제263차 경제2분과 (2006.9.20)	원안의결3	내용심사3 *비중요3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개정령안 예비심사	제269차 경제2분과 (2006.11.15)	원안의결1	*비중요1 신설1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개정령안 예비심사	제267차 경제2분과 (2006.11.2)	원안의결1	내용심사1 *비중요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개정령안	제272차 경제2분과 (2006.12.20)	원안의결1	내용심사1 *중요1,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개정령안	제270차 경제2분과 (2006.11.29)	개선권고1	내용심사1 *중요1, 비중요2
계	–	원안의결20 개선권고17 철회권고1	신설6 내용심사32 *중요23 비중요15

나. 2006년 신설 · 강화 규제 세부심사내용

(1) 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지원을 위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안(내용심사)

■심사내용

○ 통신단말장치의 이용기간은 계약자 명의를 기준으로 가입일 부터 보조금 지원 전일까지의 기간(이용정지기간 제외)을 월단위로 산정하되, 동일인이 복수의 단말기 이용시 가입회선별로 산정하고, 사업자 및 대리점의 영업장에 게시 사항과 게시방법을 정하고, 사업자는 단말기 보조금의 지원기준 내용이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변경시 시행일 30일전에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상세내용 통보가 어려운 경우 상세내용 제공 방법을 알려주어야 함. 또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재판매하는 별정사업자가 자사의 지원기준 변경에 따라 지원기준을 변경하여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고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함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 신청시 이용기간, 사용실적, 지원금액 및 기준일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사업자는 가입자 정보, 이용기간 정보 및 단말기보조금 지원 여부 등에 관한 정보 등을 관리하여야 하고, 타사가 이용자 동의후 요청시 정보를 제공함.

☞ 전기통신사업법(제36조의4)의 개정으로 1년 6개월 이상 가입자와 서비스개시 6년 미만의 신규 이동통신서비스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허용됨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위해 방법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정통부 고시로 위임한 사항(이용기간 산정방법, 지원기준의 게시, 불리하게 변경된 지원기준 및 이용기간 등의 고지에 관한 사항, 정보관리 대상의 구체적 범위, 정보의 관리기간 및 제공방법)을 정하는 것으로서,

법규의 위임범위 내에서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함.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내용심사10)

■심사내용

○ 정보통신망에 관한 표준 적합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에 대하여 해당제품에 대한 파기 · 수거 · 반품 · 시정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망의 표준화 및 인증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 ·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자(단, 이 경우 판매자가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때 한함)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함

☞ 표준적합인증 허위 표시 제품의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위반제품에 대한 파기 · 수거 · 반품 또는 시정명령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동의함. 다만, 벌칙 단서 조항은 법무부 의견과 같이 현행 규정에서도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기 때문에 단서조항은 불필요하므로 삭제토록 개선권고함.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시 수집 · 이용 목적,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을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고지하고 동의를 얻도록 하고(안 제22조1항),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수집이 가능한 경우는 이용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개별 동의가 곤란한 경우와,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법 또는 타법의 규정이 있는 경우로 함.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수집 · 보관 · 처리 · 이용 · 제공 · 관리 등)시 아래 항목이 포함된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정하여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부령에 따라 공개함.

- 수집 · 이용 목적
- 항목 및 수집방법
- 보유 및 이용기간
- 취급의 위탁에 관한 사항
- 이용자 및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등

또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 개인정보책임자를 지정 · 운영하도록 함.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의 개인정보 수집시 이용자의 동의 강화, 개인정보취급

방침 공개 등은 개인정보 과다 수집 방지, 이용자의 자기정보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동의함. 다만, 제22조제1항은 규제개혁 전략과제와 같이 정보수집시 동의획득 방법을 차별화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권고함 또한 제27조2의 개인정보취급방침 중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종료, 수집목적 달성 등의 경우 개인정보 파기를 명확히 하고 이를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제2항제3호에 '개인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을 추가하도록 개선권고함 아울러, 규제개혁기획단의 전략과제로 '업종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지정'(§ 27조)을 차별화하도록 결정('05.5.26)한 사항은 반영되지 않았는바, 제27조제2항을 아래와 같이 개선하도록 권고함.

(예) 제27조(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
①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지정대상, 지정방법, 자격요건 그 밖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수집한 개인정보를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르게 이용할 수 없음. 목적과 다르게 이용시 정보통신부령에 따라 이용자에게 고지하여 동의를 얻어야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시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고지하여 동의를 받도록 함. 고지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같음. 또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수집 또는 이용 목적을 달성한 경우, 보유 및 이용기간이 종료한 경우 및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 다만,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보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목적이외의 개인정보 이용제한, 제3자 제공시 고지 및 동의, 개인정보 파기 대상을 추가하여 불필요한 정보 보관 방지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됨. 다만, 제23조제3항의 개인정보의 동의를 받은 목적이외에 사용시, 제24조제1항의 제3자에게 개인정보 제공시 정보통신부령이 아닌 대통령령에 따라 고지 및 동의를 구하도록 개선권고함.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 취급을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이용목적 등을 고지하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함. 위탁업무의 내용 또는 수탁자 변경시에도 같음. 단,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위탁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를 개인정보방침의 공개규정에 따라 공개하거나,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의 취급 위탁시 수탁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목적을 정하도록 하고, 수탁자는 이와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처리, 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

☞ 개인정보취급 위탁시 현행 위탁사실 고지에서 이용자 동의를 얻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 수탁자가 개인정보 수집시 이미 이에 대한 동의를 받았고,
- 위탁자가 수탁자에 대한 관리 · 감독책임이 있으며
- 이용자에 대한 손해발생시 위탁자의 손해배상책임 등의 규정에 비추어 과도한 규제로 판단되므로 '동의'를 '통지'로 수정할 것을 권고함.

또한 제25조제1항 단서조항 중 이미개인정보취급방침에 위탁사실, 위탁자 및 변경사항을 공개(제27조의2)한 경우에는 통지의무를 면제하도록 아래와 같이 수정할 것을 개선권고함.
(예) 제25조 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단,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제27조의2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 합병 · 분할 등으로 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이전시 미리 '개인정보 이전 사실, 영업의 양수자등의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기타 연락처 등'을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영업양수자등이 개인정보의 이전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하고 영업양수자등은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사업자들이 이용 또는 제공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영업의 양도 · 합병 · 분할 등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시 양수자와 양도자 모두에게 이전사실을 중복 통지하도록 규정한 것은 과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양도인이 통보한 경우에는 양수인의 고지의무 부여를 면제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추가할 것을 권고함. 아울러 통지방법을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개정할 것을 개선권고함.

○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게 '자신의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 제공내역, 수집 · 이용 · 제3자 제공 동의내역 등'의 열람 또는 관련정보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고, 오류가 있는 경우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음.

- 오류 정정청구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오류를 정정하거나 정정하지 못하는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제공 또는 이용할 수 없음

☞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정정을 요구하는 범위와 오류 정정요구시 조치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오류정정 또는 필요조치 완료시까지 개인정보의 제공 및 이용을 금지하는 제30조제5항 규정은, 범죄증거 확보, 긴급구조 등의 사유로 타 법령에 의거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규정할 수 있도록 개선권고함.

○ 게시판에 게재된 정보로 인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 명예 훼손 등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당해 게시판을 설치 · 운영하는 자에게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음

- 정보삭제 요청시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신청인에게 통지
- 정보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이익 침해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음. 이 경우 이용자가 임시조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임시조치에 관한 사항은 약관에 그 내용 · 절차 등을 고지하여야 하고, 임시조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함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자기 게시판 정보 삭제 또는 임시조치시에 배상책임 경감 또는 면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게시판에 게재된 정보가 다른 사람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 법률상 이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의로 당해 정보를 삭제하거나 임시조치를 할 수 있음. 이 경우 이용자가 임시조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임시조치에 관한 사항은 약관에 그 내용 · 절차 등을 고지하여야 하고, 임시조치기간은 30일 이내로 함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자기 게시판 정보 삭제 또는 임시조치시에 배상책임 경감 또는 면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자율 행동강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단체는 구성원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임시조치를 한 경우 당해 정보의 삭제여부에 대한 판단을 대행할 수 있는 자율적인 심의기구를 운영할 수 있음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중 일일평균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게시판이용자의 본인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단체는 본인확인을 위하여 구성원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적용할 기준을 정할 수 있음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본인확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명의가 부정사용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함

☞ 사생활 침해 등 게시판 게재 정보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 침해를 받은 경우에 대응을 위하여 정보 삭제 등의 요구, 이에 따른 삭제, 접근차단, 약관 기재 등의 사항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다만, 게재정보가 공익 합치 또는 이익형량 유지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도록 한 규제개혁기획단 「전자상거래 규제개선」 방안에 맞추어 아래와 같이 규정할 것을 개선권고,

(예) ②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삭제 등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진실한 경우로서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임시조치가 제목은 보이고 내용은 볼 수 없는 수준(현행 blind조치)으로는 미흡하므로, 제목도 검색되지 않도록 임시조치를 규정할 것을 권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게시판에 게재된 정보가 타인의 법률상 이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정보 접근차단 임시조치 외에도 삭제까지 허용하는 것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할 우려가 있고 법률상 분쟁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게재정보의 '삭제 권한'은 철회할 것을 권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자율 행동강령, 임시조치에 따른 정보 삭제 검토 등을 위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단체의 심의기구 자율 운영 등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동의 함.

책임있는 건전한 인터넷 문화정착을 위하여 게시판 이용자의 실명 확인제도의 제한적인 도입은,

- '4대 폭력 근절대책 추진 관계장관회의'에서 수차 논의되었고,
-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실명제 도입에 75% 이상이 찬성하였으며,
- 실명게시판 운영결과 명예훼손, 피해자 개인정보 유출 등 폐해발생률이 비실명 게시판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점 등을 감안할 경우,
- 전파성 · 파급효과가 큰 대형사업자에 한정하여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제한적인 제도 도입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다만, 인테넷 실명제 도입 기준은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유형별 일일평균이용자수 등을 고려하되, 정통부장관의 고시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 아울러 시민단체 등에서는 국민의 자유로운 표현을 관리하는 등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바, 실명제 도입이후 제도 운영현황, 시행효과 및 문제점, 급변하는 인터넷 환경을 고려한 시행기준 및 규정방법(대통령령)의 적정성 등을 종합 검토 · 분석하여 '07년말까지 규개위에 보고할 것을 부대권고 함.

○ 정통부장관은 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정보통신망의 이용자보호 등 이 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게 관계물품 · 서류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자료제출 거부, 법령 위반사실을 발견한 경우 사업장에 출입하여 검사할 수 있음 이 법을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 정통부장관은 이 법에 위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 대해서 시정을 명한 경우 그 사실을 공개할 수 있음

☞ 서비스제공자의 법 위반에 따른 조사 등을 위하여 관련 서류 등의 제출요구는 타당하다고 하겠으나 안 제1항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괄적이므로 '위반되는 혐의를 발견한 경우 또는 이용자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경우'로 수정할 것을 개선 권고함. 또한 제4항 시정명령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의무사항(벌칙 및 과태료 해당 규정) 위반뿐만 아니라, 권고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미이행시에도 과태료를 부과(제67조제2항제20호)하는 바, 권고사항에 대한 시정명령을 제외하거나 권고사항 시정명령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제외하는 방안을 개선권고함. 아울러,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자 등을 공개하여 서비스 이용자들의 경각심 고취 등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자의적으로 운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공개기준 및 절차 등을 정통부령으로

규정하도록 개선권고 함.

○ 제22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자(현행 : 최소수집원칙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과태료 부과대상에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공개하지 아니한 자'를 추가하고
'개인정보의 취급위탁시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개인정보 취급위탁의 공개 또는 통지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로 변경함

☞ 개인정보취급방침 공개제도 등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과태료부과 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규제개혁기획단 전략과제에 반영된 최소수집원칙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삭제하되 약정된 서비스를 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개선권고 함.

○ 기타 규제개혁기획단 전략과제

1) 정보보호관리체계에 대한 인증제도 개선
-과제내용 : 정통부는 인증기관의 요건 및 인증서 발급기준등을 규정할 수 있는 것으로 대체하고, 그밖의 사항은 민간에 위임
-개정내용 : (案)§ 47①.....정보보호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보호진흥원 또는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로부터 인증심사를 받을 수 있다.

☞ 인증기관의 요건 및 인증서 발급기준 등을 마련하고, 민간에 위임하도록 한 규제개혁기획단 전략과제를 반영할 것을 개선권고,

2) 정보통신망에 대한 침해사고 신고제도 개선
-과제내용 : 침해사고 신고의무자를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 침해사고 판정기준에 대한 기준 명확화
-개정내용 : (案)§ 48-2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이용통계등침해사고 관련 정보를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보호진흥원에 제공하여야 한다.
1. 주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2. 집적정보통신시설사업자
3. 그밖에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과제내용은 침해사고 신고(§ 48-3)인데, 개정(안)은 침해사고 통계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48-2)으로,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3(침해사고의 신고 등)에 반영하고, 침해사고 판정기준도 명확히 하도록 개선권고 함.

(3) 전파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내용심사)

■심사내용

○ 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이용현황 조사·확인은 매년 실시, 필요시 시설, 승인받은 주파수 사용자 등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주파수 이용실적 판단기준은 주파수 이용률과 수요전망, 기술의 발전추세, 주파수 사용동향 등으로 하고, 주파수 대역정비 요건은 신규 서비스 도입을 위해 여유 주파수 확보 필요시, 기술 발전으로 주파수 대폭 변경 필요시, 혼신방지 필요시로 함

☞ 개정 전파법('05.12.30)에 행정 투명화를 위해 기존 주파수 회수·재배치 사항을 대통령령에 세부 규정토록 위임함에 따라 위임범위 내에서 규정하는 사항이며, 주파수 사용기관은 공공·사업·비사업용을 포함 84개 기관으로 경쟁제한적 성격의 규제에 해당되지 아니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하여 원안의결함.

○ 주파수 할당대가 = 예상매출액 기준부과금 + 실제매출액 기준부과금

· 예상매출액 기준부과금 = 주파수 이용기간 시장전체 예상매출액× x × 전파특성계수 × 주파수할당율

· 실제매출액 기준부과금 = 연도별 실제매출액× y

※ x, y : 정통부 고시(x+y=3%)

·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 필요사항은 고시로 규정

- 할당대가 보증금은 예상매출액 기준 부과금의 10/100으로 규정
- 주파수 할당대가 반환금은 (예상매출액 기준부과금÷전체 주파수이용기간) × 잔여이용기간
- 주파수 전환신청에 따라 6개월 안에 전환 대상 여부, 전환시기, 할당대가 등을 신청인 등에 통보 등

☞ 주파수할당대가 산정기준 및 보증금, 할당대가 반환금 산출기준, 주파수의 대가할당 전환절차 등 개정 법률의 위임 범위에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비중요규제로 판단하여 원안의결함.

○ 주파수재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파수 사용승인 유효기간 만료전 6월이상~12월 이내 정통부에 재승인 신청

☞ 현행 법령상 주파수 사용승인 유효기간(10년) 만료에 따른 재승인 규정이 있음에도 승인절차 등이 없어 전파법 개정시 위임근거를 두고 규정하는 것으로서 행정절차에 해당되어 비중요규제로 판단하여 원안의결함.

○ 법에서 비영리 또는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무선국은 전파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토록 규정함에 따라, 기존 '면제' 문구를 법령이 위임한 '전부 감면'으로 수정하고,

- 전파사용료중 전파진흥 부분 감면
  · 위성방송 · 종합유선방송국
  · 전기통신역무 제공하는 무선국

  ※ 전파사용료 = 전파관리 부분(60~80%) + 전파진흥 부분(20~40%)

- 감면율은 전파관리 경비 등을 감안하여 정통부장관이 3년마다 고시

☞ 전파사용 감면규정을 법률에 맞도록 개정하고, 전파사용료중 주파수할당대가와 중복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면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05년 현재 8개 할당대가 및 방송발전기금 납부사업자에 대하여 2010년까지 연평균 40억원의 전파사용료 감면이 예상되므로 행정규제기본법상 중요규제로 판단하여 원안의결함.

○ 주파수이용권의 양수 · 임차 절차

- 신청절차 : 양수 또는 임차일로부터 30일이내 주파수이용권양수(또는 임차) 신청서에 양도 · 양수(임대 · 임차)계약서 사본 등 서류 첨부하여 신청

- 승인시 고려사항
  · 전파이용의 효율성 · 공평성 등

· 결격사유 해당 여부
· 할당범위 · 조건에 맞는 이용여부

☞ 개정 전파법에 주파수이용권의 임대제도 도입에 따른 신청서 제출과 신청기간 등 임차 승인절차와 행정행위 투명화를 위하여 주파수 이용권 양수 · 임차 승인시 고려사항 등 법률의 위임 범위내에서 규정한 것으로서 중요규제로 판단하여 원안의결함.

(4)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내용심사)

■심사내용

○ 온라인콘텐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약관에 포함할 사항을 규정
- 온라인콘텐츠 이용에 필요한 기술사양
- 과오금의 환불방법 및 절차
- 온라인콘텐츠 이용계약의 해지 · 해제방법 및 그 효과와 위약금 범위
- 온라인콘텐츠 하자 등에 의한 이용자 피해보상의 기준 · 범위 · 방법 및 절차
- 기타 관계 법률이 정한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온라인디지털콘텐츠 거래활성화에 따른 소비자 피해증가에 따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규정된 법 제16조의3 규정에 의거 위임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나, 제5호의 기타 관계법률은 포괄적이므로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개선권고함.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내용심사)

■심사내용

○ 안전진단수행기관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정관, 기술인력 보유현황과 정보보호 컨설팅 수행실적 명세서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정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함
정보보호 기술 인력의 자격기준은 유관자격(또는 유관학력)을 보유한자와 보유하지

않은 자로 구분하여 규정함
정보보호컨설팅 수행실적은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의 취약점 분석 · 평가와 이에 기초한 정보보호대책 제시가 주목적인 실적(인정신청일 현재 용역수행이 완료된 실적)'을 말함
안전진단수행기관으로 인정받은 자가 법 제46조의3제1항 제1호, 제2호 '기술인력 보유, 정보보호컨설팅을 수행한 실적'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인정서를 반납하여야 함

☞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만 가지고 있는 안전진단 수행권한을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에게도 부여하여 수행권한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라는 '05.5월 규제개혁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을 개정('06.3.24)하고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의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동의하고
법 제46조의3 제7항에서 정한 위임범위 내에서 안전진단수행기관의 인정절차, 정보보호 기술인력의 자격기준 및 정보보호컨설팅 수행실적 등을 규정한 것으로 행정규제기본법상 중요규제로 판단하여 원안의결함.

○ 안전진단대상자는 정보보호안전진단결과를 안전진단수행기관으로 부터 통보 15일 이내에, 그 개선권고 및 처리결과는 완료 15일 이내에 정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정보보호 안전진단결과는 법 제46조의3제2항 규정에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고, 안전진단수행기관을 확대(현행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 8개에서 안전진단수행기관으로 변경)한 법 개정에 맞추어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동의. 다만 안전진단대상자는 '05년도의 경우, 쇼핑몰 등을 포함하여 142개 업체로 이중 138개업체가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소요비용 23억 7천만원) 행정규제기본법상 중요규제로 판단하여 원안의결함.

(6)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중 일부개정법률안(내용심사1, 신설5)

■심사내용

○ 인증신청을 받은 때에는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 후 그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하여야 함

☞ 피규제자(소프트웨어사업자) 수가 약 6,300여개 업체이며, 인증비용이 '05년 기준 약 9.2억원 소요되었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또한,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을 상위입법화 하여 신설·강화된 사항이 없으므로 별도 규제심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동의함

○ 도급받은 사업 중 그 일부를 다른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하도급하거나 하수급인이 하도급 받은 사업중 그 일부를 다른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발주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승낙을 각각 얻어야 함

☞ 피규제자(소프트웨어사업자) 수가 약 6,300여개 업체이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 소프트웨어사업의 불공정거래관행 억제와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 보호육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규정에 의해 승인 없는 하도급시 부정당거래자가 되어 각종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동의 함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사업의 완료일로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음

☞ 현재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 하자보수책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수주기업에 대해 과도한 하자보수책임을 지우는 사례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의 해소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며, 소프트웨어사업대가기준(정통부 고시) 및 기획예산처 예산편성지침에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무상하자보자기간을 1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1년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동의 함.

○ 인증신청을 받은 때에는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 후 그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을 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및 정보시스템 개발 프로세스의 품질향상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품질인증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며, 인증사항은 공신력이 있어야 하므로 소프트웨어 개발 담당부처인 정보통신부에서 품질인증업무를 주도하되, 인증기관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인증기관 지정요건을 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이므로 원안동의 함.

○ 국가기관 등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자에 한하여 당해 입찰에 참가하도록 할 수 있음
신고사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음
신고한 자에게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함

☞ 현행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 제1항에서 '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자로 하여금 신고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의해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소프트웨어사업을 신고한 사업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서 규정한 입찰참가 자격을 갖게 됨. 따라서 별도로 제19조의 2(소프트웨어사업자의 활용) 제1항에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자에 한하여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안 제19조의2 규정은 삭제하도록 철회권고 함.

○ 소프트웨어기술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근무처 · 경력 · 학력 및 자격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음.
신고 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의 장에 대하여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소프트웨어기술자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함에 있어서 근무처 및 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됨

☞ 소프트웨어기술자 신고대상을 자격증보유자로 한정하고,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정의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정보처리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 명확히 하도록 동법 개정법률안 제2조(정의) 5호를 수정하고 소프트웨어기술자 신고관련 업무 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와 소프트웨어기술자의 신고비용 부과에 대한 법적 근거를 법률에 마련토록 개선권고 함.

(7) 전기통신사업법중 일부개정법률안(내용심사)

■ 심사내용

○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매각 인가신청기한을 당사자간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로 명확히 규정하고, 경미한 전기통신설비 매각의 경우 현행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현행 고시로 규정되어 있는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인가 이전에 임원의 선임행위, 통신망 통합, 합병등기 등 일정행위 금지규정을 법률에 명시

○ 인가 또는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인가 또는 승인을 받은 날까지 각각 합병등기, 회사설립등기, 통신망통합, 임원의 선임행위, 주식인수행위 등 영업양수·합병등 계약의 이행행위 및 회사설립에 관한 후속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됨

☞ 현행 안에 설정되어 있지 않은 기간통신사업의 양수·합병·매각 인가신청기간을 당사자간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로 하는 규정과 인가승인이전 '주식인수행위금지' 규정은 신설규제로 삭제하도록 개선권고 함.

○ 부가통신사업자의 신고를 정통부장관 및 체신청장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일원화

☞ 개정안 21조에서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토록 규정한 것은 타당하나, 부가통신사업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지 않을 경우 모든 부가통신사업자가 신고를 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므로 시행령 등에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신고가 면제되는 대상을 명확히 하도록 개선 권고함.

○ 전기통신역무의 요금이 '적정하고 공정 타당할 것'을 '공급비용, 수익, 비용 수익의 역무별 분류, 역무제공방법에 따른 비용절감, 공정한 경쟁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할 것'으로, 기간통신사업자 및 그 이용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 및 전기통신설비의 설치공사 기타의 공사에 관한 비용부담의 방법이 '적정하고 명확할것'을 '부당하게 이용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것'으로,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통신의 확보에 관한 사항이 '적절하게 배려되어 있을 것'을 '국가기능의 효율적 수행 등을 배려할 것'으로 개정

☞ 개정안에 규정된 내용이 현행 규정보다 구체화되고 명확하게 표현되어 통신이용자 권리를 보호하는데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동의 함.

○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통신위원회가 직접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제출된 자료나 물건에 대한 폐기, 은닉, 교체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제출된 자료나 물건에 대한 영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 사실조사시에는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장의 관계인을 입회시켜야 함

☞ 관계자료 확보 등을 통한 조사의 효율성 확대를 위해서는 영치권 도입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해서도 영치권을 적용하는 것은 집행상 남용의 우려가 있으므로 영치기준, 대상등을 법에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령에 구체적 요건을 규정하도록 개선권고 함.

(8) 소프트웨어진흥법시행령 개정령안(내용심사)

■심사내용

○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인증업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인증업무에 필요한 설비와 환경조건을 갖추고 있을 것, 인증대상 소프트웨어별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등을 정한 평가절차서를 갖추고 있을 것과 인증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정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토록 함

☞ 지정된 품질인증기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고시에 재위임하지 말고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으로 규정토록 개선권고 함

○ 정통부장관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벤치마크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고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정된 정보관리전문기관에게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음

☞ 소프트웨어에 대한 벤치마크 테스트를 통해 제품에 대한 객관적인 품질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우수소프트웨어제품의 유통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됨. 다만, '02년부터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수행한 실적은 149개 제품(비용 1,928백만원)이며, '05년 현재 소프트웨어사업자는 6,379개이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하여 원안의결함

(9) 정보통신기반보호법중 일부개정법률안 예비심사

■심사내용

○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기능에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대책 이행여부 확인을 포함하고, 이를 위한 근거조항 신설

☞ 현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 기관장이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점검 근거가 없고 국가안전과 국민생활 안정보장에 중요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대책 이행력 확보를 위해 필요하고 규제대상 기관이 76개 기관으로 규제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대상기관이 제출한 보호대책의 이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하여 원안의결함.

○ 관계중앙행기관의 장은 정보통신 기반보호위원회의 보호대책 이행여부 확인 · 심의결과를 분석하여 필요한 보호조치를 명령 또는 권고할 수 있음

☞ 현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장이 제출한 보호대책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필요한 보호조치를 명령 또는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사후적으로 위원회의 이행여부 확인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호조치를 추가하는 것으로 보호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므로 비용 및 피규제자수가 중요규제에 미치지 못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하여 원안의결함.

○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과 종사자에 대해 비밀유지의무 부과

☞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관련자도 현행 규제대상기관 이상으로 주요 정보를 취급하고 있으므로 동일하게 비밀유지의무 부과 필요. 피규제대상(관계부처 차관급 및 고위공무원, 관련 업무담당 공무원, 민간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민간위원)이 한정되어 있어 비중요규제로 판단하여 원안의결함.

(10)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개정령안(신설)

■심사내용

○ 법 제17조에서는 정보통신부장관은 우정사업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음. 다음각호의 사업의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6. 우체국 콜센터 운영 및 고객 관계관리 활동 지원
7. 우표류 조제업무와 우편망을 이용한 통신판매의 상품개발 · 운영과 그 부대사업
8. 우체국 예금자금 및 보험적립금의 운용 지원
9. 우체국금융 위험관리업무 지원
10. 우체국사 관리 지원

☞ 동규정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업범위를 구체화 하는 것으로서 6~9호는 현행 위탁가능 사업을 세분화 하는 것이나 우체국사관리 업무는 신규로 추가되었음. 동 사항은 일부 경쟁 제한적 요소가 있으나 우편, 예금 보험가입자등 서비스이용자의 각종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우체국업무의 특성과 국가시설의 안정적인관리, 경쟁입찰시 과도한 가격경쟁에 따른 시설관리의 부실 우려 등을 감안할 때 필요성이 인정되며 별도 규제비용이 없고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하여 원안의결함.

(11)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개정령안 예비심사

■심사내용

○ 총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는 기술사자격소지자만 감리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 신설

☞ '05.11.10 국무조정실에서 수립한 「기술사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기술사에 대한 우대조치를 반영한 사항으로 현행 규정은 공사금액 70억원 이상인 경우 기술사(135명)와 특급감리원(8,200명)이 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기술사 우대를 위해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인 경우 기술사만 감리하도록 한 사항으로 연간 100억원 이상 공사가 평균 97건 정도이며 대규모공사에 공사품질확보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비중요규제로 판단하여 원안의결함.

(12)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개정령안(내용심사)

■심사내용

○ 통신요금 감면서비스의 대상에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를 추가 지정하고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소득평가액 14만원이하인 계층에서 소득평가액기준을 폐지하여 대상범위 확대

☞ 일부저소득층에 적용되던 통신요금 감면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통신요금 감면서비스의 대상에 인터넷 서비스를 추가 지정함으로써 저소득층의 통신비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그 타당성이 인정됨. 모든 기간통신사업자는 보편적 역무를 제공할 의무가(전기통신사업법 제3조의2) 규정되어 있고 통신사업자 의견수렴과 부처협의에서 별도의견 제시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원안동의 함.

(13)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개정령안(내용심사)

■심사내용

○ 동일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사업자별로 부과상한액을 차등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폐지하고, 기본과징금, 의무적 · 임의적 조정과징금, 부과과징금으로 구분하고, 단계별 참작사유와 상한을 규정하고 과징금 산정 세부기준은 정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현행의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차등적인 과징금 부과상한이 법률위임범위를 벗어난다는 국회의 지적을 수용하고 과징금 산정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공정위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의 과징금 규정을 준용하여 과징금산정의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단계별로 과징금 상한액을 규정하고,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전기통신 역무 매출액에서 금지행위와 직접 관련된 매출액으로 축소조정하는 등 산정기준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임의적 조정과징금 산정시 고려사항 중 '위반행위가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 기준이 불명확하므로 과징금 세부기준 고시에 이를 명확히 하거나 또는 삭제하도록 개선권고 함.

○ 통신위원회는 과징금 부과에 갈음하여 사업정지를 명하는 것이 재발방지에 효과적일 경우 장관 또는 관할체신청장에게 사업의 정지를 명할 것을 요청함.

☞ 동법 15조 및 28조에 시정명령에 위반했을 경우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현행 전기통신사업자가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도 지키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로서, 위반행위로 기대되는 이익이 과징금보다 큰 경우 이를 상쇄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하여 원안의결함.

○ 전기통신사업법 제37조제1항은 금지행위에 대하여 통신위원회가 사업자에게 명할수 있는 시정조치를 규정(1호~9호)하고, 10호는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에 정하는 사항'으로 규정

-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시정명령 받은 사실등을 신문, 사업장, 인터넷싸이트, 우편, 잡지 등에 공표

- 30일 범위내에서 통신위원회가 정한 기간 내에 법 제37조제1항 각호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이행계획서의 제출

- 법 제37조제1항 각호 조치의 이행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 또는 이행결과의 보고

☞ 법제37조제1항에서 정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특히 동법 제7호 및 8호에서 관련사실의 공표, 위법사항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수 있도록 되어있어 이를 위해 필요한 절차로 판단됨(원안동의, 비중요규제)

3. 기상청

집필자 : 강창권 사무관(Tel.2100-2455, kcg0103@opc.go.kr)

가. 2006년 신설 · 강화규제 심사 개요

❍ 2006년도에는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 시행규칙 제정안, 기상업무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 등 2개 법령에 대해 내용심사 6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6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기상청의 2006년도 신설규제는 없음

< 기상청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 시행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2006.5.8)	원안의결 2	내용심사2 *비중요2
기상업무법 시행령 ·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예비심사 (2006.5.12)	원안의결 4	내용심사4 *비중요4
계	–	원안의결 6	내용심사 6 비중요 6

(1) 기상관측표준화법 시행령 · 시행규칙 제정안 (내용심사 2)

■심사내용

○ 기상측기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요건 (내용심사)

– 검정대행기관 지정 요건

· 검정요원은 4인 이상(이중 2인은 검정 · 기상관측 · 정보통신업무 또는 공인교정 · 검사 · 시험기관 관련분야 합산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일 것)

· 검정 장비, 기준기 설치 및 충분한 작업공간을 확보할 것

– 검정대행기관의 시설 등

· 기본 장비와 이동식 장비 : 온도, 기압, 습도, 풍향, 풍속, 강수량 등 6개

· 기준기 및 교정주기 : 전자식 온도계 12개 기준기, 교정주기는 2~10년

☞ 법률 제정에 따라 도입된 기상측기의 검정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검정대행기관의 지정요건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인력 · 장비기준 등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 과태료 부과 (내용심사)
- 미 검정 기상측기 제공자 과태료 부과
  · 위반사항, 이의방법 및 기간 등과 함께 서면으로 통지
  · 10일 이상의 의견진술 기회 부여
  · 위반 횟수별 차별화된 과태료
  1회 위반 : 500만원/ 2회 위반 : 800만원/ 3회 위반 : 1,000만원

☞ 제정 법률의 과태료 규제 신설에 따른 부과 절차 및 세부 과태료 금액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2) 기상업무법 시행령 ·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내용심사 4)

■심사내용

○ 기상현상에 관한 긴급방송요청 세부요건 (내용심사)
- 2이상의 광역예보구역에 경보가 발표되고 중대한 기상재해 발생예상 시
- 태풍정보가 6시간이내 간격 발표 시
- 경보 후 재해유발 기상현상 계속예상 시
- 지진해일 특보, 피해예상 지진속보 시
- 중대한 재해의 발생이 예상되는 국지 · 돌발적 호우 또는 강풍 시
- 기타 재해예방을 위해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 기상재해의 사전예방과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신속하게 전파할 필요가 있는 기상현상 특보 등의 긴급방송요청 세부요건(6개)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재난방송의 주관기관인 한국방송공사에 요건을 국한하여 자율형태의 긴급방송을 요청한다는 점에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 예보 및 특보의 제한예외 세부규정 (내용심사)
- 기상사업자가 등록한 사항에 대하여 예보를 할 경우 출처를 명기

☞ 기상사업자의 예보 시 예보의 출처를 명기하는 것은 무단복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고 기상사업자 보호를 위해 규정하는 것으로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 기상사업의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기준 (내용심사)
- 등록취소대상인 1년간 사업정지처분 회수 완화(2회→3회 이상)
- 휴·폐업 등 미신고시 행정처분 삭제
- 행정처분대상인 경미한 사항 미신고 회수 완화(1회→1년간 3회 이상)
- 보고·검사 및 시정명령 거부 시 행정처분기준 정비 등

☞ 전부개정된 법률에 의해 위임된 범위 내에서 처분기준을 완화 내지 정비한 내용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 기상업무종사자 교육·훈련기관 지정 등 세부규정 (내용심사)
- 교육·훈련기관 지정조건
  · 기상관련 학과설치대학, 연구소
  · 기상사업자, 기상정보 지원기관
  · 학위·자격소지자 상시 3인 이상 보유기관·단체 등
  · 교육계획 수립제출(교육과정, 과목, 방법, 교관·시설·장비현황, 연간 교육계획, 평가방법, 교육규정 등)
- 지정 교육·훈련기관은 교육이수자 명단 및 평가결과 제출 등

☞ 기상업무종사자 교육·훈련기관 지정은 임의조항이나 전문기관을 지정할 경우 최소한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조건을 규정한 것으로서, 전문기상인력의 효과적 양성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제6절 농림 및 해양수산분야

1. 농림부

집필자 : 강창권 사무관(Tel.2100-2455, kcg0103@opc.go.kr)

가. 2006년 신설 · 강화규제 심사 개요

❍ 2006년도에는 동물보호법 개정법률안,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 인삼산업법 개정법률안,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법률안,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 종자산업법 개정법률안, 비료관리법 개정법률안, 농어촌정비법 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법률안, 농업유전자원의보존 · 관리 ·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개정안,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 등 12개 법령에 대해 신설 16건, 강화 22건, 내용심사 22건, 누락 1건 등 총 61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중요규제 20, 비중요규제 41)

❍ 심사대상 61건 중 16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 1건은 철회권고 하였고, 44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농림부의 2006년도 총 신설규제는 16건임

< 농림부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동물보호법 개정법률안	제240차 경제2분과 (2006.1.4)	원안의결 4 개선권고 4	신설6, 강화1 내용심사1 *중요4, 비중요4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	제243차경제2분과 (2006.3.9)	원안의결 8 개선권고 5	신설4, 강화4 내용4, 누락1 *중요5, 비중요8
인삼산업법 개정법률안	제256차 경제2분과 (2006.7.5)	원안의결 1 개선권고 2	강화2, 내용1 *중요2, 비중요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법률안	제256차 경제2분과 (2006.7.5)	원안의결 2	강화2 *비중요2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	제259차 경제2분과 (2006.8.169)	원안의결 9 개선권고 3	강화2, 내용10 *중요3, 비중요9
종자산업법 개정법률안	제259차 경제2분과 (2006.8.169)	원안의결 1	내용1 *비중요1
비료관리법 개정법률안	제261차 경제2분과 (2006.8.30)	원안의결 2 개선권고 1 철회권고 1	강화3, 내용1 *중요3, 비중요1
농어촌정비법 개정법률안	제261차 경제2분과 (2006.9.20)	원안의결 2	신설1, 강화1 *비중요2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법률안	제261차 경제2분과 (2006.10.18)	원안의결 9 개선권고 1	강화7, 내용3 *중요3, 비중요7
농업유전자원의 보존 · 관리 ·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261차 경제2분과 (2006.12.13)	원안의결 3	신설3 *비중요3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개정안	2006.2.25 예비심사	원안의결 1	내용심사1 *비중요1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	2006.3.13 예비심사	원안의결 2	신설2 *비중요2
계	–	원안의결 44 개선권고 16 철회권고 1	신설16 강화22 내용심사22 누락 1 *중요20, 비중요41

나. 2006년도 신설 · 강화규제 세부심사 내용

(1) 동물보호법 개정법률안 (신설 6, 강화 1, 내용심사 1)

■심사내용

○ 동물소유자 등록(신설)

– 시 · 도지사는 동물 유기방지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소유자로 하여금 시장 · 군수에게 소유동물을 등록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동물의 종류, 등록사항 · 등록절차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시 · 도 조례로 정함

☞ 버려지는 동물로 인한 환경오염, 광견병 등 인수공통질병 전파우려가 증가하고 있어 시 · 도지사가 동물 유기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유자등록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동물 보호와 유기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됨

다만, 개정법률안 제4조의2 제1항에서는 시 · 도지사가 동물소유자 등록을 할 수 있는 대상지역을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제3항에서는 '등록을 하여야 하는 지역'을 농림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그 내용이 상충되므로, 제3항의 농림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 중에서 '등록을 하여야 하는 지역'을 삭제하도록 개선권고

○ 동물소유자 관리의무(강화)

– 현행은 동물소유자의 의무사항으로 적합한 사료 · 물 등 급여, 부상당한 경우 신속한 치료 등 선언적 사항 규정을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는 다음 사항을 추가함

① 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 소유자의 성명 · 주소 등이 표시된 인식표 부착,

②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 시 목줄 등 안전을 위한 장비를 휴대하고 배설물을 즉시 수거하여야 함.

③ 시 · 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인식장치의 부착 · 예방접종 · 공공장소 출입제한 및 특정동물의 사육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반려동물 사육이 증가하면서 동물소유자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유기동물 증가, 인체 위해사고 발생, 배설물 방치에 따른 환경오염 등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어 인식표 부착, 목줄 등 안전장비 휴대 등 소유자의 관리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 동물학대등 금지(내용심사)

– 현행은 동물을 이유 없이 죽이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통을 주거나 유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금지행위의 내용을 구체화 함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죽이거나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② 노상 등 공개된 장소 또는 같은 종류의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③ 유기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굶기는 행위 등

④ 식용 또는 약용을 목적으로 살아 있는 동물에서 체액을 채취하는 행위

⑤ 동물 운송 시 적정한 사료의 급여, 난폭운전의 금지, 상해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차량사용 등 준수사항을 신설

☞ 현행 규정은 동물에 대하여 금지되는 행위가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위반여부 판단이 어려워 사실상 처벌이 곤란함에 따라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지되는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타당한 조치로 판단됨

- 다만, 안제6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정당한 이유 없이'는 추상적 · 불확정 개념으로 안제6조에 제5항을 추가하여 '정당한 이유'를 명확히 할 것을 개선 권고

(예시)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당한 이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축산물가공처리법」 · 「야생동 · 식물보호법」 그 밖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2. 질병의 치료 · 훈련 그밖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하는 경우

- 아울러, 안제6조의2 규정내용인 '동물의 운송 중 준수사항'은 동물을 운송하는 자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자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하고 안제6조의2 제1항 제1호의 내용 중 '급출발', '난폭운전'은 불확정개념으로 삭제하거나 하위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할 것을 개선 권고

(개정안) ①누구든지 동물을 운송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개선권고안) ①동물을 운송하는 자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 (신설)

-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물실험시설에는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동물실험윤리위원회'는 수의사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단체에 소속된 전문가 각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 무분별한 동물실험의 억제 및 실험동물의 윤리적인 취급을 위해 동물실험시설에

윤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실험동물의 보호를 위해 타당한 조치로 판단됨

- 다만, 안제10조의2제2호에서 단순히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라고 규정하는 경우는 추상적이므로 위원으로서의 업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자격기준을 농림부령에서 정하도록 할 것과
- 위원이 직무상 알게된 비밀의 누설금지 조항을 추가할 것 및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기능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것을 개선 권고

〈개정안〉 제10조의2(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물실험시설에는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 운영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각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수의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의사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해당 동물실험시설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동물실험시설의 범위 및 위원회의 직무 그밖에 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선권고안〉 제10조의2(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물실험시설에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각1인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수의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의사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단체에 소속되고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해당 동물실험시설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③ 위원회는 동물실험시설이 제10조의 규정에 부합되게 시행되고 있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 지도 · 감독하며, 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에 대하여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 · 감독의 방법 그밖에 위원회의 구성 ·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동물판매업 등의 등록 · 신고 등 (신설)

– 농림부령이 정하는 동물판매업자는 시장 · 군수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하되,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을 제한함

· 시설 및 인력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 미성년자 · 한정치산자 · 금치산자

· 등록이 취소된 후 1년 미경과자

– 등록한 판매업자는 예방접종이 실시된 일정연령이상의 동물을 판매하도록 하고, 동물을 학대하거나 거짓에 의한 등록이 판명된 때 등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동물전용의 장례식장 · 화장장 · 묘지 등을 설치 · 운영(동물장묘업)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 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함

– 신고한 장묘업자는 장묘시설의 설치 및 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함

☞ 동물판매업등록제는 적정한 사육시설에서 생산된 건강한 동물을 판매토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동물보호와 유기동물 발생억제를 위한 것이며 제도 도입 시에도 사업자는 희망할 경우에만 등록하고, 수요자들이 공인된 등록업체를 찾도록 유도하여 간접적으로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필요한 조치로 판단됨

장묘업신고제는 동물사체의 인도적 · 위생적 처리를 통한 국민정서 함양과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해, 판매업등록제와 같이 사업자가 희망할 경우에만 신고토록 하여 동물소유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 동물보호감시관 등의 직무거부금지 (신설)

– 동물보호감시관 및 명예감시관이 직무(동물 학대행위 감시, 피학대동물에 대한 보호조치 등)를 수행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 · 방해 또는 회피할 수 없도록 함

· 동물보호감시관 : 공무원

· 동물보호명예감시관 :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위촉

☞ 동물보호감시관 및 명예감시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보장하여 동물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것으로서 학대행위 금지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 동물소유자 · 판매업자 등에 대한 지도 · 명령 및 교육 (신설)

- 농림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동물보호와 공중위생상 위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판매업자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 동물 보호와 공중위생상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동물소유자와 동물판매업자 등에 대해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음
  · 지도와 명령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음

☞ 동물소유자 및 판매업자 등에게 부여된 학대행위 금지, 어린 동물 판매금지 등 제반 의무의 자율적 이행 및 미이행 위반여부를 조사하고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으로서 법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됨.

다만, 안제15조제1항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구는 추상적 · 불확정개념으로 자의적으로 행사될 우려가 있으므로 개선권고안과 같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함과 아울러, 조사7일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피조사자에게 통지할 것을 추가로 규정할 것을 개선 권고

(개정안) ① 농림부장관은 동물의 적정한 보호 · 관리와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등과 동물판매업자등에 대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선권고안) ① 농림부장관은 동물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하는 등 이 법을 위반하거나 공중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등과 동물판매업자등에 대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학대행위의 중지, 위해방지대책의 강구 그밖에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 7일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조사계획을 통지함으로써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사목적. 2. 조사기간 및 장소. 3. 조사 원 의 성명과 직위
4. 조사범위 및 내용. 5. 제출할 자료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4, 강화 4, 내용심사 4, 누락규제 1)

■심사내용

○ 매매참가인의 신고 (신설)
- 중도매인이외에 농수산물 도매시장 등에서 매수를 하고자 하는 수요자인 가공업자, 소매업자 등 매매참가인은 도매시장 등의 개설자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

☞ 매매참가인이 경매에 참여하기 때문에 매매참가인의 신원확인은 필요하며, 감사원 지적('01.10월)된 바와 같이 서울시는 이미 조례로 규제하고 있는 사항으로 법률에 근거규정을 두는 것으로 원안 의결

○ 도매시장법인 등의 인수 · 합병의 승인 (신설)
- 도매시장법인의 인수 · 합병 등
  · 도매시장법인이 인수 · 합병 시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인수 · 합병 시 기존 법인의 지위 승계
  · 농림부장관 및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매시장 법인의 인수 · 합병 권고 가능
  · 승인절차 등 필요사항은 규칙으로 위임

- 중도매인법인, 시장도매인의 인수 · 합병
  · 도매시장법인 관련 규정 준용

☞ 도매시장법인 · 시장도매인 · 중도매인법인의 인수 · 합병에 대한 법적 근거와 기존 지정요건 등의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개설자의 승인,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개설자 등의 인수 · 합병 권고는 필요하다고 판단됨

다만, 법인의 인수 · 합병 시 시장개설자 등의 승인은 기업활동 자유화를 위해 투명하고 최소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시행규칙 위임사항에 승인절차 외에 승인요건도 추가하도록 개선권고

○ 도매시장법인 등의 공시의무 (신설)

- 도매시장법인 · 시장도매인의 거래물량, 가격정보, 재무상황 등 공시 의무화
- 공시내용, 공시방법 등 구체적 사항은 부령으로 위임

☞ 출하자 및 수요자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 시장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매시장법인 등에게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일본 등의 사례와 비추어 볼 때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위임사항 중 공시내용, 방법 외에 공시절차도 포함시키도록 개선권고

○ 도매시장 출하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 (신설)
-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도매시장 반입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 실시
- 도매시장 개설자는 안전성 기준 미달품 출하자에 대한 1년 이내 출하 제한 가능
- 안전성검사 관련사항은 규칙에 위임
- 시행일 : 2009년 1월 1일부터

☞ 도매시장에서 반입 농수산물 안전성검사 의무화, 기준 미달품의 1년 이내의 출하제한은 농수산물 안전성 확보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09년 시행은 전면 시행준비를 위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안전성검사 관련사항뿐 아니라 기준 미달품 출하자에 대한 출하 제한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하여도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토록 개선권고

○ 도매시장법인 · 시장도매인의 지정요건 (강화)
- 도매시장법인 · 시장도매인 지정 요건에 순자산액 비율, 거래보증금 등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정한 요건을 추가
- 운영실적 평가결과를 반영한 도매시장법인등의 지정철회 또는 재지정 제한
  · 실적부진으로 출하자 보호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로서 규칙에 위임
  · 적용대상 : 개정법 시행이후 지정(신규, 재지정)되는 법인부터 적용

☞ 도매시장개설자가 출하자에 대한 안정적인 대금결제 등을 위하여 도매시장법인 등의 일정수준의 재무건전성을 요구할 필요가 있으며, 운영실적 평가결과 출하자에게 심각한 지장 초래 시에는 지정철회 또는 재지정 제한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 중도매업의 허가 (강화)
- 중도매인 허가요건에 도매시장 개설자가 정한 요건(지급보증금 등) 추가
- 중도매인의 다른 중도매인 거래참가 방해 및 집단적 경매 · 입찰 불참 금지
- 중도매인 사망시 직계존비속 등의 승계를 인정하되, 허가기간은 잔여기간으로 하며 시설사용권의 변경 가능

☞ 중도매인의 허가요건 강화, 중도매인 거래방해 및 집단행동 금지, 중도매인 지위 승계 등은 도매시장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의결

○ 경매사의 임면과 자격요건 (강화)
- 경매사의 면직요건 강화 및 신고의무
  · 경매사 임명 배제사유(금치산자 등) 해당 또는 자격이 취소 시 면직
  · 도매시장법인의 경매사 임명 · 면직 시 신고 의무 신설
- 경매사자격제도 관련 사항 정비
  · 자격시험 관련 사항 정비 : 시험기관, 시험과목, 시험방법 등은 규칙에 위임
  · 경매사 자격취소 요건 및 절차 규정

☞ 경매사 면직 사유 추가, 경매사 임면 신고, 경매사 자격취소 요건 규정 등은 공정하고 투명한 경매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 의결

○ 도매시장 출하자 등록 (강화)
- '09년부터 도매시장 농수산물 출하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등은 도매시장 개설자에 등록 의무화 (※ 현행은 임의규정)

☞ 농수산물 안전성검사 강화로 가 · 차명 거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등록 의무화시 도매시장 개설자가 등록 거부 시 생산자 등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바, 신고제로 바꾸고 신고방법 및 절차는 하위법령에 위임할 것을 개선권고

○ 도매시장법인의 영업제한 (내용심사)
- 도매시장법인 영업장소 제한 완화
  ·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 외에 판매금지가 원칙이나 전자거래방식은 제외 도입
- 도매시장법인 겸영사업 범위 완화
  · 도매시장법인은 농수산물 판매업무외 겸영이 불가하나, 농수산물 선별 · 포장 ·

가공 등 일부 업무 겸영 허용
· 이 경우에도 기본업무인 도매업무가 약화 시 겸영사업 제한 가능

☞ 도매시장법인의 영업장소 제한을 완화하고, 겸영사업 제한을 완화하면서도 주업무인 도매업무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겸영사업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

○ 도매시장법인 등의 수탁거부 사유 구체화 (내용심사)
– 수탁거부를 금지할 수 있는 사유에 유통명령 위반품, 미등록출하자의 출하품, 안전성 검사기준 미달품,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최소출하량 기준 미달품 등 규정 (※ '09년부터 시행)

☞ 수탁거부 금지 원칙하에서 예외적으로 수탁거부 사유를 구체화하여 출하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임

다만, 미등록자 출하품은 규제⑧번과 같이 미신고자 출하품으로 변경하고,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에 정한 최소출하량 기준 미달품의 경우에는 생산 · 소비지역 여건 등이 상이하므로 필요한 규정으로 판단되나, 도매시장 개설자가 악용할 경우 생산자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법 제78조의 도매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 제78조제3항 위원회 업무에 '최소 출하량 기준업무'를 추가할 것을 개선권고

○ 유통조절명령 (내용심사)
– 농수산물의 현저한 수급불안정 해소를 위하여 농수산물의 생산자 등에 대해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하도록 유통조절명령 가능
– (개정사항) : 유통조절명령 발동기준, 구체적 절차를 시행규칙에 위임

☞ '03년부터 시행중인 유통조절명령의 발동기준, 구체적 절차를 하위법령에 위임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서 원안 의결

○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유지 (내용심사)
– 소속공무원 거래질서 유지 위반단속

- 누구든지 정상적인 거래와 시설물의 공공적 이용을 방해하거나 적절한 위해 · 환경의 유지를 저해해서는 안됨
  ⇒ (개정)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정하는 시설물의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시설물의 공공적 이용 방해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 도매시장 평가 실시 (누락규제)
- 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당해 도매시장의 운영 · 관리에 관한 평가 실시
  ⇒ (개정) 거래실적, 재무안전성 등 운영 · 관리에 관한 평가를 실시

☞ 도매시장 등 운영 · 관리에 관한 평가 관련사항은 누락 규제로서, 평가사항인 운영 · 관리사항을 구체적 예시를 제시하는 것으로서 원안의결

(3) 인삼산업법 개정법률안 (강화 2, 내용심사 1)

■심사내용

○ 인삼류 제조업 영업폐쇄 및 제조기준 (강화)
- 인삼류 제조기준 강화
  · 현행 : 용기 · 포장에 연근 표시
  · 개정 : 용기 · 포장에 연근 및 원산지 표시
  ※ 원산지 표시 위반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농산물품질관리법)

- 인삼류 제조업 영업폐쇄
  〈영업폐쇄 또는 6월이내 영업정지〉
  · 현행 : 시설기준 미달, 제조기준 미달, 연근 허위 표시 등
  · 개정 : 시설기준 미달, 제조기준 미달, 연근 · 원산지 허위 표시, 인삼류 미검사품 등 판매 등
  ※ 미검사품 · 불합격품 유통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제조업체는 행정제재(영업 정지) 추가

☞ 값싼 수입인삼이 국내산으로 둔갑되고, 검사를 받지 않는 등 부적합 · 불합격 인삼제품의 시중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삼류 제품의 원산지 표시 강화, 원산지 허위

표시, 미검사 · 불합격품의 유통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는 국내 인삼산업 발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규제로 판단되며, 인삼류 제조업체는 500개로 규제강화에 따른 소비자 편익이 크며 이해관계인들이 이의가 제기되지 않은 바, 비중요규제에 해당되므로 원안의결

※ 식품위생법 등 식품관계법령에서는 위반자 벌칙과 위반업체 행정제재 병행

○ 인삼류 검사 및 관리 (강화)

– 인삼류 검사 및 관리

· 홍삼 · 태극삼 · 백삼(인삼류) 검사대상

〈현행〉

① 인삼류 판매 · 수출목적 제조자

② 자가제조 인삼류 판매 · 수출 목적 수집자

③ 인삼류 판매 목적 수입자

〈개정〉 : 검사대상 추가

④ 상기 검사품의 해장 · 소분 판매자

· 검사실적 기록 및 보존 의무 부가

인삼류검사기관은 검사실적을 품질보증기간 동안 보존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자체검사업체 지정 및 지정취소 등

〈현행〉

· 검사업체 지정요건, 지정 및 취소, 관리 · 감독은 농림부령으로 규정

〈개정〉

· 검사업체 지정요건(시설 · 인력 등) 변경시 신고의무 추가(※ 변경신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신설)

· 자체검사업체의 지정 취소 세부요건 상위입법화(규칙→법)

기준 미달제품 합격품으로 검사

검사필증 붙이지 않고 인삼류 판매

지정요건을 위반하여 검사한 경우 등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처분이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

· 지정취소된 검사업체는 2년 경과 후 재지정 신청가능하며, 지정취소 등의 세부기준은 농림부령으로 규정

– 검사원의 자격 등

〈개정〉 : 검사원 교육의무 추가

· 검사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교육 이수(※ 교육 미이수 검사원이 검사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교육기관, 소요경비 징수 등 필요사항은 농림부령으로 규정

※ 현행 검사업체는 9개소이며, 최소 인력기준은 업체당 2명임

☞ 부적합한 검사제품의 유통증가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인삼류 검사실적 기록 보존 의무 부가, 자체검사업체 지정요건 등 변경 시 신고의무 추가, 자체검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검사원에 대한 교육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다만, 검사업체의 지정취소 관련 상위입법화는 바람직하나, 1회 위반 시에도 지정취소되는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는 바,

· 지정취소 외에 일정기간(예, 6개월) 검사업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세부기준은 농림부령으로 위임

※ 제17조의3 ①---자체 검사업체로 지정된 자에 대해 다음 각호의 경우에 6개월의 검사업무정지를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 자체검사업체의 검사업무 정지 및 지정취소 등의 세부기준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 지정취소 요건중 제5호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는 불명확하기 때문에, '검사업무 정지 명령에 위반한 경우'로 수정할 것을 개선권고

– 아울러, 자체검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검사원 교육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검사원에 대한 교육주체가 분명하지 않는 바, 교육주체를 농림부장관(국립농산물검사기관장)으로 명확히 하고, 교육시간, 교육내용, 소요경비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부령에 위임토록 개선권고

○ 인삼류 제조업 신고 (내용심사)

– 인삼제품류 제조업 신고

〈신고의무 의제 조항 삭제〉

· 인삼제품류 제조업자는 시 · 군 · 구에 신고, 이 경우 식품위생법 식품의 제조 · 가공에 관한 영업신고 갈음

· 인삼제품류 제조업자는 식품위생법에 정한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함

· 인삼제품류 제조업 신고를 받은 경우, 식품위생법 소관 행정기관에 통보

☞ 인삼제품류 관리가 인삼산업법, 식품위생법에 의한 신고로 중복되어, '99.2월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01.1.26 인삼산업법을 개정하여 의제조항을 운영하였으나,

– '02.8.26「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건기법)」 제정 · 공포로, 건강기능식품인 인삼제품류의 제조업은 시 · 군 · 구 신고에서 식약청장 허가로 규제가 강화되어, 인삼산업법의 의제조항은 유명무실하게 되고, 신고 및 허가라는 이중규제 잔존

– 인삼농협 등 이해관계자들은 뿌리삼과 인삼제품류 규제가 건기법, 인삼산업법에 이원화되어 인삼산업 발전에 바람직하지 않고, '99년 규개위 취지와 같이 인삼산업법에 건기법 의제조항을 규정할 것을 요구

– 이중규제 해소를 위해서는
· 인삼산업법에 의한 신고 시 건기법의 허가를 의제토록 규정하거나,
· 건기법의 허가 시 인삼산업법에 의한 신고를 의제하여야 하나,
· 규제 수준이 다르고(신고 vs 허가), 처리기관(시 · 군 · 구 vs 식약청)이 달라 관계부처에서 어려움을 표시
· 또한, 인삼업자등도 인삼산업법에 의한 관리를 원하고 있음

– 따라서, 식품위생 · 관리 업무조정, 식품안전처 설립 등이 추진되는 바,
· 의제조항 삭제는 개정안에서 철회하고,
· 관계부처와 '99년 규제개선 취지, 인삼산업발전, 건강식품관리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할 것을 개선권고

(4)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법률안 (강화 2)

■심사내용

○ 우수농산물 인증취소 (강화)

〈현행〉

– 민간인증기관(현재 14개 업체) 우수농산물인증을 하도록 규정

〈개정〉

– 우수농산물 인증 후 인증 취소 규정이 없어 인증 받은 우수농산물 품질관리, 인증농가의 관리차원에서 인증취소 규정 도입

– 인정취소 세부요건

·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

· 인증기준에 현저히 맞지 않은 경우

· 표시변경 등 시정명령 등 불응 시

☞ 인증 받은 우수농산물의 품질보장을 위하여 부정한 방법, 인증기준 미달품 등에 대한 인증취소는 타당한 규제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 지리적 표시 등록 및 관리 (강화)

〈현행〉

–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받고자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부장관에게 신청

〈개정〉

– 등록사항 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 변경 시 농림부에 신청

– 지리적표시 등록자는 품질관리 및 생산계획서 제출(※ 시행규칙 제16조 상위입법화)

– 지리적표시권은 타인에게 이전 및 승계 불가, 다만 법인인 경우 법인명 개정, 개인인 경우 사망 시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 이전 승계

☞ 보성녹차, 순창고추장, 이천쌀, 의성마늘, 고창복분자등 제품특성이 생산지역과 밀접한 경우 이를 보호하기 위한 지리적 표시 등록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중요사항 변경, 상위입법화, 특허법 등과의 조화 등)을 개선 · 보완하기 위한 사항으로

– 지리적표시 등록이 18건에 불과하며, 이해관계인들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으며, 법령 개정 시 소비자 보호와 함께 등록자도 보호하는 측면이 있어 비중요규제로 판단하여 원안의결

(5)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2, 내용심사 10)

■심사내용

○ 축산물 포장유통 (내용심사)
- 포장대상 축산물을 우선 비교적 변질되기 쉬운 닭 · 오리고기로 함
- 포장대상 영업자를 닭 · 오리 관련 도축업 · 식육포장처리업 · 식육판매업 · 수입판매업 영업자로 함
- 구체적인 포장유통의 방법 규정

☞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와 품질 향상을 위해 '06.3.24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시 축산물의 포장유통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우선 적용이 용이한 닭과 오리고기에 대해 포장유통을 시행하는 것임.

닭 · 오리의 포장유통을 통하여 비포장상태로 유통될 시의 병원성 미생물의 재오염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국민의 식생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편익이 매우 크므로 필요한 규제라는 점은 인정하나,

다만, 시행시기와 관련하여 시행령 부칙 제2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도축두수 8만수를 기준으로 2단계로 나누어 시행하도록 한 것을 영세도축장의 부담을 고려 여러 단계로 나누어 시행시기를 조정토록 개선권고

※ 시행시기 및 도축장 기준설정(도축두수)은 위원회와 협의 후 결정토록 함.
또한 도축장에서 검사에 합격한 닭 · 오리에 대해서는 '합격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합격표시보다는 '검사필' 등의 표현이 더 적절하므로 이를 개선하도록 권고. 다만 '합격표시'라는 용어가 법률에 명시된 사항이므로 추후 법률개정시 추진할 것을 권고

○ 검사보조원의 자격 · 임무 · 교육 등 (내용심사)
- 포유류 도축장에서 검사관을 보조하는 검사보조원(정부에서 채용 · 배치)의 자격요건 · 임무 · 교육 등 규정

☞ 포유류 도축장 검사인력 부족으로 축산물검사에 어려움이 있어 정부에서 검사보조원을 채용하여 도축장에 배치함으로써 도축업자의 부담을 줄이면서 검사의 내실화를 기하려는 것으로,
검사보조원의 자격요건, 임무, 교육 등에 관하여 규정한 사항으로 대체로 적정하다고 판단됨

다만, 검사보조원의 임무 중 '검사관 감독하의 도축라인에서의 해체검사'는 검사보조원의 업무영역을 벗어나는 사항이므로 삭제할 것을 개선권고하고,
검사보조원에 대한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실시기관과 교육시간은 규정되어 있으나 교육내용이 규정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명시하도록 개선권고

○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사항 (내용심사)
- 현행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사항'을 시행령으로 규정
  · 시설변경의 경우 : 도축장(계류장 · 작업실 또는 냉장 · 냉동실), 축산물가공업(원료처리실 · 제조가공실 또는 포장실) 등

☞ 현행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사항'을 시행령으로 규정하여 상위 입법하는 내용으로
추가로 신설 · 강화되는 규제사항이 없어 별도의 심의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하여 원안의결

○ 위해평가의 대상 · 방법 및 절차 (내용심사)
- 위해평가의 대상 : 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가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판매 등을 금지 또는 제한한 축산물, 국내 · 외 연구 · 검사기관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원료 또는 성분 등을 검출한 축산물 등
- 위해요소 : 화학적 요인, 물리적요인, 미생물적 요인
- 위해평가 방법 및 절차 : 위험성 확인 · 위험성 결정 · 노출 평가 과정 및 3가지 평가의 결과를 종합하는 위해도 결정 과정을 거치도록 함
- 위해평가에 대한 세부적인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함

☞ 환경오염과 새로운 위해물질의 출현 등으로 축산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축산물의 위해요소를 평가하기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위해평가의 대상,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한 사항으로
국민의 식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사항일 뿐 아니라 그 평가의 효과는 전 국민에게 미치는 것이므로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필요한 규제이며 그 내용도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 법률에서 위임한 '위해평가의 절차'를 시행령에서 다시 고시로 재위임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위해성평가절차의 기본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정하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고시에 정하도록 개선권고

○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 (내용심사)
-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조정 : 10~300만원
  · 절박도살행위의 미신고,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작성 등 축산물 위생 · 안전상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에는 과태료를 인상하고,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현행 유지

☞ 규제의 실효성확보와 타 법률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법률(법제47조)에서 상한선을 인상하고 시행령에서 그 범위 내에서 위반행위별로 과태료금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별도의 심의가 불필요하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절차 · 방법 및 교육 등 (내용심사)
- HACCP 적용대상에 가축사육단계 추가에 따른 규정 정비
- HACCP 담당기관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 중에서 농림부 장관이 지정
  · 민법에 의한 비영리법인 또는 특수법인
  · HACCP운용에 필요한 전문인력 보유
- HACCP 교육 대상 영업자 또는 농업인의 교육훈련비 납부
- HACCP을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HACCP 담당기관에 수수료 납부

☞ 법률에서 선진위생관리제도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대상을 축산물의 처리 · 가공 · 포장 · 유통단계 뿐만 아니라 가축의 사육과 축산물의 원료관리까지 추가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리한 것으로서
가축사육단계 추가에 따른 HACCP 지정은 농가의 자율사항으로 비용지불은 농가의 선택사항이며, 대상농가도 총 15,000농가 중 년 20% 정도(3천 농가)가 지정을 원할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규제자 수 및 규제비용이 미미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하여 원안의결

○ HACCP 미운용 도축장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내용심사)
- HACCP 미운용도축장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행정처분 강화
  · 반드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실시

☞ 법률에서 HACCP 미운용도축장에 대하여는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부과 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른 하위법령의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신설·강화 등 내용변화가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의 위생교육 실시 (내용심사)
-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는 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4시간 이상 교육을 받도록 함

☞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에 대한 교육의무가 법에서 부과됨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4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으로 규제대상('05년 기준: 3,529명)이 미미하고, 교육시간도 4시간에 불과하여 피규제자에게 크게 부담을 주지 않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 자가 생산원유 직접사용 유가공품 생산목장에 대한 규제완화에 따른 원유검사 보완 등 (내용심사)
- 자가생산원유를 직접 사용하는 목장형 유가공업의 경우에 집유업 허가대상에서 제외(축산물가공업허가만으로 가능)
  · 따라서 원유검사,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집유업에 준하여 관리되도록 함

☞ 현행 자가생산 원유를 직접 사용하는 목장형 유가공업의 경우, 축산물가공업과 집유업 등 2가지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나, 원유의 수집행위가 필요치 않으므로 집유업은 허가대상에서 제외토록 완화(축산물가공업허가만으로 가능) 단, 원유 등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원유검사,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집유업에 준하여 관리되도록 규정하여 피규제자의 부담은 완화하되 원유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개정하였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 도축장외의 장소에서 도살·처리 기준 (내용심사)
- 농림부고시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상위 입법화
  · 병든 가축 등의 자가도살·처리 금지사항 등 규정

☞ 현행 농림부고시로 규정하고 있는 '도축장외의 장소에서 도살·처리기준'을 시행규칙으로 규정하여 상위입법하는 내용으로 신설·강화 등 내용변화가 없고 재량행위를 투명화하는 것이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 상습범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강화)
- 상습범에 대한 행위반복기간을 1년 → 3년(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으로 연장
  *중대한 위반행위 예시: HACCP 위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위반, 표시기준 위반 등

☞ 현행 위해축산물을 처리 · 가공 · 판매한 자 등에 대한 영업허가 취소는 3회 적발 시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행위반복기간이 1년내로 규정되어 있어, 상습적인 법령 위반자에 대한 제재수단으로서 실효성이 미흡하여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규제대상 ('05년 기준 행정처분대상자 3,529명중 일부)이 중요규제기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 영업자 준수사항 보완 (강화)
- 도축업 · 집유업 · 가공업 ·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 준수사항에 검사관 또는 축산물위생감시원의 출입 · 검사기록부를 1년간 보관하도록 함
  *축산물보관업 등 영업자 준수사항과 동일하게 규정

☞ 현행 시행규칙상 축산물보관업 · 운반업 · 판매업 영업자의 준수사항으로 검사관 또는 축산물위생감시원의 출입 · 검사기록부의 보관기간(1년)을 정하고 있으나, 도축업 · 집유업 · 가공업 ·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에 대해서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입법상 미비사항을 치유하기 위한 조치이며, 강화되는 사항으로 인한 피규제자수 (4,060개소)나 규제비용(미발생) 등이 중요규제의 기준에 미치지 않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6) 종자산업법 개정법률안 (내용심사 1)

■심사내용

○ 종자업의 등록 및 종자의 위탁보증 (내용심사)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인 자의 경우 종자관리사 보유면제(규제완화)
- 종자관리사를 두지 않는 종자업자의 경우에도 국가품종목록등재대상작물의 종자를 생산할 경우에는 종자관리사에 의한 위탁보증을 받아야 함

☞ 현행 종자업 등록시 종자관리사 1인 이상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정규모 이하의 영세한 종자업자에 대해서는 종자관리사 보유를 면제하여 종자업

으로의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며
국가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의 종자생산 시 품질보장을 위해 자체보증을 받아야 하나 종자관리사 보유면제로 인하여 자체보증이 불가능한 경우 위탁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하는 내용으로

영세한 종자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종자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므로 규제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전반적인 내용은 규제완화로 볼 수 있어 비중요규제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7) 비료관리법 개정법률안 (강화 3, 내용심사 1)

■심사내용

○ 비료 수입제한 (강화)

〈현행〉

–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거나 병해충이 유입되어 토양 환경 및 식물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보통비료 중 유기질비료 및 부산물비료와 그 원료에 대하여 수입을 제한할 수 있음

〈개정내용〉

– 수입되는 비료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수입량도 매년 증가함에 따라 보통비료 중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비료의 종류를 대통령령에서 별도 규정
· 수입을 제한하는 비료의 종류 확대 예정(복합비료, 미량요소비료 등)

☞ 위해한 비료의 수입을 제한하여 토양환경과 식물자원,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취지는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현재 법에서 정한 수입제한대상비료(보통비료 중 유기질비료, 부산물비료)중 보통비료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규제시행이 용이하도록 하는 측면이 있으며,

또한, 규제영향분석서에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수입비료의 위해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각종 수입비료의 정확한 위해성 분석자료 및 외국의 사례 등 충분한 현황파악이 되어있지 않으므로 수입비료에 대한 지속적인 검사를 통해 그 위해성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 때까지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철회를 권고

다만, 위해한 비료의 수입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수입비료에 대한 위해성을 증명할 자료를 조속히 확보하여 다음 법개정 시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

○ 비료생산업 등록 및 비료수입업 신고 (강화)
- 현행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비료생산업자의 등록사항 중 중요사항은 법률에 규정
- 비료수입업자에 대해서도 신고사항 중 중요사항을 법률로 규정
  ※ 현행은 신고 시에 농림부령에 의한 검사성적서만 첨부토록 함
- 비료수입업자의 신고사항 변경 시 변경신고의무 부여
  ※ 현재 비료생산업자에 대해서만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신고토록 규정
- 비료생산업 · 수입업의 등록 · 신고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을 시장 · 군수에 이양

☞ 규제대상이 비료생산업체(1,307개)와 비료수입업체(282개)에 불과하며, 비료생산업자 및 비료수입업자에게 제조원료 등의 중요사항에 대한 등록, 신고의무를 부여한 것은 등록 · 신고된 제조원료 외의 물질을 혼입한 비료의 제조 · 수입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며

비료수입업자에게 변경신고의무를 새로이 부여한 사항은 정보제공 등 행정서비스와 업소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하고 원안의결
다만, 비료생산업 · 수입업의 등록 · 신고에 관한 시 · 도지사의 권한을 시장 · 군수에 이양하는 것은 일선 시 · 군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부칙에서 시행시기를 조정하고 시행 전에 준비사항을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비료의 양도 · 진열 · 판매 제한 (강화)
- 현행 제한대상
  1. 보증표시를 아니한 비료
  2. 포장의 표시사항이 훼손되어 식별 곤란한 비료
  3. 유해성분 최대함유량을 초과한 비료
  4. 효력에 대하여 오인하기 쉬운 표시를 한 비료

5. 공정규격에서 정하는 원료 외에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
6.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외의 자가 생산 또는 수입한 비료

〈개정내용, 신설〉

7. 비료생산업 등록이나 비료수입업 신고 시 제출한 제조원료 외의 물질로 제조한 비료

☞ 농약성분 등 독성물질, 이물질을 혼입하여 제조한 불량비료의 공급으로 인하여 농작물의 피해 발생 및 소비자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

※ 연도별 비료 중 농약검출 내역

· ('03년) 4건 → ('04년) 2건 → ('05년) 4건

따라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등록 및 신고 시 제출한 제조원료 외의 물질로 제조한 불량비료의 판매 · 진열 · 유통을 금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동의

※ '05년 국회 국정감사 및 감사원에서 비료에 농약성분이 검출된 사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등 관심 증대

○ 판매중지 · 회수 · 폐기 등의 조치 (내용심사)

– 현행 대상

1.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해성분 최대함유량이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비료
2. 공정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부산물비료로 지정되지 아니한 비료
3. 보증성분량과 실제 함유성분량과의 차이가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비료
4.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유통기한이 경과된 비료

☞ 비료의 양도 · 진열 · 판매제한 대상으로 법률안 제14조 7호로서 신설 규정된 '비료생산업 등록이나 비료수입업 신고 시 제출한 제조원료 외의 물질로 제조한 비료'의 경우도 법 제19조에 의한 판매중지 · 회수 ·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19조에 포함할 것을 개선권고

〈예시〉 제19조 제5호 신설

5. 비료생산업 등록이나 비료수입업 신고 시 제출한 제조원료 외의 물질로 제조한 비료

(8) 농어촌정비법 개정법률안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 농업기반시설의 관리 (신설)
- 목적 외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행위 금지
  1. 농업기반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을 손괴하여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2. 농업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시설관리자의 허락 없이 수문조작, 용수의 인수 등으로 농어촌용수의 이용 ·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 일반인이 농업기반시설물을 손괴 하거나 무단 점 · 사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위반 시 원상복구나 철거에 시간과 비용이 과다 소요되는 등 문제점 발생
불법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설물의 보호 및 소송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고, 규제로 인한 비용발생이 없을 뿐 아니라 피규제자도 미미하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 '00년 1월부터 '06년 5월까지의 소송건수: 189건(소송비용 15억원)

○ 지정된 지역 · 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강화)

〈현 행〉
- 농업기반정비사업지역, 농어촌관광휴양단지등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석 · 사력의 채취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락을 받아야 함

〈변 경〉
- 허가대상행위에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추가

☞ 농업기반정비사업지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 안에서의 허가대상행위에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추가 규정하는 것으로
토지형질 변경, 건축물의 건축 등 행위제한내용이 개별 법률마다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것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서 정하는 내용에 맞추어 통일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토지이용과 관련된 국민의 혼란을 최소화 하려는 것으로 피규제자가 적고 비용부담이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9)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법률안 (강화 7, 내용심사 3)

■심사내용

○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강화)

〈현행〉

- 가축의 소유자 등이 수의사에게 검안이나 진료를 의뢰할 경우 수의사만 전염병 발생 신고 의무를 짐(의뢰자는 신고의무 없음)

〈개정내용〉

- 수의사가 검사결과를 의뢰한 자에게 통보토록 하고 전염병일 경우 의뢰자에게도 신고를 의무화
-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당해 농장에 가축의 출입을 금지

☞ 종전 수의사에게 가축의 진단이나 검안을 의뢰한 소유자 등에게는 전염병발생 신고 의무가 면제되었으나 향후 의뢰자에게도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으로
가축전염병 발생시 신고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초동방역 실시로 피해를 줄일 수 있으나 농가의 피해를 우려해 신고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임
가축전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신고가 불가피하므로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동의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피해액

- 구제역 : 4,440억원 ('00 : 3,006, '02 : 1,434)
- 돼지콜레라 : 518억원 ('00 : 214, '03 : 304)
- 조류인플루엔자 : 1,531억원('03~'04)
- 소부루세라 : 매년 1,000억원 이상 ('05년부터), '05년 이전 매년 100~500억원

○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 (강화)

〈현행〉

-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에 관한 규정만 있음

·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가축의 질병진단 등 병성감정을 할 수 있는 시설과 능력을 갖춘 대학 · 민간연구소 등을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내용〉

– 지정취소에 관한 규정 신설

·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을 검안하거나 진단하고 신고하지 않은 때
3. 구비요건 · 병성감정실시요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때

☞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고 있고 지정취소에 관한 규정이 없는 입법미비사항을 치유하기 위한 것으로 법무부 의견을 반영한 사항이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하여 원안의결

○ 검사 · 주사 · 약물목욕 · 면역요법 또는 투약의 실시 등 (강화)

– 가축전염병의 발생이나 확산을 막기 위하여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사항으로 현행 검사 · 주사 · 약물목욕 · 또는 투약 외에 면역요법 추가

☞ 농가가 가축의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몰래 혈청을 만들어 무분별하게 사용하여 오히려 전염병을 확산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가축방역기관의 지도아래 면역요법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고 농가에서도 바라고 있는 사항이며 추가되는 규제비용도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 소독설비 및 실시 등 (강화)

– 가축전염병의 발생이나 확산을 막기 위하여 소독설비를 갖추어야 하는 대상에 현행 가축사육시설 소유자, 도축장 · 집유장의 영업자, 사료제조업자,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자, 가축시장 · 가축검정기관 · 종축장 · 부화장의 운영자 외에 계란집하장의 운영자 포함

☞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축집합시설에 소독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계란수송차량이 운행되는 계란집하장은 대상시설에서 빠져있어 가축전염병의 확산 우려 있음

규제대상시설이 60개에 불과하고 규제비용도 미미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하여 원안의결

※ 개소당 10백만원×60개소 = 6억원

○ 제2종 및 제3종 가축전염병에 대한 조치 (강화)

– 현행 1종가축전염병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는 전염병 발생지역으로 들어오는 사람, 가축 또는 차량의 교통차단, 출입통제 또는 소독하는 조치를 2종가축전염병에 확대 적용

– 현행 1종과 2종으로 구분되어 있는 가축전염병을 2종가축전염병을 2종과 3종으로 구분하여 3종 가축전염병에 대해서는 완화된 관리 규정 적용

· 3종 가축전염병에 대해서는 강제폐기, 도태의 권고 조항 적용 배제

☞ 2종가축전염병이 발생할 경우에도 1종의 경우와 같이 전염병 발생지역으로 사람, 가축 또는 차량이 들어오는 것을 통제하여 가축방역을 철저히 하기 위한 것으로

2종전염병 중에도 '소브루셀라'와 같이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사람에게도 감염될 뿐 아니라 매년 수백억원이상의 피해를 주는 전염병의 확산방지와 빠른 방역조치를 위해 교통차단이나 소독조치가 요구된다고 판단되며

2종전염병 중 비교적 피해가 경미하며 농가의 자율방역이 가능한 전염병에 대해 3종전염병으로 지정하여 3종전염병에 대해서는 종전 2종전염병에 적용되던 강제폐기 등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므로 원안동의

○ 검역물의 수입금지 (강화)

–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으로 인한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유입가능성에 대한 수입위험분석을 실시

※ 현재도 시행은 하고 있으나 법령 등 근거 없이 시행

※ 지정검역물

· 동물과 그 사체,

· 뼈 · 살 · 가죽 · 알 · 털 · 발굽 등 동물의 생산물과 그 용기 또는 포장

· 가축전염성 질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있는 사료 · 기구 · 깔짚 등

☞ 현행 농림부 고시에 의해 시행하고 있는 수입위험분석에 대한 근거규정을 법에 명시하는 것으로 규제투명화 원칙에 부응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하여 원안의결

※ 수입위험분석 내용

1. 수입허용가능성 검토
2. 수출국정부에 가축위생설문서 송부
3. 가축위생설문서에 대한 답변서 검토
4. 가축위생실태 현지조사
5. 수입허용여부 결정
6. 수출국과 동물 또는 축산물 수입위생조건 안 협의
7. 수입위생조건 제정 · 고시
8. 수출작업장 승인 및 검역증명서 서식협의

○ 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 (내용심사)

– 현행 수입금지물건 처리방법으로 반송, 소각 또는 매몰이 있으나 여기에 여타 방법 추가 (랜더링 등)

※ 랜더링(rendering) : 전염성이 있는 병원체를 열처리를 통해 불활화 시키는 과정

☞ 수입금지물건의 처리방법을 다양화하는 것으로 규제를 신설 · 강화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하여 원안의결

※ 수입금지물건을 반송하거나 소각 또는 매몰방법으로만 처리하는데는 장소의 부족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어 랜더링 등 가축방역상 안전한 방법을 추가하는 것임

○ 검역시행장 지정 (강화)

– 검역시행장의 지정에 관한 근거규정만 있고 위법행위 시 시정명령이나 지정취소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내용 보완

·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인력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지정대상 · 기간 · 시설기준 · 운영 등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함

· 지정을 받은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검역시행장의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함

· 시정명령 할 수 있는 경우

검역시행장의 지정요건에 미달

검역시행장의 관리기준 미준수

· 지정취소 할 수 있는 경우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시행장 지정을 받은 때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검역시행장 지정을 받은 자가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시정명령이나 지정취소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입법미비사항을 치유하는 것으로 법무부 의견을 반영한 사항이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하여 원안의결

○ 검역물의 관리인 지정 등 (내용심사)

– 현행 검역물 사양관리인 · 보관관리인 · 운송차량에 대한 지정 및 취소에 관한 내용이 농림부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법률에 규정

· 사양관리인 · 보관관리인 지정취소사유

1.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때
2. 사양 및 보관관리기준에 위반한 때
3. 자격상실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4. 규정에 위반하여 지정검역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한 때
5.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운송차량 지정취소사유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 등록이 취소된 때
2. 보세운송업자 등록이 취소된 때
3. 자동차등록이 말소된 때
4. 지정검역물 운송차량 설비조건을 갖추지 아니한 때
5. 운송차량소독 등의 명령에 위반한 때

☞ 현행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역물 사양관리인 · 보관관리인 · 운송차량에 관한 지정취소 사항 '을 법에 규정하여 상위 입법하는 내용으로 재량행위 투명화에 부합하는 사항임

다만 법 43조 제3항 제5호에서 사양관리인 또는 보관관리인의 지정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는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구체적으로 법조항을 명시하거나 명시하기 어려울 경우 삭제할 것을 개선권고

○ 과태료 (내용심사)

– 해외여행객이 지정검역물을 단순휴대품으로 반입 시 미신고한 사항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된 것을 과태료로 전환

– 수입화물 운송회사가 목적지 도착 전 또는 도착 즉시 화물목록을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는 것을 요청 시에만 제출토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해외여행객이 지정검역물을 단순휴대품으로 반입 시 미신고한 사항에 대한 범칙금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과
기존에 수입화물 운송회사가 목적지 도착 전 또는 도착 즉시 화물목록을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는 것을 요청 시에만 제출토록 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300만원)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사항이 주이고 규제대상도 498개소에 불과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하여 원안의결

(10) 농업유전자원의 보존 · 관리 ·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 (신설 3)

■심사내용

○ 분양승인 및 승인의 제한 · 취소 등 (신설)
- 농업유전자원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 분양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농업유전자원 분양승인의 제한
  · 시험 · 연구의 목적 외에 이용하려는 경우
  · 보존되어 있는 농업유전자원의 보유량이 부족한 경우
  · 다른 법령에 의거하여 국외반출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
  · 국외분양 시 국익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농업유전자원 분양승인의 취소
  · 속임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은 경우
  · 분양승인을 얻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과태료
  · 농업유전자원 분양절차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국가자산으로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농업유전자원의 보존 · 관리 및 이용을 위한 법률 제정임

농업유전자원의 분양 시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사항과 분양승인의 제한 및 취소사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분양절차를 위반하여 분양받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으로, 규제신설에 따른 이견 제기가 없고 추가 규제비용이 없으며

피규제자도 농업유전자원을 이용하여 품종개발 등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로서 약 700여명에 불과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하여 원안의결

○ 국내 농업유전자원의 국외반출제한 등 (신설)
- 농업유전자원을 국외 반출 하려는 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 국외반출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농업유전자원을 국외 반출하려는 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농업유전자원의 무분별한 국외 반출을 방지하여 국가경쟁력을 증대시키고 자원주권을 강화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며, 규제신설에 따른 이의 제기가 없고 규제비용이 추가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하여 원안의결

○ 농업유전자원관리기관의 지정 · 취소 등 (신설)
- 농림부장관은 농업유전자원관리기관을 지정 ·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농업유전자원관리기관의 지정취소 사유 규정
  · 속임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경우
  · 지정기준을 갖추지 않은 경우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농업유전자원관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농업유전자원의 수집 · 보존 · 조사 · 평가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식물 · 동물 · 미생물 등 분야별 농업유전자원관리기관을 지정 ·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규제의 신설에 따른 규제비용이 추가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규제대상도 대학이나 연구소 등 10개소에 불과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하여 원안의결

(11)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개정안 (내용심사 1)

■심사내용

○ 수입금지식물 · 금지지역 및 금지병해충에 관한 별표 개정 (내용심사)
- '참나무역병'을 금지병해충에 추가하고, 수입금지지역 및 금지식물을 규정
- 소나무재선충병, 감귤그린병, 담배노균병, 바나나썩이선충 관련 수입금지지역 추가

- 개미바구미 관련 기주식물로 밝혀진 '새삼속식물의 생경엽과 생식물의 지하부'를 수입금지식물과 일본 혼슈 등 수입금지지역 추가
- 콜로라도잎벌레의 기주식물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양배추 및 후추의 생경엽, 엉겅퀴속 식물의 생경엽'은 금지식물에서 삭제

☞ 외래병해충의 국내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지병해충을 추가하고, 금지병해충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지역산 기주식물에 대하여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국내 식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므로 원안동의

(12)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2)

■심사내용

○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매입농지등의 임대기간 (신설)
- 한국농촌공사가 경영회생 지원을 위하여 매입한 농지 등을 해당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기간을 5년으로 규정
- 농지 등을 매도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임대기간 내(5년)에 경영회생이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 등의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동 농업인 등의 농지를 매입하여 부채를 상환하게 하고, 그 농지 등을 임대하여 경영회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임대기간 5년과 3년의 기간 연장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동의
※ 1. '농지은행제도 도입에 관한연구' ('04KERI) : 임대기간 5년제시
2. '민법 제591조에서 부동산 환매기간 : 5년으로 규정

○ 농지의 임대 · 사용대 · 매도의 수탁관리 (신설)
- 한국농촌공사가 농지의 임대 · 매도 수탁할 수 있는 기준을 규정
  · 수탁할 수 있는 농지의 규모 : 농업진흥지역안 1,000㎡ 이상인 농지, 농업진흥지역 밖 1,500㎡ 이상인 농지
  · 수탁할 수 없는 지역 :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안의 농지, 농지전용허가 · 신고를 한 농지, 개발용도로 지정된 지역 · 지구 · 구역 · 단지안의 농지 중에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농지

– 농지매도 · 임대 · 사용대 수탁사업시행에 따른 수수료 요율 기준을 규정
· 수탁수수료 요율 ⇒ 임대수탁 : 임대료의 12% 이내, 사용대수탁 : 위탁계약당 20만원 이내, 매도수탁 : 매도대금의 1% 이내

☞ 한국농촌공사가 수탁할 수 있는 농지의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영농규모화촉진 등 농업구조개선과, 동 업무대행에 따른 최소한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농지수탁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규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동의

2. 산림청

집필자 : 강창권 사무관(Tel.2100-2455, kcg0103@opc.go.kr)

가. 2006년 신설 · 강화규제 심사 개요

❍ 2006년도에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규칙 제정안,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규칙 제정안, 국유림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규칙 제정안,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 등 4개 법령에 대해 신설 1건, 강화 1건, 내용심사 19건, 누락 1건 등 총 22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중요규제 10, 비중요규제 12)

❍ 심사대상 22건 중 9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 하였고, 13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산림청의 2006년도 총 신설규제는 1건임

< 산림청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규칙 제정안	제250차 경제2분과 (2006.5.17)	원안의결 2 개선권고 2	누락1 내용3 *중요2, 비중요2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규칙 제정안	제251차 경제2분과 (2006.5.24)	원안의결 9 개선권고 7	강화1, 내용15 *중요7, 비중요9
국유림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규칙 제정안	제253차 경제2분과 (2006.6.7)	원안의결 1	내용심사1 *중요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	제259차 경제2분과 (2006.8.16)	원안의결 1	신설1 *비중요1
계		원안의결 13 개선권고 9	신설 1, 강화 1 내용심사 19 누락 1 중요10,. 비중요12

나. 2006년도 신설 · 강화규제 세부심사 내용

(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규칙 제정안 (누락 1, 내용심사 3)

■심사내용

○ 산림문화 · 휴양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인증 · 인증취소 (누락)

- 인증절차
  · 인증신청서 작성→산림청 제출→인증심사위원회 심사(※ 보완 및 개선요구 가능)→인증 고시→인증서 교부 및 인증표시→교육내용 분기별 결과 보고
  · 인증신청 및 인증서 발급 세부절차는 산림청장이 정함

- 인증기준
  · 산림문화 · 휴양 교육프로그램 : 10시간 이상(활동, 현장학습), 6과목
  · 숲해설가 교육과정 : 초급(140시간), 중급(60시간), 고급(30시간이상), 8~15개 과목
  · 등산안내인 교육과정 : 11과목 80시간
  ※ 인증대상 : 산림문화 · 휴양 교육프로그램, 숲해설가 · 등산안내인 교육과정

- 교육내용의 결과통보
  · 교육기관은 분기별 교육참여자 인적사항, 교육일자, 시간, 장소 및 내용 등을 산림청장에게 통보 의무

- 인증표시
  · 산림청장이 정한 인증표시 마크
  · 교육과정 등의 인증표시는 일반국민이 알아보기 쉽도록 하여야 함

☞ 법률에서 숲 탐방 활성화 등을 위하여 숲 해설가 및 등산안내인 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제도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필요하다 판단됨

다만 인증 교육기관의 교육내용 결과 통보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법률에 근거가 없는 규제로서, 행정관청에서 지도·점검 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삭제를 권고함

규칙안 제5조 제1항 관련 별표2의 산림청장이 정한 인증표시와 작도법에 따라 인증표시를 하면 되므로 법조문의 간결·명확화를 위해 일반국민이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하도록 규정한 규칙안 제5조 제2항의 삭제를 권고함

○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조성·관리 (내용심사)

– 자연휴양림의 지정기준

· 경관 : 경관이 수려한 산림

· 위치 : 국민이 쉽게 이용하는 지역

· 기타 : 농림부령이 정함

※ 농림부령 규정

국가 등 조성산림 : 30㏊ 이상/ 국가 등 이외 조성산림 : 20㏊ 이상/

적지평가 조사결과 조성적지

· 지정신청 서류

1. 지번·지목·소유자별 등 토지조서
2. 소유권, 사용·수익권 증명서류
3. 위치도 및 구역도
4. 휴양림 조성개요서, 적지평가조사서 등

– 자연휴양림의 시설종류·기준

· 시설종류 : 산림욕장, 야영장, 숙박시설, 자연관찰원, 숲속수련장, 임업체험시설, 취사장·화장실 등

· 시설기준 : 숲속수련장은 100명 이상 수용 규모 등 개별 기준을 두되, 해당 산림상태, 입지조건 등을 고려 설치

– 자연휴양림 타당성평가의 항목·방법 및 기준

· 자연휴양림시설 설치기준

1. 산림형질변경 10만㎡이하

2. 건축물 총 바닥면적 1만㎡ 이하
3. 개별 건축물 연면적 900㎡, 음식점은 200㎡이하 등

· 타당성 평가방법 : 평가자, 평가시기, 평가방법 규정
· 타당성 평가 항목별 기준 : checklist

– 자연휴양림 조성계획의 신청 · 승인 절차
– 자연휴양림 휴식년제, 지정해제 등
– 산림욕장 종류 · 기준
· 편익시설 : 산책로 · 벤치 · 쉼터 등
· 오염처리장 · 화장실 등 : 쾌적성과 편리성을 갖추되, 식수는 보건위생상 무해한 음용수일 것
· 자연관찰원 : 자연탐구 및 학습에 적합한 산림으로, 접근성 · 안전성 · 산림에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산림욕장 조성계획 신청 · 승인 절차

☞ 법률에서 정한 자연휴양림 또는 산림욕장조성에 대한 조성계획 승인제도와 휴양시설의 종류 및 기준을 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다만, 자연휴양림 지정기준 중 면적은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토록 하였음으로,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면적 관련 사항은 시행령으로 규정할 것을 개선권고

타당성평가의 선행절차인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단계에서 법률 제14조 제3항에 의거 휴양시설의 종류 및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고, 조성계획에 시설물 규모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시행규칙안 제15조 제1항 제1호) 타당성 평가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는 시행령 제8조 관련 별표1중 휴양시설 설치기준(산림형질변경 10만㎡ 이하, 건축물 총 바닥면적 1만㎡이하, 개별 건축물 연면적 900㎡ 이하, 음식점은 200㎡ 이하 등)의 규정을 법률 제14조(자연휴양림의 조성) 제3항에 의한 시행령 제7조에 규정할 것을 개선권고

산림욕장의 시설기준 중 식수 관련사항은 보건위생상 무해할 것으로 모호하게 규정하지 말고,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으로 수정할 것을 개선권고

○ 등산로의 휴식년제 (내용심사)

- 휴식년제 세부 고시내용
  · 등산로의 명칭
  · 휴식년제 실시의 목적
  · 대체등산로의 이용안내
  · 위반에 따른 벌칙조항 등
- 휴식년제 등산로의 출입허가 예외사유
  · 산불예방, 병해충 및 유해조수 구제 등

☞ 등산로 휴식년제 실시를 위한 세부고시내용, 출입허가 예외사유 등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 과태료 부과 (내용심사)
- 과태료의 부과·징수방법, 징수절차 등을 규정

☞ 법률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2)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강화 1, 내용심사 15)

■심사내용

○ 벌채지에 대한 조림 (내용심사)
- 조림예외지역
  · 어린나무 2만본/㏊정도 있는 경우
  · 참나무류 어린나무가 5천본/㏊정도 자란 경우
  · 참나무류 움싹이 발생된 그루터기가 1,200/㏊개 정도 균일하게 분포
- 벌채지의 조림의무 기간
  · 벌채한 날부터 3년 이내 조림 실시
  · 기후, 토양 등 고려 자연친화적 조림

☞ 현행 산림법시행규칙 제34조의 사항을 준용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됨
다만, 조림예외지역을 판단하는 시점이 모호하고, 조림의무기간이 벌채한 날로 규정되어 벌채 시작일인지 완료일인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명확히 규정할

것을 개선권고

○ 산림경영계획 변경인가 · 인가취소 등 (내용심사)
- 산림경영계획 인가취소
  · 산림경영계획 인가취소 기준은 사업 실적이 50% 미만인 경우
  · 인가 취소 예외 사유
    산림소유자 사망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규정에 의해 산림사업의 제한을 받게 된 경우
- 산림경영계획 변경인가 사유
  · 벌채의 연도 · 장소 · 양 및 방법
  · 굴취의 연도 · 장소 및 양
  · 임도시설의 설치연도 및 장소
- 산림경영계획 작성경비 기준
  · 산림기술자가가 받는 산림경영계획 작성경비 기준을 산림조합중앙회장이 정하고 산림청장이 인가함

☞ 현행 산림법 제8조, 영 8조, 제12조,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을 산림경영계획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산림경영제도 내실화를 위하여 사업실적이 50% 미만인 경우에 산림경영계획 인가 취소, 변경인가 사유, 산림경영계획 작성경비 기준 인가 등은 현행 규정을 준용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산림경영계획 인가취소 예외사유 중 영 제11조 제2항 제2호는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현행 산림법시행령 제12조 제1호 다목의 내용대로 규정할 것을 개선권고

○ 산림경영계획 사업착수(시업) 신고 (내용심사)
- 산림경영계획을 인가 받은 산림소유자가 벌채를 수반하는 산림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착수 5일전까지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현행 산림법시행규칙 제10조를 규정된 사항으로, 입목벌채는 허가사항(법 제36조)이나,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은 경우 신고로 대체하고, 현행 7일전 신고를 5일전으로 완화하여 산림소유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의결

○ 산림용 종 · 묘생산업자 등록 등 (내용심사)

– 종묘생산업자 자격기준 설정

· 산림용 종 · 묘 생산업자의 등록자격

임업종 · 묘 기능사 이상 자격자 / 임업직 공무원으로 임업 또는 조경분야 5년근무, 종 · 묘 기술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자 / 대학(전문대학)의 임업분야학과 · 원예학과 또는 조경학과 졸업 후 종 · 묘 기술 관계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자 / 해당 자격자 상시 고용 개인 또는 법인

· 버섯종균생산업자의 등록자격

버섯종균기능사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 대학(전문대학 포함)의 농업분야학과 · 생물학과 또는 미생물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버섯종균 제조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 외국의 버섯종균관계 기술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이상 연수자(수료증 또는 자격증 소지자)로서 버섯종균 제조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해당 자격자 상시 고용 개인 또는 법인

– 종묘생산업자 변경등록

· 종 · 묘 생산업자는 기술자격자와 생산시설의 규모 변경 시 30일 이내에 시 · 도에 변경사항 신고

– 묘목대행생산자의 자격 기준

· 포지 1ha, 묘목생산경력 2년, 간이온실 725㎡ 이상 등

– 종묘생산업자 행정처분 기준

· 위반형태 · 횟수별 영업정지 또는 취소

☞ 산림용 종자와 묘목의 품질을 보장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우량 산림용 종·묘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서 생산업자 및 대행생산자의 자격, 시설 변경 시 변경등록, 법령 위반 시 구체적인 행정처분 규정 등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법 제정 시 신규로 반영된 묘목대행생산업자의 자격기준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산림용 종 · 묘 생산업자의 자격기준 중 대학의 관련학과 졸업 후 3년 이상 종사자는 현행과 같은 2년 이상 종사자로 규정할 것을 개선권고

○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및 등록취소 등 (강화)

– 산림사업법인 변경등록 요건

· 법인 명칭 · 대표자 · 소재지 · 기술자격자 변경 시 등록사항 변경

–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

· 산림사업법인 종류별 기술능력, 자본금, 사무실, 현장대리인 기준 등 강화

· 자본금 증액 : 5천→1억원, 2억→3억원
산림경영계획, 숲가꾸기, 나무병원은 현행 5천만원 → 1억원 / 산림토목, 자연휴양림은 현행 2→ 3억원
· 사 무 실 : 기준 없음 → 30㎡ 이상
· 기술인력 : 현행 수준과 비슷하게 규정
· 현장대리인 : 없음 → 기술인력 1~2인

– 사업법인 행정처분 기준
· 시정명령 미 이행 시 6개월, 등록요건 갖추지 못한 경우 3월의 영업정지

☞ 산림사업법인 변경등록, 행정처분 기준 등은 등록제도의 실효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아울러, 산림사업법인의 기술자격기준, 자본금, 사무실 등 등록기준 강화는 산림사업의 질적 수준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법적 근거가 미흡한 현장대리인 등록기준을 삭제하고, 사무실 면적기준에 있어서는 1인이 운영할 수 있는 나무병원법인의 경우에도 타 사업법인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나무병원의 사무실기준을 하향(30㎡ 이상→20㎡ 이상)할 것을 개선권고

○ 산림사업 설계 · 감리 (내용심사)
– 설계 · 감리 대상사업 범위
· 정부 보조 · 지원사업 중 3ha이상 조림, 50ha이상 숲가꾸기 사업, 임도 · 사방사업 (감리는 공사비 규모가 2억 이상)
· 산림청장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 소규모 산림의 조림, 숲가꾸기 사업도 설계 · 감리 실시
· 시공 · 감리의 분리 : 감리자를 시공자로 선정할 수 없고, 숲가꾸기사업은 설계자와 감리자도 동일인 선정 금지

– 산림사업의 설계
· 설계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구분
· 기본설계에 지역산림계획 등 상위계획 반영

– 산림사업의 감리
· 설계도서의 적합여부, 안전관리 등 감리
· 감리기준과 세부요령은 산림청장이 정함

– 책임기술자 · 감리자 배치

· 설계자와 감리자는 책임기술자와 감리원을 각각 배치하며 배치기준을 정함

☞ 현재 산림사업은 정부가 50~90%까지 보조하고 있어 보조금의 효율적 사용, 산림사업의 부실화 방지를 위하여 설계·감리대상을 정부가 지원하는 일정 규모 사업으로 한정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설계기준, 인력기준 및 배치 등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영 제26조제2항에 소규모 사업도 산림청장 또는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설계·감리를 하도록 하는 것은, 자의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경우 모든 소규모 산림사업에 대하여 설계·감리를 실시하게 되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바, 행정행위 투명화를 위하여 산림청장이 고시로 요건을 정하는 소규모 사업에 대하여만 설계·감리를 실시하도록 개선권고

○ 산림기술자 자격제도 (내용심사)

– 산림기술자 종류별 자격기준 및 업무범위

· 산림기술자의 종류를 산림경영기술자, 산림공학기술자, 목구조기술자, 수목보호기술자로 구분하고 기술종류별 자격요건과 업무범위를 정함

· 산림기술자의 자격 취소,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산림청장에게 산림기술자자격증을 반납

– 사유림 경영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산림경영지도원의 자격을 정함

· 산림지도사 : 산림·조경·임업종묘·임산가공 분야 기술사·기사·산업기사·기능장, 임업분야 대학(전문대) 졸업자로 임업연구·지도기관에 5년 이상, 산림지도원으로서 10년 이상 종사자

· 산림지도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조경·임업종묘·임산가공 분야 기능사, 고교 임업분야 졸업자 등

☞ 산림사업은 기술 종류별로 기술능력이 상이하므로 기술 종류별로 자격기준과 요건을 정하고,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시 자격증 반납 등 자격증 관리에 관한 사항은 산림기술자 자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므로 원안의결

○ 입목벌채 등 허가 및 신고 (내용심사)

– 입목벌채 변경허가 사항

· 구역면적 변경

· 벌채 · 굴취 · 채취면적 변경
· 허가수량 변경

– 입목벌채 제한지역
· 명승지 · 유적지 · 휴양지 · 유원지 등 산림청장 고시지역과 산사태 위협지역
· 제한지역 고시 시 산림소유자에게 통지

– 허가 또는 신고에 의한 벌채
·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입목벌채로 토사유출 · 산사태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않은 지역 등에서는 신고 후 벌채
· 오동나무, 현사시, 옻나무, 양버들, 미루나무 등과 불량 치수림 수종갱신의 경우 등

– 임의의 입목벌채
· 산림경영계획 또는 국유림경영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 자연휴양림 · 수목원 조성 승인을 받은 때
· 국유림에서 시험 · 연구, 문화재 보호를 위한 경우
· 채석신고 · 토사채취신고 등의 경우와 국민생활편의를 위한 경미한 행위 등

– 입목벌채 허가 절차
· 허가신청서에 벌채구역도, 벌채예정수량조사서, 사업계획서 1부를 첨부하여 시 · 군 · 구 등 허가기관에 신청
· 허가기관은 벌채, 굴취 · 채취 구역 경계표지의 적정여부, 대상목의 선정 및 표지의 적정 여부, 버수 종별 기준 벌기령 및 벌채기준 등을 확인 후 허가증 교부

※ 일반 기준벌기령 : 소나무 50년, 춘양목 100년, 잣나무 60년, 낙엽송 40년, 참나무류 50년, 포플러 15년 등

– 벌채대상목 표시
· 입목벌채 신고자는 벌채구역 및 벌채 대상입목 등에 표지

– 입목벌채 · 임산물 굴취 · 채취 연기신고
· 입목 벌채, 임산물 굴취 · 채취를 지정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할 경우 연기신고

☞ 허가받은 구역면적, 벌채 · 굴취 · 채취면적, 허가수량 변경 시에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벌채허가제도의 실효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1본의 허가수량 변경 시에도 변경허가를 득하도록 한 것은 과도한 규제로 판단되는 바, 허가수량의 일정규모(10%) 이상의 변경 시에만 변경허가를 득하도록 규정하고, 행정관리상 필요하다면 그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자가 허가기관에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할 것을 개선권고

※ 벌채과정에서 허가수량보다 1~2본이 추가될 수 있으나, 허가사항 위반 시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백만원 이하의 벌금
벌채허가를 받거나 벌채신고자는 벌채구역 및 대상입목에 표지를 하고, 허가기관 등은 이를 검인하는 벌채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 및 개정법령은 벌채허가자에게 명시적으로 표지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허가기관에서는 이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벌채신고자에게는 표지 의무를 부여하되 행정기관은 검인의무가 없는 바,
실제 제도 운영 현실을 반영하여 개정안을 수정할 것을 개선권고

○ 임산물의 규격 고시 대상 (내용심사)
- 임산물 품질향상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규격 고시 대상 : 합판, 방부처리목재, 침엽수구조용제재목

☞ 합판, 방부처리목재 등 3종은 건축재로 널리 사용되는 제품으로 규격 · 품질 표시의 필요성이 있는 바, 원안의결

○ 임산물 유통 제한 (내용심사)
- 임산물의 수급조절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유통 · 생산 ·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품목에 송이버섯, 솔잎을 규정

☞ 무분별한 송이버섯 채취 방지, 솔잎혹파리, 소나무재선충병 등 병해충 예방 · 구제를 위해서 농약 살포 지역의 농약잔류여부 확인이 어려운 솔잎의 유통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필요하므로 원안의결

○ 임산물 수입추천제 및 수입이익금 부과 대상 (내용심사)
- 수입신청기재사항 : 관세통계분류 품목번호, 품명, 수량, 총 금액
- 수입이익금 부과 대상 : 밤, 잣, 대추

☞ 밤, 잣, 대추는 국내 생산 주요 단기소득 임산물로서 외국산 수입에 따른 국내 생산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WTO 협정에 따른 수입이익금 징수 품목으로 정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 보안림 지정 · 관리 (내용심사)

- 보안림 종류 및 지정기준
  · 토석방비보안림 : 토사유출, 낙석예방 등
  · 생활환경보안림 : 도시 · 공단주변 등
  · 비사(飛砂) · 해안방비보안림 : 해안지대
  · 수원함양보안림 : 제1종~제3종
  · 어촌보안림 : 어류의 유치 · 증식필요
  · 경관보안림 : 명승지, 유적지 등 관광
- 보안림 관리기준
  · 보안림에서 토지 형상 변경, 토석 및 토사 굴취 · 채취 행위 제한
  · 고사상태 입목 등 벌채, 임도 · 운재로 및 작업로 설치 등은 허가 후 가능
  · 수원함양증진을 위한 활엽수, 복층림 조성 등을 위한 벌채는 신고 후 가능
- 보안림 해제 사유, 지정 · 해제 시 통지, 고시, 이의신청, 손실보상 등 관리절차 규정

☞ 현행 산림법시행령 제51조의2, 제52조, 제52조, 제54조, 시행규칙 제44조 내지 제53조의 보안림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보안림 지정 해제 사유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등 보안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의결

○ 산림정화보호구역 및 입산통제구역의 지정 및 해제 등 (내용심사)
- 산림정화보호구역 지정 기준
  · 등산로 등 입산자 왕래가 많은 지역
  · 자연휴양림 또는 임간수련장 등
  · 산림유전자원보호림 · 채종림, 시험림 등
- 입산통제구역의 입산허가
  · 입산허가신청서에 기재 후 신청
  · 조림, 숲 가꾸기, 사방, 벌채, 임도시설 등 산림사업 위한 입산은 허가 없이 가능
- 시 · 군 · 구 또는 산림청장은 산림정화보호구역, 입산통제구역 지정 시 이를 고시

☞ 산림정화보호구역 지정기준, 입산통제구역에 대한 입산허가 절차, 허가 예외규정 등은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 산불예방 등을 위한 금지행위 (내용심사)
- 허가 후 산림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경우

· 산림인접지 인화물질 사전제거사업, 조림예정지의 정리작업, 병해충 방제, 방화선 설치

※ 산림인접지 범위 : 산림과 인접된 100미터 이내 위치한 토지(건물의 부속토지 제외)로 정함

– 신고 후 산림 안에서 불을 이용, 음식을 지을 수 있는 범위

· 학교 · 청소년단체 및 산악단체 수련활동, 학술조사, 지정 야영장소의 야영

– 불놓기 허가신청 및 신고 절차, 허가증 및 신고필증 교부, 화기 및 인화 · 발화물질 소지 금지 입간판 설치 등 규정

☞ 우리나라 산불의 86%가 산림 내에서의 불 취급과정에서 부주의로 발생하고 있어, 산림 인접 100미터 이내 지역에서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산불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산불위험이 높은 일정기간 동안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음

또한 허가를 받고 불을 놓거나 음식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 산림사업보조금 반환대상 및 기준 선정 (내용심사)

– 보조금 반환 대상과 기준을 정함

· 반환대상은 조림 또는 임도 설치 후 5년 이내에 임업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함

· 반환금액은 보조금에 연 1할의 이자를 가산

☞ 조림과 임도사업은 주로 정부가 보조하여 시행하기 때문에 임업 외 목적 사용 시에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나, 반환금의 가산이자율을 연 1할로 정하는 것은 현 실태에 비추어 타당치 않으므로 가산이자율을 타 법령에서 정하는 예에 따라 적정수준으로 정하도록 개선권고

– 이자율 결정은 규개위 사무국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함

○ 과태료 부과 (내용심사)

– 위반 행위 유형별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	과 태 료
1.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및 임산물의 굴취 · 채취를 한 자	300만원
2. 신고를 하지 않고 입목벌채등을 한 자	200만원
3. 신고를 하지 않고 숲가꾸기를 위한 벌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입목 · 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 채취를 한 자	300만원
4.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산림경영계획서 작성대가를 과다하게 청구한 자	70만원
5. 임산물의 규격 또는 품질 등을 거짓으로 표시한 자	100만원
6. 법 제50조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산림 안에 오물 또는 쓰레기를 버린 자	100만원
7.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은 자	100만원
8.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50만원
9. 보고 · 자료제출 · 조사 ·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 ·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	50만원
10. 산불예방에 필요한 조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0만원
11. 인접한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0만원
12. 화기 또는 인화 · 발화물질을 소지하고 산림에 들어간 자	30만원
13. 산림 안에서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만드는 행위를 하거나 산림 안에 담배꽁초를 버린 자	30만원
14.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자	10만원
1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자	10만원
16.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림을 하지 아니한 자	해당조림비용 전액

☞ 법률에 규정된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따른 세부기준을 정하는 것으로서, 행정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3) 국유림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규칙 제정안 (내용심사 1)

■심사내용

○ 대부료 등의 반환 및 손실보상 (내용심사)
- 국유림 대부 · 사용허가 취소 시 선납 대부료 중 대부 · 사용허가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대부 · 사용료 반환, 반환절차 · 서식 규정
- 국가 · 지자체의 사업이나 공익사업을 위하여 대부 ·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손실이 발생한 때의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준용

☞ 대부료 등의 반환절차에 대해 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시행령 ·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며, 손실보상 규정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타 법령과 균형을 맞추어 보상하도록 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4)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 (신설 1)

■심사내용

○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 (신설)
- 교육과정 인증 :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을 인증 받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신청, 산림청장은 심사를 거쳐 인증여부 결정
- 인증 받은 교육과정에 대한 인증표시 및 인증 받지 아니한 교육과정의 인증표시 금지
- 인증의 유효기간 3년
- 인증의 신청절차, 인증기준 등 필요사항은 농림부령에 규정
- 인증의 취소 :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받은 경우,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 식물유전자원의 수집과 보존기능을 담당하는 수목원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수목원전문가를 양성할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에 대하여 정부에서 인증하여 질 높은 교육과정을 만들려는 것으로 필요한 규제로 판단되며,

또한 우리나라 수목원의 수준과 위상을 한 단계 높이려는 취지에서 도입하는 제도로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을 이수한 수목원전문가들에 의해 우리식물유전자원을 수집 · 보존하고 질 높은 수목원조성으로 국민에게 자연학습과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점과 규제 대상이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수목원에 국한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중요규제로 판단하여 원안의결

※ 수목원현황(40) : 국립 1, 공립 22, 사립 11, 학교 6

3. 해양수산부

집필자 : 여기동 사무관(02-2100-2456, okygd@opc.go.kr)

가. 2006년 신설 · 강화규제 심사개요

❍ 2006년도에는 '수산동물질병관리법률 제정안', '항만 및 주변공간의 지속적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 '공유수면매립법 일부 개정안', '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등 39개 법령에 대해 신설 32건, 강화 41건, 내용심사 23건 등 총 96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96건중 25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 71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해양수산부의 2006년도 총 신설규제는 32건임.

< 해양수산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①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제240차 경제2분과위 (2006.1.4)	원안의결1 개선권고2	강화2 내용심사1
② 총허용어획량(TAC) 적용대상어업의 종류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개정	예비심사 (2006.1.5)	원안의결1	강화1 *비중요1
③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예비심사 (2006.2.20)	원안의결1	강화1 *비중요1
④ 해양수산부 민간투자사업 업무처리요령 개정안	예비심사 (2006.3.16)	원안의결1	내용심사1 *비중요1
⑤ 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 개정령안	예비심사 (2006.3.31)	원안의결2	내용심사2 *비중요2
⑥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 개정령안	예비심사 (2006.4.10)	원안의결3 개선권고1	내용심사4
⑦ 수산자원보호령 개정령안	예비심사 (2006.4.10)	원안의결3	강화3 *비중요3
⑧ 생산.출하전 단계 수산물의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06.4.12)	원안의결1	내용심사1 *비중요1
⑨ 어선 외국인 산업연수생 관리지침 개정안	예비심사 (2006.4.12)	원안의결1	내용심사1 *비중요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⑩ 도선법시행령 개정령안	예비심사 (2006.4.21)	원안의결1	내용심사1 *비중요1
⑪ 도선법시행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2006.4.21)	원안의결2 개선권고1	강화2 내용심사1 *비중요3
⑫ 어장관리법중 일부 개정법률안	제248차 경제2분과위 (2006.4.26)	원안의결2 개선권고1	신설1,강화1 내용심사1
⑬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	예비심사 (2006.5.24)	원안의결1 개선권고2	강화3 *비중요3
⑭ 소형선박의구조및설비기준(고시)개정안	제252차 경제2분과위 (2006.6.2)	원안의결1	강화1 *비중요1
⑮ 선박설비기준(고시) 개정안	제252차 경제2분과위 (2006.6.2)	원안의결1	강화1 *비중요1
⑯ 선박소방설비기준(고시) 개정안	제252차 경제2분과위 (2006.6.2)	원안의결1	강화1 *비중요1
⑰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제254차 경제2분과위 (2006.6.13)	개선권고1	내용심사1
⑱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254차 경제2분과위 (2006.6.13) 제168차 본회의 (2006.7.11)	원안의결4	신설4
⑲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제정안	제256차 경제2분과위 (2006.7.5) 제168차 본회의 (2006.7.11)	원안의결4 개선권고6	신설10 *비중요2
⑳ 선원법중 일부개정 법률안	제256차 경제2분과위 (2006.7.5)	원안의결2	내용심사2 *비중요2
㉑ 범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	제256차 경제2분과위 (2006.7.5)	원안의결1	강화1 *비중요1
㉒ 휘발성유기화합물 규제항만지정 등에관한 기준 제정안	제256차 경제2분과위 (2006.7.5)	원안의결1	내용심사1 *비중요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㉓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258차 경제2분과위 (2006.7.19)	원안의결3	신설3 *비중요1
㉔ 항로표지법중 일부개정법률안	제261차 경제2분과위 (2006.8.30)	원안의결4	신설1, 강화3 *비중요4
㉕ 선적액체 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	제261차 경제2분과위 (2006.8.30)	원안의결1	내용심사1 *비중요1
㉖ 수산업법중 일부개정법률안	제263차 경제2분과위 (2006.9.20)	원안의결2 개선권고1	신설1, 강화2 *비중요1
㉗ 선박의 밸러스트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263차 경제2분과위 (2006.9.20)	원안의결2 개선권고2	신설4 *비중요2
㉘ 밸러스트수 관리시스템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잠정기준 제정안	제263차 경제2분과위 (2006.9.20)	원안의결1	신설1
㉙ 선박안전법시행규칙 개정안	제263차 경제2분과위 (2006.9.20)	원안의결2	강화1 내용심사1 *비중요2
㉚ 선박기관기준 개정안	제263차 경제2분과위 (2006.9.20)	원안의결1	강화1 *비중요1
㉛ 선박구명설비기준 개정안	제263차 경제2분과위 (2006.9.20)	원안의결1	강화1 *비중요1
㉜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제267차 경제2분과위 (2006.11.2)	원안의결3	강화3 *비중요2
㉝ 선박 및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 개정안	제267차 경제2분과위 (2006.11.2)	원안의결1	강화1 *비중요1
㉞ 내수면어업법중 일부 개정법률안	제270차 경제2분과위 (2006.11.8)	개선권고1	강화1
㉟ 항만 및 주변공간의 지속적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268차 경제2분과위 (2006.11.29)	원안의결5 개선권고1	신설6 *비중요3
㊱ 공유수면관리법중 일부 개정법률안	제271차 경제2분과위 (2006.12.13)	원안의결4 개선권고3	강화7 *비중요4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㊲ 공유수면매립법중 일부 개정법률안	제271차 경제2분과위 (2006.12.13)	원안의결2 개선권고4	강화6 *비중요1
㊳ 항만공사법시행령 개정령안	제272차 경제2분과위 (2006.12.20)	원안의결1	신설1 *비중요1
㊴ 기르는어업육성법시행규칙 개정령안	제272차 경제2분과위 (2006.12.20)	원안의결1	내용심사1 *비중요1
㊵ 해상교통안전법시행령 개정령안	제272차 경제2분과위 (2006.12.20)	원안의결1	내용심사1 *비중요1
㊶ 선박전기설비기준 개정안	제272차 경제2분과위 (2006.12.20)	원안의결1	내용심사1 *비중요1
㊷ 강선의 선체구조기준 개정안	제272차 경제2분과위 (2006.12.20)	개선권고1	내용심사1
계		원안의결71 개선권고25	신설32 강화41 내용심사23 *중요48 비중요48

나. 2006년 신설 · 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2, 내용심사 1)

■심사내용

○ 폐기물 처리기준 검사대행 전문시험기관을 지정고시하며, 검사대행기관의 항목별 시험성적서와 육상에서 처리곤란하다는 위탁자의 육상처리가능여부 사전검토서 등을 폐기물 위탁처리신고서에 추가하고, 폐기물위탁처리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해양배출 처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하여 사후검사를 실시 (강화)

☞ 런던협약 수용 등에 따른 폐기물분석 시험방법 변경과 검사항목의 증가 등에 따른 전문분석기관 지정은 필요하나 육상처리 가능여부 사전검토서는 법적근거가 미흡하기에 삭제할 것을 개선권고

○ 해양배출 폐기물중 폐산 및 폐알카리, 먹는물 · 공업용수 · 냉각수 · 소방용수 등의 저장 또는 처리시설에서 발생된 것, 하수도에서 발생되는 준설물질, 건설공사에서 배출된 오니, 수산화알미늄의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광물성 폐기물에 대한 해양배출을 금지함

수저준설토사는 합성로프, 폐어구 등을 포함한 잡것이 섞인 물건을 제거토록 하고, 확산식 처리방법으로 해양배출되는 품목은 '합성로프, 플라스틱류, 머리카락, 동물의 털 등을 포함한 잡것이 섞인 물건을 제거토록 하고, 폐기물 배출해역 처리방법중 동해병해역 집중식처리방법의 단서조항 일부를 삭제함

폐기물 해양배출 처리기준을 변경하여 오염물질 항목을 현행 14개에서 25개로 확대하며 폐기물 분석방법을 용출법에서 함량법(런던협약에 의한 국제규정)으로 변경하고, 제1기준은 시행 후 6월 이후에 제2기준은 시행 후 5년 이후에 적용함 (강화)

☞ 해양환경 보전을 위하여 해양에 투기되는 폐기물의 축소, 해양배출 처리기준 강화 등은 불가피하나 음식물류폐기물의 폐수의 액상기준은 2007.7.1일부터 적용하도록 하며, 수산화알미늄의 제조공정에서 발생한 광물성의 폐기물'의 경우 2016.1.1일부터 금지하도록 하고, '잡것'의 용어는 '이물질' 등으로 순화하며, 하수처리장에서 유입되는 미세한 머리카락 등에 대한 해양배출은 별도 세부기준(고시 또는 지침 등)을 마련하고, 제1기준의 유예기간은 처리시설 등의 설치 · 보완 등을 할 수 있도록 2년의 유예기간(공포후 2년 6월이후 시행)을 설정할 것을 개선 권고

○ 폐기물운반선은 '각 항행구역의 운항에 적합한 규모이상의 선박으로서 스스로 항해할 수 있는 선박'으로 하고, 저장시설 기준에 '악취방지법에서 정하는 배출기준에 따라 악취의 발산을 방지토록하며, '선박 및 부선을 저장시설로 사용할 경우에는 선박안전법에 의한 검사를 받도록 함 (내용심사)

☞ 폐기물 저장시설에서 발생되는 악취 및 시설미비에 따른 환경피해 최소화와 폐기물 운반선의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기존규정을 명확히 하고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 사항이기에 원안동의

(2) 총허용어획량(TAC) 적용대상어업의 종류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 2006년 총허용 어획량 적용대상 어업의 종류 및 대상 어종별 총허용 어획량을 결정하고 TAC 적용 대상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어획할당량을 배정받지 못한 경우는 그 대상어종을 포획 · 채취하지 못하도록 변경 (강화)

☞ 수산자원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수산업법 제54조의 2 규정에 따라 2006년 총허용 어획량 적용대상 어업의 종류 및 대상 어종별 총허용어획량을 결정하고, 불법포획 및 채취의 금지규정을 둔 것은 수산자원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규제이므로 원안의결

(3)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 어선원보험의 어선규모별 기본요율을 평균 10.3%(100톤미만 9.2%, 100톤이상 20.6%) 인상하고, 업종별 할인 · 할증요율을 일부 조정함 (강화)

☞ 보험수지 불균형(201억원)이 발생하였고, '보험개발원'의 용역을 거쳐 인상요율을 마련하였으며, 이해관계자인 공익대표, 어선원대표, 어선주대표로 구성된 '어업재해보상심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였기에 원안의결

(4) 해양수산부 민간투자사업 업무 처리요령 개정안 (내용심사 1)

■심사내용

○ 민간제안사업의 사업제안자에 대하여 사업수행 자격 또는 능력을 사전에 심사할 수 있는 사전자격심사(Pre Qualification)제도 도입 및 민간부문 사업제안서에 대하여 사전 자격심사를 수행하여 사업제안자가 사업수행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사업제안서 내용을 검토 의뢰 (내용심사)

☞ 민간투자사업의 사전자격심사(PQ)제도는 사업제안자의 기본요건에 해당하는 항목을 사전에 별도로 심사하여 전체적인 평가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기획예산처)」에 맞추어 업무처리요령을 개정하는 것이기에 원안동의

(5) 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 개정안 (내용심사 2)

■심사내용

○ 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료유의 황 함유량 및 품질기준을 국제협약의 규정을 적용하여 저유황함유 연료유 사용을 의무화함 (내용심사)

☞ 국제협약에서 정한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4.5%이하)을 시행령에 그대로 표기하여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시행령 개정안의 문구를 조정할 것을 조건으로 원안의결

○ 선박용 연료유의 품질기준을 국제협약의 규정을 적용하여 정함 (내용심사)

☞ 시행령 개정안 제14조에서는 '국제협약 부속서 Ⅵ 제18규칙에서 정하는 연료유의 품질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어 시행령만으로 선박연료유의 품질기준을 곧바로 알 수 없기에 국제협약 부속서 Ⅵ 제18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선박연료유의 품질기준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개정안의 문구를 조정할 것을 조건으로 원안의결

(6)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 개정안 (내용심사 4)

■심사내용

○ 선박의 대기오염방지설비 설치기준 및 유지 · 작동 기술기준과 오존층 파괴물질을 제거하는 업체 또는 단체가 갖추어야 할 회수설비 및 수용시설을 규정하고, 질소산화물의 배출규제를 받는 국내항해 소형디젤기관의 범위를 130킬로와트 이상에서 367킬로와트 미만으로 정하며, 선박의 항행 중에 발생하는 물질의 선내 소각 방법 및 슬러지의 소각금지 해역과 유증기배출제어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 절차 등을 규정함 (내용심사)

☞ 해양대기 환경보호를 위하여 국제협약에서 규정하는 대기오염 방지설비를 선박에 설치토록 하고, 대기오염 방지설비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술기준 등을 정하는 것은 적정한 규제라고 판단되나, 황산화물용 배기가스 정화장치의 기술설명서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승인하도록 한 것과 유증기 배출제어장치를 설치하여야 할 물질중 유해액체물질 고시사항은 위임근거가 없기에 삭제할 것을 개선권고

○ 연료유 공급서의 양식 및 연료유 견본의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 (내용심사)

☞ 선박에 연료유를 공급하는 자가 황함유량 및 품질기준에 적합한 연료유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연료유 공급서 및 연료유 견본을 관리하기 위한 규제는 적정한 규제라고 판단되어 원안동의

○ 질소산화물 배출방지기관의 선박 설치전 검사절차를 규정 (내용심사)

☞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질소 산화물 배출방지기관의 선박 설치전 검사절차를 규정한 것은 적정한 규제라고 판단되어 원안동의

○ 해양오염방지설비 검사 대행기관의 원활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 대행자의 지정요건 및 대행자의 지도·감독 사항을 규정 (내용심사)

☞ 해양오염방지설비의 검사대행기관이 일정의 검사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건을 규정하는 것은 적정한 규제라고 판단되나, 별표22의2 대행자의 구체적 지정요건은 규제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삭제할 것을 조건으로 원안동의

(7) 수산자원보호령 개정령안 (강화 3)

■심사내용

○ 근해선망어구의 그물코 규격(30밀리미터 이하의 어망은 사용할 수 없음)의 단서규정을 삭제하고, 근해통발어업의 붉은대게 포획 그물코 규격은 125mm이하로 강화하며, 근해자망·연안자망 어구의 조기류(50mm이하)와 대게(240mm이하)의 그물코 규격을 신설 (강화)

☞ 선망업계와 붉은대게 통발업계에서는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자율적으로 그물코 규격을 확대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수역의 조기류 보호와 대게 자원보호를 위해 적정 그물코 규격을 마련하였으므로 원안의결

○ 제주도(본도) 주위 2천7백미터 이내에서의 근해통발 사용을 제한하고, 대 · 중형 기선 저인망어업의 조업금지 구역을 제주도 마라도 주변 1해리에서 마라도 반경 3해리로 확대 조정 (강화)

☞ 근해통발 어선의 자원남획 및 제주도 연안어업인들과의 조업분쟁에 따라 2003년 민간위주의 근해어업 조업구역 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이해관계자간들의 합의사항을 규정한 것이기에 원안의결

○ 자원이 점차 감소되고 있는 쥐노래미 등 15개 품종에 대하여 포획금지기간을 신설하고, 대게 등에 대해서는 포획금지기간을 조정함. 또한, 민어 등 9개 품종에 대하여는 포획 · 채취 금지체장을 신설하고, 참돔 등 17품종의 포획 · 채취 금지체장은 현실에 맞게 조정하며, 자원이 감소되는 꽃게에 대하여는 암컷 꽃게의 포획을 제한 (강화)

☞ 수온상승 등에 따라 해양생태계는 변화되고 있으나, 현행 수산동식물 포획금지의 기간 및 체장 규정이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까지 포획금지에 관한 규정이 없어 치어 등을 마구 포획하는 품종에 대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적정 규제이기에 원안의결

(8) 생산, 출하전 단계 수산물의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개정안 (내용심사 1)

■심사내용

○ 생산 · 출하 전단계 수산물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대상 품목을 넙치, 뱀장어 2개 품목에서 송어, 향어를 추가하여 4개 품목으로 확대. (내용심사)

☞ 말라카이트그린 검출 등으로 문제가 되었던 송어, 향어도 생산 · 출하 전단계 수산물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의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은 적정한 규제이기에 원안의결

(9) 어선 외국인 산업연수생 관리지침 개정안 (내용심사 1)

■심사내용

○ 양식어업에도 외국인 산업연수생이 배정됨에 따라 배치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사업자에게 자격요건의 준수 및 교육실시 등 의무 부과 (내용심사)

☞ 산업연수생을 배정 받은 양식업체는 적정한 자격을 갖추어야만 임금체불 방지, 재해보상 등을 이행할 수 있으므로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 등을 위한 적정규제로 판단되기에 원안의결

(10) 도선법시행령 개정령안 (내용심사 1)

■심사내용

○ 도선법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10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로 차등 부과 (내용심사)

☞ 도선법 위반(4가지)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일률적으로 100만원이었으나, 이를 세분화(9종류)하여 위반 경중에 따라 차등부과(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하였기에 원안의결

(11) 도선법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2, 내용심사 1)

■심사내용

○ 도선수습생이 당해 도선구에서 200회 이상 실무수습 하였던 것을 도선구간별 4회 이상을 포함하여 200회 이상 실무수습토록 요건을 강화 (강화)

☞ 도선 수습생의 도선 실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도선구간(부두별 이동경로) 에 대해 빠짐없이 실무수습을 실시토록 하였기에 원안의결

○ 도선사의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하여 법률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를 고려하여 행정처분 기준을 정함 (내용심사)

☞ 도선안전심의회가 폐지됨에 따라 도선사의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적정한 규제라고 판단되나, 시행규칙개정안 별표 2의 도선업무를 중지할 수 있는 '중대사고'에 대해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도선구별로 정하여 고시하도록 한 규정은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삭제할 것을 조건으로 원안의결

○ 총톤수 3만톤(위험물 또는 기름운송 선박은 6천톤)이상의 선박은 강제도선 면제대상 선박에서 제외 (강화)

☞ 강제도선 면제대상을 제한하여 총톤수 3만톤이상의 선박의 강제도선은 적정한 규제라고 판단되나, '유창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유창에 기름 또는 가스가 남아 있는 경우'에도 화물적재의 경우와 똑같이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강제도선을 받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이기에 현행 규정대로 운영할 것을 개선권고

(12) 어장관리법중 일부 개정법률안 (신설 1, 강화 1, 내용심사 1)

■심사내용

○ 어장정화 · 정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 ·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된 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때에는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어장정화 · 정비를 대행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선박을 사용하여야 하며, 미등록 선박을 사용한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며, 시 · 도지사는 어장정화 · 정비업의 등록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선박 등에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게 함 (신설)

☞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제는 유지하되, 등록기준중 선박 확보기준 근거조항, 등록선박 사용의무조항 및 등록의 취소(제18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 등은 삭제하고 등록기준을 인력과 장비, 최소자본금 기준 등으로 단순화할 것을 개선권고

○ 어업인은 어업활동 중에 어구 · 양식시설물 등이 어장에 유실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어구 등을 어장에 버리거나 방치해서는 안 되며, 어구 또는 양식시설물을 설치할 때 부자(浮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규격을 사용하여야 함 (내용심사)

☞ 연안어장의 해양오염을 최소화하고, 폐어구 방치에 의한 어업인과 지역주민간 갈등 해소를 위해 어장을 이용하는 어업인에 대해 어장관리의 의무를 강화하는 것은 적절한 규제라고 판단되어 원안동의

○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규격에 미달하는 부자를 사용한 자, 어장정화 · 정비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폐지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강화)

☞ 어업용 부자의 규격설정은 연안환경 보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를 위반한 경우 과중한 사법처벌보다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13)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 (강화 1)

■심사내용

○ 원양산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원양산과 해역명 또는 입어국가명'을 함께 표시토록 하는 강제규정으로 의무화 (강화)

☞ 원양산의 원산지 표시를 '원양산과 함께 생산한 해역명 또는 입어국가명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제공하기에 원안의결

(14) 소형선박의구조 및 설비기준(고시)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 선박의 복원성과 직접 관련이 있는 방수구의 면적 산식 및 그 설치위치를 명확히 하며 총톤수 5톤이상 선박의 무인기관실에는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도록 함 (강화)

☞ 방수구 면적은 현재 소형선박에 설치되고 있는 면적을 고려하였고, 설치위치는 10톤이상 선박의 설치기준 규정을 인용하였으며, 소형선박 무인기관실의 화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규정이기에 원안의결

(15) 선박설비기준(고시)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 여객선에 임시여객을 산정할 경우에 비상탈출로 및 통로, 비상소집장소 등을 제외한 갑판을 임시여객 객석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연해구역 이상을 항행하는 여객선에 풍향 · 풍속계를 설치하도록 함 (강화)

☞ 승객이 폭주하는 특별수송기간중에 임시여객을 수용할 수 있는 갑판을 구체화하고, 여객선의 접안시 풍향 · 풍속을 파악하지 못하여 방파제 등에 좌초하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이기에 원안의결

(16) 선박소방설비기준(고시)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의 성능과 설치시의 요건을 정하며, 어선의 무인기관실에는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고, 제2종선 및 제4종선 무인기관실의 자동소화장치 설치 방법을 정함 (강화)

☞ 무인기관실은 사람이 상주하지 않음으로 초기 화재진화가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자동소화장치의 성능기준을 정한 것이기에 원안의결

(17) 항만인력공급체제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내용심사 1)

■심사내용

○ 항운노동조합원을 직접 상시 고용한 항만운송사업자 등이 항만인력 개편전의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권고, 특별근로감독 요청 등에 관한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내용심사)

☞ 항운노조원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규정이나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인력의 근로조건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는 포괄적 규정이기에 '법 9조에

따른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개선권고

(18)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 (신설 4)

■심사내용

○ 사유재산권 침해 최소화를 위해 무인도서의 유형별 구분 및 지정 절차 등을 아래와 같이 보완하여 재심사키로 함

〈주요 지적사항〉

○ 무인도서의 유형별 구분·지정시 청문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절차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
- 절대보전 또는 준보전 무인도서에 해당될 경우 각종 행위제한 및 출입제한 등으로 개발제한구역(Green belt)의 사례와 같이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우려됨
- 무인도서의 유형구분을 10년 주기의 무인도서 관리종합계획에 포함하여 무인도서 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는 바, 무인도서 관리종합계획 수립절차와는 별도로 유형구분 관련 절차를 만들 필요성 검토 필요

○ 절대보전 무인도서로 분류됨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에 대한 정부의 보상근거(매수청구권) 마련 필요

○ 기타 4개 유형별 '지정'으로의 용어 수정 및 제도 악용 가능성 등 대비 검토 필요
- 4개 유형별 '구분'이라는 용어보다는 '지정'이라고 수정하는 것이 적절
- 무인도서를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도서라고 정의하고 있고 종합계획의 수립 주기가 10년인 점을 악용하여 절대보전 무인도서로 분류되기 전에 주민등록을 옮기려는 사례도 있을 수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

(19)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제정안 (신설 10)

■심사내용

○ 수산동물 방역관은 수산동물의 검사, 관계자에 대한 질문, 수산동물 질병예찰에

필요한 시료 채취 등을 할 수 있으며, 해수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은 수산동물 전염병의 발생 및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양식자에게 검사를 실시하고 의약품의 사용 및 금지조치를 명할 수 있음 (신설)

☞ 수산동물의 질병예방을 위하여 수산동물 방역관 등의 검사, 병성감정, 역학조사 등의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필요한 규제라고 판단됨. 그러나 검사시 사전통고 의무규정을 추가하고, 검사 및 의약품 사용 또는 제한과 관련하여서는 검사의 주체 등이 명확히 구별되도록 조정할 것을 개선권고

○ 수산동물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양식자 등에게 수산동물 거래기록을 작성 · 보존하게 할 수 있으며, 지역간의 반출 · 입 및 방류 수산동물에 대해 방역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음 (신설)

☞ 거래기록 작성 명령권한은 수산동물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경로를 추적하기 위한 필요규제로 판단되나 방역 등의 조치는 주체와 조치내용을 구체화 할 것을 개선권고

○ 수산동물 전염병 감염시에는 교통차단, 입식제한 또는 소독 등의 조치 등과 이를 위반할 경우 양식시설의 폐쇄 등을 명할 수 있음. 또한 해수부령이 정하는 수산동물 전염병에 감염된 경우 살처분(殺處分)을 명할 수 있으며, 폐사된 수산동물의 사체는 소각, 매몰 또는 소독을 실시하는 등 전염병에 감염된 수산동물의 처리사항을 규정 (신설)

☞ 수산동물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이지만 양식자와 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 · 이해가 용이하도록 자구수정을 조건으로 원안의결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수산동물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수산동물의 양식시설 및 집합시설의 소유자에게 방역의 조치를 명할 수 있음 (신설)

☞ 수산동물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이나 안제20조(오염물건의 소각)와 안제22조는 유사한 내용이기에 통합하여 규정할 것을 개선권고

○ 수산동물의 검역과 관련된 규정으로 검역관은 선박, 보세구역 등에 출입하여 소독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수산동물 전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된 지정 검역물을 발견한 때에는 당해 화주로 하여금 방역상 위해가 없는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명하거나 스스로 폐기할 수 있음. (신설)

☞ 수산동물의 검역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안 제38조(불합격품의 처분)의 내용중 '수산동물 방역상 위해가 없는 방법으로 화주 등이 불합격품을 처리할 것을 검역관이 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추상적이기에 구체화 할 것을 개선권고

○ 수입수산동물 검역관은 지정검역물을 검사할 수 있고, 수산동물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검역증명서를 교부함. 또한 수입된 지정검역물이 검역기준에 미달한 경우 반송(또는 소각 · 매몰)을 명할 수 있으며 수산동물의 종류 · 수량 · 수입시기 등은 사전에 신고하여야 함(신설)

☞ 수입이 금지된 물건에 대해서 반송(또는 소각 · 매몰)을 명하는 것은 타당하나 검역증명서 미첨부 물건에 대해서 반송(소각, 매몰)을 명할 수 있게 한 것과 수산동물 수입에 대한 사전신고 조항은 불필요하므로 삭제할 것을 개선권고

○ 수산동물전염병 예방을 위해 수산동물의 양식자 · 활어공판장 · 수산물도매시장 · 수송선박 및 차량, 그 밖에 수산동물이 집합되는 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자료제출을 하게 할 수 있음(신설)

☞ 포괄적으로 자료를 제출토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삭제하되,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안 제10조(죽거나 병든 수산동물의 신고), 안 제15조①항(수산동물 거래기록 작성 · 보존)에 수산동물 집합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도 관련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거래기록 작성 명령이 가능하도록 관련조문을 수정토록 개선권고

○ 수산동물방역관의 검사, 검역관의 출입 · 검사 · 검역을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등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신설)

☞ 수산동물 전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검역관련 조치의 집행력 확보를

위한 것이기에 원안의결

(20) 선원법중 일부개정 법률안 (내용심사 2)

■심사내용

○ 해외에서의 해상의 이상기상 등 발생시 인근 국가의 해상보안기관에 통보토록 함(내용심사)

☞ 1974년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1974)의 내용을 반영함에 따라 원안의결

○ 외국선박에 출입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는 필요조치를 취할 것을 문서로 통보하고, 필요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그 선박의 항행정지 등을 시킬 수 있음 (내용심사)

☞ 선원의 훈련 ·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에 관한 국제협약(STCW) 이행에 따른 '선원'에 대한 항만국통제(PSC)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21) 범선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 24미터 미만 범선의 선체구조 및 강도에 대한 내구시험 시간을 상향(8시간→10시간) 조정하고, 다동형 범선을 정의하고 다동형 범선의 각 선체간 연결부의 강도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 (강화)

☞ 범선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대형 및 다동형 범선의 구체적 기준을 정한 것이기에 원안의결

(22) 휘발성유기화합물 규제항만지정 등에관한 기준 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 선박 안에서 소각이 금지되는 쓰레기는 납, 카드뮴 등이며, 부산항, 인천항 등을 휘발성 유기화합물 규제항만으로 지정하는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규제와 대기오염방지 설비시설에 대한 설치기준 등을 정함 (내용심사)

☞ 해양오염방지협약 부속서 6(선박대기오염방지규칙)을 수용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와 방지시설설비 등을 정하였기에 원안의결

(23)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법률 제정안 (신설 3)

■심사내용

○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모든 여객선과 500톤이상 화물선 등은 선박 보안관련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신설)

☞ ISPS Code(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을 수용하여 국내규정을 개정하였기에 원안의결

○ 항만시설 소유주와 운영자에게 항만시설 보안 관련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함 (신설)

☞ ISPS Code의 국내수용을 위해 2003.10.25일 「선박 및 항만시설보안에관한규정(고시)」을 제정 · 시행하였으며 동 고시내용을 법령화 하였기에 원안의결

○ 선박과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훈련)교육을 수립 · 시행하지 않은 회사 또는 항만시설주 등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신설)

☞ 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 위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한 적절한 규제라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24) 항로표지법중 일부개정법률안 (신설 1, 강화 3)

■심사내용

○ 선박의 항해 안전 확보를 위해 준설 · 매립시에도 항로표지를 설치토록 함 (강화)

☞ 선박 좌초 또는 준설 매립 공사 수역에 항로표지 안전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인근에 항행하는 선박항해자에게 해상교통 정보제공이 가능하고 해양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기에 원안의결

○ 사설항로표지 소유자가 당해 항로표지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는 양수자와 함께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강화)

☞ 사설 항로표지를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신고토록 하여 양수인이 항로표지 시설물을 책임성 있게 관리하도록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였기에 원안의결

○ 항로표지의 기능에 장애가 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건설, 침몰물의 인양, 등화 · 음향시설의 설치 등의 공사를 하는 자는 그 장애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강화)

☞ 항로표지시설 인근의 무분별한 등화 · 음향시설의 설치 · 운영을 방지하고 항로표지시설 보호와 강화를 통하여 해상안전이 확보될 수 있기에 원안의결

○ 항로표지시설이 훼손되지 않도록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항로표지가 손상을 입은 때에는 원상복구를 권고함 (신설)

☞ 항로표지시설 훼손 금지를 위하여 금지행위를 구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원상회복을 규정한 사항은 적절한 규제라 판단되어 원안의결

(25) 선적액체 위험물 운송선박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 (내용심사 1)

■심사내용

○ 선적액체 위험물 운송선박의 화물펌프실 소화장치 요건을 정하고 전기설비는 화물에서 나오는 가스나 증기로부터 보호되도록 규정 (내용심사)

☞ 위험화학품운송선규칙(IBC Code)의 개정내용을 국내법에 수용하였으며 액체 화학품 운송선박의 안전 확보와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필요규제라 판단되어 원안의결

(26) 수산업법중 일부개정법률안 (신설 1, 강화 2)

■심사내용

○ 수산동식물의 포획 · 채취 · 양식한 어획물 및 그 제품의 양륙 · 매매장소의 지정 · 취소에 관한 사항 규정 (강화)

☞ 낙후된 위판장 시설을 개량 · 활성화 하는 근거규정이기에 원안의결

○ 수산자원 보호구역 안에서의 도시계획 사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한하여 이를 시행할 수 있으며,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 등을 정함 (신설)

☞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지정 목적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정권자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규제를 수산업법에 이관한 사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규정을 따로 정하고 있으면서도 이행보증금에 관한 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으므로 수산자원보호구역 안에서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에 필요한 이행보증금의 예치 등에 관한 규정은 수산업법에서 별도로 정할 것을 개선권고

○ 외국의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외국의 해당 행정관청으로부터 어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외국의 권한 있는 행정관청에서 어선의 정선 또는 회항 등의 명령이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함 (강화)

☞ 외국과 체결된 어업협정 등을 준수하도록 하여 해상 조업질서를 확립하고 국가간 어업분쟁 예방을 위한 적절한 규제이기에 원안의결

(27) 선박의 밸러스트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신설 4)

■심사내용

○ 유해수중생물이 포함된 선박 밸러스트수의 배출을 금지하며, 선박에 유해수중생물을

살균 · 처리 등을 할 수 있는 밸러스트수 관리시스템등을 설치하도록 함 (신설)

☞ 선박의 밸러스트수와 침전물의 통제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 관련사항을 국내법에 수용하였기에 국내항해에 취항하는 한국선박은 본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며, '한국선박 외의 선박이 한국관할수역에서 밸러스트수의 주입 · 배출 또는 교환을 행하는 경우 등'의 외국적 선박의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으나, 특정규정만의 적용 등 해석상의 혼란발생이 가능하므로 이를 '대한민국의 항만 또는 해역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수용시설의 설치규모,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이며, 이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할 것을 개선권고

○ 밸러스트수 관리시스템 등에 대한 검사와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정 (신설)

☞ 외국적 선박의 적용범위를 '대한민국선박 외의 선박이 대한민국의 항만에 입항하거나, 대한민국 관할수역에서 밸러스트수의 주입 · 배출 또는 교환을 행하는 경우 등'으로 수정하고, 수용시설의 설치규모,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며, 선박건조자의 편의도모 및 외국항만에서의 항만국통제시 도면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도면의 사전승인이 필요하지만 벌칙조항은 삭제할 것을 개선권고

○ 선박의 밸러스트수 배출규제를 위한 보고 · 자료 제출명령 등에 관한 규정 (신설)

☞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라 제도의 조기 정착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기에 원안의결

○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신설)

☞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과태료 부과는 적정규제라 판단되어 원안의결

(28) 밸러스트수 관리시스템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잠정기준 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 밸러스트수관리시스템을 제조·수입하는 자에게 형식승인 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쳐 형식승인 등을 받도록 하며, 형식승인을 받은 밸러스트수관리시스템을 제조할 때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정을 받도록 하는 등 밸러스트수 관리시스템의 형식승인사항 등을 규정함 (신설)

☞ '선박밸러스트수관리협약'의 발효에 대비하여 우리나라 기술개발업체들도 적기에 제품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형식승인 기준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29) 선박안전법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1, 내용심사 1)

■심사내용

○ 초단파대무선전화(VHF)로 위치보고 등이 곤란한 여객선은 중단파대무선전화(SSB)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함 (강화)

☞ 무선설비는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타 선박간의 충돌 등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조난과 구조 등에 필요한 것으로 여객선 운항시 초단파대무선전화(VHF)로 위치보고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중단파대무선전화가 필요하기에 원안의결

○ 압항부선 선박검사시 예선과 부선의 결합상태 확인을 위한 준비를 하도록 함 (내용심사)

☞ 압항 예·부선의 안전을 위해서는 압항부선의 결합상태 확인이 필요하기에 원안의결

(30) 선박기관 기준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 현재는 총톤수 500톤이상의 산적화물 운반선에 대해서만 침수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단일 화물창의 화물선에도 침수 경보장치를 하도록 하고 침수경보장치의 설치위치와 성능기준을 정함 (강화)

☞ 단일화물창을 가진 화물선의 화물창에 침수경보장치를 설치토록 하여 화물창 손상시 침수에 의한 침몰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

(31) 선박구명설비기준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 국제항행 제4종선에 비치된 팽창식 구명뗏목의 정비주기를 국제협약과 같이 매1년마다 정비하도록 하며, 방수복의 누설시험방법 및 수리절차 등을 정함

☞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의 개정 또는 적용누락사항을 반영한 사항으로 선박구명설비기준은 선박사고시 인명의 안전확보에 필요하기에 원안의결

(32)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 개정령안 (강화 3)

■심사내용

○ 기름오염비상계획서에 '재화중량톤수 5천톤 이상의 유조선은 육상에서 제공하는 전산화된 손상복원성 및 잔존강도 계산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에 관한 사항'을 추가 (강화)

☞ 유조선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한 구난과 해양오염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정확한 손상복원성과 잔존강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함, 다만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안의결

○ 유해액체물질을 배출 후 선박에 남길 수 있는 잔류 허용량 등을 변경함 (탱크당 150ℓ → 75ℓ) (강화)

☞ 유해액체물질의 배출해역 및 사전처리와 배출방법 등에 대한 국제기준(해양오염방지협약 부속서 Ⅱ 부록A)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국내규정에 수용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규제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의결

○ 기름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연료유탱크를 이중선체로 하는 등 선체구조를 강화하고 그 기술기준을 규정함 (강화)

☞ 기름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설비에 대한 국제기준(해양오염방지협약 부속서 Ⅰ. 22규칙 등)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국내규정에 반영한 사항으로 규제내용이 적정하기에 원안의결

(33) 선박 및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 자장식 호흡구의 형식승인 관련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을 보완하고 간이항해기록장치(S-VDR) 시험기준 등을 규정 (강화)

☞ 국제협약(SOLAS)의 개정사항을 수용하여 간이항해기록장치(S-VDR)의 형식승인 시험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의 개정내용을 수용하였기에 원안의결

(34) 내수면어업법중 일부 개정법률안 (강화 1)

■심사내용

○ 사유수면에서의 육상양식업 등을 임의신고에서 의무신고로 변경하고 신고를 하지않고 어업을 영위한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부과 규정을 신설 (강화)

☞ '내수면 육상양식어업 등'에 대한 의무신고는 양식장 관리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불충분하고 규제신설 사유도 미흡한 포괄적 규제이기에 철회하되, 다만 내수면양식장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산동물용의약품의 사용기준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정할 수 있도록 약사법 제7조의6을 개정할 것을 개선권고

(35) 항만 및 주변공간의 지속적인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 (신설 6)

■심사내용

○ 항만재개발사업시 사업계획 승인과 준공 확인사항 등을 규정 (신설)

☞ 노후항만 및 주변공간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자 항만재개발사업의 시행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무분별한 개발 및 상업성 위주의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수립을 승인하고 준공확인 등의 절차를 규정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기에 원안의결

○ 항만재개발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항만재개발구역의 지정 및 행위제한에 대한 규정 (신설)

☞ 항만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항만재개발사업구역을 항만구역 이외의 지역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다만, '재개발사업시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만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개선권고

○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사업시행자 변경지정과 취소사항 등을 규정 (신설)

☞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과 부적절한 사업시행자에 의해 발생 가능한 문제를 방지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요건 등을 정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 사업시행자가 타인의 토지 등을 출입하거나 일시사용 및 타인이 점유한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 · 조사를 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등을 얻어야 함 (신설)

☞ 사전에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은 타법에서도 규정되었기에 원안의결

○ 사업취소요건과 공사 중지 · 변경을 명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함 (신설)

☞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도 · 감독의 실효성 확보와 원활한 사업시행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이기에 원안의결

○ 토지 등의 출입 및 일시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신설)

☞ 항만재개발사업시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규제이고, 규제내용 또한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의결

(36) 공유수면관리법중 일부개정법률안 (강화 7)

■심사내용

○ 공유수면의 점 · 사용 허가 사항 등을 규정 (강화)

☞ 공유수면의 점 · 사용 허가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은 적절하나, 건축물의 정의는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내용을 수정하고, '원상회복이 예정되고 한시적으로 공유수면을 점 · 사용하기 위한' 규정은 공유수면의 점 · 사용은 돌핀 등 반영구시설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에 삭제할 것을 개선권고

○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행위는 공유수면 점 ·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리청의 실시계획 승인을 받도록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자는 공유수면에 관한 공사를 완료 후 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함 (강화)

☞ 공유수면 점 · 사용 허가 후 설치하는 돌핀시설 등은 점 · 사용허가 후 실시계획인가 시까지 6개월 이상의 기일이 소요되므로 점 ·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도록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외의 행위는 6월 이내에 관리청에 신고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준공절차는 당해 공사의 시행근거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공사의 시행 및 준공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권고

○ 변상금 미납부자에 대한 연체료 부과규정 마련 (강화)

☞ 변상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 행정력 확보를 위해 연체료를 부과하는 것은 적정하기에 원안의결

○ 공유수면 점 ·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 · 사용하거나 또는 점 · 사용허가기간이 종료 · 폐지되거나 허가취소 · 실효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에 설치한 공작물 · 시설물 · 토석 기타의 물건을 제거하고 공유수면을 원상회복시켜야 함 (강화)

☞ 원상회복 의무이행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전에 예치토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규제라 판단되기에 원안의결

○ 공유수면에 오염물질을 버리거나 선박 등을 방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그 밖의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 · 관리를 저해하는 행위'를 추가함 (강화)

☞ 공유수면을 깨끗하게 보전 · 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규제이기에 원안의결

○ 공유수면의 허가 취소 등에 관한 사항
- 점 ·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공유수면관리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허가를 받은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음
- 공유수면 점 · 사용허가의 취소, 원상회복 등의 사유를 구체화 함
- 관리청은 점 · 사용 허가 또는 협의 · 승인이 취소되었거나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공작물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전기 · 전화 · 수도 또는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공급의 중지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지정된 기일 안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준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 협의 · 승인은 그 효력을 상실 함 (강화)

☞ 공유수면 관리에 필요한 보고를 공유수면 점 · 사용자에게 부여할 경우 보고내용을 명확히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부관을 미이행하여 점 · 사용을 취소'할 경우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며, '허가받은 내용을 위반하거나 규모 · 면적 등을 초과하여 공유수면을 점 · 사용한 경우' 허가취소는 과태료 처분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전기 · 전화 · 수도 또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등의 공급 및 중지의 요청에 대한 관계기관장의 의무적으로 응하는' 조항은 관계기관장의 장이 결정할 사항이므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삭제할 것을 개선권고

○ 과태료 처분사유 구체화 및 과태료를 300만원이하에서 500만원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원상회복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강화)

☞ 원상회복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원안의결

(37) 공유수면매립법 일부 개정법률안 (강화 6)

■심사내용

○ 공유수면 매립은 공공의 이익에 명백히 부합되어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유수면의 매립은 제한되어야 하며, '매립의 공공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추가하고, 다른 법률의 규정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의제하였다 하더라도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기본계획수립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등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 등을 규정 (강화)

☞ 공유수면매립의 공공성 확보 등은 법 취지에도 부합되고 규제의 내용도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공유수면 매립의 공공성'과 '공유수면 매립면허 등의 제한'에 관한 신설 규정은 삭제하는 대신 현행조항을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수정 · 보완하도록 하고 '매립의 공공성을 입증하는 자료'는 불필요한 규제로서 삭제할 것을 개선권고

○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해양수산부 안 300천㎡) 이상의 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할 경우 면허를 받도록 하며, 면허받은 후 6월이내에 실시계획 승인을 획득해야 하고, 사망 등으로 권리양도시 신고하도록 함 (강화)

☞ 대규모 공유수면을 매립할 경우 무분별한 공유수면 매립을 제한하기 위하여 면허를 받도록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음. 다만, 실시계획인가 신청은 많은 시일이 소요되므로 '면허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실시계획인가를 받도록 하고,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이 가능'하도록 조정할 것을 개선권고

○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매립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면허관청의 준공전 사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면허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등 16건에 대해 허가 · 인가 · 신고 · 검사 또는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등 매립지 준공전 사용허가 및 준공검사에 관한 내용을 규정 (강화)

☞ 매립지의 준공전 사용허가는 준공전에 매립지를 합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조치이며, 준공전 사용허가시 타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인 · 허가 사항(16종)을 의제하는 것은 매립자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민원편의를 제공하기에 원안의결

○ 보고 및 검사를 거부 ·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공유수면의 보전 및 재해예방 등 공익에 대한 피해를 제거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매립면허를 취소할 수 있으며, 매립면허 취소 등의 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시설물에 대하여 전기 · 전화 · 수도 · 가스 등의 공급을 중지요청하거나 영업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강화)

☞ '보고 및 검사를 거부 ·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할 수 있기에 삭제하며, 또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32조제1항 4호 자목)는 너무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고, '공유수면의 보전 및 재해예방 등 공익에 대한 피해를 제거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6조 제1항 6호)는 규제의 내용이 명확하지 못하므로 상기 2가지 매립면허 취소사유를 통합하여 '공유수면의 보전 및 재해예방 등 공익에 대한 피해를 제거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수정하고, 전기 · 전화 · 수도 또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등의 공급 및 중지에 대한 결정은 관계행정 기관의 장이 결정할 사항이므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삭제할 것을 개선권고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는 매립공사의 지도 ·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매립지 또는 매립예정지에 출입하여 장부 · 서류 등을 확인 · 점검 할 수 있으며,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매립면허가 의제되는 경우에도 매립지(예정지 포함)에 출입하여 점검 · 검사할 수 있도록 함 (강화)

☞ 공유수면매립공사의 지도 · 감독을 위해서는 필요한 규제라고 판단되며, 규제내용 또한 타법에서도 정하는 사항이기에 원안의결

○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 등에 출입한 자 등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원상회복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 (강화)

☞ 제18조에 따른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 등에 출입한 단순위반자에 대하여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처분 내용이 지나치다고 판단되므로 삭제할 것을 개선권고

(38) 항만공사법 시행령 개정령안 (신설 1)

■심사내용

○ 항만시설 사용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항만시설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국유재산법을 준용하여 변상금을 징수토록 하며,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유재산법을 준용하여 가산금을 징수토록 함 (신설)

☞ 변상금과 가산금 징수는 현재 시행중인 사항을 법령에 규정한 것으로 국가가 관리하는 무역항은 '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변상금 및 가산금을 징수하고 있고, 부산 · 인천항만공사도 자체 규정에 근거하여 이를 징수하고 있기에 원안의결

(39)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내용심사 1)

■심사내용

○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자 및 관리자가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준수사항)에 허위 또는 과대광고행위, 유인 행위 등을 추가 함 (내용심사)

☞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자 및 관리자의 준수사항을 구체화하여 행정청의 재량행위를 투명화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유사입법인 수의사법, 의료법 등에서 기 시행되고 있는 규제이기에 원안의결

(40) 해상교통안전법시행령 개정령안 (내용심사 1)

■심사내용

○ 인증심사경력을 유지하지 못하여 자격이 실효된 인증심사원의 자격회복을 위하여

보수교육 사항을 추가함 (내용심사)

☞ 선박 및 사업장의 안전관리체제의 인증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인증심사원이 일정기간 심사경력을 유지하지 못하여 자격이 실효된 경우가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불가피하게 교육과정을 신설하는 사항이기에 원안의결

(41) 선박 전기 설비기준 개정안 (내용심사 1)

■심사내용

○ 선체를 도체로 사용하기 위한 요건, 로로여객선에 설치된 비상경보 및 선내방송 장치의 케이블 배선기준, 탱커 및 탱커선에 대하여 선체를 접지선을 사용할 수 있는 허용기준 등 선박 전기 설비기준을 규정 (내용심사)

☞ 국제해사기구 회원국감사에 대비하여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의 누락사항을 수용하여 협약에서 정한 정부 재량권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기에 원안의결

(42) 강선의 선체구조기준 개정안 (내용심사 1)

■심사내용

○ 해수전용 밸러스트탱크에는 부식방지 조치를 하고 고밀도 고체산적화물의 운송선박은 강화된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일정요건에 미달시에는 특정 고체산적화물을 운송하여서는 안되며, 산적화물선의 적하지침서는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강선의 선체구조기준에 대하여 규정 (내용심사)

☞ IMO의 회원국 감사에 대비하여 강선의 선체기준을 국제협약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기에 적절한 규제라고 판단되나 국제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강선의 선체기준'에 정한다고 하여도 선박안전법 제2조제1항에 근거한 선박의 시설기준에 관하여만 정해야 함, 따라서 제465조제1항, 제466조제1항, 제470조 및 제468조 제3항의 규정은 국제협약의 기준보다 강화된 규정이므로 국제협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할 것을 개선권고

4. 해양경찰청

집필자 : 여기동 사무관(02-2100-2456, okygd@opc.go.kr)

가. 2006년 신설 · 강화규제 심사개요

❍ 2006년도에는 수난구호법 개정법률안 및 수상레저안전법 고시 등 2개 법령에 대해 신설 1건, 내용심사 4건 등 총 5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비중요 5건)

❍ 심사대상 5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해양경찰청의 2005년도 총 신설규제는 1건임

< 해양경찰청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 고
① 수상레저안전업무처리지침 제정안	예비심사 (2006.3.30)	원안의결 4	내용심사4 *비중요4
② 수난구호법중 일부 개정 시행령 및 시행규칙중 개정령안	제259차 경제2분과위 (2006.8.16)	원안의결 1	신설1 *비중요1
계		원안의결 5	신설1 내용심사4 *비중요5

나. 2006년 신설 · 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수상레저안전업무 처리지침 제정안 (내용심사 4)

■심사내용

○ 수상레저기구 종류에 따라 정원 산출과 안전검사의 방법 및 기준을 정함 (내용심사)

☞ 수상레저기구의 종류별(13종)로 구분하여 승선정원 산출기준을 정하고 소형어선보다 간소한 검사기준 및 절차를 정한 것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 우수사업장인증 제출서류 및 자체규정의 세부내용을 정함 (내용심사)

☞ '선박 또는 선박용 물건의 우수사업장 인정 등에 관한 규칙' 등을 참고하여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우수사업장으로 인증 받아야할 자가 제출하여야 할 서류와 자체 제조 및 정비규정에 대한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 수상레저기구의 형식승인 및 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 (내용심사)

☞ 형식승인시험기관 및 검정업무대행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의 제출서류, 지정요건 및 절차 등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도록 한 사항을 정한 규정으로서 적정한 규제라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 수상안전교육의 내용 · 방법 및 시간 등을 규정 (내용심사)

☞ 레저인구의 증가추세, 각종 안전사고의 유형, 레저활동의 형태 등 레저환경 변화에 맞추어 현실에 맞게 적정하게 교육과정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2) 수난구호법중 일부 개정 법률안 (신설 1)

■심사내용

○ 선박 등의 구난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구난작업 개시전에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선박 구난작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작업위치 및 선박현황, 작업기간 및 계획 등을 신고하여야 하며, 선박구난자격을 받은 자가 시설 등의 기준에 미달하거나, 인양물을 부당하게 처분한 때, 선박안전법의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자격취소 또는 6월이내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음 (신설)

☞ 선박구난작업으로 인한 해상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선박구난 작업사실 등을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구난작업을 하는 선박 또는 인근을 항행하는 선박, 조업선박 등의 안전과 직결되기에 원안의결

제7절 환경분야(환경부)

집필자 : 박 웅 사무관(Tel. 2100-2451, ungpark@opc.go.kr)

1. 2006년도 신설 · 강화규제심사 개요

❍ 2006년도에는 골프장의 중점 사전환경성 검토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제조 · 수입 또는 사용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화학물질고시, 수질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규칙, 토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수도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수도시설 청소규칙,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요령,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 고시,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관한법률,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정수기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야생동식물보호법, 먹는샘물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고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질환경보전법, 자원의 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폐기물관리법,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 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수도시설 운영 · 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문화유산과자연환경자산에관한국민신탁법시행령, 환경 · 교통 · 재해 등에관한 영향평가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40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30, 강화 46건, 내용심사 27건 등 총 103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중요 41건, 비중요 62건)

❍ 심사대상 103건 중 21건은 개선권고, 3건은 철회권고를 하였으며, 79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

< 환경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골프장의 중점 사전환경성 검토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안	제240차 경제2분과 (2006.1.4)	개선권고1	내용심사1 *비중요 1
제조 · 수입 또는 사용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화학물질 고시 전부개정안	예비심사 (2006.2.23)	원안의결1	강화1 *비중요 1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제242차 경제2분과 (2006.2.8)	원안의결3	내용심사3 *중요1, 비중요2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제242차 경제2분과 (2006.2.8)	원안의결2 개선권고1	내용심사3 *중요1, 비중요2
토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예비심사 (2006.2.9)	원안의결2	강화1, 내용심사1 *비중요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예비심사 (2006.4.11)	원안의결1	신설1 *비중요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예비심사 (2006.4.11)	원안의결1	신설1 *비중요 1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예비심사 (2006.4.23)	원안의결2	강화1, 내용심사1 *비중요 2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예비심사 (2006.4.24)	원안의결4 개선권고1	강화2, 내용심사3 *비중요 5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예비심사 (2006.4.24)	원안의결3	내용심사3 *비중요 3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예비심사 (2006.4.24)	원안의결3	내용심사3 *비중요 3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예비심사 (2006.4.24)	원안의결1	내용심사1 *비중요 1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예비심사 (2006.4.24)	원안의결1	강화1 *비중요 1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예비심사 (2006.4.24)	원안의결2	신설1, 강화1 *비중요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제249차 경제2분과 (2006.5.12)	원안의결3	강화2, 내용심사1 *비중요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제249차 경제2분과 (2006.5.12)	원안의결1	강화1 *비중요 1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요령 개정안	예비심사 (2006.5.24)	원안의결1	내용심사1 *비중요 1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단독정화조 처리대상 인원 산정방법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06.6.5)	원안의결1	내용심사1 *비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제253차 경제2분과 (2006.6.7)	개선권고1	강화1 *중요 1,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예비심사 (2006.6.8)	원안의결1	신설1 *비중요 1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제258차 경제2분과 (2006.7.19)	원안의결6개 선권고2철회 권고1	신설9 *중요5, 비중요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제259차 경제2분과 (2006.8.16)	원안의결4	강화1,내용심사3 *중요1,비중요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제259차 경제2분과 (2006.8.16)	원안의결4 개선권고1	강화4,내용심사1 *중요3,비중요2
정수기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제259차 경제2분과 (2006.8.16)	원안의결1	강화1 *비중요1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 개정안	제260차 경제2분과 (2006.8.23)	원안의결1 철회권고1	신설1, 강화1 *중요1,비중요1
먹는샘물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고시 개정안	제260차 경제2분과 (2006.8.23)	원안의결1	강화1 *비중요 1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262차 경제2분과 (2006.9.13)	–	재심사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263차 경제2분과 (2006.9.20)	원안의결5 개선권고3	신설8 *중요4,비중요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제266차 경제2분과 (2006.10.18)	–	재심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제266차 경제2분과 (2006.10.18)	원안의결2	강화2 *비중요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제266차 경제2분과 (2006.10.18)	원안의결2	강화2 *비중요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제266차 경제2분과 (2006.10.18)	원안의결1	강화1 *비중요 1
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	제266차 경제2분과 (2006.10.18)	원안의결2 개선권고3	강화5 *중요3,비중요2
자원의 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제268차 경제2분과 (2006.11.8)	원안의결1 개선권고1	신설1, 강화1 *중요 1,비중요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제269차 경제2분과 (2006.11.15)	원안의결1 개선권고1	강화2 *중요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	제269차 경제2분과 (2006.11.15)	원안의결4 개선권고1	신설1, 강화4 *중요 1,비중요4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전부 개정안	제269차 경제2분과 (2006.11.15)	–	재심사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 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제270차 경제2분과 (2006.11.29)	원안의결1	강화1 * 비중요1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제271차 경제2분과 (2006.12.13)	원안의결3 개선권고3	신설1, 강화5 *중요 3,비중요3
수도시설 운영 · 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제271차 경제2분과 (2006.12.13)	원안의결1	내용심사 1, * 비중요1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시행령 제정안	제272차 경제2분과 (2006.12.20)	원안의결3	신설3 * 비중요3
환경 · 교통 · 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전부 개정안	제270차 경제2분과 (2006.11.29) 제176차 본회의 (2006.12.21)	원안의결2 개선권고2 철회권고1	신설2, 강화3 *중요 4,비중요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	제271차 경제2분과 (2006.12.13) 제176차 본회의 (2006.12.21)	원안의결1	강화1 *중요 1
계		원안의결79 개선권고21 철회권고3	신설30,강화46, 내용심사27 *중요41, 비중요62

2. 2006년 신설 · 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골프장의 중점사전환경성검토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고시안(내용심사1)

■심사내용

○ 골프장조성계획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시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항목, 방법 및 사항을 정함.

- 골프장 사업계획면적 중 경사도 25o 이상(25m×25m 기준)인 지역이 골프장 부지 면적의 30%이상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함(안 별표 1의 나.)
-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이 골프장 사업계획 부지면적의 10% 이상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 등 자연환경이 양호한 지역은 원형보전을 원칙으로 함.(안 별표 2의 나.)
- 골프장 사업계획 부지 내에 멸종위기 동 · 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지역은 골프장 사업계획지역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함(안 별표 2의 다.)

– 골프장 사업계획지에 다음 각각의 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함(안 별표 3의 나)
· 유효저수량 30만㎥이상인 호소 · 농업용저수지의 만수위선으로부터 300m 이내인 지역
· 국가하천 및 지방1급 하천의 양안 300m이내인 지역.
· 4대강 특별법에 의한 수변구역 경계로부터 300m이내인 지역

☞ 별표의 1. 나. 의 경우 환경부 내부지침으로 운영중인 '사전환경성 검토 업무편람'의 내용을 법령화하여 사전환경성 검토의 투명화를 도모한다는 고시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현행 사전환경성검토업무 편람과 동일한 수준으로 '나. 골프장 사업계획 부지면적 중 경사도 20도(25m×25m 기준) 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50% 이상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한다.(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 · 결정하되, 동 지역들을 보전하는 방안 강구하도록 한다)'로 수정할 것을 개선권고하고, 별표의 1. 나. 를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

(2)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내용심사3)

■심사내용

○ 비점오염 방지시설의 설치시기 및 기준
– 개발사업자는 강우유출수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은 공사개시 2일 전까지, 공사완료 후에 발생되는 강우유출수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은 공사준공시까지 설치하여야 함
– 방지시설의 설치기준으로 자연형 시설, 장치형 시설로 구분하여 제시

☞ 비점오염원 방지시설 설치에 따른 행정절차와 오염유출 특성상 사업자가 입지여건에 맞게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

○ 비점오염 방지시설 관리 · 운영기준
– 비점오염원 관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자연형 시설은 침전물 제거, 식생의 생육관리 등을 하고, 장치형 시설은 여과시설과 스크린이 폐색되지 않도록 관리하여 함.

☞ 방지시설 관리 · 운영에 관한 최소한의 조치사항을 정한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

○ 제204차 경제2분과위원회(2004.9.17) 개선권고에 대한 검토
-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설치하더라도 입지가 허용되지 않는 특정수질유해물질(16종)의 경우 물질의 독성 정도를 고려하여 규제의 타당성을 재검토 보고

☞ 특정수질유해물질 16종에 관한 유해성이 인정되는 바 환경부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안대로 의결

- 구리, 디클로로메탄, 1,1-디클로로에틸렌 등 유독물에 해당하지 않은 물질은 특정수질유해물질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재검토 보고

☞ 디클로로메탄, 1,1-디클로로에틸렌은 환경부보고 대로 유해성이 인정되며, 구리와 그 화합물은 유독물은 아니나 생태독성이 강한 물질로 미국과 같이 특정수질유해물질로 지정 · 관리함이 타당하므로 환경부 원안대로 의결

(3)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내용심사 3)

■심사내용

○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대상 사업 및 시설의 기준을 정함
- 개발사업의 경우
  · 항만 · 도로 · 철도건설,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을 제외한 도시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13개 분야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 사업장(공장)의 경우
  · 제철 · 섬유염색시설로 부지면적 1만㎡ 이상
  · 가죽제조 · 목재 및 나무제품 · 펄프 · 코크스 · 화학 · 고무 · 비금속광물 · 제1차 금속 ·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 · 폐기물처리업 중 부지면적이 1만㎡ 이상

☞ 개발사업의 경우 비점오염원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에 동의함. 사업장의 경우는 환경부 원안대로 하되, 비점오염원 관리제도 도입 초기인 점 등을 고려하여 비점오염원 관리제도를 도입한 법개정안 규제심사('04.10)시 신고대상 사업장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가죽제조업,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폐기물처리업은 삭제토록 개선권고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
- 시설 설치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 사유 및 기일을 정하고, 변경신고 사유로 상호, 대표자, 사업명 또는 업종의 변경, 총 사업면적 또는 개발면적이나 사업장 부지면적이 당초 신고면적의 100분의 15이상 증가, 방지시설의 형식이 변경되는 경우로 정함

☞ 비점오염원의 설치 및 변경에 따른 신고시 행정절차를 정한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

○ 비점오염원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절차사항을 정함
- 개선명령을 할 때에는 시설의 설치는 1년, 시설의 개선은 6월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하고,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경우 6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연장.
-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때에는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함

☞ 비점오염원의 관리와 관련하여 규정을 위반한 경우 사후조치를 정한 사항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

(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 재활용의무대상 제품 · 포장재항목을 추가
- 화장품을 담는 유리병('07.7.1부터 시행)
- 망간전지, 알카리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08.1.1부터 시행)

☞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에 재활용이 가능한 화장품을 담는 유리병과 가정에서 나오는 망간전지 · 알칼리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를 포함시킨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

(5)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강화 2, 내용심사1)

■심사내용

○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판매업자의 회수 · 재활용 실적 통보기일 및 서류를 정함

☞ 재활용의무대상 제품 판매업자의 회수 및 재활용 실적을 관리하기 위한 행정적인 절차를 정한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

○ 빈용기 미반환보증금의 사용계획 및 결과의 보고의무 규정
- 제조자 및 수입업자는 미반환 보증금의 사용계획 및 실적보고서를 매년3월말까지 한국환경자원공사에 제출하고, 공사는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통보

☞ 제조자 및 수입업자의 빈용기 미반환 보증금의 사용을 관리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정한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

○ 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 사용과 관련한 사항을 정함
-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품질기준, 품질인증, 품질관리, 공급계획자의 제출의무, 준수사항을 구체화함

☞ 폐플라스틱의 품질기준 · 사용처 등에 관한 기준(환경부장관고시 제2003-127호)에서 정했던 사항을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여 규정한 사항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

(6)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 수질원격감시체계 도입을 위하여 수질 연속자동측정기기(TMS) 부착대상 사업장 및 측정기기의 종류 등을 추가함
-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은 1일 처리능력이 200㎥ 이상인 공동방지시설 설치 · 운영 사업장, 1종 내지 3종사업장으로 하고, TMS 부착시기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부착토록 하되, 개정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폐수배출량 및 처리능력 규모에 따라 부착기한을 2007.8.31부터 2008.9.30까지 달리함

☞ 하 · 폐수 종말처리장 및 1종 사업장은 환경부 원안대로 2007년 9월30일까지

설치를 추진토록 함. 다만, TMS설치비용이 고가인 점, TMS수입·제조업체가 영세하고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기술력부족이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2~3종 사업장의 TMS 설치기한을 700톤/일이상의 제2종 사업장과 공동방지시설은 2008년 9월 30일, 200톤/일이상의 제3종 사업장과 공동방지시설은 2009년 9월 30일까지로 조정할 것을 개선권고함

(7) 다이옥신 등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신설9)

■심사내용

○ 취급제한·금지 물질지정
-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A 또는 B에 규정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취급제한·금지물질로 지정
- 지정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수입·영업허가 및 수출승인 등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정을 준용

☞ 스톡홀름협약에 규정된 물질을 취급제한·금지물질로 지정하여 협약의무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부처(농림부)와 협의되었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대로 의결

○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 측정망 설치 또는 오염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구역의 토지·건축물 등을 수용 또는 사용 가능
-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손실보상 등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함

☞ 다이옥신 등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오염실태 파악을 위한 필요한 조치로 측정지점 및 주기 등이 한정되어 있고 단순히 시료만 채취하는 것이므로 원안의결함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규제
-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배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함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운영하는 시설의 배출자에게 시설의 개선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음(제15조)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하여야 함(제16조)
- 배출자는 당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공인된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측정하게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출자 또는 배출자들은 3년마다 주변지역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더라도 환경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총량규제를 실시
- 배출자는 배출시설의 고장, 파손 등 사고발생시 응급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배출규제 및 스톡홀름협약 비준 등을 위하여는 통합 법령의 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다음의 규정은 개선권고함

- 제15조의 경우 사용중지명령시 배출시설의 특성을 고려, 당해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중지할 수 있도록 개선 권고
- 배출시설에는 폐기물소각시설, 철강공장 전기로, 알루미늄제조시설 등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중지가 주민의 생활, 국민경제, 기타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바, 사용중지처분에 대체하여 과징금 처분 조항 신설을 권고
- 개선명령 미이행시 당해시설에 대한 폐쇄는 과도한 규제이므로 삭제권고
-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신고시 민원인의 편의 도모,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타 법령에 의한 의제처리 조항 신설 권고

○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처리기준

-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함유하는 폐기물을 수집 · 운반 · 보관 ·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준수하여야 함
-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 배출자는 처리규정에 적합하게 동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함
-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의 수집 · 운반 ·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가 기준에 적합하게 수집 · 운반 ·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위탁
-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을 처리하기 전에 처리계획서를, 수집 · 운반 · 처리 과정에서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함유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여 제출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의 재활용시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류 및 용도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함
- 폐기물배출자 등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상황에 대한 장부를 비치하고 최종 기재한 날부터 3년간 이를 보존함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환경부령이 정한 함유량을 초과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에 대해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로 분류·관리하고자 하는 것임. 구체적인 처리기준 등은 하위법령에서 제정될 계획이며, 기존에도 일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의 경우 지정폐기물로 관리되고 있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대로 의결

○ 특정잔류성유기오염물질 함유기기의 관리
- 대통령령이 정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함유하거나 이에 오염된 기기(특정관리대상기기)의 소유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목록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신고하여야 함
- 특정관리대상기기의 소유자에게 안전관리상 주의표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특정관리대상기기 소유자는 당해기기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함

☞ 폐PCBs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함유하거나 이에 오염된 기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관리를 위하여 실태파악을 통한 국가목록을 작성하고, 이들 기기의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 처리기한(향후 환경부령으로 정함)내 처리토록 하는 등 필요성은 인정되므로 원안대로 의결. 다만, 영세한 중소기업자들은 처리비용의 부담이 있어 재정적인 지원이 강구되어야 하는 바, 처리기간을 반영할 환경부령의 규제심사요청 이전까지 PCBs 함유기기의 대한 구체적인 처리 및 지원계획 제출을 부대 권고함

○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토양보전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하여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 대책기준을 넘는 지역에 대하여는 토양보전지역으로 지정 관리
  · 오염토양오염개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실시를 그 오염원인자에게 명할 수 있음

· 대책지역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의 이용 또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
· 대책지역안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유해화학물질 등의 투기행위 제한

☞ 동 규정은 토양환경보전법을 준용한 것으로 토양환경보전법을 적용하여도 이 법 시행상 문제가 없으므로 전체 조문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철회 권고함

○ 보고 및 검사
–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배출자, 폐기물배출자 및 특정관리대상기기 소유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 당해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 제14조의 규정을 따른 배출허용기준, ...제31조에 규정을 따른 대책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 시설 ·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
– 출입 ·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함

☞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는 필요한 보고의 범위가 광범위하므로 구체적인 보고목적 및 내용 등을 알 수 있도록 개선권고하며, '타인의 토지, 당해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라는 규정은 동법 제12조에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규정이 있으므로 '타인의 토지'에 출입 · 조사한다는 것은 불법적인 우려가 많고, 광범위한 규제로 삭제할 것을 권고함. 아울러,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은 정책추진의 목표로, 배출자가 준수해야 할 규제기준이 아니므로 삭제하고, 검사시 검사자의 증표제시의무는 규정하고 있으나, 사전통고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법에 사전통고근거 규정을 추가할 것을 개선권고함

○ 행정처분의 기준
– 이 법 또는 이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의 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함

☞ 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환경부령에서 규정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대로 의결

○ 과태료
- 법률에서 정한 의무이행에 태만한 행위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 위반사항에 대하여 경제적 제재조치를 부과함으로써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법 이행력을 강화시키려는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대로 의결

(8)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강화 1, 내용심사 3)

■심사내용

○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 결함보고 및 시정
- 결함시정 보고 : 동일연도에 판매된 동일차종, 동일부품에 대한 결함시정요구 건수가 50건이상 및 판매대수 대비 4%이상 발생시
- 부품결함 보고 : 결함시정요구건수가 100건이상 및 판매대수 대비10%이상 발생시
- 의무결함시정요건 : 부품결함건수가 50건이상 및 판매대수 대비 4%이상 발생하는 경우 제작사는 의무적으로 결함시정

☞ 대기환경보전법 제34조의2(부품의 결함시정)의 규정에 의한 결함시정 및 부품결함 보고 등의 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피규제자는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 등 20개사이며, 연간비용이 약 48.4억원 소요될 예정이고, 기히 관련협회와 협의된 사항이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대로 의결

○ 무인증자동차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 설정
- 자동차제작사가 인증을 받지 않거나, 인증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할 경우 과징금부과
- 과징금산정방식: 당해자동차매출액× 0.03 ×가중부과계수

☞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2(과징금처분)의 규정에 의거 구체적인 과징금 산정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당해 자동차매출액에 3/10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정도에 따른 가중부과계수를 곱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산정. 피규제자는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 등 20개사이며, 기히 관련협회와 협의하였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대로 의결

○ 연료 · 첨가제 사전검사 절차
- 검사방법 : 산업표준화법 또는 기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방법
- 검사절차 : 검사용시료, 성분분석서 등 제출
- 검사기관지정기준 : 기술능력, 검사장비의 기준
- 검사기관 종류 : 휘발유, 경유, LPG로 구분
- 검사기관 관리 : 년1회 검사기관 확인

☞ 대기환경보전법제41조(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의 검사 등)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체적인 검사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피규제자는 정유사(5개사), 첨가제 제조 · 수입사(한국바스프등 63개사)이며, 연간 검사수수료는 9천만원정도 소요될 예정이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대로 의결

○ 주유시설에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규제
-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 규제대상 시설에 주유시설(주유기)포함

☞ 환경부에서 '향후 적용범위 및 시행시기 등에 대하여는 관련업계와 공동으로 검토하여 추후 시행규칙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어 원안의결함. 다만, 주유기에 휘발성유기화합물질 회수시설 설치시 투자비가 과다 소요되므로 향후 적용범위 및 시행시기 등을 규정한 시행규칙안의 규제심사요청전까지 시설비의 지원방안을 검토 · 제출할 것을 부대권고함

(9)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강화 4, 내용심사 1)

■심사내용

○ 배출가스저감장치 · 저공해엔진 인증
- 배출가스저감장치 ·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은 수도권특별법 규정 적용
  · 배출가스저감장치 인증 수수료는 환경부장관 고시
  ·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인증신청 · 시험 · 기준 · 방법은 수도권특별법 규정 적용

☞ 법 제36조의 4(배출가스저감장치의 인증 등)에서 위임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저감효율, 인증수수료, 인증신청, 시험방법 등을 규정한 것으로 수도권외 지역에 적용되는 것이며, 피규제자는 배출가스저감장치 인증신청자로서

신청건수는 연평균 약 12건에 불과하고, 규제비용도 연평균347~487백만원이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대로 의결

○ 운행차 수시점검 면제대상 차량 조정
- 수시점검 면제대상차량 중 정밀검사를 받은 자동차를 제외

☞ '02년도부터 정밀검사를 받은 차량은 수시점검을 면제하였으나, 검사대행자의 불법,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저감 측면을 고려할 때 수시점검의 필요성은 인정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 다만, 단속의 효율성, 선량한 국민의 피해 우려 등을 감안하여 단속지침에 단속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이법 시행규칙 시행일 이전까지 제출할 것을 부대권고함

○ 정밀검사지역으로 변경 등록되는 자동차에 대한 정밀검사
- 변경등록되는 자동차중 정밀검사대상차량에 속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변경등록일로부터 30일이내 정밀검사를 받아야 함

☞ 정밀검사 대상지역외에서 정밀검사 대상지역으로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변경등록할 경우 현행과 같이 기존에 정기검사를 받은 차량은 제외토록 하는 것이 국민의 불편 등을 감안할 때 타당하므로 관련규정을 개선권고함

○ 정밀검사대행자 및 지정사업자의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기준
- 차대동력계에서는 그 차량의 총중량에 적합한 자동차에 한하여 부하검사를 실시
- 이를 위반시 1차 업무정지 1월, 2차 업무정지 3월, 3차 업무정지 6월의 행정처분 실시

☞ 대형자동차의 정밀검사제도 도입에 따라 부적정한 차대동력계 사용으로 인한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이를 위반시 행정처분 함으로써 검사제도 도입의 효율성 제고 및 법 집행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를 한 경우에도 동일한 행정처분을 하며, 입법예고시 의견제시가 없었던 점 등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대로 의결

○ 자동차연료 환경품질기준 개선
- 휘발유 기준강화 : 황함량 50 → 10ppm 등

- 경유 기준강화 : 황함량 30 → 10ppm 등
- LPG 기준강화 : 황함량 100 → 40ppm 등

☞ 자동차로부터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수준의 연료유 품질기준 개선이 필요하며, 연료 환경품질기준은 선진국의 사례, 국내 정유사의 정제기술 능력, 경제성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문연구용역을 통해 설정되었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마련되었으므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함

(10) 정수기 기준규격 및 검사기관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강화1)

■심사내용

○ 정수기 성능기준 강화
- 정수기의 정수성능과 관련한 측정항목변경 및 추가
- 정수기의 성능검사시 필터재질 검사를 추가하고, 검사대상 및 방법 규정
- 유효정수량 시험법 변경

☞ 국민건강보호를 위하여 정수기의 성능기준을 강화하는 것으로, 정수기 성능기준 강화로 인한 피규제자는 정수기 제조 · 수입업체(약244개소)로 한정되어 있고, 규제비용은 연간 약 86백만원이며, 세부기술적인 사항은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의 연구용역을 근거로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확정하였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대로 의결

(11)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안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 생태계교란 야생 동 · 식물의 수입 또는 반입금지
- 생태계교란 야생 동 · 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학술 · 연구용에 한해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하도록 함

☞ 당초 양식용 또는 애완용으로 도입한 야생동 · 식물이 자연환경에 방출되어 국내 생태계의 교란을 초래함에 따라 국내 생태계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학술 · 연구용 이외에는 수입 · 반입을 금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피규제자는 생태계교란 야생 동 · 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고자 하는 자이나 그간 허가 신청한 사례가 거의 없고 향후에도 신청사례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비중요 규제로 분류, 원안대로 의결

○ 수렵면허증 갱신시 수렵강습 이수의무 부여
- 현행 수렵면허증 최초 발급시에만 수렵강습을 받도록 하던 것을 수렵 면허증 갱신시(5년마다)에도 수렵강습을 받도록 함

☞ ① 교육내용이 수렵제도의 변화, 야생동물보호제도, 안전관리수칙 등 주로 이론적, 계도적인 사항으로 면허갱신시 반드시 집합교육을 해야 할 교육내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면허갱신 사전예고시 교육자료나 홍보자료 배포 등으로 해결가능하며, ②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타 면허(총기소지허가, 운전면허 등)의 경우에도 허가갱신시 교육이 없고, ③ '사업자 교육개선방안('06.6.23, 규제개혁장관회의 의결사항)'의 취지에 역행하므로 면허갱신시 의무교육은 불필요하므로 철회권고함

(12) 먹는 샘물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 먹는샘물 수원지, 업소명의 표시방법 변경 강화
- 수원지와 업소명은 주 표시면에 표시
  · 수원지는 제품명 하단에 제품명의 1/3크기로,
  · 제조원은 수원지 하단에 수원지의 1/3크기로,
  · 판매원이 따로 있는 경우 제조원 우측 또는 하단에 같은 크기로 표시

☞ 용기의 표시사항중 수원지와 제조업소명 등을 주 표시면에 일정크기 이상으로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제품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제품선택권을 보호하는 한편, 시장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피규제자는 먹는샘물 제조업체 및 수입 · 판매업체 115개사로 제한적이며, 규제비용도 약 575백만원정도이며, 관계전문가, 소비자단체, 관련협회 등과 이미 협의하였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대로 의결

(13) 전기 ·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정안(신설 8)

■심사내용

○ 전기 ·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제조자 등에 대한 유해물질의 사용제한 등
○ 전기 · 전자제품 제조 · 수입자의 재활용의무 등
○ 폐자동차의 재활용의무 이행 등
○ 재활용업의 등록
  – 폐전기 · 전자제품 및 폐자동차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기준을 갖추어 등록 · 재활용업 등록시 결격사유,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사유를 규정
○ 관리표의 작성
○ 보고 및 검사
○ 행정처분의 기준
○ 과태료 부과

☞ 사무국에서 동 안건에 대한 부처협의가 완료되고, 업계와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재확인하고, 차후 분과위원회시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담당자도 참석토록 조치하고,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 및 '자동차 재활용 사업자 단체 설립'에 대하여 환경부에서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사무국과 협의토록 함. 또한, 재활용업 등록불가 대상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는 자'에 대하여, 현재 정부가 파산자에 대한 사회복귀를 적극 지원하고자 하는 방침이므로 제외여부를 법무부와 추가 협의토록 함

(14) 전기 ·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정안(신설 8)

■심사내용

○ 전기 ·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제조자 등에 대한 유해물질의 사용제한 등
  – 전기 · 전자제품 등의 제조자 등은 유해물질 함유기준 및 재활용가능율(자동차 제조 · 수입자에 한함)을 준수하고 환경부장관과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재질 · 구조 개선에 관한 지침을 지켜야 함

- 유해물질 함유기준 및 재활용가능율의 준수여부를 스스로 확인하거나 평가하여 선언하고, 환경부장관 등은 이를 확인
- 전기 · 전자제품 등의 제조자 등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재활용사업자가 요구하는 경우 재활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
- 환경부장관 등은 재활용지침 등을 준수하지 않아 권고를 받은 전기 · 전자 제품 및 자동차의 제조자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타당한 사유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명단과 지침 위반내용을 공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함

☞ 전기 ·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유해물질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측면에서 제도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기존 환경부 및 산업자원부 공동고시를 법령화하는 것으로 EU, 일본, 중국 등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중임. 다만, 필요한 조치가 불명확하므로 '재질 및 구조개선 등을 위한 필요한 조치'로 명확히 할 것을 개선권고함

○ 전기 · 전자제품 제조 · 수입자의 재활용의무 등

- 전기 · 전자 제품 제조 · 수입자는 그 제품의 폐기물을 재활용(재활용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
- 전기 · 전자제품의 제조 · 수입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재활용의무율에 따라 재활용
- 재활용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하며,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
- 전기 · 전자제품의 제조 · 수입자가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재활용되지 아니한 폐기물의 재활용에 드는 비용의 130%를 부과금으로 징수

☞ '03년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중인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를 이 법으로 이관하여 시행하려는 것이며, 재활용의무율 등을 정할 때에는 환경성 · 재활용성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으므로 비중요 규제로 분류, 원안대로 의결

○ 폐자동차의 재활용의무 이행 등

- 자동차 제조 · 수입자, 자동차폐차업자, 파쇄재활용업자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활용비율이상 재활용되도록 하여야 함
- 폐자동차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재활용방법을 준수하도록 함

- 자동차폐차업자는 기후 · 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을, 파쇄재활용업자는 파쇄잔재물을 분리 · 배출하여야 함
- 기후 · 생태계변화 유발물질과 폐자동차파쇄잔재물을 환경부령에 따라 처리
- 폐자동차의 처리 · 재활용비용을 폐자동차의 가격에서 공제하여 충당
  · 폐차 처리 · 재활용비용이 폐차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제조자가 폐차업계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무상회수
- 폐자동차를 처리 및 재활용한 량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 폐차의 처리 및 재활용에 대한 환경적 측면의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고 외국의 규제동향 등에 대한 대응체계구축을 위하여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독일 등과 같이 자동차제조사가 폐차업체와 계약에 의하여 재활용, 처리함으로써 비용을 분담하는 등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부처 등과도 협의되었으므로 원안의결함

○ 재활용업의 등록
- 폐전기 · 전자제품 및 폐자동차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기준을 갖추어 등록
  · 재활용업 등록시 결격사유,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사유를 규정

☞ 폐전기 · 전자제품의 경우 ①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 · 재활용하도록 하고 있고 ② 현재도 재활용신고 업체가 재활용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별도의 재활용업의 등록은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재활용업 등록 대상에 '폐전기 · 전자제품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삭제권고함. 또한,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요건 중 '법인의 임원에 해당하는 자가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2월이내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규정과 '등록을 한 후 1년이내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1년이상 휴업한 경우'에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규정은 타 환경관련 법령에 비해 과도한 규제로 판단되는 바, 2월을 6월로, 1년을 2년으로 할 것을 개선권고함

○ 관리표의 작성
- 폐전기 · 전자제품 및 폐자동차를 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자는 정보처리센터의 장에게 폐전기 · 전자제품 등의 인계 · 인수에 대한 정보를 제출

☞ 폐전기 · 전자제품 및 폐자동차의 인수 · 인계정보를 제출토록 하여 불법투기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는 것으로 피규제자는 608개사이고, 연간비용은 499백만원정도이며,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자의 폐기물 인계인수서와 동일한 점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대로 의결

○ 보고 및 검사
- 환경부장관 등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나 시설 ·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
- 출입 ·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함

☞ 필요한 보고 및 자료제출은 그 내용 및 범위가 광범위하므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로 개선권고하며, 검사시 검사자의 증표제시의무는 규정하고 있으나, 사전통고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사전통고근거 규정을 추가할 것을 개선권고함

○ 행정처분의 기준
- 이 법 또는 이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 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부처가 협의하여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려는 것이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대로 의결

○ 과태료 부과
- 유해물질 사용제한 등 기준위반이나 준수사항 미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 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경제적 제재조치를 부과함으로써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이행력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대로 의결

(15)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강화1)

■심사내용

○ 폐기물부담금 부과요율 현실화 및 부과대상 전환 등
-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확대
  · 6개 플라스틱 제품군→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하여 제조 또는 수입되는 제품
-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외제품 추가
  · 연간 플라스틱사용량이 10톤이하인 사업자가 제조한 제품
  · 수입한 제품속에 포함된 플라스틱량이 100kg이하인 제품
  · 다른 법령에서 제품의 소유자에게 처리책무를 명시한 제품
- 폐기물부담금 감면기준 확대
  · 면제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면제기준중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면제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
- 폐기물부담금 요율인상
  · 7개품목에 대하여 4~62배 인상
- 폐기물부담금 산정방법 변경
  · 폐기물 부담금 산정시 연도별부담금 산정지수를 곱함
  · 환경부장관과 폐기물회수 · 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경우 부담금 면제

☞ 부과대상 및 부과요율 등에 대해서 이견이 크고 과도한 부담이 우려되므로 금년 말까지 국무조정실 · 환경부 · 산업자원부 · 관련 업계가 T/F를 구성, 전문가 용역을 거쳐 요율 등을 재산정하여 이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토록 하여 재심사토록 함

(16)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강화 2)

■심사내용

○ 건설폐기물의 배출기준 마련
- 건설폐기물을 폐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배출토록 규정

☞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재활용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기존 동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도 폐기물의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 운반 보관토록 규정하고 있어 분리 배출하고 있었으며, 입법예고시 의견제시가 없었던 점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대로 의결

○ 건설폐기물 재활용실적 제출시기 규정
-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건설폐기물재활용실적보고서는 다음연도 1월말까지 당해 건설공사의 인·허가 또는 승인권자에게 제출

☞ 건설폐기물재활용 및 관련정보의 관리체계 구축이 가능하고, 실적보고서는 인터넷(건설폐기물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제출토록 함으로써 규제로 인한 소요비용이 없으며, 입법예고시 의견 제출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대로 의결

(17)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강화 2)

■심사내용

○ 건설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대상 확대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설치하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외 소각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신설, 변경의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도록 함

☞ 건설폐기물처리업의 관리강화 등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피규제대상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 334개사로 한정되어 있고 규제비용이 미미하며, 관련협회와 기 협의된 사항으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대로 의결

○ 보고서 제출방법 변경
- 건설폐기물 배출신고자 및 처리업자 등은 각종 실적보고서를 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정보관리 체계를 이용하여 제출

☞ 건설폐기물 배출·운반·처리실적 등의 보고서를 환경부장관이 운영하는 건설폐기물 정보관리체계(http:www.cwms.or.kr : 건설폐기물정보관리시스템)를 이용하여 제출하게 함으로써, 시간 및 비용절감, 통계의 신뢰성제고, 일선행정기관의 행정효율화 도모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규제비용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대로 의결

(1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강화 1)

■심사내용

○ 재활용제품 사용시설 및 제조 · 사용자의 준수사항
-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중 기존의 산업용보일러, 지역난방시설, 제철소의 로는 시간당 석탄2톤 이상 사용시설로 규모를 제한하고, 고체연료 전용시설, 전용발전소, 기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에는 신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고형연료제품 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 규정
- 고형연료제품의 품질 · 등급기준 세분화

☞ 피규제자는 폐플라스틱 고형연료제품(Refuse Plastic Fuel, RPF) 제조자(20개사) · 사용자(7개소)및 생활폐기물 고형연료제품(Refuse Derived Fuel, RDF)제조자 1개소 · 사용자(약50개소)로 제한적이며, 규제내용이 기존 규정을 준용하여 설정된 전문기술적인 사항으로 가연성폐기물의 매립 · 소각처리비 절감, 에너지 대체효과, 관련 재활용산업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대로 의결

(19) 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 (강화 5)

■심사내용

○ 수질오염물질 총량규제
- 4대강 수계 이외의 수계가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오염물질 총량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수질 및 수생태계를 평가한 결과 목표기준을 달성 · 유지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유역
  · 수질오염으로 주민의 건강 · 재산이나 수생태계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역
- 총량관리의 절차 등은 총량제가 기 시행중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토록 함

☞ 환경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4대강 이외의 수계에 대하여 현재 적용되고 있는 농도규제방식으로는 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어려워 총량규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인정됨. 기 시행되고 있는 총량제의 절차와 방법을 준용토록 함으로써 그 절차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음. 다만, 총량제 실시대상 수계를 정하는 방식과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대상지역은 환경부장관이 지정 · 고시토록 하되, 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규정'할 것을 개선권고 함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등
- 기존에는 대상사업중 신규사업만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대상이었으나, 당해사업규모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신고대상에 포함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
- 준수사항 미이행시 비점오염저감계획 이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사업 양도, 합병 등의 경우 권리 · 의무 승계를 규정

☞ 규제대상과 규제로 인한 추가비용이 미미하고, 이해관계자의 이견도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대로 의결

○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에 오염물질량 측정기기 운영
- 측정기기 운영관련 금지행위를 정함
  · 측정기기 고의 미작동, 정상 작동되지 않는 측정기기 방치 등
- 측정기기의 운영 · 관리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미준수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측정기기와 관련한 부적정 운영을 하거나 운영 ·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 측정기기의 정상운영을 위해 금지행위 및 운영 · 관리기준을 정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행명령 등을 규정한 것은 그 타당성이 인정됨. 다만 조치명령 미이행시 조업정지를 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는 바, '6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조업정지를 명하도록 개선권고 함

○ 보고 및 검사
- 사업장 출입 · 검사 목적에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자의 준수사항 준수여부 및 측정기기 정상운영 여부 확인을 추가

☞ 검사시 검사자의 증표제시의무는 규정하고 있으나, 사전통고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사전통고근거 규정을 추가하여 사업장의 부담을 최소화할 것을 개선권고 함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의 취소
- 배출시설 허가 취소요건에 '사업자가 허가를 받은 후 5년 이상 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된 때'를 추가

☞ 배출시설 설치허가 후 장기간 가동되지 않는 경우 등에 그 허가를 취소토록 하여 주기적인 점검(연1~4회) 등에 따른 행정낭비요소를 줄이려는 것으로서 규제비용도 미미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대로 의결

(2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신설 1, 강화 1)

■심사내용

○ 붙박이장 설치대상 확대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1호에 따른 숙박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자에게 붙박이장 등 수납공간이나 붙박이식의 집기 또는 비품 등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음

☞ 폐기물의 발생억제와 자원을 절약코자 하는 것으로, 피규제자는 931개 건설업체이며, 현재 공동주택에 한정되어 있는 붙박이장 설치 권장대상시설에 숙박시설을 추가하는 사항임. 의무사항이 아니고 입법예고시 의견제시가 없었으며, 폐기물 발생억제 효과 등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대로 의결함

○ 에너지회수시설의 설치 · 운영
- 에너지회수시설은 환경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하고 폐기물관리법의 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설치 · 운영(안 제24조의2 제1항)
- 에너지회수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회수시설의 적정한 설치 · 운영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검사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안 제24조의2 제2항)
- 환경부장관은 에너지회수시설의 적정한 설치 · 운영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입 폐기물의 성상 및 에너지회수 효율 등을 조사 · 확인(안 제24조의2 제3항)
- 환경부장관 등은 에너지회수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음(안 제36조제1항)
- 검사서류 미제출시 과태료 300만원이하 부과(안 제41조제1항 제9호)

☞ 에너지회수시설의 적정설치 · 운영여부를 확인 조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로 그 필요성은 인정됨. 다만, 검사자료 제출의무(안 제24조의2 제2항), 에너지회수시설에 대한 조사 · 확인(안 제24조의2 제3항), 검사자료 미제출시 과태료 부과조항(안 제41조 제1항 제9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개선권고함

- 타 관계법령에 따라 기히 적합검사를 받고 적정하게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에너지회수시설 설치 · 운영자에게 타 관련법에 의한 검사서류 제출,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등은 시설의 적정 · 운영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규제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규제가 중복적이고 타당성이 부족함
- 또한, 타법에 의한 검사주기가 1~3년인 상황에서 동 검사서류를 제출받아도 시설의 적정 · 운영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하며, 필요시 동법 제36조(보고 및 검사)의 규정에 따라 자료제출요청 및 조사 · 검사를 함으로써 동 규제목적 달성이 가능

(21)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강화 2)

■심사내용

○ 대기배출시설 분류체계개선

- 대기오염물질을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근거하여 세분화하고, 일부시설을 추가
  · 14개 대기배출시설 분류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27개 시설로 세분화
  · 고형화 연료제품(RDF, RPF)사용시설, 반도체 및 LCD 제조시설, 매립가스 발전시설, 1차금속제조시설의 소결로 및 시멘트소성시설 등 신생 산업시설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포함
  · 자치단체 조례로 일정규모이상의 시설을 배출시설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

☞ 지자체, 산업체 등에서의 대기배출시설 분류체계 개선요구에 부응하고, 산업의 발전 등에 따라 새로이 나타나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배출시설로 정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간 산업계, 협회 등과 충분히 협의된 것으로 판단됨.

다만, '자치단체 조례로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을 배출시설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① 지역별로 법적용의 형평성 문제, ②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규제대상이 불명확하여 사업장에서의 행정적, 기술적 사전대처 곤란 ③ 배출시설과 관련하여 각종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상황에서 동일한 시설에 대해 지역별로 배출시설 지정이 다를 경우 사업자 불편 및 혼란가중 등의 문제가 있어 삭제토록 개선권고함

○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조정 · 보완
- 2010년 시행예정인 배출허용예고 기준 설정
  ·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암모니아, 염화수소, 먼지 등의 주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현행보다 10~50% 강화
  · 질소산화물(NOx) 다량 배출시설인 대형 발전시설, 보일러 등의 배출허용기준 강화
  · 먼지방지시설 기술발전에 따라 저감효율이 향상되어 배출기준 강화
  · 반도체 제조시설 및 액정표시장치(LCD), 생활폐기물 고형화연료제품(RDF), 플라스틱 고형화연료제품(RPF), 매립가스 사용시설 등 신규 산업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최초 설정
  · 배출허용기준중 수은기준 신설 등

☞ 오염물질 배출저감을 통한 대기환경보전 및 국민건강 보호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배출허용기준 개정안은 표준산업분류의 배출시설 체계와 맞추어 국내 방지시설 기술수준과 경제성, 지역간 형평성, 업체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설정되었고, 배출허용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시 관련단체와 협의하여 초안을 마련하고, 공청회, 토론회 및 조정회의 등을 거쳐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와 협의되어 최종조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

(22)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 (신설1, 강화4)

■심사내용

○ 폐기물 투기금지 등
- 폐기물을 허가받거나 승인받은 매립시설 또는 소각시설외에서의 폐기물의 매립과 소각을 금지함. 다만 생활폐기물관리구역외의 곳에서 소각은 가능
- 이를 위반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을 불법소각시 명확한 규제조항이 없어 민원을 야기하고 있어 근거조항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입법예고시 별다른 의견제시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대로 의결

○ 사업장폐기물의 전자인계서 작성 등

-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 전자인계서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작성하여야 함
  · 다만, 감염성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감염성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선주파수인식태그를 사용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작성
- 운반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의 운반중에는 폐기물전자인계서를 출력한 서류(다만, 무선주파수인식태그를 부착한 폐기물을 운반중에는 무선주파수인식태그 리더기)를 언제나 지녀야 하고 관계행정기관이나 소속공무원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함
- 처리자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을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그 사업장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배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 사업장폐기물의 투명한 관리로 폐기물의 투기 및 방치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폐기물 인계·인수시 작성하고 있는 폐기물전자인계서 또는 종이전표(폐기물인계서)를 전자인계서로 대체하고, 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무선주파수인식태크를 사용한 전자정보처리시스템으로 감염성폐기물의 유통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하는 것임

전체적으로 피규제자는 72,000개업체이며, 규제비용은 전자인계서 및 무선주파수 정보시스템에 연간 총 76억(최초 설치비35억원 포함)이 소요되나, 이로 인한 편익은 연간 총 816억원이 됨. 업무량 감소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 폐기물의 부적정처리 예방 등 장점이 있으며, 입법예고시 별다른 의견제시가 없었던 점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대로 의결

○ 폐기물의 수출입신고 및 처리 등

-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신고한 자 등은 그 수입한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함
  - · 폐기물수입자 또는 수입폐기물을 운반 · 처리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수입 · 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전자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운반자는 수입신고서와 폐기물전자인계서를 언제나 지녀야 하고,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내보내야 함
  - · 수입폐기물을 운반 · 보관 또는 처리하는 자는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운반 · 보관 또는 처리하여야 함
  - · 누구든지 수입폐기물을 수입할 당시의 성상 그대로 수출하여서는 아니됨
- 폐기물수입자는 장부를 비치하고 폐기물처리상황 등을 기록, 3년간 보관하여야 함
- 처리기준 및 방법에 위반하여 운반 · 보관 또는 처리한 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폐기물전자인계서를 제때에 작성 · 인계 또는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폐기물의 국가가 이동에 관한 법률'에는 유해폐기물의 수출 · 입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외 폐기물의 경우 수출 · 입에 대한 통제규정이 없어, 수입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 및 국내 발생폐기물 재활용 저해 우려 등 각종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관련 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 피규제자는 폐기물을 수출 · 입하는 자(약1,300개소)로 한정적이며, 수출 · 입폐기물에 대하여도 국내 제도를 동일하게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대로 의결

○ 폐기물재활용(변경)신고

- 재활용시설의 폐쇄 또는 재활용신고대상 폐기물의 재활용 금지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재활용신고를 할 수 없음
- 재활용신고자는 신고한 재활용용도 및 방법을 준수하여 재활용하는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함
- 시 · 도지사는 재활용신고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활용시설의 폐쇄, 또는 재활용신고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금지를 명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안 제44조의2 제6항)
  -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 · 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을 지키지 아니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키거나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경우

·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재활용신고자의 결격사유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규정은 타법의 사례, 재활용신고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다만, 재활용신고대상 폐기물의 재활용금지처분은 특정한 폐기물의 사용금지로 폐기물재활용활성화 측면, 생산공정 등을 고려할 때 영업정지처분과 같이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개선권고하며, '재활용 금지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1년 이내 어떠한 폐기물도 재활용신고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규제의 적정성 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삭제할 것을 개선권고함

○ 과태료 부과
–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등이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나 폐기물의 처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위반사항에 대하여 경제적 제재조치를 부과함으로써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법 이행력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대로 의결

(23) 환경 · 교통 · 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전부개정안 (신설2, 강화3)

■심사내용

○ 환경영향평가항목 · 범위 등 결정(스코핑) 절차의 의무화
– 환경영향평가 실시 전에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계획서를 작성,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계획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 항목 · 범위 등을 결정
· 위원회는 사업승인기관에 설치하되, 사업자가 승인기관을 경유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결정
·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계획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 또는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 사업자는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사업에 대하여는 간이화된 절차에 의한 환경영향평가(간이평가절차) 대상사업 여부를 결정하여 주도록 요청할 수 있음

- 승인기관장등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계획서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확정 전에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

☞ 스코핑제도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그 실효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 현행 임의제로 도입되어 있는 만큼 시범사업 등을 통하여 필요성을 확산시킨 후 의무제 도입 검토 필요. 스코핑을 의무화하더라도 이후 협의절차가 기존방식으로 운영될 경우(불필요한 항목 보완요구 등) 절차적 부담만 증가하고 효과 미흡 우려. 위원회에서 항목 · 범위를 결정하더라도 예측치 못한 항목 · 분야가 발생할 경우 오히려 스코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음. 따라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 자료를 보완하여 재심사토록 결정

○ 의견수렴절차 재실시

- 주민 등의 의견수렴 후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절차완료 전에 사업계획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의견수렴내용에 따라 평가서의 협의를 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다시 하도록 함

☞ 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후 사업계획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다시 수렴함으로써 향후 주민, 이해관계자간의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는 등 필요성이 인정되며, 현행 평가서 재협의 실시 건수도 연간 8~9건에 불과 하는 등 규제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

○ 자연생태환경분야 조사자 등록 및 자격기준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자연생태환경분야 조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
- 자연생태환경분야 조사업무를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교육, 자격기준 등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
- 자연생태환경조사자의 수탁받은 조사업무 일괄 하도급 금지
- 자연생태환경조사자가 허위 등록시 등록 취소
- 과태료 부과
  · 무등록자에게 생태조사위탁시나 등록증 타인대여 및 일괄 하도급시 1,000만원이하

☞ 평가서 부실작성방지 효과는 불분명하면서 평가관련업무의 등록요건이 신설되고,

새로운 진입제한이 발생하는 등 과다한 규제에 해당되므로 환경부에서 필요성에 대한 자료를 보완하여 재심사토록 결정

○ 보고 및 검사
- 환경영향평가대행자에 대한 보고 · 검사 근거규정 마련
  · 환경부장관은 이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규정에 따라 등록한 평가대행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와 시설 ·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
- 출입 ·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표시 증표 소지 및 제시

☞ 출입 · 검사시 검사자의 증표제시의무는 규정하고 있으나, 사전통고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법에 사전통고규정을 추가하여 사업장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와'의 부분을 삭제토록 개선권고

○ 과태료 부과
- 협의내용 미이행에 대한 이행조치요청을 다시 미이행한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1천만원 → 2천만원 이하) 조정
- 변경협의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하고 사전공사를 한 경우 당초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2천만원이하 과태료로 변경하는 등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조정
- 법상 의무가 부여되어 있으나 처벌규정이 없는 협의내용관리책임자의 준수사항 미이행, 평가대행실적 미보고 등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규정을 신설

☞ 협의내용미이행에 대한 조치요청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상향조정은 행정명령을 2차에 걸쳐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벌이고,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대규모 사업인 점을 감안할 때 행정명령 미이행에 따른 경제적 이득을 상쇄하여 이행력을 높일 필요성이 인정됨. 협의내용관리책임자의 준수사항 미이행, 평가대행실적 미보고 등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법상에 의무가 부여된 사항에 대한 과태료(500만원 이하)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규제로 인한 비용도 미미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대로 의결

(24)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 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강화1)

■심사내용

○ 운행차용 차대동력계를 소형 및 대형 운행차용으로 분리하여 형식승인 등에 필요한 기준 등 규정
- 대형운행차용 차대동력계 정도검사 점검표를 신설
- 소형 및 대형자동차용 차대동력계의 구조 · 성능에 관한 기준 및 성능시험방법 규정

☞ 2007년 7월부터 대형운행차(차량 총중량 5.5톤 초과 자동차)부하검사가 새로이 실시됨에 따라 차대동력계의 형식승인 등을 위한 검사기준 및 시험방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피규제대상은 805개사(형식승인 5개사, 정도검사 800개사)로 한정적이며, 규제비용도 미미하며 사전에 연구용역을 거쳐 관계기관간 협의된 점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대로 의결

(25)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신설1, 강화5)

■심사내용

○ 폐기물분석기관 등의 관리
- 폐기물분석기관, 다이옥신 측정기관 및 매립시설의 침출수 측정기관의 인정절차, 관리를 위한 평가방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

☞ 기존 국립환경과학원 예규로서 관리하던 업무를 행정의 투명성 등을 고려하여 상위법령화하여 고시토록 하는 것으로, 피규제자는 폐기물분석기관 등 총209개소로 규제비용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며, 입법예고시 의견제시가 없었던 점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대로 의결

○ 정제연료유 등의 품질기준 및 폐오일필터의 적정처리
- 폴리클로리네이티드 비페닐(PCBs)함유 폐기물 보관기관 연장 승인 신청
  · PCBs 함유폐기물을 보관하고자 하는 배출자 및 처리업자는 시 · 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폐기물 보관기간 연장승인신청서를 작성 ·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 1년 단위로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현재 PCBs 적정처리기술이 국내에는 없는 실정으로, 선진국 처리방법 도입 또는 국내기술개발 상용화에 일정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한시적(2010년까지)으로 신청을 받아 장기보관을 허용하는 것으로, 피규제자는 PCBs 함유폐기물보관업체(약 26,000개소)로, 규제비용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대로 의결

- 정제연료유의 인화점 신설
  · 인화점은 40℃이상(열분해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30℃이상)
- 재생연료유의 품질기준(열량 등) 등 설정
- 폐오일필터는 다음중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
  · 소각처리
  · 폐오일필터를 파쇄처리한 후 폐유 · 고철은 별도로 회수 선별하여 재활용하고, 여과지, 고무 등재활용이 어려운 파쇄물은 소각 또는 매립
  · 정제(증류)시설에서 폐유와 고철을 분리 · 회수하여 각각 재활용

※ 기존에 폐오일필터를 대상폐기물로 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 2007년 12월 31일까지 개정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시설 · 장비 · 기술능력을 각각 갖추어야 함

☞ 정제연료유, 재생연료유 및 폐오일필터의 적정 재활용을 촉진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관리기준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다만, 폐오일필터의 경우에는 현재 대다수가 압축처리업체로서 개정안의 처리방식으로는 처리가 불가능하고 시설을 새로 설치하여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고, 또한, 이들 업체가 대다수이고, 그 처리량도 많은 상황에서 처리방식과 시설기준의 변경에는 충분한 시간과 자금지원 등을 통한 시설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신규허가시는 개정안의 시설기준 등에 따라 설치토록 하되, 기존압축방식을 사용하던 폐오일필터 중간처리업체의 경우에는 시설 등의 설치 유예기간을 당초 2007년12월31일에서 2008년12월31일까지 1년 연장하도록 개선권고함. 아울러, 정책자금 지원 등의 방안을 강구토록 부대권고 함

○ 폐기물재활용시설기준 등 설정
- 폐오일필터를 재활용하는 경우
  ·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 규정

- 폐유 등을 재생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
  ·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 규정

☞ 폐오일필터를 재활용하는 경우는 위의 심사결과를 참조. 재생연료유 중간처리업의 경우 피규제자수는 12개소로 기존 재생연료유제조업체는 개정안의 시설 · 장비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비용소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대로 의결함.

○ 폐기물재활용자의 준수사항
- 재생연료유 및 정제유기용제 등으로 재활용하는 자에게 공급계획서 제출의무 부여
  ·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 폐유 등을 재생연료유로 재활용하는 자 및 폐오일필터를 파쇄 또는 증류 처리하여 고철로 재활용 하는 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공급계획 제출 의무 부여
- 정제연료유 및 재생연료유 제조업체 자가측정 의무화
  · 정제연료유 및 재생연료유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4]에서 정한 기준항목을 분기 1회 이상 측정하고 그 결과를 3년간 기록 · 보관

☞ 공급계획서 제출의무는 재생연료유, 정제유기용제 등의 불법적인 유통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며, 정제연료유 등에 대하여 자가측정토록 하는 것은 불량 재활용품의 유통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피규제자수는 67개업체(정제연료유 제조업체: 65개 업체, 재생연료유 제조업체: 12개 업체)로 한정적이고, 규제비용도 약 20백만원 정도로 미미한 점을 고려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대로 의결

○ 폐기물재활용(변경)범위 확대 등
-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첨부서류 변경
  · 폐기물을 성토 · 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경우 공사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

☞ 폐기물을 발주자 또는 토지소유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시공자가 임의로 성토재 등으로 사용하여 발생되는 민원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피규제자는 약 44개소로 규제비용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대로 의결

- 폐기물의 재활용용도 및 방법 신설

· 건축 · 토목공사 등의 성토재 · 보조기층재 등으로 사용한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이어야 함
· 폐목재(페인트 · 기름 · 방부재 등이 묻어 있는 폐목재는 제외한다) 또는 벌채 · 산지개간 · 건설공사 등으로 발생한 임목폐기물로 숯 · 활성탄 · 톱밥 · 열탄 등을 제조 또는 나무제품의 원료로 가공하거나 파쇄하여 제초용 · 축사용 · 퇴비원료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 다른 사업장의 폐주물사를 주물사로 다시 사용하거나, 금속용융로에 첨가제, 부원료 등으로 투입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일정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물체에 한한다)을 수리 · 수선하여 같은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경우(단, 수리 · 수선하는 과정에서 지정폐기물 및 특정대기 · 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비용을 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 광재 · 분진 등을 건축 · 토목공사의 성토재 · 보조기층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토양 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폐기물 재활용신고대상을 확대하여 폐기물 재활용을 촉진코자 하는 것으로, 피규제자가 한정적이며, 규제비용도 미미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가능하나,

다만,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수리 · 수선하는 경우 비용을 받는 경우를 재활용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어 아래와 같은 사유로 개선권고함
① 타 폐기물(폐자동차, 폐가전제품 등)을 수리 · 수선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도 비용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형평성에 맞지 않음
② 폐기물의 재활용은 경제성, 기술성, 수거체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결정되며, 비용징수여부는 시장기능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며 ③ 비용징수에 대한 환경부의 기존 질의회신(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 사간의 계약에 의한 비용의 문제는 폐기물관리법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이 없음)등을 고려할 때 과도한 규제이므로 삭제함이 바람직함

○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지정폐기물 수집 · 운반업의 경우 주차장시설이 없을 때 행정처분기준 강화

구 분	1차	2차	3차	4차
현 행	경고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개정안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6월	허가취소

☞ 지정폐기물수집 · 운반업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보완하여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시 의견제출이 없었던 점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대로 의결함

(26) 수도시설 운영 · 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정안 (내용심사1)

■심사내용

○ 수도시설 운영 · 관리업무 위탁을 위한 세부사항 규정
- 위탁 필요성 · 타당성 검토
- 위탁계획서 작성, 주민의견수렴 및 위탁계약 체결
- 위탁성과평가
- 위기관리 및 수탁자 지도 · 감독
- 위탁계약 해지와 중도해지 및 종료시 대응
- 수도시설 운영대가 산정

☞ 수도업무의 공공성 및 수돗물 공급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파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절차와 성과평가를 통한 책임성 강화 등을 마련한 것으로 피규제자는 수도시설 수탁기관 약 10개기관(한국수자원공사 등)이며, 규제비용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규정을 제정하였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대로 의결함

(27)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제정안 (신설3)

■심사내용

○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조사내용 및 방법 등 규정

- 국민신탁법인은 상위법령에 따라 보전가치가 있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의 조사방법 등에 대해 규정
-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의 목록작성 및 공고

☞ 국민신탁법인의 목적이 보전가치가 있는 자연환경자산 등의 매입·보전이므로 자산의 체계적인 발굴을 위해 조사를 선행하는 것이며, 국민들의 기부·증여 등을 통해 운영되므로 그 조사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기 위한 것임. 피규제자는 자연환경국민신탁과 문화유산국민신탁 2개 법인으로 한정적이며, 규제비용도 미미하며, 관계기관 협의시에도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대로 의결

○ 권리제한에 관한 사항
- 재산보전에 필요한 조치와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를 규정

☞ 국민신탁법인의 보전재산은 국민들의 기부 등을 통해 확보된 공공의 재산이므로 매각 등을 금지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보전재산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피규제자는 자연환경국민신탁과 문화유산국민신탁 2개 법인으로 한정적이며, 규제비용도 미미하며, 관계기관 협의시에도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대로 의결

○ 권리변동에 따른 통지의무
- 상위법률에서 국민신탁법인과 보전협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당해 재산의 권리관계가 변동되었거나 변동될 것으로 예상될 때 국민신탁법인에 즉시 통지하도록 규정하였는데, 권리변동의 통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국민신탁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함

☞ 협약 체결 당사자가 당해재산의 권리관계 변동시 그 사실을 통지하여 국민신탁법인의 활동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도록 하고, 당해재산에 대한 매각계획이 있을 때 국민신탁법인이 매입을 우선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피규제자는 국민신탁법인과 보전협약을 체결한 당사자로 그 수는 추정이 곤란하나, 규제에 따른 소요비용이 없고 관계기관과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대로 의결

(28) 환경 · 교통 ·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전부 개정안 (신설2, 강화3)

■심사내용

○ 환경영향평가항목 · 범위등 결정(스코핑) 절차의 의무화
- 환경영향평가 실시 전에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계획서를 작성,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계획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 항목 · 범위 등을 결정
  · 위원회는 사업승인기관에 설치하되, 사업자가 승인기관을 경유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결정
  ·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계획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 또는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 사업자는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사업에 대하여는 간이화된 절차에 의한 환경영향평가(간이평가절차) 대상사업 여부를 결정하여 주도록 요청할 수 있음
- 승인기관장등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계획서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확정전에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

☞ 스코핑제도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그 효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만큼 3년간 한시적으로 시범시행(부칙에 유효기간 3년 명시)하되, 환경부에서 시한만료 6개월 이전에 그 결과를 평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고, 지속여부를 결정토록 개선권고함

○ 의견수렴절차 재실시
- 주민 등의 의견수렴 후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절차완료 전에 사업계획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의견수렴내용에 따라 평가서의 협의를 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다시 하도록 함

☞ 23)번 분과위원회 심사결과와 동일

○ 자연생태환경분야 조사자 등록 및 자격기준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자연생태환경분야 조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
- 자연생태환경분야 조사업무를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교육, 자격기준 등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

- 자연생태환경조사자의 수탁받은 조사업무 일괄 하도급 금지
- 자연생태환경조사자가 허위 등록시 등록 취소
- 과태료 부과
  · 무등록자에게 생태조사위탁시나 등록증 타인대여 및 일괄 하도급시 1,000만원 이하

☞ 현재도 평가서 부실작성시 평가서작성 대행자에 대한 제재조치가 있으며, 조사자 등록으로 인한 평가서 질적 제고 효과가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하여 철회권고함

○ 보고 및 검사
- 환경영향평가대행자에 대한 보고 · 검사 근거규정 마련
  · 환경부장관은 이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규정에 따라 등록한 평가대행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와 시설 ·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
- 출입 ·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표시 증표 소지 및 제시

☞ 23)번 분과위원회 심사결과와 동일

○ 과태료 부과
- 협의내용 미이행에 대한 이행조치요청을 다시 미이행한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1천만원 → 2천만원 이하) 조정
- 변경협의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하고 사전공사를 한 경우 당초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2천만원이하 과태료로 변경하는 등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조정
- 법상 의무가 부여되어 있으나 처벌규정이 없는 협의내용관리책임자의 준수사항 미이행, 평가대행실적 미보고 등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규정을 신설

☞ 23)번 분과위원회 심사결과와 동일

(2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강화1)

■심사내용

○ 폐기물부담금 부과요율 현실화 및 부과대상 전환 등

-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전환
  · 6개 플라스틱 제품군→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하여 제조 또는 수입되는 제품 (31개업종 등)
-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외제품 추가
  · 연간 플라스틱사용량이 10톤이하인 사업자가 제조한 제품
  · 수입한 제품속에 포함된 플라스틱량이 100kg이하인 제품
  · 다른 법령에서 제품의 소유자에게 처리책무를 명시한 제품
- 폐기물부담금 감면기준 확대
  · 면제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자는 면제기준중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면제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
- 폐기물부담금 요율인상
  · 6개품목에 대하여 4~20배 인상
- 폐기물부담금 산정방법 변경
  · 폐기물 부담금 산정시 연도별부담금 산정지수를 곱함
  · 환경부장관과 폐기물회수 · 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경우 부담금 면제
-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부담금 인상
  · 년도별 인상범위: 2008~2009년 20%, 2010~2011년 60%, 2012년이후 100%

☞ - 부과대상관련

'05.11 규제개혁차관회의(각종 부담금 규제개선방안)의 결정사항(중간원료로 사용하는 제품을 제외)을 반영하여 부과대상을 최종제품으로 전환하였으며, 부과대상이 되는 업종과 제품 등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므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함. 다만, 1년간 모니터링후 부과대상을 보완하는 방안을 부대 개선권고함

- 부과요율 관련

부담금 수준이 재활용기준비용(327원/kg)보다 매우 낮아(평균10% 수준) EPR 사업자와의 부담의 형평성 등 요율인상의 필요성이 인정됨. 관계부처, 전문가 및 업계 등이 참석한 폐기물부담금 TF에서 3차례 회의를 거쳐 부담금 요율을 조정하였으며, 이를 반영하여 제시하였으므로 적정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의결

-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관련
  타 유사법령의 경우에도 연도별 부담금 산정시 물가상승율 등을 고려,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가격변동지수를 곱하도록 하고 있어 원안대로 의결

- 자발적 협약업체 부담금 면제 관련
  자발적협약의 구체적인 이행절차 등에 대하여 기존 EPR의무대상자와 같이 규정하여 규제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향후 EPR제도로의 전환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향후 관련업계와 협의하여 추진할 예정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

제8절 교육 및 문화분야

1. 교육인적자원부

집필자 : 윤동식 사무관(Tel. 2100-2492, dsyoon@opc.go.kr)

가. 2006년도 신설 · 강화규제심사 개요

❍ 2006년도에는 사립학교법시행령 개정안, 학교법인임시이사선임방법 및 운영등에관한규정 제정안, 학교법인임원의인적사항공개등에관한고시 제정안,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관한 규칙 개정안, 동북아역사재단설립 · 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안,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개정안, 초 · 중등교육법 개정안, 특수교육진흥법 전부개정안, 학교급식법시행령 ·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등 9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29건, 강화 3건, 내용심사 14건 등 총 46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46건 중 11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하고, 35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교육인적자원부의 2006년도 총 신설규제는 29건임

<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사립학교법시행령 개정안	제286차 행정사회분과 (2006.5.12) 제165차 본회의 (2006.5.19)	원안의결 9	신설 8 강화 1 *중요 3 비중요 6
학교법인임시이사선임방법및운영등에관한규정 제정안	제287차 행정사회분과 (2006.5.19)	원안의결 4	신설 4 *중요 1 비중요 3
학교법인임원의인적사항공개등에관한고시 제정안	제287차 행정사회분과 (2006.5.1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개정안	제289차 행정사회분과 (2006.6.9)	원안의결 1	신설 1 *중요 1
동북아역사재단설립 · 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안	제295차 행정사회분과 (2006.7.20)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비중요 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개정안	제298차 행정사회분과 (2006.8.31)	원안의결 4	내용심사 4 *비중요 4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제303차 행정사회분과 (2006.9.21)	개선권고 1	내용심사1 *중요 1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제308차 행정사회분과 (2006.11.9)	개선권고 2	신설 1 내용심사1 *중요 2
특수교육진흥법 전부개정안	제309차 행정사회분과 (2006.11.16)	원안의결 7 개선권고 3	신설 6 내용심사4 *중요 3 비중요 7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제310차 행정사회분과 (2006.11.30) 제175차 본회의 (2006.12.12)	개선권고 1	신설 1 *중요 1
학교급식법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제312차 행정사회분과 (2006.12.19)	원안의결 8 개선권고 4	신설 7 강화 2 내용심사3 *중요 8 비중요 4
계	–	원안의결 35 개선권고 11	신설 29 강화 3 내용심사 14 *중요 20 비중요 26

나. 2006년도 신설·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사립학교법시행령 개정안(신설 8, 강화 1)

■심사내용

○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거 설립등기를 한 학교법인이 관할청에 재산출연결과 보고시 재산목록, 출연증서, 인감증명, 등기부등본, 금융기관의 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규정 (신설)

☞ 출연된 재산이 학교법인에게 귀속되었음을 관할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서 법인재산을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이므로 원안의결

○ 법 제10조의2제2항에 의거 학교법인 설립이후 정관에 기재할 수 있는 출연재산금액 기준설정(신설)

☞ 출연금액의 하한선(수익용기본재산기준액의 10% 이상)만 시행령에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학교의 실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관에 위임한 사항으로 원안의결

○ 개방이사 추천 및 선임(신설)
- 개방이사의 요건을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로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자격요건, 추천방법 등은 정관에 위임
- 학교법인의 추천요청 기일은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이내(재직이사는 임기 만료전 3월)
- 학교법인이 기일내에 추천요청하지 아니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에서 그 사실을 안 날부터 7일 이내에 추천절차를 개시
- 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2이상의 학교를 설치 ·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각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 대표들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추천가능
- 협의체 구성인원 및 방법 등은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에 위임

☞ 모법에서 위임받은 개방이사의 추천 · 선임방법을 시행령에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개방이사제 도입문제는 법률에서 기결정된 사항이란 점, 시행령에는 개방이사의 기본요건을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로 최소한도로만 규정하고 보다 구체적인 자격요건과 추천방법에 대해서는 사학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여 학교법인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 점에서 그 타당성이 있고
학교법인의 추천요청기일(15일 이내) 및 방법 등은 세부적 · 기술적 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 이사회회의록 비공개 범위, 공개기간 및 절차 등(신설)

☞ 법에서 위임한 이사회 회의록의 비공개범위를 정하는 것으로서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을 정하고 있는 점, 또한 법에서 위임한 회의록공개에 대한 기간 ·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절차를 구체화한 것이란 점에서 타당한 내용으로 원안의결

○ 시정요구없는 임원취임 승인취소 세부기준(신설)

- 법 제20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청이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규정하고 임원취임 승인취소시 당사자의 청문실시

☞ 관할청이 시정요구 없이도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요건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문제발생시 적기조치를 통한 확산 예방과 불법 · 비리의 방지를 위한다는 법개정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는 점, 법률에 기 규정한 요건을 시행령에서 좀 더 구체화시킨 것이라는 점, 회계부정, 횡령, 금품수수 등 불법비리를 저지른 임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한다는 점, 취소시에도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여 당사자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처분의 공정성을 확보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타당한 내용으로 원안의결

○ 대학평의원회 구성 및 기능(신설)

- 대학에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은 정관으로 정하되 교원 · 직원 및 학생을 포함하여야 하고, 동문 및 지역인사 등 포함 가능
- 구성원 중 어느 한 그룹의 평의원수가 평의원정수의 1/2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 평의원 정수는 하한선(11인 이상)만 시행령에 규정하고, 학교 규모에 따라 이를 자율적으로 정관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
- 평의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을 정하고, 기타 평의원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율적으로 정관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

☞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해 대학자치기구로서의 대학평의원회를 두도록 한 법 개정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대학평의원회의 기능 · 조직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사항만 시행령에서 정하고 나머지는 학교실정에 따라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점, 특정그룹이 1/2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 것은 대표성의 공정한 보장과 민주적인 평의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며 평의원 정수의 하한선을 11인 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소규모인 대학원대학을 고려한 것 등으로 원안의결

○ 임시이사 선임 학교법인의 교비회계 전출 · 대여(신설)

☞ 법률상(제29조제6항)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비회계는 타 회계로 전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인정하는 것으로 법개정의 취지를 감안할 때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에 대해 최소한의 이사회 운영경비

및 인건비만을 인정하는 점, 또한 편법 전출 · 대여를 방지하기 위해 이사회의 심의 · 의결절차 등을 거치도록 하는 점 등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 예산 · 결산 공시 및 감사증명서 제출확대(강화)
- 예산은 매회계년도 개시 전 5일까지, 결산은 매회계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당해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 결산보고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외부감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대학을 현행 입학정원 2,000명 이상에서 1,000명 이상으로 확대(2,000명 이상의 전문대학은 제출대상에 포함)
- 관할청은 회계법령 등을 위반한 모든 학교법인에 대해 감사증명서 제출요구 가능

☞ 사학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 사립고교 이하 교원 공개전형 실시(신설)
- 법 제53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전형의 자격요건과 공개전형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교원의 임면권자가 공개전형을 실시하도록 하고, 당해학교 소재지 교육감에게 전형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공개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국공립학교의 교원과 동일하게 하고, 지원 마감일 30일전까지 채용공고를 하도록 함
- 공개전형의 방법을 정하고 지원자가 전형 결과 등을 공개요구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따르도록 함

☞ 교원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를 위해 공개전형 응시자격을 국공립학교 교원 응시자격과 동일하게 하고, 전형방법 및 절차 등 필요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여 원안의결

(2) 학교법인임시이사선임방법및운영등에관한규정 제정안(신설 4)

■심사내용

○ 임시이사 선임방법(신설)
- 임시이사 선임시 관할청 지명자는 선임임시이사수의 1/3 초과 불가, 학내구성원 추천자 1/3이상 되도록 규정

☞ 임시이사 선임시 학내구성원 추천자를 1/3이상 선임토록 규정하여 학원의 조기 안정화를 도모하고 임시이사 선임방법의 명확화에 따른 이해관계인간의 분쟁 사전예방이 가능한 점에서 타당한 내용으로 원안의결, 다만 시민단체 등 각계의 추천을 받을 경우 편향적인 추천이 되지 않도록 부대권고

○ 신원조사(신설)
- 임시이사 선임 전, 선임자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하고 결격사유 해당여부 심사결과를 선임에 반영 의무화

☞ 사립학교법 제22조에서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학교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임시이사에게도 학교법인의 이사에게 요구되는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점, 임시이사 선임시 사전 검증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인사를 미리 선임에서 제외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타당한 내용으로 원안의결

○ 영리활동 금지(신설)
- 임시이사는 당해 학교법인과 관련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관여 불가

☞ 임시이사가 각종 이권에 개입하는 것을 미리 차단함으로써 이해관계인과의 사전 분쟁예방장치가 필요하고 특히 임시이사에게는 학교법인의 정상화 책무가 부여된 만큼 직무의 공공적 성격이 강하고 높은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타당한 내용으로 원안의결

○ 평가(신설)
- 관할청은 임시이사 선임법인의 운영실태 및 임시이사의 직무활동 점검을 위한 평가 실시(년 1회 이상)

☞ 임시이사 선임법인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임시이사의 책무성을 강화하여 학원의 조기 정상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내용으로 원안의결

(3) 학교법인임원의인적사항공개등에관한고시 제정안(신설 1)

■심사내용

○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신설)

☞ 사립학교법 제20조제2항에서 사립학교 임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임원의 성명, 연령,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 등 공개내용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타당한 내용으로 원안의결

(5) 동북아역사재단설립 · 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안(내용심사 1)

■심사내용

○ 지도 · 감독 및 과태료 부과(내용심사)
- 시정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위반내용 · 시정사항 및 시정기한 등을 서면에 명시하여 재단에 통지
- 과태료 부과 시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 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통지
- 과태료 부과 시 10일 이상 의견진술(구술 또는 서면) 기회 제공
-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과태료의 금액을 결정하고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령을 준용

☞ 법률 제21조제4항에 의거 재단에 시정을 명할 경우 구체적인 세부절차를 정하는 것이며, 법률 제26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시 부과 · 징수절차와 구체적인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타당한 내용이므로 원안의결

(6)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개정안(내용심사 4)

■심사내용

○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심사기준(내용심사)
-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심사기준에 영재교육기관의 교육영역 및 목적에 적합하고 교육내용을 이수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한 수급권자의 자녀,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자, 행정구역상 읍 · 면지역에 거주하는 자, 그 밖에 교육감이 인정하는 자로서 사회 · 경제적 이유로 재능 또는 잠재력이 충분히 발현되지 못했다고 인정되는 자를 추가

☞ 법 제5조제2항에 의한 저소득층 자녀, 사회적 취약 지역 거주 등 사회·경제적 이유로 잠재력이 충분히 발현되지 못한 영재 선발근거에 따라 법 제5조제3항에 의거 위임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 영재학교(학급) 교원의 임용기준(내용심사)

- 영재학교(학급) 교원의 임용기준의 예외조항으로 일정기간 동안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자격기준 규정(영재학교에서만 근무할 수 있으며, 타 기관에 파견·겸임 근무 불가)
  - · 박사학위 또는 해당 분야 경력 5년 이상의 석사학위 소지자로 영재교육을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자
  - · 학사학위 소지자로 해당 분야에 특수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영재교육을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자

☞ 법 제12조제1항에 초·중등교육법상의 교원 자격기준에도 불구하고 영재교육을 담당할 능력이 있는 자를 영재교육기관의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 제12조제2항에 의거 위임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의결

○ 영재교육특례자 선정심사기준(내용심사)

- 표준화된 지능검사·사고력검사·창의적 문제해결력 검사 또는 그 밖의 소정의 검사·면접·관찰의 방법에 의하여 특정교과 또는 특정분야에서 최상위 수준의 재능 또는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실기검사 등 소정의 검사 또는 관찰 등의 방법에 의하여 예술적·신체적 분야에서 최상위 수준의 재능 또는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선정심사에 관한 세부기준·방법 등은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함

☞ 법 제2조제8호에 영재교육대상자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분야에서 타고난 재능과 잠재력이 현저히 뛰어나 특별한 교육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를 영재교육특례자로 정의하고 법 제15조제2항제8호에 특례자 선정에 관하여 공정하고 전문성 있는 판별이 시행될 수 있도록 영재교육연구원에서 특례자의 판별 및 해당 특례자에 적합한 교육과정 수준에 관한 심사를 하도록 하였으며 법 제16조제5항에 의거 위임된 범위 내에서 특례자의 선정심사기준을 정하는 사항으로서 원안의결

○ 영재교육담당 교원연수기관 지정요건(내용심사)

- 지정요건 : 연수의 교육과정 · 교육내용의 체계성 및 연수 기능 수행 역량, 연수 관련 인력의 전문성, 연수시설 및 장비 등 연수환경 조성 현황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인가신청시 첨부서류(목적, 명칭, 위치, 연수에 소요되는 경비, 강사의 성명 · 생년월일 · 담당과목 · 전공분야, 연수원 규칙, 교지 · 교사 · 체육장과 실습시설 등에 관한 사항 및 도면 등)

☞ 법 제15조제3항에 영재교육연구원을 영재교육 담당교원을 위한 연수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법 제15조제4항에 의거 연수기관 지정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임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원안의결(단, 개정안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역량 · 전문성에 대한 수준이나 정도를 정할 필요가 있고, 개정안 제2항 및 제3항의 인가사항은 법 제15조에 의하면 지정사항인 점, 법 제15조제3항과 개정안 제42조간의 법체계 · 내용 · 형식 등에 대하여 법제처와 협의 필요)

(7) 초 · 중등교육법 개정안(내용심사 1)

■심사내용

○ 학업성취도 및 학교평가(내용심사)

- 재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 학교평가 등의 업무를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공동권한으로 변경('06.1.11, 행자부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이양확정)
- 학업성취도 평가의 대상 교과 및 주기와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토록 근거 마련

☞ 학업성취도 평가의 대상교과 및 주기, 평가결과의 공개 등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간의 이견이 있으나 금번 법개정에서는 학업성취도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기 위해 그 법적 근거를 두기 위한 것이란 점에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나,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공개의 범위 등' 위임사항을 구체화할 것을 개선권고

또한, 학업성취도 평가의 대상 교과 및 주기와 평가결과의 공개에 따른 사회적 파급효과와 부작용을 고려하여 충분한 의견수렴결과 등을 반영하여 시행령에

세부사항을 정할 것을 권고하며, 학업성취도 · 학교 평가 등의 업무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행사하게 됨에 따라 교육감이 교육적 부작용 및 사회적 파장을 초래할 수 있는 평가 등을 시행하지 않도록 평가대상과 방법, 공개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하는 규정 등 안전장치를 시행령에 반영할 것을 부대권고

(8) 초 · 중등교육법 개정안(신설 1, 내용심사 1)

■심사내용

○ 교원의 자격(내용심사)
- 무시험검정의 대상 및 시험검정의 응시자격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 교(원)장 자격인가 추천검정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감이 실시
- 교원자격증의 박탈과 재교부 및 정정은 교육감 또는 대학의 장이 시행
- 자격검정의 결격사유(자격증의 박탈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전문상담교사(1급 · 2급)의 자격기준 확대(정교사 · 보건교사 2급 이상 ⇒ 2급 이상의 교사〈사서 · 영양 · 유치원교사 포함〉)

☞ 교원자격검정령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교원의 무시험검정의 대상 및 시험검정의 응시자격 제한을 상향입법하여 법률로 규정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와 법체계상 그 필요성이 인정되나, 현행 제4항 후단(교원의 자격검정)은 안 제5항의 무시험검정의 대상과 시험검정의 응시자격제한 등의 사항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안 제5항으로 통합 · 구체화하여 교원의 자격검정에 필요한 사항의 위임범위를 규정할 것을 개선권고

또한, 교(원)장 자격인가 추천검정, 교원자격증의 박탈과 재교부 및 정정 등 규정들도 각각 검정령에서 상향입법하는 것으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나 교(원)장 '자격인가 추천검정'은 '자격인정 추천검정'으로 자구수정 권고

자격검정의 결격사유는 교원자격검정령 제5조에 규정된 사항을 상향입법하는 것으로 유사입법례에 비추어 타당

전문상담교사(1급 · 2급)의 자격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학교폭력과 학생범죄예방을 위한 교육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규제완화

○ 검정고시(신설)
- 고등학교 입학자격 및 졸업학력 검정고시 실시근거 마련
- 부정행위 · 서류위조를 한 자에 대한 제재(검정고시 정지 · 합격취소 및 2년간 응시제한)

☞ 상향입법을 통해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 인정
다만, 용어사용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과 같이 '고등학교 입학자격'을 '중학교 졸업학력' 등으로 하여 용어의 일관성을 기할 것을 개선권고
동 개정안에는 중 ·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외에 초등학교 학력검정고시에 대한 실시근거(초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96조)의 상향입법은 누락하고 있는 바, 법체계상 일관성을 위하여 동 조항도 상향입법할 것을 개선권고

또한 부정행위 등에 제재조치로서 2년간의 응시제한기간과 관련해서는 타입법례와의 형평성(대학수능시험의 경우 1년 정지), 2년의 제한이 과도한 규제수준이라고 지적한 청렴위의 부패영향평가 의견, 1년 응시제한으로 개선권고한 자체규제심사위의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응시제한기간을 1년으로 단축할 것을 개선권고
아울러, 자의적 판단소지를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형태와 유형에 따른 제재수준과 절차 등을 고등교육법 등 타입법례를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정할 것을 개선권고

(9) 특수교육진흥법 전부개정안(신설 6, 내용심사 4)

■심사내용

○ 특수교육지원대상자 차별금지(신설)
- 장애를 이유로 취학(입학 · 재입학 · 전학 · 편입학) 거부 등 금지
-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안전 등)가 없는 한 학교배치 거부 금지

☞ 장애를 이유로 한 취학 거부 등 차별 금지를 규정한 기존조항을 입학 지원 및 합격자의 입학거부 뿐만 아니라, 재입학과 전학, 편입학의 경우에도 확대하려는 것으로서 장애학생의 기본권인 교육권과 통합교육 여건 보장을 위하여 취학 · 배치 결정을 거부하는 차별사례가 없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타당성이 있으므로 원안의결

○ 특수교육기관(사립) 위탁교육 취소(내용심사)

– 취소사유

·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3월 이상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 당해 특수교육기관의 장 또는 설립 · 경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당해 특수교육기관의 장 또는 설립 · 경영자가 이 법 또는 그 밖의 교육관계법령에 따른 관할청의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 장애학생의 교육을 사립특수교육기관에 위탁한 경우 그 취소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내용으로서 현행 시행령 제7조에 규정된 조항을 동일한 내용으로 상향입법하는 사항이므로 원안의결

○ 교원 교육(내용심사)

– 특수교육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정기교육, 특수교육지원대상자의 통합교육지원을 위한 각급학교 교원 정기교육 등 실시

– 교육 및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함

☞ 정기적인 교육 및 연수의 대상을 현재 특수학교교원에서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및 통합교육 담당 일반교원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장애학생을 담당하는 교원의 자질 향상과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기본적인 특수교육 제고를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 특수교육 실태조사(신설)

– 특수교육정책(특수교육지원대상자 배치계획, 특수교육교원 수급계획 등)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5년 주기(기준연도 2006년)로 실시

– 대학 장애학생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시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 실시

– 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장애학생의 고등교육 지원확대 · 강화를 위해 지난 '03년, '05년 정책적으로 실시했던 대학 장애학생 교육복지 지원실태 조사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자체심사결과 수정의결(교육부장관이 대학 장애학생의 복지실태에 대한 평가를 매 3년마다 하여야 한다⇒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된 사항을 반영하였고 이해관계자 등의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의결

○ 보호자 등의 의무(신설)

- 보호자 · 각급학교의 장은 장애 또는 장애가능성이 높은 영유아 · 아동 · 학생 발견시 교육감에게 지체없이 진단 · 평가 의뢰
- 특수교육지원대상자의 보호자는 유치원 과정과 고등학교 과정별로 각각 3년씩 의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취학시켜야 함
- 초 · 중등교육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장애를 이유로 한 취학의무의 유예나 면제는 1회에 한함(시 · 도위원회의 유예나 면제시 제외)

☞ 장애의 조기 발견과 영아기부터 조기 무상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특수교육지원대상자의 보호자 등에 대해 진단 · 평가 의뢰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일반인의 경우에도 의무교육부분에 대한 부모의 취학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에서 그 필요성 인정

다만, 동법안 개정으로 무상교육대상이었던 유치원 및 고등학교 특수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해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따라 '유치원부터 정상적인 '취학'으로 인정되게 되는 바 초 · 중등교육법 제14조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안 제14조제3항 중 '초 · 중등교육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는 삭제하고 동 개정안 규정으로 대체할 것을 개선권고(예 : '초 · 중등교육법 14조에도 불구하고' →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또한, 유치원부터 의무교육화되는 상황에서 취학의무의 유예를 1회로 제한하면 장애학생의 학습능력 등을 고려하여 부모가 취학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장애학생의 교육권보호라는 당초 입법취지와 달리 장애학생에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유예기간의 횟수를 늘릴 것을 개선권고(예 : 2회 또는 3회)

○ 특수교육지원대상자의 진단 · 평가 · 심사 · 선정의 기준(내용심사)

- 교육감은 장애(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정서 · 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의사소통장애, 학습장애, 건강장애, 발달장애, 중복장애, 기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 · 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지원대상자로 선정
- 특수교육지원대상자의 진단 · 평가 · 심사 · 선정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현행 기존등록된 규제이나 정서장애(자폐성 포함)를 정서 · 행동장애, 자폐성장애로 분류하고, 발달장애, 중복장애 등을 추가함(9→12분류)으로써 보다 세분화된 진단 · 평가에 의해 특수교육을 지원할 타당성이 있으므로 원안의결

○ 교육편의 등 지원의무(신설)

-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지원대상자의 특성과 교육적 욕구에 따라 필요한 교육보조인력 · 보조공학기기 · 학습보조기기 · 통학지원 등의 관련서비스를 제공
- 특수학교 기숙사에는 유자격 생활지도원 배치(배치기준 : 국립학교-교육부령, 공 · 사립학교-시 · 도교육규칙)
- 대학의 장은 재학 장애학생 중 편의지원 등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별도 선정 및 편의지원 전담자(부서) 배치
- 편의지원 내용(각종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물적 지원, 교육보조인력 배치 등의 인적 지원, 입 · 편입학 편의지원, 정보접근 지원,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 등)

☞ 장애학생의 실질적 학습권 보장을 위한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편의지원을 의무화할 경우 대학측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어 강행규정으로 규제하기보다는 대학평가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유도 · 권장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도록 규정할 것을 개선권고

○ 평생교육 실시협조 및 신고 등(신설)

- 각급학교장의 평생교육 협조의무, 장애인 평생교육 실시현황 보고(관할청) 및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폐쇄)시 신고의무(교육감)

☞ 장애인의 평생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나 학교장에게 무조건적으로 평생교육의 실시를 위해 학교시설 이용 등 적극적인 협조의무를 부과한

것은 과도한 규제로 판단되므로, 각급 학교장의 동의를 얻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권고(예 : 평생교육실시자는 각급학교의 장의 동의를 얻어 당해 학교의 시설을 평생교육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다)

○ 학생관련 자료제공의 제한(신설)
- 각급학교의 장은 학생생활기록, 건강검사자료, 선별검사, 진단 · 평가 · 심사 · 선정 등의 자료, 개별화교육계획 자료를 당해 학생 등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됨(예외 : 범죄수사, 학교감독기관의 업무처리 필요시 등 7개 조항 – 이 경우에도 사용목적 · 사용방법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필요조치)
- 자료제공 받은 자는 본래의 목적외 사용금지

☞ 학생생활기록 등 장애학생의 개인 사생활의 비밀보호를 위해 각급 학교장에게 학생의 동의없는 자료제공을 제한하려는 것으로서 타입법례와 비교해서 규제 수준이 과다하지 않고 국제적으로도 장애학생에 관한 자료 제한을 두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안의결
안 제38조에 자료의 대상(예 : 장애학생)을 명시하여 자료제공 제한을 하는 것으로 자구수정 부대권고

○ 특수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한 각종교육 실시의무(내용심사)
- 통합교육 : 일반학교의 장(교육계획 수립, 시설 · 설비 및 교재 · 교구 구비 등)
- 치료교육 등 : 특수교육기관의 장(담당교원배치, 교육과정 운영 등)
- 진로 및 직업교육 : 특수교육기관의 장(담당교원 배치, 시설 · 설비 구비, 관련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등)
- 개별화교육 : 각급학교의 장(교육계획 수립– 중학교과정 이상은 전환교육계획 포함, 교육운영위원회 설치 · 운영 등)

☞ 일반학교장에 대해 통합교육계획 수립 · 시행의무 등을 부과하고 특수교육기관의 장에게 치료교육 · 진로 및 직업교육 등 실시의무를 부과하며 각급학교의 장에게 개별화교육 및 전환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 장애학생의 보호자 교육과 상담 등에 대한 연간계획 수립 · 실시의무 등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처벌조항이 없는 선언적 규정이고 피규제자수 및 규제비용 등의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타당한 내용으로 원안의결

(10) 초 · 중등교육법 개정안(신설 1)

■심사내용

○ 교원능력개발 평가(신설)
- 초 · 중 · 고 교원에 대해 상급자 및 동료, 학생 또는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원 능력개발 평가제 실시
- 교육감 또는 학교장은 교원능력개발평가와 능력개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 · 실시
-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내용 · 방법 및 그 밖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교원 능력개발평가제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학교교육의 질 개선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능력개발을 위한다는 취지와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호주, 캐나다, 중국(상하이) 등 국제적으로도 여러 국가에서 교원평가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제도도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교원 능력개발 평가제를 일률적으로 전면 시행하는 것은 접근방법에 무리가 있고 교육현장의 저항 등이 예상되므로 단계적(설립주체별 · 규모별 등)으로 점차 확대 시행하는 내용을 법률에 정하고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할 것을 개선권고

또한, 평가대상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납득시킬 수 있도록 능력개발 지원 내용을 구체화할 것(예 : 연수 등 능력개발지원)과 교원 능력개발 평가와 능력개발 지원 계획 수립 실시 등의 평가 · 지원주체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포함할 것을 개선권고(예 : 교육감 또는 학교장 →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교육감 및 학교장)

(11) 학교급식법시행령 ·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신설 7, 강화 2, 내용심사 3)

■심사내용

○ 학교급식의 운영원칙(강화)
- 학교 급식은 수업일의 점심시간(근로청소년 특별 학급 및 산업체부설 학교에서는 석식시간)에 영양기준에 맞는 주식과 부식 등을 제공

- 학교급식으로 제공되는 식품은 학교의 급식시설에서 조리 제공(완제품인 경우 학생의 영양과 건강관리에 적합하며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제공)
- 학교급식에 관한 중요사항(운영방식, 급식대상, 급식횟수, 급식시간, 영양기준, 학교급식 운영계획, 예 · 결산, 식재료의 품질 및 완제품 사용 승인, 식재료 등의 조달방법 및 업체선정 기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경비 및 급식비의 결정, 급식비 지원대상자 선정. 급식활동에 관한 보호자의 참여와 지원 등)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점심시간 이외에 급식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시간 · 영양기준 · 급식회수 · 직원의 배치 및 경비부담방법 등을 따로 정하여 실시가능
-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별표3)
- 식단 작성시 고려하여야할 사항
  · 전통 식문화의 계승 · 발전 고려
  · 곡류 및 전분류, 채소류 및 과일류, 어육류 및 콩류, 우유 및 유제품 등 다양한 종류의 식품 사용
  · 염분 · 유지류 · 단순당류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과다하게 사용금지
  · 가급적 자연식품과 계절식품 사용
  · 다양한 조리방법 활용

☞ 학교급식법이 의원입법으로 전부개정('06.7.19)되어 하위법령에 위임된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 식단 작성시 고려사항, 학교급식의 중요사항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 결정 등 학교급식의 운영원칙을 보완 · 개선하는 내용으로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나, 초 · 중등교육법 제32조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중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은 국 ·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심의,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자문기능으로 되어 있으므로 시행규칙안 제2조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의 학교급식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를 심의 · 자문 기능으로 할 것을 개선권고

또한, 시행규칙안 제2조의 학교급식에 관한 중요사항 규정은 최소한 시행령으로 상향입법할 것과 시행규칙안 제2조제1항제8호 기타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규정은 모호하므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고(예 : 기타 학교장이 학교급식 운영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등) 시행규칙안 제6조제2항제5호에 식단작성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다양한 조리방법을 활용할 것'을 보다 구체화하도록 개선권고

시행령안 제2조제1항 중 '영양기준'을 법 제11조의 용어규정과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영양관리기준'으로 자구수정할 것을 부대권고

○ 학교급식의 개시보고 등(신설)
-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을 실시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급식시설·설비를 갖추고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급식개시전 10일까지 학교급식 개시보고(다만, 교내에 급식시설을 갖추지 못하여 외부에서 제조·가공한 식품을 운반하여 급식을 실시하는 경우 등에는 급식시설·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학교급식의 개시보고 가능)
- 학교급식의 개시보고 후 급식운영방식의 변경, 급식시설 대수선 또는 증·개축, 급식시설의 운영중단 또는 폐지 등 중요한 변경 후 2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보고
- 학교의 장은 매년말 급식현황을 다음연도 2월28일까지 교육감에게 보고

☞ 학교급식에 대한 체계적인·감독 등을 위하여 학교장으로 하여금 급식개시, 운영방식 또는 시설의 변경, 운영중단·폐지 등 급식관련 중요사항을 교육감에게 보고토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한 내용으로 원안의결

○ 학교급식 운영계획 수립 등(신설)
- 학교의 장은 매 학년도 시작 전까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급식 운영계획(급식계획, 영양·위생·식재료·작업·예산관리 및 식생활 지도 등 학교급식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 수립
- 학교의 장은 운영계획의 이행상황을 연 1회 이상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

☞ 학교장이 학교급식 운영계획(급식계획, 영양·위생·식재료·작업·예산관리 및 식생활 지도 등 포함)을 수립하고 그 이행상황을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연1회 이상)토록 하려는 것으로 학부모단체, 시·도교육청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결과 이견이 없고 학교급식의 투명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타당한 내용으로 원안의결

○ 시설·설비의 종류와 기준(강화)
- 학교급식시설의 종류 : 조리장, 식품보관실, 급식관리실, 편의시설, 식당
- 시설·설비의 기준 : 시행규칙안 별표1
- 시설의 부대시설 및 냉장·냉동시설, 조리 및 급식관련 설비·기계·기구에 대한 용량 등 세부기준 : 교육감이 정함

☞ 학교급식의 위생 · 안전사고를 사전예방하고 안전하게 조리 · 제공하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식품위생법상 일반 집단급식소 수준의 현행기준에서 식품위생법제32조의2(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System) 기준 중 일부를 적용하여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학교급식 현실을 감안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해관계인 · 관계기관 등의 이견이 없으며 관계 전문가회의 등을 통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한 점, 급식시설 · 설비기준의 강화로 인한 추가 규제비용(797억원)은 대부분 국비 등(교육부 174억원, 교육청 623억원)으로 지원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안의결

○ 영양교사의 직무(내용심사)
- 식단작성, 식재료의 선정 및 검수
- 위생 · 안전 · 작업관리 및 검식
- 식생활 지도, 정보 제공 및 영양상담
-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 · 감독
- 그 밖에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학교 집단급식(영양교사, 조리사, 조리원 등 10명 내외로 구성)의 원활한 지휘 · 통솔을 위한 중간관리자로서 영양교사의 직무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 · 감독, 식단작성, 식재료의 선정 · 검수 등 급식전반이 영양교사의 기존 직무로 규정되어 있었음을 고려시 영양교사가 신규로 추가된 안전 · 작업관리 및 그 밖의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 급식운영비 부담(내용심사)
- 급식 운영비(급식 시설 · 설비의 유지비, 종사자의 인건비, 연료비 등 기타 경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 · 경영자 부담 원칙
- 종사자의 인건비, 연료비 등 기타 경비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경비의 일부를 보호자가 부담가능(학교설립 · 경영자의 보호자 부담경감 노력의무)

☞ 학교급식운영비는 학교의 설립 · 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학교재정 현실을 감안하여 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보호자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는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나 시행령안 제2항의 전단은 법 제8조제2항과 중복되므로 삭제할 것을 개선권고

○ 업무위탁의 범위 등(내용심사)

- 법제15조제1항의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 공간적, 재정적, 법률적 사유 등으로 학교급식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
  · 학교의 이전 또는 통 · 폐합 등의 사유로 장기간 학교의 장이 직접 관리 · 운영함이 곤란한 경우
  · 급식인원 및 횟수의 과다 등 교육감이 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법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위탁 범위와 학교급식공급업자의 자격기준
  · 법제12조제1항의 조리, 운반, 배식 등 급식작업과정의 일부 업무위탁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 마목의 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한 자
  · 식단작성, 식재료 구매, 조리 등 급식작업과정 전부를 위탁하는 경우
- 학교 밖에서 제조 · 가공한 식품을 운반하여 급식하는 경우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1호의 식품제조 · 가공업(도시락류)의 신고를 한 자
- 학교의 급식시설을 운영위탁하는 경우 :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 마목의 위탁급식영업의 신고를 한 자
-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면허 소지자를 둘 것을 요청가능

☞ 법 제15조제1항에 의해 위탁급식의 불가피한 경우를 정하고 업무위탁의 범위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기준 등을 정한 것으로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위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을 방지하고 위탁업자의 자격을 식품위생법상 영업신고를 한 자로 제한할 필요성이 인정되나 시행령안 제11조제3항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면허 소지자를 둘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자의적 규정의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 또는 개선권고(예 : 학교의 장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할 경우 식품위생법 제69조의 집단급식소 신고에 필요한 면허소지자를 둔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 학교급식 운영평가 방법 및 기준(신설)

- 학교급식 운영평가 방법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교육감은 평가위원회를 구성 · 운영 또는 초 · 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에 포함실시
- 학교급식 운영평가기준 : 학교급식 위생 · 영양 · 경영 등 급식운영관리, 학생 식생활 지도 및 영양상담, 학교급식에 대한 수요자의 만족도, 급식예산의 편성 및 운용 등

☞ 법 제18조제2항의 위임에 의거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와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하위법령에 평가의 방법 · 기준 그 밖에 학교급식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필요성이 있으나 법 제18제2항에서는 학교급식 운영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학교급식 운영평가기준을 시행규칙안 제9조에 포괄 재위임하고 있어 시행령으로 상향입법할 것을 개선권고

○ 출입 · 검사 · 수거 등 대상시설(신설)
- 출입 · 검사 · 수거 등 대상 학교급식관련 시설 : 학교 안에 설치된 학교급식시설, 학교급식에 식재료 또는 제조 · 가공한 식품을 공급하는 업체
- 출입 · 검사 등(학교급식 운영상 필요한 경우는 수시 실시)
  ·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영양관리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의 확인 · 지도 : 연 1회 이상, 확인 · 지도시 병행실시 가능
  · 위생 · 안전관리기준 이행여부의 확인 · 지도 : 연 2회 이상
- 수거 · 검사의 종류 : 미생물 검사, 식재료의 원산지 · 품질 · 안전성 검사

☞ 법 제19조의 위임에 의거 학교급식으로 제공되는 식품의 질과 위생 및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학교급식시설 및 관련시설에 출입하여 장부의 열람 및 위생 · 안전점검, 검체채취, 검사의뢰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출입 · 검사 · 수거 기능 신설의 필요성이 있고 자체규제심사결과 학교와 교육청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하여 식재료 품질관리기준 이행여부 확인 등 급식운영 관련 점검은 위생점검시 함께 실시할 수 있도록 수정한 점, 학교 밖의 식재료공급업체 또는 제조 · 가공식품 공급업체에 대해서는 식약청, 시 · 군 · 구청, 등의 행정응원을 통한 합동점검으로 중복점검을 피할 수 있게 한 점과 규제비용 및 피규제자수의 측면, 유사입법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안의결

○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신설)
-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 시행규칙안 별표2

☞ 법 제10조제2항에 의거에 학교급식에서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농 · 수 · 축산물 · 가공식품 등에 대한 최저 품질관리기준을 시행규칙에 설정하는 것으로 그 타당성이 있으며 동 기준은 식재료 품질의 하위 15~30%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최저기준을 설정하는 것으로 추가 규제비용 측면과 학부모단체 또는 시 · 도 교육청 등 관계기관의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안의결

○ 학교급식의 위생 · 안전관리기준 등(신설)
- 학교급식의 위생 · 안전관리기준 : 시행규칙안 별표4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위생 · 안전관리기준의 준수 및 그 향상을 위한 별도의 지침 수립 가능

☞ 법 제12조제2항에 의거에 학교급식의 식중독사고 방지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위생 · 안전관리의 최저기준을 설정하는 내용으로 종전에는 식품위생법상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의거 관리되었으나, 식품위생법 제32조의2(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System) 기준 중 일부를 적용 · 강화하는 것으로 규제의 대상이 학교급식 종사자에 국한되고 이해관계인 · 관계기관 등의 의견수렴결과 이견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안의결

○ 학교급식 관련 준수사항(신설)
- 학교의 장 · 학교급식 관계교직원 · 학교급식 공급업자의 준수사항
  · 학교급식 운영계획의 수립 · 이행
  · 학교급식 예산 및 결산내역 공개
  · 학교급식관련 서류(급식인원 · 식단 · 영양 공급량 등이 기재된 학교급식일지, 식재료 검수일지 및 거래명세표)의 비치 및 보관(보존연한 3년) 등

☞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의거 학교급식이 수요자 중심으로 투명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학교급식운영계획의 수립 · 이행, 학교급식 예산 · 결산내역의 공개, 급식 관련 서류의 보관 등 학교급식 관계자의 준수사항을 시행규칙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학교급식 관계자의 책임성을 담보하고 학교급식을 투명하게 운영하게 함으로써 급식 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원안의결

2. 문화관광부

집필자 : 서나윤 사무관(Tel. 2100-2446, nayoon@opc.go.kr)

가. 2006년도 신설 · 강화규제심사 개요

❍ 2006년도에는 향교재산법,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광진흥법 시행령 등 21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9건, 강화 22건, 내용심사 16건 등 총 47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47건 중 12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하고, 35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문화관광부의 2006년도 총 신설규제는 9건임

< 문화관광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향교재산법 개정안	예비심사 (2006.3.29)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개정안	제285차 행정사회분과 (2006.4.21)	개선권고 1	강화 1 *중요1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시행령 제정안	제288차 행정사회분과 (2006.5.26)	원안의결 4	신설 4 *비중요4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제289차 행정사회분과 (2006.6.9)	원안의결 2	신설 2 *중요2
경륜 · 경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292차 행정사회분과 (서면심사)	원안의결 2	강화 1 내용심사 1 *비중요2
체육시설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295차 행정사회분과 (2006.7.20)	원안의결 5 개선권고 1	신설1, 강화3 내용심사 2 *중요1, 비중요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296차 행정사회분과 (2006.8.17)	원안의결 5 개선권고 1	강화4 내용심사2 *중요1, 비중요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제298차 행정사회분과 (2006.8.30) 제299차 행정사회분과 (2006.9.7) 제170차 본회의 (2006.9.7)	원안의결 4 개선권고 3	신설1, 강화4, 내용심사 2 *중요4, 비중요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302차 행정사회분과 (서면심사)	원안의결 3	강화 1 내용심사 2 *비중요3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제304차 행정사회분과 (2006.9.28)	원안의결 5 개선권고 1	강화 3 내용심사 3 *중요1, 비중요5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 개정안	제305차 행정사회분과 (2006.10.19)	개선권고 1	강화 1 *중요1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정안	제306차 행정사회분과 (2006.10.26)	원안의결 1 개선권고 3	내용심사 4 *중요3, 비중요1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제306차 행정사회분과 (2006.10.26)	원안의결 2	강화 2 *중요1, 비중요1
공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311차 행정사회분과 (2006.12.14)	원안의결 1 개선권고 1	강화 2 *중요1, 비중요1
계	–	원안의결 35 개선권고 12	신설 9 강화 22 내용심사 16 *중요16, 비중요31

나. 2006년도 신설 · 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향교재산법 개정안(신설 1)

■심사내용

○ 향교재산 처분의 허가 기준으로 향교의 진흥, 주민을 위한 편의제공 등 공익적 목적을 요구함(신설)

☞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하여 향교재산 처분의 허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정행위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안의결

(2) 전통사찰보존법 시행령 개정안(강화 1)

■심사내용

○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을 경내지 외곽경계로부터 500m이내에서 개별지정하고, 지정 구역내 도로 · 철도 건설, 건축물 건축, 공작물 신축,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단란주점 등 식품접객업, 노래연습장업 등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사전심의토록 함(강화)

☞ 민족 문화유산으로서 전통사찰을 보존하고 환경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로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범위를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한 단서조항은 삭제하고, 사전심의 대상사업에 대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신속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간구하도록 개선권고

(3)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시행령 제정안(신설 4)

■심사내용

○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지정요건, 지정된 지역센터의 사업추진 실적 및 추진계획 제출의무, 지정기간 만료 또는 지정취소된 지역센터의 재산 반납의무 등을 정함(신설)

☞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지정은 지역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 · 인력 등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정하고, 지정 이후 관리 · 감독을 위한 보고 등 통상적인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에 적용되는 수준의 사후통제장치로 판단되므로 원안의결

○ 평가의 대상이 되는 문화예술교육시설 및 문화예술교육단체, 세부평가기준 등을 정함(신설)

☞ 평가의 대상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 지원을 받은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로 한정하고 있으며, 세부 평가기준도 법에서 정한 평가기준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규정되어 그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신청시 구비서류, 지정받은 교육기관의 수료증 발급현황 제출 의무, 교육기관이 준수해야 할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등을 정함(신설)

☞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원활한 양성을 위한 지원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전문인력

양성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로서, 지정된 교육기관은 국고보조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수강생으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정 및 관련 지원 등에 대한 최소한의 사후통제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하는 국·공립 교육시설의 범위를 정하고, 동 교육시설에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을 1인 이상 배치토록 함(신설)

☞ 지역민과 밀접한 국·공립 문화기반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주5일 근무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수요 폭증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법에서 국·공립 교육시설에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공공재원으로 운영되는 전문인력을 배치할 국·공립 교육시설의 범위를 문화예술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공연장·박물관·미술관 등 문화기반시설로 한정하고 있으며, 의무 배치인력의 수도 1인으로 최소화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4)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신설 2)

■심사내용

○ 한국반도핑위원회를 법인으로 설립하여 1)도핑방지를 위한 교육, 홍보, 정보 수집 및 연구 2)도핑 검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3)도핑검사 결과의 관리 및 제재 4)도핑 방지를 위한 국내외 교류 및 협력 5)치료 목적을 위한 예외적 약물사용 허용 6)그 밖에 도핑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함(신설)

☞ 체계적인 도핑방지 활동 수행을 위해 반도핑위원회의 설립 근거와 역할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공정한 스포츠 환경 조성과 선수 건강 보호 및 스포츠 선진국으로서의 위상 제고를 위해 필요한 규제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토록 함(신설)

☞ 동 규제는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오던 것으로 입법체계상 합리성을 위해 법률에

규정하려는 것으로, 법제처의 「재량행위 투명화 추진방안」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며, 우수한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5) 경륜 · 경정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내용심사 1, 강화 1)

■심사내용

○ 경주사업자(국민체육진흥공단 등)는 발매수득금중 승자투표권발매금액의 1%를 시설환경개선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적립한도액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은 ① 관람 · 편의시설의 확충 ② 경주장 및 장외매장 시설 개 · 보수 ③ 노후화된 방송 · 전산장비의 교체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함(내용심사)

☞ 개정된 경륜 · 경정법('06.4.28)에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의 적립 및 사용용도를 규정하고 대통령령에 세부 규정토록 위임함에 따라 위임범위 내에서 정하는 사항이며, 피규제자로서의 경주사업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한 곳 뿐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비중요규제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 공정한 경륜 · 경정의 시행을 위하여 경주사업자가 조치해야 할 사항에 선수의 금지약물 복용금지 및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추가(강화)

☞ 규제대상인 경륜 · 경정선수는 현재 총 748명(경륜 612명, 경정 136명)에 불과하며, 기존에도 포괄규정을 통해 규제하던 내용을 명문 규정화한다는 점에서 비중요규제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6) 체육시설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 1, 강화 3, 내용심사 2)

■심사내용

○ 무도장업자 준수사항으로 공연이나 무대연주시설 설치금지, 업소내 주류 · 음식물 판매 · 제공금지(단, 자동판매기기에 의한 음료수 판매 제외) 등을 정하고, 무도학원업자는 업소내 주류 · 음식물 판매 · 제공금지(단, 자동판매기기에 의한 음료수 판매 제외)토록 함(신설)

☞ 그 동안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한해오던 사항으로, 무도장 및 무도학원이 「체육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법률」의 신고체육시설업으로 관리됨에 따라 기존의 시설 및 운영기준을 동법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기존의 규제와 동일한 내용을 법령을 달리하여 규정하는 것이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하여 원안의결

○ 등록체육시설업의 회원모집 시기를 현행 시설설치 공사 공정 30퍼센트에서 50퍼센트 이상 진행된 이후로 강화하고 회원모집계획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서류를 확대하고, 회원으로 입회하려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함(강화)

☞ 설치공정률 상향조정시, 건설투자 억제 및 사업자 경영악화의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행대로 설치공정률 30%에서 회원모집이 가능하도록 하되 무분별한 회원모집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공정률 50%이전까지는 기존과 같이 투자 범위내에서만 모집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제출서류 중 '당해 체육시설업의 개요 등 사업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자료'는 요구하는 내용이 불명확하며, 다른 제출자료로도 전반적인 사업내용의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삭제하도록 개선권고

○ 등록체육시설업의 설치기간 연장사유를 천재지변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 민사 또는 행정 소송이 제기되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체육시설업자가 제기한 소송은 제외), 행정기관이 개별 법령에 의하여 공사중지명령을 한 경우,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 등으로 정함(내용심사)

☞ 법률에서 위임한 등록체육시설 설치기간 연장사유와 절차를 정하는 것으로, 위임범위 및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 스키장업자, 자동차경주업자, 빙상장업자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요구할 경우 대여할 수 있도록 적정수량을 구비토록 함(강화)

☞ 현재 스키장, 자동차경주장, 빙상장 등 관련 업종은 보호장구를 구비하고, 유아의 착용을 의무화 하거나, 착용을 권장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조항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비중요규제로 판단되므로 원안의결

○ 체육시설업자가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휴 ·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바, 휴 · 폐업 신고서식을 정함(내용심사)

☞ 법률에서 위임한 휴 · 폐업 신고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휴업기간, 휴 · 폐업 사유 등을 기재한 휴 · 폐업신고서의 제출은 휴 · 폐업신고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절차로서 비중요규제로 판단되므로 원안의결

○ 시정명령을 받은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록취소, 영업폐쇄,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면서, 1차 위반시 경한 처분으로 시작하여 4차 위반시 중한 처분을 하도록 단계적으로 처분토록 함(강화)

☞ 법률에서 위임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행정처분의 명확성,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비중요규제로 판단되므로 원안의결

(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강화 4, 내용심사 2)

■심사내용

○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재해대처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이를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강화)

☞ 기제출한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이를 제출토록 하여 기존 법령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는 것으로 규제강화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미미한 변동사항에 대해서까지 변경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므로, 계획변경신고 해당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사소한 변경의 경우에는 신고의무에서 제외하도록 개선권고

○ 미등급분류 영화상영, 시설기준 위반 등에 대하여 3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규정을 정함(내용심사)

☞ 법률에서 위임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하는 것이며, 자체규제심사 개선권고 의견을 반영하는 등 위임범위 내에서 처분의 적정성을 갖추었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 기존의 영화업자 신고시 제출서류인 대표자 이력서, 정관 또는 규약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단체설립을 증명하는 서류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강화)

☞ 신고의 진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자 등록증 징구의 필요성 인정되며, 연간 영화업자 신고 건수는 약 370여건에 불과하여 피규제자수가 중요규제에 미치지 아니하며, 비용도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안의결

○ 공동제작영화를 한국영화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기존의 신고서류에 한국영화 인정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하여 한국영화 인정 신청토록 함(강화)

☞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한국영화 인정을 위한 기준을 법령에 규정하여 스크린쿼터, 제작비 지원 등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 영업자의 지위승계시 양수인의 인적사항, 지위승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내용심사)

☞ 신설된 법률규정인 영화업자 및 비디오물업자의 영업 승계 신고의 세부절차를 정한 것이며, 제출서류도 필수적인 서류로 한정되어 있고,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 종전에는 폐업시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반납토록 하였으나, 관할 관청에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신고서에 신고증, 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강화)

☞ 신설된 법률규정에서 정한 폐업의 세부절차를 규정한 것이며, 제출서류도 필수적인 서류로 한정되어 있고,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신설 1, 강화 4, 내용심사 2)

■심사내용

○ 사행성 게임물의 기준과 관련하여 아케이드게임은 1시간당 총투입금액 1만원 초과 금지, 1회게임 경품한도액 2만원 이하, 1시간당 경품한도액 2만원 이하, 신체접촉 없는 게임 자동진행 금지, 네트워크 연결 게임 금지 등으로 하고, 온라인 게임의 경우는 게임결과 현금보상 금지, 게임머니 직접 현금충전 금지, 이용자간 게임머니 이체 금지, 점수 · 게임머니 현금화 금지, 게임결과 현금 · 현물취득 금지, 점수 · 게임머니 유통으로 유무형 보상 금지 등을 정함(강화)

☞ 사행성 게임물로 인한 서민층 중독자, 신용불량자 · 개인파산자 등 가정 및 서민경제 파탄의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여 규제강화의 필요성 인정되고, 시간당 최대 투입액 1만원으로 조정하고, 경품한도액을 투입액 대비 산출액의 2배인 시간당 최대 2만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사행심리를 제한하기 위한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되나, 다만, 높은 배당률이 사행성을 조장하므로 배당률의 한도를 제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하여 '사행성 기준'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할 것을 개선권고

○ 게임제공업소 시설기준을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40%이내,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사이에 2m이상 고정칸막이 설치, 투명유리창 설치, 실내 전체 조명 40룩스 이상 등이 되도록 함(강화)

☞ 성인게임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게임중독으로 인한 이용자의 심리적 · 육체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게임업소의 시설을 투명하게 할 필요성 인정됨. 다만,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의 비율을 현행 60%→40%로 낮추는 것과 관련하여 게임제공업소가 부담해야 하는 시설추가 및 신설비용이 업소당 약 2천5백만원(전체 약 4천억원)으로 상당한 반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의 비율은 건전한 게임문화를 증진하는 데에는 기여할 수 있으나, 사행성 게임물의 근절과는 관련성이 없으며, 오히려 이로 인해 업장을 확장 · 리모델링해야 하는 영세업소가 몰락하고 대규모 게임제공업소의 통폐합으로 인한 게임제공업소의 독과점 등 또 다른 문제의 발생이 우려되므로 기존 게임제공업자에게는 게임기의 평균 교체주기를 고려하여 적정 유예기간을 산정할 것을 개선권고

○ 게임제공업소의 영업시간을 오전9시부터 오후12시까지로 제한(신설)

☞ 중독성이 강한 사행성 게임으로부터 서민을 보호하고 성인게임장에 대한 일반인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심야영업시간을 제한할 필요가 인정되며, 9시간의 심야영업제한으로 인한 업소 매출액 감소 등의 규제비용(약 2천5백억원)보다는 과도한 게임비 지출 방지, 게임중독자 감소, 근로유인, 범죄감소 등의 사회적 편익(약 1조6천억원)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 게임물의 수정으로 인해 등급의 변경을 요할 정도로 변경된 경우, 새로운 게임물로 간주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다시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는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 등급분류 신청 전에 게임물의 안전성 및 사행성에 관한 기술심의를 받게 할 수 있도록 함(강화)

☞ 재심의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절차의 명확화가 필요한 바, 기술적 보완 또는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당사자가 일정 '기한' 내에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면, 위원회는 신고내용이 영등위 세부심의기준에 해당하는 중요한 내용 변경인 경우에 한해 재등급분류 신청의무를 부과토록 개선권고

한편, 등급분류 이후 게임기기의 개·변조로 인한 불법 게임이 유통되어 사회적으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게임물의 기계적인 부분에 대하여 개·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심의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등급분류 전의 기술심의에 대한 게임산업진흥법상의 근거가 미비하여 등급분류 신청자에게 법적 근거 없는 절차적 의무를 새롭게 부과한다는 측면이 있으므로 게임물 제작자가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신청한 경우, 신청을 받은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전문기관에 기술심의를 의뢰하는 절차로 운영하도록 개선권고

○ 법률이 정하는 제작·배급자의 상호, 등급, 게임물 내용정보 등을 별표3에 따라 표시하여 부착하도록 함(내용심사)

☞ 게임물의 심의등급분류 후 불법 개·변조 방지, 매출액 누락으로 인한 탈세 방지 등 건전한 게임문화조성을 위한 표시의무 강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법률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기존의 표시의무를 보다 구체화하는 것에 불과하며 규제비용이 크지 않고 관련 이해관계자의 이견도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교육과 관련하여, 영업 개시전 사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사전교육을 이수한 자는 당해연도의 교육 면제토록 함(강화)

☞ 게임제공업과 관련해서 불법 · 탈법이 만연하고 있어 영업 개시전 사전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법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발생하는 법규위반을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사전교육시 당해연도 교육이 면제되는 등 규제의 강화가 크지 않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 게임제공업 ·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는 사행행위와 도박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오인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광고물, 정기간행물, 인터넷신문, 방송, 전기통신, 전단지 · 견본 · 입장권, 비디오물 · 음반 · 서적 · 간행물 · 영화 · 연극, 기타 이와 유사한 매체 · 수단 등의 광고물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함(내용심사)

☞ 게임산업진흥법 제34조제2항에서 위임한 금지광고물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규제의 내용을 명확히 것에 불과하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9)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강화 1, 내용심사 2)

■심사내용

○ 방송영상독립제작사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한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신고토록 함(강화)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의해 제작지원을 받고자 하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는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신고후 변경사항 발생시 관련 규정이 없어 민원인의 불편을 야기하였는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변경신고를 규정하는 것으로 추가 규제비용은 거의 없으며, 이해관계자 및 관련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친 사항이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 문화산업전문회사를 등록(변경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 및 정관, 사업계획서,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업관리자 및 자산관리자의 개요, 사업관리자와 체결한 사업위탁계약서 사본, 자산관리자와 체결한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사본 등의 첨부서류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문화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여 지체없이 등록증을 교부토록 함(내용심사)

☞ 법 제52조제2항에서 정한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등록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서류 요구로써 비중요규제로 판단되므로 원안의결

○ 문화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전문회사 · 사업관리자 · 자산관리자에 대하여 위반사항의 시정에 필요한 경우,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경고 또는 주의, 정관 변경 요구,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와 사업관리자 또는 자산관리자간의 위탁계약의 변경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내용심사)

☞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감독 등에 대하여 법 제55조 제4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타 법령에서 특수목적회사(SPC)에 대한 제재조치로서 정하는 바와 유사한 수준의 규제로서, 문화산업전문회사 운영의 투명성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로, 비중요규제로 판단되므로 원안의결

(10)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강화 3, 내용심사 3)

■심사내용

○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과 관련하여, 영업 개시전 사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사전교육을 이수한 자는 당해연도의 교육을 면제토록 함(내용심사)

☞ 법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발생하는 법규위반을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사전교육시 당해연도 교육이 면제되는 점 등 규제의 수준이 강하지 않고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어 비중요규제로 판단되므로 원안의결

○ 노래연습장 시설기준에 소음 · 진동 규제법 제23조에 따른 생활소음 · 진동 규제기준 준수, 창문 등 추락위험이 있는 곳에 안전장치 설치의무, 마이크는 소독하거나 덮개를 씌워 청결하고 안전하게 유지 등을 추가(강화)

☞ 생활소음 · 진동규제기준의 준수는 기존의 모호한 방음시설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며, 안전시설 및 마이크 소독 등은 관련부처의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판단되므로 원안의결

○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서에 영업소 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기존의 신고예외 대상인 음반 등의 기획제작업자에게도 신고의무 부과(강화)

☞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자의 신고는 법 제16조제2항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서 제출 절차를 규정한 것이며, 신고에 소요되는 규제비용이 미미하고, 이해관계자 이견이 없어 비중요규제로 판단되므로 원안의결

○ 음반을 제작 · 수입 · 복제하는 자는 상호, 제호 또는 명칭, 제작연월일, 등급분류, 식별표시 등의 표시사항을 음반 및 음악영상물은 표지 또는 포장지에, 음악파일은 전자적 형태로, 음악영상파일은 전자적 형태로 부가하도록 표시방법을 정함(내용심사)

☞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음악파일 · 음악영상파일 등의 경우, 동법의 표시의무자가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상의 표시의무자와 동일해지는 경우에는 법규중복으로 인한 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양법의 통일성 및 사업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온라인상 유통되는 음악파일, 음악영상파일에 온디콘법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표시연월일' 및 '이용조건'을 표시토록 하되, 추가 표시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선권고

○ 관할 관청에 폐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폐업신고서에 신고증, 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토록 함(내용심사)

☞ 법 제24조에서 정한 폐업절차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이며, 제출서류도 필수적인 서류로 한정되어 있고, 이해관계자 이견도 없어 비중요규제로 판단되므로 원안의결

○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 · 알선하는 행위를 한 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 제공하는 행위를 한 때에 대하여 1차위반시 등록취소 및 영업폐쇄로 행정처분의 기준을 강화함(강화)

☞ 기존 음비게법상에서 해석이 명확하지 않았던 처분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성매매 방지법 및 청소년보호법 벌칙규정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이 필요하다는 관련부처의 의견을 수용하여 일부 처분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입법예고 및 자체규제심사에서 이견이 없었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11)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 개정안(강화 1)

■심사내용

○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서 지정하는 상품권(18세이용가게임물에 한함)'은 2007.4.28까지만 효력을 가지며, 이후로는 어떠한 유형의 상품권도 경품으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여 게임제공업소에서 제공하는 경품중 상품권을 폐지(강화)

☞ 최근 상품권의 환전 등 불법 유통행위, 상품권 발행업체 지정관련 비리 등 경품용 상품권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바, 사행성게임 근절을 위한 상품권의 폐지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보다는 정책적 차원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로 판단되므로 상품권 폐지에는 동의하나, 다만 본문의 개정 없이 부칙만을 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본문 제2조제4항을 삭제하고, 부칙에서 삭제된 규정의 효력존속 경과조항을 두는 방식으로 체제를 정비할 것을 개선권고

(12)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정안(내용심사 4)

■심사내용

○ 게임물의 등급분류(전체이용가/12세이용가/15세이용가/청소년이용불가) 세부기준으로서 선정성 · 폭력성 · 반사회성 · 언어 및 사행성의 세부기준을 정함(내용심사)

☞ 게임물의 등급분류 세부기준은 게임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등급분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나,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되는 구체적인 행위기준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바, 본 규정의 조항은 유지하되 게임물등급위원회가 구성된 후에 등급분류세부기준을 구체화하여 정하도록 개선권고

○ 사행성 게임물 결정기준으로 아케이드게임물의 경우 예시 및 연타기능, 카지노, 경륜 · 경정, 사행행위 등의 모사를 추가하고, 온라인게임물의 경우 카지노, 경륜 · 경정, 사행행위 등의 모사를 추가함(내용심사)

☞ 최근 예시 및 연타기능 등이 부가된 사행성 게임물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여 이를 금지하기 위한 기준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게임물의 '사행성 결정

기준'은 게임제작 · 유통업자 · 게임장업자 등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본질적인 규제로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바, 본 규정의 조항은 유지하되 관련 고시에서 규정할 것을 개선권고

○ 게임제작 · 수입 · 복제자는 그 상호 및 등급 또는 등급분류유예표시를 하여야 하며,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은 청소년보호를 위한 경고문을 게재하도록 하고,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의 경우, 등급분류심의를 받은 게임물의 유통시, 딥스위치, 셋업모드 등 게임물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개 · 변조 방지를 위한 봉인조치를 하도록 함(내용심사)

☞ 불법 사행성게임을 근절하기 위하여 등급분류후 게임기기의 개 ·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봉인조치'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기기의 개 · 변조를 봉쇄하는 봉인조치는 타법례에 비추어 볼 때, 법규적 성격을 가지는 상위법령에서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본 규정의 조항은 유지하되, 개정작업이 진행 중인 게임법 등 상위법규에서 이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도록 개선권고

○ 등급분류 심의대상 · 재분류대상 및 신청 · 유예 · 취소 · 거부 · 재분류신청 등 등급분류 심의절차 관련사항을 규정하면서 단독형 모바일 게임물을 심의대상에 추가하고, 제출서류에 전기안전 인증서류를 추가함(내용심사)

☞ 동 조항들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존의 영등위 「등급분류소위원회 심의규정」의 내용을 재정비하고 있으며, 추가되는 심의대상인 '단독형 모바일 게임물'의 경우, 최근 급증한 모바일 게임물의 현황을 반영할 필요가 인정되고, '전기안전 인증' 서류의 추가는 게임물 개 · 변조 방지를 위한 '기술심의'를 상위법령에서 규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한 것이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13)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강화 2)

■심사내용

○ 카지노업 신규허가요건을 문화관광부장관이 최근 신규허가를 행한 날 이후 외래관광객이 60만명이상 증가한 경우에 한하도록 하고, 신규허가 고려사항에 전국단위의 외래관광객 증가추세 뿐만 아니라 지역의 외래관광객 증가추세를 함께 고려하도록 함(강화)

☞ 외래관광객수, 카지노이용객수 등의 변화로 인하여 '95년도 카지노 신규허가 조건인 외래관광객 30만명 증가를 유지할 경우 카지노 신규허가 요건이 상당히 완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카지노업계의 시장상황, 외래관광객의 수적 증가 등을 고려한 기준의 정비의 필요성은 인정되며 허가기준 외래관광객 증가수를 30만에서 60만으로 변경하더라도 기존의 규제정도를 유지하는 수준으로 판단되나, 다만 본 규제의 적정성에 대한 사후점검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므로, 최근 신규허가 카지노 개장일('06.5)로부터 1년간의 '카지노 운영현황 및 카지노 이용객 실태분석 등'을 '07년 하반기중 행정사회분과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원안의결

○ '내국인 입장', '총매출액 누락' 및 '부정한 게임'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강화)

☞ 내국인 입장, 총매출액 누락, 부정한 게임 금지는 최근 동 규정들의 위반시 행정처분이 미약하여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이러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서 제재강화를 통한 카지노영업의 투명성 제고, 외화획득 및 외래관광객의 편의 증진 등의 편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14) 공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강화 2)

■심사내용

○ 공연장외의 장소에서 3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의 운영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는 재해대처계획에 '안전관리인력의 확보·배치계획'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공연장외의 장소에서 3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의 운영자는 재해대처계획의 변경신고를 공연 개최 3일 전까지 하도록 하고 재해대처계획 미신고시 700만원, 변경미신고시 3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함(강화)

☞ 공연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개정된 공연법 내용을 하위규정에 반영하는 것으로, 재해대처계획 변경신고를 공연 3일전까지 하도록 한 것은 소방방재청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며 안전점검 시간의 확보 필요성이 인정되고 피규제자수가 중요규제 기준에 미치지 아니하여 비중요규제로 판단되므로 원안의결

○ 무대예술전문인 3급 자격검정 응시기준을 확대하는 한편, 1 · 2급 응시기준은 하위 자격증 취득후 소정의 실무경력을 인정받은 자로 강화(강화)

☞ 자격증 등급간의 응시기준을 명확히 구분하여 상위등급의 자격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취지는 바람직하나 개정안은 타법령의 자격증 응시기준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실무경력을 요구하고 있는바, 이러한 응시기준의 강화는 일종의 진입제한 강화로서 지나치게 경쟁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하위자격증 취득 후 일정기간의 실무경력을 갖춘자에 한하여 상위등급에 응시 가능토록 하여 등급간 명확한 구분을 두는 개정안 형식은 유지하되, 실무경력 연수를 타법령 및 기존 요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은 수준으로 하향조정할 것을 개선권고

3. 문화재청

집필자 : 노혜원 사무관(Tel. 2100-2447, woniroh@opc.go.kr)

가. 2006년도 신설 · 강화규제심사 개요

❍ 2006년도에는 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안 1개의 법령에 대해 3건의 신설 규제를 심사(중요 3건)

❍ 심사대상 3건 중 2건에 대하여는 개선 권고하고, 1건은 철회권고 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문화재청의 2006년도 총 신설규제는 3건임

< 문화재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313차 행정사회분과 (2006.12.28)	개선권고 2, 철회권고 1	신설 3 *중요 3

나. 2006년도 신설 · 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정안(신설 3)

■심사내용

○ 지표조사 건설시공자 의무(신설)
- 건설공사시행자는 협의절차 · 사업계획 등 변경절차 완료전에는 공사시행을 해선 안되고, 건설공사 인허가 기관장은 동 절차 완료 전까지는 사업계획 등 인허가를 해선 안되며, 인허가 등을 얻어야 하는 공사시행자가 이를 위반하여 공사시행시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공사중지를 명해야 함 * 위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 문화재청장은 공사시행자가 이를 위반하여 공사시행시 인허가기관장에게 당해 사업에 대한 공사중지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인허가기관장은 이에 응하여야 함

☞ 문화재 보호와 훼손방지를 위해서 협의 절차 · 사업계획 등 변경절차전 공사시행을 금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지표조사 협의 완료전에 관련 공사인허가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서 사업시행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판단되어 개선권고함

*다만 이법 시행이후 지표조사에 대한 건설시공자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 그 원인을 분석 하여 행정기관의 협조부족이 주원인일 경우 공사 인허가까지 제한하는 내용을 추후 입법에 반영

○ 매장문화 조사기관 등록 및 취소 (신설)
- 지표 · 발굴조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법률상 설립된 매장문화재 조사연구 전문법인 및 매장문화재 관련 연구기관, 문화재 관련 국공립 연구소 등으로서 문화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 문화재청장은 ① 발굴허가내용 · 허가관련지시 위반시, ② 제16조에 의한 제출기한 내에 발굴조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기간 경과후 발굴조사보고서 제출시 ③ 조사 및 조사보고서 작성을 명백히 부실하게 한 경우 ④ 제24조 2항에 의한 등록기준 미달시 ⑤ 기타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조사기관을 등록 취소하거나 2년범위내 업무정지 가능

- 속임수로 조사기관 등록신청시, 고의 · 중과실로 조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시, 3. 고의 · 중과실로 유물 · 유적 훼손시 등 조사기관 등록취소 가능
  *문화재청장은 등록취소된 조사기관에 대하여 3년범위내에서 조사기관 등록 제한 가능하며, 등록취소 · 업무정지 규정은 당해 조사기관 등록취소 · 업무정지와 직접 관련된 대표자, 조사장, 책임조사원에게도 적용됨

☞ 문화재조사의 전문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하여 조사기관 등록제를 도입하고 각종 규정 위반시 등록 취소하도록 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제25조 1항 5호의 '기타 이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는 그 대상이 불명확한 규정으로 삭제하거나 구체화 할 필요가 있음.

또한 등록취소 조항에 위반사항에 해당 되는 법조항이 적시되지 않고 있어 피규제자의 편의도모를 위해서는 명시적으로 법조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예 :고의 · 중과실로 조사보고서를 허위작성시 → 고의 · 중과실로 제9조 및 제16조에 의한 조사 보고서를 허위작성시 등)

등록취소 · 업무정지 등 제재규정을 조사 기관대표자 · 조사단장 · 책임조사원에 그대로 준용토록 하고 있으나 '기관'에 대한 제재 규정을 '사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 하는 것은 법체계에 맞지 않고, 기존에는 없던 '사람'에 대한 규제를 신설하는 것이므로 이경우는 제13조(발굴허가의 신청)과 관련하여 대표자 · 조사단장 · 책임조사원의 경우 발굴허가를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개선권고

○ 외국 매장문화재 조사 신고(신설)

- 외국 매장문화재 조사 희망자는 조사개시 15일전까지 조사대상유적 · 상대국 조사협의기관 또는 단체명 등이 개제된 조사 계획서를 첨부하여 문화재청장에 신고하여야 하며, 조사완료시에는 학술조사보고서 등을 문화재청장에 제출하여야 함

☞ 외국소재 문화재 발굴시 해당국의 법령을 준수하여 신고서 등을 제출해야 할 것이므로 국내에 별도의 조사신고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 피규제자에게 동일한 조사에 관해 이중의 신고를 하게 하는 부담을 초래하며, 국외발굴 조사에까지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부적절함

국외학술조사보고서를 의무적으로 문화재청장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국내 매장

문화재 보존을 위한 본법안 및 문화재청장의 권한을 벗어나는 것이고, 또한 동사항은 학술적 연구와 관련된 것으로 규제보다는 발굴비 등 인센티브 부여 등 다른 방법으로도 그 목적이 달성가능하므로 철회권고

4. 방송위원회

집필자 : 서나윤 사무관(Tel. 2100-2446, nayoon@opc.go.kr)

가. 2006년도 신설 · 강화규제심사 개요

❍ 2006년도에는 방송법, 방송법시행에 관한 방송위원회규칙, 지상파사업자 및 지상파방송 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고시 등 5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9건, 내용심사 3건 등 총 12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2건 중 1건에 대하여는 철회권고, 2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하고, 9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방송위원회의 2006년도 총 신설규제는 9건임

< 방송위원회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지상파사업자 및 지상파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고시 제정안	제282차 행정사회분과 (2006.3.10)	원안의결 7 (개선권고 1)	신설7 *비중요7
방송법시행에 관한 방송위원회 규칙	제289차 행정사회분과 (2006.6.9) 제290차 행정사회분과 (2006.6.9)	개선권고 1	내용심사 1 *중요1
방송발전기금 징수에 관한 규칙 제정안	제303차 행정사회분과 (2006.9.21)	원안의결 1 철회권고 1	신설 1 내용심사 1 *중요1,비중요1
방송법 개정안	제303차 행정사회분과 (2006.9.21)	원안의결 1	신설 1 *비중요1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제310차 행정사회분과 (2006.11.30)	개선권고 1	내용심사 1 *중요1
계	-	원안의결 9 개선권고 2(3) 철회권고 1	신설 9 내용심사 3 *중요3,비중요9

나. 2006년도 신설 · 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및 지상파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방송프로그램 편성 비율 고시 제정안(신설 7)

■심사내용

○ 다른 한 방송사업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을 매월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80이내로 제한(신설)

☞ 방송영상 산업 전체의 균형있는 발전과 자체편성 확대를 통한 방송관련 산업의 육성 · 진흥을 위한 규제로서 신규매체임을 감안, 기존 지상파 방송사업자 등에 적용되는 편성비율 보다 규제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원안의결

○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을 비지상파 3사는 100분의 60 이상으로 하고, 지상파 3사는 100분의 80 이상으로 정함(신설)

☞ 국내 방송영상 콘텐츠 제작산업의 보호 · 육성과 외국 영상물의 범람을 억제하기 위해 국내제작프로그램의 의무편성비율을 정하는 것으로 기존 방송사업자에게 적용되는 편성비율과 동일하게 정하되, 사업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비지상파 TV사업자의 경우는 시행령상 가장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 국내제작 영화 · 애니메이션 · 대중음악 편성비율을 영화는 100분의 25 이상, 대중음악은 100분의 60 이상, 애니메이션은 100분의 35 이상으로 정함(신설)

☞ 21세기 고부가가치 산업인 영화 · 애니메이션 · 대중음악 분야의 국내산업 육성 등을 위해 국내제작물 편성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영화, 대중음악은 기존 편성비율과 동일하게 정하고 애니메이션의 경우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의 취약한 기반을 감안, 지상파사업자에 적용되는 비율(45%)보다 10% 완화한 것은 그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신규편성 비율을 연간 전체 방송시간의 1000분의 1 이상으로 정함(신설)

☞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을 일정비율 이상 신규로 편성하도록 함으로써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의 육성을 통한 방송영상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규제로 신규매체로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 편성비율보다 완화한 것은 그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 수입한 외국방송프로그램 중 1개 국가 제작물 편성비율을 매분기 분야별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60 이내로 정함(신설)

☞ 국제문화 수용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 1개 국가에서 제작한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을 규제하는 것으로 기존 지상파사업자에게 적용되는 편성비율과 동일하게 규제하는 것이므로 원안의결

○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을 KBS는 100분의 20 이상, MBC·SBS는 100분의 28 이상, 기타의 경우 100분의 4 이상으로 정함(신설)

☞ 지상파방송사업자에 편중되어 있는 방송영상산업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제작원의 다양성을 통한 방송영상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외주제작 프로그램을 일정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편성토록 하는 규제로서, 광고를 주 수익원으로 하는 무료 방송매체로서 방송시장에 신규로 진입한다는 점에서 당분간 기존 지상파 방송에 비해 완화된 비율을 적용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

○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을 전체 방송시간의 1000분의 1 이상으로 하여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의무편성토록 함(신설)

☞ 사회적으로 필요한 공익적 메시지의 전달을 위해 일정량의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편성토록 하는 것으로, 신규매체임을 감안시 종전의 규제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로 판단되므로 원안의결

○ 기타 동 고시의 형식과 관련하여, 지상파DMB방송이 신규매체로 방송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방송법과 방송법시행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을 정하고자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고시」를 새로 제정하였으나,

☞ 기존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에 적용되는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고시」와 별도로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에 대해 새로 고시를 제정하는 것은 고시의 통일적 체계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고시 개정시 기존 고시와 통합하여 운영할 것을 개선권고

(2)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위원회 규칙 개정안(내용심사 1)

■심사내용

○1인 지분제한 관련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대한 예외를 개인과 법인의 경우로 나누어 규정함(내용심사)

☞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개인과 법인으로 나누어 규정하는 경우 특수관계자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곤란하므로 규제 명료성 차원에서 규칙안을 재정리할 것을 개선권고

(3) 방송발전기금 징수에 관한 규칙 제정안 (신설 1, 내용심사 1)

■심사내용

○동일인이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과 그 외의 사업을 겸하는 경우, 방송발전기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방송사업과 관련된 당해연도 결산상 영업이익'을 전체 매출액에서 방송사업으로 인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 계산토록 하고,, 다만 이러한 산정방식의 적용이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기금 산정기준을 변경 적용할 수 있도록 함(내용심사)

☞ 방송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상품소개 및 판매 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기금징수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정하는 것으로서, 객관적 산출이 가능한 방송매출액에 비례하여 계산토록 규정하였으며 이 계산이 비합리적인 경우는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기준을 변경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었고, 방송사업자 등 관련 이해관계자의 이견도 없었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 방송위원회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 위성방송사업자 ·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기금산정을 위해 제출한 자료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방송사업자에 대한 실지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신설)

☞ 제출 자료의 적정성 확인을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실지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기금징수와는 별개로 개인 또는 기업의 권리를 제한하는 또 하나의 새로운 규제에 해당하여 별도의 법적 근거를 요하나, 현행 방송법은 기금징수 및 자료제출 요구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할 뿐 실지조사에 대해서는 정하지 않아 상위법을 벗어난 법령 미근거 규제에 해당하므로 삭제할 것을 철회권고

(4) 방송법 개정안 (신설 1)

■심사내용

○ 외국방송사업자가 그가 행하는 방송을 국내에서 방송사업자를 통하여 재송신하고자 하는 경우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면서, 방송위원회 승인 심사기준, 재송신 범위 및 기준,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승인취소, 과태료 등을 정함(신설)

☞ 외국방송 재송신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승인제도는 기존의 방송법에 의해서도 이미 규제되고 있는 사항이나, 동 개정안으로 인하여 규제대상이 국내방송사업자에서 외국방송사업자로 변경되는바, 외국방송에 대한 1회 승인으로 모든 국내방송사업자가 재송신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편익 증진 및 행정비용 감소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추가적인 규제비용은 거의 없으며, 승인 심사기준, 외국방송사업자에 대한 관련자료 제출 요구, 과태료 등의 관련 규정이 국내방송사업자에 대한 규제와 비교하여 지나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되어 원안의결

(4)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내용심사 1)

■심사내용

○ 방송프로그램 등급분류기준으로 '15세이상시청가' 등급을 추가하고, 등급기호 표시의무 및 등급 자막고지의무를 강화(중간광고 직후 프로그램 시작과 동시에 30초 이상

등급기호를 표시, '19세이상시청가' 등급은 프로그램 방송내내 지속적으로 등급기호를 표시, '모든연령시청가' 등급도 자막고지를 실시)하는 한편, 등급제 적용대상 프로그램을 일부 다큐멘터리, 생활정보, 시사관련 대담 · 토론 프로그램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으로 확대(내용심사)

☞ '15세이상시청가' 등급기준 및 분류기준 신설, 청소년 유해물인 '19세이상시청가' 프로그램에 한한 상시 등급고지의무, '모든연령시청가' 등급의 자막고지, 등급제 확대 등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나, '15세이상시청가' 등급분류 기준의 경우 추후 방송법 및 시행령 개정시 상위법에서 등급분류의 개괄적인 기준을 제시하도록 개선권고함. 또한 '위원회가 이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권고 또는 의견제시'를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법률의 위임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하여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모호한 규정이므로 동 부분은 삭제할 것을 개선권고

제9절 노동 · 여성 · 청소년분야

1. 노동부

집필자 : 조철영 사무관(02-2100-2443, cho224@opc.go.kr)

가. 2006년 신설 · 강화규제 심사개요

❍ 2006년도에는 직업상담원의 배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등 18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24건, 강화 23건, 내용심사 3건 등 총 50개건에 대해 규제심사(중요 27건, 비중요 23건)

❍ 심사대상 50건 중 2건에 대하여는 철회권고, 9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 하고, 39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2006년도 총 신설규제는 24건임

< 노동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직업상담원의 배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241차 경제2분과 (2006.1.25)	원안의결3	신설1 강화2 *중요3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242차 경제2분과 (2006.2.8)	원안의결2 개선권고2	신설2 강화2 *중요4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	제253차 경제2분과 (2006.6.7)	원안의결1	신설1 *중요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253차 경제2분과 (2006.6.7)	원안의결2	내용심사2 *비중요2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255차 경제2분과 서면심사	원안의결2 개선권고1	신설2 강화1 *중요1, 비중요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제258차 경제2분과 (2006.7.19)	원안의결3	강화3 *중요2, 비중요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258차 경제2분과 (2006.7.19)	원안의결3	강화3 *중요1, 비중요2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개정안	제258차 경제2분과 (2006.7.19)	원안의결2 개선권고1	강화3 *중요1, 비중요2
석면함유제품 제조 · 수입 · 양도 · 제공 또는 사용금지 고시 제정안	제261차 경제2분과 (2006.8.30)	원안의결1	신설1 *중요1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제264차 경제2분과 (2006.9.27)	개선권고1	신설1 *중요1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제264차 경제2분과 (2006.9.27)	원안의결1 개선권고1	신설1 내용심사1 *중요1, 비중요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제265차 경제2분과 (2006.10.10)	원안의결3	신설1 강화2 *중요2, 비중요1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265차 경제2분과 (2006.10.10)	원안의결1	신설1 *비중요1
근로기준법 개정안	제265차 경제2분과 (2006.10.10)	원안의결3 개선권고1	신설2 강화2 *중요1, 비중요3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267차 경제2분과 (2006.11.2)	원안의결4	신설3 강화1 *중요2, 비중요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제270차 경제2분과 (2006.11.29)	원안의결1 개선권고2 철회권고2	신설5 *중요4, 비중요1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	제270차 경제2분과 (2006.11.29)	원안의결2	신설1 강화1 *비중요2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제272차 경제2분과 (2006.12.20)	원안의결5	신설2 강화3 *중요2, 비중요3
계		원안의결39 개선권고9 철회권고2	신설24 강화23 내용심사3 중요27, 비중요23

나. 2006년도 신설 · 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직업상담원의 배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신설 1, 강화2)

■심사내용

○ 직업상담원은 노동부장관이 임용하되,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업상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신설)

☞ 직업상담원은 비록 민간인 신분이나, 국가기관인 고용안정센터에서 공무를 수행하고, 업무도 실업급여 지급, 부정수급자 단속 등의 지도 · 단속업무이므로, 안정적인 국가업무 및 민원업무의 수행을 위해서 결격 사유자는 임용을 제한할 필요가 인정되며, 외국의 사례나 국내 유사법령과 비교하여 과도한 규제가 아니므로 원안 의결

○ 직업상담원의 당연 퇴직 사유를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와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달한 때로 규정 (강화)

☞ 국가공무원 임용결격사유를 직업상담원의 퇴직기준에 적용하는 것으로, 여타 법령과 비교해서도 과도한 규제로 볼 수 없고, 안정적인 공무 수행과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민원업무처리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제한으로서, 그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 의결

○ 직업상담원의 직권면직 기준을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와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로 규정(강화)

☞ 직업상담원의 신분보장을 명확히 하는 대신, 직제의 개폐 또는 예산사정 등에 의한 과원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직권면직 조항을 두어, 고용안정센터의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대비한 최소한의 규정을 정한 사항으로서, 규제의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 의결

(2)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2, 강화2)

■심사내용

○ 직종별 · 직급별 「남녀근로자 현황」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할 사업주로 정부투자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의 장, 정부산하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정부산하기관의 장,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단, 근로자 500-999인 사업주는 시행기간 1년 유예)를 규정(신설)

☞ 기업부담, 대상 확대로 인해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상시근로자 500-999인 고용사업주에 대해서는 2년간 적용을 유예하되, 시행령 부칙으로 적용 유예를 규정할 수 없는 경우는 10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만 우선 규정토록 개선 권고

○ 사업주가 3년간 보존해야 할 서류 종류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관련 서류를 추가함(강화)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 도입에 따라 관련서류를 일정기간 보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안 의결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의 작성을 요구 할 수 있는 고용기준을 정하는 사안으로 여성근로자 비율이 당해사업이 속한 산업별 전직종 평균의 60%에 미달한 경우(단, 근로자수 대비 여성근로자 고용비율이 50% 이상인 경우는 제외)와 관리직 여성근로자 비율이 당해 사업이 속한 산업별 관리직 여성비율 평균의 60%에 미달한 경우로 규정(강화)

☞ 산업별 기준은 주무부처가 경총과 협의하여, 동일군내 평균 여성고용율 차이를 적정하게 재조정할 것을 개선권고하고, 관리직 기준은 필요성 및 기업부담 등에 대해 이해관계인(경총)의 의견을 확인한 결과 이견이 없어 원안의결하고, 여성고용비율(60%)은 평균 수준의 변화에 따라 시행계획 제출 대상범위, 내용, 기업의 인사계획 등을 변화시켜야 하므로 2년을 주기로 평균 여성고용율을 조사하여 기준을 설정하도록 개선 권고

○ 남녀근로자 현황, 시행계획, 이행실적 등의 제출시기, 방법, 첨부서류 등을 정하는 사안으로 시행계획은 매년 10월15일, 남녀근로자 현황은 매년 5월, 이행실적은 매년 10월15일까지 제출(신설)

☞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대상 사업주가 제출하여야 하는, 남녀근로자 현황, 시행계획, 이행실적의 제출시기 첨부서류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 및 실효성을 제고가 필요가 있으므로 원안 의결

(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신설1)

■심사내용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지정직업훈련시설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고, 해산과 잔여재산처분계획은 이사정수의 3분의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하며, 해산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은 잔여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고, 당해 재산은 재산귀속일로부터 10년동안은 직업훈련 이외의 목적으로 동 재산을 처분·변경해서는 안되도록 규정(신설)

☞ 양질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유도하고 시장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기관의 개인전환을 위한 해산, 잔여재산의 처분 등에 대한 규정은 필요한 규제이고, 아울러 노동부 규제심사시 논란이 된 훈련법인 해산에 따라 잔여재산을 운영자 등 개인에게 귀속시키되, 귀속재산을 10년간 훈련 목적 외에 처분·변경 금지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의 전환 규제 완화에 따른 혜택과 규제가 균형감 있게 규정된 것이며, 훈련법인 개인 전환 및 잔여재산 귀속 조항은 민간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교육훈련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고, 귀속재산의 10년간 목적외 처분·변경 금지는 정부 지원 훈련법인이 해산시에도 정부 지원 목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므로 원안 의결

(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내용심사2)

■심사내용

○ 한국어능력시험 실시기관의 선정 취소사유에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응시생 모집, 시험 시행 및 합격자 처리과정 등에 부정이 있는 경우, 선정기준에 미달하여 업무수행 곤란한 경우, 약정위반이 누적되어 시험 실시기관으로서 업무 수행이 부적절한 경우'를 추가(내용심사)

☞ '05.12.30일 개정 법률에 따라 국내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구직자의 한국어능력시험 실시기관에 대한 취소 관련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시험 실시기관의 취소사유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법률의 위임 범위 내의 규정으로 외국인구직자 한국어능력시험 시험 실시과정의 부정, 실시기관의 부실, 외국인력 송출비리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

○ 외국인 고용허가 사안 중 고용허가신청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연장 신청시 3월의 범위에서 연장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신청이 있는 경우 외국인 도입 업종 및 규모 등이 '정책위원회에서 정한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해당 등'의 요건 충족 사용자에 대해 외국인구직자명부에 등록된 자중 적격자를 추천하는 등을 규정하는 사안임(내용심사)

☞ '05.12.30 법 개정으로 인력부족 확인서 신청 및 발급절차를 폐지하고, 고용허가 신청 및 발급절차로 통합하여 발급요건 및 유효기간 연장요건 등을 동일하게 규정하는 등 고용허가제 시행에 필요한 조치로서, 개정 법률의 위임범위 내에서 규정한 사항으로 원안 의결

(5)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개정안(신설2, 강화1)

■심사내용

○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등에 대해 '노동부장관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직업소개사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연간 4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실시, 교육훈련 내용은 직업소개 관련 법령 및 제도, 직업상담 등 직업소개에 필요한 내용이어야 하며, 사업자협회로 하여금 교육실시 위탁이 가능' 등을 규정(신설)

☞ 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가 필요한 전문지식 및 직업윤리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제40조의2, 신설)함에 따라 교육훈련의 내용 · 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이나, 연간 4시간 이상의 교육실시는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무한정 교육시간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4시간 이내로 명확히 규정하고, 매년 교육은 정기교육으로 될 우려가 높으므로 교육시기는 법령 제 · 개정, 주요 정책상황 변경 등의 경우로 한정하고(연간 4시간 이내) 교육방법도 CD-ROM, 인터넷 등을 통한 원격교육과 집합교육 병행 등 다양하게 운영하도록 규정할 것을

개선권고하며, 교육훈련을 협회에 대행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법 제40조 제1항 교육에 대한 위임범위(교육주체), 제45조의2 협회의 설립목적, 교육실시의 독점화 등에 비추어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바, 법률의 취지대로 시·군·구 또는 노동부에서 직접 교육을 시키도록 제3항은 삭제할 것을 개선 권고

○ 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사업승인 신청서에 법인설립인가신청서 등을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협회의 설립인가,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정한 바에 따르도록 규정(신설)

☞ 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사업자협회 설립시 시행령 제37조의2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 협회설립인가, 지도감독 등을 규정한 것이므로 원안 의결

○ 유료직업소개사업자나 국외근로자공급사업자가 법 제3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예치금의 예치를 하지 않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의 행정처분(1차위반시 경고, 2차위반시 등록취소)을 규정(강화)

☞ 법 제34조의2 제1항 규정의 개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자와 국외근로자공급사업자의 배상책임보장을 위하여 예치금의 금융기관 예치 및 보증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규정함에 따라 미이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의결

(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강화3)

■심사내용

○ 노동부장관은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업무정지를 명할 경우로서 업무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업무정지기간별로 과징금 부과기준을 정함(강화)

☞ 법 제15조의3 규정 개정으로 사업장 안전관리를 대행하고 있는 대행기관의 업무정지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업무정지기간에 따라 차등부과하는

것은 사업장안전관리 공백을 없애는데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하였고 법률의 위임 범위내에서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

○ 공정안전보고서(PSM, Process Safety Management) 제출대상 유해위험물질(가연성 · 인화성 · 독성 · 폭발성)을 현행 21종에서 40종으로 확대하고, 기존 10종 물질에 대해서는 국제적 수준으로 하향(강화)

☞ 공정안전보고서(PSM) 제출대상 유해위험물질을 확대하고, 대상물질 추가로 신규 PSM 제출대상 사업장이 62개소에 불과하며 국제수준과 비교할 경우 PSM 제출대상 유해위험물질의 종류 및 규정 수량이 적정토록 하향 강화한 것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

○ 산업안전관리비의 목적외 사용에 따른 부과기준의 합리적 조정, 근로자 중대 건강상 장해발생시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미제공, 공정안전보고서 미준수 등에 대한 법률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함(강화)

☞ '06.3.24 법 개정으로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정하는 것으로서 관리비의 타목적사용에 따른 과태료부과를 사용금액 비율에서 금액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은 소액 위반자에 대한 과다 부과를 경감시켜주는 것이며, 근로자 및 사업자 모두 공정안전보고서 준수를 통하여 중대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며, 법률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여 법률의 위임범위내에서 규정한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

(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강화3)

■심사내용

○ 사업주는 사망자 1인이상인 경우, 3월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 2인이상인 경우, 부상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경우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 지체없이 관할 노동관서에 재해발생 개요 등을 보고(강화)

☞ 사업장의 중대산업 재해발생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하여 사업주의 신속한 보고는 필요한 사항이며, 타법령에도 '지체없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므로 원안 의결

○ 사업주는 산업보건의 또는 근로자 건강진단 관련의사가 치료목적을 위하여 긴급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등 4가지의 사항의 경우 화학물질명, CAS 번호 또는 그 물질의 식별번호, 구성성분 함유량을 관계자에게 제공하여야 함

☞ 근로자의 재해발생 방지 및 치료를 위하여 작업장내 화학물질의 성분, 명칭 및 함유량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의 위임 범위내에서 규정한 사항으로 현행 고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상위입법화 하고 동일 수준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원안의결

○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 배치전 건강진단 · 수시건강진단의 검사대상 유해인자 항목에 중독시 치명적인 유기주석 화합물을 추가(강화)

☞ 유기주석화합물 중독시 기억력상실, 언어장애, 운동장애 등 근로자의 중추신경계에 치명적 질환 예방을 위하여 '유기주석화합물'을 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로 규정한 것은 19개 사업장 280명의 유기주석노출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며 이견이 없는 바 원안 의결

(8)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강화3)

■심사내용

○ 타워크레인 조종업무 자격기준에 '타워크레인 운전기능사 자격 취득자'를 추가하고, 타워크레인 설치 · 해체작업 자격기준에 '제관기능사, 비계기능사 자격자 또는 규칙에서 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이수하고 수료시험 합격자'를 신설하는 사안(강화)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의 개정('05.11.11)으로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 자격제도가 도입되고 타워크레인 구조 및 특성에 따른 운전기능과 전문지식을 갖춘 기능사가 타워크레인 조종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것은 사고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현행 조종석 미설치 타워크레인 조정업무는 무자격자도 운전이 가능하나, 자격제도 도입시 기존 유경험자는 신규 자격을 취득하거나 업무전환 또는 전직하는 경우 기업뿐만 아니라 종사자도 큰 부담이 되며, '02년 이후 사고발생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존 유경험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교육 등을 통해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해줄 것을 개선 권고

○ 타워크레인 설치 · 해체작업 자격자 양성 교육기관의 인력기준은 총괄책임자 1인, 강사 3인 이상 등 타워크레인 설치 · 해체작업 취업자격자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인력 및 시설 기준을 마련함(강화)

☞ 자격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생이 적합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정 교육기관의 시설기준(교실, 실습장, 장비 등) 및 인력기준(강사 등)을 정한 것으로 법률의 위임범위에서 규정한 사항으로 원안 의결

○ 유해 · 위험작업 자격취득자의 양성을 위한 이론교육 및 실기교육 내용을 정하고 36시간의 교육이수 시간을 규정(강화)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규정에 의해 타워크레인 설치 · 해체작업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내용 및 이수시간을 시행규칙에 정하는 것으로서,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들어 당초 교육이수 시간을 120시간에서 36시간으로 완화한 사항으로, 법률의 위임범위내에서 규정되어 원안 의결

(9) 석면함유제품 제조 · 수입 · 양도 · 제공 또는 사용금지 고시 제정안(신설1)

■심사내용

○ '07.1.1부터 제조 · 수입 · 양도 · 제공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석면함유제품을 정하고(① 지붕 · 천장 · 벽 또는 바닥재용 석면시멘트제품 ②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용 석면마찰제품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제품은 제외한다), 금지시행일 현재 국내 유통중인 석면함유제품은 시행 후 6월까지 양도 · 제공 및 사용할 수 있음. 단, 석면시멘트제품 중 압출성형 시멘트판은 '08.1.1부터 금지(신설)

☞ 근로자 석면노출 차단으로 석면에 의한 건강장해의 근본적 예방을 위한 대책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며, 그동안 업계간담회, 석면정책 심포지엄, 직업환경전문위원회 및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 등으로 의견수렴과 이해관계자협의를 하였고, 석면시멘트제품 중 업계의 요구사항인 압출성형시멘트판에 대하여는 1년의 유예기간과 국내에서 유통 중인 석면함유제품은 6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하도록 반영하였으므로 원안 의결

(10)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신설1)

■심사내용

○ '근로기준법 제6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20을 감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적용되, 다만, '07.1.1~'07.12.31까지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30을 감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적용(신설)

☞ 최저임금법이 개정(2005.5.31)되어 '감시 ·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최저임금 감액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함'에 따라 그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승인대상 감시 · 단속근로자중 53%(172,903명중 91,757명)가 최저임금 미만인 점을 감안시 노동 근로조건이 취약한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규제신설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감액률별 영향분석에 대한 노동부의 연구용역결과(노동연구원)에 의하면 감액률을 20%로 설정시 최저임금 미만자(91,757명)중 36.3%(33,346명)가 수혜대상이 되어 입법취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고, 1가구당 추가부담액은 연간 4,440원(월간 370원) 수준으로 규제수준이 적정한 것으로 인정됨. 다만, 입법취지가 취약근로자의 보호에 있는 점을 감안시 추후 노동시장의 변화 등을 반영하여 규제의 계속 존치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5년간의 규제일몰제」를 적용하도록 개선권고

(11)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신설1, 내용심사1)

■심사내용

○ 사업주에게는 지게차(앉아서 조작 하는 방식)를 운전하는 근로자에게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주지시키도록 하고, 운전자에게는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2008.1.1.부터 적용함(신설)

☞ 지게차의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화등은 입법미비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생명보호와 직결되는 사안이고, 국민들에게 안전띠 착용의 중요성은 이미 각인돼 있는 점과 규제내용의 특성상 추가적인 비용부담이나 준비없이도 규제준수가 가능한 점 등을 감안시 동 규제의 시행일을 부칙에서 별도로 규정하여 장기간 유예하는

것은 부적정하므로 부칙상의 시행일 유예내용을 삭제하도록 개선 권고

○ 계단이 출입구와 바로 연결된 경우에는 작업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그 사이에 '1.2미터 이상 거리를 두거나 안전표지 또는 비상벨을 설치'하도록 하고, 사다리식 통로 설치시 안전한 승강을 위하여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센티미터 이상 간격'을 유지하며, 아세틸렌 발생기실은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3미터를 초과하는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는 등 기준을 구체화함(내용심사)

☞ 안전상의 제반조치와 관련한 기존의 불명확한 규제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으로서, 유사입법례의 규제수준을 적용하므로 추가적인 규제부담은 실질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어 원안 의결

(1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신설1, 강화2)

■심사내용

○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시 첨부하여야 하는 노동조합의 규약에 '쟁의행위와 관련된 찬반투표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 투표용지 등의 보존 및 열람'에 관한 사항'을 추가(강화)

☞ 노동쟁의행위 찬반투표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한국노총 · 경총 · 대한상의 등 노사정 합의 사항이며, 규제비용 및 피규제자수 등에서 중요규제에 해당하지 않고 노조설립 신고시 첨부자료인 노동규약에 일부 내용이 추가되는 것이므로 규제강화로 인한 규제영향비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국제기준과 비교시 규제정도가 과다 하지 않으므로 원안 의결

○ 노동관계 당사자는 필수유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수유지업무의 유지 수준, 대상 직무, 필요 인원 등을 정한 협정을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하고 '필수유지업무 협정서'를 행정관청에 신고토록하며, 이를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용자는 필수유지업무 협정이 체결된 때에는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근무하여야 할 근로자를 지명하고, 이를 노동조합과 해당 근로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필수공익사업에 대하여는 쟁의행위 기간중 대체근로를 허용하며,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신설)

☞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시 공중의 생명, 신체의 안전 등에 치명적 피해가 우려되는 업무를 파업시에도 수행토록 하는 '필수유지업무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서, 국제기준과 비교시 규제정도가 과다 하지 않고, 필수공익사업의 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점, 무엇보다도 한국노총 · 경총 · 대한상의 등 노사정 합의 사항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안 의결

○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의 설립 허용 시행시기를 현행 2006.12.31일에서 2009.12.31까지로 3년간 연장(강화)

☞ '97년 노조법 제정시 전임자 급여제한 규정과 연계하여 복수노조 허용시기를 2001.12.31까지 유예하였고 2001년 법 개정시 2006년 12월31까지 유예한 것을 노사정 합의를 통해 2009년12월31일까지 다시 3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현장과 국가경제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복수노조의 시행을 위한 노사간 충분한 사전대비와 구체적 시행 방안(교섭창구의 단일화 방안 등) 마련을 위해서 시행시기의 유예가 불가피한 점이 인정되고, 무엇보다 한국노총 · 경총 · 대한상의 등 노사정이 '유예기간 3년'에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안 의결

(13)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설1)

■심사내용

○ 근로자위원은 노사협의회 의제중 협의 및 의결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회의전에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도록 하고, 다만, 근로자위원의 요구자료가 기업의 경영 · 영업상의 비밀 또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료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신설)

☞ 한국노총, 경총, 대한상의 등 노사정이 합의한 사항으로 규제영향비용은 자료제공 요구자가 근로자위원으로 한정되어 있고, 이메일 등을 통한 자료제공이 가능하므로 현실적으로 거의 발생되지 않고, 피규제자수는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의 사업자로서 '05.12월 현재 36,000여개소이며, 국제기준에 비해 규제정도가 과다하지 않고, 규제신설로 인한 비용발생 및 피 규제자 수 등을 감안 원안 의결

(14) 근로기준법 개정안(신설2, 강화2)

■심사내용

○ 근로계약체결시 사용자가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근로조건에 '휴일 및 휴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위반시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강화)

☞ 근로계약체결시의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발생시 조기해결을 위한 것으로서, 한국노총 · 경총 · 대한상의 등 노사정이 합의한 사항이며, 현재도 근로계약체결시 임금은 서면으로 명시토록하고 있어 계약내용에 '근로시간, 휴일 · 휴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만 하면 되므로 규제강화로 인한 규제영향비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국제기준과 비교시 규제정도가 과다하지 않는 등 규제비용 및 피규제자 수 등을 감안 원안 의결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위반시의 제재규정은 없으나, 위반시에는 해고의 효력이 무효가 되어 해당 근로자가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신설)

☞ 해고와 관련된 분쟁을 줄이고, 사용자의 일시적인 감정에 의한 해고를 예방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한국노총 · 경총 · 대한상의 등 노사정이 합의한 사항이며, 해고관련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며, 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므로 규제신설로 인한 규제영향비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피규제자수(21,023명) 및 국제기준과 비교시 규제의 정도가 과다하지 않으므로 원안 의결

○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된 근로자가 담당했던 업무에 대하여 '3년 이내'에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함(강화)

☞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노사간의 신뢰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한국노총 · 경총 · 대한상의 등 노사정이 합의한 사항이고, 해고근로자를 무조건 재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3년이내에 신규채용을 할 만큼 경영여건이 좋아진 경우, 해고된 근로자와 동일업무에 대해서만으로 한정적으로 적용되므로 규제강화로 인한 규제영향비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피규제자(16,845명)수 및 국제기 준 등을 고려하여 원안 의결

○ 노동위원회위원장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하여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하고,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하여 사용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한 때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기 전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행강제금은 년 2회의 범위에서 2년을 초과하여 부과하지 못하며 그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반행위의 종별과 위반정도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신설)

☞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에 대해 이행수단을 확보하고, 부당한 해고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수단의 확보를 전제로 부당해고 등에 대한 벌칙조항(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삭제하는 것에 한국노총·경총·대한상의 등 노사정이 합의한 사항으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한 실효성 확보와 근로자 보호의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시 제도도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이행강제금은 구제명령시 명시한 '이행기간' 내에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용자에게만 부과되는 것임에도 규정상 이에 대한 기준이 미비하므로 '이행기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할 것과,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이행을 위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해 징수하는 조항(안 제118조의 7항)은 징수 절차가 불명확하여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행강제금 미납시 독촉절차'를 거치도록 절차규정을 명확히 할 것을 개선권고

(15)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신설3, 강화1)

■심사내용

○ 단체교섭이 근로조건 향상 등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근로조건과 관련 없는 교육정책, 교육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섭대상이 아님을 법률에 명시(신설)

☞ 단체교섭 사항중 근로조건과 직접관련이 없는 교육정책 등 비교섭 사항을 명시하여 원활한 교섭 진행을 위한 것으로, 공무원노조법 등 타법률에서도 규제수준이 동일한 조건을 명시하고 있고, 국제기준과 비교시에도 규제정도가 과다하지 않으므로 원안동의

○ 교섭질서 혼선 예방 및 교섭비용 절감을 위해 비례대표제 방식에 따라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교섭토록 하기 위해 부칙에 규정한 2006년말까지의 단일화 조건을 삭제(강화)

☞ 부칙의 교섭창구 단일화 시효규정을 삭제하여 비례대표제 교섭창구단일화 방식을 계속 유지하려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99년 법제정시부터 시행해 오면서 정착되어 가고 있는 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것이란 점, 공무원노조법에서도 복수노조허용시 교섭창구단일화 방안을 규정하고 있는 점, 피규제자수(93천명) 및 국제기준과 비교시에도 규제정도가 과다하지 않으므로, 원안 의결

○ 노조간 합의에 의하여 교섭단을 구성하는 경우 절차적 · 기술적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교섭의 효율적 실행 도모하기위해 교섭위원수를 10인 이내로 정하고, 7일간의 교섭요구 공고기간에 교섭을 신청하지 않은 노조의 교섭단구성 참여 배제하며, 합의에 의한 교섭위원 선임은 20일 동안 진행하고, 교섭단을 구성한 경우 관련 노동조합은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지체없이 사용자교섭대표에게 교섭단과 그 대표자를 통보(신설)

☞ 합의에 의한 교섭위원 선임에 있어 필요한 절차 및 기술적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합의과정에서 예상되는 다툼을 방지하고, 교섭의 효율적 실행을 지원하기 위한 절차적 규정이란 점에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또한, 공무원노조법에서도 교섭위원 수, 참여가능 노조 등에서 동일수준의 절차규정을 두고 있어 타법률과 비교시에도 규제수준의 적정성이 인정되며, 관련 3개 교원노조 등에서 이견이 없는 점, 피규제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안 의결

○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교섭단을 정하지 못한 노동조합에서 노동위원회에 교섭단 결정을 신청할 경우 노동위원회는 지체없이 조합원수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등 절차적 근거 규정 신설하고,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교섭위원수를 정하되,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배려하는 차원 에서 조합원수 1/100 이상인 노조에 1인씩 우선배정, 조합원수가 많은 노동조합 순으로 2인까지 배정(신설)

☞ 교섭단 결정신청과 관련한 노동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 사항으로 시행령에 규정할 내용은 조합비 일괄공제자료, 조합원 명부 등 절차적 사항으로써 교섭위원 선정을 위해 최소한의 확인절차를 위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또한, 미국 등 국제기준과 비교시에도 규제의 정도가 과다 하지 않아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되고,

교섭위원 수 결정은 기본적으로 비례대표제에 따라 교섭위원수를 정하도록 하되, 근로조건이 법률 등에 의해 통일적으로 정해지는 교원노사관계의 특성상 다양한 노조의 견해를 반영할 필요성이 있고 따라서 조합원수 1/100 이상 소수노조에 교섭위원을 1~2인까지 배정하려는 것은 소수노조의 교섭참여 기회 제공과 교섭의 효율성을 조화하는 방향으로 설정한 것이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안 의결

(16)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신설5)

■심사내용

○ 위험기계 · 기구 · 설비 및 방호장치 · 보호구를 제조하는 자는 제품의 성능과 품질관리 시스템을 확인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고,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인증이 취소된 제품은 제조 · 수입 · 양도 · 사용 등을 금지하며,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을 취소하고, 안전인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하거나 안전인증표시사용금지 또는 개선명령 해야 하며,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은 안전인증표시를 하여야 하며, 이를 임의로 변경 · 제거할 수 없으며 위험기계 · 기구 · 설비 및 방호장치 · 보호구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고 제품에 안전인증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신설)

☞ 현행 검사 · 검정제도는 완성품에 대해 성능검사만 확인하므로 불량제품의 제조 · 유통 및 사용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움에 따라 위험기계 · 기구 등의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인증 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등 타 법률에서도 규제 수준이 동일한 조건을 명시하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유사한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점, 규제비용면에서도 약 600억원의 경제적 편익 발생이 예상되는 점과, 관련단체 등 이해관계자와의 공청회('06.4.25), 세미나('06.7.6),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06.7.25)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고, 위반시 과태료 부분도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등 타 법률에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점 등 종합적 측면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나, 위험기계 등의 수입품도 안전을 위해 인증이 필요하므로, 동 사안과 관련한 수입업자도 안전인증을 받도록 개선 권고

○ 위험도가 비교적 낮고 생산기술이 보편화되어 안전인증대상에서 제외된 기계 · 기구 ·

설비 · 방호장치 및 보호구 등을 제조 · 수입하는 자는 스스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관련 서류를 기록하여 2년간 보존하고, 자율안전 확인 · 신고를 하지 않은 제품은 제조 · 수입 · 양도 · 사용 등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거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는 개선 · 수거 · 파기 등을 명할 수 있으며, 자율안전확인 ·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유사표시 및 광고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표시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위험기계 · 기구 · 설비 및 방호장치 · 보호구에 대하여 자율안전확인 · 신고를 하고 제품에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신설)

☞ 위험도가 비교적 낮고 생산기술이 보편화되어 안전인증대상에서 제외된 위험기계 · 기구 등의 제조 · 수입자에 대해 자율적으로 안전기준의 적합함을 확인하는 제도로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등 타 법률에서도 규제 수준이 동일한 조건을 명시하고 있고, 유럽 CE마크, 미국 UL마크 등 국제기준과 비교시에도 규제정도가 과다하지 않으며, 관련단체 등 이해관계자와의 공청회('06.4.25), 세미나('06.7.6),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06.7.25)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고, 위반시 과태료 부분도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등 타 법률에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안 의결

○ 위험기계 · 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사용중 검사를 받아야 하며 사용중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불합격한 기계 · 설비 또는 취소된 노사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기계 · 설비는 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위험기계 · 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사용중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기계 · 설비 또는 인정이 취소된 노사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기계 · 설비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신설)

☞ '사용중검사'가 기존 정기검사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상황에서 '사용중검사'제도를 도입할 경우 혼란만 가중시킬 소지가 있으므로 기존 검사제도를 보완하면서 존치시키자는 분과위 의견에 따라 노동부에서 본건 철회

○ 노동부는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경우 해당사업주에게 시설 · 설비 등 개선을 명하고 발암성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유해인자는 작업장 노출농도를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신설)

☞ 허용기준치 유지를 위한 설비 등의 준비기간을 위해 허용기준도입은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법률시행일부터 1년간 유예기간을 둘 것과 노동부(또는 노동부장관)가 정하는 경우로서 공학적 개선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예외 인정 근거를 법률에서 마련할 것을 개선 권고

○ 위험기계 · 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노사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후 관련 서류를 2년간 기록 · 보존해야 하며, 노사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2년간 기록 · 보존토록 하며, 그 결과를 기록 · 보존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신설)

☞ '사용중검사'제도 도입에 따른 파생건으로 동 검사제도의 철회에 따라 본건도 동시 철회

(17)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신설1, 강화1)

■심사내용

○ 현행 규정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나 국가기술자격증의 대여를 중개하는 행위도 금지(강화)

☞ 국가기술자격법령상 자격증 대여자 및 대여받은 자 외에도 대여중개자를 처벌하기 위해 대여중개행위를 금지하기위한 사안으로서, 현재 국가기술자격의 대여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증 중개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취업정보지, 전문브로커, 웹사이트 등을 통한 불법대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무자격자로 인한 산업현장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국가기술자격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신력 제고를 위해 규제의 타당성이 있으며 피규제자수가 불특정 소수이고 추가 규제비용이 거의 없는 점 등을 감안, 원안 의결

○ 노동부장관이 국가기술자격검정 수탁기관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무부장관이 수탁기관에 위탁 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 및 기준(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검정 위탁을 받은 경우, 2. 위탁업무를 위법 또는 부정하게 처리한 경우, 3. 제23조제2항의 위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을 마련(신설)

☞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현장성 강화를 위해 민간기관 · 단체에 검정위탁을 시행하고 있으나 수탁기관의 검정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허위 등 명백한 위법행위에 대한 검정위탁의 취소 등에 관한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소관부처 주무장관이 실효성이 있는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서 저작권법 등 타 법률에서도 동일한 규제가 있으며, 현재 국가기술자격 검정수탁기관과 동 개정사안에 대해 기 협의하였고, 관계부처 의견조회('06.9.5~9.15) 및 입법예고('06.9.19~10.9) 결과 이견이 없었으며, 국가자격시험의 사회적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한 점을 고려하여 원안 의결

(18)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신설2, 강화3)

■심사내용

○ 사무실 공기관리 규정의 적용범위를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정화시설을 갖춘 실내공간에서 근로자가 사무를 처리하는 모든 실내공간으로 확대(강화)

☞ 현재는 사무실 오염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규정의 적용대상을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정화설비를 갖춘 실내공간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공기정화시설이 없는 중소사업장 사무실의 경우 오염원으로부터 근로자 보호에 한계가 있어 동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사안으로 노 · 사 단체 및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간의 회의('06.4월~7월, 4회)를 통해 협의된 사항이며, 국내 · 외의 경우도 공기정화설비 설치 유무를 공기질 관리규정 적용대상으로 준용하고 있지 않으며, 동 규정의 적용대상 사무실 확대시 약 100만명 이상의 근로자가 공기오염 관리로 인한 건강보호가 예측되는 점, 공기정화설비 설치 여부에 따라 공기질관리 예방규정을 달리 적용할 경우 법 적용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점, 공기질관리 예방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소규모 중소사업장 사무실의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안 의결

○ 사업주의 건강장해 예방조치 대상 잠수작업범위를 잠수기를 이용하거나 공기압축기 · 수동펌프 또는 산소통을 이용하여 수심 10m 이상의 수중에서 행하는 작업에서 수중에서 압축공기를 호흡하면서 행하는 작업으로 확대(강화)

☞ 현재 사업주의 잠수에 관한 안전 · 보건 조치 의무를 10m 이상 수중에서 행하는 잠수작업 범위로 한정한 관계로 10m 미만 수중작업시 안전보건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중대재해 등 안전사고와 감압증 등 건강장해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잠수작업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10m 미만 수중 작업시에도 안전 · 보건 조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사안으로서 일본 등 국제기준(수중작업 범위)과 비교시 규제 정도가 과다하지 않으며 피규제자수가 476개소로서 소수이고, 이해관계자간 합의된 사항으로 원안 의결

○ 공기청정장치를 통과한 압축공기의 기준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KS G 7009(스쿠버 압축공기기준)를 만족토록 규정(신설)

☞ 잠수작업시 호흡용 공기의 질은 잠수작업자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공기압축기에서 생성된 공기의 질을 한국산업규격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잠수작업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안으로서, 피규제자수가 476개소로서 소수이고 동 규제에 따른 공기청정장치의 관리유지 비용이 크지 않으며, 한국산업잠수기술인협회 등 이해관계자와 합의하였고, 잠수작업자의 안전 및 건강을 보호하려는 점과 규제정도가 과다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안 의결

○ 고압 작업시 감압상황을 기록한 서류의 의무보존기간을 현행 '3년간'에서 '5년간'으로 연장하고, 현재 보존의무는 부과되어 있으나 기간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잠수작업 설비 등 점검결과의 보존기간을 5년으로 규정함(강화)

☞ 잠함 또는 잠수작업으로 인한 감압병 등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므로 고압작업의 상황을 기록한 서류를 좀 더 장기간 보존하도록 함으로써 감압병 판정 및 치료를 용이하게 하고 현재 보존의무만 부과하고 보존기간은 정하지 않은 잠수작업관련 설비의 점검결과에 대해 그 보존기간을 명확히 하여 설비의 유지 · 보수 등을 책임있게 수행토록 하고 잠수작업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사안으로, 피규제자수가 476개소로서 소수이고, 동 규제에 따른 추가비용이 미미한 한 점, 산업안전보건법 등 타법과 비교시 규제 정도가 과다하지 않으며, 수중건설협의회 등 이해관계자와 합의한 사항으로 원안 의결

○ 석면의 해체 · 제거 작업시 석면이 함유된 자재의 종류 · 위치 및 범위 등의 상태를

기록하고, 석면 해체 · 제거작업의 조치기준으로 관계자외 출입금지, 흡연 · 취식 금지, 목욕설비의 설치, 전면형이상의 방진마스크 지급 및 착용, 신체를 감싸는 보호의 착용, 장소밀폐, 습식작업, 음압유지를 규정(신설)

☞ 석면은 폐암 등 치명적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서 석면 해체 · 제거 작업은 엄격한 조치기준을 따르지 않으면 근로자뿐 아니라 인근 주민까지 피해 확산 가능성이 있고, 해체 · 제거 작업시에도 제조 · 사용시와 마찬가지로 기준에 따라 작업하게 함으로써 근로자가 석면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안으로 피규제자수가 전문업체 8개소로서 소수이고, 동 규제에 따른 위생시설 설치비 등 제반경비가 업체당 7백만원 미만으로 크지 않으며, 영국 등 국제사례와 비교시에도 규제 정도가 과다하지 않고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집단과의 충분한 토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석면재료의 유해성이 매우 큰 점과, 국제기준에 비춰 규제의 정도가 과다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원안 의결

2. 여성가족부

집필자 : 노혜원 사무관(Tel. 2100-2447, woniroh@opc.go.kr)

가. 2006년도 신설 · 강화규제심사 개요

❍ 2006년도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의 법령에 대해 신설 2건, 강화 6건, 내용심사 1건 등 총 9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9건 중 5건은 원안 의결, 4건은 개선권고를 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여성가족부의 2006년도 총 신설규제는 2건임

< 여성가족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영유아보육법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	제282차 행정사회분과 (2006.3.10)	개선권고 1 원안의결 1	신설 1 내용심사 1건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제304차 행정사회분과 (2006.9.28)	개선권고 3 원안의결 4	강화 6, 신설 1 *중요3, 비중요4
계	–	개선권고 4 원안의결 5	신설 2 강화 6 내용심사 1 *중요3, 비중요6

나. 2006년도 신설 · 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 (신설1, 내용심사1)

■심사내용

○ 국공립, 법인보육시설 및 민간보육시설중 40인 이상 보육시설에 운영 위원회 설치 · 운영을 의무화 (신설)
*현재 40인 이상 민간보육시설은 약 4,600개(전체 민간보육시설의 20%에 해당)

☞ 영유아 보육환경의 개선, 국가재정지원에 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어 원안동의하되, 보육시설운영위원회 표준 운영안 및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운영 관련 교육방안 등 세부지침 마련시 이를 규제개혁위원회에 보고토록 함

○ 보육우선제공자 범위 확대 (내용심사)
– 국공립 및 법인 등 보육시설의 우선 이용 대상에 ① 중증장애인의 자녀, ②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③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④ 그 밖에 가계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여성부장관이 정하는 영유아를 추가하고, 보육우선제공의무 불이행시 과태료부과 대상이 확대됨

☞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결정되는 등 규제가 불명확하므로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9조 2항 3호 '그 밖에 가계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여성부장관이 정하는 영유아'를 삭제할 것을 개선권고

(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강화6, 신설1)

■심사내용

○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장의 자격기준 신설(강화)
-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 후,가정폭력업무에 3년 이상 종사경력자, 상담원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경력자, 7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이상 경력자

☞ 당초 여성부(안)은 상담소 장의 경우 2년 이내 자격을 갖출 것을 요구하였으나, 입법예고시 제출된 의견을 반영, 상담원 자격이 없는 경우 교육과정 이수로 대체하는 등 그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등 규제비용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의결

○ 상담원 교육훈련 시설 설치신고 및 설치기준 (신설)
- 가정폭력관련 교육훈련시설을 설치 ·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 · 군 ·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함 (최소면적 33㎡, 수강생 70명 이하 등, 수강료는 여성부장관이 정하는 상한내에서 정함)

☞ 교육훈련시설을 제도화하고자 새로이 시설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으로 설치기준 자체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없었으며, 여타 훈련시설에서 정하는 기준과 유사하여 원안의결

○ 상담소 등의 폐지 · 휴지 · 재개 (강화)
- 상담소 · 보호시설 · 교육훈련시설을 폐지하는 경우 등에는 입소자의 조치계획서 등 서류를 첨부하여 시 · 군 ·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함

☞ 재산의 처분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하는 등 기존규정을 보완하는 것이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의결

○ 상담소 등의 행정처분 기준 (강화)
- 교육훈련시설 설치기준 미달 등의 경우가 행정처분 요건에 포함됨

☞ 교육훈련시설 설치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대한 행정처분 요건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법령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으로 판단되므로 원안의결

○ 가정폭력상담소 설치신고 및 설치기준 (강화)
- 설치신고 : 상담소 설치신고 절차 및 신고 구비서류를 구체화(임대차 계약서, 평면도, 종사자 명단 등)
- 설치기준 : 시설면적 및 종사자 수를 구체화(49.59㎡, 상담소장 1인, 상담원 2인 이상, 상담소장과 상담원 겸임 불가)

☞ 상담소 시설기준 충족을 위해 시행규칙 부칙 제2조에 3년간 유예기간을 두었으며, 시설기준의 경우 성매매피해상담소, 종사자수의 경우 성폭력피해상담소 기준을 원용하고 있어 그 타당성이 인정됨. 다만, 상담원 수가 1인에서 2인으로 확대시 상담소장의 상담원 겸직에 따른 부실운영 문제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모든 상담소에 종사자 3인을 고용토록 하는 것은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바, 상담소장과 상담원의 겸직을 허용토록 개선권고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설치인가 및 설치기준 (강화)
- 설치인가 : 보호시설 설치인가 절차 및 인가신청시 구비서류를 구체화 (임대차 계약서, 평면도, 종사자 명단 등)
- 설치기준 : 시설면적 구체화 (10인 이상시 13.22㎡×입소정원, 10인 미만시 82.62㎡ 이상) * 기존 1인당 3.3㎡
- 종사자 수 구체화 : 상담소장과 상담원 겸임 불가, 10인 미만 장1인,상담원2인 / 10인~30인시 장1인, 상담원3인, 보조인력1인 등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는 종전 보호시설은 1년 이내에 시설기준을 충족토록 요구하고 있는 바, 동 시행규칙 개정안은 기존 보호시설에 과다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음. 보호시설이 짧은 기간 내 설치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10인 이상일 경우에는 유사법령인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1(9.9㎡×입소정원)의 기준을 적용하고, 종사자기준은 보호시설의 장과 상담원이 겸직가능하도록 개선권고

○ 상담소 등의 상담내용 등 보존·보고 의무 (강화)

- 기록의 보존 : 기존의 상담내용 및 보호실적 보존의무 외에, 상담원의 교육훈련실적(교육훈련시설의 경우) 및 기타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보존토록 함
- 보고 : 상담실적 등을 기존 매년 보고하던 것을 반기별 보고토록 함

☞ 투명한 예산집행, 가정폭력 관련 기관의 관리를 위해 기록 보존 및 반기별 보고 의무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규제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을 위해 제13조 3호 '기타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구체화 또는 삭제할 것을 개선권고

3. 국가청소년위원회

집필자 : 노혜원 사무관(Tel. 2100-2447, woniroh@opc.go.kr)

가. 2006년도 신설 · 강화규제심사 개요

❍ 2006년도에는 청소년활동진흥법률, 청소년성보호의관한법률, 청소년복지지원법 등 3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6건, 강화 5건 등 총11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1건 중 2건에 대하여는 개선 권고하고, 9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청소년위원회의 2006년도 총 신설규제는 6건임

< 국가청소년위원회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	제300차 행정사회분과 (2006.9.6)	원안의결 5	신설 3, 강화 2 *비중요 5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제306차 행정사회분과 (2006.10.26)	원안의결 3 개선권고 1	신설 1, 강화 3 *중요 4
청소년 복지지원법 개정안	제307차 행정사회분과 (2006.11.2)	원안의결 1 개선권고 1	신설 2 *중요1, 비중요1
계	-	원안의결 9 개선권고 2	신설 6 강화 5 *중요5, 비중요6

나. 2006년도 신설 · 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신설3, 강화2)

■심사내용

○ 인증의 사후관리 (신설)
- 인증위원회는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시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고, 수련시설 등에 대한 인증사항의 이행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초 인증내용과 차이가 있는 경우, 시정요구 가능

☞ 일정한 기간내 인증 재심사를 통해 프로그램의 품질 유지 등 인증의 유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로서 기존 법률의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한 것이며 이해관계자 의견도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하여 원안의결
*유효기간 등 세부 규제사항은 총리령을 통해 규정될 것임

○ 인증의 취소 (신설)
- 인증위원회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인증활동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 인증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 인증의 전부 · 일부를 정지할 수 있으며, 정지명령에 위반하여 인증활동시 인증 취소

☞ 인증 사후관리를 위해 기존 법률상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서, 인증관련 유사 법률인 산업표준화법 및 친환경농업육성법에도 동일 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해관계자 의견도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하여 원안의결

○ 인증받은 청소년활동의 결과통보 (강화)
- 청소년이용시설, 개인 · 법인 · 단체 등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지정을 받은 경우를 5년 이내에 인증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포함

☞ 인증 사후관리를 위해 기존 법률상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서, 인증제도의 신뢰성 등 고려시 그 타당성이 인정되며, 이해관계자 의견도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하여 원안의결
*피규제대상인 수련시설은 현재 총 723개

○ 동일명칭의 사용금지 (신설)
- 인증이 취소된 경우나,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인증활동 또는 청소년활동 인증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안됨

☞ 인증제도 운영상의 신뢰성 확보 등 인증 사후관리 차원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되고 해관계자 의견도 없으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하여 원안의결
*청소년활동 인증제는 06.3월부터 시작되었으며, 현재 10개 활동이 인증받았음

○ 과태료 (강화)
-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활동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포함

☞ 인증제도 운영상의 신뢰성 확보 등 인증 사후관리 차원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되며, 이해관계자 의견도 없으며, 인증관련 유사법률인 산업표준화법 및 친환경농업 육성법 보다 덜 규제적이므로 비중요규제로 판단하여 원안의결

(2)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신설1, 강화3)

■심사내용

○ 지상파 방송 사업자의 홍보영상 송출의무 (신설)
- 방송법 제2조의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성범죄의 예방과 계도, 수사와 재판, 피해자의 치료와 재활 등 청소년 성보호를 위한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월 1회이상 송출하도록 의무 부과

☞ 지상파 방송의 홍보효과가 큰점은 인정하지만 지상파 방송사업자에게 방송사업과 무관한 목적을 위해 홍보영상 송출의무를 신설하는 것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됨.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한 홍보영상은 정부예산 확보를 통해 홍보하는 방법, 방송사와 행정적으로 협의하여 공익광고에 편성 토록 하는 방법 등 다른 규제 대안으로 동일 목적달성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법률에는 협조요청('1회이상 송출하여야 한다'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규정만 두고 시정요구 · 과태료 규정은 삭제하도록 개선권고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신고 의무 (강화)

-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 초중등교육기관 · 아동복지시설 · 학원 · 청소년 보호센터 등의 종사자 및 그 장외에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 · 치료 · 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및 소방법상 구급대원 추가
- 신고의무자는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뿐만 아니라 발생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으로 변경
- 의무불이행시 제재(과태료 부과) 신설 : 신고의무자가 성범죄 발생사실을 알면서도 의무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은폐가능성과 범죄의 지속가능성이 커서, 신고의무자의 신고가 절실하나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비율이 미국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실정이므로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제재규정의 도입은 아동성범죄의 조기발견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범위라고 인정되므로 원안동의

○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열람제도(강화)

등록제도		
구분	**현행**	**개정안**
등록대상	청소년대상 강간, 강제추행으로 2회이상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중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자(청소년위원회 결정)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의 확정판결 받은자 전원
등록정보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현직장 및 실제 거주지 주소 ④ 사진(등록일 기준 6월이내에 촬영된 것)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⑤ 사진(등록일 기준 6월이내에 촬영한 것), ⑥ 소유차량등록번호 ⑦ 지문과 유전자감식정보, ⑧ 범죄경력
등록기간	5년(형집행후)	10년
결정권자	국가청소년위원회	법원

열람제도		
열람대상	등록대상자와 동일	① 13세미만 대상 성범죄로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자 ② 그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의 확정 판결 받은 자중 법원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한 자
결정권자	국가청소년위원회	법원
열람정보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현 직장 및 실제 거주지 주소, ④ 사진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④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⑤사진
열람권자	① 등록대상자의 범죄사실과 관련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친족 또는 변호인 ②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	① 등록대상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시군구내에 거주하는 자중 아동청소년을 보호자로 둔자 ② 등록대상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시군구내의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의 장
열람장소	지방경찰청	관할경찰서

☞ 최근 등록 · 열람대상이 아닌 성범죄자에 의한 아동청소년 범죄사건('06.2)이 발생하는 등 등록대상이 극히 제한적이여서(전체 심의대상 10,910명중 27명) 발생하는 문제해결을 위해서 등록 · 열람 대상의 확대 필요성이 인정되며, 등록정보중 추가되는 ① 소유차량등록번호 ② 지문과 유전자 감식정도 ③ 범죄경력은 효과적인 범죄수사차원에서 필요한 정보라고 판단됨. 등록기간 열람확대의 경우 5년이후 재범사례가 많고 성범죄자 교정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필요성이 인정됨. 기존의 인터넷상의 신상공개제도를 폐지하고 지역내 아동청소년의 보호자에게 열람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규제사항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동의

○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청소년관련 교육기관 취업제한 (강화)

	현행	개정안
기간	형확정후 5년	아래때로부터 10년 ① 형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때 ② 형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이 확정된때 ③ 형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이 확정된때
대상기관	유치원을 비롯한 각급학교 및 청소년 시설,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한 청소년 지원시설 및 성매매 피해 상담소,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사무소, 체육시설의 처치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체육시설이 추가됨

	현행	개정안
금지행위	취업 및 시설운영금지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행위 추가
점검확인	신설	청소년위원회가 취업제한대상자의 취업여부 확인을 할 수 있는 권한 신설

☞ 아동청소년과 직접적·항시적으로 접하는 기회가 많은 관련 업종 종사자들의 성범죄 발생건수(8차:31명→9차:35명→10차35명)가 늘고 있으므로 취업대상기간에 아동청소년과 접하는 기회가 많은 직종을 추가하고, 범죄자의 교정에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됨을 감안하여 취업 제한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는 것과 아동청소년 이용시설까지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동의

(3)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신설2)

■심사내용

○ 청소년쉼터 설치·운영·휴지·폐지 신고 및 시설개선, 사업정지 폐쇄(신설)
- 국가·지자체外의 자로써 청소년쉼터를 설치, 폐지·휴지, 운영재개를 할 때는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청소년위 위원장, 시도지사등은 시설이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등의 경우 청소년쉼터에 시설개선, 사업정지, 위탁 취소·시설장 교체·시설폐쇄를 명할 수 있음
- 휴지폐지 신고의무 위반시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청소년쉼터는 ① 가출청소년에 대한 일시적 생활지원 및 선도, ② 가정과 사회로의 복귀, ③ 중장기적으로 자립, ④ 문제행동의 수정 및 심리치료를 위하여 설치된 복지시설로, 가출청소년 실태 등 현황파악과 관리 차원에서 신고제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신고제 전환을 계기로 제도가 제대로 도입·정착되고, 규제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① 청소년쉼터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과 경비지원 합리화방안을 마련·보고하고 ('07.4) ② 청소년쉼터 설치·운영신고 등의 위반자에 대한 벌칙규정은 과태료 규정으로 완화하며 ③ 기타 동사항과 관련된 법조문 구성 등은 향후 법제처심사에서 제도취지에 맞게 수정토록 개선권고함

○ 청소년복지시설 등 조사 (신설)

– 청소년위위원장, 시 · 도지사 등은 필요시 청소년복지시설과 청소년의 주소 · 거소, 청소년의 고용장소 또는 기타 장소에 출입하여 청소년 ·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의 출입 · 검사를 거부방해 · 기피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 청소년복지시설 · 청소년고용시설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 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필요 최소한의 규제이므로 원안의결

제10절 보건복지분야

집필자 : 최태용 사무관(Tel. 2100-2450, choity@opc.go.kr)

1. 보건복지부

가. 2006년도 신설 · 강화규제심사 개요

❍ 2006년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장사등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 정신보건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식품위생법 시행령,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 45개의 법령 등에 대해 신설 22건, 강화 81건, 내용심사 32건 등 총 135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35건 중 6건에 대하여는 철회 권고, 16건에 대하여는 개선 권고, 113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보건복지부의 2006년도 총 신설규제는 17건임

<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신의료기술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2006.2.7)	개선권고 1	강화 1 *중요1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예비심사 (006.3.6)	I원안의결 5	강화 4 내용심사 1 *비중요5
한국 국제 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2006.3.7)	원안의결 3	내용심사 3 *비중요3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283차 행정사회분과 (2006.3.17) 제163차 본회의 (2006.3.24)	원안의결 1 개선권고 1	강화 2 *중요2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286차 행정사회분과 (2006.5.12)	원안의결 1 개선권고 3	내용심사 4 *중요3, 비중요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87차 행정사회분과 (2006.5.19)	원안의결 6 철회권고 1	신설 4 내용심사 3 *중요1, 비중요6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288차 행정사회분과 (2006.5.26)	원안의결 4 개선권고 1	내용심사 5 *중요2, 비중요3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제288차 행정사회분과 (2006.5.26) 제289차 행정사회분과 (2006.6.9)	원안의결 3	강화 3 *중요1, 비중요2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93차 행정사회분과 (2006.7.6)	원안의결 2	강화 1 내용심사 1 *비중요2
장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93차 행정사회분과 (2006.7.6) 제294차 행정사회분과 (2006.7.11) 제168차 본회의 (2006.7.11)	원안의결 12 철회권고 3	신설 6 강화 9 *중요5, 비중요1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95차 행정사회분과 (2006.7.20)	원안의결 6 개선권고 1	신설 4 강화 2 내용심사 1 *중요4, 비중요3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296차 행정사회분과 (2006.8.17)	원안의결 3	강화 3 *중요1, 비중요2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개정안	제296차 행정사회분과 (2006.8.17)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제297차 행정사회분과 (2006.8.24)	원안의결 6	내용심사 6 *중요1, 비중요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제297차 행정사회분과 (2006.8.24)	원안의결 1 개선권고 2	강화 3 *중요2, 비중요1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01차 행정사회분과 (2006.9.14)	원안의결 4	신설 4 *중요1, 비중요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제303차 행정사회분과 (2006.9.21)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304차 행정사회분과 (2006.9.28)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인체위해성 심사규정 제정안	제304차 행정사회분과 (2006.9.28)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중요1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제305차 행정사회분과 (2006.10.19)	원안의결 1 개선권고 1	강화 1 내용심사 1 *중요1, 비중요1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305차 행정사회분과 (2006.10.19)	원안의결 2 개선권고 1	강화 3 * 중요3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306차 행정사회분과 (2006.10.26)	원안의결 7	강화 6 내용심사 1 *중요3, 비중요4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 개정안	제307차 행정사회분과 (2006.11.2)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307차 행정사회분과 (2006.11.2)	개선권고 1 철회권고 1	신설 1 내용심사 1 * 중요2
국외여행자의 예방접종에 관한 수수료 제정안	제308차 행정사회분과 (2006.11.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전염병병원체 검사·보존 및 관리규정 전부 개정안	제308차 행정사회분과 (2006.11.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	제308차 행정사회분과 (2006.11.9)	원안의결 4 개선권고 1	강화 4 내용심사 1 *중요1, 비중요4
피부양자인정기준 개정안	제309차 행정사회분과 (2006.11.16)	원안의결 1	강화 1 *중요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및 신의료 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	제308차 행정사회분과 (2006.11.9) 제309차 행정사회분과 (2006.11.16) 제174차 본회의 (2006.11.23)	원안의결 4 개선권고 2	신설 1 강화 5 *중요6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	제311차 행정사회분과 (2006.12.1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제312차 행정사회분과 (2006.12.19)	원안의결 5	강화 5 *중요1, 비중요4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312차 행정사회분과 (2006.12.19)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약사법 개정안	제312차 행정사회분과 (2006.12.19)	원안의결 8	신설 1 강화 7 *비중요8
의료기기법 개정안	제312차 행정사회분과 (2006.12.19)	원안의결 3	강화 3 *중요1, 비중요2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312차 행정사회분과 (2006.12.19)	원안의결 2 개선권고 1	강화 2 내용심사 1 *중요1, 비중요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312차 행정사회분과 (2006.12.19)	원안의결 3	강화 2 내용심사 1 *중요2, 비중요1
혈액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313차 행정사회분과 (2006.12.28)	원안의결 6	강화 6 *중요1, 비중요5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제313차 행정사회분과 (2006.12.28)	원안의결 1 철회권고 1	신설 1 내용심사 1 *중요1, 비중요1
계		원안의결 113 개선권고 16 철회권고 6	신설 22 강화 81 내용심사 32 중요 51

나. 2006년도 신설 · 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신의료기술의 결정 및 조정기준(강화 1)

■심사내용

○ 동일목적 제품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와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및 기타의 경우에 대한 치료재료의 보험급여 상한금액 산정기준을 정하고 임상적 효능 · 효과 등에 대한 자료제출 등을 규정(강화)

☞ 동일목적 제품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제조 · 수입(FOB) 원가가 판매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제품은 원가 수준을 참고하여 산정'토록 하는 규정은 기업의 원가절감 노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최초 제품을 등재하는 경우에 한정하도록 하고, 상위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임상적 효능 · 효과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사업자가 자사제품의 효능 등을 입증하기 위해 자발적인 서류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무적 제출이 아닌 임의적 제출로 문구를 수정하며,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규정은 동 기준이 기업 및 국민의 권리와 부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므로 관련사항을 내부지침으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삭제하도록 개선 권고

(2) 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강화 4, 내용심사 1)

■심사내용

○ 설립시 정관, 자산명세서 및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하는 대상에 약사회 외에 대한한약사회 추가(강화)

☞ 약사회와 법인 성격이 동일하다는 점을 감안시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 의결 (비중요규제)

○ 설립등기후 3주일 내에 특별시 · 광역시와 각도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에 약사회 외에 대한한약사회 추가(강화)

☞ 약사회와 법인 성격이 동일하다는 점을 감안시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 의결(비중요규제)

○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상에 약사 외에 한약사 추가(내용심사)

☞ 법 79조에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규정되어 있고, 약사와 동일수준에서 과태료를 정함에 따라 원안 의결(비중요규제)

○ 매년 6시간 이상 연수교육 대상에 약사 외에 한약사를 추가하고, 연수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얻고 전년도 연수교육실적을 보고해야 하는 대상에 약사회 외에 한약사회 추가(강화)

☞ 한약사 연수교육은 약사의 연수교육과 동일한 수준이므로 원안 의결(비중요규제)

○ 법에 의한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경고 및 자격정지를 받는 대상에 약사 외에 한약사 추가(강화)

☞ 약사와 동일하게 한약사가 연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자격정지를 추가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비중요규제)

(3)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시행령(내용심사 3)

■심사내용

○ 재단이 기부금품 모집시 기부금품모집 승인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승인 및 승인서 교부(내용심사)

☞ 사업이 상당부분 기부금품 모집을 통해 추진될 예정이므로 재단의 무분별한 모집 행위 및 방만한 운영 방지를 위해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 의결(비중요규제)

○ 재단이 자금차입 승인을 얻고자 할 경우 승인신청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차입자금의 누계액은 연간예산의 50/100을 초과할 수 없음(내용심사)

☞ 상당부분 국고 및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재단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 의결(비중요규제)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아닌 자가 재단 명칭 사용시 400만원, 유사명칭 사용시 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징수(내용심사)

☞ 과태료는 법 31조에서 정한 한도(500만원)내이며, 재단명칭의 불법적 사용으로 인한 국민과 기업의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 의결(비중요규제)

(4)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강화 2)

■심사내용

○ 시설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하는 공중이용시설 대상을 확대하고 PC방 · 만화방 등의 금연구역을 1/2에서 완전금연구역으로 규제 강화(강화)

☞ 사무용 건축물 및 정부청사 등에 대해서는 금연구역 확대에 동의하나 공원 및 산림을 추가 지정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삭제할 것을 권고하고, PC방 · 만화방 등의 금연구역을 완전금연구역으로 하는 것은 현 규정이 시행된지 3년이 되지 않았고, 현행 규정의 철저한 준수를 통해서도 간전흡연의 피해 방지가 가능하다고 보이므로 우선은 관련협회와 협조하여 홍보 및 계도, 지도점검 등 현행 금연구역 준수율 제고를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향후 완전금연구역 확대 또는 차단시설 기준 강화 등 추진방안을 현행 금연구역 준수율과 연계하여 수립 · 실시하겠다는 행정예고제를 도입할 것을 개선 권고

○ 제조담배의 담배갑 포장지의 경우 흡연경구문구 표시 넓이를 100분의 20이상에서 30이상으로 확대하고, 잡지를 이용하는 광고의 경우에도 흡연경고문구 표시 넓이 확대(강화)

☞ 우리나라가 비준('05.5.16)한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규정된 사항이며, 이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으로 시행중이므로 원안 의결

(5) 모자보건법 시행령(내용심사 4)

■심사내용

○ 산후조리원 근무자중 건강진단 대상자 범위, 실시방법, 전염병 감염자의 산후조리원 종사 배제, 감기·안과질환 등 전염성 있는 질환의 경우 종사자의 치료기간중 산후조리업무 배제 등 규정(내용심사)

☞ 면역력이 떨어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므로 '건강진단 연1회 이상 실시' 규정과 관련해서는 법 제15조의5의 제2항에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는 산후조리업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의 취지를 고려하여 채용시에도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개선 권고

○ 인력미비, 건강진단 미수검자 종사 등 산후조리업자의 의무위반시 업무정지 및 폐쇄명령의 행정처분 세부기준 마련(내용심사)

☞ '임산부 또는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의 의심되거나 발생하는 때에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시정명령 후 2차 위반시 곧바로 폐쇄명령하는 것은 질병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과도한 행정처분이 될 수 있는 바, 이를 경중에 따라 행정처분을 세분화 할 것을 개선 권고

○ 과징금의 세부기준, 부과절차, 과징금 미납부자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등 규정(내용심사)

☞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 규정 '과징금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중 '징수절차'는 상위법에서 위임하지 않았는 바, '과징금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로 수정할 것을 개선 권고

○ 과태료가 50만원이하에서 200만원, 100만원 이하로 상향됨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함(내용심사)

☞ 법 위임 범위안에서 정한 것으로 원안 의결(비중요규제)

(6) 국민건강보험법(신설 4, 내용심사 3)

■심사내용

○ 요양기관이 다른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건강보험법상 인정되는 기준을 벗어난 급여를 행하도록 하여 과다한 비용이 지급된 경우, 그 원인을 제공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비용을 환수함(신설)

☞ 의사에게 불이익을 배상케 할 논리적 타당성이 부족하며, 실제 약제비 환수를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어야 하는 바, 현 제도상으로는 사실상 가능하지 않으므로 철회 권고

○ 과징금을 체납한 채로 급여를 행하는 요양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원처분)으로의 회귀를 규정(신설)

☞ 원안 의결(비중요규제)

○ 국민건강보험, 그 사업 수행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신설)

☞ 원안 의결(비중요규제)

○ 현행 시행규칙(제4조)상 사용자의 신고의무(건강보험 적용 대상사업장에 해당되게 된 사실 등)를 법으로 규정하고, 위반시 과태료(100만원 이하) 규정 신설(신설)

☞ 직장가입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 의결(비중요규제)

○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규정된 요양급여비용 대행청구의 예외적 허용과 대행청구단체 종사자의 비밀유지, 보고의무 등 부과 및 위반시 벌칙 규정 통합(내용심사)

☞ 원안 의결(비중요규제)

○ 업무정지처분 진행 중 또는 확정 후 폐업하고 새로이 개설된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 부과(내용심사)

☞ 원안 의결(비중요규제)

○ 현행 보험료 산정시 등급제를 폐지하여 실제 보수 또는 소득 등과 일치시킴(내용심사)

☞ 적용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사회보험의 원리는 실질부과를 포함하는 바, 평균적인 개념의 등급제를 통한 부과보다는 실제 발생하는 보수 또는 소득 등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며 실질적으로 규제내용에 큰 변화가 없으므로 원안 의결(비중요규제)

(7) 모자보건법 시행규칙(내용심사 5)

■심사내용

○ 산후조리업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기준을 규정함(내용심사)

☞ 면역력이 떨어지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최소한의 기준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 의결

○ 첨부서류 등 산후조리업 신고의 방법과 절차 규정(내용심사)

☞ 원안 의결(비중요규제)

○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기록부를 기록하여 1년간 보존하고 폐업 · 휴업시 건강기록부를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이관(내용심사)

☞ 원안 의결(비중요규제)

○ 산후조리업자가 받아야 할 교육시간 등 산업조리업 교육의 방법과 교육기관을 규정함(내용심사)

☞ 산후조리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경영을 담당하는 산후조리업자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8시간 이상의 산후조리 교육을 이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판단되므로 산후조리업 신규개설시 8시간 교육후 격년제로 매 2년마다 8시간 교육하는 것으로 개선 권고

○ 산후조리업자의 인력 및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등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즉시 그 시정을 명하거나 6월의 범위내에서 시정을 명하도록 규정(내용심사)

☞ 원안 의결(비중요규제)

(8)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강화 3)

■심사내용

○ 전문간호사 자격인정을 위한 교육기간, 교육자격, 교육과정, 이수학점과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기준을 규정(강화)

☞ 교육기간을 2년으로 명시하는 규정만이 신설되는 사항으로 현행 33학점 이수를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최소 2년이상이 필요하고 교육과정의 변칙운영 방지를 위해 이를 명시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 의결

○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지정 기준, 교육생 정원관련 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의 교육기관에 대한 지도 · 감독, 교육기관 지정기준 미달 등의 경우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등을 규정(강화)

☞ 원안 의결(비중요규제)

○ 자격시험 응시 수수료 납부, 시험과목 구분, 응시자격의 제한 등 규정(강화)

☞ 원안 의결(비중요규제)

(9)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강화 1, 내용심사 1)

■심사내용

○ 현행 '감염인에 대한 치료지시'를 감염인 스스로 치료 및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절차법에 따라 권고 · 조언하고, 이에 불응시 치료를 명하고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을 명확화(내용심사)

☞ 감염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치료관련 절차를 투명화 하는 것으로서 원안 의결(비중요규제)

○ 사용자의 HIV감염인에 대한 다른 근로자와 균등한 처우, AIDS 환자에 대한 다른 질병에 걸린 근로자와 균등 처우 보장을 명시(강화)

☞ AIDS는 제3군 법정전염병으로 전파경로가 정확히 밝혀져 일상생활을 통해서는 감염되지 않는 비격리성 질병이나, 감염된 사실이 알려지면 권고사직 등 직장내 차별이 발생하고 이는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생존의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는 사항임. 미국 등 선진국, WHO, ILO에서도 다른 근로자와의 동일한 처우를 권장하고 있는 바, 감염자 보호 및 사용자인식 제고를 위해 균등한 처우의무 명시는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의결(비중요규제)

(10) 장사등에관한법률(신설 6, 강화 9)

■심사내용

○ 자연장의 방법, 수목장림의 설치 · 운영, 자연장구역의 지정 등 규정(신설)

☞ 국민들이 장사방식을 새로이 선택할 수 있도록 자연친화적인 자연장제도 도입은 필요하며, 기존 장사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 의결

○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또는 관리비 부과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사항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고, 타지역주민이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차등 부과할 수 있으며 사용료 등은 인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신설)

☞ 장사시설을 혐오시설로 인식하여 설치를 기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의 극복을 위한 장사시설의 설치 · 미설치 지역간 사용료 · 관리비 차등부과는 타당하며 대부분의 화장시설에서 사용료 등을 차등부과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비중요규제)

○ 사설봉안시설 등의 관리주체 중 종교단체를 종교법인으로 강화하고, 자연장제도 도입에 따라 사설자연장구역의 관리주체를 재단법인, 종교법인, 공공특수법인으로 규정(강화)

☞ 관리주체중 종교단체를 종교법인으로 하는 것은 자칭 유사종교단체의 편법운영 등으로 공공성, 안정성 및 영속성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감사원등에서 개선 · 보완을 권고한 사항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의결(비중요 규제)

○ 보건위생 · 재해 예방 및 시설물관리 등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장사시설의 정비 · 개선명령을 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신설)

☞ 보건위생 · 재해 예방 및 시설물관리 등 공공복리를 위하여 장사시설의 위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는 것은 최소한의 규제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비중요규제)

○ 장사시설을 설치 · 관리하는 자는 당해 묘지 및 봉안시설 · 자연장구역의 재해복구 · 재해예방 · 시설물관리 및 재건축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리금을 적립토록 하고 관리금의 적립대상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절차, 방법 및 지출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신설)

☞ 관리금 적립은 사업자 및 시설이용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나 장사시설이 집중호우 및 폭설 등 기상이변에 취약하고 봉안시설 및 자연장의 경우는 안치기간이 영구적이라는 점을 감안시 적절한 관리를 위한 관리금 적립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 의결(비중요규제)

○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 보호구역 등에 설치가 제한되는 대상에 자연장구역 추가(강화)

☞ 기존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의 묘지등의 설치제한 대상에 자연장 도입으로 자연장구역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 의결(비중요규제)

○ 봉안시설 중 봉안묘 높이는 70센티미터로 하고, 1기당 면적은 2제곱미터로 제한. 봉안묘 · 봉안탑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상석 · 비석 등 시설물의 종류 및 크기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강화)

☞ 과다한 석물사용으로 인한 환경 훼손 및 경제적 부담 등 부작용의 방지를 위하여 봉안묘 설치기준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고, 봉안묘 기준을 선진국 사례와 비교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 의결

○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토록 되어있는 사용료 · 관리비 (변경)신고대상에 자연장구역 추가(강화)

☞ 자연장제도 도입에 따른 사용료 · 관리비 신고대상에 자연장구역을 추가하려는 것으로서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 의결(비중요규제)

○ 폐지시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에 자연장구역 추가(강화)

☞ 자연장제도 도입에 따라 폐지신고 대상에 자연장구역을 추가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비중요규제)

○ 장례식장을 설치 ·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례식장을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영업신고하고, 장례식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으로 정하며,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장례식장 설치기준 위반시 시정을 명할 수 있음을 규정(신설)

☞ 장례식장업의 신고제 전환은 사체의 위생적인 관리 등 기본적인 사항이 현행 규정에도 있고, '98년 자유업 전환이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경쟁을 통한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등의 측면도 있으므로 철회 권고

○ 장례지도사의 자격기준 및 자격증의 교부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장례지도사의 직무, 결격사유, 자격의 취소, 보수교육 등을 규정(신설)

☞ 국가장례지도사 자격제도 도입도 현행 민간 장례지도사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이 크게 부각되지 않고 있으므로 철회 권고

○ 자연장구역지정 규정에 위반하여 자연장구역을 설치한 경우와 자연장설치제한지역 규정을 위반한 경우, 묘지 및 봉안시설 등의 관리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에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해당 시설에 대하여 이전 · 개수, 허가 · 지정의 취소, 시설의 폐쇄, 시설의 전부 · 일부의 사용금지 또는 6월의 범위내에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강화)

☞ 원안 의결(비중요규제)

○ 처분 및 시정 명령 등에 갈음하여 3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에 자연장구역 설치 위반자에 대한 처분 추가(강화)

☞ 원안 의결(비중요규제)

○ 관계공무원의 검사 · 조사 대상 및 보고 대상에 사설 자연장구역 및 설치자 추가(강화)

☞ 원안 의결(비중요규제)

○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는 사항에 장례식장 설치기준 위반 추가(강화)

☞「장례식장영업 신고 및 시정명령」 규제에 대한 철회권고에 따라 이에 부속되는 동 규제도 철회 권고

(11) 노인복지법(신설 4, 강화 2, 내용심사 1)

■심사내용

○ 노인복지주택 분양 · 임대 등의 자격을 갖는 노인 연령을 노인복지법시행규칙에서 노인복지법으로 상향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신설하며, 무자격자(60세 미만의 자)에게 분양 · 임대 · 입주시 이의 시정을 명한 후, 미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신설)

☞ 노인복지주택은 60세이상의 노인의 복지를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으로 건설시 입지제한 완화, 주택법에 의한 건설기준 일부배제 등 혜택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법령상 미비점을 악용한 부당한 이익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및 무자격자 입주시 시정 및 이행강제금 부과는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 의결(비중요규제)

○ 지역내 노인수, 노인주거복지시설 수요 · 공급 및 노인복지주택의 효율적 이용 등을 고려하여 허가권자가 공급세대수, 세대별 건축면적을 적정하게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신설)

☞ 노인복지주택 건설은 60세 이상의 노인에게 주거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국가복지 정책사업으로 사업자에게 주택입지제한 완화 등 각종혜택이 주어지고 있으나, 현실수요를 감안하지 아니한 공급이 이루어지고 이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노인복지주택의 세대 수 및 평형에 대해 지자체별 사전 수요조사 등을 통해 현실을 반영하여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두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 의결

○ 종래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무료, 실비, 유료시설의 구분이 통합됨에 따라 비용부담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부령위임사항에 입소대상 · 입소절차 외에 비용부담을 새로이 규정(내용심사)

☞ 현행 노인복지법 제32조의 무료, 실비, 유료시설의 구분이 통합됨에 따라 소득수준별 시설 이용시 비용부담이나 국가 또는 지자체의 운영비 지원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원안 의결(비중요규제)

○ 요양보호사 자격기준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교육이수 증명서를 교부받아야 하고,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설치는 시 · 도지사의 지정을 받도록 규정(강화)

☞ 교육기관의 신고에서 국가지정으로의 강화는 자격제도 및 교육제도 완화라는 규제정책의 방향과 배치되고 현행 규정상으로도 교육기관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등 필요한 국가의 지도 · 감독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신고제도를 유지하고, 또한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법령상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제39조의2의 요양보호사의 직무 · 범위를 구체화할 것을 개선 권고

○ 전 국민에게 실종노인에 대한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보호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는 실종노인임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신상카드를 작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실종노인 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토록 함(신설)

☞ 실종노인 신고는 민주시민의 당연한 의무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

○ 경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종노인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호시설의 장 등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 또는 노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함(신설)

☞ 사회적 약자인 실종노인이 가족품에 돌아가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경찰이나 관계 공무원이 시설을 출입 · 조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서 인도적 차원에서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 의결

○ 실종노인 보고 ·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공무원의 관계공무원의 출입 · 조사를 기피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실종노인에 대한 신상카드를 보내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추가(강화)

☞ 사회적 약자인 노인보호를 위해 도입된 실종노인 신고의무, 실종노인 출입 · 조사권 등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부수규정이며, 유사법률인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동일한 수준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의결(비중요규제)

(1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강화 3)

■심사내용

○ 설치목적에 의한 저당권은 입소보증금과 대출금의 합이 당해시설 건설원가(입소개시 이후에는 감정평가금액)의 80% 이하로 제한(강화)

☞ 유료노인복지시설에서 부도 발생시 입소노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사항으로 입소노인 보호를 위한 타당성이 인정됨으로 원안의결

○ 노인주거 및 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제외)의 합숙용거실(침실) 1실의 정원을 6인 이하에서 4인 이하로 변경(강화)

☞ 기존시설의 경우 5년의 유예기간을 두었고 현재에도 민간(유료) 시설(127개)은 4인 이하로 운영되고 있어 민간이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이 없어 원안 의결(비중요규제)

○ 노인주거 및 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제외)의 입소자가 30인 이상인 시설의 경우 조리원 입소자 50인당 1인 배치에서 조리원 2인(입소자 100인초과시마다 1인추가) 배치로 조리원 배치기준 변경(강화)

☞ 노인복지시설 조리원 배치기준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기준을 지킬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비중요규제)

(13)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강화 1)

■심사내용

○ 수입한약재 중 제조업소 제조품목을 현행 69개 품목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품목에 90개 품목을 추가하여 159개 품목으로 확대(강화)

☞ 국내생산 한약재는 제조업소 제조 품목에서 제외되어 있는 바 같은 한약재에 대해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는 논란의 소지는 있으나, 수입한약재의 품질을 담보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유효한 한약재를 공급하기 위한 추진사항으로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부터의 추진 필요성이 인정됨. 국산한약재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한의약육성발전5개년(2006~2010) 종합계획에 따라 '08년부터 검사의무화를 통해 품질기준을 담보할 예정인 바, 당해 규제의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 의결(비중요규제)

(14)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내용심사 6)

■심사내용

○ 사업자 신고의무자의 범위 및 신고시 갖춰야 할 시설 · 장비 및 인력기준 규정(내용심사)

☞ 사업자의 범위를 '기부식품 중 100분의 80이상을 제공하는 자'로 정한 것은 현재 시행중인 '푸드뱅크' 사업내용을 반영한 것이고, '주 3회 이상, 주 60인 이상의 자가소비 이용자 외에게 제공하는 자'로 정한 것은 일시 · 간헐적으로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교회 등은 사업자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으므로 타당하며, 년 3억원 이상의 기부식품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당연신고자로 하는 것과 신고시 갖추어야 할 시설 · 장비 및 인력기준도 식품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

○ 모집 · 제공결과 명세서의 사업장 비치 및 영수증 등 증빙서류 작성 · 보관에 대한 의무와 신고 사업자에게 모집 · 제공결과 공개의무 부과를 규정(내용심사)

☞ 기부식품 모집 · 관리 및 제공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비중요규제)

○ 사업자 신고의무 위반 등의 경우 과태료 부과를 규정

☞ 법률에서 규정한 300만원 이내에서의 과태료 부과수준을 정하는 것으로서, 「기부금품모집규제법」상의 과태료 부과수준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 의결(비중요규제)

○ 사업자 신고 후 신고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의 부과기준 마련(내용심사)

☞ 법에서 위임한 행정처분 부과기준을 정하는 것으로서, 신고기준 미달 등에 대한 행정처분 수준이 타 법령에 비하여 과도하지 않으므로 원안 의결(비중요규제)

○ 사업자 신고, 철회 · 폐업 신고 등의 절차 및 방법을 규정

☞ 법에서 위임한 신고의 기준 및 절차를 정하는 것으로서, 요구하는 서류수준이 타 법의 경우와 유사하므로 원안 의결(비중요규제)

○ 이용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직접경비의 범위를 기부식품 차량적재 및 운반에 소용된 비용과 식품의 기부조건 이행을 위한 포장비용으로 규정(내용심사)

☞ 법에서 위임한 직접경비의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서 원안 의결(비중요규제)

(1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강화 3)

■심사내용

○ 건강기능식품수입 신고 및 검사방법중 관능검사를 제품의 성상, 맛 등을 종합하여 그 적부를 판단하는 검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정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검사로 개정하고, 최초 정밀검사후 3년이 경과한 건강기능식품을 정밀검사대상으로 하는 조항을 기준 및 규격이 신설 또는 강화된 식품에 대해서만 정밀검사하는 것으로 개정하며, 건강기능식품 수입시 부적합 판정을 받고 그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은 수입신고인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을 정밀검사 대상으로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기준·규격이 강화·변경된 항목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신설함(강화)

☞ 건강기능식품 수입시 부적합 판정을 받고 그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은 수입신고인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무제한으로 정밀검사를 받도록 규정하는 것은 현재 수입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수입신고인이 3년 이내에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이중으로 규제하는 것으로 법리상 불합리하며, 내용상으로도 조치를 하지 않은 수입신고인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무제한으로 정밀검사를 받도록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므로 삭제하는 것으로 개선 권고

○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위탁제조의 경우 위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수탁자로부터 제조 및 품질관리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3년간 보관 규정 및 방문판매업자등의 방문판매원등에 대한 허위·과대의 표시·광고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는 규정 등 영업자 준수사항 추가(강화)

☞ 위탁과 수탁관계는 사적 계약으로 이루어 지는 바, 법령에 의해 수탁자에 대한 법적인 관리·감독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보이며, 시행규칙상 제품검사와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위탁자와 수탁자를 함께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별표9. 행정처분기준중 일반기준 제6호)하고 있어 별도의 위탁자의 관리감독

의무부과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개선 권고

○ 1차 위반행위가 영업정지 1월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2차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때를 과징금 부과제외 대상에 추가하고 각종 신고 · 신청서에 대한 수수료 규정(영업자 지위승계 : 9,300원 등) 추가(강화)

☞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고 타법령(식품위생법)상 규정과 유사한 수준으로 원안 의결(비중요규제)

(16) 정신보건법(신설 4)

■심사내용

○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의 장이 입 · 퇴소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5년 동안 해당시설 설치 · 운영 제한(신설)

☞ 5년 동안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은 강력한 규제이나 사회적 약자인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유린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수용한 사항으로 허위의료비 청구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에는 3년 이내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는 의료법상 규정과 비교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한 5년의 제한 규정은 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원안 의결

○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입원시 및 1년마다 언제든지 퇴원할 수 있음을 자의입원 환자에게 고지 및 진료기록부에 기록의무화(신설)

☞ 국가인권위의 권고에 따른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이해관계자의 이견도 없으므로 원안의결(비중요규제)

○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정신보건시설에 입원(소)한 무연고 환자에 대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원조회 요청(신설)

☞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의 권고사항을 수용한 사항으로 원안 의결(비중요규제)

○ 본인의 신청 또는 동의에 의하여 정신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 작업요법을 시행하고, 이를 기록(신설)

☞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의 권고사항을 수용한 사항으로 원안의결(비중요규제)

(17)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강화 1)

■심사내용

○ 지정 · 관리대상 향정신성의약품을 현행 176종의 물질에서 4종 추가(강화)

☞ 국정원과 경찰청에서 마약대용물질로 오 · 남용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마약류 지정 요청한 사항으로 원안 의결(비중요규제)

(18) 대한적십자사조직법(강화 1)

■심사내용

○ 세입 · 세출결산서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강화)

☞ 매년 적십자 회비 및 후원회비를 모금하여 재원을 확보하며, 국내 · 국제 · 대북 재난 시 대국민 성금을 관리 · 운영하는 점을 감안시, 독립성을 지닌 직업적 전문가의 감사를 실시하여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의결(비중요규제)

(19)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인체위해성 심사규정(내용심사 1)

■심사내용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인체위해성 심사 시의 제출서류 범위 및 요건, 인체위해성 심사시 제출자료 미비시 135일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보완자료 제출, 기 심사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하여 인체위해성에 대한 보고가 있거나 새로운 정보가 발견된

경우 직권 심사 실시 등 규정(내용심사)

☞ 전문가회의를 거쳐 동 고시안을 제정하는 것으로서 요구되는 자료의 수준 및 기준이 현행 유사입법사례인 「유전자재조합식품의안전성평가심사등에관한 규정」과 비교시 과도하지 않고, 별다른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의결

(20)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강화 1, 내용심사 1)

■심사내용

○ 의사상자 보호신청 기간을 구제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신청할 수 없도록 규정 신설(강화)

☞ 객관적인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의사상자 보호신청으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적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5년이라는 기간도 관련기관의 문서 보존기간을 반영한 것이므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의결(비중요규제)

○ 보상금액 등에 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의사자 보상금 수령권자 순위를 배우자, 미성년인 자녀, 부모, 조부모, 성년인 자녀, 형제자매에서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로 조정(내용심사)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국가유공자의 기본연금월액이 폐지됨에 따라 보상금에 대한 법적미비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사항이나, 보상금액 등에 대해 포괄적 위임하는 것은 규제법정주의에 벗어나므로 법제처 심의 등 향후 입법과정에서 기본적인 사항은 동 법에 규정하고 세부적인 사항만을 하위법령에 위임할 것을 개선 권고

(21) 의료법 시행규칙(강화 3)

■심사내용

○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관리자 준수사항에 한약규격품 사용 추가(강화)

☞ 이해관계자간 합의(좋은한약공급추진위원회)에 의해 추진되는 사항이고 약사법 시행규칙에 의해 의약품도매상, 약국개설자 또는 한약업사는 이미 한약규격품을 사용하고 있는 사항으로 안전한 한약공급을 위한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 의결

○ 중환자실을 '중환자실' 및 '신생아중환자실'로 구분하고, 의사·간호사 인력기준, 병상당 면적기준 및 중환자실 단위마다 응급의료 장비를 구비토록 하는 기준 추가(강화)

☞ 대한중환자의학회, 대한병원협회 등 이해관계인과의 합의에 추진되는 사항이며 중환자실의 필수의료장비 미비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인력·시설·장비 기준의 강화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 의결

○ 입원실을 지하층에 설치할 수 없도록 의료기관 시설기준 추가(강화)

☞ 지하층에 입원실을 금지하는 외국사례(일본)가 있고, 재난 시 환자의 안전보장 및 쾌적한 진료환경의 조성을 위한 타당성이 인정되나 기존 지하실에 입원실이 있는 의료기관(서울시립은평병원, 일산백병원)의 경우, 이전을 위한 준비(장소물색 및 자금준비)에 1년이라는 기간은 촉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유예기간을 2년으로 할 것을 개선 권고

(22)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강화 6, 내용심사 1)

■심사내용

○ 원산지 표시대상 영업자, 원산지 및 종류 표시방법, 원산지 미표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표시사항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등 규정(내용심사)

☞ 규제대상을 최소화 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산지 및 종류 표시방법은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표시방법에 준하는 내용으로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며, 원산지 미표시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표시사항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또한 법에서 위임한 범위내로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원안 의결

○ 식품 등의 기준·규격이 정하여 있지 아니하거나 기준·규격 이외의 검사항목을 검사한 경우에도 검체를 30일 동안 보관토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고 식품위생검사기관이

하여서는 아니 될 행위에 검체보관 기간 위반 추가(강화)

☞ 식품의 위해사고 발생시 원인 규명 및 책임소재 명확화를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 의결(비중요규제)

○ 품목제조보고시 기존의 2가지 첨부서류 이외에 '유통기한 설정사유서(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에 의하여 설정)'를 추가로 제출(강화)

☞ 근거없는 식품 유통기한 설정으로 인한 국민건강 위해를 방지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 의결(비중요규제)

○ HACCP 의무적용 대상 식품에 김치류중 배추김치를 포함(강화)

☞ 평균 준비단계에서의 규제비용이 300~600억원(5천만원~1억원×600개 김치제조업소)으로 추정되어, 규제비용이 과도하나 식품에서의 HACCP적용은 전세계적인 추세로서 국민 다소비 식품인 배추김치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HACCP적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 의결

○ '식품 등을 진열 · 보관 · 유통 · 판매 · 조리 · 운반하는 자에 대하여 영업자간 거래내역서를 2년간 보관' 등 식품의 거래내역서 및 거래기록 보관 의무 추가(강화)

☞ 위해식품의 원인경로 파악을 통해 신속한 회수 · 폐기 및 추적관리를 하기 위한 규제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의결(비중요규제)

○ 식품접객업소의 종업원외 영업자 자신도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댓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금지 명확화(강화)

☞ 종원업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댓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소위 티켓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영업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처분의 근거가 없는 현행 규정상 미미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비중요규제)

○ 위해식품 수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기준 및 규격 위반항목 중 '일반세균시험'에 대한 처분기준 명확화 등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개정(강화)

☞ 국민건강보호 및 규제내용의 명확화 등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 의결

(23)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 개정안(강화 1)

■심사내용

○ 자동식기세척기용 및 산업용 식기류 세척제의 규격을 '3종'에서 '2종'으로 분류하고 행굼보조제의 규격기준, 제조기준 및 사용기준 신설(강화)

☞ 자동식기세척기용 및 산업용 식기류 세척제의 규격을 '3종'에서 '2종'으로 분류하는 것은 3종 세척제의 원료로만 사용할 수 있는 화학물질의 대부분이 유해유독한 물질로 이용자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제강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헹굼보조제의 기준을 신설하는 것은 현재 관련규정의 미비로 세척제 제품으로 유통되어 본래의 역할을 다할 수 없는 규정의 미비점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의결(비중요규제)

(24)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신설 1, 내용심사 1)

■심사내용

○ 미용사 업무를 미용사(피부)와 미용사(종합)으로 구분(내용심사)

☞ 미용사 업무의 분리는 국제적인 추세와 부합하고, 응시자의 선택권의 폭을 넓히는 측면이 있으며, 가장 큰 이해당사자인 (사)대한미용사회중앙회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여 동의하나 다만, 자체규제심사시 개선권고된 대로 '미용사(종합)'라는 용어는 피부미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가급적 피부업무를 제외하는 것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할 것을 개선 권고

○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가 사용할 수 있는 미용기구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고시(신설)

☞ 피부미용에 사용하는 기기의 대부분이 의료기구로 분류되어 기구사용에 제한 및 어려움이 있으므로 미용기구로 분류하여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사용토록 합리화

하려는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나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 등) 제3항에 의해 동 시행규칙에 '업무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만을 위임하고 있어 미용기구 지정에 대한 위임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의료기구와의 개념설정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철회 권고

(25) 국외여행자의 예방접종에 관한 수수료(강화 1)

■심사내용

○ 국외여행자의 예방접종에 관한 수수료를 고시로 정하고 수수료를 실구매가격에 맞게 조정(강화)

☞ 실비변상의 원칙에 따라 실구매가격에 맞게 예방접종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은 타당성이 인정되고 콜레라 예방접종의 경우는 인상된 수수료가 2,500원으로 실비(5,000원에서 41,000원)에 못 미치나 종전 500원에서 5,000원으로의 인상은 과도하므로 단계별 인상하라는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 사항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비중요규제)

(26) 전염병병원체 검사 · 보존 및 관리규정(강화 1)

■심사내용

○ 밀폐등급에 따른 적절한 취급실험실을 갖추어 검사 수행, 실험실에서 준수 해야할 생물안전 수칙, 고위험병원체 보존시 기록 · 보존해야 하는 기재사항 추가 등 규정(강화)

☞ 밀폐등급에 따른 적절한 취급실험실을 갖추어 검사 수행, 실험실에서 준수해야할 생물안전수칙 등은 안전관리를 위해 당연한 사항으로 권고적 성격이며 고위험병원체 보존시 기록 · 보관해야 하는 기재사항 추가, 고위험병원체 보존현황 보고시점 명확화, 고위험병원체 폐기처분시 관련사항 기록 및 보존 등은 적절한 관리를 위한 사항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의결(비중요규제)

(27)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강화 4, 내용심사 1)

■심사내용

○ '의료기관'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특수의료장비를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도 등록 및 품질관리검사를 받도록 하며, 설치인정기준관련 공동활용병상 인정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강화)

☞ 동일지역(시, 군, 구) 동일의료기관에서의 이전등록시 공동활용동의서를 다시 제출하는 것은 과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존 공동활용동의서를 인정하도록 개선 권고

○ 특수의료장비의 등록사항중 변경통보해야 하는 사항에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명칭 및 특수의료장비 용도 변경을 추가하고, 변경통보시 설치인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변경통보를 인정하도록 명확히 함(강화)

☞ 현행 규정하에서 특수의료장비는 매년 품질관리검사를 통해 적합 판정을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고, 품질관리검사는 해당하는 용도와 관련해서만 실시되고 있으므로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명칭 및 특수의료장비 용도 변경시 등록사항 변경통보는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의결(비중요규제)

○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있는 품질관리검사 수수료를 품질관리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통해 결정하도록 함(내용심사)

☞ 대국민 관계가 아닌 의료기관에만 한정되는 사항으로 정부에서 직접 수수료를 고시하기 보다는 품질관리검사기관이 정부의 승인을 얻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비중요규제)

○ 특수의료장비의 관리인력인 진단방사선과전문의와 방사선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강화)

☞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업무인력인 진단방사선과전문의와 방사선사간 업무범위를 명확히 해달라는 요청을 수용한 사항으로 원안 의결(비중요규제)

○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의 팬텀영상검사 기준신설 및 유방촬영장치의 CR, DR형 검사기준 추가 신설 등 품질관리검사 기준 정비(강화)

☞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사업(MRI 표준팬텀설정 및 팬텀영상검사 기준과 CR, DR 유방촬영장치의 품질관리 적정화 방안, '05.4월) 결과에 기초하여 검사기준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비중요규제)

(28) 피부양자인정기준 개정안(강화 1)

■심사내용

○ 연 금융소득 4천만원 초과자(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를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서 제외(강화)

☞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말하므로 일정수준의 금융소득에 대한 피부양자 제외는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원안 의결

(29)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신의료 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신설 1, 강화 5)

■심사내용

○ 비급여대상을 제외한 일체의 약제를 급여대상으로 하던 것을 급여목록표로 정하여 고시한 약제만 급여대상으로 함(강화)

☞ 비용대비 효과가 좋은 약품만을 선별 등재함으로써 의약품의 합리적 이용을 유도하고, 현재의 과도한 품목수를 적정화 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추진사항으로 제약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부칙(2조)을 통해 기존 등재된 약제는 새로운 규칙에 의하여 등재된 것으로 인정하는 등 영향을 최소화 하였고, OECD 가입국의 80%가 의약품 선별등재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등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제도이며, 비용효과적 약품 사용과 보험재정 절감 등 국민에게 미치는 편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바, 원안 의결

○ 약제는 요양급여대상 결정의 신청에서부터 상한금액 고시까지 소용되는 기간을 현행 150일 이내에서 240~270일로 함(강화)

☞ 의약품 선별등재 시스템으로 전환시 필요한 경제성 평가 및 급여기준 검토, 협상, 협상 결렬시 필수 의약품의 조정절차 기간까지를 고려하여 등재기간을 연장하는 사항으로 제도 변경에 따라 전문적인 의약품 평가 및 협상등을 위한 일정기간 등재기간 연장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되며, 국제기준에 비추어도 과도한 규제라고는 판단되지 않으므로 원안 의결

○ 신약의 경우 공단에서는 제약업소와 상한금액에 대해 협상하고 기 등재된 약제에 대한 제조(수입)업자 및 가입자등의 조정신청 시에도 협상절차를 거치도록 규정(신설)

☞ 건강보험 재정의 운영주체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일반국민과 요양기관을 대리하여 의약품 제조(수입) 업자와 협상을 하도록 함으로써 구매력을 강화하려는 사항으로 프랑스 · 호주 등에서도 협상권을 인정하고 있는 등 외국의 사례가 있고, 우수 의약품의 적정가격 이용 및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등을 위한 정책적 결정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 의결

○ 미신청 약제에 대한 직권 등재시 심평원의 경제성평가 및 건보공단과의 협상절차를 거치도록 규정(강화)

☞ 현행 미신청 약제에 대한 직권등재제도에 심평원의 경제성 평가 및 건보공단과의 협상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사항으로 약품 선별등재방식으로의 전환에 따라 결정신청이 없으나 환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한 약제를 직권등재를 통해 환자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전문적인 평가와 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조정하는 것은 국민건강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

○ 약제 상한금액 및 급여여부의 직권 조정관련 포괄적 규정을 보다 구체적인 경우로 나누고 각각의 경우에 준용하는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강화)

☞ 사용량-약가 연동, 특허만료시 가격조정, 재평가에 의한 조정 등에 의한 직권조정의 강화로 제약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나 국민건강보험 약제비 절감 및 이를 통한 보장성 강화, 보험료 인상 억제 등을 위해 추진되는 정책적 추진사항임을 감안하여 동의하나,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제9조제5항4호 규정은 규제내용이 포괄적 · 행정편의적인 것으로 판단되고 특정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삭제하는 것으로 개선 권고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제9조제5항4호
4.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 정책수행, 건강보험의 재정관리 또는 약제의 비용관리 등을 목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약제

○ 1개 제품만 등재되어 있는 경우는 기 등재된 제품 상한금액의 64%로 하는 등 복제의약품 등재시 현행보다 약가를 낮게 책정할 수 있도록 산정기준을 하향 조정(강화)

☞ 동 규제는 앞으로 첫 번째 복제의약품이 등재될 때 적용되는 사항으로 전세계적으로 복제약 가격을 하향조정하는 추세이며 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한 정책적 판단에 의한 필요성이 인정되나 제약업계의 부담 저감을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복제의약품의 인하율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최종 결정할 것을 개선 권고

(30)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강화 1)

■심사내용

○ 의사가 자신이 진찰하지 않은 환자에 대해 처방전 교부시 행정처분 추가(강화)

☞ 의사가 자신이 진찰하지 않은 환자에 대해서는 처방전을 교부하지 못하도록 의료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입법미비로 이를 위반시 행정처분이 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의사가 자신이 진찰한 환자에 대해서만 처방전을 교부해야 하는 것을 위반하는 경우 진단서 · 검안서 또는 증명서의 교부 위반사항과 동일하게 행정처분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비중요규제)

(31)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규칙(강화 5)

■심사내용

○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및 편의시설의 구조 · 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 강화(강화)

☞ 사회적 약자의 편의를 증진시키려는 것으로서 향후 신축되는 건축물과 증 · 개축되는 건물부터 적용되므로 규제의 영향을 최소화한 사항으로 여성용 화장실에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는 출산여성에 대한 편의를 증진하는 것으로 정부의 출산율 저하에 따른 출산장려 정책을 감안시 필요성이 인정되며, 기타, 대지내 연결 접근로 단차 높이를 2센티미터 이하로 하는 것, 계단의 폭만큼 점형블록 설치, 승강기 관련 의무강화, 시각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의 화장실 안내표시 및 음성유도장치 설치 의무 등도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및 노약자의 편의증진을 위한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의결(비중요규제)

○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 추가(강화)

☞ 임산부, 어린이 등이 주로 이용하는 조산소(산후조리원)는 기존 대상시설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과 유사한 시설로 동일한 수준에서의 편의시설 설치의무 부과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역아동센터 및 화장장, 납골당 또한 시설 성격상 장애인 등의 이용이 많은 시설로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로 포함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기존 시설은 규제적용이 안되며 신축 및 증 · 개축 · 이전 · 대수선 등의 경우에만 규제가 적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 의결

○ 문화 및 집회시설에 관람장을 추가 하는 등 휠체어 등을 비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용품의 종류 강화(강화)

☞ 관람장 이용시 장애인과 노인들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비중요규제)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비치하지 아니하여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100만원)를 부과하는 비치용품 대상에 보청기기 추가(강화)

☞ 법상 비치의무 및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고 있으나 입법미미로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 사항으로 휠체어, 점자안내책자와 동일한 수준에서의 과태료 부과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비중요규제)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판의 규격 및 안내문 설치기준을 명확히 규정(강화)

☞ 기존규제가 불명확하여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명확히 하는 사항으로 신규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부터 적용되므로 과도한 규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비중요규제)

(3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강화 1)

■심사내용

○ 장애인 등록시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장애등급의 확인을 위하여 장애심사가 가능한 기관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심사를 의뢰받은 기관은 장애를 심사함에 있어 심사대상자에게 진료기록 등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장애상태를 확인하게 할 수 있도록 함(강화)

☞ 장애인 등급에 따라 지원되는 사항이 달라지고,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 '07년부터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부양수당이 2~3배 가까이 증가하므로 장애판정을 적정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진료기록등의 보완 및 장애상태 확인은 최소한의 규제라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비중요규제)

(33) 약사법(신설 1, 강화 7)

■심사내용

○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조제기록부 기재 및 보존 의무화(강화)

☞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는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약사의 임의조제가 허용되며, 조제의 한 방안으로서 전문의약품의 개봉판매가 가능하므로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의 전문의약품 판매시 조제기록부를 작성 및 보존하게 함으로써 적절한 관리를 통해 전문의약품 오 · 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의결(비중요규제)

○ 시행규칙에 규정된 임상시험, 비임상시험 실시기관의 근거를 법으로 상위 입법화하고 생물학적동등성 실시기관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임상, 비임상, 생동성시험 실시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규정을 마련(강화)

☞ 임상시험 · 비임상시험 기관은 현재 약사법 시행규칙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로 지정하여 관리 · 운영하던 것을 약사법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사항이고, 생동성 시험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로 일반적인 요건을 규정하여 관리하던 것을 시험성적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지정 · 관리하려는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며 또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규정은 지정제도 도입시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제도로 판단되므로 원안 의결

○ 임상시험용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승인받은 임상시험계획에 따라 선정된 피험자의 임상시험목적 외에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나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상황 또는 대체치료수단이 없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환자의 동의를 받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강화)

☞ 현재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로 운영중인 사항으로 규제내용 변경없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비중요규제)

○ 의약품 허가 또는 신고시 신약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하는 원료의약품에 대하여는 해당 원료의약품의 성분, 명칭, 제조방법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이미 등록된 원료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료제출을 면제하며, 이를 위해 원료의약품의 등록에 관한 절차를 정하고 등록에 필요한 제출자료의 범위, 공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강화)

☞ 약사법 시행규칙에 의해 운영되는 원료의약품 신고제도의 근거를 약사법에 명확히 하며, 실제 제도의 운영 형태와 부합되도록 등록제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비중요규제)

○ 의약품등 수입업도 양도 · 양수 등이 가능하도록 수입업 신고제도를 도입(신설)

☞ 일반적인 무역제품과는 달리 의약품등은 국민건강과 직결되어 수입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필요한 사항으로 현행 규정으로는 수입자에 대한 소재지나 대표자 등에 대한 파악이 어려워 약사법 위반시 행정처분 등이 곤란하여 감사원에서도 의약품 수입법 신고제도 마련, 운영을 요구(2003.7)하는 등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의결(비중요규제)

○ 의약품 품질검사기관 지정의 기준과 절차, 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후관리를 위한 지정취소 등의 규정을 마련(강화)

☞ 품질검사기관 지정에 대한 사항이 포괄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 ·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어 재량행위 투명화를 위해 지정의 기준과 절차, 방법 등에 대하여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인정되고,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규정은 지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항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

○ 의약품등의 제조업자나 수입자 또는 약국개설자나 의약품 판매업자가 영업을 양도 · 양수 하는 등 종전의 영업자지위 승계시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만료된 날 부터 1년간 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중인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를 속행할 수 있음(강화)

☞ 대법원 판례등에 의해 인정되는 사항을 해석상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 명확히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비중요규제)

○ 저함량 비타민, 미네랄제제, 양치액 등 내복용제제와 인체에 직접 적용하는 의약외품의 경우 제조연월일 대신 '사용기한'을 기재(강화)

☞ 유통과정에서 보관 및 취급상 안정성의 문제로 효력이 감소될 우려가 있는 의약외품의 경우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한 사용기한 표시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의결(비중요규제)

(34) 의료기기법(강화 3)

■심사내용

○ 품질관리심사기관, 시험검사기관 및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지정근거를 명시하고 사후관리를 위한 지정취소 등의 규정을 마련(강화)

☞ 의료기기 품질관리심사기관, 시험검사기관의 지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구체적 법적

위임없이 등록제로 운영되는 사항을 지정제로 전환하며 법적 근거를 만드는 사항으로 약사법상의 지정제 도입과 관련하여 형평성 차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의결

○ 의료기기에 안전성 · 유효성의 문제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유통중인 의료기기를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회수계획과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회수계획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함(강화)

☞ 현행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3호에 위해의료기기에 대한 자진회수를 규정하고 있고, 의료기기법 제30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의료기기 제조 · 수입업자에게 위해의료기기 발생시 회수 · 폐기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자진회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고 제조 · 수입업자가 회수 · 폐기명령을 적법하게 이행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없으므로 의료기기법에 위해의료기기의 자진회수 · 폐기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그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는 하위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비중요규제)

○ 의료기기의 용기나 포장에 '의료기기'를 표시하도록 함(강화)

☞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의료기기의 용기나 포장에 '의료기기' 라는 표시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의결(비중요규제)

(35) 화장품법 시행규칙(강화 2, 내용심사 1)

■심사내용

○ 화장품 제조업자나 수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 판매시 사용하여야 하는 안전용기 · 포장의 대상 품목 및 기준을 규정하고 화장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안전용기 · 포장기준에 위반하여 판매시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내용심사)

☞ 화장품 제조업자나 수입자에게 5세미만의 어린이가 개봉하기 어렵게 설계 · 고안된 안전용기 사용을 의무화 한 개정 화장품법(의원입법, '05.7.13)에서 위임한 세부내용을 정하는 것으로 대상품목 모두 유해독성을 가지고 있어 어린이의 화장품 흡입 또는 음용으로 인한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며, 안전

용기 · 포장 위반시 행정처분 기준도 약사법령과 비교해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비중요규제)

○ 안정성 시험자료 보존을 의무화하고,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기재하여야 하는 주의사항에 알파-하이드록시애씨드(AHA) 함유 화장품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추가하며, 화장품의 생산 · 수입실적 보고절차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강화)

☞ 안정성 시험자료 보존 의무화 관련 현행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사용기한 표시대상 화장품 지정)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을 법제처 지적('05년)에 따라 부령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나 '필요한 기간만큼 보존'이란 표현은 구체화 되지 않아 행정편의주의적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삭제하고, 알파-하이드록시애씨드(AHA) 함유 화장품의 사용상의 주의사항 기재 관련 AHA함유 화장품을 장기간 또는 고농도 사용시 피부의 각질을 얇게 하여 피부 보호기능을 저하시킬 위험성이 있으므로 소비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주의사항 표기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동 시행규칙 시행예정일인 '07.1.13은 너무 촉박하여 업계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으며, 일부업체가 해당여부 점검, 용기 · 포장 및 인쇄준비 등에 필요한 유예기간(6개월) 부여를 요청하고 있는 바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부칙으로 6개월정도의 유예기간을 줄 것을 개선 권고

○ 부당한 표시 · 광고행위등의 금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광고행위만을 명기하고 있는 것을 표시행위도 포함(강화)

☞ 화장품법상 부당한 표시 ·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부당한 표시행위시 행정처분 기준이 없음에 따라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의결(비중요규제)

(3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강화 2, 내용심사 1)

■심사내용

○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을 '06년도 4.48%에서 '07년도 4.77%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을 '06년도 131.4원에서 '07년도 139.9원으로 각각 6.5% 인상(강화)

☞ 보험료율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수지균형과 연계하여 정책적 판단에 의해 결정될

사항으로 '07년 건강보험 재정전망(보험료 · 수가 · 담배값 미인상 전제)에 의하면 재정수지균형을 위한 보험료인상율은 최저 9.2%이고, 수가가 2.3% 인상시 보험료 인상률은 11%이상이어야 하나 최근 국내경기 및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고려, 6.5%로 결정한 사항이고 가입자 · 의약계 · 공익대표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특별소위원회 5회, 본위원회 4회 개최)서 의결('06.12.1)된 점을 감안하여 원안 의결

○ 직장보험료 상한선을 '06년도 5,080만원×보험료율에서 '07년도 6,579만원×보험료율로, 지역보험료 하한선을 '06년도 35점×점수당금액에서 '07년도 20점×점수당금액으로 각각 조정(강화)

☞ 현재 지역보험료 상한선인 1,445,4,00원보다 직장가입자의 상한선이 1,137,920원(사용자부담금 제외)으로 낮아 형평성을 제고하고 사회보험의 소득재분배기능 강화를 위해 직장가입자의 상한선을 상향 조정하는 사항으로 보험재정과 관계되어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 원안 의결

○ 요양급여비용을 대행청구한 요양기관은 그 대행청구단체를 심사평가원에 통지(내용심사)

☞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화 특별법의 시한 만료에 따라, 동 법에 규정된 사항을 시행규칙상에 동일하게 규정하는 사항으로 대행청구과정에서의 허위 · 부당청구를 통한 보험재정 누수를 차단하기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의결(비중요규제)

(37) 혈액관리법 시행규칙(강화 6)

■심사내용

○ 혈액원의 시설 별 장비기준을 추가(강화)

☞ 혈액제제 제조품목별로 현실적으로 필요한 장비를 명시한 것으로 건강진단, 채혈, 검사, 제제, 보존 · 공급 등 혈액관리업무의 정확성, 안전성 향상을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의결(비중요규제)

○ 혈액제제 제조품목과, 혈액원 부속 채혈시설의 설치 또는 폐쇄를 혈액원 변경허가

사항으로 추가(강화)

☞ 대한적십자사의 이견은 있으나, 혈액원 개설은 허가사항이며, 법상 시설 ·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하므로 혈액원 부속 채혈시설의 설치 또는 폐쇄시 변경허가는 타당하고 또한, 변경허가 기간이 시행규칙 별지1호 서식에 20일로 명시되어 있는 바, 시설의 개소일자에 맞춘 신청 등으로 운영차질의 최소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 의결

○ 제조업무 종사자 교육계획 수립 및 제조업무에 관한 내부 업무기준에 대한 연1회 이상 점검 등 제조관리자 준수사항 강화(강화)

☞ 국민건강과 관련된 혈액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항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의결(비중요규제)

○ 채혈금지대상자 기준 추가 보완(강화)

☞ 혈액관리위원회 논의('06.10.31) 등 전문가 자문을 거친 것으로 채혈부적격자 채혈 방지를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의결(비중요규제)

○ 혈액원이 대한적십자사 총재에게 통보하는 헌혈자 혈액정보 중 일부 항목의 통보 기간을 단축(7일→3일)하고 혈액원이 작성 · 비치하는 혈액관리업무기록에 헌혈자 혈액정보통보기록 추가(강화)

☞ 채혈종류에 따른 채혈간격(72시간)을 고려한 헌혈자 혈액정보 통보기한 조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헌혈자혈액정보통보기록 작성 · 비치도 혈액의 적정관리를 위한 사항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의결(비중요규제)

○ 혈액제제운송및수령확인서 3년간 보관의무대상에 현행 수령한 자에다 이를 수령한 자에게 제출한 혈액원도 포함하고 기존의 업무기준(채혈업무, 혈액제제의 보존업무, 혈액제제의 공급업무)에 품질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추가(강화)

☞ 혈액원의 확인서 보관의무는 혈액의 적정관리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고 혈액원장의 혈액제제의 안전성 및 효과성 향상을 위한 품질관리 의무는 당연한 의무를 명확히 한 사항으로 원안 의결(비중요규제)

(38)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신설 1, 내용심사 1)

■심사내용

○ 종합계획 등의 심의를 위해 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연구소, 대학 등에 자료 요청(신설)

☞ 대학 및 연구소 등의 전문적인 자료를 활용하게 됨에 따라 종합계획 등의 심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고, 이해관계자의 이견도 없으므로 규제신설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동 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규제법정주의에 배치되므로 철회 권고

○ 담배수입판매업자 등의 담배 반출을 위해 부담금의 납부담보 확인 신청 및 제공방법의 제출의무화 등을 규정(내용심사)

☞ 동 규제는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의원입법, '06.9.27)에서 위임한 세부내용을 정하는 사항으로 담보액 및 담보절차 등이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상에서의 담보 제공 규정과 유사한 수준으로 과도하지 않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을 받아 들여 성실납부자 등에 대해서는 담보제공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의 영향을 최소화 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비중요규제)

2. 식품의약품안전청

가. 2006년도 신설 · 강화규제심사 개요

❍ 2006년도에는 식품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화장품원료지정과기준 및 시험방법등에 관한 규정, 의약품소량포장단위공급에관한규정,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의료기기임상시험실시기관지정에관한규정 등 17개의 고시에 대해 신설 1건, 강화 16건, 내용심사 3건 등 총 20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20건 중 1건에 대하여는 철회 권고, 7건에 대하여는 개선 권고, 12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2006년도 총 신설규제는 0건임

< 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유전자조합식품의 안전성평가 심사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2006.3.30)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식품중 농약 및 동물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안	제284차 행정사회분과 (2006.3.31)	개선권고 1	강화 1 *중요1
화장품원료지정과기준 및 시험방법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제284차 행정사회분과 (2006.3.31)	개선권고 1	강화 1 *중요1
신고대상의약품 지정 개정 고시안	제288차 행정사회분과 (2006.5.2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의약품임상시험계획승인지침 개정안	제298차 행정사회분과 (2006.8.31)	개선권고 1	강화 1 * 중요1
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	제298차 행정사회분과 (2006.8.31)	개선권고 1	강화 1 * 중요1
원료의약품신고지침개정안	제301차 행정사회분과 (2006.9.1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의약품소량포장단위공급에관한규정 제정안	제303차 행정사회분과 (2006.9.21)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중요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제306차 행정사회분과 (2006.10.26)	원안의결 2	강화 2 *중요1, 비중요1
대한약전외 한약(생약) 규격집 중 개정안	제306차 행정사회분과 (2006.10.26)	개선권고 1	강화 1 *중요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제306차 행정사회분과 (2006.10.26) 제173차 본회의 (2006.11.8)	원안의결 1 개선권고 1	강화 2 *중요2
의약품등기준및시험방법심사의뢰서심사규정 개정안	제309차 행정사회분과 (2006.11.16)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의료기기임상시험실시기관지정에관한규정제정안	제310차 행정사회분과 (2006.11.30)	원안의결 1 철회권고 1	신설 1 내용심사 1 *중요2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제311차 행정사회분과 (2006.12.14)	원안의결 1	강화 1 *비중요1
의약품동등성 확보 필요 대상 의약품 지정 고시 제정안	제311차 행정사회분과 (2006.12.14)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비중요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제311차 행정사회분과 (2006.12.14)	원안의결 1	강화 1 *중요1
의약품의국가검정면제등에관한 처리규정 개정안	제313차 행정사회분과 (2006.12.29)	개선권고 1	강화 1 *중요1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계		원안의결 12 개선권고 7 철회권고 1	신설 1 강화 16 내용심사 3 중요 13

나. 2006년도 신설 · 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유전자조합식품의 안전성평가 심사 등에 관한 규정(강화 1)

■심사내용

○ 유전자재조합(GMO)식품 안전성 심사요청자료에 발현단백질의 단회투여독성 자료 제출을 추가하고 유전자재조합미생물의 안전성 평가자료 제출 범위를 새로이 규정함(강화)

☞ 자료 추가제출로 인한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국제심사기준 등을 고려할 경우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비중요규제)

(2) 식품중 농약 및 동물의약품 잔류허용기준(강화 1)

■심사내용

○ 수산물에 사용등록된 동물용의약품에 대하여 잔류허용기준 설정(제정 2종, 개정2종), 고추의 프로파모카브 농약의 잔류허용기준 상향조정, 밀가루 및 건조농산물 농약잔류허용기준 제정, 인삼의 농약잔류허용 기준중 7종의 농약에 대한 기준을 삭제하고 프로시미돈의 신규기준 설정 등 규정(강화)

☞ 프로시미돈의 신규기준 설정과 관련하여 농림부와 한국인삼공사 등에서는 미국 · 유럽 및 Codex에도 적용기준이 없어 동 농약의 기준 설정시 수출 차질 등을 우려하는 바, 농림부 · 농촌진흥청 등과 협의, 대체농약 사용 등을 적극 추진하여 인삼의 프로시미돈 사용금지 방안 등을 추진하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금번 기준 설정안을 철회할 것을 개선 권고

(3) 화장품원료지정과기준 및 시험방버등에 관한 규정(강화 1)

■심사내용

○ 배합한도가 지정되어 있는 원료의 신설 및 배합한도 조정, 배합금지 원료의 추가 및 강화 등 규정(강화)

☞ 배합금지원료로 추가되는 인태반의 경우 관련업체에서는 지금까지 부작용 사례가 없는 등 엄격한 관리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화장품심의위원회 등 전문가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EU는 인태반 사용금지, 일본은 사용금지 규정은 없으나 실제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기능에 대한 과장광고 및 오남용이 우려되는 바 금지하는 것에 동의. 다만, 지금 현재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금년말까지 유예(2007.1.1 시행)하도록 개선 권고

(4) 신고대상의약품 지정(강화 1)

■심사내용

○ 인태반 유래 의약품을 신고대상의약품에서 제외, 허가대상으로 함으로써 임상시험자료 및 바이러스 불활화 공정의 적정성 여부 등 안전성 · 유효성 심사자료 추가제출을 의무화(강화)

☞ 피규제자수 및 규제비용이 중요규제 수준에 못미치고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의결(비중요 규제)

(5) 의약품임상시험계획승인지침(강화 1)

■심사내용

○ 생명을 위협하는 긴박한 상황에서 임상시험용의약품 또는 시판허가가 되지 않은 의약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얻기 위한 제출서류를 강화하고 사용승인 신청자격 제한 신설, 임상시험계획승인신청서 제출 의무화, 식품

의약품안전청장에게 증례보고서 제출 의무화 등을 규정(강화)

☞ 응급상황 사용승인제도에서의 환자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제도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사항으로 전반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나 임상시험계획승인신청서 제출을 응급상황 사용승인후 1개월내 제출토록 하는 것은 촉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2개월로 기간을 늘리고 사용승인 신청자격 제한 규정중 '학술적 목적'으로는 순수한 학술적 목적까지 제한하므로 '개인적 연구 목적'으로 하고,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판단하는 경우'는 포괄적이고 자의적 판단의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으로 개선 권고

(6) 식품등의 표시기준(강화 1)

■심사내용

○ 영양성분 활자크기확대, 영양성분 표시기준단위 통일화, 영양성분 표시대상성분 추가, 나트륨 및 비타민C 1일 기준치 조정, 식품첨가물의 주의사항 표시추가, 식용유지에 수소첨가시 표시의무화 단서신설 등 규정(강화)

☞ 국외사례 및 소비자의 알권리 측면 등에서 전반적으로 타당성 및 필요성이 인정되나 영양성분 표시기준단위 통일화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정한 1회 분량기준량을 근거로 산출한 1회 분량으로 통일하는 것은 고시에서 고시로 위임하는 것으로써 법체계상 불합리하므로 일단은 유예하고 추후 동 고시안에 포함하여 추진할 것을 개선 권고

(7) 원료의약품신고지침(강화 1)

■심사내용

○ 신고대상 원료의약품을 현행 77개 성분에서 22개 성분을 추가 지정(강화)

☞ 미국, 유럽등 선진국과 같이 모든 원료의약품에 대해 관리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비중요규제)

(8) 의약품소량포장단위공급에관한 규정(내용심사 1)

■심사내용

○ 의약품중 정제 · 캡슐제에 대하여 연간 제조 · 수입량의 10%이상을 100정 · 캡슐 이하의 낱알모음포장 또는 30정 · 캡슐의 병포장으로 공급을 의무화(내용심사)

☞ 소량포장공급량 10%이상 의무화 및 포장재를 한정하는 것은 국제적 사례가 없는 과도한 규제로 판단되나, 의약품의 안정성 확보와 불용재고량 저감 취지가 인정되고, 이미 약사법 시행규칙에 의약품등의 제조업자에게 소량포장단위의 제품을 제조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규제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이해당사자(대한약사회와 한국제약협회)간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여 원안 의결

(9) 식품의 기준 및 규격(강화 2)

■심사내용

○ 참기름의 리롤렌산 규격(리놀렌산 함량(%) : 0.5%) 및 에루산 규격(에루스산 함량(%) : 불검출) 추가(강화)

☞ 가짜 참기름 논란으로 인한 국민불신 해소차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 의결(비중요규제)

○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중 신규농약 기준(농약 10종, 26개 대상농산물) 설정 및 기준 기설정 농약 기준(농약 61종, 126개 대상농산물) 추가(강화)

☞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진청에 사용등록된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는 것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전문가들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되는 사항이므로 원안 의결

(10) 대한약전외 한약(생약) 규격집 중 개정안(강화 1)

■심사내용

○ 선퇴, 전갈, 파극천 3개 한약재에 대한 회분 및 산불용성회분 규격 강화(강화)

☞ 한약재의 품질향상을 위한 타당성이 인정되나 유예기간을 두지 않는 규격강화로 인해 현 규정하에서 한약재 수입을 추진 중인 자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므로 규격강화 한약재에 대한 적정한 유예기간(2개월 정도)을 부여할 것을 개선 권고

(1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강화 2)

■심사내용

○ 김치류 규격(납 : 0.3㎎/㎏ 이하, 카드뮴 : 0.2㎎/㎏ 이하, 기생충란 : 불검출) 추가(강화)

☞ 납, 카드뮴은 유해성이 크고, 인체에 축적되는 물질로서 섭취시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물질이므로 안전관리를 위한 기준 설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김치류 기생충(란) 기준 설정과 관련해서는 식품공전「식품 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상의 '이물'에 대한 조항으로 기생충(란)을 규제하고 있고, 세척에 의해 기생충을 완전히 제거하기 어려우며, 과도한 세척시 품질저하 우려가 있어 관계기관 및 관련업계의 반대의견이 많으며, 또한, 김치의 기생충 검출문제 제기이후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결과('05.10~12중 9건/875건, '06.1~4중 3건/2,193건 검출) 일부 미생물 검출 사례가 있어 기준설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는 있으나 그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미약하고 앞으로 배추김치 HACCP의무화, 행정지도등을 통해 개선될 여지가 있으므로 기생충에 대한 규격 설정은 충분한 모니터링 및 행정적 개선노력 결과가 축적된 후 판단하도록 당분간 유보할 것을 개선 권고.

○ 심해성어류, 다랑어류 및 새치류의 메틸수은 기준(메틸수은 : 1.0㎎/㎏ 이하) 추가(강화)

☞ 메틸수은은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물질로, 전 세계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므로 기준설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시행시기와 관련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 모니터링 결과 참치의 메틸수은 함유량이 기준예정치 이하로 현재로서는 유해의 우려가 적고, 현재의 경제여건을 고려시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시행시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심해성어류 등의 기준설정은 범정부적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나, 논의가 미흡한 점이 인정되므로 범정부적 논의를 통해 시행시기를

결정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안 의결

※ 심해성어류의 메틸수은 기준설정 시기는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청, 해양수산부간 논의를 거쳐 3년의 유예기간을 설정키로 결정

(12) 의약품등기준 및 시험방법심사의뢰서심사규정개정안(강화 1)

■심사내용

○ 용출시험 기준 및 시험방법 설정시 근거자료 제출토록 되어 있던 것을 시간에 따른 용출양상 및 근거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서방성 제제의 용출시험 설정 원칙 추가 등을 규정(강화)

☞ 현행 지침상 미비점을 명확히 하는 등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 의결(비중요규제)

(13) 의료기기임상시험실시기관지정에관한규정개정안(신설 1, 내용심사 1)

■심사내용

○ 임상시험기관 지정요건, 임상시험기관 지정신청, 임상시험기관평가, 임상시험기관의 지정 등 규정(내용심사)

☞ 피험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등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문가 의견 수렴도 충분히 거친 것으로 판단되며 이해관계자의 이견도 없으므로 원안 의결

○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도감독, 지정취소 등 규정(신설)

☞ 임상시험은 피험자의 인권과 관련된 사항으로, 일정부분의 지도감독 및 사후관리를 위한 지정취소 등의 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이는 고시에서 규정할 수 없는 사항으로 법령에 반영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철회 권고

(14)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강화 1)

■심사내용

○ 염기성알루미늄탄산나트륨(Basic Sodium Aluminium Carbonate 디히드록시 알루미늄소듐카보네이트) 지정 취소(강화)

☞ 관련업계 및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없으며 과자류 중 알루미늄 검출보도('06.5.17, KBS 추적60부) 등 식품 중 알루미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식품 중 알루미늄 저감화 방안의 일환으로 식품첨가물중 알루미늄 함량비율(18.8%)이 가장 높은 품목인 「염기성알루미늄탄산나트륨」의 지정을 취소하는 것으로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의결(비중요규제)

(15) 의약품동등성 확보 필요 대상 의약품 지정 고시 제정안(내용심사 1)

■심사내용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상용의약품 273개 성분(제제)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고가의약품 186개 성분(제제)을 생물학적동등성 확보대상 의약품 범주에 추가(내용심사)

☞ 관련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시 규개위('05년 252차 행정사회분과위)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하라고 개선권고한 사항으로 사용량과 가격에 있어 상위 30%내의 의약품지정은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비중요규제)

(16)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강화 1)

■심사내용

○ 쌀, 옥수수 등 10종의 농산물에 대한 납과 카드뮴 잔류허용기준 설정(강화)

☞ 농산물 중 중금속 기준 설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청, 농림부, 환경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두 차례의 당정협의를 거치는 등 범정부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기준치는 위해평가를 거쳐 소비자단체 및 관련부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중금속 기준설정 위원회」를 통해 정하여졌고, codex 등 국제기준과 비교시 과도하지 않으며, 이해관계자의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 의결

(17) 의약품의국가검정면제등에관한처리규정 개정안(강화 1)

■심사내용

○ 의약품의 국가검정 면제 시험항목에 무균시험과 역가시험 추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품질관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모든 항목에 대한 국가검정을 실시 등 규정(강화)

☞ 전반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나 개정안 제4조제1항의 단서조항과 제5조제4항중 '청장이 품질관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구절은 특정화 되어 있지 않고, 자의적 판단의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하도록 개선 권고

제11절 통일 · 외교 · 국방 · 국가보훈분야

1. 통일부

집필자 : 윤동식 사무관(Tel. 2100-2492, dsyoon@opc.go.kr)

가. 2006년도 신설 · 강화규제심사 개요

❍ 2006년도에는 군사정전에관한협정체결이후납북피해자등의구제 및 지원에관한법률제정안, 반출 · 반입승인대상물품 및 승인절차에관한고시개정안 등 2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3건, 내용심사 1건 등 총 4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4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통일부의 2006년도 총 신설규제는 3건임

< 통일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군사정전에관한협정체결이후납북피해자등의구제 및 지원에관한법률 제정안	제302차 행정사회분과 (2006.9.20)	원안의결 3	신설 3 *비중요 3
반출 · 반입승인대상물품 및 승인절차에관한고시 개정안	제304차 행정사회분과 (2006.9.28)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비중요 1
계	–	원안의결 4	신설 3 내용심사 1 *비중요 4

나. 2006년도 신설 · 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군사정전에관한협정체결이후납북피해자등의구제 및 지원에관한법률 제정안 (신설 3)

■심사내용

○ 납북자 등에 대한 사실확인 등(신설)
- 납북피해 구제 및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피해구제금, 지원금 및 보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한 본인이나 납북자, 귀환납북자 및 납북피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제출 및 사실조회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며,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적 지식 또는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제출 · 사실조회 및 진술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자료 제출 또는 허위진술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정확한 사실을 토대로 납북피해자 등의 구제 ·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납북피해자와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 및 개인에 한정하여 협조의무를 부과하고, 위반시 다른 유사법률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타당한 내용이므로 원안의결

○ 유사명칭 사용 및 자격사칭 금지(신설)
- 납북피해 구제 및 지원 심의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금지, 위원회의 위원 자격 사칭 금지

* 위원회의 유사명칭 사용 또는 위원 자격사칭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위원회의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여 국민혼란을 예방하고, 위원 자격사칭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금지조항으로서 타당한 내용이므로 원안의결

○ 지원금 등의 양도 및 저당권 설정 등 금지(신설)
- 주거지원을 받은 귀환납북자는 그 주거지원을 받은 날부터 2년간 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취득주택에 대한 소유권 · 전세권 또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위원회가 심의 · 결정하여 지급받을 금전적 권리는 양도 · 담보제공 · 압류할 수 없음

☞ 주거지원을 받은 귀환납북자가 우리 사회 내에서 재정착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기간(2년간) 동안 소유권 등의 양도 · 저당을 금지하고, 납북피해자 등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원 결정된 금전적 권리는 유사입법례에서와 같이 양도 · 담보제공 · 압류를 금지하는 사항으로서,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규제로서 원안의결

(2) 반출 · 반입승인대상물품 및 승인절차에관한고시 개정안(내용심사 1)

■심사내용

○ 남북교역대상 물품의 반출 · 반입 승인(내용심사)
- 남북교역대상 물품 중 반입승인 품목에 표고버섯(신선 또는 냉장), 표고버섯(건조) 등 2개 품목 추가(196개→198개 품목)

☞ 중국산 표고버섯의 북한산 위장 반입을 방지하여 국내 표고버섯 생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산림청의 요청에 따라 표고버섯을 개별승인품목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남북간의 바람직한 교역질서를 확립하고 국내 생산농가 보호를 위한 조치로 타당한 내용이므로 원안의결

2. 외교통상부

집필자 : 윤동식 사무관(Tel. 2100-2492, dsyoon@opc.go.kr)

가. 2006년도 신설 · 강화규제심사 개요

❍ 2006년도에는 한국국제협력단법 개정안에 대해 신설 1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 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외교통상부의 2006년도 총 신설규제는 1건임

< 외교통상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한국국제협력단법 개정안	제295차 행정사회분과 (2006.7.20) 제169차 본회의 (2006.8.17)	개선권고 1	신설 1 *중요 1

나. 2006년도 신설 · 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한국국제협력단법 개정안(신설 1)

■심사내용

○ 항공권연대기여금 부과(신설)
- 국제사회의 빈곤과 질병퇴치를 위한 인도주의적 사업추진을 위해 국내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해 1,000원의 항공권연대기여금을 UN의 천년개발 목표달성년도인 2015.12.31까지 부과

☞ 국제사회의 개도국 지원에 한국이 적극 동참함으로써, 인도주의 국가로서의 위상제고를 기할 수 있다는 점, 최근 항공권 연대기여금 제도를 도입하는 국가가 늘어나는 국제 사회의 움직임, OECD 국가들과 비교시 상대적으로 저조한 수준의 ODA 원조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빈곤과 질병퇴치라는 범지구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규제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됨.

또한, 기여금이 항공권가격 및 국제여행비용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어서 기여금 부과가 항공산업 등에 미칠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여금 징수업무 또한 기존의 출국부담금 징수시스템을 활용하여, 공항공사 등에 위탁운영하므로, 규제신설로 인한 조직 · 인력이나 예산의 추가적 비용 소요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규제도입의 타당성과 적정성이 인정되나,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에 의거 규제의 존속기한이 5년 이내인 점을 고려하여 최대 5년 부과기한을 설정할 것을 개선권고

3. 국방부

집필자 : 윤동식 사무관(Tel. 2100-2492, dsyoon@opc.go.kr)

가. 2006년도 신설 · 강화규제심사 개요

❍ 2006년도에는 군인연금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내용심사 1건의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국방부의 2006년도 총 신설규제는 없음

< 국방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군인연금법시행령 개정안	제303차 행정사회분과 (2006.9.21)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비중요 1

나. 2006년도 신설 · 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군인연금법시행령 개정안(내용심사 1)

■심사내용

○ 퇴직연금의 지급정지 등(내용심사)

– 법 제21조의2에 의거 퇴역연금 수급자가 연금외의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소득이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을 초과한 때 소득구간별로 일정비율 지급정지 하되 퇴역연금의 1/2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퇴역연금수급자의 재취업 · 재퇴직시 신고서 제출의무를 부과하며, 소득월액 개념 · 퇴역연금 지급정지기준 산정방법 · 소득확인방법 · 국가기관으로부터 소득금액 확인불가시 지급정지액 정산방법 등을 정함

☞ 법 위임범위 내에서 공무원연금법(법 제47조2항, 시행령40조)과 동일한 수준으로 소득심사제도를 보완 ·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의결

4. 국가보훈처

집필자 : 윤동식 사무관(Tel. 2100-2492, dsyoon@opc.go.kr)

가. 2006년도 신설 · 강화규제심사 개요

❍ 2006년도에는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관한법률 개정안, 5 · 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개정안 및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개정안 등 3개 법률에 관련된 내용심사 1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

❍ 심사대상 1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국가보훈처의 2006년도 신설규제는 없음

< 국가보훈처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관한법률 개정안, 5 · 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개정안 및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개정안	제309차 행정사회분과 (2006.11.16)	원안의결 1	내용심사 1 *중요 1

나. 2006년도 신설 · 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관한법률 개정안, 5 · 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개정안 및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개정안(내용심사 1)

■심사내용

○ 채용시험의 가점(내용심사)

- 취업보호실시기관의 직원채용시험(필기 · 실기 · 면접시험 등)시 취업보호대상자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현행 10% 가점비율을 다음 각 호의 가점비율(단, 한 과목의 점수가 4할미만인 경우 가점 제외)로 개정함

호	가점비율	가점대상자
1	만점의 10%	–순국선열의 유족 및 애국지사(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4조제1호 및 제2호) –애국지사가 등록일 전에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전상군경 · 공상군경 · 무공수훈자 · 보국수훈자 · 재일학도의용군인 · 4.19혁명 부상자 · 4.19혁명공로자 · 공상공무원 ·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와 그 가족 중 국가유공자 –전몰군경 · 순직군경 · 4.19혁명사망자 ·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2	만점의 5%	–애국지사의 가족 –애국지사가 등록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전상군경 · 공상군경 · 무공수훈자 · 보국수훈자 · 재일학도의용군인 · 4.19혁명 부상자 · 4.19혁명공로자 · 공상공무원 ·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와 그 가족 중 국가유공자의 가족과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관한법률제2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 · 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1인

☞ 헌법적 근거가 없는 국가유공자 가족에 대해 가점비율을 축소(10%→5%)하고, 과목별 4할미만 득점자에 대하여 가점부여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일반국민에 대한 종전 규제를 완화하는 사항이란 점, 헌재연구관이 참여하는 가점제도 개선 T/F회의, 전문연구기관 용역결과, 정책고객 설문조사, 공청회 등 각계의 여론수렴 결과를 토대로 개선안을 마련한 점, 최근 3년간('03~'05) 국가직 7 · 9급 필기시험에서 국가유공자의 가점합격자 비율을 토대로 국가유공자 가족에 대해 5%의 가점비율을 적용한 보훈처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7급직은 26.7%→8.9%, 9급직은 13.5%→3.9%로 가점합격자 비율이 대폭 하락하여, 2001년 합헌결정 당시의 가점합격률을 하회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그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의결

제12절 일반행정분야

1. 행정자치부

집필자 : 이종협 사무관(Tel. 2100-2442, bird@opc.go.kr)

가. 2006년도 신설 · 강화규제심사 개요

❍ 2006년도에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온천법시행령, 행정정보공동 이용법, 기부금품 모집규제법시행령,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지적법시행규칙 등 8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6건, 강화 2건, 내용심사 17건 등 총 25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중요규제 6건, 비중요규제 19건)

❍ 심사대상 25건 중 2건에 대하여는 철회권고, 3건에 대하여는 개선권고하고, 20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행정자치부의 2006년도 총 신설규제는 6건임

< 행정자치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개정안	제287차 행정사회분과 (2006.5.19)	원안의결 2 개선권고 1	내용심사3 *중요1
온천법시행령 개정안	제291차 행정사회분과 (2006.6.23)	원안의결 3 철회권고 1 개선권고 1	신설2, 내용심사3 *중요2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시행령 제정안	제296차 행정사회분과 (2006.8.17)	원안의결 6	내용심사6
행정정보공동이용법 제정안	제297차 행정사회분과 (2006.8.24)	원안의결 3	신설3
기부금품모집규제법시행령 개정안	제298차 행정사회분과 (2006.8.31)	원안의결 4	강화1, 내용심사3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305차 행정사회분과 (2006.10.19)	원안의결 1 철회권고 1 개선권고 1	신설1, 내용심사2 *중요2
지적법시행규칙 개정안	제310차 행정사회분과 (2006.11.30)	원안의결 1	강화1 *중요1
계	–	원안의결 20 개선권고 3 철회권고 2	신설 6 강화 2 내용심사 17 *중요6 비중요19

나. 2006년도 신설 · 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개정안(내용심사 3)

■심사내용

○ 옥외광고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됨에 따라 세부 등록요건을 규정함(내용심사, 중요규제)

– 옥외광고업 등록관련 기술능력 및 시설(별표 3)

기술능력	
자격명	확보기준(종업원)
· 자격기본법에 의한 옥외광고사 2급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광고도장기능사	· 5명 미만 : 1명 이상 · 6명 이상 10명 이하 : 2명 이상 · 10명 초과 : 3명이상

*비고(2호) :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이 옥외광고업 기술능력을 보유하여야 함

시 설	
작 업 장	사 무 실
· 9.9제곱미터(3평) 이상	· 6.6제곱미터(2평) 이상

☞ 본 기준은 법률개정('03.7 본위원회 심사)으로 옥외광고업이 신고제→등록제로 변경됨에 따라 세부 요건을 정하는 것으로 법률 부칙상에 '종전 규정에 의해 신고를 한 업자는 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현행 업자에 대한 추가 부담요인은 없음

- 다만, 신규 사업자의 진입장벽 완화 차원에서 기술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이 선택폭을 확대하도록 개선 권고
  ① 현재 대부분 광고물이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점과 컴퓨터그래픽 광고물의 증가 추세를 감안하여
  ⇒ 전기기술 자격자와 및 컴퓨터그래픽기술 자격자도 포함할 것(입법 예고시 제시된 의견 수렴)
  ② 대부분이 영세업체인 점 고려시, 개인사업자 본인에 대해 기술능력 보유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진입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 별표 3의 비고(2호)는 삭제할 것

○ 법 제14조에서 위임한 옥외광고업의 등록취소와 영업정지의 세부기준을 정함 (내용심사)
- 법제14조제1호 및 제4호 해당사항 : 등록취소
- 법 제14조제2호 및 제3호 해당사항
  · 1차위반 : 15일~30일미만 영업정지
  · 2차위반 : 3월~6월이하 영업정지
  · 3차위반 : 등록취소

※ 기존 신고제하에서의 제재수준과 동일하게 규정하되, 법 제14조제3호 위반사항만 처분기준 폭을 확대(3월이하→6월이하)

※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개정법률('06.6.24 시행) 제14조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옥외광고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때
  2.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3. 이 법에 위반되는 광고물등을 설치하여 공중에 중대한 위해를 끼친 때
  4.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때

☞ 법에서 규정된 제재 한도(6월 이내 영업정지)내에서 위반행위별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규제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피규제자수(18,049개소)도 중요규제 기준에 미치지 않음(비중요규제)

– 각각의 제재수준은 전반적으로 현행 신고제 하에서의 기준과 동등한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어 추가적인 강화요소는 크지 않으며, 영업정지 처분도 단계적(1~3차)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 의결

○ 법 제20조제1항제2호에서 위임한 범위(300만원 이하 과태료)내에서 휴·폐업 또는 업무재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세부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내용심사)

– 과태료부과기준(별표 5, 추가)

위 반 사 항	과 태 료
3.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의 휴·폐업 또는 업무재개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관할세무서 휴·폐업 및 재개업 신고일 기준)	
가. 30일미만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나. 30일이상 90일미만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다. 90일이상 180일미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라. 180일이상 1년미만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마. 1년이상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 법률에서 규정한 과태료 최고한도(300만원) 범위내에서 세부 기준을 규정하는 것으로 규제 수준이 상위법 범위 이내로 제한되고, 피규제자 수가 18,049개소인 점을 감안시 비중요규제에 해당

– 각각의 과태료 부과금액도 신고 지체일수에 따라 차등 부과토록 하고 있어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 의결

(2) 온천법시행령 개정안(신설 2, 내용심사 3)

■심사내용

○ 온천굴착허가·발견신고·이용허가시 원상회복이행보증금 예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내용심사)

– 온천발견신고·온천이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고시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을 현금 또는 다음에 해당하는 보증서·유가증권 등으로

예치하여야 함

· 금융기관 또는 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보험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등

– 법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음

· 온천발견신고(온천발견신고 수리일까지)

· 온천이용허가(허가만료일로부터 1년후까지)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는 자를 대신하여 원상복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행보증금이 부족하게 된때에는 부족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법 제13조제3항에서 원상회복 절차와 방법을 지하수법 제15조를 준용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이행보증금의 종류, 예치방법 등을 지하수법령과 같이 규정하는 것으로 규제대상자가 온천이용허가자가 연간 약 60건으로 제한되고, 규제비용도 이행보증금 예치에 따른 이자비용 정도로 예상되어 비중요규제에 해당

– 규제내용이 지하수법시행규칙과 동일한 수준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 의결

○ 온천원보호지구내 온천자원의 남용방지를 위하여 지하수개발을 1일 사용량 150톤 이내로 제한하고, 지하수 개발을 위한 토지굴착은 지하 150미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함(내용심사, 중요규제)

☞ 본 조항은 온천수 보호를 위해 1일 사용량 및 굴착깊이를 제한코자 하는 것이나, 외국 입법례 등에 있어서도 온천원 주변지역의 지하수 채수량 등을 제한하는 사례가 없고, 사용량(150톤) 및 굴착깊이(150m) 제한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하수 이용현황('05년지하수연보) 고려시 본 규제기준(150톤, 150m제한)은 사실상 규제를 다 풀어주게될 가능성이 있어 온천원 보호를 위한 법률 취지에도 반하는 문제도 있으므로 철회 권고

– 추후 현행 규정을 보완하여 허가대상을 추가하거나, 사용량 및 굴착깊이 제한 기준에 대한 연구검토를 거쳐 필요시 재 추진토록 권고

○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협회 정관의 기재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온천협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신설)

1. 온천협회의 설립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온천협회의 사업내용
5. 회원의 자격
6. 임원의 정수 · 임기 및 선출방법
7. 총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8. 이사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온천협회의 조직 · 구성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절차

☞ 비영리법인 설립시의 주무관청의 허가(민법 제32조), 주무관청의 감독(제 32조), 정관작성(제40조) 등은 민법규정에 의해 법인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으로서, 주무관청의 일반적 지도감독사항으로 비중요규제에 해당

- 온천협회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제출의무는 온천협회가 행정기관의 위탁사무(수질검사 등)를 수행할 수 있는 점과, 국가 · 지자체가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시 주무관청으로서의 필요한 최소한의 감독규정으로 판단되므로 원안 의결

○ 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온천종사자(*온천이용 허가를 받은자)와 온천이용시설의 종업원은 다음 각호의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도록 함(신설, 중요규제)

- 온천종사자 : 온천이용허가시 8시간
- 종업원 : 신규고용시 8시간, 매 2년마다 4시간

☞ 본 조항은 법률 제27조제3항에서 온천종사자 및 이용시설 종업원에 대한 교육이수 의무가 규정됨에 따라 세부 교육시간을 규정하는 것이나, 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은 그간 형식적 교육운영, 교육실효성 저하 등의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온 사안으로서 규제개혁기획단에서 '사업자교육 개선방안(정기 보수교육 폐지, 교육시간 단축 추진중)을 마련중에 있는 사항이므로 동 방향에 맞춰 최대한 완화하도록 개선 권고

① 온천종사자(이용허가자)에 대한 교육은 유사업종인 공중위생법상 목욕장업 등과 같은 4시간으로 축소할 것

② 종업원에 대한 교육은 유사업종인 공중위생법상 목욕장업 종업원에 대해서는 교육의무가 없는 점과 식품 · 소방 등과 달리 생활안전과 직접 관련이 없어 교육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을 고려, 신규교육만 4시간으로 규정하고 향후 법개정을 통해 교육의무를 폐지할 것

○ 온천굴착 허가시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다음과 같이 추가함(내용심사)
- 온천자원의 부존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
- 타인소유 토지에 굴착하고자하는 자는 토지소유자의 굴착사용 동의서

☞ 온천자원 부존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서는 법 제12조제3항에서 굴착허가 신청시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서류이며, 타인소유 토지에 굴착허가를 신청하는 자에 대해 '소유자의 동의서'를 제출토록 하는 것은 일반 민사관계에 있어서도, 타인 소유재산 이용시 당해 소유자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인 점을 감안할 때 필수 서류인 것으로 판단됨

(3)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 지원특별법시행령 제정안(내용심사 6)

■심사내용

○ 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을 사업승인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함(내용심사)
- 사업의 명칭 및 목적, 내용과 규모
- 시행자의 주소와 대표자 성명
- 예상사업비 규모 및 재원조달방법
- 사업시행기간 및 장소
- 소요토지확보방안 및 기대효과
- 관계도면

☞ 본 조항은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시행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 사업계획 승인시 시행령안 제29조에 의해 국토이용계획법 등 28개 법령에서 정한 각종 인 ·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특례를 부여하고 있는 점과,
- 유사법률인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에서 규정한 것과 동일한 수준인 점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등 개별법령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시 일반적으로 제출하는 서류인 점을 고려시 타당성이 인정되며, 사업시행자에 대한 추가적인 부담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 의결

○ 수도권지역내 공장신설 허용업종을 규정함(내용심사)
-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의 산업단지 및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500㎡이상의 공장 신·증설을 허용(법제15조)하되,
- 공장신설의 경우 허용범위를 별표3호에 규정된 61개 업종으로 정함
  * 평택지원특별법 시행령에서 정한 업종과 동일

☞ 동 조항은 미군공여지역 등의 경제회복과 고용안정 등을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제한규정을 완화하되 공장신설의 경우, 허용되는 업종을 별도 규정하여 종전 규제에 대한 규제완화 특례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유사 법률인 '평택지원특별법'에서 규정한 것과 동일한 내용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 의결

○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지정 요청시 국가·지자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가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할 서류를 다음과 같이 정함(내용심사)
- 사업구역의 조사결과서 및 위치도
- 지형도·지적도·임야도
- 편입농지 및 임야현황에 관한 조사자료
- 현황사진 및 광역교통체계관련 자료
- 환경성검토에 필요한 자료
- 도시기본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자료

※ 특별법 제20조
-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발전촉진을 위해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8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원도시사업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자자체, 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지원도시사업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음

☞ 본 조항은 기본적으로 해당 지자체 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규정된 것으로서 규제

내용도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검토에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기초자료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안 의결

○ 지원도시개발사업자가 지원도시 개발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 다음의 서류가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내용심사)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위치 및 면적
- 개발사업 시행자의 명칭 · 주소 및 대표자 성명
- 사업시행기간
- 법 제22조 각호 규정에 의해 의제되는 지정 · 승인이 있는 경우 그 내용
- 토지확보 및 이용계획 등
- 그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 본조항은 국가 · 지자체 · 정부투자기관 · 지방공사가 지원도시 사업계획 승인요청시 제출해야 할 자료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제출서류는 유사입법인 「평택지원특별법」상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의 승인시 제출서류를 전반적으로 인용하였으며 기타 '기업도시개발특별법' 등 지역개발관련 법령에서도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규제로 인한 부담도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 의결

※ 평택지원특별법 시행령 제12조
- 국제화계획지구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호가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제출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위치 및 면적
  · 사업시행기간
  · 토지확보 및 이용계획 등

○ 사업시행자가 지역주민을 고용할 때에는 분야별 채용계획서 및 특수기술자 등에 대한 고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 · 군수에게 고용추천 의뢰를 하도록 함(내용심사)
  * 고용추천의뢰(사업자)→고용추천(시장군수)

☞ 지역주민의 우선고용의무는 미군기지가 이전된 지역에서의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적 조치로서 기본적인 규제사항이 법률(제23조)에 규정된 상황에서 고용추천 등 세부

절차를 규정하는 것이며, 유사법률인 평택지원특별법, 접경지역지원법 등에서도 지역주민에 대한 우선고용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시 그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 의결

○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시행자의 요건 등을 정함(내용심사)
-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
  · 분양하고자 하는 토지 또는 시설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할 것
  · 개발사업의 공사진척율이 10% 이상일 것
- 선 분양 계획의 불이행시 선수금 환불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증권 등을 사업승인권자에게 제출(토지를 미리 분양한 후 당해토지 등을 담보로 제공 불가)

☞ 동 조항은 사업시행자가 토지 또는 시설을 사전에 분양할 수 있도록 하여 시행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것으로서, 유통단지개발촉진법, 기업도시개발특별법, 도시개발법 등 개발관련 법령에서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 의결

(4) 행정정보공동이용법 제정안(신설 3)

■심사내용

○ 행정정보 공동이용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신설)
-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는 기관은 당해 정보의 주체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사전 동의를 얻도록 함
  · 공동이용의 목적
  ·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 공동이용 대상 이용기관의 명칭
- 이용기관 및 그 임직원은 행정정보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 승인받은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승인을 얻지 않고 공동이용하거나, 승인 받은 범위를 넘어서 이용하는 행위
  · 승인철회 또는 중단 후 공동이용하는 행위
  · 전송받은 행정정보를 위조 · 변경 · 훼손하거나, 승인 없이 다른기관에 제공하는 행위

· 행정정보를 해당 처리업무단위별로 열람 · 출력하는 외에, 다른 컴퓨터 또는 저장장치 등에 저장하는 행위

☞ 본 법안은 연간 약 4억4천만건에 달하는 종이 민원서류의 획기적 감축을 위해, 행정기관간에 공동이용할 수 있는 정보(국가유공자 증명정보 등 71종)에 대해서는 전자적 방법으로 공동이용토록 기본원칙 · 절차 등을 규정하고, 그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장치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 규제대상이 각급 행정기관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위원회로부터 이용승인을 받은 공공기관 · 금융기관에 국한되고, 행정기관 이외의 기관(공공 · 금융기관)도 당해 행정정보 이용에 있어서는 행정기관에 준하는 준수의무가 필요하므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 의결

○ 행정정보 이용기관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신설)

– 행정정보 이용기관은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행정정보의 위 · 변조 방지기능을 적용하고 정보관리책임자 및 보안업무담당자를 지정 · 운영하여야 함

– 이용기관은 담당자가 준수해야할 보안규정을 제정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에 통보하여야 함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정보 보안 등 의무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① 피규제집단이 행정정보를 공동 이용하는 행정기관 등으로 제한되는 점과

② 대부분 기관이 자체 전산조직 · 인력을 갖추고 정보관리책임자 등을 지정 · 운영하고 있어 추가적인 비용발생 요인은 거의 없는 점

③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사항은 신용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보호에 관한법률 등 유사법률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시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 의결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함(신설)

– 정보주체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공동이용한 경우

– 공동이용 승인이 철회되거나 중단된 때 해당정보를 파기하고 그 사실을 공동이용센터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 정보주체의 열람청구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위 · 변조 방지기능 적용하지 않거나, 정보관리책임자 및 보안업무담당자를 지정 ·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 보안관리규정 정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이용센터에 통보하지 않은 경우

☞ 규제사항에 대한 의무이행 확보수단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규제대상 범위가 각급 행정기관 및 공동이용 승인을 받은 공공기관 등에 국한되고,
- 특히, 상대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가 높은 국가 이외의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 정보 공동이용 권한을 제공받는 것에 대한 상응조치로서 국가기관에 준하는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 의결

(5)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시행령 개정안(강화 1, 내용심사 3)

■심사내용

○ 법 제5조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품 모집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 · 단체'를 다음과 같이 정함(내용심사)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대표자의 임면과 업무 감독, 예산 승인 등 기구 · 예산편성, 조직원에 대한 인사, 의사결정 등에 실질적인 지휘 · 통제를 받지 않는 법인 · 단체

※ 법 제5조제1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 · 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을 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 · 단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본 조항은 법 제5조제1항 규정에 의해 원칙적으로 기부금품 모집이 금지된 국가 · 지자체의 출자 · 출연기관에 대해 예외적으로 기부금품 모집을 허용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 의결

○ 모집된 기부금품 중에서 모집자가 기부금품의 모집 · 관리 · 운영 등에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의 비율을 규정함(내용심사)

- 10억원 이하 : 모집금액의 15%이하
- 10억원초과~100억원 : 모집금액의 13%이하
- 100억원초과~200억원 : 모집금액의 12%이하
- 200억원 초과 : 모집금액의 10%이하

☞ 법 제12조의2 규정에 의해, 규제의 범위가 명확히 한정(15%이내)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모집금액별 차등비율을 설정하는 것으로 최저비율(200억원 초과시, 10%이하)도 유사법률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서 정한 비율(10/100)과 동등한 수준이므로 과도한 규제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원안 의결

- 다만, 예외적 허용범위는 의미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규정 중 '예산승인 등 기구 · 예산편성'을 '예산승인'으로 수정하고, '의사결정'을 삭제할 것을 권고

○ 모집자에 대해 장부 · 서류의 비치 및 공개의무를 부과함(강화)

- 모집자는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 · 완료 · 사용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해당 등록청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하고,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 하여야 함
  · 모집자의 성명 · 명칭, 등록일자 · 번호, 모집금품의 총액 · 수량, 사용내역(각호는 종전과 동일)

  *종전 일간지 게시→인터넷 게시로 변경
- 모집자는 모집기간이 만료되거나 목표액에 도달된 때에는 모집을 중단하고, 30일 이내에 기부금품모집 완료보고서를 등록청에 제출하여야 함
- 모집자는 모집 및 사용내역 등을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기부자 등이 모집상황을 수시로 알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법 제13조 규정에 의해, 모집자에 대한 서류작성 · 비치의무 및 사용결과 등의 공개의무 등이 규정된 상황에서 모집된 금품의 투명한 사용확보를 위한 세부 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 의결

○ 모집자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내역에 대한 회계감사보고서 등을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함(내용심사)

- 모집자는 기부금품의 사용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인회계사 또는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의뢰하여야 함
- 모집자는 기부금품의 사용을 완료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내역 보고서에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등록청에 제출해야함(다만, 모집금액

1억원 이하인 경우는 회계감사보고서 생략하되, 영수증 등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법 제13조 규정에 의해, 모집자에 대한 회계감사보고서 제출의무 등 기본 규제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회계감사 의뢰기일(30일 이내) 및 보고서 제출기일(60일이내) 등 세부 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 의결

(6)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1, 내용심사 2)

■심사내용

○ 공중화장실 규제의 적용범위중 법(제3조제16호)에서 위임된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시설'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현행 기준에 '근린생활로 사용되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추가함(내용심사, 중요규제)

※ 현행규정 : 건축법에 의한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개정안 : 건축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근린생활시설은 여타 용도의 시설과 달리 음식점 · 미용원 · 의원 · pc방 · 학원 · 노래연습장 등 성격이 다양한 업종이 복합되어 있고, 건축물의 용도변경 없이도 타 업종으로의 전환이 가능하여 시설의 용도 및 시설 이용자의 남 · 여 비율이 가변적인 특성이 있음

*예시 : 근린생활시설내에서 미용실 · 산부인과의원이 이용원 · 비뇨기과의원으로 입주 업종이 변경되면 시설이용자의 남 · 여 비율에 큰 변화가 수반됨

– 이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지 않는 한 시설이용자의 남 · 여 비율에 큰 변화가 발생되지 않는 특성과 공공적 성격이 강한 현행 공중화장실법의 적용대상(여객자동차터미널 · 공항시설 · 고속국도휴게소 · 공원 · 공연장 등)은 근린생활시설과는 특성상 큰 차이가 있으므로 근린생활시설내의 화장실 설치는 시장경제원리 및 사적자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합리적이며,

– 이를 공중화장실 규제대상에 포함하여 남 · 여 변기수의 비율 등에 대해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근린생활시설의 가변성 등으로 인한 부작용과 낭비적 요소가

발생될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되므로 동 조항 개정에 대해 철회 권고

*건축법령상의 건축물의 화장실 면적기준은 사적자치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사안으로 분류되어 '99년 규제개혁차원에서 폐지되었음

○ 공중화장실 등의 세부 설치기준을 규정함(내용심사, 중요규제)

- 법(제7조제2항)에서 위임된 공중화장실 설치시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 대 · 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는 장소 또는 시설'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함
  · 수용인원이 1,000명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의 공연장 · 관람장 · 전시장
  · 관광휴게시설의 야외음악당 · 야외극장 · 공원 · 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 고속국도 휴게소, 여객자동차터미널,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공항시설
  · 고속철도 · 일반철도 · 광역전철, 도시철도 등이 서로 교차되는 환승역

-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 화장실 대 · 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의 세부설치기준을 규정함
  · 화장실 전체면적은 46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대변기 10개(남자용 2개, 여자용 8개) 이상, 소변기 3개이상 설치하도록 함(안 제1호)

- 법(제7조의2)에서 위임된 '공중화장실의 어린이용 대 · 소변기등의 설치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어린이전용 대변기를 1개 이상 설치하거나, 일반 대변기에 어린이용 변좌를 1개 이상 설치할 것
  · 어린이용 소변기를 1개 이상 설치하되, 벽걸이형으로 설치시에는 소변기의 벽체 배수구를 바닥면에서 20~30cm 의 높이로 설치할 것
  · 어린이용 세면대는 1개 이상 설치하되, 바닥면에서 세면대 상단까지의 높이가 60cm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 법(제7조제1항) 및 시행령안(제6조의2제1항)에서 위임된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의 대 · 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하고, 화장실의 전체 연면적은 33제곱미터 이상 · 대변기 7개(남자용 2개, 여자용 5개) 이상 · 소변기 3개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규제'와 '어린이용 대 · 소변기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규제(법 제7조의2, 시행령안 제6조의2 제1항)'를 적용받지 않는 시설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함
·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소(건축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미만에 한함)
· 체육시설업중 신고 체육시설업의 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용 또는 공공용시설로서 연면적(지하 주차장 면적 제외) 66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 남자 또는 여자로 명확히 구분되는 남자학교 또는 여자학교

☞ 여성의 화장실 이용시 불편을 해소한다는 입법취지는 충실히 반영하되, 예기치 못한 혼란과 낭비적 요소가 발생될 개연성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규제적용 대상 시설이나 장소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1. 공공적 성격이 강할 것
2. 이용자 수가 대규모일 것
3. 제한된 시간 또는 일시에 많은 인원이 화장실을 이용하는 특성이 있을 것
4. 현재 해당 시설 및 장소의 화장실 이용에 있어 여성의 변기수가 부족하여 여성이 오랜시간 줄을 서는 등 불편을 겪고 있을 것

– 따라서, 규제적용 대상 중 위의 요건이 충족되는 '수용인원이 1,000명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의 공연장 · 관람장 · 전시장'에 대하여는 규제적용의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관광휴게시설의 야외음악당 · 야외극장 · 공원 · 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은 '수용인원 1,00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규제를 적용하도록 개선 권고

– 기타 시설의 경우 현재 화장실 설치현황을 감안시 과도한 부담과 부작용(규제기준에 맞추기 위한 남자화장실의 변기수 축소 등)이 예상되거나(예 : 고속국도 휴게소), 여성들의 화장실 이용에 현재 큰 불편이 없으므로(예 : 공항시설 등) 이를 규제대상에서 제외하여 삭제할 것을 개선 권고

– 규제대상 시설이나 장소 중 이용자의 남 · 여간 성별비율에서 남자가 현저하게 많은 경우(예: 야구 · 축구 · 경기장 등)까지 규제대상에 포함 하는 것은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개선 권고

* 개선안(예) : '규제적용 대상 시설이나 장소 중 이용자의 남 · 여 성별비율 등의 특성상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장실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

- 공중화장실의 면적 및 변기수에 대한 최소기준은 내용상 기존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남 · 여 변기수의 비율만 조정한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어린이용 대 · 소변기의 설치기준은 현재의 시공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그 적정성이 인정되나, '어린이용 세면대의 설치기준'의 경우 기술의 변화추세를 반영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높낮이가 조절되는 세면대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인정할 것을 개선 권고

-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경우 시설의 특성상 이용자의 체류시간이 짧고 일시에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경우가 없어 규모에 관계없이 시장경제원리 및 사적자치에 의해 화장실이 설치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단서규정(건축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미만에 한함)은 삭제할 것을 개선 권고

- 또한, 규제적용 제외대상으로 규정한 시설이나 건물 이외에도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정한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규정을 보완할 것을 개선 권고

* 개선안(예) : 규제적용 제외대상에 '기타 시설물의 특성상 이용자의 남 · 여 성별 비율이 가변적이거나 불균형을 이루는 경우, 시설이용대상에 어린이가 없는 경우, 화장실의 시설기준에 비해 시설이용인원의 규모가 현저하게 작은 경우 등으로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

○ 한국화장실협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신설)

-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 당해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 법인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총회 또는 이사회의 중요 의결사항
- 그 밖에 협회의 운영과 회원에게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

☞ 법(제15조의3)의 규정에 의거 한국화장실협회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타 입법례와 규제수준이 유사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 의결

(7) 지적법시행규칙 개정안(강화 1)

■심사내용

○ 지적기술자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함(강화, 중요규제)
- '지적기술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적측량업을 등록하고 지적측량업을 영위한 경우 또는 소속 지적기술자가 이를 알고도 지적측량업을 행한 경우'를 자격취소의 징계대상행위에 추가함
- 지적측량과 관련한 다음사항에 대한 징계대상에 대한지적공사 소속 기술자를 추가함
  · 지적기술자가 지적측량업무와 관련하여 지적측량 수수료 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
  · 지적기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적측량의뢰를 거부한 경우
  * 현행 법령상 지적측량은 법령상 지적측량업을 등록한 지적측량업자와 대한지적공사가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징계대상은 지적측량업자로 한정되어 형평성이 결여

- 징계대상행위에 '지적기술자가 소관청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지적측량성과도를 측량의뢰인에게 교부한 경우(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경계복원측량 및 지적현황측량 제외)'를 신설하고, 1월이상 1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함
  * 징계수준(1월이상 1년이하의 자격정지)은 '기타 지적기술자가 지적관계법령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

☞ '지적측량성과의 검사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통해 지적공부의 정확성을 유지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징계대상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강화의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원안 의결

2. 소방방재청

집필자 : 박 웅 사무관(Tel. 2100-2451, ungpark@opc.go.kr)

가. 2006년도 신설 · 강화규제심사 개요

❍ 2006년도에는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제정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진재해경감대책법 제정안, 소방시설공사업법중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 7개법령 20건에 대하여 신설 10, 강화 5, 내용심사 5건을 규제심사(중요 8건, 비중요 12건)

❍ 심사대상 20건에 대하여 원안의결 16건, 개선권고4건을 하였음

< 소방방재청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2006.3.28)	원안의결3	내용심사3 *비중요 3
풍수해보험법 시행규칙 제정안	예비심사 (2006.3.28)	원안의결2	내용심사2 *비중요 2
지진재해경감대책법 제정안	제301차 행정사회분과 (2006.9.14)		재심사
지진재해경감대책법 제정안	제304차 행정사회분과 (2006.9.28) 제172차 본회의 (2006.10.19)	원안의결2 개선권고3	신설5 *중요3, 비중요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제306차 행정사회분과 (2006.10.26)	원안의결2	강화2 *중요1, 비중요1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안	제311차 행정사회분과 (2006.12.14)	원안의결1	강화1 *중요1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제312차 행정사회분과 (2006.12.19)	원안의결3	신설3 *중요1, 비중요2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제312차 행정사회분과 (2006.12.19)	원안의결3 개선권고1	신설2, 강화2 *중요2, 비중요2
계		원안의결16 개선권고4	신설10, 강화5, 내용심사5 *중요8, 비중요12

나. 2006년도 신설 · 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지진재해경감대책법 제정안 (신설6)

■심사내용

○ 재난관리 책임기관장의 지진재해 경감을 위한 의무
- 지진재해 경감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중 소관사항에 해당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제3조제2항)
  · 지진재해예방 및 대비
  · 내진대책
  · 지진 관측 · 분석 · 통보 · 경보전파 및 대응
  · 그 밖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각종 조사, 연구와 계획 수립, 사업시행 등과 관련하여 조사한 지질 및 지반 자료를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에 제출(제16조제2항)
-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중 관련규정이 제정되기전에 설치된 시설 또는 제정이후 내진설계기준이 강화된 시설에 대하여는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내진성능에 대한 평가 실시(제18조)
- 내진성능평가결과에 따라 내진보강을 위한 중 · 장기계획 수립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 · 군 · 구지역본부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제19조)
- 중 · 장기계획에 따라 매년 추진할 사업계획을 수립,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고, 내진보강 사업을 추진하며, 이를 평가(제20조).
- 지진에 관한 연구 및 지진재해경감을 위해 소관사항에 대하여 각종 내진설비와 내진기준 등에 관한 조사와 기술개발 및 연구실시(제29조제1항)

○ 지진관측기관의 기상청장과의 사전 협의 의무
- 기상청장 이외의 다른 지진관측기관의 장이 지진관측 장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지진관측계획서를 작성하여 기상청장과 미리 협의하고, 지진관측 장비는 기상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제5조).
- 기상청장 이외의 자가 지진 및 지진해일에 관한 정보를 발표하고자 할 때에는 기상청장과 협의(제7조).

○ 주요 시설물의 지진 가속도 계측 , 관리 및 대행자의 관리
- 주요 시설물이나 건축물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그 시설물의 지진가속도를 계측하고, 계측된 자료를 중앙본부장 및 기상청장에게 제출(제6조)
- 계측기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제9조)
- 지진가속도계측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에게 등록, 등록자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해당 요건을 규정(제10조)
  · 사기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은 때
  · 지진가속도계측 자료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였을 때
  · 경영부실 등의 사유로 지진가속도 계측을 계속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 대규모 인명피해 예상시설물 등에 대한 비상대처계획수립
- 지진으로 인한 대규모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우려되는 댐, 다중이용시설 등의 시설물과 해안지역 등에 대하여 시설물 또는 지역의 관리주체는 피해경감을 위한 비상대처계획을 수립.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의하여 수립할 수 있음.
-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 절차 및 비상대처계획 수립대행 등에 대하여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7조, 제38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을 준용함

○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일시사용 등
- 중앙 · 지역본부장 또는 중앙 · 지역본부장으로부터 명령이나 위임 · 위탁을 받은 자는 시설물 등의 점검, 지진재해 원인조사 · 분석, 피해시설물 위험도 판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때에는 나무 · 흙 ·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음.
- 타인의 토지에 출입, 토지의 일시사용 또는 나무 · 흙 ·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고자 할 때는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해당 관계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으로 그 동의를 얻을 수 없을 때는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과태료 (안 제35조)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주요 시설물에 대해 지진가속도계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 침수흔적 등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무단으로 침수흔적표지를 훼손한 자

· 지질 · 지반조사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자 또는 허위 자료를 제출한 자

☞ 소방방재청에서 다음의 자료를 보완하여 분과위에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무국에서 재심사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동법과의 관계 정립 · 제시
  · 제11조 '비상대처계획 수립' 등에 대해 자연재해대책법을 준용하고 있는 바, 자연재해대책법 상 지진 관련 조항과의 관계, 운영방안
- 현 지진대응 예산 · 인력 · 시스템, 향후 추진일정, 법 시행에 따른 소요인력, 예산 등 행정대응 계획,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요구되는 사항 제시
- 주로 공공기관에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민간이나 타 기관에 의무를 부여하는 사항을 정리하여 제출
- 제6조에는 '주요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그 시설물의 거동특성을 계측' 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요시설물의 개념, 범위,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출
- 지진가속도 계측을 대행할 수 있는 업체, 인원, 시장형성 등의 현황
- 제18조 '관련규정이 제정되기 전에 설치된 시설물'등의 내진성능평가, 보강사업 추진 등 소급적용문제에 대해 대상시설물의 범위, 기준을 구체화 할 수 있는지 검토 제시

(2) 지진재해경감대책법 제정안 (신설5)

■심사내용

○ 재난관리 책임기관장의 지진재해 경감을 위한 의무

- 지진재해 경감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 중 소관사항에 해당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제3조제2항)
  · 지진재해예방 및 대비
  · 내진대책
  · 지진 관측 · 분석 · 통보 · 경보전파 및 대응
  · 그 밖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각종 조사, 연구와 계획 수립, 사업시행 등과 관련하여 조사한 지질 및 지반 자료를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에 제출(제16조제2항)
-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중 관련규정이 제정되기전에 설치된 시설 또는 제정이후 내진설계기준이 강화된 시설에 대하여는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내진성능에 대한 평가

실시(제18조)
- 내진성능평가결과에 따라 내진보강을 위한 중 · 장기계획 수립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 · 군 · 구지역본부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제19조)
- 중 · 장기계획에 따라 매년 추진할 사업계획을 수립,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중앙 및 지역본부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고, 내진보강 사업을 추진하며, 이를 평가(제20조).
- 지진에 관한 연구 및 지진재해경감을 위해 소관사항에 대하여 각종 내진설비와 내진기준 등에 관한 조사와 기술개발 및 연구실시(제29조제1항)

☞- 제3조제2항의 규정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지진재해경감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지가 불명확하므로 각 의무 주체별 소관사항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정할 것을 개선권고함
- 제18조 내지 제20조 규정의 경우 건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필요성은 인정되나, 관련 규정의 제정 · 강화 전 시설에 대한 내진보강 의무화는 과도한 부담이 우려됨. 따라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진설계기준 적용대상시설물의 범위를 최소화하고 ② 관련규정 제정전 또는 강화전 시설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중장기 계획수립 및 추진문제는 시책추진의 효율성확보 측면에서 재난관리책임기관별 계획수립 및 개별추진과 지역 · 중앙본부장 평가 방법보다는 중앙본부(지진재난관리총괄기관)에 의한 종합계획수립, 재난관리책임기관별 추진방법으로 변경하고 ③제29조의 지진재해경감 연구 및 기술개발은 모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의무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중앙본부장의 의무와 권한으로 하되, 필요한 개별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협조를 받는 방식(또한 필요한 개별재난관리책임기관을 대통령령에서 규정)으로 변경할 것을 개선권고함

○ 지진관측기관의 기상청장과의 사전 협의 의무
- 기상청장 이외의 다른 지진관측기관의 장이 지진관측 장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지진관측계획서를 작성하여 기상청장과 미리 협의하고, 지진관측 장비는 기상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제5조).
- 기상청장 이외의 자가 지진 및 지진해일에 관한 정보를 발표하고자 할 때에는 기상청장과 협의(제7조)

☞ 기상청외 지진관측기관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4개 기관이며, 현재 지질관측장비를 설치 ·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7개 공공기관(한국가스공사 등)으로 피규제자가 한정되어 있고, 규제에 따른 비용도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진관측장비의

표준화, 지진정보의 정확도 향상, 관측자료의 공유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대로 의결함

○ 주요 시설물의 지진 가속도 계측 , 관리 및 대행자의 관리

- 주요 시설물이나 건축물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그 시설물의 지진가속도를 계측하고, 계측된 자료를 중앙본부장 및 기상청장에게 제출(제6조)
- 계측기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제9조)
- 지진가속도계측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에게 등록, 등록자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해당 요건을 규정(제10조)

· 사기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은 때
· 지진가속도계측 자료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였을 때
· 경영부실 등의 사유로 지진가속도 계측을 계속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 제6조의 지진거동 특성계측대상 주요시설물이나 건축물은 대통령령으로 포괄 위임할 것이 아니라 법률에서 그 대상과 범위를 규정하고, 대통령령에서 구체적 대상시설과 규모 등을 정함에 있어서도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주요기관만 규정하도록 개선권고

-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진가속도계측대행자의 경우 필요성은 인정되나, ① 현재도 자체적으로 관리하거나, 특별한 요건없이 해당 수입대행사 등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유지 · 관리하고 있는 점 ②등록요건을 정하여 등록된 자로 하여금 지진계측기의 유지관리를 하도록 규정할 경우 동 사업에의 진입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시장형성상황을 검토한 후 법제화를 추진토록 삭제권고함

○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일시사용 등

- 중앙 · 지역본부장 또는 중앙 · 지역본부장으로부터 명령이나 위임 · 위탁을 받은 자는 시설물 등의 점검, 지진재해 원인조사 · 분석, 피해시설물 위험도 판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때에는 나무 · 흙 ·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음.
- 타인의 토지에 출입, 토지의 일시사용 또는 나무 · 흙 ·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고자 할 때는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해당 관계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의 불명으로 그 동의를 얻을 수 없을 때는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자연재해대책법 등에도 동일한 규정이 있고, 동 조와 관련하여 손실보상(제31조)이 규정되어 있어 동 규정의 신설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이와 같이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규정은 규제자를 명확히 하여야 하는 바, '중앙 · 지역본부장으로부터 명령이나 위임 ·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하려면 이 법률에서 권한의 위임 및 위탁규정을 신설하도록 개선권고함

○ 과태료 (안 제35조)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주요 시설물에 대해 지진가속도계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 침수흔적 등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무단으로 침수흔적표지를 훼손한 자

· 지질 · 지반조사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자 또는 허위 자료를 제출한 자

☞ 위반사항에 대하여 경제적 제재조치를 부과함으로써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법 이행력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타 법령과 유사한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대로 의결함

〈기타사항〉

제30조(활성단층 조사 · 연구 및 활성단층 지도작성 등)제3항의 규정은 이를 위반할 시 벌칙이 없어 단순 선언적인 규정으로 볼 수 있으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각종 개발이나 구조물 설치를 통제하거나 제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로 부대 개선권고함

(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강화2)

■심사내용

○ 성능시험기준 미달의 소방용기계 · 기구 설치 등제한

– 성능기준 미만 제품 판매설치 제한

· 성능시험기준 미만의 소방용 기계 · 기구를 판매 · 설치 · 유통하여서는 아니됨.

– 성능시험기준 미만의 제품조사 및 폐기조치

· 성능시험기준 미만의 소방용기계 · 기구의 판매 · 설치 및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1년 1회 이상 표본조사를 실시

· 성능시험기준 미만의 소방용기계 · 기구에 대해서는 관계인에게 폐기조치를 명할수 있음

☞ 성능시험기준에 미달되는 소방용 기계 · 기구의 유통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들 제품에 대한 판매 · 설치 · 유통을 금지하고 이를 단속, 폐기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됨. 피규제자는 약 88개업체로 제한적이고, 규제비용이 미미하며, 입법예고시 의견제시가 없었던 점을 감안,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대로 의결함

○ 과태료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방염업자중 변경신고를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 소방시설 등의 점검결과를 자체보관 하지 아니한 자

· 방염성능기준 미만으로 방염처리한 자

· 성능시험기준 미만의 소방용 기계 · 기구를 판매 · 설치 · 유통한 자

☞ 위반사항에 대하여 경제적 제재조치를 부과함으로써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법 이행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 다만, 방염 성능기준 미만으로 방염처리한 자와 성능시험기준 미만의 소방용기계 · 기구를 판매 · 설치 · 유통한 자의 경우에는 타 위반사항과 차별하여 과태료를 부과(강화)할 수 있도록 동법 시행일 이전까지 동법 시행령 별표9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고, 동법 시행규칙에는 방염성능기준미만으로 처리한 방염업자의 행정처분기준을 신설하도록 부대 개선권고함

(4)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안 (강화1)

■심사내용

○ 소방시설업의 등록제한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에 대하여 설계 · 시공 또는 감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업종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금 ·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시 · 도지사에게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함. 다만, 소방시설업 등록취소요건에 해당하는 자와 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자가 그 행정처분기간 중에 폐업(소방시설업 등록증 반납)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동안 같은 업종에 대한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음

· 소방시설업의 등록취소 요건에 해당하여 폐업한 자: 소방시설업 등록증 반납일로부터 2년간
· 시정명령을 받은 자 : 폐업후 시정명령이행 완료일로부터 6개월간
·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 : 폐업후 영업정지명령 이행완료일로부터 6개월간

☞ 법 질서 유지 및 법률의 실효성 확보를 통하여 소방시설업자의 성실한 법령 준수 의무를 간접적으로 담보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소방시설업 등록제한 기간의 경우 동법 제5조 및 제9조의 취지를 고려할 때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

(5)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신설3)

■심사내용

○ 소방안전교육사 시험관련
–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음
·「소방공무원법 제1조」 규정의 소방공무원 또는 「초 · 중등교육법」 제21조 규정의 교원으로서 중앙 · 지방소방학교에서 소방안전교육사 관련 전문교육과정을 2주 이상이수한 자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소방안전관련학과(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함)를 졸업한 자로서 교육학(교육학 관련 교과목 모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심리학(심리학 관련 교과목 모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
㉯ 소방안전관련학과 외의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소방안전관리론(소방학개론 · 재난관리론 · 소방관계법규를 말한다. 이하 같다) 3학점이상 이수하고 교육학 · 심리학 또는 구급 및 응급처치론(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 응급처치총론 · 응급환자관리 · 응급의료관계법규 · 보건의약관계법규 · 간호관리학 · 정신간호학 · 노인간호학 또는 한방간호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
㉰ 소방설비산업기사, 소방설비기사,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교육학 또는 심리학을 3학점 이상 이수한자

☞ 소방안전교육의 충실한 수행을 위하여는 자격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며, 응시자격은 업무의 성격, 내용 등을 감안할 때 적정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 다만, 소방 및 교육공무원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교육사 관련 전문교육과정에 관련 부족한 분야 (소방공무원은 교육분야, 교육공무원은 소방분야)에 대한 교과목을 집중 편성하도록 부대 개선권고함

○ 시험방법 및 과목
- 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
  · 제1차시험은 선택형, 제2차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제2차시험의 경우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음
  ·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 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시행
- 시험과목은 제1차시험은 소방학개론, 구급 및 응급처치론, 재난관리론), 2차시험 : 교육학원론 및 심리학개론

☞ 이론과 실무를 검증함으로써 소방안전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시험과목에 있어서도 소방안전교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관련 교과목을 시험과목으로 규정하였으며, 향후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어 교육학 등을 포함한 것으로, 입법예고시 의견제시가 없었고, 타 법령과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대로 의결함

○ 합격자 결정 및 시험의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제1차시험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 제2차시험은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시험위원의 채점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가 매과목 평균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응시자격을 정지

☞ 합격자 결정과 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입법예고시 의견제시가 없었고, 타 자격시험과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어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대로 의결함

(6)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신설2, 강화2)

■심사내용

○ 소방시설 등에 대한 성능위주의 설계를 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설정
-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아파트는 제외
- 건축물의 높이가 100미터(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아파트는 제외
-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철도역사 · 공항시설
-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진흥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따른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05.10월 도입된 성능위주설계제도의 시행에 따른 대상시설물의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대상범위를 정함에 있어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 라는 점, 일본의 경우에는 지진 등 재난으로 인한 화재발생이 많은 점을 감안할 때 일본보다 일부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원안대로 의결함.

○ 성능위주 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기술인력
- 성능위주의 설계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음
  · 법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에 따라 전문소방시설 설계업을 등록한 자
  ·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서 소방시설설계업 등록기준에 따라 기술인력을 갖춘 자
- 성능위주의 설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목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함.
  ·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4인이상
  · 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건축 · 전기 · 기계분야를 전공한 각 1인을 포함

☞ 성능위주설계의 대상시설, 소방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등을 고려할 때, 전문적이고, 설계대상범위가 넓은 전문소방시설설계업을 등록한 자가 설계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기술인력에 있어서 현재 기술사보유현황, 설계업의 등록요건 및 관련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 2인이상 하되, 건축 등 특정분야 전공자를 두도록 한 규정은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삭제토록 개선권고함

< 전문소방시설설계업체의 기술사 보유 현황 >

구 분	계	4명이상 보유	3명 보유	2명 보유	1명 보유
업체수	54	1	5	16	32

○ 소방공사감리업 등록시 갖추어야 하는 소방공사감리원의 구분
- 특급 · 고급 · 중급감리원의 자격기준 (기술자격기준, 학력 · 경력 기준)중 학력 · 경력 기준 삭제

☞ 부족한 국가기술자격자의 대체인력의 확보 등을 위하여 도입한 학 · 경력 인정제도를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 피규제자는 15,154명이나, 입법예고시 의견제시가 거의 없고, 정부의 국가기술자격자 우대정책 등을 감안할 때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대로 의결함

○ 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기준
- 지하구의 경우 별표1 제3호 부표 2의 규정에 의한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감리원 1인 이상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길이가 1천미터 이상인 지하구에는 소방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세부 배치기준이 없어 이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피규제대상시설은 지하구 406개소이며, 입법예고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초급감리원 이상으로 규정하였으므로 비중요규제로 분류, 원안대로 의결함

3. 경찰청

집필자 : 이종협 사무관(Tel. 2100-2442, bird@opc.go.kr)

가. 2006년도 신설 · 강화규제심사 개요

❍ 2006년도에는 도로교통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1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1건, 강화 2건, 내용심사 2건 등 총 5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중요규제 2건)

❍ 심사대상 5건 중 2건은 개선권고, 3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찰청의 2006년도 총 신설규제는 1건임

< 국무조정실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도로교통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285차 행정사회분과 (2006.4.21) 제165차 본회의 (2006.5.9)	원안의결 3 개선권고 2	신설1, 강화2 내용심사2 *중요2

나. 2006년도 신설 · 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도로교통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신설 1, 강화 2, 내용심사 2)

■심사내용

○ 운전이 금지되는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법 제4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함(내용심사, 중요규제)
- 앞면 창유리 : 70% 미만
-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 40% 미만
- 뒷면(승용차에 한함) 창유리 : 40% 미만

☞ '자동차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은 그 적정성이 인정됨, 다만, 경과규정없이 규제를 시행할 경우 기존차량에 많은 비용이 수반되므로 신차중심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제의 시행시기에 있어 2년의 경과규정을 두도록 개선 권고

※ 추가 권고사항

① 틴팅규제 시행에 있어 대국민 홍보에 중점을 두도록 하고 규제집행 방법에 있어 국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권고

② 자동차관리법상 정기검사 항목에 가시광선 투과율 검사항목을 포함하도록 건설교통부에 권고

○ 도로주행시험 연습기준을 강화함(강화, 중요규제)
- 도로주행시험은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10시간 이상 도로주행연습을 한 사람에 대해 실시하며(현행과 동일), 1일 주행연습 인정은 최대 3시간으로 함
- 도로주행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5시간 이상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한 후가 아니면 다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도로주행시험에 불합격한 날부터 3일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함

☞ 도로주행시험 불합격자에 대한 연습강화안(5시간 주행연습, 3일 응시제한)은 부족한 운전능력을 보완한 후 응시토록 하는 것이 적격 운전능력자 배출을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1일 주행연습 최대 인정시간(3시간) 제한 규제는 최종 출구규제(면허시험)가 있는 경우 과정규제는 완화할 필요성이 있고 적격 운전능력자 배출은 엄격한 테스트 등 시험자체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사항이므로 삭제할 것을 개선 권고

○ 전문학원이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서 변경하여야 하는 중요 변경사항에 '시설 및 설비 등의 변경'을 추가함(강화)
※ 기존 승인사항은 설립자 변경, 학원명칭 · 위치변경, 시설 · 설비변경임

☞ 전문학원은 '일반운전학원'중에서 지정하도록 되어있는 바, 일반학원에 대해서는 '시설 및 설비 등의 변경'을 변경등록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입법미비로 인하여 전문학원 변경승인 사항에서는 동 사항이 누락되어 법체계 및 형평에 맞지 않으므로 원안 의결

○ 운전이 금지되는 약물의 종류를 '흥분 ·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환각물질로 규정함(내용심사)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환간물질〉
1. 톨루엔 · 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콜
2. 제1호의 물질이 들어 있는 신나 · 접착제 · 풍선류 또는 도료
3. 부탄가스

☞ 규정된 약물은 이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도 그 위험성을 인정하여 일반적으로 흡입을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며, 본 규제로 인한 추가적인 부담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 의결

○ 현행 규정에 도로주행교육 지정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명문화(신설)
- 도로주행교육을 위한 도로의 지정에 관하여 는 제124조제3항 및 제4항(도로주행 검정도로 지정절차)의 규정을 준용함

※ 제124조(검정노선 지정절차)
- 제3항 : 전문학원 운영자가 2개소 이상의 도로를 지정,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
- 제4항 : 지방경찰청장이 지정서 통지

☞ 현행규정은 '도로주행검정노선'에 대한 지정절차는 규정되어 있으나, '도로주행교육노선'에 대한 세부지정절차가 규정되지 않아 이를 명문화하는 것으로 피규제자가 운전학원(전문학원 484개, 일반학원 64개)으로 제한되고, 신청에 따른 규제비용(신청 서식+축척지도 제출)도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 의결

4. 법무부

집필자 : 조철영 사무관(02-2100-2443, cho224@opc.go.kr)

가. 2006년도 신설 · 강화규제 심사개요

❍ 2006년도에는 변호사법 개정안(중요규제 2건)에 대해 심사하여 2건 모두 개선권고를 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2006년도 총 신설규제는 2건임

< 법무부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변호사법 개정안	제281차 행정사회분과 (2006.1.27)	개선권고2	신설2 *중요2

나. 2006년도 신설 · 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변호사법 개정안(신설 2)

■심사내용

○ 법관, 검사 등 공무원의 직에서 퇴직한 변호사(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 지방변호사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특정변호사)의 성명과 사건목록을 중앙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 특정변호사는 중앙법조윤리협의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중앙법조윤리협의회의 장은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징계사유나 위법혐의를 발견한 때에는 징계개시를 신청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신설)

☞ '전관예우' 등의 법조비리 예방차원에서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의 제출과 관련해서는 현 개정안을 인정하되,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위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는 규제로 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대통령령 등에서 수임자료 등의 제출범위를 정함에 있어,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규정할 것을 권고하고, 중앙법조윤리협의회가 일정 수 이상의 사건을 수임한 특정변호사에게 수임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법에서 그 기준과 원칙을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수임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기준을 법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개선권고

○ 변호사는 2년마다 20시간 이상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하는 변호사의 연수교육을 받아야하는 교육이수 의무화를 규정(신설)

☞ 변호사 윤리교육연수 및 전문연수 의무화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법에서는 변호사의 연수교육이수의 의무만을 정하도록 하고, 교육시간 등 구체적인 연수교육 방법에 대해서는 시행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개선권고

5. 국무조정실

집필자 : 이종협 사무관(Tel. 2100-2442, bird@opc.go.kr)

가. 2006년도 신설 · 강화규제심사 개요

❍ 2006년도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1개의 법령에 대해 신설 3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중요규제 3건)

❍ 심사대상 3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국무조정실의 2006년도 총 신설규제는 3건임

< 국무조정실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312차 행정사회분과 (2006.12.19)	원안의결 3	신설3 *중요3

나. 2006년도 신설 · 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방송통신위원회설립 및 운영에관한법률 제정안(신설 3)

■심사내용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함(신설, 중요규제)
-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 방송 · 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자(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
-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자

※ 현행 방송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통신업무를 함께 담당하게 됨에 따라 '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추가하고, 위원장이 탄핵소추의 대상이 됨에 따라 '탄핵결정에 따라 파면된 자'를 추가

☞ 방송통신위원회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중립성·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신설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규제의 내용에 있어서도 현행 방송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방송법 제25조) 내용을 보완하는 수준으로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원안 의결

○ 방송정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함(신설, 중요규제)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이나 법원조직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대법관 및 판사의 경우를 제외한다.
-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자(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

※ 현행 방송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통신업무를 함께 담당하게 됨에 따라 '통신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추가

☞ 방송정보통신심의위원회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중립성·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신설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규제의 내용에 있어서도 현행 방송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방송법 제25조) 내용을 보완하는 수준으로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원안 의결

○ 방송정보통신심의위원장은 제21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사업자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제21조 제1호 및 제2호의 내용
1. 방송법 제32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심의)에 규정된 사항
2.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법통신의 금지 등)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전기통신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심의

☞ 방송정보통신심의위원회가 소관 심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신설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규제의 내용에 있어서도 현행 방송법 (제98조제1항)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제44조의8 제3항)의 관련규정 내용을 보완하는 수준으로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원안 의결

※ 방송법 제98조 제1항
- 정부 또는 방송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사업자 · 중계유선방송사업자 · 전광판방송사업자 · 음악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44조의8 제3항
- 윤리위원회는 제1항 제2호 ·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6. 중앙인사위원회

집필자 : 이종협 사무관(Tel. 2100-2442, bird@opc.go.kr)

가. 2006년도 신설 · 강화규제심사 개요

❍ 2006년도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1개의 법령에 대해 내용심사 1건에 대한 규제를 심사(중요규제 1건)

❍ 심사대상 1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중앙인사위원회의 2006년도 신설규제는 없음

< 국무조정실 소관 법령별 심사결과 >

심사대상 법령명	심사일	심사결과	비고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제310차 행정사회분과 (2006.11.30)	원안의결 1	내용심사1 *중요1

나. 2006년도 신설 · 강화규제 세부심사내용

(1)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내용심사 1)

■심사내용

○ 부정행위 등의 유형 및 경중에 따른 제재의 요건과 내용을 명확히 규정(내용심사)
- 현행규정은 부정행위자에 대해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이를 개선하여 '당해 시험을 정지 하거나 무효로하는 경미한 불공정행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각각의 유형별 구분을 명확히 함

·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자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또는 기타 신호 등으로 당해 시험내용에 관하여 타인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소지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 가점 ·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이를 위 · 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에 의하여 본인 또는 타인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산기기를 소지하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에 해당하는 행위

☞ 부정행위 등의 경중에 따른 제재의 요건과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제재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내용변경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규제내용에 있어서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 등 유사법령의 규정을 감안시 그 적정성이 인정되므로 원안 의결

– 다만, '당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사유' 중 제4호의 경우 규제범위가 보다 명확해 지도록 다음예시와 같이 자구를 수정할 것

※ 예시 :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써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처리기준에 해당하는 행위

제 4 장 규제개혁 제도 개선 및 역량강화

제 1절 규제등록제도 개편
제 2절 규제맵 작성
제 3절 규제영향분석제도 개선
제 4절 규제심사체계 개선
제 5절 행정조사기본법 제정 추진
제 6절 기업의 행정비용 감축정책 도입 추진
제 7절 규제개혁 이행실태 점검
제 8절 규제개혁 교육
제 9절 규제개혁 국제협력
(선진국 규제개혁사례 포함)

제1절 규제등록제도 개편

집필자 : 심진홍 사무관(Tel. 2100-2429, simddang@opc.go.kr)

1. 규제등록제도의 개편 필요성

규제등록제도는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이 제정되고 우리나라 최초의 법정 규제개혁 기구로 민관합동의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면서 당시 정부가 가진 행정규제의 총량을 파악하고 향후 규제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동법 제6조에 따라 도입되었다. 각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규제를 파악하여 개별규제의 명칭, 내용, 근거, 처리기관 등을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전산시스템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인터넷 홈페이지(www.rrc.go.kr)에 공개하도록 하여 규제의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행 규제등록제도가 효과적인 규제정보시스템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당시 긴급하게 도입·시행된 까닭에 규제등록자간(부처간에 또는 부처내) 규제등록단위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과소 또는 과대 등록되는 등 일관성이 부족하고 행정행위별로 세분화하여 등록함에 따라 관련 규제간 연관성 등에 대한 정보제공이 곤란했다. 또한 규제분류 정보도 부문별, 유형별, 부처별 등 몇 가지가 있으나 규제개혁 방향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에 한계가 있어 활용도가 높지 않았다.

그간 규제등록제도가 정부 전체 규제를 관리하는 데 기초정보로 활용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됨으로써 규제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지만, 규제등록제도가 정부의 규제총량을 확인하고 공개한다는 목적을 넘어 규제개혁의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과 기업 등 이용자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보다 유의미한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재구성할 필요가 있었다.

2. 규제등록제도의 개편방향

종합적인 규제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나 우선 단기적으로 규제등록제도의 등록단위, 분류기준 등 시급한 사항을 정비하여 단계적으로 접근하였다. 규제등록제도 개편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 2005년에 한국경제연구원을 통하여 '규제등록시스템의 효율화 방안'을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 규제등록제도의 개선사항으로 개별 규제행위별로 세분화된 등록단위를 사업단위로 개편하여 주된 규제와 부수적 규제로 통합하는 방안과 새로운 규제분류 기준으로 규제의 성격, 내용 등에 따른 성격별 분류 방식(경제적 규제/사회적 규제/행정적 규제)을 도입하는 방안이 도출되었다.

가. 규제등록 기준 개편 : 행위단위 → 사업단위

규제등록단위가 너무 세분화되어 규제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힘들고 허가취소, 과태료 등 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부수적 규제까지 하나의 규제로 등록함에 따라 규제의 규모나 중요 정도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어 정기항공운송사업 면허와 같이 거대한 규모의 사업자선정과 복권 1인당 1회 판매한도(20만원)가 각각 1건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의 4요소라 할 수 있는 내용, 주체, 객체, 형식이 동일한 규제는 하나의 규제로 등록하도록 규제등록단위를 개편할 필요가 있었다. 즉 주된 규제의 사전절차나 사후보완적인 부수적 규제는 주된 규제에 통합하여 사업단위로 등록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의 등록 및 이와 관련된 석유판매업 개시 · 휴업 · 폐업의 신고, 등록시 수수료 납부, 등록취소 등이 각각 등록되어 주유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규제정보를 쉽게 파악하기 힘들었으나, 통합할 경우 석유판매업의 등록에 관련된 규제정보를 한번에 제공함으로써 규제내용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 규제등록기준 개편 전 · 후 비교 >

규제등록서(1)	
규제 사무	석유 판매업의 등록
법적 근거	석유사업법 10조
규제 내용	○ ○ ○ ○ ○ ○ ○ ○

규제등록서(2)	
규제 사무	사업의 게시 휴 폐업신고
법적 근거	석유사업법 12조
규제 내용	○ ○ ○ ○ ○ ○ ○ ○

규제등록서(3)	
규제 사무	등록 수수료 납부
법적 근거	석유사업법 41조
규제 내용	○ ○ ○ ○ ○ ○ ○ ○

규제등록서(4)	
규제 사무	석유 판매업의 등록취소
법적 근거	석유사업법 13조
규제 내용	○ ○ ○ ○ ○ ○ ○ ○

규제등록서(1)	
규제 사무	석유판매업의 등록
법적 근거	석유사업법 10조, 12조, 13조, 41조
규제 내용	1. 석유판매업의 등록 2. 사업의 개시, 휴업, 폐업 신고 3. 등록수수료 납부 4. 등록취소

나. 새로운 규제분류 방식 도입

규제의 성격, 내용 등에 따른 성격별 분류는 그간 학문적으로 규제개혁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유용한 분류기준으로 논의되었으나, 분류기준이 명확하지 못하여 실무적으로 도입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분류기준을 세부적으로 마련하고 이에 따라 규제를 분류함으로써 시장실패 요인보다 정부정책 목적에 의한 개입 성격이 강한 경제적 규제와 시장실패로 인해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회적 규제에 대해 다른 시각에서 규제개혁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경제적 규제는 필요성이 의문시 되므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지를 좀더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으며 사회적 규제는 필요성이 인정되나 규제방법상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 없는지 규제 성격별로 접근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아울러 규제의 증감원인에 대한 분석도 가능할 것이다.

3. 추진경과

가. 규제등록 정비지침 마련

규제의 통합등록과 분류를 위해 기본지침을 작성하고 전체 작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와 공동으로 작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2006년 6월부터 공동연구를 시작하였다.

규제의 통합등록을 위해 규제의 목적이 동일하고 연관된 규제는 하나의 단위로 등록하되 행정청(주체), 피규제자(객체), 법규정(형식)이 다른 경우는 별도의 규제로 등록하는 원칙을 세우고 다만, 규제의 통합등록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규제등록을 통한 규제관리의 취지가 무색해 질 우려가 있으므로 규제의 사회적 파급효과 등 중요성을 고려하여 규제를 별도로 분리하여 등록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등록하지 않도록 주의사항을 마련하였다.

규제의 성격별 분류를 위해 크게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로 분류하되 세부분류로 시장개입 정도에 따라 경제적 규제는 진입규제, 가격규제, 거래규제, 품질규제로 나누었으며, 사회적 규제는 투입기준 규제, 산출기준 규제, 시장유인적 규제로 분류하였다. 또한 사회적 규제의 경우 규제의 증감원인을 파악하기 쉽도록 규제영역에 따라 환경규제, 재해규제, 소비자안전 규제, 사회적 차별 규제로 추가 분류하도록 하였다. 한편 최저임금제도와 같이 임금에 대한 규제로 경제적 규제의 성격이 있는 동시에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적 규제의 성격이 함께 있는 규제가 있으나 규제의 강도가 강한 규제로 분류한다는 원칙을 마련하여 위와 같은 경우 규제강도가 강한 경제적 규제로 분류하도록 하였다.

나. 정비작업의 시범실시(pilot test)

지침 초안을 만든 후 바로 각 부처에 지침을 통보하여 작업을 추진할 경우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우선 규제전문가와 규제에 관심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국무조정실내 연구동아리인 규제연구회를 개최하여 동 지침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그 결과 '규제등록의 목적을 분명히 제시해야', '규제분류 방법을 쉽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등 여러 가지 지적이 나왔으며 특히 각 부처에 지침을 통보하기 전에 규제가 많은 법령을 미리 지침에 따라 규제통합과 분류 작업을 시범실시(pilot test)하여 동 결과를 지침에

반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실의 규제담당관들의 협조를 통해 금융지주회사법 등 32개 법령의 등록규제 900건 중 비규제 27건, 폐지된 규제 14건을 제외하고 미등록규제 55건을 포함하여 총 914건의 규제에 대해 규제 통합등록 및 분류 작업을 시범실시(2006.7.18~7.28)하였으며 이를 통해 규제등록 정비지침을 보완할 수 있었다.

시범실시를 통해 규제등록 단위를 판단할 경우 내용이 유사한 규제에 대해 규제 담당관별로 편차가 존재하여 규제등록을 통한 관리의 필요성 측면에서 등록단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였다. 경제적 규제의 경우 거래규제와 품질규제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며, 사회적 규제의 경우 재해규제와 소비자안전 규제 모두 해당되는 성격의 규제가 있을 수 있어 중복 소지가 있었는데 지침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규제통합과 분류에 대한 실제 자료를 바탕으로 규제지침 내용에 예시사항을 풍부하게 나타낼 수 있어 보다 알기 쉬운 규제지침이 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었다.

다. 각 부처와 공동으로 정부규제에 대해 일제 정비

수정된 지침에 대해 규제가 많은 부처의 실무담당자와 간담회를 개최(2006.8.9)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협조를 요청한 후 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본격적인 규제정비에 들어갔다. 각 부처에서는 을지훈련, 결산국회 등 바쁜 일정으로 불만을 제기하였으나, 소관 규제의 담당자별로 규제 통합등록 및 분류를 하도록 하여 일인당 업무량을 조정하고 이번 정비를 통해 향후 규제등록 관리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이해를 구하는 등 규제 통합등록 및 분류의 취지를 설명하여 각 부처의 불만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었다. 2006년 8월부터 10월까지 각 부처에서 규제 통합등록 및 분류작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한국행정연구원과 공동으로 분석·조정한 후 12월에 규제등록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기 시작했다.

라. 규제등록 전산시스템의 개편

규제 통합등록과 분류 작업의 결과를 전산시스템에 반영하여 규제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여야 위해 국무조정실 업무지원시스템 고도화작업시 규제등록 전산시스템도 규제등록제도 개편내용에 따라 규제분류방식 추가 등 규제등록서 작성양식을 변경하고 규제검색 방식 등을 추가하였다. 이 과정에서 기존 규제등록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가

되었다. 기존 등록내용을 삭제할 경우 과거 규제등록 정보에 대한 접근이 곤란할 수 있다. 그래서, 과거 자료는 그대로 유지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로운 규제등록 기준을 2007.1.1일부터 적용하기로 하여 규제등록제도 개편 전·후가 비교될 수 있게 하였다. 규제등록제도 개편 결과를 규제등록 전산시스템 반영하는 작업을 완료한 후 2007.2.12일자로 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지(www.rrc.go.kr)를 통해 공개하였다.

4. 규제등록제도 개편 결과 및 기대효과

가. 개편 결과

(1) 규제 통합등록 및 정비

기존 개별 행위단위로 등록된 규제를 사업단위로 통합등록하고 비규제, 폐지, 추가등록 등 보완사항을 정비하였다. 그 결과 등록규제 수가 8,084건에서 5,011건으로 감소하였다. 건설교통부가 867건에서 685건으로, 보건복지부가 819건에서 580건으로 감소하는 등 대부분 부처의 규제 수가 감소하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주된 규제와 부수적 규제의 통합 등 내용이 연관된 규제는 하나의 단위로 통합하면서 2,697건이 감소하였고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 행정내부규제 등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가 아닌 것을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면서 431건이 감소하였으며 현 등록규제 중 법령의 폐지 또는 개정 등으로 폐지된 규제를 등록대상에서 제외된232건이 감소하였다. 법령 제·개정으로 규제가 신설되었으나 등록이 누락되어 있었던 규제를 추가등록하면서 287건이 증가하였다.

< 규제 통합등록 및 정비 결과 >

(단위 : 건)

現 등록규제 (A)	정비현황				정비 後 (B)	증 감 (B-A)
	통합	비규제	폐지	추가등록		
8,084	△2,697	△431	△232	287	5,011	△3,073(38.0%)

(2) 성격별 규제분류

규제의 성격에 따라 분류한 결과, 경제적 규제 2,289건(45.7%), 사회적 규제 1,824건(36.4%), 행정적 규제 898건(17.9%) 순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규제는 거래규제 900건(39.3%), 진입규제 763건(33.4%), 품질규제 548건(23.9%), 가격규제 78건(3.4%) 순으로 구성되었으며, 사회적 규제는 규제영역별로 소비자안전 887건(48.7%), 환경보호 466건(25.5%), 사회적 차별 282건(15.5%), 재해 189건(10.3%) 순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사회적 규제를 규제방식에 따라 분류하면 투입기준 규제 1,708건(93.6%), 산출기준 규제 59건(3.2%), 시장유인기준 규제 57건(3.2%) 순으로 구성되었다.

< 성격별 규제분류 결과 >

(단위 : 건, %)

합계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진입	가격	거래	품질		규제방식			규제영역				
							투입	산출	시장유인	환경	재해	소비자안전	사회적 차별	
5,011	2,289 (45.7)	763 (33.4)	78 (3.4)	900 (39.3)	548 (23.9)	1,824 (36.4)	1,708 (93.6)	59 (3.2)	57 (3.2)	466 (25.5)	189 (10.4)	887 (48.7)	282 (15.5)	898 (17.9)

나. 기대효과

(1) 국민, 기업 등 수요자 중심의 규제정보 제공

이번 규제 통합등록 및 분류를 통해 일반국민, 기업 등에게 다양하고 체계적인 규제정보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규제등록을 사업단위로 개편하여 관련된 규제정보를 한번에 제공함으로써 규제내용에 대한 파악이 용이해질 것이다. 또한 규제의 내용, 성격, 체계 등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검색기능을 통해 필요로 하는 정보제공이 가능할 것이다.

(2) 규제관리 효율화 및 규제개혁 방향성 제공

규제관리의 효율성 및 실효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규제를 다양하게 분류 · 분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각종 규제현황 파악 및 정비대상규제 등 정책과제 발굴이 용이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시장기능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진입규제와 기업에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주는 행정적 규제 등을 중점적으로 정비하는 등 규제개혁 과제발굴 용이해진다. 특히 부처간 유사한 진입규제, 가격규제 등이 존재하는지 쉽게 알 수 있어 규제수준의 비교 및 규제개혁의 방향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규제등록단위가 사업단위로 개편되어 규제수의 변동 폭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단수한 규제 수의 감소나 완화보다 규제의 질을 높이는 등 총체적 규제관리에 관심이 집중되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3) 규제개혁의 객관적 성과평가

성격별 규제분류 정보를 통해 규제증가 원인 등에 대한 분석적인 자료제공이 실시간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일정기간 동안 규제증가의 구체적인 원인, 내역, 추이 등을 시계열 자료를 통해 분석하여 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등의 구성 및 비중에 대한 추이 분석으로 규제개혁 노력이 어떻게 작용했는지 정책자료를 제공하고 정부규제 개혁 노력 등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제2절 규제맵 작성

집필자 : 심진홍 사무관(Tel. 2100-2429, simddang@opc.go.kr)

1. 추진배경

규제등록제도를 통해 규제 전체의 정보를 알 수 있으나 규제간 상호관계를 보여주는데 한계가 있다. 규제는 하나의 규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된 규제와 함께 효과를 발휘하는 특징이 있는데 이를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여러 법령과 부처에서 복잡한 절차가 있는 덩어리 규제와 같은 경우 규제내용을 한 눈에 파악하기가 더욱 어렵다. 예를 들어 공장설립과 관련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산업자원부), 국토계획법 · 건축법 · 수도법(건설교통부), 농지법(농림부), 수질환경보전법 · 토양환경보전법(환경부) 등 여러 법률에 근거한 입지 · 사업계획승인 · 공장건축 등 단계별로 총 68건의 규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이러한 덩어리 규제를 한 눈에 조망하고 연관관계를 파악하기 쉽게 할 수 있는 도구로 규제맵에 대한 논의가 있다. 규제맵은 특정분야에 대한 규제의 체계 및 프로세스, 관련 구비서류 등을 도식화하여 규제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아직 현실적인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피규제자인 국민과 기업에게 규제정보를 최소의 비용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하고 전체적인 규제체계에서 특정 규제가 가장 적정한 선택인지, 중복되지는 않는지 규제개혁의 시발점을 제공할 수 있는 등 그 유용성은 무궁무진하다.

규제맵은 현재 규제등록시스템이 보다 종합적인 규제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현 시스템을 이용자 중심으로 재편하고, 규제의 발생과 확산경로 등을 체계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2. 추진내용

규제맵에 대한 논의가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 행정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국민적 이해와 관심도가 높고 다수 부처와 관련되어 규제 프로세스가 복잡한 분야인 공장설립, 공동주택건설 등 2개 분야에 대해 시범적으로 작성하고자 하였다.

규제맵 작성을 위해 연속적인 프로젝트의 관련 활동들을 일련의 그림으로 표현한 분석기법인 네트워크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①관련 규제 전수조사, ②규제의 분류, ③상호관계 분석, ④순서도(network flow chart) 작성, ⑤도식화의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였다.

가. 공장설립(개별입지)에 관한 규제맵

공장설립은 크게 국가 ·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등의 계획입지와 이를 제외한 도시지역, 관리지역 등의 개별입지로 구분되나 계획입지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 체결로 종결되어 절차가 간단하므로 규제맵 작성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개별입지에 의한 공장설립은 크게 ①사업계획수립, ②입지선정 및 부지확보, ③공장설립, ④건축허가, ⑤공장건축, ⑥공장등록 및 사업개시의 6단계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장설립 관련 규제는 총 328건이나 개별업종 관련 규제나 세제관련 규제 등을 제외하면 주요 규제는 68건이며 입지 관련 규제가 30건(44.1%)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 공장설립 단계 및 규제현황 >

구 분	①사업 계획수립	②입지선정 및 부지확보	③공장설립	④건축허가	⑤공장건축	⑥공장등록 및 사업개시
규제 수 (68건)	–	30건 (44.1%)	21건 (30.9%)	17건(19.1%)		

나. 공동주택건설에 관한 규제맵

공동주택건설은 ①토지이용/택지개발, ②사전협의, ③건축심의/사업승인, ④착공/분양

승인 등 4단계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법과 건축법이 기본법이나 공동주택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서 특별한 절차를 두고 있다.

공동주택건설 관련 규제는 총 284건으로 13개 부처, 50개 법률로 구성되어 있으며 토지이용/택지개발에 관한 규제가 116건(40.9%)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공동주택건설 단계 및 규제현황 >

구 분	①토지이용/택지개발	②사전협의	③건축심의/사업승인	④착공/분양승인
규제 수 (284건)	116건 (40.9%)	10건 (3.5%)	112건 (39.4%)	46건 (16.2%)

3. 향후 계획

규제맵은 여러 부처와 관련된 복잡한 규제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여 규제의 내용, 절차 등을 국민이나 기업이 쉽게 찾아 볼 수 있게 하고 규제간 상호연관성, 단계별 경로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여 중복규제의 해소, 규제과정에 대한 체계적 관리 등 규제개혁 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이다.

이러한 규제맵의 작성분야를 여러 부처와 관련되어 복잡하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고, 규제맵을 국민, 기업 등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On-line으로 구현할 필요가 있다.

우선 2007년중 다수부처 관련 복합규제, 이행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거나 절차가 복잡한 규제분야 등을 중심으로 규제맵을 10개 정도 작성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과 소관 부처로 T/F를 구성하여 규제맵 작성분야 선정, 주관부처 지정 등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작성된 공장설립, 공동주택건설 등에 관한 규제맵의 온라인 정보제공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작성된 규제맵을 규개위 홈페이지 등 인터넷에 공개하여 수요자에게 다양한 규제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규제의 연관성, 발생 및 확산경로 등 이용자 중심의 정보를 제공하는 종합적인 규제정보시스템 구축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3절 규제영향분석제도 개선

1. 추진 배경

규제영향분석은 규제로 인해 예상되는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는 목적은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의 신설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규제수단과 대안을 탐색함, 기존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유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에 실시되어온 규제영향분석은 그 분석 내용과 활용성에 있어 당초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된 규제영향분석서들을 검토한 결과, 기술이 전반적으로 간략하고 항목별로 내용이 중복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고, 특히 핵심사항이라 할 수 있는 비용편익분석도 대부분 형식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규제영향분석이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2. 추진경위

규제영향분석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4월중 3차례의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였으며, 5·6월에 걸쳐 각 부처에서 작성되어 규제개혁위원회로 제출된 규제영향분석서 및 외국 사례·자료를 분석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규제영향분석의 주체인 중앙행정기관의 입장을 반영코자 노력하였다.

규제영향분석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6.23일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위원회 의결사항을 반영·개정한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업무지침」을 6.30일 각 부처에 통보·시행하였다.

3. 주요내용

(1) 규제영향분석서 평가항목과 평가요소를 조정

기존의 규제영향분석은 총 8개항목 20개 요소로 나누어 평가토록 되어 있다. 복잡다기하게 세분화된 평가항목·요소로 인해 기술내용이 중복되는 등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분석주체인 중앙행정기관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참고〉 기존 평가항목·요소 : 8개항목 20개 요소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정의·내용 및 문제 발생의 원인
 나.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다. 규제의 목표설정

2.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 규제와의 중복여부
 가. 기존규제로 대체가능한 지 여부
 나. 규제아닌 다른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유사한 기존규제와의 중복여부
 라. 규제의 확대 재생산 가능여부

3.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가. 규제의 경제적·사회적 비용의 분석
 나. 규제의 경제적·사회적 편익의 분석
 다. 비용·편익의 비교 및 검토

4. 경쟁제한적 요소의 포함여부
 가. 공정한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요소의 포함 여부
 나. 기업활동 저해요소의 포함여부

5. 규제내용의 객관성 및 명료성
 가. 규제기준과 절차의 명확성·일관성·이해용이성
 나. 규제의 법적 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 여부

6.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가. 국민 · 기업 · 단체 등의 반대 기타 사회적 제약요소
 나. 기술수준 기타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

7. 행정기구 · 인력 및 예산의 소요
 가. 규제의 집행을 위한 조직 · 인력 및 예산의 소요 판단
 나. 기존조직과 인력 및 예산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

8.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 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가. 구비서류와 처리기간의 적정성
 나. 처리기관 및 처리절차의 적정성

이에 기존의 평가항목 · 요소를 현실에 맞게 통합 · 단순화하여 다음과 같이 3개 평가항목 20개 평가요소로 정비하였다. 이에 따라 분석서 작성에 따른 업무부담이 경감되는 한편, 분석내용의 내실화를 기하고 활용도를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개선 평가항목 · 요소 : 3개항목 8개요소

1. 규제의 필요성 및 목표
 가.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나. 규제의 목표 및 기대효과
 다.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관계

2. 규제의 비용 · 편익분석 및 비교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
 나. 규제의 명료성
 다. 이해관계자 협의
 라. 집행상 예상 문제점

(2) 규제영향분석 내실화를 위한 규제심사체계 개선

규제영향분석의 주체는 중앙행정기관이다.(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규제영향분석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소관부처의 관심과 열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인 바, 부처의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체계를 개선하였다.

기존 심사시 안건 작성 및 보고는 규제개혁위원회 사무국 역할을 하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실에서 주도하였고, 규제영향분석서와는 다른 별도의 심사안건을 작성해왔다.

이를 심사안건의 작성 및 보고는 소관부처에서 직접 하도록 하는 한편, 규제영향분석 결과의 요약본을 심사안건으로 활용토록 안건양식을 변경하고, 사무국에서는 규제영향분석서에 대한 평가의견서를 작성·보고토록 변경하였다. 부처에서 안을 제출하고 사무국이 이를 검토하는 당초 역할에 보다 충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규제영향분석 내실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3) 규제영향분석서의 공표 의무화

행정규제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입법예고기간 동안 규제영향분석서를 관보게재, 부처 홈페이지 게시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표토록 의무화하였다. ('06.6.30 시행)

4. 향후 추진계획

2007년 중에는 규제영향분석의 취지에 충실히 부합하는 분석서를 시범 작성하여 배포함으로써 부처 자율적인 내실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일부 규제에 대해 B/C분석 등 핵심 영역은 외부 전문기관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제4절 규제심사체계 개선

1. 규제심사제도 개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요청하도록 되어있다(행정규제기본법 제6조). 이러한 규제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각 부처에서는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입법예고기간동안 이를 공표하여야 하며, 관계기관,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자체규제심사를 거쳐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심사요청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예비심사」를 통해 당해 규제가 국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 · 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규개위 심사를 받아야 할 규제(중요규제)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중요규제가 아니라고 결정한 규제(비중요규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그 결과를 관계부처에 즉시 통보하게 된다. 그러나, 중요규제인 경우에는 심사요청일부터 45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심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 또는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부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처에서 규제개혁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 신설 · 강화규제 심사절차(행정규제기본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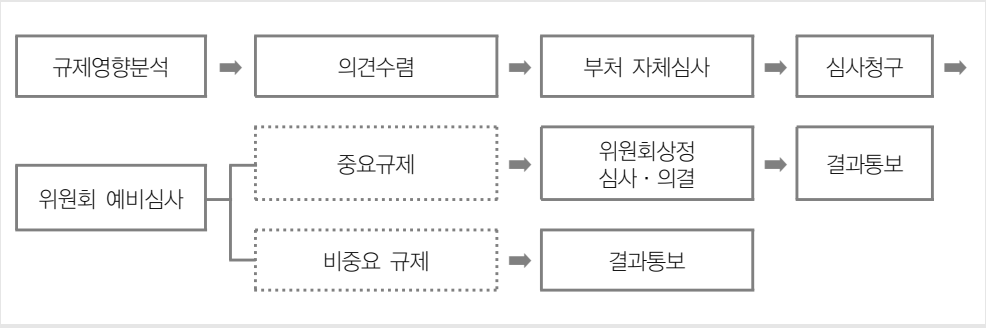

2.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우선 중요규제 및 비중요규제 심사와 관련하여, 행정규제기본법(11조②)에는 신설 · 강화 규제중 「중요규제」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하고, 「비중요규제」는 규개위 심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운영과정에서 신설 · 강화규제의 대부분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직접 심사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부처 자체심사를 통한 자율적인 규제개혁이 미약한 부분이 있었다.

본회의 안건상정과 관련하여, 행정규제기본법(법28조 ②)에는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 · 의결한 것은 위원회가 심의 · 의결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위원회 상정안건 중 분과위원회에서 심의 · 종결할 안건과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에 대한 분류 기준이 미확립되어 있어, 사회 ·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분과위 심의로 종결되는 사례가 있었다.

3. 규제 심사체계 확립 방안

(1) 중요규제 여부 판단(예비심사)

부처 심사안건 접수이후 개최되는 분과위원회에서 중요규제 여부 판단을 위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중요규제 판단기준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다.

< 중요규제 판단기준 >

① 규제영향비용이 연간 100억원 이상인 규제
② 피규제자의 수가 연간 100만명 이상이 되는 규제
③ 명백하게 경쟁제한적인 성격의 규제
④ 국제기준에 비춰 규제정도가 과다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⑤ 기타 관계부처 또는 이해당사자간 이견이 있거나 사회 · 경제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규제
- 입법예고시 신설 · 강화 필요성 등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었던 규제
- 부처 「규제심사위원회」에서 개선 · 철회권고가 있었으나 반영되지 않은 규제
- 규제의 신설 · 강화내용이 규제개혁위원회의 과거 의결내용의 취지와 모순되는 경우
- 신산업분야에 있어 시장기능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규제

- 신설 · 강화규제중 전문기관에 의한 「비용편익분석」 절차를 거쳤거나 거칠 필요가 있는 규제
- 수도권 입지, 대기업 정책 등 정책적 규제와 관련되는 사항
- 규제신설강화시 경제적 · 사회적으로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규제
- 개인의 신분 · 자격의 박탈 등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제

(2) 본회의 상정여부 판단

분과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중요규제」에 대해서는 「본회의 상정여부」를 당해 분과위원회에서 판단하게 되는데, 본회의 상정안건 기준을 다음과 같이 수립하였다.

< 본회의 상정안건 기준 >

■원칙적 상정 안건
① 법률 제정안 및 개정안
② 제정 법률의 시행령 제정안
③ 의원입법에 의한 개정 법률의 시행령 개정안
*단, 법령 제 · 개정 내용 중 규제관련 내용이 경미하여 본위원회에 상정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제외

■판단 후 상정안건
④ 시행령 개정안 및 기타 하위규정 중 사회 ·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
⑤ 기타 분과위원회 심의결과 위원간 이견 등으로 본위원회 상정이 필요하다고 분과위원장이 판단하는 안건

〈참고〉 중요/비중요 판단예시 및 사례

① 중요규제 판단예시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업무 지침)
○ 연간비용 : 일정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 담당자에게 월 4시간의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 하는 규제 신설
- 비용부담항목 : 순응비용(피규제공장의 비용), 정부비용(교육경비)등이 직접적 비용으로 고려될 수 있음
- 이 경우 기업순응비용이 안전관리 담당자의 시간당 평균임금(10,000원 가정)×규제대상사업장(5만개 가정)×4시간=20억(월간순응비용), 연간비용은 240억(20억×12월)

이므로 중요규제로 분류
*여타 비용 항목 등은 100억이 크게 넘음으로 생략

○ 피규제자 수 : 5년주기의 자동차 정기검사제 도입
- 자동차 보유대수(1,200만대 가정) ÷ 5년 = 240만대(명)로 년간 100만명 이상이 규제를 받게 되므로 중요규제로 분류

○ 명백하게 경쟁제한적인 성격의 규제(예시)
- 인 · 허가, 면허 등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새로이 진입제한 등이 발생하는 규제
- 사업의 범위 또는 구역을 제약하거나 생산 · 판매 등 중요한 사업활동을 제약하는 규제
- 기존 인 · 허가 등의 규제에 있어 허가의 중요한 요건을 대폭 강화(추가)하는 경우
- 기술개발이나 경영혁신 등에 제약을 가할 소지가 매우 큰 규제 등

○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과다 및 불합리한 규제(예시)
- 외국인 투자를 극히 제약할 가능성이 높은 규제
- OECD등 국제적인 규제정도에 비추어 과다한 규제
- WTO등 국제무역 및 투자규범에 저촉되어 통상마찰을 야기시킬 소지가 있는 규제 등

② 비중요규제 판단 예시

○ 중요규제가 아닌 나머지 규제로 관련부처 · 단체 및 사무국과 소관부처간 이견이나 반대가 없고 내용이 경미한 규제

(예시1) 상위법령의 규제심사시 이미 구체적인 내용과 수준을 심사하였고, 그 방향대로 규정한 하위규정의 경우

(예시2) 규제준수 비용이나 피규제자 수가 미미하고 규제내용과 타당성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재론의 여지없이 명백한 경우

(예시3) 규제내용이 규제정책 방향과 부합하고 논란의 여지가 적은 경우

제5절 행정조사기본법 제정 추진

1. 추진배경

행정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각 행정기관은 법규 이행여부 확인조사, 일반적인 업무감독 조사, 행정처분을 위한 실태조사 등 다양한 목적으로 각종의 행정조사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조사는 법령의 실효성 확보,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적인 통계자료 수집 등을 위해 필요하지만, 개별법에 규정된 행정조사에 관한 규정은 조사요건이 불명확하거나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행정기관이 편의에 따라 조사권을 남용할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행정조사를 위한 절차나 위법한 행정조사에 대한 통제장치가 미흡하여 국민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높았고 유사·동일한 사안에 대한 여러 부처가 중복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기업 등 피조사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에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행정조사가 기업에게 주는 부담을 경감하고, 행정조사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해 행정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며, 적법절차 구현을 통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조사의 기본원칙, 조사절차 확립 등 행정조사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일반법 성격의 「행정조사기본법(가칭)」제정 방안[1]이 마련하는 방안이 포함된 「행정조사 개선방안」이 '04.12.3일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에서 심의·의결 되었다.

1) 행정조사 절차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제정하지 않고 국무총리 훈령으로 정하는 방법이 논의되었지만, 행정조사에 관한 근거가 개별 법률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위계상 훈령으로 법령을 보완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판단에 따라 법률로 제정하게 되었다.

2. 제정 추진 상황 및 주요 논의 사항

가. 행정조사기본법안 마련

법률 제정과 관련하여 기존의 「행정절차법」을 보완하는 방안과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있었지만, 피조사자의 권익을 보다 충실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학계 및 경제단체의 의견과 행정처분 이전단계에서의 각종 자료수집 및 조사활동에 관한 사항을「행정절차법」에 모두 규정하기 곤란[2]하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기로 하였다.

(1) 「행정조사기본법 제정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

한국경제연구원의 연구용역결과와 기업행정조사 개선방안의 확정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05.1월 「행정조사기본법 제정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한국법제연구원에 의뢰하여 '05.4월에 7장 38조 부칙2호로 구성된 「행정조사기본법 제정(안)」을 포함한 최종보고서인 「행정조사기본법 제정방안」이 제출되었다.

(2) 「행정조사기본법 제정 T/F팀」 구성 및 운영

'05.5월 국무조정실은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행정조사기본법 제정 T/F팀」을 구성[3]하여, 3회에 걸친 검토회의를 개최하였다.

검토회의에서는 △법안의 성격, △적용범위에 세무조사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포함되는지 여부, △실효성 확보수단, △행정조사에 영장주의의 적용가능성 여부, △연도별 조사계획 수립 및 조사주기, △위법한 행정조사와 행정처분간의 관계, △공동조사와 중복조사 제한의 적용가능성, △조사결과의 이용제한 등 법 제정안 전반에 대한 사항과 법 적용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주로 논의하여 이를 반영한 행정조사기본법 제정 초안을 마련하였다.

---

2) 「행정절차법」의 대폭적인 개정 없이 행정조사에 관한 사항을 「행정절차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행정조사에 관한 기본원칙 등 주요내용만 「행정절차법」에 규정하고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해야 하는데 이 경우 행정처분 관련 절차는 법에 규정되고 행정조사 관련절차는 시행령에 규정되어 법체계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3) 학계 3(김유환 이대교수, 김성수 한대교수, 김영조 상명대 교수), 시민단체 1(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경제단체 2(양금승 전경련, 이상호 중기중앙회), 전문연구기관 2(김재광 · 박영도 한국법제연구원), 행정자치부 · 산업자원부 · 환경부 · 건설교통부 · 국세청 · 법제처 등 부처 관계관 8 등 14개 기관 총16명이 T/F에 참여하였다.

나. 관계부처회의 개최 및 이해관계인 의견조회

'05.6.17~7.20간 「행정조사기본법 제정(안)」 초안에 대해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재정경제부, 국세청, 건설교통부 등 9개 부처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05.7.21)하여 △세무조사, 금융기관감독 등의 법적용 범위 포함여부, △공동조사 실시에 따른 행정기관의 부담경감 방안, △환경분야 등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한 분야의 중복조사 제한여부, △연도별 행정조사계획 및 개별 행정조사계획 수립 등에 대해 의견조정을 거친 후 「행정조사기본법 제정(안)」(7장 39조 부칙3조)을 마련하여 '05.8.2~22일간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 심사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요청하였다.

다. 법제처 심사

'05.8월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후 법제처 심사를 진행하였다.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행정조사기본법 제정(안)」은 조문체계 수정, 조사요건의 구체화, 조문의미 명확화, 중복내용의 삭제[4] 등 수정작업을 거쳐 총6장 29조 부칙3조로 「행정조사기본법 제정(안)」이 확정되었다.

라. 당정 협의

'05.10.20일 국무조정실은 당정협의를 위해 제3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여 행정조사기본법에 대해 설명하였고 이 자리에서 위원장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실시하기 전에 반드시 당정협의를 실시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당측 사정으로 일정이 지연되다가 '06.3월 9일 당정협의가 실시되었다.

당정협의시 당측 참석자[5] 대부분이 행정조사기본법 제정에 따른 기업의 부담경감 효과 등을 높이 평가하여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약속하고, 행정조사기본법의 제정에 따른 효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4) 행정조사의 이념(안 제4조), 조사주기 중 일부조항(안 제12조 2호, 3호, 7호, 8호), 조사방법(안 제13조), 범죄수사로의 전환(안 제23조), 의견진술기회의 부여(안 제31조), 조사결과의 이용제한(안 제33조), 고발(안 제34조), 비밀엄수 등의 의무(안 제35조), 개인정보 보호(안 제36조), 조사대행 전문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안 제38조, 제39조) 등이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삭제되었다.

5) 열린우리당 참석자 : 강봉균 정책위의장, 김희선 정무위원장, 우제창 제3정조위원장, 송영길 정책위 수석부의장, 신학용 · 채수찬 · 노웅래 위원이 참석

마. 국회 심의

차관회의(3.30)와 국무회의(4.4) 심의 절차를 거쳐 4월 6일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하였고, 동 법안은 4월 7일 정무위원회로 배정되었다.

(1) 국회 정무위원회 상정('06.9.14)

국회 사정으로 임시회(4월, 6월) 기간에는 법안 상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2006년도 정기국회에서 정무위원회에 법안상정이 이루어져, 9.14일 10시에 개회된 정무위 전체회의는 김영주 국무조정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은 후 전문위원검토보고, 대체토론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법안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도 제4조(행정조사의 기본원칙), 제5조(행정조사의 근거), 제28조(정보통신 수단을 통한 행정조사)의 규정적용 △연도별 행정조사운영계획의 제출대상이 되는 행정기관의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에 명시△국무조정실장이 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행정조사운영계획을 검토한 후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6조제4항)되어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 △출석 요구서 등의 사전통지의 취지를 살리려면 7일전까지 도달하도록 하는 등 수정안을 제시 하였다.

이후 대체토론에서 정무위원들은 법제정 취지와 필요성에는 대체로 동의하였고, 법안의 구체적 내용에 관하여 △조세, 금융,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행정조사의 적용대상 제외로 인한 법제정 효과 후퇴 여부(김혁규, 서혜석, 김정훈, 김애실, 이승희 의원) △행정조사 기본법안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의 보완 필요 △제정안에서 규정한 절차를 공무원이 위반할 경우 벌칙규정이 없어 실효성 의심(김정훈, 김혁규 의원) △행정조사기본법의 절차를 준수할 경우 행정기관의 행정조사를 제약하여 행정조사의 목적달성을 어렵게 할 우려(김영주 의원) △출석 · 진술요구, 보고 · 자료제출요구 등은 행정편의주의적인 용어로 개선이 필요하다(이계경 의원)는 등의 질의가 있었다.

(2) 국회 공청회 개최('06.11.24)

상임위 법안심의 한 절차로 제정법은 법안심사소위 심사전에 국회 공청회를 거치도록 함에 따라 '06.11.24에 국회 정무위회의실에서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공청회는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을 가진 진술인으로부터 법안관련 진술을 듣고 진술인에 대한 의원의 질의와 답변 순서로 진행되었고 김광수 명지대학교 법학과 교수, 김재광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원, 이상돈 중앙대 법학과 교수와 이주선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진술인으로 참석하였다.

먼저 김광수 명지대 법학과 교수는 행정조사기본법은 행정조사의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마련하고 공동조사 및 중복조사 방지를 원칙으로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려 것으로 적절한 입법이라 생각되며 기본법으로서는 내용이 다소 부족한 면이 있으니 추후 일정기간 시행과정을 거쳐 보다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실효성확보 수단 등을 보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김재광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원도 행정조사기본법의 제정은 지금까지의 행정조사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으로 조사대상자들에 대한 권익보호 차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며 현행처럼 조사대상자들의 권익보호가 부족한 개별법에 맡겨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행정조사에 관한 기본원칙, 기준, 방향 등을 규정한 별도의 입법으로서 행정조사기본법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는 기본법 제정으로 행정기관에 상당한 업무량 증가가 예상되나 이를 상쇄할 긍정적 기능을 발휘할지 미지수이므로, 일반법을 제정하기 보다는 개별법에 있는 규제 자체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법안의 규정은 대부분 조리상의 원칙으로 인정되는 것들이어서 행정조사기본법 제정은 큰 의미가 없고 조세, 금융, 공정거래분야와 같이 피규제자인 기업에 대해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배제되어 있어 입법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며 법안 제정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주선 한국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전체적인 법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법안 제3조 제1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별법의 행정조사 근거규정을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게 전면적으로 정비하도록 의무화하는 조치를 취해야 이 법의 유효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며, 조세, 금융, 공정거래 등 법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도 법안 제4조(행정조사의 기본원칙), 제5조(행정조사의 근거), 제28조 정보통신수단을 이용한 조사)의 규정은 적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고 법의 실효성을 담보기 위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공무원들에 대한 제재규정을 포함시킬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후 참석의원들은 법적용 제외 대상 문제, 법규정위반시 처벌에 관한 규정 필요, 권위적인 용어사용 문제, 환경분야는 개별조사계획을 수립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기본법의 절차를 따를 경우 환경관련 조사의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김영주 의원)에 대해 진술인들의 의견을 물었으며 진술인들도 대체로 법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법제정의 실효성이나 적용제외 대상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3)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06.11.28)

'06.11.28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행정조사기본법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어 법안심사가 이루어졌으며, 신학용 소위위원장, 김혁규 의원, 이종구 의원, 김애실 의원이 참석하였다.

소위에서도 앞에서 계속 거론되었던 적용제외 대상문제가 다시 논의되었으며 연도별 행정조사운영계획 제출, 점검·평가에 인력 및 비용 소요문제 및 이로 인한 조직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특히 이종구 의원은 법 제정보다는 먼저 부처별로 문제되는 규제를 없애고 규제완화를 하면 행정조사가 줄어들 것이므로 법제정의 필요성 및 실효성이 없다고 하여 법제정 자체에 의문을 제기함에 따라 이에 대해 논의하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여 추후 법안심사소위 개회시 재논의하기로 하였다.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심사가 보류됨에 따라 '06년 정기국회 일정상 법안심사소위 추가 개회하지 못하고 법안심사소위 개회를 '07년 2월 임시회로 넘기게 되었다.

(4)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07.2.26)

해를 넘겨 2007년 2월 26일 정무위 법안심사소위가 개회되어 행정조사기본법안에 대한 재심의가 이루어 졌으며 신학용 위원장, 김혁규 의원, 이종구 의원, 김애실 의원, 이승희 의원이 참석하였다.

이번 심의에서 연도별 행정조사 운영계획 제출 대상의 한정문제와 행정기관의 행정조사에 대한 점검·평가로 인한 조직 및 인원증원 문제가 쟁점을 이루었다. 연도별 행정조사운영계획 제출대상을 대통령령으로 한정할 경우 미제출 대상 행정기관은 운영계획을 작성조차 안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법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의견과 이에 대해 전 행정기관에 대한 점검·평가는 행정현실상 불가능하므로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려면 많은 인력과 비용이 수반될 것이라는 의견과 점검 및 평가 대상을

한정할 경우 자체 인력과 비용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나 국민의 권익보호와 기업의 부감 완화를 위해 법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전체회의 검토보고시 법시행은 인력의 증원이나 예산의 증액없이 국무조정실의 자체 인력과 예산으로 하도록 부대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조건으로 정무위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5) 정무위 전체회의 의결('07.2.27)

'07.2.27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대체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정무위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되어 정무위를 통과하게 되었다.

(6)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상정('07.3.2)

국회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회부된 후 5일이 경과하여야 의사일정으로 상정될 수 있으나 행정조사기본법안은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5일 경과 규정의 예외로 '07.3.2에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수 있었다.

법사위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자구수정이나 법조항의 명확화하는 것으로 큰 수정사항은 없었으나 대체토론 과정에서 박세환의원이 행정조사기본법이 행정기관의 조사권한을 확대하여 행정조사를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소위에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이견이 있는 사항은 소위에서 검토하는 법사위의 관례에 따라 법안심사2소위원회에 회부되었다.

3. 향후 일정 및 전망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법안임을 소명하여 5일 경과 규정의 예외로 법사위에 상정되도록 하는 등 2월 임시회 처리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됨에 따라 2월 임시회에서 추가 일정을 잡지 못하고 3.6일 임시회가 폐회되어 다시 4월 임시회로 넘어가게 되었다.

법사위 법안심사2소위에 회부되었으나 큰 쟁점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4월 임시회에서 소위 및 본회의 일정만 잡히면 통과하는 데 어려움이 없어 보이나 올해는 대선 등 정치적 쟁점이 많아 국회 일정에 많은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행정조사기본법의 제정은 이러한 변수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제6절 기업의 행정비용 감축정책 도입 추진

1. 추진개요

정부는 행정기관의 기업에 대한 조사·보고 요구 등으로 유발되는 인력·시간소요가 상당하여 기업활동 장애 및 비용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이로 인한 기업 부담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하여 행정비용 감축정책을 도입, 규제개혁과 병행 추진하기로 하였다.

2. 추진의의

○ 행정비용 감축정책은 정부에 대한 조사협조·보고·신청 등 각종 정보제공의무에 따르기 위하여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을 감축하기 위한 노력을 말하는 것으로 OECD 및 EU등 선진 14개국은 이미 이를 도입했거나, 도입 추진중에 있다.

※ 덴마크, 네델란드 : SCM 모델*을 이용, 행정부담을 측정(덴마크 50억불, 네델란드 200억불)하고 '10년까지 25%감축을 추진중
미국 : 「중소기업문서경감법」을 제정,('02.6), 서류작성부담비용을 3,200억불로 측정하고 부담경감 방안을 추진중
* 표준비용모델 (Standard Cost Model : SCM) : 보고시간·임금·보고회수·기업수 등을 감안하여 행정부담을 측정

○ 그간 추진되었던 규제개혁도 규제준수에 따르는 시간·비용의 감축을 목표로 하고는 있으나, 직접 비용을 측정·연계시키는 노력은 미흡하였으므로 행정비용 감소정책의 도입을 통해 기업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감축시켜 주려는 것으로서

① 규제의 적정성 위주가 아니라 규제비용 시각에서의 접근·검토
② 조세분야 등 규제개혁에서 제외된 규제에 대한 접근

③ 규제는 아니지만 행정으로 인한 부담이 생기는 사항들에 대한 비용의 분석 · 감축 등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이러한 행정부담 감소정책은 최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IT기술 및 전자정부 Network를 활용하여 추진함으로써 앞서 나가고 있는 기술발전을 행정과 기업 경쟁력 제고에 적극 활용하는 의미도 있다고 하겠다.

3. 추진실적

(1) 기업의 행정비용 감축추진 T/F 구성 · 운영

기업의 행정비용 감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 · 경제계 · 연구기관 합동으로 T/F를 구성('06.10)하고, 3차에 걸쳐 추진방안을 논의 하였다.

〈T/F 구성〉

- 산업자원부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연구원 · 산업연구원 · 한국행정연구원 · 대한상공회의소 · 중소기업중앙회 · 국무조정실 등 8개 기관의 관계관

〈T/F 운영〉

- 1차 회의 : 2006.10.20(금)
  · 행정비용 감축정책 도입 필요성, 기업의 행정비용에 대한 기초조사(Pilot Study) 추진방안 등 논의
- 2차 회의 : 2006.11.3(금)
  · 기초조사(Pilot Study) 대상업종 및 업체 선정방안, 조사표 양식 등 세부조사방안 논의
- 3차 회의 : 2006.11.24(금)
  ·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확정

(2) 기업의 행정비용에 대한 기초조사(Pilot Study) 실시

정부는 전면적인 행정비용 조사 및 이에 따르는 비용감축정책을 본격 실시하기에 앞서 소규모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동 제도의 확산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고,

행정비용의 실태에 대해 기초조사(Pilot Study)를 실시하였다.

- 조사대상 : 6개 업종(건설 · 금속 · 기계 · 식품 · 화학 · 음식숙박) 19개 업체(대기업9, 중소기업 10)
- 조사방법 : 전문 조사업체(Korea Data Network)를 통해 설문형식으로 조사하고,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조사결과를 분석

〈참고자료〉

유럽 행정부담감소 정책 추진현황

1. 서유럽의 행정부담 감소

○ 규제정비가 일단락된 서구에서 90년대부터 기업들이 강력 요구
- 서구에서는 행정규제의 수 감축 또는 정비가 아니라 기업의 회계보고 등 규제가 아닌 행정부담감소에 관심 집중
- EU국가는 EU차원에서의 법령이 상당히 있으나 각국이 이를 정비하기는 곤란하고 행정부담 감축 추진은 가능

○ 2000년대에 들어와 정치권의 관심 확산
- 규제자체를 없애거나 정비하여야 할 부담이 없으므로 정부 · 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로부터 전폭적 지지
- 정치권은 주요 선거이슈로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행정부담 25% 감축 등을 천명

○ 측정기법인 표준비용모델(Standard Cost Model) 개발
- SCM은 16가지 보고를 대상으로 보고자료 생산 및 보고 시간, 임금, 보고회수, 기업수 등을 감안 행정부담을 측정

· 행정부담 비용 = P(임금률×시간) × Q(기업수×회수)

2. 추진 현황

○ 선발주자인 덴마크 및 네델란드는 '03년부터 SCM모델을 활용, 국가전체 행정부담

측정을 완료하고 '07~'10까지 25% 감축을 추진중
- 덴마크는 행정부담이 GDP의 2.2%인 43억유로(5조원)에 달한다고 보고 '10년까지 25% 감축 작업중이며 '05.6월 5% 달성(측정비용 30억원)
- 네델란드는 GDP의 3.5%인 160억유로(20조원)으로 보고 '07년까지 25% 감축을 추진중이며 금년 20% 달성전망(측정비용 40억원)

○ 여타 EU국가 등 선진 14개국이 동 정책을 도입하였거나 추진중이며 뉴질란드 등 여타 국가도 도입 검토중
- OECD 및 EU집행부는 SCM을 활용, 국가간 행정부담 비교·개선 시도

3. 추진 과정

○ 덴마크 등은 SCM모델을 사용하여 ① 기업의 행정부담 측정, ② 행정부담 감축목표 설정, ③ 목표달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을 추진
- Ramboll Management(덴마크) 또는 SIRA(네델란드) 등 외부 용역을 활용, 수천개 기업과 직접 인터뷰를 통해 행정부담을 측정하고 총괄부처인 재무부 등이 별도 조직을 마련, 종합조정
- 자료 종합화를 위해 database를 구축하고 IT를 활용, 각 부처와 직접 연결되는 network를 구축하여 면밀히 모니터링
- 그 결과 덴마크의 경우 조세부·경제기업부·가족소비자부 등 3개 부처가 행정부담의 74.8%, 금융법·조세관리법 등 상위 10개 법령이 55.5%(각 부처 상위 10개법령은 90%)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부처별로도 10개 주요 법령에 대한 감축을 위주로 하는 Action plan을 수립하고 재무부 등이 예산과 연계 등을 통해 이행 독려

< 덴마크 부처별 행정부담 및 추진성과 >

부처명	행정부담('05.6월 현재)	부담경감 성과('01~'05년)
조세부	1.46조(26.8%)	-9.9%
경제기업부	1.36조(24.9%)	-11.2%
가족소비자부	1.25조(23.1%)	2.9%
노동부	0.72조(13.2%)	0.1%
환경부 등	0.18조(3.4%) 등	-3.0% 등
총계	5조(100%)	-5.1%

4. 정책 추진의 효과

○ 국가 전체적으로 기업에 대한 행정부담이 감소
- 부처간 행정부담 총량제가 적용되어 규제효과를 조직적 · 사전적으로 평가하는 결과 초래

○ 규제가 아닌 업무에 대해서도 국민위주의 행정을 염두에 두는 공무원의 행태 변화를 초래하여 규제대안을 강구하는 행정문화 조성

제7절 규제개혁 이행실태 점검

1. 점검 개요

2006년도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4조(규제개선 점검 · 평가)규정에 따라 상 · 하반기2회(2006.6.20~6.22, 11.20~12.5)에 걸쳐 규제개혁 추진의지, 법령 미근거 규제, 불합리한 규제집행 관행 등을 중점으로 대전, 경기, 강원, 경북,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등 16개 광역자치단체를 점검하였다.

2. 점검 결과 및 평가

(1) 연도별 지적사항 추세

금년 이행실태 점검은 2000년 이후 가장 많은 46명이 점검에 참여하였으나, 지자체 규제개혁 시책의 본격 추진에 따라 평균 지적건수는 3.6건으로 예년 평균 4.6건에 비해 대폭 감소되었고 특히 2000년 이후 지적사항 건수가 감소 추세에 있어 지자체 규제개혁이 점차 정착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연도	'00년	'01년	'03년	'05년	'06년
평균지적건수 (점검인원)	5.2건 (25명)	4.7건 (35명)	3.8건 (15명)	4.5건 (16명)	3.6건 (46명)

(2) 규제개혁 추진의지

'06년 지자체 규제개혁 교육의 대폭 확대, 규제개혁매뉴얼 발간 · 배포 등 지자체 규제개혁 업무를 강화한 결과, 지자체별로 규제개혁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수요자 입장에서 규제 정비, 자체 규제개혁 교육과정 확대 등 자발적으로 규제개혁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지자체별로 아직 규제업무에 대한 관심에 차이가 있으며 규제개혁이 지속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장의 적극적인 지원, 전 부서의 참여를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주요 지적사항 검토

주요 지적사항은 예년과 비슷한 규개위 심사 및 등록 누락, 자치법규 정비 지연, 폐지 규제의 관행적 집행 등으로 예년에 지적된 사항과 유사한 사항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지적사례는 규제판단 여부에 대한 불명확한 기준, 일선 공무원들의 행정규제 업무에 대한 실무지식 부족, 규제법령 제개정에 따른 중앙부처와의 업무협조 미흡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유형	자체규제심사 및 등록누락	불명확 · 불합리 규정	후속조치 지 연	법령미근거 규제운용	기 타	합 계
건수	15	8	12	8	2	45

3. 향후 후속조치 계획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에 통보하여 시정토록 조치토록 하고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규제교육을 강화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중앙부처와 지자체간 규제개혁 업무협조 체계 구축함은 물론, 재정경제부에 점검결과를 통보하여 행정자치부의 정부합동평가시 반영토록 조치하고 개발한 지자체 등록규제 표준모델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제8절 규제개혁 교육

집필자 : 조철영 사무관(T.2100-2443, cho224@opc.go.kr)

1. 개요

규제개혁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생산·집행하는 공무원 및 피규제자인 국민의 규제개혁에 대한 이해와 협조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개혁의 중요성, 규제영향분석 등 규제개혁 제도 전반에 대한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규제개혁 교육훈련은 국내교육 강화, 규제개혁 워크숍 등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특히 2006년도는 교육의 대폭 확대('05년 : 5회 1천명 → '06년 : 94회 11천명)를 통해 규제개혁 교육의 전기를 마련한 해였다.

2. 중앙부처 및 지자체 직장교육

중앙부처는 교육인적자원부, 조달청 등 10개 부처 1,500여명을 대상으로 직장교육을 실시하여 규제담당자 뿐 만 아니라 일반직원에게도 규제개혁 교육기회를 확대하였고, 규제생산자의 불합리한 규제 생성을 억제하고자 일방적 규제완화보다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 규제로의 변화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지방자치단체는 54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8천여명의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규제의 최종 집행자로서 규제개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규제실무·민원처리 행태개선 등 규제개선 과제의 충실한 집행을 유도하였고, 상위 법·령의 제·개정사항, 규제집행 관행 개선 등의 조기 전파에 노력하였다.

3. 각급 교육기관을 통한 교육

(1) 규제개혁관련 전담과정 운영

중앙공무원교육원, 지방혁신인력개발원 등에서는 규제개혁 전담과정을 설치·운영하여 지속적으로 규제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중앙공무원교육원은 5~8급 중앙공무원 및 공직유관기관 임직원 40명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전문과정(5일과정 : 9.4~9.8)을 운영하여, 규제개혁의 비전과 전략, 규제개혁 전략과제 추진, 규제영향분석 및 비용편익분석의 이해, 규제개혁 사례연구 등에 대해 강의와 토론방식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지방혁신인력개발원은 4~6급 지방공무원 31명을 대상으로 규제혁신과정(5.23~27)을 운영하여, 규제행정의 절차실무, 규제개혁 사례, 규제영향분석과 비용편익분석 등에 대해 강의와 분임토의방식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2) 기타 관련 교과목 운영

각급 중앙·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도 단일교과로 규제개혁과정을 설치하여 규제개혁에 대한 소양교육을 실시하여, 이에 대한 기본지식을 함양토록 하였다.

연간 약 2만 여명의 공무원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규제개혁 관련과목 평균 강의시간은 2~3시간가량으로 주된 강의 내용으로 당해연도 규제정비 방향, 규제관련 법규, 추진실적 등이 교육되고 있다.

4. 규제개혁 워크숍

(1) 피규제자와 함께하는 워크샵(9.7~8)

9.7(목)~8(금)까지 2일간 규제개혁위원·경제단체·중앙 및 지자체공무원·규제개혁조정관실 및 규제개혁기획단 직원 등 149명을 대상으로 1박2일의 일정으로 워크샵을 개최하였다.(장소 : 강원도 원주 KT 리더쉽 아카데미)

경제단체 및 기업체 등 피규제자와 합동 워크샵을 통해 수요자가 원하는 규제개혁의 추진방안을 모색코자 하였으며, '기업과 국민의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방안'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거쳐 여러 유익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향 후 민간기업 등 수요자 참여범위 확대의 필요성을 일깨워 준 값진 결과를 행사였다.

(2) 중앙 · 지방 규제개혁 담당공무원 워크샵(10.25~26)

10.25(수)~26(목)까지 2일간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76명을 대상으로 1박2일의 일정으로 워크샵을 개최하였다.(장소: 천안 상록리조트)

중앙 및 지방 규제혁신의 전략 및 전책방향에 대한 이해와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표, 노하우 및 지식을 교류하는 장을 마련하였고, 규제사례별 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으며, 규제개혁의 이해 · 규제개혁의 성과와 향후과제 · 지자체 규제개혁 방향 · 규제영향 분석과 작성사례 등의 강의를 통해 실질적인 규제개혁의 이해도 제고에 기여하였다

5. 규제영향분석 전문가 과정 운영

12.5~6일까지 2일간 규제 생산자인 중앙부처 규제담당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규제영향 분석 전문가 과정을 운영하여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 · 외 현황 · 분석기법 및 사례 교육을 실시, 학습효과를 제고하고자 하였으며, 중앙행정기관의 현실에 부합하는 실무중심 및 이와 연계한 실증사례 위주의 교과편성으로 규제영향분석기법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교육을 실시하였다.

제9절 규제개혁 국제협력(선진국 규제개혁사례 포함)

집필자 : 노혜원 사무관(Tel. 2100-2447, woniroh@opc.go.kr)
서나윤 사무관(Tel 2100-2446, nayoon@opc.go.kr)

〈개 관〉

규제개혁과 관련한 국제협력을 위하여 첫 번째로 OECD, APEC 등 국제기구의 규제관련 회의에 참석하여 우리나라 입장을 반영하고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홍보하는 한편, 회의내용을 국내 규제개혁 추진에 참고하고 있다. 2006년에는 OECD의 규제개혁 관련 실무자급 회의인 Working Party on Regulatory Reform에 2회 참석하였으며, 고위급 회의인 Special Group on Regulatory Policy에 참석하였고, APEC-OECD 규제개혁 회의에 1회 참석한 바 있다.
*OECD에서는 Public Governance and Territorial Development국의 Regulatory Management and Reform과에서 규제개혁을 담당하고 있으며 APEC에서는 Competition Policy and Deregulation Group에서 담당하고 있다.

두 번째로 OECD에서 2000년도 규제개혁 심사에 대한 후속조치로 우리나라의 규제개혁 성과를 분야별로 모니터링하고 추가적인 권고안을 제시하기 위한 'OECD 규제개혁 모니터링 작업'이 OECD 미션단 방문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실시되었으며, 2006.12월 Special Group on Regulatory Policy에서 최종 논의되었다.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는 2007.3월 OECD측의 내한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세 번째로 규제개혁에 외국기업의 의견을 반영하고 외국기업이 한국에서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한외국상공회의소와 협의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2006년에는 2월 · 10월 · 11월 세 차례의 간담회를 통하여 총36건의 건의과제를 검토한 결과 이중 7건을 수용하였다.

1. OECD, APEC 국제회의 참석

가. Working Party on Regulatory Reform (2006.4.24, 프랑스 파리)

*OECD 회원국 대표가 참여하여 각국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OECD 규제개혁 논의 방향을 설정하고자 매년 1~2회 규제개혁 작업반 회의(Working Party on Regulatory Management and Reform)를 개최

동 회의는 '07~'08년 작업인 「위험과 규제(Risk and Regulation)」 및 OECD 추진작업(행정간소화 · 대안규제 등)을 논의하고, 아랍국가와의 규제개혁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위험과 규제」 작업 관련, 발표자들은 위험의 사례, 위험정책 관리를 설명하였으며, OECD는 회원국의 위험관련 제도현황 등을 조사 후 이에 대한 정보를 공유키로 하였다. 행정간소화 · 대안규제 · 행정부담측정(Red Tape Scoreboard) 관련해서 사무국 보고서를 중간검토하였으며, '06.9월 회의시 회원국의 의견을 반영한 최종보고서를 토의키로 하였다. 중동국가와의 규제개혁 협력사업 관련, 요르단 · 캐나다 등은 규제영향분석, 규제개혁 추진체계 등 각국의 규제개혁 제도를 설명하였는 바, 우리나라도 규제영향분석제도를 일부 소개하였다.

나. Working Party on Regulatory Reform(2006.9.18~10, 프랑스 파리)

동 회의에서는 8개 회원국이 행정부담 감소 정책 추진경과를 설명하고, 한국은 수요자 중심의 규제등록 시스템 구축, 지자체 규제개혁 교육강화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한국 규제개혁 부문에 대한 심사가 있었다(OECD 규제개혁 모니터링 부분 참조).

행정부담간소화 심포지움에서 덴마크는 2010년까지 총 부담의 25%를 감축키로 하였으며, 정책총괄기관(재무부)의 각 부처 모니터링, 민관합동 워크샵 개최 등을 통해 규제에 대한 관료의 인식 변화를 도모함을 밝혔다. 멕시코는 멕시코 GDP의 40%가 공공재정에 포함되며, 공공재정 중 35%가 관료제와 연계되어 있는 바, 정부내부 절차 간소화가 규제개혁의 중요한 어젠다임을 설명하였다.

스웨덴 규제개혁 및 중앙 · 지방간 정부역량 부문 국별심사에서 회원국은 분산된 정책구조하에서의 규제조정, 행정부담감축 정책 등에 대해 질의하였으며, 스웨덴은 조정문제 관련, 현재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지방 · 중앙간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공부문 위원회(Committee in Public Sector)'가 '07.2월까지 지방 · 중앙간 조정방안을 제시할 것임을 설명하고, 7개 부문에 대해 행정부담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매년 그 부담감축 성과를 의회에 보고하고 있음을 밝혔다.(2010년까지 조세분야는 20%, 농업분야는 25% 감축 등)

기타 OECD의 중국 규제개혁 심사와 관련, 호주 등 4개국이 자금지원키로 표명하였고, APEC-OECD 통합체크리스 관련, 한국대표는 구조개혁 증진에 기여하는 유용한 도구임을 천명하였다.

다. OECD Special Group on Regulatory Policy(2006.12.7~8, 프랑스 파리)

*'02.11월 OECD 각료회의의 의결에 따라 OECD회원국의 고위관료가 참여하여 규제개혁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규제개혁 특별작업반(Special Group on Regulatory Policy)이 구성되었음. 2003년 3월 · 12월, 2004년 6월 2005년 3월 · 12월에 이어 2006.12월 제6차 회의를 개최

동 회의에서는 한국의 OECD 규제개혁 Monitoring 종합심사가 있었다(OECD 규제개혁 모니터링 부분 참조). 원활한 시장기능을 위한 규제영향분석과 관련, 미국 등 회원국은 자국의 규제영향분석 절차 · 가치를 발표하고 성공적인 규제영향분석확보방안 · 규제영향분석절차에 경쟁 · 시장개방에 대한 영향분석을 포함시키는 방안 등을 토론하였다.

스웨덴 규제개혁 국별심사에서 스웨덴은 규제개혁 · 경쟁 · 시장개방 · 다층적 규제개혁 추진체 · 환경정책 등에 대하여 자국이 규제개혁 추진성과를 설명하였고, 이에 주토론국인 캐나다와 스위스는 경제성장 제고 · 정책목표달성을 위한 향후 규제개혁 추진방향 등에 대하여 집중 질의하였고 스웨덴은 권고안의 대부분을 수용하면서 지속적인 규제개혁 의지를 천명하였다.

'규제의 질관점에서 본 교육 · 환경 분야별 정책평가'에서 미국은 한국의 고등교육분야 규제개혁이 시장개방적 교육시스템으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규제감축이 아닌 규제재조정, 역사적 · 전통적 맥락에서의 검토 등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기타 주요활동 논의에서는 '07~'08년도의 규제정책특별그룹회의의 주요목표 및 중국 규제개혁 국별심사와 비회원국간의 정책협조, 규제개혁에 대한 APEC-OECD간 공동작업 등에 대하여 천명하였다.

라. APEC-OECD Co-operative Initiative (2006.9.12, 베트남 호이안)

*APEC과 OECD는 양 기구간 협력사업으로 회원국의 규제품질 제고를 위한 규제개혁

통합 체크리스트 개발하여 제17차 APEC 각료회의('05.11, 부산)에서 최종 승인한 바, 금번 APEC-OECD 합동회의(APEC EC Ⅲ, 2006.9.12, 베트남 호이안)에서는 미국, 홍콩, 대만이 규제개혁 통합체크리스트를 통한 자가진단 결과를 발표함

(1) 대만의 규제개혁 통합체크리스트 적용 결과

대만은 CEPD(Council for Economic Planning and Development)의 주도로 다양한 규제개혁 정책을 추진해왔으며, 최근에는 대만의 무역자유화를 위한 '자유무역지구계획(Free Trade Zone Plan)'을 추진 중에 있다. 대만은 규제영향분석의 내실화를 위하여 「행정조직의 규제영향분석 이행에 관한 실행 가능한 연구」, 「규제영향분석의 향상을 위한 액션플랜」 등을 작성하였다. 통합 체크리스트를 통한 자가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만은 OECD 공공관리국 규제담당자인 R.Alter, J.Konvitz 등을 초청하여 대만 고위관료들이 참석한 'APEC-OECD 규제개혁 통합체크리스트 포럼'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향후 규제개혁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각 기관간의 협력을 증진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2) 홍콩의 규제개혁 통합체크리스트 적용 결과

홍콩의 규제개혁은 BFAC(Business Facilitation Advisory Committee)에서 총괄하고 각 부처들이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홍콩 규제정책의 기본원칙은 자유투자 및 자유무역, 정부개입의 최소화 등을 통해 키운 시장의 힘을 통하여 경쟁, 투명성, 형평성 등을 강화하고 각 분야의 발전을 이끄는 것이다. 홍콩은 신설규제에 대해서는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는 한편, 기존규제중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고, 특정분야의 규제개혁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등의 방법으로 규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공공협의 문서의 공개, 의견수렴, 추가 협의, 협의 공표 등의 과정을 통하여 공공협의를 강화하여 규제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3) 미국의 규제개혁 통합체크리스트 적용 결과

미국은 OMB내의 OIRA(The Office of Information and Regulatory Affairs)에서 규제정책을 주도하며, Executive Order 12866 on regulatory planning and review에 의하여 중요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OIRA의 규제검토는 분석에 의한 규제, 수요자의 요구에 의한 규제가 가장 비용 효과적이라는 'Smarter Regulation' 개념하에 편익이 비용을

정당화하지 못하는 규제는 제거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특히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규제의 필요성, 규제대안, 비용편익분석(Benefit-cost analysis, Cost-effectiveness analysis, Uncertainty Analysis) 등 규제영향분석의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2. OECD 규제개혁 모니터링 실시

*OECD 규제개혁 모니터링은 2000년도 OECD의 규제개혁 심사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2000년도 이후 규제개혁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권고사항을 제시하기 위한 것임. 2004년 6.15일 OECD 규제개혁회의에서 한국의 모니터링 실시계획을 발표하고, 같은해 11.1일 APEC-OECD 태국회의에서 규제개혁조정관 명의의 모니터링 제안서를 OECD측에 전달함. 2006년 중 OECD측 실사단 방한, 부문별 규제개혁작업반 회의, 규제정책특별회의를 거쳐 2006.12월 최종 보고서가 완성됨. 동 결과는 2007.3월 OECD 공공관리지역개발국장이 내한하여 발표할 예정임.

가. 실사단 방한 (2.13~2.17, 3.20~3.24, 5.1~5.4)

2006년 2월 13일부터 17일까지 통신부문에 대한 OECD 실사단이 방한하였으며, J. Konvitz OECD 규제정책팀장 등 총 6명으로 구성된 OECD 실사단은 2006년 3월 20일부터 24일까지 총 5일간의 일정으로 국조실 · 재정경제부 등 15개 정부부처와 전경련 등 20개 민간기관을 방문하여 규제개혁 · 경쟁 · 시장개방분야 등에 대한 중점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였다. 이어서 5월 1일에는 4일 일정으로 고등교육 분야에 대한 OECD 실사단이 방한하였다. 이와 같은 방한의 목적은 정책권고안에 대한 우리나라의 이행실적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fact-checking)과 그 밖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 이러한 일차적인 목적 외에 실사단은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이에 대한 상호간의 의견차를 조율하는 활동을 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 대한 실사 당시 OECD 방문단은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이 매우 역동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개혁의 추진체계와 추진과정은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해서도 전혀 손색이 없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경제계 · 학계 · 시민단체 등 민간과의 공공협의과정은 그 폭이 매우 넓고 협력체계가 상당히 강화된 것으로 평가하였다.

나. Working Party on Regulatory Reform(2006.9.18~10, 프랑스 파리)

회원국은 단기간에 규제개혁제도를 정착시킨 한국의 규제개혁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의견수렴 확대, 규제영향분석 수준 등에 대해 질의하였으며, 우리측은 공청회 · 입법예고 · 규제개혁위원회 논의 등 각종 의견수렴 절차, 최근의 규제영향분석 개선내용 및 규제영향분석서 보완절차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다. OECD Special Group on Regulatory Policy(2006.12.7~8, 프랑스 파리) : 한국의 OECD 규제개혁 Monitoring 종합심사

우리나라는 2000년 국별 심사 이후 규제개혁 · 경쟁정책 · 시장개방 · 정보통신 · 고등교육 등 5개 분야의 규제개혁 추진성과를 설명하였다. 이어 주 토론국인 멕시코 · 노르웨이와 그 밖의 회원국들은 한국에서 그동안 이루어진 규제개혁 추진성과에 관심을 표명하고 향후 한국의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이에 한국 수석대표는 적극적인 답변으로 회원국의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였다. 우선 경쟁력이 낮은 서비스 분야의 생산성 제고와 관련하여 규제개혁기획단의 서비스 분야 덩어리 규제개혁, FTA 등을 추진 중임을 설명하였다.

또한 노동시장의 인력 Mismatch에 대해서는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제도화된 교육이 따라가지 못한 것인 만큼 현재 대학구조개혁 등이 추진 중임을 설명하였다.

이어 의원입법, 규개위 · 규제개혁기획단간의 기능조정 등과 관련하여 향후 의원입법에 대한 규개위의 의견제시를 강화하는 한편 현재 규제개혁조정관이 규개위 · 기획단장을 겸임하는 만큼 문제가 없음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행정당국의 재량권 남용 우려에 대해서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규제의 억제, 유사행정규제 정비, 행정조사기본법 제정의 추진 등을 설명하였으며 그 밖의 기타 행정부담 감축정책 추진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강제조사권 질의에도 답변하였다.

3. 주한외국상공회의소 협의채널 운영

규제개혁조정관실은 규제개혁에 외국기업의 의견을 반영하고 외국기업이 한국에서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2005년 6월부터 총5회에 걸쳐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주한외국상공회의소와의 협의채널을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2006년에는 2월 · 10월 · 11월 세 차례의 간담회를 통하여 총36건의 건의과제를 검토한 결과 이중 7건을 수용하였다. 2006년도 간담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2007년부터는 검토 결과의 시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건의창구를 상시 운영하는 체제로 전환하여 간담회가 열리는 시점까지 기다리지 않고 기업체가 건의사항을 접수하는 즉시 검토 · 처리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다양한 외국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등으로 협의채널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제 5 장 규제개혁 평가 및 향후 추진 방향

제 1절 2006년 규제개혁 평가

제 2절 외부 전문가 평가

제 3절 2007년 규제개혁 추진방향

제1절 2006년 규제개혁 평가

1. 2006년 규제개혁 추진실적 및 평가

2006년도에도 민관합동의 「규제개혁기획단」을 중심으로 기업환경 개선효과가 크고 다수 부처가 관련된 핵심 덩어리 규제를 중심으로 규제에 따른 시간과 비용 감축을 통한 규제의 품질 개선을 강도 높게 추진해 왔으며 특히, 기업 등의 요구를 반영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복합덩어리 규제 개선을 위해 기업경영환경 개선, 신산업 기반 조성 등 19개 과제 464건의 세부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소관 부처별 점검회의 및 온라인 모니터링 등 후속조치 이행관리를 강화를 통하여 마련된 규제 개선방안이 일선현장에서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결과 2006년말 기준으로 기한을 관리하고 있는 복합덩어리 세부과제 1,422건중 962건을 완료(67.7%)하였다.

각 부처에서도 소관 기존규제를 전면 재검토하여 지식정보화·전자정부화·급속한 기술발전 등 시장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규제 1,413건(17.6%)을 정비대상으로 발굴하였으며, 추가 발굴과제를 포함하여 2006년말 기준으로 1,422건에 대해 정비를 완료하였다.

또한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를 통해 총 7회 355건의 건의과제를 접수(처리 235건, 검토중 120건)하고 규제신고센타를 통해 개별기업의 규제민원 총 452건을 접수, 276건(61.1%) 해소하는 등 개별기업으로 애로규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였다.

국민과의 접접에 있는 일선 지자체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복합민원 검토 및 허가여부 결정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자체 등 일선기관의 「부서합심제」 운영을 의무화('06.6월)하여 행정기관의 복잡한 절차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였으며, 규제개혁에 대한 인식 및 행태 개선을 위한 중앙 및 지자체 공무원 대상으로 2006년 중 총 87회, 76개 기관 10,246명에 대해 규제개혁 교육을 실시하였다.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기반의 강화를 위해서 각종 행정조사로 인한 기업활동의 부담 감축을 위해 「행정조사기본법」 제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규제등록 기준을 행위별에서 사업별로 변경하고 경제적, 사회적, 행정적 분류 등 규제의 성격별 분류기준을 추가하는 규제등록제도 개편, 복잡한 규제내용 및 절차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공장설립 절차 및 공동주택 건립 절차에 대한 「규제맵」을 시범 작성 · 배포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상시적인 규제개혁 평가와 의견수렴을 위해 건축, 보건, 국민생활 등 10개분야 300명, 상 · 하반기 모니터링 실시관계전문가 등으로 규제개혁 모니터단 구성 · 운영중에 있으며, 모니터링 결과에 의하면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 · 노력(긍정 74.1%) 및 복합덩어리 규제 개선효과(긍정 76.8%)에 대해 대부분이 공감('06.5월, 한국갤럽)하고 있었으나 다만, 규제개혁 체감도(긍정 49.5%) 및 일선 공무원의 규제집행 행태(긍정 34%)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바 있다.

2. 전략과제 추진성과

집필자 : 차은철 사무관(Tel. 2100-8755, aja2940@opc.go.kr)

가. 개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개혁기획단이 설치되어 활동한 결과 '06년 말까지 51개의 덩어리 규제 정비방안을 확정하는 등 기획단은 수요자 중심, 현장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체감도 높은 규제정비를 추진키 위해 노력하였다.

그간의 성과에 대해 기업, 경제 단체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기획단의 활동을 연장해 줄 것을 건의하는 등 규제개혁기획단의 추진성과에 대해 만족스러운 평가가 많았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마련된 개선방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있으나 후속조치의 이행이 지연되어 현장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하에서는 규제개혁기획단의 추진성과에 대한 국민과 기업 등 수요자, 그리고 일선 현장에서 실제로 개선이 이행되는 실태 등을 파악하고 보완이 필요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야를 추가로 발굴하기 위해 한국갤럽에 의뢰('06.5)하여 실시한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 결과와 한국행정연구원에 의뢰('06.8)하여 분석한 전략과제 규제개혁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소개한다.

나.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 결과('06.5, 한국갤럽)

(1) 체감도 조사 개요

규제개혁 체감도 조사는 규제개혁기획단이 마련한 덩어리 규제 개선방안에 대해 국민, 기업 등 수요자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의 체감도를 설문조사 방식을 통해 실시하였다. 참여정부의 규제개혁 의지, 참여정부 규제개혁 성과, 규제개혁기획단이 마련한 덩어리 규제 개선방안의 효과, 향후 규제개혁 추진 과제, 일선 기관의 규제 집행 행태에 대한 만족도 등에 대해 물어 보았다.

조사의 객관성,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5.9부터 5.22까지 2주간 경제단체의 임직원 72명, 기업 임원 179명, 중앙 및 자치단체 공무원 90명, 학자 연구원 등 전문가 56명, 일반국민 124명 등 수요자 및 전문가 521명을 대상으로 설문지 송부 및 전화질문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2) 조사 결과

체감도 조사의 내용은 덩어리 규제 개선 인지여부, 참여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정도, 규제개선 효과정도, 민간부문의 참여에 따른 효과정도, 규제개혁이 시급한 분야, 덩어리 규제개혁 개선방안의 효과, 규제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적극성에 대해 물었다.

민관합동 규제개혁기획단이 추진하고 있는 덩어리 규제 개선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전체(N=521) 응답자 중 53.6%가 인지하고 있고 기업, 학자 등 관계자가(397명, 62.0%) 일반인(124, 26.6%)에 비해 인지도가 높았다.

참여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노력에는 74.1%가 '노력하고 있다'(많이 노력하고 있다 21.1%, 어느 정도 노력하고 있다 53.0%)고 응답하여서 현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노력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 참여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정도 N=52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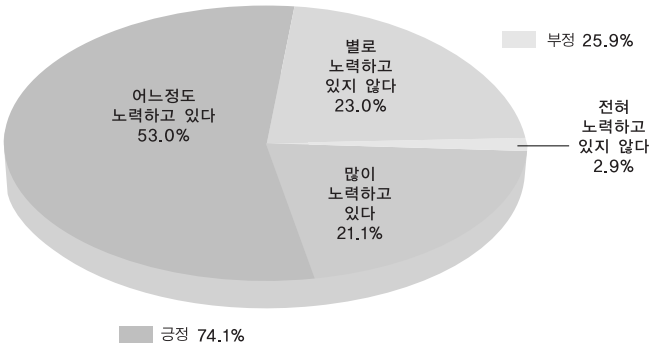

참여정부의 일반적인 규제개혁의 성과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은 49.5%로 과반수에 미치지 못했다. 이 중, 일반인은 41.9%, 전문가는 51.9%가 개선이 '이루어졌다'는 평을 하여, 전문가들의 평가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 참여정부의 규제개혁으로 그간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했던 규제에 대한 개선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결 과	전 체 (N=521) %		일반인 (N=124) %		전문가 (N=397) %	
많은 규제개선이 이루어졌다	7.9	49.5	2.4	41.9	9.6	51.9
어느 정도 규제개선이 이루어졌다	41.7		39.5		42.3	
별로 규제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46.8	50.5	54.8	58.1	44.3	48.1
전혀 규제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3.6		3.2		3.8	
계	100.0		100.0		100.0	

한편, 민간합동 규제개혁기획단에 기업 등 민간이 참여함에 따라 '규제개혁 추진에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는 일반인 65.3%, 전문가 73.0%(전체 71.2%)로 나와, 규제개혁기획단의 민관 합동 방식의 구성에 대한 의견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시급히 규제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야를 3순위까지 물어본 결과,

창업 및 경영환경'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53.7%), '교육 · 문화 · 관광(38.8%)를 다음으로 선택하였다. 전문가의 경우는 61.2%가 '창업 및 경영환경', '건설 · 건축' 40.1%, '교육 · 문화 · 관광' 36.8%의 순으로 가장 시급한 개혁 분야로 꼽은 반면, 일반인들은 '노동 · 환경' 47.6%, '교육 · 문화 · 관광' 45.2%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어, 전문가들과의 견해 차이가 있었다.

〈 시급한 규제개혁 분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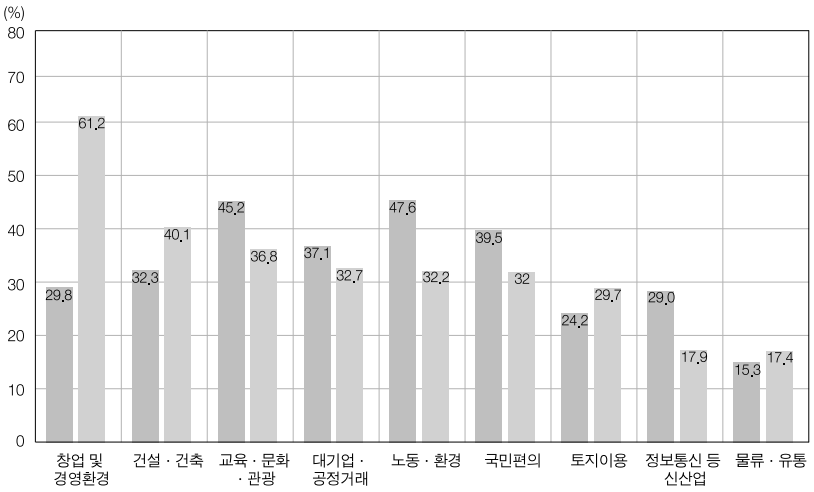

응답자들에게 덩어리 규제개혁 개선방안의 일부 내용을 설명한 후 그 효과에 대해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76.8%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해 규제개혁기획단이 추진한 덩어리 규제개혁의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 덩어리 규제개혁 개선방안의 효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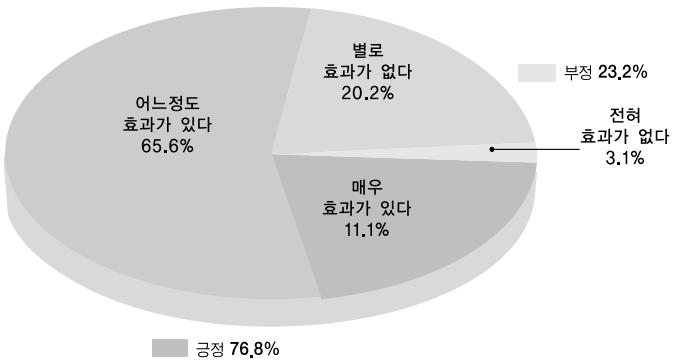

일선기관의 규제담당 공무원의 집행 행태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66.0%로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 주었다.

(3) 결론 및 시사점

체감도 조사 결과 수요자들은 참여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은 높이 평가하고 있으나 개선 실적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 한편, 규제개혁기획단을 민관합동으로 구성 등 덩어리 규제 추진방식과 기획단이 마련한 규제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향후에도 민관합동 방식의 규제개선의 추진, 수요자 중심 규제개선방안 마련 등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여전히 기업환경이나 교육, 문화 등에 대한 규제개혁 요구가 높아 이들 분야에서 지속적이고 꾸준한 규제개혁이 이루어질 필요가 높음을 보여준다. 또한 일선 집행 기관의 규제 집행 행태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어서 중앙정부 차원의 개선방안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일선의 집행행태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 전략과제 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 분석('06.8, 한국행정연구원)

(1) 개요

복합덩어리 규제개혁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향후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한국행정연구원에 의뢰하여 경제적 효과를 분석해 하였으며. 분석과정은 ①개별 중요과제 선정 및 산업 matching –〉 ②피규제그룹 및 비용편익범주 설정 –〉 ③해당부처 비용편익시산 및 전문가 스크린 –〉 ④시산된 비용편익에 근거한 분야별 규제개혁 효과 분석 –〉 ⑤CGE 모형 시뮬레이션에 의한 거시적 효과분석의 순으로 이루어졌다.

(2) 분석방법

전략과제 규제개혁의 경제성장이나 고용창출 등 경제적 효과 유발 정도를 검토하기 위해 계량화 가능성과 개혁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27개 전략과제, 306개 세부과제를 선정하였으며, 이를 파급효과와 영향을 미치는 산업별로 재분류한 다음, 재분류된 개별 세부과제들에 대하여 피규제 그룹 및 비용편익 범주를 식별하고, 비용편익을 시산하였다.

자료조사 결과 세부과제 306건 중 '창업관련 인허가 절차 개선', '골프장 건설규제 합리화', '적재물 배상책임 의무제도 개선' 등 76건에 대한 세부과제가 시산되었다.

시산된 결과는 다시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각 분야별 · 산업별 비용절감 효과를 계산한 다음 일반균형연산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CGE Model)에 투입하여 거시경제적 효과를 추정하였다.

< 분석에서 가정한 규제개혁의 효과 발생경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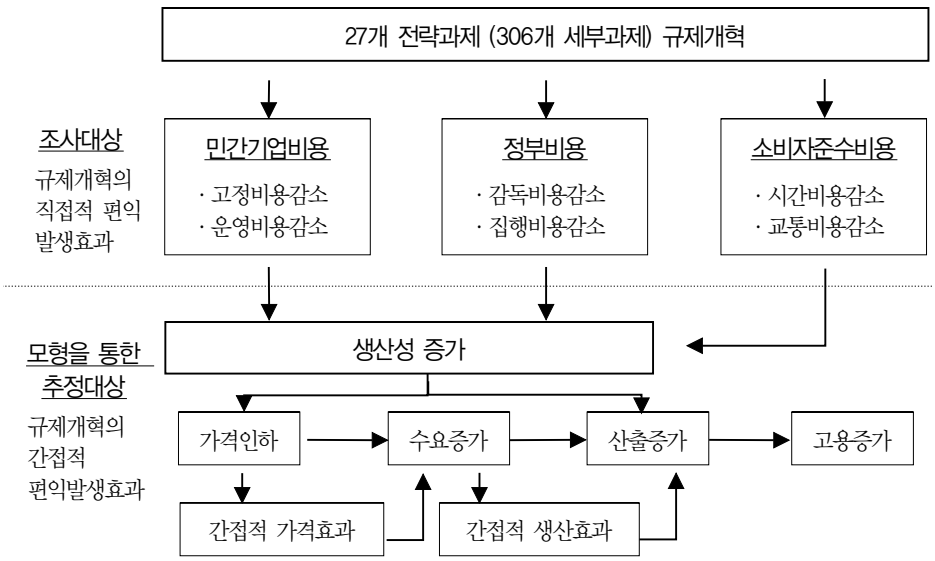

(3) 분석결과

시산된 76개 세부과제의 비용절감 효과는 총 2조 216억원으로, 7개 사업분야별 및 민간 · 정부 · 가계 각 경제주체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 사업분야별 전략과제 규제개혁의 비용절감효과 (백만원) >

사업분야	민간비용순절감액	정부비용순절감액	소비자비용순절감액
건축 · 건설분야	458,118.3	62,252.0	0.0
고용 및 환경분야	126,049.0	-350.0	0.0
교육 · 문화 · 관광분야	0.0	0.0	273,440.0
국민편의 및 공공부문	10,800.5	-2,336.3	62,539.1
물류 · 유통분야	345,242.0	3,576.4	0.0
정보통신 · 방송 · 금융 신산업분야	312,157.0	10,434.2	78,717.9
창업 및 경영환경분야	279,153.2	-12,934.5	14,788.7
합계	1,531,502.0	60,641.8	429,485.7

기업에 가장 큰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온 분야는 건축 · 건설분야의 규제개혁으로 4,580억원 이상의 민간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왔다. 다음으로 물류 · 유통분야 3,452억원, 정보통신 · 방송 · 금융 신산업분야 3,121억원, 창업 및 경영환경 분야의 규제개혁은 2,791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교육 · 문화 · 관광분야의 규제개혁 효과는 소비자편익증진에 집중되어 나타났으며, 소비자 비용절감 효과가 2,734억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한편, 일부 분야에서는 정부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되었는데, 이는 국민편의 증진과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 재정지출 증가 필요성과 국민이나 기업이 부담하던 각종 수수료와 부담금 등의 감면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용절감 효과를 CGE모형의 산업 분류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산업별 생산비용 및 규제개혁으로 인한 비용 절감 (단위 : 백만원, %) >

산업	생산 및 판매비용	규제개혁에 따른 비용절감액	비용절감비율
가공식품	29,597,566	32,867	0.1679
섬유	14,291,828	-	0.0568
의류	6,975,649	-	0.0568
화학	103,823,597	215	0.0570
철강	55,960,007	-	0.0568

산업	생산 및 판매비용	규제개혁에 따른 비용절감액	비용절감비율
자동차	46,763,026	–	0.0568
기타운송장비	16,015,486	–	0.0568
전기전자	90,828,514	1,691	0.0587
기계	38,696,068	–	0.0568
기타제조업	27,752,728	–	0.0568
전력	10,072,903	32,181	0.3195
가스수도	14,631,920	79,138	0.5409
유통	458,099,526	62,645	0.0137
사업서비스	77,060,046	167,560	0.2174
운송/통신	108,399,867	275,574	0.2542
금융	247,115,277	116,628	0.0472
관광레저	25,451,195	373,394	1.4671
공공서비스	55,780,676	77,397	0.1388
기타서비스	17,780,457	346,780	1.9503

주) 각 산업별 생산비용은 2004년 기준이며, 그 출처는 통계청 광공업 및 서비스 조사

특정 산업 분류가 불명확한 기타서비스분야를 제외하면 관광레저산업의 비용절감효과가 1.467%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가스 · 수도 사업 0.541%, 전력산업 0.320%, 운송통신서비스 0.254%, 사업서비스 0.217% 등의 순으로 절감비율이 높은 것으로 추산되었다. 관광레저산업 내에서는 골프장 건설규제완화를 통한 18홀 기준 골프장 건축기간 단축(1.5년) 등의 기회비용 절감효과가 연간 3,68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시산되었다.

한편, 위에서 살펴본 산업별 규제개혁으로 인한 비용절감 효과(first-round effects)를 일반균형연산모형에 투입하여 추산한 결과 시산된 전략과제 규제개혁이 계획대로 추진된다고 가정하면 우리나라의 실질국내총생산은 2.1%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규모는 2005년 GDP 기준으로 약 16조 9,391억원 증가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제성장의 의미는 다른 조건이 모두 일정하다고 할 때, 전략과제 규제개혁으로 인한 각종 비용절감 효과(충격)가 경제성장으로 인한 자본축적 효과까지 고려하여 새로운 경제균형점에 도달하는 경우 규제개혁 이전의 GDP수준에 비교해 2.1% 증가한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기업의 비용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따라 물가는 0.69% 하락하며, 1인당 국민소득은 약 1.36%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국민소득 증가 규모는

2005년 기준으로 22.69만원에 해당한다.

생산의 변화에 따라 추가적인 고용 증가도 예상되는 바, 산업별 생산 증가를 우리나라 2000년 투입-산출표에서 추정된 고용계수에 적용한 결과 약 15만 2천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수출은 1.53%가 추가적으로 증가하고, 수입은 1.32% 증가하여 무역수지는 약 291백만 달러의 흑자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4) 결론 및 시사점

이상의 추정된 경제효과 분석은 직접적인 비용절감효과 계산이 가능한 76개 과제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비용절감 계산이 불가능하거나 효과추정이 곤란한 과제들은 고려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전략과제 규제개혁의 거시적 효과와 생산 및 생산자가격 변화에 미치는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분석결과 신산업이나 서비스산업, 네트워크 산업 등의 규제개혁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제조업을 비롯한 산업 전반에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비스업 부문은 제조업에 비해 시장개방 수준이 낮은 반면, 2005년 현재 전체 GDP의 56.3%를 차지하여 비중이 높다 할 것이므로 향후 서비스산업 행정부담 감소 및 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진입장벽 제거 등 과감한 규제개혁 정책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건설분야에서도 각종 영향분석제도 개선과 통합 건축정보망 구축 등의 개혁을 통해 상당한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특히 건설분야는 대기업·중소기업 하도급 관계의 개선이나 공정경쟁 강화 등 규제개혁을 통한 개선의 여지가 많아 경제적 효율성 강화 관점에서 더 많은 규제개혁 노력이 집중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방송·금융 분야에서도 과감한 각종 업역별, 지역별 진입규제 개선과 경쟁강화를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 공급이 가능하도록 규제개혁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생산자뿐만 아니라 소비자 편익 증진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전략과제 추진으로 시산된 비용절감효과에 기초해 볼 때 소비자비용절감액은 민간기업의 비용절감액의 약 1/4에 지나지 않으므로, 향후의 규제개혁 전략과제는 소비자 편익 증진에 보다 중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3. 부처 규제개혁 평가

가. 평가 개요

각 부처의 규제개혁 추진노력 및 실적평가를 통해 부처의 자율적인 규제개혁을 유도하고 국민·기업 등 피규제자를 대상으로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업무 평가의 일환으로 추진하였다

평가 대상기관 35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정책 수립 22개 기관(Ⅰ그룹) 및 정책 집행 13개 기관(Ⅱ그룹)으로 구분하여 평가를 하였으며 행정규제가 없거나 적은 기획예산처, 법제처, 청렴위 등의 기관은 평가에서 제외하였다

평가는 각 부처가 자체 작성한 실적자료를 토대로 평가하였으며 각 항목별 평가지표에 따라 계량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계량평가가 어려운 사항은 정성평가 실시하고 평가대상 기관별 업무특성으로 특정 평가항목이 해당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당해 항목의 평가는 생략하였다. 평가분야 및 배점은 표와 같다

< 규제개혁 평가분야 및 배점 >

단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계획 (30)	부처별 규제정비 계획의 적절성(10)	ㅇ 개별규제 정비계획의 목표율	7
		ㅇ 개별규제 정비계획의 충실성	3
	추진체계의 적절성(8)	ㅇ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구성의 적절성	2
		ㅇ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운영의 적절성	6
	규제개혁 추진의지(12)	ㅇ 기관장 추진의지	4
		ㅇ 소속공무원 추진의지	4
		ㅇ 규제개혁 인센티브 부여	2
		ㅇ 규제개혁 교육	2
집행 (20)	추진체계 실행정도(20)	ㅇ 신설·강화규제의 타당성	4
		ㅇ 규제영향분석의 충실성	10
		ㅇ 신설·강화규제 억제노력	6

단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산출/결과 (50)	목표 달성도 (30)	○ 개별규제 정비계획의 목표 달성도	8
		○ 전략과제 정비 이행실적	18
		○ 규제개혁 관리	4
	정책수행에 따른 변화정도(20)	○ 규제개혁 고객만족도	20

나. 종합평가 결과

각 부처가 관심과 의지를 갖고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실적이 보통 이상(62.8점)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기관별 평가결과(Ⅰ그룹 46~79점, Ⅱ그룹 56~78점)에 차이가 다소 크게 나타났다.

Ⅰ그룹(정책수립 기관)은 금융감독위원회, Ⅱ그룹(정책집행 기관)은 관세청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가항목중 규제개혁 추진체계가 우수하고, 추진체계의 실행정도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 규제개혁 추진체계 적절성 81%(6.5/8점), 규제정비계획 적절성 76%(7.6/10점), 추진의지 67%(8.0/12점), 국민 만족도 63.4%(12.7/20점), 목표 달성도 60%(18/30점), 추진체계 실행정도 49%(9.8/20점)

<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결과 >

구 분	Ⅰ그룹(22개)	Ⅱ그룹(13개)
최우수	금융감독위원회	관세청
우수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환경부	경찰청, 국세청
보통	건설교통부, 과학기술부, 공정거래위원회, 교육인적자원부, 국방부, 노동부, 농림부, 문화관광부, 국가보훈처, 보건복지부, 산업자원부,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방재청, 병무청, 산림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중소기업청, 청소년보호위원회, 특허청, 해양경찰청
미흡	방송위원회, 법무부, 여성가족부	기상청, 문화재청

다. 분야별 평가결과

(1) 규제개혁 계획

(가) 부처별 규제정비계획의 적절성

전 부처 등록규제 총 8,029건중 평가대상기관의 당초 규제정비계획율은 17.1%(1,374건)로서 전년도 13.6%보다 3.5%p 증가하였으며, 당초과제 수립이후 2006년 말까지 추가된 과제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18.7%(1,631건)로 나타났다.

다만, 그룹별 규제정비계획 목표율은 Ⅰ그룹(16.5%)이 Ⅱ그룹(21.5%)에 비해 다소 낮으며 기관별로는 7~55%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규제정비계획의 내용적으로는 법률상 규제(498건, 30.7%), 중요규제(39건, 2.4%), 폐지규제(60건, 3.7%)의 비율이 낮아 규제정비계획의 충실도(37%)는 다소 미흡하였다.

(나) 규제개혁 추진체계의 적절성

각 부처의 자체 규제심사위원회가 대부분 외부위원('05년 80%, '06년 81%)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민간위원장을 선임하고 있어 자체규제심사위원회 구성의 적절성은 확보되었다고 판단되며,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대면회의 비율('05, 68.4% → '06, 78.1%) 및 자체정비권고율('05, 13.6% → '06, 16.5%)도 또한 전년대비 증가하고 있어 규제개혁 추진체계의 적절성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향후에는 위원회 운영을 보다 내실화 할 수 있도록 각 기관별로 안건 사전배포, 이해관계자 참여보장 등 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신설·강화규제 심사 이외에 기존규제 정비 등 규제업무 전반에 대해 심의하는 기구로 역할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다) 규제개혁 추진의지

규제개혁 추진의지는 기관장(80%)은 높게 나타났으나, 공무원(60%) 추진의지, 규제개혁 인센티브 및 교육(55%)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규제개혁 추진에 대해 조직 내부에 전반적인 인식 확산과. 또한, 규제개혁 관련 교육 및 학습조직 운영도 활성화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조직내에 규제개혁 활동에 대해 근평 등 인사우대 방안을 마련하고는 있으나, 이를 실행할 구체적인 방안이 미흡하여 인사평가 우대의 지속성·예측가능성이 부족하였다.

(2) 규제개혁 집행

(가) 신설 · 강화 규제의 타당성

신설 · 강화 규제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개선권고율*이 64.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어 규제심사과정에서 사전적으로 불합리한 규제한 대부분 방지되고 있으나 소관부처의 법령안 입안시 규제의 타당성 검토에 대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규개위 개선권고율은 「규제심사 효율화방안」시행('06.6)이후 중요규제를 대상으로 산정한 결과로서, 비중요규제를 포함한 05년 기준 개선권고율은 32.1%이었다.

(나) 규제영향분석의 충실성

규제의 타당성 검토 및 품질관리를 위해 도입한 규제영향분석의 충실성은 전반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47%)되었으며, 특히, I그룹('05, 55% → '06, 46%)의 경우 규제영향분석의 충실성이 전년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비용편익분석(28.6%)은 주로 서술적 분석방법을 사용하고 계량적 기법을 이용한 분석은 미흡하하고 및 규제대안 검토(35%만 적절)는 대부분 생략되거나 충분한 분석없이 간략하게 기술되고 있는 데, 같은 규제라도 수준이나 기준을 달리하거나 비규제적인 수단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현실적으로 공무원의 규제영향분석 작성능력 및 시간상 제약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제영향분석 전문교육 강화, 규제영향분석을 위한 각종 DB 구축, 규제영향분석 자문기구 운영 등의 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다) 신설 · 강화 규제 억제 노력

2006년도 신설 · 강화규제 수는 총876건으로 '05년 1,104건과 대비하여 약 21%가 감소하여 부처 자체심사 및 규개위 규제심사 과정에서 개선권고율 증가로 불합리한 규제의 신설 · 강화가 사전적으로 억제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그룹별로는 I 그룹의 신설 · 강화 규제 수가 대부분을 차지(806건, 전체의 92.6%)하고 있으며, 건설교통부(105건), 환경부(103건), 보건복지부(100건) 등의 규제가 많이 신설 ·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규제개혁 산출/결과

(가) 부처별. 개별규제 정비계획의 목표 달성도

'06년도 부처별 개별규제 정비는 추가 발굴과제를 포함 총1,442건(당초 1,183, 추가 259)이 이루어졌으며, 그룹별 정비실적은 Ⅰ그룹이 87.6%(1,179/1,346건), Ⅱ그룹이 91.3%(263/288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 전략과제 정비 이행실적

평가대상 19개 부·처·청의 전략과제 이행율은 70%로서 전반적으로 과제추진에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법률 개정의 경우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절차이행에 상당기간 소요되고 있었으며 시행령이나 규칙 등 개정에 있어서도 법 개정사항과 연계하여 일괄 개정하기 위해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었다.

(다) 규제개혁 관리

각 부처별 우수사례, 순응도 조사, 규제관련 지침 이행사항 등을 평가하는 규제개혁 관리는 보통수준(75%)이며 Ⅰ그룹과 Ⅱ그룹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지표별로는 우수사례는 75%(1.5/2점)로서 규제개혁의 효과가 어느정도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규제 품질제고 등을 위한 순응도 조사는 50%(0.5/1점)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4) 규제개혁 만족도

규제개혁 종합만족도는 62.7점으로 '05년(58.9점)에 비해 상승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전문가 만족도는 67.7점, 일반인 만족도는 58.2점으로 '05년 대비 각각 6.7점, 2.0점 증가하였다. 항목별로는 '규제 개선노력'에 대한 만족도가 64.6점으로 가장 우수하게 나으며, '규제의견 수렴'에 대한 만족도는 60.9.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룹별로는 Ⅰ그룹(60.4점)보다는 Ⅱ그룹(68.5점)의 만족도가 우수하였으며 정책부서에서는 정보통신부(73.7점)가, 집행부서에서는 관세청(75.7점)의 종합만족도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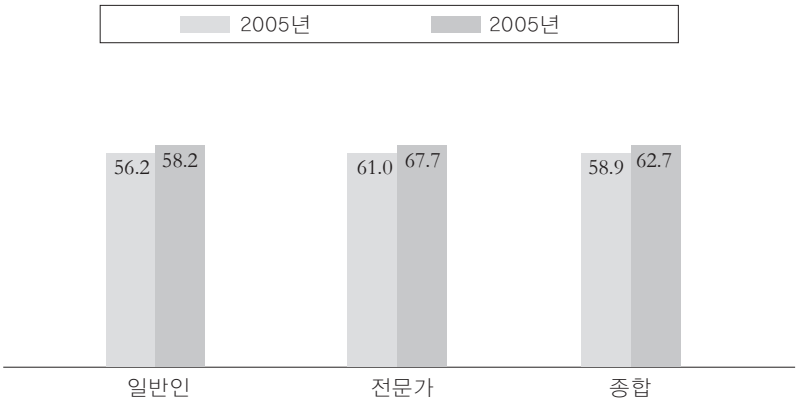

구 분	일반인			전문가			종합		
	2005년	2006년	증감율	2005년	2006년	증감율	2005년	2006년	증감율
전 체	56.2	58.2	▲2.0	61.0	67.7	▲6.7	58.9	62.7	▲3.8
규제의 적절성	54.5	57.1	▲2.6	61.7	67.5	▲5.8	58.0	62.3	▲4.3
규제의견 수렴	54.2	55.8	▲1.6	60.2	66.7	▲6.5	57.1	60.9	▲3.8
규제개선 노력	57.3	59.3	▲2.0	63.0	70.1	▲7.1	60.1	64.6	▲4.5
규제개선 실적	56.9	58.9	▲2.0	62.4	66.6	▲4.2	59.5	62.8	▲3.3
규제 환류성	58.3	59.6	▲1.3	61.4	66.8	▲5.4	59.8	62.9	▲3.1
규제 활용도	–	–	–	57.4	65.6	▲8.2	57.4	65.6	▲8.2

4. 향후 추진계획

각 부처 규제개혁 평가결과는 전 부처청에 통보하여 우수사례는 확산하고 미흡분야는 보완토록 조치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기관 및 공무원에 대해 2007년 상반기중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평가가 우수한 분야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또는 축소하고 미흡하거나 부처간 편차가 큰 분야는 평가 배점을 확대해 나가고 규제개혁의 실질적인 성과 등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새로운 평가항목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제2절 외부전문가 평가

– 2006년도 규제개혁의 내용 및 성과평가

한국행정연구원 김정해

1. 서론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이념이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규제개혁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국가적 정책 이슈가 되어 왔다. 많은 선진국들이 국가의 효율성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규제개혁을 천명하고 지속적으로 좋고 품질 높은 규제를 만드는 개혁에 매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97년에 발생한 IMF 경제위기가 '98년 김대중 정부의 실질적이고 대대적인 규제개혁의 계기가 되었다. 김대중 정부는 규제를 절반으로 줄이고, 빅딜이나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등을 통해 산업구조를 개혁하고자 노력했다. 그 결과 '98~'99동안 규제수가 거의 50%에 가깝게 줄어드는 성과를 거둔 반면 양적 규제개혁에 머물러 규제개혁의 실질적 효과를 국민이나 기업이 피부로 느끼기 어려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2003년부터 시작된 노무현 정부는 기업 · 국민들이 실제 느끼는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양적인 규제개혁보다는 질적인 규제개혁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규제개혁기획단과 기업애로해소센터 등을 설치하여 여러 부처에 걸친 덩어리 규제, 기업활동에 방해가 되는 규제 등을 개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2006년도 정부의 규제개혁의 내용과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첫째, 규제개혁과 정책을 구성하는 요소를 살펴보고 규제개혁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제시한다. 둘째,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2006년 우리 정부를 통해 이루어진 규제개혁의 추진 전략에 포함된 내용과 규제수단들이 규제정책 구성요소를 잘 반영하고 있는가를 평가해 보고자 한다. 셋째, 이러한 추진 전략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을 성과테스트 접근법에 기반하여 목표 대비 성과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자 한다.

2. 규제개혁의 평가 대상과 방법

가. 규제개혁의 평가 대상

규제 개혁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한 국가의 규제정책과 개혁의 내용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구성요소는 결국 규제개혁을 평가하는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OECD국가에서 수행되는 규제개혁 아젠다는 규제정책, 규제수단, 규제기관 이상 세 가지 주요 요소에 대한 변화를 의미한다. 규제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설계하는 규제개혁은 이러한 상호 지원해주는 세 가지 구성요소들이 잘 통합적으로 운영될 때 가능한 것이다(OECD, 2002).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규제개혁의 세 가지 구성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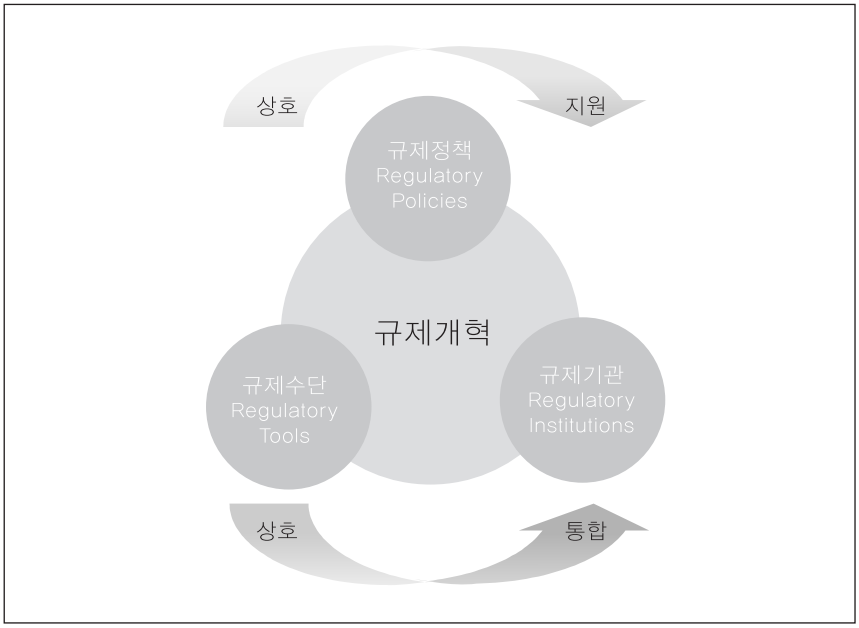

첫째, 규제정책과 관련해서 많은 국가들이 규제정책을 채택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규제정책을 명확하게 채택하는 것은 규제개혁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줄 뿐 아니라 다른 개혁 요소들 간 조정과 일관성을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규제정책의 천명을 통해 정치적 행정적 단계에서의 책임성을 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규제형성과 심사절차를 위한 표준화된 평가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좋은 규제

원칙의 선언과 함께 규제개혁의 목표 등의 명확한 국가적 지침을 제시한다.

둘째,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규제수단을 확보해야만 한다. 최근 이러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규제수단으로 규제영향분석(RIA), 규제대안의 체계적인 고려, 이해관계자 협의, 책임성제고를 위한 제도 등이 활용된다. 따라서 규제개혁이 잘 이루어지는 국가들을 보면 규제수단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이해관계자 협의 수단은 공개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RIA를 보완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다. 규제설계를 세련화하고 질 높은 집행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규제수단의 확보는 향후 규제개혁과 순응에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셋째, 규제감독기구의 특징과 기능은 규제정책과 개혁의 성과에 가장 필수적인 제도적 결정요인이 될 수 있다.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 규제감독기구가 설립되고 있으나 규제정책집행이나 개혁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적절한 권력, 자원, 역량을 동원하는데 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적절한 자원, 책임성 메카니즘과 정책일관성을 지니고 정치적 행정적인 압력과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독립된 규제감독기구로 운영될 때 규제개혁과 정책의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 규제개혁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들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는 규제개혁의 성과를 평가하기에 앞서 이러한 세 가지 구성요소들이 적절하게 내용상 상호 조화되고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어느 한 요소에만 치우쳐 과도하게 불균형을 이루어서는 안 되며 이들 세 가지 요소가 조화되는 규제개혁이어야 성공적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규제개혁의 평가방법

일반적인 정책평가의 유형은 과정중심, 목표중심, 결과중심 이상 세 가지로 구별된다(Mcnamara, 1998). 과정중심은 정책의 실질적인 불만이 어떤 단계에서 발생 되었는가 또 어떤 단계가 부족한 가 등을 밝히는 데 유용한 것으로 정책프로그램의 역동성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방법이다. 목표중심은 약속한 특정 목표를 시간 내에 달성하였는가를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결과중심은 정책프로그램의 성과를 보다 전체적인 차원에서 폭넓은 영향을 측정하는 것이다. 과정중심의 경우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공식적인 표준과의 순응성을 검토하는 단순한 작업인데 비해 목표중심이나 결과중심의 경우는 보다 복잡한 정보수집 및 처리작업을 요구한다.

OECD는 2004년도부터 다른 일반 정책평가와 마찬가지로 규제개혁과 정책의 내용에 대한 성과평가에 많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여 향후 주요하게 논의해야할 이슈로 채택하고 있다. 현재 규제개혁의 사후평가에 대한 분석틀과 측정기법에 대한 논의가 주요 이슈이다. OECD(2004:20)는 규제수단과 기관에 대한 사후평가의 개념적 분석틀로 정책평가의 일반유형을 차용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순응 테스트(Compliance tests)는 규제 품질제고의 수단과 기관의 개별 요소들에 대한 공식적인 순응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즉 RIA의 절차, 이해관계자 협의절차, 기관들이 법, 정책, 지침에서 정한 절차적 요건들을 충족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으로 과정에 중점을 둔 것이다.

둘째, 성과 테스트(Performance tests)는 절차적 요건을 초월해서 수행된 정책의 질을 평가하는 것이다. 규제발전과정에 대한 적합한 자료를 부가하고 세련화하는 능력 그리고 고품질 규제절차를 지원하는 능력이라는 관점에서 규제의 수단과 기관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성과평가는 사전평가보다는 사후평가에 치중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RIA의 결과로 나온 비용편익분석이 실제로 잘 측정된 것인지, 이해관계자협의를 통해 정책대안을 실제로 확인하였는지, 의사결정에 필요한 새로운 자료를 실질적으로 수집하였는지 등의 산출(output)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셋째, 기능 테스트(Function tests)는 규제수단이나 기관이 규제품질의 결과에 미치는 실제영향을 평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규제수단의 품질 자체의 질을 평가하는 것 뿐아니라 정책과정에 이러한 규제수단이 효과적으로 통합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즉, 규제수단과 기관의 개혁수행 작업이 실질적인 정책변화의 계기가 되었는지를 엄격하게 검증하는 것으로 결과중심의 평가방법이다.

이상 세 가지 분석틀이 OECD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실제로 이러한 분석틀을 모두 활용하여 규제정책과 개혁을 평가하는 국가는 미국, 영국, 호주 정도에 그치고 있고 방법론 또한 아직까지 다양화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우리의 경우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를 기관평가를 위한 통합성과지표의 일부분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국가전체 규제개혁의 포괄적이고 보다 실질적인 측면을 평가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부처별 규제개혁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전정부적인 규제개혁의 내용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보다 발전된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다. 평가를 위한 본 연구의 방법과 틀

이상 규제개혁의 세 가지 평가방법과 규제개혁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세 가지 구성요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하여 2006년도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행하고자 한다.

첫째, 2006년도 규제개혁의 내용이 위에서 제시된 세 가지 구성요소를 모두 잘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개혁의 구성내용에 대한 정성적인 평가를 수행할 것이다. 이를 위해 2006년에 추진된 규제개혁의 목표와 추진전략의 내용이 위에서 제시한 세 가지 구성요소의 내용을 균형감 있게 반영하였는가를 평가할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의 경우 규제개혁을 평가하는 다양한 방법론적 틀이 있지만 기능테스트는 일반적인 평가기법에서 거의 활용되지 않는다. 평가 방법이 매우 복잡하고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목표대비 성과 달성도를 평가하는 성과테스트의 방법을 활용하여 기술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06년도 규제개혁계획과 지침을 기본 자료로 활용하여 실제 산출물과 과정이 제대로 수행되었는가를 평가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수행에 있어서 자료수집의 한계로 인하여 평가의 범위는 국무조정실에서 제공하는 2006년도 규제개혁추진계획 및 지침과 성과자료들을 중심으로 하되 규제개혁위원회와 규제개혁기획단의 홈페이지에 올라온 자료들을 참고로 하는데 그치기 때문에 보다 광범위하고 폭넓은 규제개혁에 대한 효과평가는 결여되어 있음을 사전에 밝히고자 한다. 또한 각 정부부처별 규제개혁의 성과평가의 경우는 앞장에서 논의된 부처 규제개혁추진 평가로 대신하고 본 연구는 전정부차원의 규제개혁 추진전략과 성과에 대한 평가만을 수행할 것이다.

3. 2006년 규제개혁의 전략과 내용 평가

이론적 논의에서 제시하였듯이 규제개혁은 세 가지 구성요소들이 균형을 이루어 수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의 전략과 내용이 이러한 세 가지 구성요소들이 잘 조화되어 이루어져 있는 가를 평가하기 위하여 2006년도 규제개혁의 추진방향과 목표를 제시한 전략 체계도를 살펴보았다. 이를 구체화 한 것이 〈그림 2〉이다.

<그림 2> 2006년도 규제개혁 추진방향 및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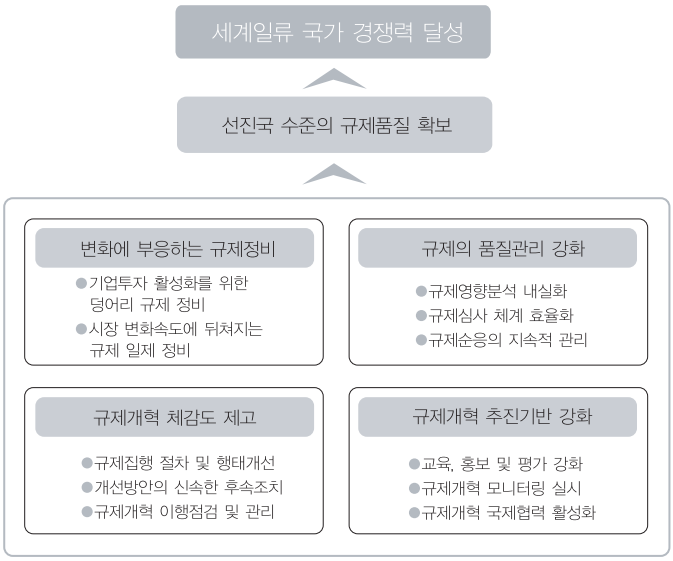

2006년도 규제개혁의 전체적인 비전은 세계일류의 국가 경쟁력 달성을 위한 선진국 수준의 규제품질 확보이다. 즉 규제개혁의 2단계인 질적 규제개혁을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변화에 부응하는 규제정비, 규제의 품질관리 강화,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 규제개혁 추진기반 강화라는 네 가지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개혁추진방향의 내용을 규제정책, 규제수단, 규제기관의 세 가지 구성요소 차원에서 평가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국가적 아젠다로서 규제정책 구성 요소

규제개혁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 많은 국가들이 규제개혁을 국가적 정책 아젠다로 선언하고 고위 정치지도층에서 규제개혁을 지원하는 것을 꼽는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우리의 경우도 국가개혁의 중요 아젠다로 규제정책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고 참여정부 정부혁신의 6대 과제 중 하나로 규제개혁을 다루고 있어 이러한 정치적 차원의 지지기반은 잘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 때 보다는 정부 차원에서 내세우는 중요도가 약간 축소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참여정부는 이러한 정치적 기반 하에서 국무총리산하 규제개혁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규제정책의 목표를 설정하고 매년 세부전략을 추진하고 있어 규제정책이라는 첫 번째 구성요소는 잘 갖추어진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우선적으로 규제정책의 목표차원에서 적합성을 평가해 보고자 한다. 많은 국가들이 규제정책의 목표로 사회적 복지의 향상, 경제발전 및 소비자 복지 향상, 법률의 합리화와 재설계, 공공분야의 효율성, 대응성, 효과성 향상 및 불필요한 규제비용 제거 등 다양한 내용을 내세우고 있다. 우리의 경우 최종적인 규제개혁의 목표를 세계 일류의 국가 경쟁력 달성으로 두고 있어 보다 포괄적인 사회경제 전반의 개혁을 최상의 목표로 삼고 있다. 이는 국가마다 달리 표현될 수 있는 부분이고 현재 우리의 경우 규제개혁을 통한 국가경제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회적 요구와 일치하는 상위 목표라고 판단된다.

둘째, 이러한 상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위 전략으로 선진국 수준의 규제품질 확보를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김대중 정부에서 수행하였던 규제의 50% 축소라는 목표에 비하여 규제의 질적 개혁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규제정책의 목표 자체는 선진국들이 추구하는 규제개혁 2단계 수준과 일치하고 있어 바람직한 목표설정이라고 판단된다.
이러한 국가적 목표와 하위 전략을 규제개혁지침으로 명확하게 문건화하여 각 부처에 보급하는 등 전정부차원에서 규제 정책이 하나의 중요한 정책적 이슈로 자리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라 판단된다.

나. 규제수단의 활용에 대한 구성요소

규제수단을 중심으로 구분해 보면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된다. 첫째, 규제설계 및 규제품질제고 수단, 둘째, 규제집행 향상을 위한 수단이 그것이다. 이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OECD, 2002).

〈 규제 수단의 두 가지 차원과 유형 〉

(1) 규제 설계 및 품질제고수단

여기에 해당하는 수단들은 신규 규제에 대한 평가나 심사체제를 개혁하는 방향과 기존 규제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는 도구로 사용된다. 규제품질제고를 위하여 활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규제수단들은 아래와 같다.

- 규제영향분석제도의 활용 : 심사체계의 강화 및 분석의 내실화
- 규제대안과 비규제대안의 활용 : 정보제공, 공동규제, 보험, 거래허가권 등
- 행정간소화와 인허가 감축 : 정보화활용, 리엔지니어링활용, 행정부담간소화 측정
- 규제의 투명성 증대 : 이해관계자 협의, 규제문서의 전자배포, 규제등록제도 등

(2) 규제집행향상을 위한 수단

이에 해당되는 수단으로 행정절차법을 통한 절차의 공정성 확보, 사법심사제도나 옴부즈만 제도를 통한 공정성 향상, 규제순응성 강화 노력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규제 수단들이 규제개혁추진 전략에 잘 반영되어 있는가를 평가 해 보기 위하여 2006년도 규제개혁추진 방향에 나타나 있는 세부추진전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변화에 부응하는 규제정비와 규제품질관리강화는 규제설계 및 규제품질 제고 수단에 해당하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전략에 포함되는 규제수단들은 규제영향분석제도의 내실화, 규제심사체계의 효율화, 기존규제에 대한 정비 및 행정간소화 등이다. 특히, 기존규제의 품질제고를 위하여 규제개혁기획단을 활용한 덩어리규제개혁 등의 수단 활용은 매년 전략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다른 국가와 달리 특별하게 활용되는 수단으로 평가할 수 있다.

둘째, 규제집행의 향상을 위한 수단들로는 대부분 규제개혁과 정책의 공정성 및 책임성 향상과 관련된 수단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의 경우 법적으로는 행정절차법이나 옴부즈만 등이 마련되어 있어 이러한 수단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규제개혁 추진 전략에서는 이 같은 공정성이나 책임성 차원의 수단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도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나타난 규제수단들을 전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주로 규제영향분석과 행정 간소화 등 일부 수단의 활용에 치우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부분적으로 규제등록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규제 및 비규제 대안 및 투명성제고에 대한 수단들과 규제집행향상을 위한 공정성과 책임성제고 수단이 정책 추진방향에서 거의 배제되어 있다. 따라서 규제수단의 다양한 활용 및 균형있는 적용이라는 측면에서 아직까지 많은 부분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 규제기관의 자원, 역량 및 관리에 대한 구성요소

2006년도 규제개혁추진 방향을 살펴보면 규제기관을 따로 분리하여 명확하게 이들에 대한 정책추진전략 등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규제개혁체감도 개선과 규제개혁 추진기반 강화전략 아래의 일부분으로 '규제기관의 책임성 및 관리 메카니즘의 향상' 과

'규제기관의 역량향상'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제기관의 감독역량제고를 위해 규제개혁기획단 내에 후속조치 이행전담팀을 구성·운영하여 체계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실무자들의 명확한 법해석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질의회신 매뉴얼'을 마련하고 규제담당자의 교육 훈련을 강화하는 세부 전략들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규제감독기관에 대한 개혁이나 역량강화노력에 대한 부분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 추진방향이나 전략에 중요과제로 채택하지 않고 축소시킨 점은 아쉽다. 최근 행정연구원(2006)의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규제품질 제고를 위한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심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국무조정실과 규제개혁 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만족도가 7점 만점에 3.79점으로 조사되어 상대적으로 부정적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이는 규제개혁 정책 내용과 수단 자체에 대한 개혁 뿐 아니라 규제개혁 추진기구에 대한 개혁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규제품질제고를 위한 규제영향분석제도 수행에 필요한 예산이나 인력의 충분성에 대하여 각각 3.20점과 3.38점으로 조사되어 자원이 매우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실제로 규제개혁의 성과가 규제감독기구나 각 부처 규제담당자의 역량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점을 고려 해 볼 때 규제기관의 자원 확보, 역량, 관리체계의 개선 등에도 관심을 보여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2006년도 규제개혁 추진방향에서는 제도개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규제기관의 역할이나 역량개선의 측면이 간과되거나 미흡한 것으로 보이므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정부차원의 노력이 요청된다.

이상 한 국가의 규제개혁과 정책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하여 참여정부 의 2006년도 규제개혁의 정책내용을 정성적으로 평가 해 보았다. 그 결과 세 구성요소가 모두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반영되어 있었으나 규제수단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규제영향분석과 같은 수단에만 편향되어 개혁이 수행되어 있었고 규제개혁기구나 규제기관에 대한 역량 제고나 개혁 노력은 아직까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평가는 규제개혁 추진방향과 수단에 국한 된 것이므로 규제개혁의 효과에 대한 계량적 평가가 아닌 구성요소가 모두 통합된 개혁추진내용인가를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것임을 다시 밝혀 두고자 한다.

4. 2006년 규제개혁의 목표대비 성과 평가

가. 2006년도 규제개혁 추진 성과

2006년도 규제개혁의 추진방향에 따라 다양한 세부추진계획들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다양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간략하게 2006년도 규제개혁의 추진 성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국무조정실, 2006c: 1-3).

(1)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기존 규제에 대한 적극적인 정비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기존 규제에 대한 정비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계 등의 지속적인 요구를 반영하여 기업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신산업기반을 조성하는 등 다수 부처와 관련된 19개의 복합규제(464건의 세부과제)를 정비하였다. 이러한 복합규제정비의 2006년 한 해 동안의 효과는 현재 추산키 어려우나 행정연구원에서 시산한 바에 따르면 참여정부에서 수행한 27개의 복합규제과제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총 2조 216억원의 비용절감 및 중장기적으로 GDP의 2.1%증가효과(05년기준 16조9천억원)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부처별 소관 기존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여 지식정보화에 따른 시장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규제를 일제 발굴하고 정비하였다. 총 8,043건 중 1,413건을 폐지 개선하였다.

셋째, 경제단체와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규제신고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여 기업현장의 규제애로 사항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였다. 경제 5단체, 지방소재기업, 지자체 등으로부터 총 7회 355건의 건의 과제를 접수하여 235건을 처리하였고 120건을 검토중에 있다. 또한 규제 민원을 452건을 접수받아 276건을 해소하였다.

(2) 규제개선방안 후속 조치 및 규제집행 절차 및 행태개선

규제개선방안의 후속조치와 집행관련 개선 성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규제개선방안이 일선 현장에서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이행관리를

강화하여 이행율이 67.7%에 이르도록 관리하였다.

둘째, 복합민원 검토 및 허가여부 결정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자체 등 일선 기관의 「부서합심제」 운영을 의무화하였다.

셋째, 규제개혁에 대한 인식 및 행태 개선을 위한 중앙 및 지자체 공무원 대상 교육을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2006년간 76개 기관 10,246명을 대상으로 총 87회의 교육을 수행하였다.

넷째, 건축 · 위생 · 환경 등 다수국민 관련분야를 중심으로 자치단체의 규제개혁 이행 실태를 반기별로 점검하였다. 상반기에는 경기, 강원 등 4개 광역자치단체를 하반기에는 서울, 인천, 부산 등 12개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점검을 하였다.

(3) 규제개혁 제도 개선 및 추진기반 구축

그 밖에 2006년도에는 법제도의 개선 작업과 규제개혁 추진기반 구축에 대한 노력들이 병행되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종 행정조사로 인한 기업활동의 부담 감축을 위해 「행정조사기본법」을 제정하고자 하였으며 현재 국회에 상정 심의 중에 있다.

둘째, 개인 · 기업 등에게 규제 체계나 내용 등을 알기 쉽게 제공하기 위해 41개부처의 등록규제를 재분류하여 8,043건의 규제를 5,225건으로 재조정하는 노력을 수행하였고 한국행정연구원의 전문가들을 통해 공장설립절차와 공동주택건설 등 2개분야의 「규제맵」을 시범 작성하여 배포하였다.

셋째, 상시적인 규제개혁평가와 의견수렴을 위해 관계전문가 등으로 규제개혁 모니터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였는데 건축, 보건, 국민생활 등 10개분야에서 300여명이 모니터링을 수행하였다.

넷째, 불합리한 규제신설 방지 및 규제품질제고를 위한 규제심사체계의 효율화 및 규제영향분석제도의 내실화에 노력하였다.

나. 2006년도 규제개혁의 목표대비 성과평가

2006년도의 규제개혁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 앞 서 이론적 논의에서 제기된 세 가지 관점의 평가방식을 모두 활용하여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실제로 효과(outcome)를 평가하는 것은 복잡한 기법을 필요로 하고 일정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에 가능하다. 보다 명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이러한 효과평가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일년 단위로 수행되는 정책이나 업무평가의 경우는 정책수행이 법적 제도적 지침에 의해 절차적인 합리성을 가지고 수행되었는지, 년도별 계획에서 정한 목표를 달성했는지 정도의 평가만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글에서도 이러한 한계로 인하여 목표달성도를 바탕으로 평가를 기술해 보고자 한다.

매년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에 대한 년도별 추진방향과 과제를 설정하고 각 과제의 목표달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성과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규제개혁의 목표달성도만을 가지고 2006년도 규제개혁의 성과를 평가해 보면 다음과 같은 표로 정리할 수 있다(국무조정실, 2007).

<표 1> 2006년도 규제개혁 목표달성도

세부 전략	성과목표 및 지표	목표 달성도
변화에 부응하는 규제개혁	19개 과제에 대한 복합덩어리규제 개선 방안 마련	총 17개 종합과제 및 세부395개 과제 방안 마련 완료/ 12월 중 2건 완료 예정
	부처개별규제 정비 (3년치 평균 10.3% 이상)	8,043건 중 1,413건(17.6%) 발굴 및 810건(10%) 정비
	규제신고센터 접수 건의 사항 해소 (최근 2년 평균치 60% 이상)	453건 중 276건 해소로 61% 달성
규제품질관리 강화	신설강화규제심사 강화 (3년 평균치 29.6% 이상 개선철회 권고)	420건 규제심사 중 221건(52.6%)에 대한 개선 철회 권고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	복합덩어리규제 개선방안 후속조치 이행강화 (후속조치 이행관리율 65% 이상으로 달성)	규제개혁 세부과제1,421건 중 946건 완료 (완료율 66.6% 달성)
	지방자치단체 현지점검을 통한 집행실태 및 개선(상하반기 점검실시)	상하반기 점검 완료
	규제개혁 교육확대를 통한 일선공무원의 집행행태개선 및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 (40회 이상)	76개기관 1만명에 대하여 총 87회의 교육 실시 목표치의 218% 초과달성
	규제개혁 만족도 (전년도 노력도 70%, 성과 38% 이상)	노력도는 67% 약간 미달되었으나, 실적 만족도는 48%로 106%초과달성

세부 전략	성과목표 및 지표	목표 달성도
규제개혁 추진기반 강화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개정	개정 완료(100% 달성)
	행정조사기본법 제정	국회 제출 중 (80% 완료)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의견을 상시 수렴할 수 있는 체계 구축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활용 100% 달성
	규제등록시스템 정비	12월 중 완료

〈표 1〉에 나타난 목표달성도만을 가지고 평가 해보면 모두 잘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목표를 달성하고 임무를 완성하였다는 것만으로 규제개혁이 잘 되었다 못 되었다는 평가를 내리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달성도를 통해 정부가 규제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노력했고 많은 과제를 수행하였다는 점은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측면은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노력도를 설문조사한 결과 긍정적인 대답이 74.1%였다는 점에서도 뒷받침 된다. 반면 규제개혁 체감도(긍정 49.5%)와 일선 공무원의 규제집행행태(긍정 34%)에 대하여 부정적인 응답이 많았다는 점은 아직까지 이와 같은 규제개혁의 노력이 국민이나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5. 결론

이상 2006년도에 실행된 규제개혁에 대하여 추진방향과 성과에 대하여 규제개혁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잘 반영한 규제개혁이었는지, 계획한 목표를 잘 달성하였는지 이상 두 가지 측면에서 평가 해 보았다. 따라서 본 글이 규제개혁이 기업과 국민의 삶의 질을 얼마나 증가시켰는지 국가경쟁력을 얼마나 높였는지 비용을 얼마나 줄였는 지와 같은 효과를 평가하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효과평가(기능테스트)는 개혁이 수행되고 어느 정도 기일이 지나야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평가 결과, 2006년도에도 많은 규제개혁 과제들이 수행되었고 정부 전체차원에서 규제개혁이 중요한 이슈가 되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과제를 벌여 놓고 이를 이행하는 후속조치 부분이 지속적으로 관리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개혁은 불필요한 작업에 그치게 되므로 향후 중요한 전략과제로 이에 대한 보다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행 년도 별 규제개혁 추진방향 및 과제의 계획 방식이 변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성과관리나 전략기획의 기법 등을 통해 분석을 수행할 경우 규제개혁의 세 구성요소 등을 잘 반영 할 수 있으며 전정부적인 규제개혁관리가 훨씬 용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장기적인 규제개혁의 전략과 우선순위의 선정을 통해 년도 별 추진 전략과 목표설정 등이 이러한 전체적인 시각에서 도출되어야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규제개혁의 기획 및 성과평가가 OECD에서도 주요한 이슈로 논의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심과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McNamara, Carter. (1988). A Basic Guide to Program Evaluation, downloaded form http://www.mapnp.org/library/evaluatn/fnl_eval.htm
· OECD. (2002). Regulatory Policies in OECD Countries: From Interventionism To Regulatory Governance. OECD Reviews of Regulatory Reform.
· OECD. (2004). Regulatory Performance: Ex-post Evaluation of Regulatory Tools and Institutions. Draft Report in OECD Working Party on Regulatory Management and Reform.
· RRC. (2006). Regulatory Reform in Korea: For Attractive & Sustainable Business Environment.
· 국무조정실. (2006a). 2006년도 규제개혁 추진지침.
· 국무조정실. (2006b). 경제 활성화를 위한 2006년도 규제개혁추진 종합계획.
· 국무회의보고자료.
· 국무조정실. (2006c). 2007년도 규제개혁 추진지침.
· 국무조정실. (2007). '06년도 주요정책과제 자체평가 결과.
· 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rrc.go.kr
· 한국행정연구원(2006).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역량강화방안. KIPA연구보고서

제3절 2007년 규제개혁 추진방향

1.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존규제 정비

우선 복합덩어리 규제 정비는 규개혁기획단을 중심으로 경제활력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기업환경 및 행정절차 개선, 국민생활 편의증진을 위한 11개의 신규 과제와 개선방안이 마련되었으나 보완이 필요하거나 반복적으로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6개 과제에 대한 보완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부처 개별규제 정비는 경쟁을 제한하거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 등에 대한 경쟁제한 규제, 기업활동에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는 행정편의적인 행정조사·보고 등 행정적 규제, 국민의 자유로운 경제적·사회적 활동이나 기본권 등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 등을 집중 발굴하여 개선하되, 국민의 생명, 안전, 환경 및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사회적 규제는 규제내용 및 기준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한상의 등 경제5단체와 규제개혁조정관실·기획단 등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규제민원 발굴, 대안의 타당성 검토 및 개선방안 수립 등 전 과정에 수요자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경제단체 등과의 순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다.

2. 불합리한 규제신설 방지 및 규제품질 제고

신설·강화 규제중 이견이 크거나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중요규제에 대해서는 관련단체,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실시하는 한편 주요 개선·철회권고 사례를 분석·전파하여 유사 규제의 생성 억제 등 법령 입안단계에서의 자율적 규제합리화 유도하는 한편 자체규제심사 운영 매뉴얼 마련·부처 시달 등을 통해 부처 자체규제심사를 내실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규제개혁평가결과 상대적으로 부진하게 나타난 규제영향분석의 충실성을 제고

하기 위해 금융 · 방재 · 식약 · 관세 등 주요분야의 매뉴얼을 보급하는 한편 내실있는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을 위해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일부 핵심규제의 B/C분석은 외부 전문기관(규제연구센터 등) 적극 활용하고 국무조정실과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대상규제를 선정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시범작성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규제완화로 인한 부작용 관리를 위해 개별 규제 개선방안 마련시 규제완화로 인한 예상부작용 검토를 의무화하고, 규제 개선방안 시행후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 발생 여부 등을 수시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제도 등을 보완할 계획이다.

3.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

국민과의 접점에 있는 일선 지자체에서의 규제개혁 추진을 통한 규제개혁 체감도 제고를 위하여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위임범위를 초과하는 조례 · 규칙상의 불합리한 규제 등 자치법규상 불합리한 규제를 일제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법령 제 · 개정시 자치법규 정비 필요성 통보제도 도입 등 상위법령 변경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의 연계를 강화해 나가고 지속적인 이행실태 점검을 불합리한 규제개혁 업무실태 및 규제집행 관행을 개선해나가는 한편 중앙 · 지방 공무원, 전문연구기관, 기업인 등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여 규제개혁에 대한 인식 공유할 기획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지자체별로 상이한 규제등록 내용을 표준화하기 위하여 통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모델을 개발 · 보급하여 지자체별 규제등록시스템 마련 및 On-line 공개 등을 통해 체계적인 지자체 규제개혁 추진기반을 구축하고 복합덩어리 규제 및 개별규제 정비방안 중 일선공무원의 집행 관련사항 및 규제개혁의 필요성 등을 중점 전파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4. 규제개혁 제도개선 및 추진기반 내실화

국민과 기업 등에게 복잡한 규제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하기 위하여 2006년도에 시범작성한 결과를 토대로 다수부처 관련 복합규제, 이행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거나 절차가 복잡한 규제분야 등을 우선으로 주요 규제분야에 대한 규제맵 작성을 확대하는 한편

작성된 규제맵의 On-line 구현 및 관련 정보시스템과 연계를 통해 규제의 연관, 발생 및 확산경로 등 이용자 중심의 정보를 제공하는 종합규제정보시스템 구축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각종 행정조사로 인한 기업부담 완화 및 국민 권익보호를 위해 2006년도에 마련된 행정조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제정을 추진하고 이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행정조사 운영실태 파악하여 각 부처별 행정조사에 대한 평가 및 개선체계 구축할 계획이며, 규제준수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비용에 대한 계량적 · 체계적 측정 및 분석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보고 등을 감축하기 위한 행정비용 감소정책과 규제개혁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효과적으로 축소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특별기고

제 1절 경제계에서 바라본 정부의 규제개혁

제 2절 규제가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 OECD 국가를 중심으로

경제계에서 바라본 정부의 규제개혁

김상열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장기 성장잠재력이 둔화되는 가운데 경기상황마저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 시점에서는 기업환경을 개선하여 투자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물론 기업환경을 개선하는 데에는 금리나 세제 등 조세금융정책 차원의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투자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과감하게 철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규제개혁은 또한 많은 비용을 수반하지 않고도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면에서 매우 효율적이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규제개혁이 더욱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필요한 방안이 무엇인지 경제계의 입장에서 제언하고자 한다.

1.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과 성과

최근 정부는 세계 일류의 국가경쟁력을 달성하기 위해 '선진국 수준의 규제품질을 확보한다'는 목표로 덩어리규제 개선, 기존규제의 합리화, 규제신설 및 강화 억제에 역점을 두고 규제개혁을 추진해 오고 있다.

먼저 정부의 규제개혁 역량을 높이기 위해 조직을 개편했다. 대통령 주재의 「규제개혁추진회의」와 국무총리 주재의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발족했다. 또 수요자 중심의 규제 개혁을 위해 민관 합동의 「규제개혁기획단」을 설치하여 덩어리 규제를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여러 부처가 관련되는 복합민원에 대해 「부서합심제」를 의무화하고, 일선 행정기관에는 「복합민원 허가전담과」를 설치하여 원스톱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작년에는 기업에 대한 중복적이고 자의적인 행정조사를 억제하기 위해 「행정조사기본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등 규제사무 처리상의 문제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규제개혁에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 결과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먼저, 경제계 등 수요자와 공동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함으로써 가시적인 규제개선 효과를 거두고 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가 정부에 건의한 규제개혁과제 중 36.6%가 수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차례에 걸쳐 건의한 총 653건 중 239건이 반영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작년에는 대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지역기업애로 조사를 실시하는 등 규제개혁 업무의 민관 공조 체제를 공고히 하는 사업도 추진되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산업단지 내 물류시설용지에 대해서도 공장용지와 마찬가지로 감정평가액이 아닌 조성원가로 분양할 수 있게 되었으며, 신탁업을 겸영하는 은행의 無수익 자산 증가요인이 되었던 공탁금 의무가 자본금의 10%에서 2.5%로 축소되는 등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었다.

< 참여정부 경제5단체 규제개혁과제 건의 수용현황 >

일자	건의 과제수(A)	수용(B)		비수용	장기검토	수용률 (B/A)
		수용	일부수용			
'03.1분기	14	4	4	6	0	57.1%
'03.2분기	39	15	7	14	3	56.4%
'03.3분기	29	11	5	10	3	55.2%
'03.4분기	9	1	1	3	4	22.2%
'04.상반기	29	9	7	10	3	55.2%
'04.하반기	219	32	30	86	71	28.3%
'05.상반기	60	7	3	10	40	16.7%
'05.하반기	75	18	11	25	21	38.7%
'06.상반기	94	23	26	35	10	52.1%
'06.하반기	85	10	15	41	19	29.4%
계	653	130	109	240	174	36.6%

둘째, 덩어리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는 등 조직정비를 통하여 규제발굴 효과를 높였다. 지난 2004년 8월 국무총리실 내에 설치한 규제개혁기획단은 우리나라 규제개혁의 연혁을 볼 때 매우 독특한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개별부처 차원에서

해결이 어려웠던 복합적인 규제를 다룬다는 점뿐만 아니라 규제 당사자인 기업들이 직접 참여하고 있는 점이 매우 이례적이다. 기획단은 2년간 한시조직으로 출범했지만 대한상의 등 경제계의 건의로 활동시한이 2008년 2월까지로 연장되었다.

기획단은 52개 분야의 덩어리 규제에 대해 개선방안을 확정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 세부과제로 보면 올해 2월까지 1,527개 세부과제의 이행완료율이 7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기획단의 규제개혁으로 인한 실제 효과를 서서히 체감하고 있다. 예를 들면 그동안 농지전용을 통해 공장을 설립할 때 납부하던 농지 1만㎡당 1억 원 가량의 대체조성비를 면제해줘 중소기업의 창업비용이 대폭 줄어들었으며, 법인설립 시 필요하던 5천만 원의 최저자본금을 폐지하여 법인 설립비용이 경감되었다. 또한 10단계 절차와 4년 기간이 소요되던 관광단지 개발절차가 5단계, 27개월로 간소화 내지는 단축되었다.

셋째,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기업환경을 개선하려는 각종 대책들이 발표되는 등 부처 차원에서의 규제개선 노력도 강화되었다. 정부가 작년 하반기에 발표한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과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은 경기진작을 위한 정책조정과 기업 관련 제도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절실한 시점에 때맞추어 발표된 시의적절한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과거에도 이러한 대책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경제관련 부처가 기업환경 개선이라는 목표 하에 이번처럼 여러 부처를 통합한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책 발굴방식에서도 기업의 애로를 직 · 간접적으로 광범위하게 청취하여 정책을 입안했다는 점이 눈여겨볼 만하다. 실제 정부는 중소기업 4,775개, 대기업 100개 등 5천개에 가까운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상의 애로사항을 조사하였으며, 재정경제부 등 경제부처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5개 권역별로 현장방문단을 구성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정책과제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분기별로 이행실태를 점검함은 물론 반기별로 신규과제 발굴 등을 병행하겠다고 밝힌 점과 기업환경 개선을 점검하고 새롭게 보완하는 절차를 명시한 점은 과거와 달라진 모습이다.

2. 정부의 규제개혁 평가

정부가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에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했지만, 기업들이 피부로 느끼는 규제개혁 성과는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작년 말 대한상공회의소가 220개 기업을 대상으로 규제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이전보다 규제가 줄었다고 응답한 기업은 2%에 불과했으며 이전과 차이가 없다(86%)와 증가했다(12%)는 응답이 대다수였다. 이는 2004년 말 동일한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2004년 조사에서는 이전보다 규제가 줄었다고 응답한 기업은 7%였으며, 대부분 이전과 차이가 없다(79%)거나 증가했다(14%)고 응답하였다.

이처럼 규제개혁 노력에 비해 성과가 저조한 이유로는 먼저 몇몇 핵심규제가 정부의 규제개선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정부가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규제체감을 크게 느낄 수 있는 대기업 정책이나 노동규제 등에 대해서는 개선노력이 다소 미흡했다.

규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도 수요자들이 규제개혁의 성과를 느낄 수 없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업관련 규제건수는 1998~99년 기존규제 일제 정비로 대폭 감소하였다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재정경제부 등 7개 경제부처의 등록 규제건수 역시 지난 1999년 2,868건에서 계속 늘어나 작년 말 3,467건을 기록했다.

물론 사회가 복잡·다기화되고 경제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규제가 불가피하게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신규 규제의 도입은 빠르고,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는 데에는 오랜 시일이 걸린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계좌추적권 부활,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상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제도 도입과 식품위생법상 불량식품 신고포상금 대폭 상향조정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최근에는 상법개정안을 통해 이중대표소송제, 회사기회 유용금지 등 외국에도 입법례를 찾아보기 힘든 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까지 있으며, 환경, 안전, 소비자 보호분야 등에서도 우리나라 기업의 감내수준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앞서가는 규제가 꾸준히 도입되고 있다.

< 정부 규제등록건수의 연도별 추이 >

(연말기준, 건수)

구 분	'99	'00	'01	'02	'03	'04	'05	'06
규제 총계	7,128	7,157	7,461	7,724	7,837	7,846	8,017	8,084
7개 경제부처	2,868	2,994	3,110	3,325	3,392	3,384	3,438	3,467

자료 : 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지('07.3.6. 현재)

해외에서 평가하는 우리나라의 기업환경도 그리 긍정적이지는 않다. 작년 세계은행이 발표한 '2007 기업환경 보고서(2007 Doing Business)'를 보면 우리나라의 2006년 기업환경 종합순위는 23위에 랭크되었다. 이는 싱가포르(1위), 홍콩(5위), 일본(11위) 등 아시아 주요 경쟁국에 훨씬 못 미치고 태국(18위)보다도 떨어지는 순위이다.
세부항목별로는 복잡한 규제로 인한 열악한 창업환경(116위)과 노동규제로 인한 경직적인 고용환경(110위)이 우리 기업환경에 대한 저평가의 핵심 요인이었다.

< 우리나라의 기업환경 국제순위 >

부 문	2006년 순위	2005년 순위	순위변동
기업환경 종합순위 (Doing Business)	23	23	0
창업환경 (Starting a Business)	116	105	–11
인허가 (Dealing with Licenses)	28	26	–2
고용 (Employing Workers)	110	108	–2
등기 (Registering Property)	67	65	–2
신용 (Getting Credit)	21	19	–2
투자자 보호 (Protecting Investors)	60	58	–2
조세 (Paying Taxes)	48	50	2
무역 (Trading Across Borders)	28	26	–2
계약 이행 (Enforcing Contracts)	17	18	1
폐업 (Closing a Business)	11	12	1

자료 : 세계은행(전세계 175개국 대상)

주 : 2005년 순위는 2006년의 조사방법 변화와 조사대상국가의 증가를 반영하여 다시 계산

3. 향후 규제개혁 과제

역대 정부들 모두가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지만 규제개혁이 만족스럽게 이루어졌다는 평가가 나온 적은 없었다. 아마도 기업이 바라보는 규제개혁과 정부가 생각하는 규제개혁에는 적지 않은 시각차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규제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들이 원하는 규제를 풀어주어야 한다. 특히 투자, 고용창출, 신산업 발전 등 실제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야 할 것이다.

대한상의가 최근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업활력 진작을 위한 10대 규제 정책과제 조사'에서도 노동시장이나 대기업 규제 등 중요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기업들은 '노동유연성 제고(79.0%)'를 가장 원했으며 'M&A 방어제도 구축'(70.4%),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선'(59.2%), '수도권내 공장 신증설 허용'(55.7%), '상법상의 신규규제 도입 철회'(51.3%) 등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 기업이 바라는 10대 규제정책 과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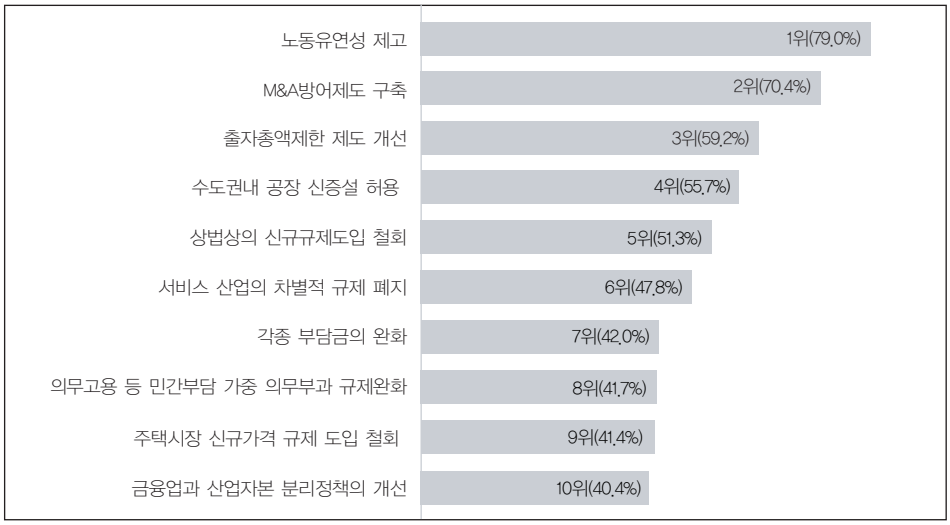

자료 : 대한상의 조사('07.1, 매출액 500대 기업), 복수응답, 전체 응답률 700%

정부가 노동, 대기업 정책, 수도권 규제 등 핵심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지만 기업투자 확대를 유도하여 경기활성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전향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정부가 발표한 규제개혁 과제가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정부가 규제개선 과제를 발표한 이후에도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아 일선 현장에 규제개혁 효과가 전달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기획단에서 확정한 '1만㎡ 미만 소규모 공장설립 규제완화'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2005년 9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관리지역 내 소규모 공장설립이 가능케 되었으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지 않아 정부 약속을 믿고 사업을 추진한 기업들이 선의의 피해를 본 경우가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 일선 지자체의 불합리한 규제사무 집행도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작년 7월 대한상의 조사결과, 기업이 느끼는 지자체의 규제개혁 성과에 대해 기업의 73%가 성과가 거의 없다고 응답했으며, 기업 활동에 영향을 주는 행정기관으로 지자체(75%)를 꼽은 기업이 중앙정부(25%)를 꼽은 기업보다 많았다는 것은 지자체 규제사무의 문제점을 말해준다.

규제개혁 추진체계를 보완하여 규제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규제개혁의 가장 중요한 제도적 틀은 199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동법에 규제개혁위원회의 조직과 규제영향분석 제도 등이 새로이 도입되었다. 법률에서 명시된 각종 제도가 제대로 시행된다면 규제개혁 추진력도 크게 제고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규제개혁위원회의 인력예산 등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50여명의 직원으로 중앙정부(18부 4처 18청)에서 입안하는 연간 1,000건 이상의 신설 · 강화규제 심사를 하고 기존규제 정비 업무까지 담당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규제개혁기획단은 많은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임시조직으로 존재하고 있어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로 인해 정책적 규제와 같은 핵심규제들은 정비하지 못한 채 지엽적인 사안 위주의 규제완화에 그치고 있으며 기획단의 개선방안 효과가 규제 집행 현장까지 전달되는 데에도 상당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끝으로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적절한 규제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의원입법으로 신설되는 규제는 규제심사를 받지 않고 있어 규제영향평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OECD도 최근 보고서에서 국내 신설 규제법안의 상당수가 의원발의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행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와 같이 국회에서도 별도의 규제심사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다.

< 최근 국회 발의 법안 현황 >

구 분	제16대 국회 ('00~'04년)	제17대 국회 ('04~'07.1월)
입법부 발의 법안	1912건 (76.3%)	4516건 (85.3%)
행정부 발의 법안	595건 (23.7%)	781건 (14.7%)

자료 : 국회 홈페이지('07.1)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와 향후 개선과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금 글로벌 무한경쟁에 내던져진 우리 기업들에게는 국내에서 안심하고 투자하고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친기업적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규제문제는 근시안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충한다는 큰 목표를 가지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규제개혁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지금 우리 경제가 당면한 현안을 풀어나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규제가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 OECD국가를 중심으로[1)]

최진욱(고려대)

I. 서론

최근 들어 세계적으로 국가경쟁력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는 세계화(globalization)의 영향으로 인해 세계경제와 지역경제가 상호 통합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각 국가는 무한경쟁의 상황에 놓여있고,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는 국가경쟁력의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한국의 경우 최근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고, 과거 노동과 자본의 투입에 의존한 경제성장이 한계에 이르고 있어 새로운 방식에 의한 경쟁력 확보가 정부와 기업의 큰 화두로 자리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경쟁상대인 미국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국가 · 지역 경쟁력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2010년까지 미국의 경쟁력을 따라잡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형편이다(Gardiner et. al., 2004).

일반적으로 국가경쟁력 강화는 개인과 기업의 가치창출 활동을 증진시킴으로써 국민의 소득을 향상시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 소득 향상이나 삶의 질의 향상을 보여주는 국가경쟁력을 결정짓는 개별적인 요소는 국가 거시경제의 안정적 성장, 시장의 물적 기반(infrastructure), 기업과 시장의 효율성, 개인 노동의 양적 · 질적 수준 등 매우 다양하다. 그 중, 개인과 기업, 시장의 소비 · 생산 · 투자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정부의 역할 또한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2)] 국가경쟁력을 위한 정부의 기능과 역할 가운데 정부에 의한 규제정책은 기업 간 경쟁을 유도하고, 산업 간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국내외 투자를 촉진시키는 법적 · 제도적 환경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정부에 의한 시장개입이 지나쳐 민간 부문의 경제활동을

1)이 글은 2006년 6월에 발행된 「규제연구」 15권 1호(pp. 3-25)에 게재된 논문이며, 규제학회의 동의를 받아 「규제개혁백서」에 싣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 규제학회의 동의에 감사를 드립니다.

2)국가의 경제성장이나 국가경쟁력을 설명하는 원인으로서의 국가나 정부의 역할은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의 발전과정을 연구하는 다수의 정치경제학자들에 의해 강조되고 있다.

위축시킬 경우 오히려 정부 규제는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 경우, 시장원칙에 입각한 시장경쟁력의 회복을 위해 규제개혁은 중요한 의제를 형성한다. 국가경쟁력, 특히 국가 경제성장에 대한 정부의 영향에 관련하여, 독일의 개혁프로그램인 '아젠더 2010'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했던 Wolfgang Klement 전 경제노동부장관은 경쟁과정의 확대, 민영화, 관료주의의 철폐 등으로 인해 독일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있다고 평가하였다(조선일보, 2006년2월9일). 독일의 사례는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규제를 포함한 정부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규제는 기업과 개인의 생산 · 소비활동을 넘어서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결정지으며, 국가의 거버넌스(governance)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한 축으로 작용하고 있다.[3)]

이런 까닭으로 스위스의 국가경영개발원(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이하 IMD)나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이하 WEF)과 같은 해외 평가기관은 각국의 국가경쟁력을 측정함에 있어 정부의 효율성(government efficiency)과 공공기관(public institutions)을 평가 항목에 포함하고 있고, IMD는 정부규제정책을 정부의 효율성 평가항목에 포함시키고 있다. IMD와 WEF가 발표하는 국가경쟁력에 관한 보고서는 국가별 순위 비교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대내적으로는 개별 국가의 정부와 시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대외적으로는 국가의 이미지와 신인도에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이유로 한국을 비롯한 각 국가의 정책결정자들은 경쟁력 순위 결과에 대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Fagerberg, 1988; Lall, 2001).

우리나라 정부가 이러한 조사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사실은 2004년 10월 노무현 대통령이 외국 기관에 의한 한국 국가경쟁력 조사와 평가에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와 대응을 지시한 대목에서도 잘 드러난다(중앙일보, 2005년9월28일). 비록 IMD와 WEF에 의한 순위 결과가 개별 산업, 기업, 정부에게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구체적이고 즉시 실천 가능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다른 경쟁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미시적 · 거시적인 맥락에서 다각도로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이 기관들의 국가경쟁력 조사 결과는 많은 국가들의 경쟁력을 횡단면 및 시계열 자료를 통해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동태적으로 국가경쟁력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어 국제경쟁력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자주 의존하고 있기도 하다(안국신, 2005; 전영서 · 차주영, 2001).

3) 거버넌스 평가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Kaufmann외(2003)의 연구에서 거버넌스를 결정짓는 6가지 지표 중 규제의 질(quality of regulation)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IMD와 WEF의 경쟁력 조사결과가 발표될 때 매번 논란이 야기되었다. 정부는 한국의 순위가 떨어지면 조사방법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고, 순위가 상승할 경우는 경쟁국과의 순위 격차가 줄어들어 국가경쟁력이 향상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한다. 그러나 언론과 기업은 한국의 순위가 하락했을 때는 물론이고 순위가 상승한 경우에도 상승의 원인의 대부분은 민간부분의 기여로 돌리고 하락의 원인으로는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인 정부부분을 지목하고 있다. 정부부분에 관한 비판의 시각에는 거의 예외 없이 지나친 정부규제와 그로 인한 국가경쟁력 약화라는 논지를 담고 있다.[4] 이러한 시각은 실제 평가항목 결과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 할 수 없지만, 그 때의 비교평가는 단순비교일 뿐이라서 그 시사하는 바가 제한적이다. 즉, 대부분의 평가는 정부규제 항목을 다른 항목과 비교하거나, 동일한 항목을 다른 경쟁국과 단순히 비교함으로써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부규제와 국가경쟁력에 관한 정확한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 규제가 국가경쟁력에 반드시 부정적인가의 문제는 Krugman (1994)의 지적처럼 선험적인 논리에 의해 판단될 것이 아니라 실증연구를 통해 검증되어야 한다. 만일 규제가 부정적이라면 과연 얼마만큼 국가경쟁력에 부정적인지에 대한 문제가 다루어져야 할 것이고, 또한 어느 분야에서 어떤 종류의 규제가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이러한 체계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할 때, 규제 개혁에 대한 논의가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논문은 OECD의 30개 회원 국가를 대상으로, 여타 경제 환경적인 요인을 통제했을 때, 국가의 규제의 정도와 규제정책이 국가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절에서는 국가경쟁력에 대한 개념 정의와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3절에서는 분석을 위한 모델을 세우고, 횡단면 회귀분석(cross-sectional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여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마지막 4절에서는 3절에서 도출된 분석결과를 토대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한다.

4)2005년 WEF가 국가경쟁력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WEF의 수석경제학자인 Augusto Lpoez-Claros는 한국의 국민소득에 비추어 국가경쟁력 순위가 낮은 이유를 지나친 규제 때문이라고 밝혔다(중앙일보, 2005년 9월 28일).

II. 국가경쟁력에 관한 이론적 논의

1. 국가경쟁력의 개념과 전통적 결정요인

국가경쟁력(competitiveness of a nation)의 중요성이 회자되는 것과는 달리 학자들 사이에서 '경쟁력' 개념에 대한 명확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연구자들의 주된 관심과 시각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안국신, 2005; Fagerberg, 1988; Gardiner et. al., 2004; Lall, 2001; Porter and Ketels, 2003).[5] 경쟁력에 관해 다수의 연구를 수행한 Porter(1990: 73)는 국가경쟁력을 '국가산업의 혁신과 질적 향상을 위한 능력'으로 이해하고 있고, Tyson(1992: 10)은 '국제 경쟁기준에 부합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면서, 동시에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국가의 능력'이라고 국가경쟁력을 정의하고 있다. OECD(1992: 237)는 '개방시장경제에서 국내실질소득을 유지·증가시키면서, 동시에 국제 경쟁의 도전요구에 부합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으로 국가경쟁력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IMD는 '기업의 경쟁력을 지속시킬 수 있는 제반 여건들을 창출하고 유지할 수 있는 국가의 능력'으로 국가경쟁력을 개념화하고 있는 반면, WEF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장기적인 번영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제도 및 제반 요소'라고 정의하고 있다(McArthur and Sachs, 2002). 어떤 정의에 의하건 국가경쟁력은 궁극적으로 국가의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경제성장을 우선적으로 견인하는 역할은 생산을 담당하는 기업들이다. 이는 기업의 생산과 경영이 얼마나 효율적인가에 의해 국가경쟁력의 상당 부분이 결정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업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자본과 노동과 같은 전통적인 생산요소와 함께 기업가정신을 통한 혁신능력,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한 기업의 기술력, 기업지배구조 등이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보기도 한다(이승훈, 2005; Laursen and Meliciani, 2002; van Stel et. al., 2004). 그러나 기업의 생산과 경영 효율성이 국가경쟁력의 모든 것을 결정짓는

5) Krugman(1994)은 국가경쟁력 개념이 갖는 효용에 대해 상당히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 실증분석에 바탕을 두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은 오히려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고 경고하고 있다. Krugman이 국가경쟁력 개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이유는 첫째,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과 같은 기제가 국가에는 적용되지 않고, 둘째는 'zero-sum'의 성격을 갖는 시장의 경쟁과는 달리 국가경쟁력은 'non-zero-sum'의 특징을 보이며, 셋째는 경쟁력의 개념이 생산성(productivity)의 개념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가경쟁력과 생산성을 등치시키는 Krugman의 입장은 Porter의 견해와 일치한다. Porter(1990: 76)는 '국가의 수준에서 경쟁력에 대한 가장 의미있는 개념은 생산성'이라고 주장하면서, 생산성은 국민 개인소득(national per capita income)과 삶의 질(national standard of living)의 토대를 마련한다고 보고 있다.

요소는 아니다. 기업이 제대로 작동을 할 수 있게 하고, 기업의 효율을 높여줄 수 있는 환경적 요인 역시 국가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예컨대 자본과 노동 요소를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개별 기업에 의해 결정되지만, 이 요소들이 안정적으로 기업에 공급되기까지는 자본과 노동시장의 구조와 환경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또한 보다 많은 기업가가 배출되기 위해서는 사회의 인적자본(human capital) 환경이 중요하고, 연구개발을 통한 기술력이 국가경쟁력에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기업간·산업간 기술 확산이 중요하다.

미시적인 기업의 차원에서 벗어나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국가경쟁력을 결정짓는 가장 기본적인 요인은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요소의 규모와 그 요소들의 생산성이라고 볼 수 있다. 보편적으로 생산함수에 포함되는 변수들은 자본과 노동 그리고 기술력을 꼽을 수 있다. WEF의 국가경쟁력 측정에서도 경제성장에 미치는 세 가지 요인들(시장경쟁과 효율적인 노동 분업에 기초한 자원배분, 인적 자본을 포함한 자본의 축적, 기술진보)의 상호관계를 강조하고 있다(McArthur and Sachs, 2002). 우선 자본의 역할에 대해 일인당 국내총생산율의 증가는 노동대비 자본(capital-labor ratio)의 증가를 가져온다. 자본의 증가는 저축률의 상승과 연결되어 자본가치의 하락이나 인구증가에 따른 비용을 상쇄시키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결국 일인당 국내총생산율의 증가는 생산성, 즉 경제성장의 동력이 되는 것이다(Nkurunziza and Bates, 2003: 3).

국가경쟁력에 자본 못지않게 중요하게 인식되는 요소는 노동생산성인데, 노동생산성 향상은 개별 기업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국가경쟁력에도 도움이 된다. 특히 자본이나 기술이 부족한 국가일수록 노동생산성은 경제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예컨대 다른 생산투입 요소와 산출이 고정되었을 경우를 가정할 때, 생산단위당 노동비용이 증가는 국내외 시장점유율을 떨어뜨려 경제성장과 국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Fagerberg, 1988). 반면에 노동생산성이 높아질 경우, 기업의 산출이 증가되고 따라서 근로자들의 임금도 증가하게 된다. 만일 노동생산성의 향상이 다른 기업과 산업 분야에 확산된다면 국내자본과 해외자본의 투자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고, 이는 산업 전체의 다변화를 유도할 수 있어 국가 경제가 성장하는 기반을 제공해준다.

최근 들어 더욱 관심을 끌고 있는 국가의 기술개발 능력은 국가경쟁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일찍이 Schumpeter(1943: 84)는 새로운 상품, 새로운 공급원, 새로운 형태의 조직과 더불어 새로운 기술의 개발은 경쟁력을 좌우하는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주장

하였다.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확산은 자본과 노동의 가치가 시간에 따라 체감되는 현상을 보완할 수 있고, 새로운 상품개발과 시장을 형성한다는 측면에서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Porter외(2000)의 연구에 따르면 서유럽 국가들과 비교해서 남미의 낮은 소득수준과 생산성은 역사적으로 폐쇄적인 경제구조와 함께 기술개발·확산을 통한 국가혁신능력(national innovative capacity)의 부족에 그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조건들 이외에 국가경쟁력 결정요인으로 정부지출을 고려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나친 정부지출은 민간부문의 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과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그 이유는 예를 들면, 공공프로그램을 확장할 경우 정부의 지출규모는 커지게 되고, 따라서 정부는 세금을 높게 부과하여야 하는데 늘어난 세 부담 만큼 민간부문은 소비와 저축을 줄여 궁극적으로 기업의 생산성을 약화시키고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기 때문이다(Barro, 1991).

2. 국가경쟁력과 규제

앞서 언급한 전통적인 요인과 더불어 정부의 다양한 정책과 수단은 경제의 구조와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된다. 이를테면 정부의 세금정책과 노동정책은 시장의 자본축적과 노동생산성에 영향을 끼치고, 정부에 의한 특허권의 보호나 기술개발 및 투자유인 정책 등은 시장의 기술투자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기 위해 사용되는 정책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규제정책이다. 규제정책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집행될 경우, 규제는 시장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구조적 환경을 마련해줌으로써 시장과 경제주체에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경제활동을 보장해줄 수 있다. 즉 제대로 작동하는 규제는 시장 역동성을 강화시켜 국가경쟁력이나 경제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Koedijk and Kremers, 1996).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일반적인 인식은 매우 부정적이다. 우선, 무엇보다 규제의 부정적 측면을 이론적·실증적으로 지적한 포획이론(capture theory)에 따르면 규제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규제기관과 소수의 피규제집단의 이익을 보호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다. 이런 이유로 Stigler(1971)는 규제는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정당화되지 못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Peltzman(1976)은 이익집단들이 자신들의 혜택을 위해 정치인들이나 규제기관을 통하여 규제를 만들거나 유지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자원은 사회후생손실(social deadweight loss)을 야기 시키고, 사회후생손실은 국가자원의 낭비와 자원배분의 왜곡을 가져오기 때문에 결국 규제는 국가경제 성장과 국가경쟁력과 반비례 관계에 놓여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규제가 만들어지는 정치적 과정과 그에 따른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지나친 정부의 개입은 그 자체로 기업으로 하여금 기업경영이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유인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외국기업들과의 경쟁에 노출되는 것과 같은 시장 환경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약화시켜,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생존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이와 같이 포획이론을 주축으로 한 규제의 부정적 영향에 관한 주장은 다양한 기업 · 산업 · 국제 수준의 실증연구를 통해 뒷받침되었고, 그 핵심적인 주장은 시장경쟁을 위축시키는 규제가 강화되거나 규제정책의 결정 · 집행을 담당하는 관료조직의 질(bureaucratic quality)이 떨어질 경우 해당 산업과 국가경제는 적지 않은 타격을 입는다는 것이다(Johnson et. al., 1998; van Stel et. al., 2004).

경쟁력에 대한 규제의 비효율성에 대해, Baumol과 Malkiel(1993)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의 정보공개(information disclosure) 규제는 미국 증권업계에 과중한 부담을 주어 외국 기업에 비해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하였다. 92개국을 대상으로 정부의 은행소유가 국가 금융발전과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La Porta외(2002)의 연구는 일인당 소득이 낮고, 금융시스템이 후진적이며, 정부의 시장개입이 많고 비효율적이며, 사유재산권의 보장이 적은 국가일수록 국가에 의한 은행소유 비율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 연구는 순환적으로 정부의 은행소유 비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일인당 국민소득과 생산성 향상이 저조해, 국가경쟁력에 부정적임을 암시하고 있다. 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한 Koedijk과 Kremers(1996)의 연구는 노동과 상품시장의 규제가 심할수록 국가의 경제생산성이 약화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규제의 경제적 비효율성 이외에 규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합리적인 측면을 연구한 Shleifer와 Vishny(1994)는 기업에 대한 진입장벽과 같은 규제는 정치인들과 관료들로 하여금 지대추구행위(rent-seeking behavior)를 강화시킨다고 주장하였다. 동일한 맥락에서 75개국의 기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분석한 Djankov 외(2000)의 연구도 정치인들과 관료들이 규제를 통해 얻는 효용을 밝히면서, 진입규제가 심한 국가일수록 부패와 비공식 경제(unofficial economies)가 커질 뿐만 아니라 공공재화나 사적 재화의 질도 결코 나아지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III. 국가경쟁력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1. 분석모델과 변수

규제가 OECD 국가들의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모델을 설정한다.

$$국가경쟁력_{i,t} = \alpha + \beta_i X_{i,t-1} + \gamma_j Z_{j,t-1} + e.$$

국제경쟁력에 관한 최근 선행연구가 국제 평가기관이 측정한 지수를 자주 인용하는 만큼(안국신, 2005; 전영서 · 차주영, 2001), 본 논문도 IMD에 의한 OECD 국가들의 2004년 국제경쟁력지수(World Competitiveness Index, WCI)를 종속변수로 사용한다. 2004년 IMD의 국가경쟁력 지수는 60개국을 상대로 측정한 평가항목 결과를 종합한 점수와 그 점수에 따른 순위를 발표하였다.[6] 이 중, 순위(ranking) 자료는 서열척도의 성격상 개별변수의 영향에 대해 의미 있는 해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등간척도인 개별 국가의 국가경쟁력 점수(scores)를 사용하기로 한다. 따라서 종속변수 '국가경쟁력i,t'은 t시점에서 OECD 회원국 i의 IMD 국가경쟁력 점수를 의미한다.

독립변수 중 Xi,t-1는 t-1시점에서 국가 i의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와 관련된 벡터를 의미하고, Zi,t-1는 t-1시점에서 국가 i의 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규제를 제외한 변수를 포괄하는 벡터를 의미한다. 특정 시점의 국가경쟁력은 그 이전 시점의 규제와 여타의 경제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본 논문의 종속변수는 2004년 자료를 이용하기 때문에 독립변수는 2003년 자료를 사용한다. 벡터 X와 Z는 연구자의 관심에 따라 포함되는 구체적인 변수가 달라질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X를 OECD 국가의 종합적인 규제 수준을 이용하여 기본모델로 삼는다. 그러나 X를 종합적인 규제수준으로 놓고 국가경쟁력을 분석할 경우, 다양한 규제 가운데 실질적으로 어떤 분야, 어떤 종류의

6)1979년 처음 측정된 IMD의 국제경쟁력지수는 개별 국가의 거시경제(macroeconomy), 공공부문(public sector), 기업부문(business)과 인프라(infrastructure)의 4분야를 각각 25%씩 가중치를 주어 경쟁력을 측정하고 있다. 60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4년도 측정에서는 323개의 세부항목을 조사하였고, 이중 WCI 산출에는 241개의 항목(통계자료에 기반한 129개 항목과 IMD 조사의 의한 112개 항목)이 포함되었다. IMD는 측정결과 가장 경쟁력이 높은 국가(2004년의 경우 미국)의 점수를 100으로 하여 다른 국가들의 점수를 내리는 방식으로 순위를 매기고 있다. 반면 WEF의 국가경쟁력 평가는 경제성장경쟁력 지수(Growth Competitiveness Index)와 기업경영경쟁력 지수(Business Competitiveness Index)로 구분하여 각각 3개 분야와 2개 분야로 세분하여 경쟁력을 측정하고 있다. 전자는 거시경제환경, 공공기관, 기술력을 포함하고, 후자는 기업경영전략 정교화와 국내기업 경영환경의 질이 포함된다. 이 두 기관에서 측정하는 경쟁력 지수들은 모두 정부의 역할과 행정의 효율성에 적지 않은 비중을 두고 있다. IMD와 WEF의 지수를 포함한 규제개혁 지수에 관한 세부적인 논의는 김태윤 · 양준석(2005), 안국신(2005), 이현재(2005), Lall(2001) 참조.

규제가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그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종합 규제수준을 먼저 분석한 후, 기본모델을 확대한 1차 확장모델에서는 X를 규제분야 별로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 기타 기업 활동과 관련된 규제로 분류하여 살펴본다. 그러나 1차 확장모델 역시 규제 분야별로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종합적인 영향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실제 규제개혁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위해 구체적인 함의를 제시하지 못한다. 이를 부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차 확장모델에서는 각 분야의 개별적인 규제정책을 독립변수에 포함하여 분석한다.

벡터 Z는 국가경쟁력에 관한 기존의 이론에서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변수 몇 가지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측정한다. 우선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자본과 노동의 영향은 소득과 노동생산성을 통해 추정한다. 이를 위해 일인당 GDP(GDP per capita)와 노동투입당 노동산출 비율을 대리지표로 사용한다. 전자 변수는 노동대비 자본의 비율을 반영하고(Barro, 1991), 후자의 변수는 노동생산성을 측정하는 지표다(Gardiner et. al., 2004). 정태적으로 특정한 시점에서 두 가지 변수가 크다는 것은 생산에 투입되는 자본의 규모와 노동생산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경제성장과 국가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국가의 기술개발 정도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 규모를 대리지표로 사용한다.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는 연구인력 공급 및 연구 활동 촉진을 위한 정부의 유인정책과 더불어 국가의 혁신능력(national innovative capacity)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이다(Porter et. al., 2000: 3). 따라서 이 변수는 국가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예측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지출의 규모가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GDP 대비 정부지출 규모를 독립변수에 포함시킨다(Barro, 1991). 정부지출의 규모는 민간부문 생산성과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 변수는 국가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이러한 변수들을 고려한 기본모델, 1차 확장모델 그리고 2차 확장모델은 다음과 같고, 이 모델에 사용된 변수의 정의와 출처 및 기술통계는 〈표 1〉에 정리되어 있다.

기본모델 :

$$\text{국가경쟁력}_{i,2004} = \alpha + \beta_1 \text{정부규제수준}_{i,2003} + \gamma_1 \text{일인당} GDP_{i,2003} + \gamma_2 \text{노동생산성}_{i,2003} + \gamma_3 \text{정부지출}_{i,2003} + \gamma_4 RD_{i,2003} + e.$$

1차 확장모델 :

$$\text{국가경쟁력}_{i,2004} = \alpha + \beta_1 \text{자본시장규제}_{i,2003} + \beta_2 \text{노동시장규제}_{i,2003} + \beta_3 \text{기업활동규제}_{i,2003} + \gamma_1 \text{일인당} GDP_{i,2003} + \gamma_2 \text{노동생산성}_{i,2003} + \gamma_3 \text{정부지출}_{i,2003} + \gamma_4 RD_{i,2003} + e.$$

2차 확장모델 :

$$\text{국가경쟁력}_{i,2004} = \alpha + \beta_1 \text{국내은행경쟁}_{i,2003} + \beta_2 \text{고용해고규제}_{i,2003} + \beta_3 \text{가격규제}_{i,2003} + \beta_4 \text{관료대응시간}_{i,2003} + \beta_5 \text{신규사업규제}_{i,2003} + \gamma_1 \text{일인당} GDP_{i,2003} + \gamma_2 \text{노동생산성}_{i,2003} + \gamma_3 \text{정부지출}_{i,2003} + \gamma_4 R\ D_{i,2003} + e.$$

<표 1> 변수의 정의, 출처 및 기술통계

변수	측정년도 및 정의
종속변수	
국제경쟁력 지수	2004년, 경제운영성, 정부행정효율, 발전인프라, 기업경영효율의 가중평균 (0~100점)
독립변수	
ln(일인당 GDP)	2003년, ln(일인당 GDP) (US$)
노동생산성(%)	2003년, $(\frac{\text{노동산출}}{\text{노동투입}}) \times 100$
GDP 대비 정부지출 규모(%)	2003년, $(\frac{\text{정부총지출}}{GDP}) \times 100$
GDP 대비 R&D 지출(%)	2003년, $(\frac{\text{정부 및 산업} R*D\text{총지출}}{GDP_{\&}}) \times 100$
정부규제 수준a	2003년, 자본시장, 노동시장, 기업규제에 대한 평균(0~10점)
자본시장규제 수준a	2003년, 민간은행의 예금수탁 비율, 국내은행의 경쟁 등의 항목 평균(0~10점)
노동시장규제 수준a	2003년, 최저임금제, 고용 · 해고에 대한 규제 등의 항목 평균(0~10점)
기업규제 수준a	2003년, 가격통제, 신규 사업에 대한 행정통제, 관료대응시간, 신규사업 용이성, 변칙비용의 수준 항목 평균(0~10점)
국내은행 경쟁 수준a	2003년, 외국은행의 국내진출 허용 및 국내은행 지분 소유 허용 정도(0~10점)
고용 및 해고 규제 수준a	2003년, 기업의 근로자 고용 · 해고 시 사적 계약에 의한 결정 정도(0~10점)
가격규제 수준a	2003년, 농산물, 공산품 등 주요 소비재에 대한 가격 통제의 정도(0~10점)
기업활동시 관료대응 시간수준a	2003년, 기업 관리자들이 정부 관료를 상대할 때 소요되는 시간(0~10점)
신규 사업 용이성a	2003년, 신규 사업 시작 용이성(0~10점)

자료출처	최대값	최소값	평균값	표준편차	N
종속변수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4	100.00	41.95	70.20	14.67	30
독립변수					
OECD, OECD Factbook 2006	10.90	8.85	10.09	0.44	30
	5.60	−1.10	1.79	1.55	30
OECD, OECD in Figures 2005	58.30	27.50	45.14	7.38	30
	3.98	0.39	1.81	0.94	30
Gwartney and Lawson, 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2005 Annual Report	7.90	5.10	6.44	0.79	30
	9.70	6.20	8.41	0.80	30
	7.00	2.80	4.99	1.15	30
	7.90	3.50	5.93	1.07	30
	10.00	5.30	7.57	1.28	30
	8.00	2.00	4.33	1.70	30
	10.00	1.00	5.90	1.93	30
	8.30	4.50	6.41	0.82	30
	8.30	3.20	5.80	1.47	30

주 : a 해당 분야의 규제가 강화될수록 0의 값을, 규제가 적을수록 10의 값을 갖음.

2. 분석결과

OECD 국가에서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변수들의 개별적인 영향력은 〈표 2〉에 요약되어 있다. 우선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가운데 규제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델의 형태와 관계없이 일인당 GDP(GDP per capita)와 R&D 지출의 규모는 국가경쟁력 지수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인당 GDP 변수의 회귀계수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할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도 규제변수를 포함한 모든 변수 중 가장 크다. 하지만 이 변수가 자연로그(natural log) 형태로 계산된 점을 감안한다면 일인당 GDP 증가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현실적합성이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을 예로 든다면, 2003년 한국의 ln(일인당 GDP)는 9.87(US$19,279)이었고, 2004년 한국의 IMD 경쟁력 점수는 62.20점(35위)이었다. 만일 다른 변수가 고정되었다고 가정하고 한국의 ln(일인당 GDP)가 0.5 상승하여 10.37이 된다고 가정하면, 한국의 국가경쟁력 점수는 덴마크의 ln(일인당 GDP)인 10.34에 근접하여 국가경쟁력 점수 84.38점(7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한국의 ln(일인당 GDP)가 0.5 상승하기 위해서는 일인당 GDP가 US$12,000이상 증가해야 가능하다.

<표 2> OECD 국가경쟁력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2004년 IMD 국가경쟁력 점수)

변수	기본모델		1차 확장모델		2차 확장모델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회귀계수	표준오차
상수	−159.08***	45.61	−145.11***	48.02	−147.38***	46.19
ln(일인당 GDP)	16.96***	4.64	14.69***	4.97	21.53***	4.52
노동생산성(%)	0.59	0.70	0.73	0.71	0.83	0.73
GDP 대비 정부지출 규모(%)	−0.09	0.15	−0.22	0.18	−0.32*	0.18
GDP 대비 R&D 지출(%)	3.71**	1.34	3.53**	1.53	2.73*	1.42
정부규제 수준	8.36***	1.62				
자본시장규제 수준			5.51**	2.54		
노동시장규제 수준			1.38	1.12		
기업규제 수준			2.65	2.08		
국내은행 경쟁 수준					−1.16	0.99
고용 및 해고 규제 수준					0.76	0.73

변수	기본모델		1차 확장모델		2차 확장모델	
	회귀계수	표준 오차	회귀계수	표준 오차	회귀계수	표준 오차
가격규제 수준					2.29**	0.85
기업활동시 관료대응 시간 수준					-1.97	1.51
신규 사업 용이성					2.15*	1.12
N	30		30		30	
Adj. R2	0.81		0.81		0.82	

***, **, *는 각각 0.01, 0.5, 0.1의 수준에서 유의함.

둘째, R&D 지출 규모는 GDP 대비 그 규모가 1% 증가할 때 국가경쟁력 지수는 모델에 따라 2.73점에서 3.71점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일 다른 변수의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고 한국의 R&D 규모가 GDP 대비 1% 상승할 때, 한국의 국가경쟁력 점수는 기본모델을 적용할 경우 62.20점에서 65.91점으로 높아져 스페인의 경쟁력 점수(67.41점, 31위)에 다소 미치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한국이 R&D 지출증가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92.2억 달러의 추가적인 지출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결과는 일인당 GDP 변수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가경쟁력 향상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할 수 있다.

셋째, 노동생산성의 회귀계수는 매우 작을 뿐만 아니라 분석에 사용된 3가지 모델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한 GDP 대비 정부지출 규모 회귀계수는 모든 모델에서 음의 값을 가져 정부지출 확대는 경제성장과 국가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Barro(1991)의 연구 결과와 다르지 않지만, 2차 확장모델을 제외하고는 통계적 유의미성이 발견되지 않았다. 2차 확장 모델은 GDP 대비 정부지출이 1% 증가할 때, 국가경쟁력 지수는 0.32점 감소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규제와 관련된 변수들이 국가경쟁력 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첫째, 국가의 규제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한 정부규제 수준 변수를 사용한 기본모델에서 이 변수의 회귀계수는 통계적인 유의미하며, 그 영향의 정도가 다른 변수들에 비해 상당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다른 변수가 고정되어 있고 정부규제의 수준이 1단위 올라갈 때, 즉 전체적으로 규제의 정도가 약화될 경우, 국가경쟁력 지수는 8.36점 상승하게 된다. 만일 한국의 종합적인 규제수준이 1단위 향상될 경우 IMD의 국가경쟁력 점수는 62.20점에서 70.56점으로 향상되어, 벨기에(70.32점, 25위) 수준의 국가경쟁력을

갖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변수의 해석과 관련되어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해야 한다. 종합적인 정부규제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Fraser Institute는 시장경쟁을 제약하거나 시장에서 자발적인 거래를 제한하는 것과 같이 궁극적으로 시장의 경제적 자유를 약화시키는 정부의 다양한 규제정책을 고려하여 지수를 산정하였다. 이를 위해 규제분야를 세 가지(자본시장 규제, 노동시장 규제, 일반 기업 규제)로 구분하고, 다시 각 분야를 5개의 구체적인 규제 · 개입정책으로 세분화하여 총 15개의 하위항목 지표를 합한 값을 평균하여 '종합적인 정부규제 수준'을 계산하였다.[7] 따라서 종합적인 정부규제 수준의 1단위 상승은 규제완화와 관련된 복합적인 맥락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둘째, 기본모델의 종합 규제수준을 자본시장, 노동시장, 일반 기업 등의 분야 별 규제로 나누어 살펴본 1차 확장모델에서는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가 OECD 국가경쟁력 지수에 영향을 미치고, 노동시장과 일반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의 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분야별 규제와 관련해서 자본시장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고 경쟁 요인이 도입되어 자본시장 규제 수준이 1단위 올라갈 때 국가경쟁력은 5.51점 상승하게 된다. 한국의 경우 정부에 의한 자본시장의 개입정도가 줄어들어 자본시장규제 변수 값이 1단위 높아지면 한국의 국가경쟁력 지수는 프랑스(67.67점, 30위)를 약간 상회하게 된다. 분야별 규제수준을 측정한 이 변수들의 산술평균이 이전의 '종합 규제수준'을 구성하지만, 이 세 분야 역시 5개의 하위항목의 단순평균을 통해 계산되는 만큼 이 변수의 1단위 상승도 여러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하자면, 자본시장 규제를 구성하는 5개의 하위항목 중 '민간은행의 소유지분 비율(총 국내예금 중 민간은행에 의한 예금수탁율)'의 점수가 5점 올라갈 경우(예컨대 민간은행의 예금수탁 비율이 75%에서 95%로 높아질 경우), 그 국가의 자본시장 규제 수준은 1단위 높아지게 된다.

셋째, 2차 확장모델은 구체적인 규제정책을 고려하였다. 1차 확장모델의 자본시장 규제는 국내은행의 경쟁 정도로 대신하였고, 노동시장 규제는 고용 및 해고의 신축성으로 대신하였다. 기업규제는 ①가격규제의 정도, ②기업의 관리자들이 기업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정부 관료들을 대응해야 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시간, 그리고 ③기업이 신규로

7)Fraser Institute는 15개 하위항목에 0에서 10까지의 점수를 부여하였다. 규제분야별 지표는 해당 하위항목 5개의 단순평균을 통해 계산하였고, 이를 종합하는 정부규제 수준 지표는 세 규제분야 지표의 단순평균을 통해 산출되었다. 세부항목별 혹은 규제분야별 가중치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평균을 사용한 이유에 대해 Gwartney와 Lawson(2005: 28)은 가중치를 부여한 여러 방법을 사용해 보았지만, 각 국가의 점수나 순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아 오히려 가장 단순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 같은 단순평균 계산은 모든 하위항목과 분야별 규제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Gwartney와 Lawson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사업을 할 경우 얼마나 용이한가로 세분화하여 살펴보았다. 규제분야별 포괄적 지표를 사용한 1차 확장모델과는 달리 구체적인 규제정책을 포함시킬 경우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직접적인 정책적 제언이 가능하게 된다. 2차 확장모델의 분석결과 국가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정책은 기업규제 변수 중 가격규제와 신규 사업 용이성으로 파악되었다. 1980년에서 1994년까지 유럽 국가들의 경제성장률과 규제수준을 분석한 Koedijk과 Kremers(1996)의 연구도 이와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기업설립의 자유의 제한, 경쟁 및 기업합병 통제, 영업시간 규제를 통합한 상품시장 규제(product market regulations)가 심한 국가일수록 경제성과와 국가경쟁력은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2차 확장모델 결과를 바탕으로, 가격규제의 수준과 신규 사업의 용이성 변수가 1단위 높아질 경우, 즉 이 부분에서 정부개입 정도가 낮아질 경우, OECD 국가의 평균 경쟁력은 각각 2.29점과 2.15점 향상된다고 예측할 수 있다. 예컨대 Fraser Institute는 2003년 한국의 가격규제 점수를 1점 부여하였는데, 이는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에 의한 가격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8] 따라서 만일 다른 변수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국 정부의 가격규제 정책이 일부 완화되어 에너지와 농산품 그리고 주요 가계 소비 상품에 대한 가격통제만 이루어진다고 해도 한국의 국가경쟁력 지수는 3점이 추가로 상승하게 된다. 그렇게 될 경우, 한국의 국가경쟁력 지수는 62.20점에서 69.07점으로 높아져, OECD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벨기에(70.32점)와 프랑스(67.67) 사이에 위치하게 된다.

국가경쟁력 결정요인에 관한 이 같은 분석결과는 OECD 회원국들에게 규제개혁의 상대적 중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비록 최근에 OECD 국가들에서 정부의 시장개입이 점차 줄어들고 있고, 특히 시장에 대한 제약이 많았던 국가들이 규제를 완화시키면서 국가간 규제수준이 수렴(convergence)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평가도 있지만(Conway et. al, 2005), 〈그림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국가경쟁력이 높은 국가와 낮은 국가 사이에 아직도 규제의 간극(regulatory gap)이 상당하게 존재하고 있다.[9] 규제에 대한 Fraser Institute의 측정결과를 볼 때 한국의 경우도 종합적인 정부규제 수준(5.30점), 자본시장규제 수준(7.40점), 가격규제 수준(1.00점), 신규 사업의 용이성(5.20점)에서 모두 OECD 국가들의 평균(각각 6.44점, 8.41점, 5.90점, 5.80점)에 밑돌고 있어, 아직도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규제개혁의 여지를 많이 남겨두고 있는 형편이다.

8)가격규제 점수는 가격통제가 없을 경우 10점을 부여되고,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는 자연독점 산업에 제한적으로 가격규제가 이루어질 경우 8점을, 자연독점 산업이외 농업분야 등 예외적 산업에 대한 가격통제가 있을 경우는 6점, 에너지, 농업 그리고 가계에서 소비하는 주요상품에 대한 가격통제가 이루어질 경우 4점, 농산품과 공산품에 대한 가격통제가 있을 경우 2점, 그리고 다수의 경제 영역에서 가격통제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경우는 0점이 부여된다.

9)〈그림 1〉의 OECD 국가의 국가경쟁력 점수와 종합적인 정부규제 수준, 자본시장규제 수준, 가격규제 수준 그리고 신규 사업의 용이성과의 상관관계지수(correlation coefficients)는 각각 0.82, 0.76, 0.61, 0.74이며 모두 0.01의 유의수준에서 유의미하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인당 GDP나 국가의 R&D 투자와 같은 전통적인 요인의 상승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상당한 재원의 투자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현실적합성이 높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규제개혁을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은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규제개혁시스템을 잘 정비하여 활용한다면 그 성과를 얻는 일이 결코 어려운 일만은 아니다.[10] 또한 정부가 시장에서 불필요한 개입을 축소하여 남는 인력과 예산을 다른 필요한 부분에 사용한다면 규제이외의 전반적인 공공부문의 경쟁력이 개선될 수 있는 부가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 OECD 국가의 IMD 국가경쟁력 점수와 규제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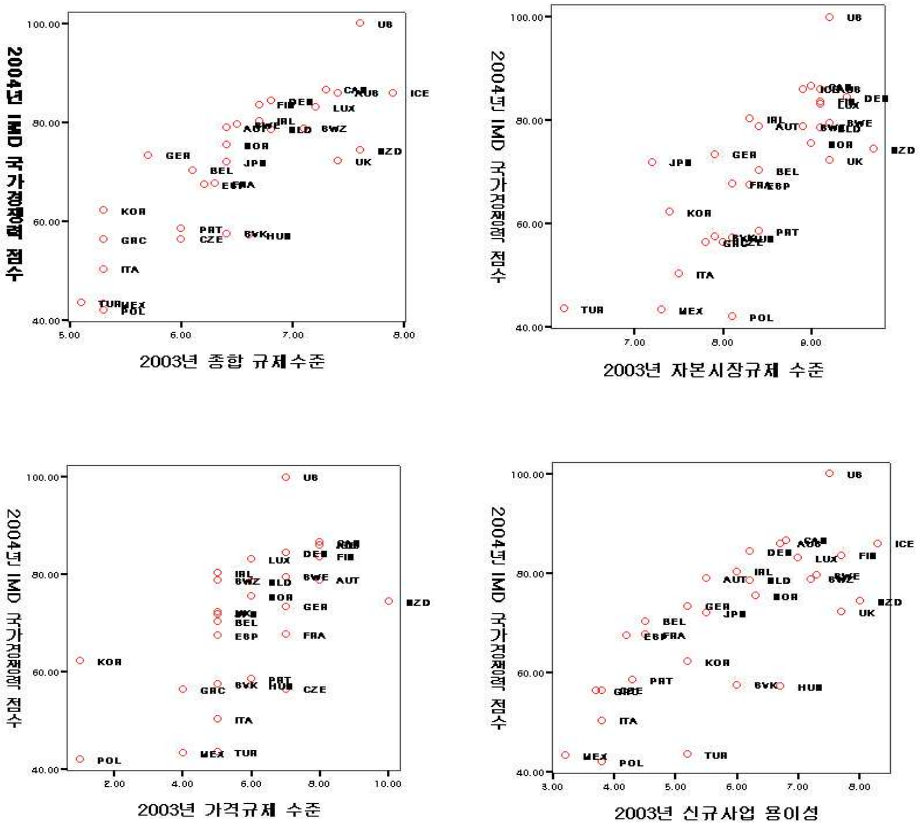

10)노무현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평가와 규제개혁 과정에서의 문제점 그리고 그 대안에 관해서는 이주선(2006) 참조.

IV. 결론 및 연구의 함의

이 논문은 전통적인 경제적 요인들과 함께 정부의 규제가 OECD 국가들의 경쟁력에 과연 영향을 미치는지, 만일 그렇다면 그 영향력은 어느 정도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하였다. 일정 정도의 경제규모를 갖춘 국가들이 모여 있는 OECD 회원국들 간에도 국가경쟁력의 편차는 상당히 벌어져 있다. 2004년 IMD의 국가경쟁력 조사결과는 OECD 국가 가운데 미국이 1위로 평가되어 경쟁력 점수로 100점을 받은 반면, 폴란드는 41.95점으로 조사대상 60개국 가운데 57위를 기록하여 OECD 국가 중 최하위의 순위에 놓여있다. 한국은 62.20점으로 전체에서 35위, OECD 국가에서는 21위로 중하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신인도나 해외자본 유치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은 비(非) OECD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OECD 회원국을 포함한 거의 모든 국가의 관심사일 정도로 중요한 문제이다.

국가경쟁력을 결정짓는 전통적인 변수들과 최근 들어 주목을 끌기 시작한 정부규제 변수들을 고려한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일인당 GDP, R&D 지출규모와 더불어 정부규제의 수준이 IMD의 국가경쟁력 지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규제의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결과는 정부가 경쟁제한적인 정책을 완화·폐지하고, 친시장적(market-friendly)인 정책을 사용할 때 국가경쟁력은 향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규제분야 가운데 자본시장 분야에 대한 규제가 영향을 미치고, 구체적인 개별규제의 수준에서는 정부의 가격에 대한 규제와 새로운 사업 진출에 대한 규제가 상대적으로 국가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규제 개혁의 필요성과 동시에 우선적으로 개혁되어야 규제분야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한국을 포함한 국가경쟁력이 낮은 OECD 국가들은 이러한 사실에 주목하고 규제개혁의 방향과 폭에 대해 정책적 고민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규제개혁의 문제를 풀어내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규제개혁을 둘러싼 이해당사자들(예컨대 정부, 기업, 근로자, 소비자, 시민단체 등)이 규제정책을 통해 추구하는 목적과 이해관계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규제정책이 가져다줄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국가지도자와 정책결정자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정치적 이념과 규제정책이 결정·집행되는 과정까지 감안한다면 규제개혁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다. 한국의 경우도 비록 규제완화와 개혁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어느 정도 다져져 있지만, 규제개혁의 결과에 대해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평가를 받고 있는 형편이다(김태윤·양준석, 2005; 이주선, 2006). 최근 몇 년간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고, 향상되었다고 해도 만족스럽지 못한 이유 가운데 중요한 원인이 국가에 의한 지나친 시장개입에 있다는 점은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도 규제개혁을 중요한 국가의제로 삼고 있는 만큼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여 개혁을 시도한다면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참고문헌〉

· 국무조정실, 「참여정부 규제개혁 추진성과 및 향후 과제」, 규제개혁추진보고회의자료, 2005.12.5.
· 김태윤 · 양준석, 「규제개혁 국제지수의 개발」, 「규제연구」 14(2), 2005.
· 안국신, 「우리나라 정부의 국가경쟁력정책: 문제점과 대안」, 「경제학연구」 53(4), 2005.
· 이승훈, 「기업경쟁력 강화–무엇이 문제인가?」, 「경제학연구」 53(1), 2005.
· 이주선, 「참여정부 규제개혁의 중간평가」, 2006년 한국규제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6.
· 이현재, 「패널자료에 의한 생산성과 국가경쟁력 비교분석: IMD 및 WEF지수를 중심으로」, 「생산성논집」 19(3), 2005.
· 전영서 · 차주영, 「국제경쟁력의 결정요인 및 국가경쟁력과의 상관관계」, 「생산조직연구」 9(3), 2001.
· 조선일보, 2006년 2월 9일.
· 중앙일보, 2005년 9월 28일.
· Barro, Robert, 'Economic Growth in a Cross Section of Countrie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6(2), 1991.
· Baumol, William J., and Burton G. Malkiel, 'Redundant Regulation of Foreign Security Trading and U.S. Competitiveness,' Journal of Applied Corporate Finance 5(4), 1993.
· Conway, Paul, V ronique Janod, and Giuseppe Nicolette, 'Product Market
· Regulation in OECD Countries: 1998 to 2003,' OECD Economic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419, 2005.
· Djankov, S., R. La Porta, F. Lopez-de-Silanes, and A. Shleifer, 'The Regulation of Entry,' Harvard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Discussion Paper No. 1904, 2000.
· Fagerberg, Jan,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Economic Journal 98(391), 1988.
· Gardiner, Ben, Ron Martin and Peter Tyler, 'Competition, Productivity and Economic Growth across the European Regions,' paper presented at Regional Productivity Forum Seminar, Regional Studies Association, London, U.K., January 2004.
· Gwartney, James, and Robert Lawson, 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2005 Annual Report, Vancouver: Fraser Institute, 2005.

·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4, Lausanne: IMD, 2004.
· Johnson, Simon, Daniel Kaufman, and Pablo Zoido-Lobat n, 'Regulatory Discretion and the Unofficial Economy,' American Economic Review 88(2), 1998.
· Kaufmann, Daniel, Aart Kraay, and Massimo Mastruzzi, Governance Matters III: Governance Indicators for 1996-2002, Washington, D.C.: World Bank, 2003.
· Koedijk, Kees, and Jeroen Kremers, 'Market Opening, Regulation and Growth in Europe,' Economic Policy 11(23), 1996.
· Krugman, Paul, 'Competitiveness: A Dangerous Obsession,' Foreign Affairs 73(2), 1994.
· La Porta, Rafael, Florencio Lopez-De-Silanes, and Andrei Schleifer, "Government Ownership of Banks," Journal of Finance 57(1), 2002.
· Lall, Sanjaya, 'Comparing National Competitivenss Performance: A Economic Analysis of World Economic Forum's Competitiveness Index,' QEH Working Paper No. 61, January 2001.
· Laursen Keld, and Valentina Meliciani, 'The Relative Importance of International vis-a-vis National Technological Spillovers for Market Share Dynamics,' Industrial and Corporate Change 11(4), 2002.
· McArthur, J. W., and Jeffrey Sachs, 'The Growth Competitiveness Index: Measuring Technical Advancement and the Stages of Development,' in Michael E. Porter, Jeffrey Sachs, P. K. Cornelius, J. W. McArthur, and K.Schwab (eds.),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 Nkurunziza, Janvier D., and Robert H. Bates, 'Political Institutions and Economic Growth in Africa,' Center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ID) Working Paper No. 98, Harvard University, March 2003.
· OECD, OECD Factbook 2006, Paris: OECD, 2006.
· OECD, OECD in Figures 2005, Paris: OECD, 2005.
· OECD, Technology and the Economy: The Key Relationships, Paris: OECD, 1992.
· Peltzman, Sam, 'Towards a General Theory of Regulation,'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19(2), 1976.
· Porter, M. E., and C. H. M. Ketels, UK Competitiveness: Moving to the Next Stage, DTI Economics Paper 3, London: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2003.
· Porter, Michael E., 'The Comparative Advantage of Nations,' Harvard Business Review 68, 1990.
· Porter, Michael E., Jeffrey L. Furman, and Scott Stern, 'The Drivers of National Innovative Capacity: Implications for Spain and Latin America,' mimeo, May 2000.

· Schumpeter, Joseph,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London: Unwin University Books, 1943.
· Shleifer, A., and R. Vishny, 'Politicians and Firm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9, 1994.
· Stigler, George J., 'The Theory of Economic Regulation,' Bell Journal of Economics and Management Science 2, 1971.
· Tyson, Laura D'Andrea, Who's Bashing Whom: Trade Conflict in High-Technology Industries, Washingt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1992.
· van Stel, Andr , Martin Carree, and Roy Thurik, The Effect of Entrepreneurship on National Economic Growth: An Analysis of Using the GEM Database, SCALES-paper N200320, February 2004.

부 록

제 1절 규제개혁 관련 법령 등
제 2절 규제개혁위원회 개최일지

제1절 규제개혁 관련 법령 등

가. 행정규제기본법

- 제　　정 1997. 8.22 법률 5368호
- 일부개정 1998. 2.28 법률 5529호
- 일부개정 2005.12.29 법률 7797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 · 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 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 또는 조례 · 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5 · 12 · 29〉
2. '법령 등'이라 함은 법률 · 대통령령 · 총리령 · 부령과 그 위임에 의하여 정하여진 고시 등을 말한다.
3. '기존규제'라 함은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규정된 규제와 이 법 시행후 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규정된 규제를 말한다.
4. '행정기관'이라 함은 법령 등 또는 조례 · 규칙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는 기관과 동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 ·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5. '규제영향분석'이라 함은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 · 경제 · 행정 등에 미치는 제반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 · 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규제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규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 12 · 29〉

1. 국회 · 법원 · 헌법재판소 ·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행하는 사무
2. 형사 · 행형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3. 「국가정보원법」에 의한 정보 ·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4. 「병역법」 · 「통합방위법」 · 「향토예비군설치법」 · 「민방위기본법」 ·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징집 · 소집 · 동원 · 훈련에 관한 사항
5. 군사시설 · 군사기밀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6. 조세의 종목 · 세율 ·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이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 · 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규제법정주의)

①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②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 · 총리령 · 부령 또는 조례 ·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 전문적 · 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제5조 (규제의 원칙)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규제를 정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 · 인권 · 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와 식품 · 의약품의 안전을 위한 규제를 실효성 있게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 · 12 · 29〉
③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 · 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제6조 (규제의 등록 및 공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규제의 명칭 · 내용 · 근거 · 처리기관등을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규제사무목록을 작성하여 공표하고, 매년 6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 · 12 · 29〉
③ 위원회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등록하게 하거나 당해 규제를 폐지하는 법령 등의 정비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5 · 12 · 29〉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의 등록 · 공표의 방법과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규제의 신설 · 강화에 대한 원칙과 심사

제7조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3.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여부
4. 규제의 시행에 따라 규제를 받는 집단 및 국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5. 경쟁제한적 요소의 포함여부
6. 규제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7.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행정기구 · 인력 및 예산의 소요
8.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 · 처리절차등의 적정여부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서를 입법예고기간 동안 국민

에게 공표하여야 하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보완하며,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5 · 12 · 29〉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 · 범위 · 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5 · 12 · 29〉

④ 규제영향분석의 방법 · 절차와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 및 공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 · 12 · 29〉

제8조 (규제의 존속기한 명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할 때에 계속하여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에 대하여는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당해 법령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규제의 존속기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당해 규제의 존속기한이 도래하기 6월 전까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 · 12 · 29〉

④ 위원회는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규제의 존속기한을 설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 규정된 규제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당해 규제의 존속기한이 도래하기 3월 전까지 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 · 12 · 29〉

제9조 (의견수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행정상 입법예고 등의 방법으로 행정기관 · 민간단체 · 이해관계인 · 연구기관 ·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제10조 (심사요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안에 대하여는 법제처에 법령안 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규제안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서
2.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의견
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 · 이해관계인등의 제출의견 요지

③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심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법령에 대한 규제정비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5 · 12 · 29〉

제11조 (예비심사)

① 위원회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규제가 국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 · 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받아야 할 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한다)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중요규제가 아니라고 결정한 규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심사)

① 위원회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규제라고 결정한 규제에 대하여는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차에 한하여 15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자체심사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에 의하여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0조제2항 각호의 첨부서류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후단 신설 2005 · 12 · 29〉

④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긴급한 규제의 신설 · 강화 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긴급하게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7조 · 제8조제3항 · 제9조 및 제10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요청된 규제의 긴급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한 때에는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타당성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위원회에 규제영향분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요청된 규제의 긴급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때에는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7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개선권고)

① 위원회는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재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요청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재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4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6조 (심사절차의 준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제처장에게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를 포함하는 법령안의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당해 규제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법령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장 기존규제의 정비

제17조 (의견제출)

① 누구든지 위원회에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이하 '정비'라 한다)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기존규제의 심사)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1.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로부터 기존규제의 정비에 관한 사항을 이송받은 경우
3. 기타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제1항의 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9조 (기존규제의 자체정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기존규제에 대하여 이해관계인 ·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비가 필요한 규제를 선정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① 위원회는 매년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 또는 특정한 기존규제를 선정하여 기존규제의 정비지침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비지침에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정비의 기한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 · 12 · 29〉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지침에 따라 당해 기관의 규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별 규제정비계획을 종합하여 정부의 규제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 후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 12 · 29〉

④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 공표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시행)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 · 공표된 정부의 규제정비종합계획에 의하여 소관 기존규제를 정비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0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정비의 기한을 정하여 통보한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하여는 그 기한내에 정비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정한 기한내에 정비를 완료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회에 당해 기존규제의 정비계획을 제출하고, 정비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 (조직정비등)

① 위원회는 기존규제가 정비된 경우 정부의 조직 및 예산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존규제의 정비에 따른 정부의 조직 또는 예산의 합리화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장 규제개혁위원회

제23조 (설치)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 · 조정하고 규제의 심사 · 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

제2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 조정한다.

1.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 · 발전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 · 강화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 시행에 관한 사항
4. 규제의 등록 · 공표에 관한 사항
5.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개선실태에 대한 점검 · 평가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 ·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5 · 12 · 29〉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국무총리가 아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무총리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 (의결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 (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28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 · 의결한 것은 위원회가 심의 · 의결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5 · 12 · 29〉

제29조 (전문위원 등)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 · 연구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전문위원과 필요한 조사요원을 둘 수 있다.

제30조 (조사 및 의견청취등)

① 위원회는 제24조에 의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 · 서류등의 제출 요구
2. 이해관계인 · 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3. 관계 행정기관등에 대한 실지조사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심사등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31조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무기구를 둔다.

② 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사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32조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의제)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 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33조 (조직 및 운영)

이 법에 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조직 ·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 칙

제34조 (규제개선 점검 · 평가)

① 위원회는 효과적인 규제의 개선을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운영실태와 개선사항을 확인 · 점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 점검 결과를 평가하여 국무회의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 점검 및 평가를 객관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등에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 점검 및 평가 결과 규제개선에 소극적이거나 이행상태가 부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에게 이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35조 (규제개혁백서)

위원회는 매년 정부의 주요 규제개혁 추진상황에 관한 백서를 발간하여 국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제36조 (행정지원 등)
국무조정실장은 규제관련제도를 연구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8 · 2 · 28, 2005 · 12 · 29〉

제37조 (공무원의 책임 등)
① 공무원이 규제개선업무를 능동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당해 공무원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불이익한 처분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개선업무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 인사상 우대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제5368호,1997 · 8 · 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법률 제4735호 행정규제관리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법 시행당시 기존규제의 자체정비에 대한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시행후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규제의 자체정비에 갈음하여 이 법 시행당시 모든 소관 규제에 대한 연차별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정비계획 및 그 시행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훈령 · 고시등의 재검토)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후 1년이내에 이 법 시행당시 시행중인 훈령 · 예규 · 지침 · 고시등에 규정된 규제에 대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또는 조례 · 규칙에 근거하였는지 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토 결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또는 조례 · 규칙에 근거하지 아니한 훈령 · 예규 · 지침 · 고시 등에 규정된 이를 지체없이 폐지하거나 관계법령 또는 조례 · 규칙에 그 근거를 정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3조 중 '다른 법령의 규정'을 '다른 법령(행정규제기본법을 제외한다)의 규정'으로 한다.
2. 제42조 중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미리 통상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로 한다.
3. 제62조제3호 중 '제정 또는 개정'을 '개정'으로 하고, 동조제5호 중 '행정규제'를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조사 · 심사사항중 행정규제에 관한 법령 ·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은 미리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개혁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규제개혁위원회는 당해 사항에 대하여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지체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사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지체없이 관련자료와 함께 규제개혁위원회에 이송하여야 한다.

부 칙(정부조직법) 〈제5529호,1998 · 2 · 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행정규제기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중 '총무처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⑥내지 〈34〉 생략
제6조 및 제7조 생략

부 칙 〈제7797호, 2005 · 12 · 29〉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 제정 1998.2.24 대통령령 제15,681호
■ 개정 2006.3.31 대통령령 제19,436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정규제의 범위 등)
①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규제(이하 '규제'라 한다)의 구체적 범위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법령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으로 한다.
1.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시험·검사·검정·확인·증명 등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2. 허가취소·영업정지·등록말소·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과태료부과·과징금부과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3.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공급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금지 기타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4.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② 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고시 등'이라 함은 훈령·예규·고시 및 공고를 말한다.

제4조(규제의 등록방법 및 절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당해 규제에 관한 법령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30일이내에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규제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명칭
2. 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
3. 규제의 처리기관
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법령 등의 내용
5. 규제를 규정한 법령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
6. 규제의 존속기한
7. 기타 위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등록에 필요한 등록단위 및 등록서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를 위원회에 등록하게 하거나 법령등의 정비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규제사무목록의 공표)

위원회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별 규제사무목록 또는 그 변경된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2장 규제의 신설 · 강화에 대한 심사

제6조(규제영향분석의 평가요소 등)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영향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계량화된 자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의 계량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술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규제영향분석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법예고기간 동안 공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제영향분석서에는 그 작성에 관여한 국장 · 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자체심사의 기준 및 절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심사를 한 경우에는 자체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지침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의견수렴의 절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행정상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9조(첨부서류의 보완)
① 위원회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서류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완하여야 할 사항과 기한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서류의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기한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개선권고 등)
① 위원회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
4.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한내에 위원회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재심사의 요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한내에 재심사의 대상이 된 규제의 내용과 재심사요청의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3장 기존규제의 정비

제12조(의견제출의 방법 등)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이하 '정비'라 한다)에 관한 의견제출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서면 · 모사전송 · 전자우편 · 구술 ·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의견제출자의 성명 · 주소
2. 규제의 내용 · 문제점 및 정비방안
3. 기타 참고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의견의 원활한 접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급 행정기관 · 공공단체 · 민간단체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13조(기존규제의 자체정비결과 통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존규제에 대한 전년도의 자체정비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절차)

① 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기존규제의 정비지침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규제정비의 기본방향
2. 기존규제의 정비기준
3.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 또는 특정한 기존규제
4. 기타 위원회가 기존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그 연도의 규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 기관의 규제정비 기본방향
2. 위원회가 선정한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에 대한 조치계획
3. 위원회가 선정한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조치계획
4.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제15조(규제정비종합계획의 공표)

위원회는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정부의 규제정비종합계획을 2월말까지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규제정비종합계획의 추진실적 통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추진실적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규제개혁위원회

제17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5조제3항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변호사 ·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3. 사회 · 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1급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
5. 기타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법 제2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재정경제부장관 · 행정자치부장관 · 산업자원부장관 · 국무조정실장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및 법제처장을 말한다.
③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간사로 지명된 위원은 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의 총괄
2. 2이상의 분과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의 소관조정
3.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

제1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이를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0조(위원의 회피)
위원장 또는 위원이 공정한 심의 · 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 · 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21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5개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검토 · 조정
2.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 · 연구
3. 기타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④ 분과위원회의 구성, 분과위원장의 임명 기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전문위원 등)
①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은 관계 공무원 또는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다른 위원장과 협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3조(관계 행정기관의 설명요구 등)
위원회는 법 제3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설명 또는 자료 ·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제출기한을 명시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24조(이해관계인 등의 출석요구 등)
① 위원회는 법 제3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인 · 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 · 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 · 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25조(실지조사)

① 위원회는 법 제3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목적, 조사일시, 조사장소 및 조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조사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6조(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통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인적사항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및 그 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연구기관이 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사사항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8조(수당 등)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과 전문위원 · 조사요원 · 이해관계인 · 참고인 및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간사인 위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 · 여비 기타 경비외에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장 보 칙

제30조(규제개선의 점검 · 평가 등)

① 위원회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운영실태와 개선사항을 확인 ·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관계 행정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확인 · 점검사항
2. 확인 · 점검일정
3. 확인 · 점검자 인적사항

② 위원회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운영실태와 개선사항을 확인 ·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소속 직원과 관계 행정기관소속 공무원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 · 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전문기관 등에 여론조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1조(규제개혁백서의 발간 및 공표)

위원회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규제개혁백서를 발간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1. 전년도말 현재 정부의 규제현황
2. 전년도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실적 및 그 평가
3. 기타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부 칙〈1998.2.24 대통령령 제15,681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은 199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규제기본법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법률 제5368호 행정규제기본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 제7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은 199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폐지)

행정규제관리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4조(고시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의 규제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법령 또는 조례 · 규칙의 위임에 의하여 규제에 관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법령 · 조례 · 규칙 · 훈령 · 예규 · 고시 또는 공고의 형식이 아닌 것은 이 영 시행후 1년이내에 법령 · 조례 · 규칙이나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훈령 · 예규 · 고시 또는 공고로 변경하여야 한다.

제5조(규제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시행 당시의 모든 소관 기존규제를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날부터 90일이내에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법 시행 당시 기존규제의 자체정비에 대한 특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가 정한 기한내에 소관 기존규제에 대한 연차별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차별정비계획은 1년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연차별정비계획에 다음 각호의 규제에 대한 정비계획을 우선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1. 행정 및 사회환경에 비추어 존속시킬 필요성이 없어진 규제
2. 법 시행일전 5년간 개정되지 아니한 규제
3. 다른 규제와 중복 또는 경합되는 규제
4. 시행과정에서 효율성이 저하된 규제
5. 기타 정비의 시급성이 인정되는 규제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차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시행일이 속하는 해부터 법 시행후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의 연차별정비계획의 시행결과를 그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2006.3.31 대통령령 제19,436호〉

이 영은 200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

■ (2000.5.15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의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위원회의 운영

제2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정기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을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3조(의안의 제출)
① 의안은 위원장, 분과위원회 위원장 또는 위원 3인이상의 동의로 제출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개혁과 관련한 의안을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제출할 수 있다.

제4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 비치하여야 한다.

제3장 분과위원회의 구성 · 운영

제5조(구성)
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는 다음과 같은 3개 분과위원회를 둔다
1. 경제1분과위원회
2. 경제2분과위원회
3. 행정사회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위원장 1인과 약간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29조에 의한 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을 소관 분야별로 분과위원회에 배치한다.

제6조(소관)

① 경제1분과위원회는 재정경제 · 건설교통 · 산업자원 · 공정거래 · 금융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② 경제2분과위원회는 정보통신 · 과학기술 · 해양수산 · 농림 · 환경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③ 행정사회분과위원회는 행정자치 · 외교통상 · 통일 · 국방 · 법무 · 복지 · 교육 · 노동 · 문화관광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④ 분과위원회별 소관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간사위원이 소관사항을 조정한다.

제7조(회의)

①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나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당해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분과위원회 회의시 정부위원의 경우 국장급 이상의 관계공무원을 대리출석 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출석 한 공무원은 의결권한을 가진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공익보호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심의안건과 관련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소속공무원과 이해관계인 등은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분과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대한 심의결과 및 기타 활동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 · 의결)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는 분과위원회의 심의 · 의결로써 위원회의 심의 · 의결로 본다.

1. 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중요규제 여부의 결정
2. 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규제의 긴급성 인정여부의 결정
3. 기타 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에 심의 · 의결토록 위임한 사항

제9조(회의록)

분과위원회는 기록보존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 · 비치하여야 한다.

제4장 사무기구

제10조(조직)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기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의 사무처리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조정관실이 수행한다.

제11조(규제개혁조정관실의 직무)
규제개혁조정관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의 준비 · 작성 · 배부 및 심의결과의 정리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 · 조정사항
3. 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무 · 인사 · 회계 등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4. 확정된 과제의 추진상황 점검 · 평가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임하는 사항

제12조(심의안건 설명)
규제개혁조정관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안건과 관련된 사항에 관해 설명할 수 있다.

제5장 전문위원 · 조사요원 및 전문 연구기관 등

제13조(전문위원 · 조사요원의 구성 등)
① 전문위원은 각 분과위원회에 소속되며,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근무한다.
② 전문위원은 소속 분과위원회의 소관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 · 연구,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조사요원은 소속 분과위원회의 소관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에 관하여 전문위원을 보좌한다.

제14조(공정위에 조사 · 연구 의뢰)
① 위원장은 경제규제개혁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에 구체적인 범위를 지정하여 전문적인 조사 · 연구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 ·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의 규제개혁작업단은 위원회의 사무기구의 일부로 본다.

제15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① 위원장은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전문적인 심사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심사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 · 연구업무를 의뢰할 수 잇다.

③ 제2항의 조사 및 연구업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용역비를 지급하며, 용역비의 지급기준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관계행정기관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행정기관 또는 연구기관 · 단체 등의 장과 협의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17조(위임)

이 운영세칙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수당 등의 지급기준)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과 전문위원 · 조사요원 · 이해관계인 · 참고인 및 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수당 ·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의 지급기준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운영세칙은 2000.5.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절 규제개혁위원회 개최일지

가. 규제개혁위원회

차 수	부처명	호수	상정안건	안건 구분	회의결과			
					원안의결	개선권고	철회권고	계
제162차 ('06.1.20)	국조실	634	· 2006년 규제개혁정비지침	의결	1			1
	국조실	635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보고				
	국조실	636	· 2005년 규제개혁백서 발간계획	보고				
	경제2 위원장	637	·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 개정안 심사결과 보고	보고				
제163차 ('06.3.24)	행정사회 위원장	638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1
	국조실	639	· 행정조사기본법 제정안	보고				
	국조실	640	· OECD 규제개혁 모니터링	보고				
제164차 ('06.4.21)	경제2 위원장	64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의결	1			1
	국조실	642	· 규제개혁위원회 분과위 구성안	의결	1			1
	국조실	643	· 규제심사체계 확립방안	보고				
제165차 ('06.4.21)	국조실	644	· 규제개혁 전략과제 개선방안	보고				
	행정사회 위원장	645	· 도로교통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3	2		5
	국조실	646	· 규제심사체계 확립방안 후속조치	보고				
제166차 ('06.5.19)	행정사회 위원장	647	·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1
	국조실	648	· 규제개혁 평가계획	보고				
	국조실	649	· 산업안전 · 보건규제 개선방안	보고				
	국조실	650	· 지방자치단체 규제등록현황 분석	보고				
제167차 ('06.6.23)	해수부	651	·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의결	보 류			
	규개위	652	· 규제사무목록	의결	1			1
	규개위	653	· 규제영향분석제도 개선방안	의결	1			1

차 수	부처명	호수	상정안건	안건 구분	회의결과			
					원안 의결	개선 권고	철회 권고	계
제168차 ('06.8.17)	규개위	654	· 규제개혁위원회 분과위 구성안	의결	1			1
	해수부	655	·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의결	1			1
	해수부	656	· 수산동물질병관리법 제정안	의결	1			1
	복지부	657	· 장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	의결	2		2	4
	규개위	658	· 2006년 개별규제정비계획	의결	1			1
	규개위	659	·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업무지침	의결	1			1
제169차 ('06.8.17)	외교부	660	·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안	의결	1			1
	정통부	661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의결	3	1		4
	국조실	662	· 규제개혁 모니터링 결과 및 조치계획	보고				
	국조실	663	· OECD 규제개혁 모니터링 보고서	보고				
	재경부	664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	보고				
제170차 ('06.9.7)	국조실	665	· 규제개혁위원회 분과위 구성안	의결	1			1
	건교부	666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의결	1			1
	건교부	667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1
	건교부	668	· 주택법시행령 개정안	의결	1			1
	문광부	669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규칙 제정안	의결	1			1
제171차 ('06.9.28)	건교부	670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법률 제정안	의결	1		1	2
	산자부	671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안	보고				
	국조실	672	· 「OECD 모니터링」규제개혁회의결과 보고	보고				
제172차 ('06.10.19)	방재청	673	· 지진재해경감대책법 제정안	의결	1			1
	국조실	674	·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	보고				
제173차 ('06.11.8)	건교부	675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1
	재경부	676	· 사회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의결	1			1
	식약청	677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보고				
	노동부	678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보고				

차 수	부처명	호수	상정안건	안건 구분	회의결과			
					원안의결	개선권고	철회권고	계
제174차 ('06.11.23)	국조실	679	· 규제등록 · 분류제도 개편 추진현황(규제맵 포함)	보고				
	건교부	680	· 용산민족 · 역사공원 조성 및 주변지역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의결	1			1
	복지부	681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	의결	4	2		6
제175차 ('06.12.6 ~12.12)	교육부	682	· 초 · 중등 교육법 개정안(서면심의)	의결	1			1
	재경부	683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서면심의)	의결	1			1
제176차 ('06.12.21)	환경부	684	· 환경 · 교통 ·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전부개정 법률안	의결	1	2	1	4
	환경부	685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의결	1			1
	국조실	686	·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	보고				
	국조실	687	· 2007년도 규제개혁 종합지침	의결	1			1
				총계	40	7	4	51

나. 경제1분과 위원회

차 수	부처별	상 정 안 건	회의 구분	회의결과			
				원안 의결	개선 권고	철회 권고	계
제287차 ('06.1.13)	건교부	·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및 시행령중 개정안	의결	3			3
제288차 ('06.1.24)	산자부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령개정안	의결	1			1
	건교부	· 주택법시행령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개정안	의결	5			5
	건교부	·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안	의결		1		1
	건교부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2			2
제289차 ('06.2.10)	건교부	· 규제순응도 조사결과 보고 (건축물의 냉방설비 설치기준)	보고				원안 접수
	건교부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의결	1	1		2
	재경부	· 증권거래법 등(7개) 일괄 개정안	의결	2			2
제290차 ('06.2.16)	건교부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안	의결		1		1
	건교부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 보상에관한법률 개정안	의결	3			3
제291차 ('06.3.3)	건교부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	의결		1		1
	산자부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3	1	1	5
	금감위	· 신용카드사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강화에 대한 보고	보고				원안 접수
제292차 ('06.3.31)	재경부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업무 규제 등 시행결과	보고				원안 접수
	건교부	·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	의결	2			2
제293차 ('06.4.21)	건교부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4	1	2	7
제294차 ('06.4.28)	재경부	·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의결	9			9
	재경부	· 신용정보의이용 및 보호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1
	산자부	·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의결	재심의			
	산자부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재심의			
	산자부	· 환경친화적산업구조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3			3

차 수	부처별	상 정 안 건	회의 구분	회의결과			
				원안의결	개선권고	철회권고	계
제295차 ('06.5.12)	산자부	·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의결	재심의			
	산자부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개정안	의결	2			2
	건교부	· 삭도궤도법 시행령 · 시행규칙	의결	5			5
제296차 ('06.5.19)	산자부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7			7
	산자부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	의결	6			6
	국조실	· 경제5단체 건의과제 및 국민제안 Ⅰ	의결	1			
제297차 ('06.5.26)	건교부	·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2			2
	건교부	· 공인중개사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1
	국조실	· 경제5단체 건의과제 및 국민제안 Ⅱ	의결	1			
제298차 ('06.6.2)	산자부	·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의결	2			2
	건교부	·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	의결	3	1		4
	산자부	·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 법률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1
	공정위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3			3
	국조실	· 경제5단체 건의과제 및 국민제안 검토Ⅲ	의결	1			
제299차 ('06.6.9)	공정위	· 가맹사업자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1		1
	건교부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의결	2			2
	중기청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1
제300차 ('06.07.06)	건교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의결	4	5	2	11
	국조실	· '06 개별규제 정비계획	의결	본회의 상정			
제301차 ('06.7.20)	건교부	·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의결	2		1	3
	건교부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1
	산자부	· 전기사업법 개정안	의결	5			5
	산자부	·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3			3

차 수	부처별	상 정 안 건	회의 구분	회의결과			
				원안 의결	개선 권고	철회 권고	계
제302차 ('06.8.10)	건교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의결	3	1		4
	건교부	·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기준 제정안	의결	2			2
	산자부	· 해저광물자원개발법 개정안	의결	4			4
제303차 ('06.8.17)	재경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의결	2			2
	재경부	· 테러자금 조달의 억제를 위한 법률 제정안	의결	1			1
	재경부	·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3			3
제304차 ('06.8.24)	건교부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	의결	본회의 상정			
	건교부	·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본회의 상정			
	건교부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 시행규칙 제정안	의결	1			1
	건교부	· 국토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1
	건교부	·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 개정안	의결	2			2
	금감위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3			3
	금감위	· 유가증권의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 강화규제	의결	5			5
제305차 ('06.9.1)	재경부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의결	1			1
	건교부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의결	본회의 상정			
	건교부	· 항공안전 및 보안에관한법률	의결		1		1
	건교부	· 골재채취법 개정안	의결	3			3
	건교부	· 철도사업법 개정안	의결	1			1
	산자부	· 산업발전법 개정안	의결	2			2
제306차 ('06.9.28)	산자부	·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	의결	2			2
	산자부	· 화학무기의 금지를 위한 특정화학물질의 제조, 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6			6
	중기청	·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2			2
	재경부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의결	3			3

차 수	부처별	상 정 안 건	회의 구분	회의결과			
				원안의결	개선권고	철회권고	계
제306차 ('06.9.28)	건교부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1
	산자부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의결	7			7
	건교부	· 도시철도법 개정안	의결	2			2
	건교부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의결	본회의 상정			
	재경부	· 관세사법 개정안	의결	재심의			
제307차 ('06.10.26)	재경부	· 관세사법 개정안	의결	2	1		3
	건교부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			1
	건교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본회의 상정			
제308차 ('06.11.02)	국조실	· 경제자유구역 규제개선방안	의결	보고			원안접수
	산자부	·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	의결	1			1
	건교부	· 측량법시행령	의결	1			1
	산자부	· 수출입공고	의결	재심의			
제309차 ('06.11.08)	재경부	· 사회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의결	본회의 상정			
	재경부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안	의결	재심의			
	산자부	· 수출입공고	의결		1		1
제310차 ('06.11.13)	재경부	·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제정안	의결	15			15
제311차 ('06.11.23)	건교부	· 용산민족 · 역사공원조성 및 주변지역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의결	본회의 상정			
	건교부	·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의결		2		2
제312차 ('06.12.07)	산자부	· 제조업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의결	4			4
	건교부	· 항공법 개정안	의결	5	1		6
	재경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본회의 상정			
제313차 ('06.12.14)	금감위	· 전자금융거래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안	의결	14			14
	금감위	· 은행업감독 규정 개정안	의결	1			1

차 수	부처별	상 정 안 건	회의 구분	회의결과			
				원안 의결	개선 권고	철회 권고	계
제313차 ('06.12.14)	금감위	· 간접투자자산운용법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1			1
	금감위	· 선물업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1			1
	금감위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1			1
	국조실	· 공동주택 규제개선 방안	보고				원안 접수
	국조실	· 항공운송 규제개선 방안	보고				원안 접수
제314차 ('06.12.21)	건교부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재심의			
	건교부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의결	2			2
	금감위	· 규제순응도 조사 결과 보고	보고				원안 접수
	산자부	· 제조업등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보고				원안 접수
	산자부	·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4			4
			총계	200	21	5	226

다. 경제2분과 위원회

차 수	부처별	상 정 안 건	회의결과				
			구분	원안의결	개선권고	철회권고	계
제240차 ('06.1.4)	농림부	· 동물보호법중 개정법률안	의결	4	4		8
	환경부	· 골프장의 중점 사전환경성 검토 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한규정(고시)안	의결		1		1
	해수부	·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2		3
제241차 ('06.1.25)	노동부	· 직업상담원의 배치 및 운영에 관한법률 제정안	의결	3			3
제242차 (06.2.8)	노동부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2	2		4
	환경부	·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의결	2	1		3
	환경부	·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의결	3			3
제243차 ('06.3.9)	농림부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8	5		13
제244차 ('06.3.15)	과기부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의결	재 심 의			
	과기부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의결	1	9	4	14
제245차 ('06.3.20 ~3.23) (서면심사)	정통부	· 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지원을 위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안	의결	1			1
제246차 ('06.4.12)	정통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재 심 의			
제247차 ('06.4.19)	해수부	· 어장관리법중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재 심 의			
	정통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본회의 상정			
제248차 ('06.4.26)	과기부	·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3			3
	과기부	·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법 제정안	의결	2			2
	해수부	· 어장관리법중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2	1		3
제249차 ('06.5.10) (서면심사)	환경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의결	4			4
		· 경제5단체 규제개혁과제 공동건의 심사안	의결	3	1		4

차 수	부처별	상 정 안 건	회의결과				
			구분	원안의결	개선권고	철회권고	계
제250차 ('06.5.17)	산림청	·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의결	2	2		4
제251차 ('06.5.24)	산림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의결		7		7
		· 경제5단체 규제개혁과제 공동건의 심사안	의결	17			17
제252차 ('06.6.2 ~6.5) (서면심사)	정통부	·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결		1		1
제253차 ('06.6.7)	산림청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의결	1			1
	과기부	· 원자력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2			2
	노동부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1			1
	정통부	· 전자서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결	1			1
	환경부	·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결		1		1
제254차 ('06.6.13)		· 2006년도 개별규제정비계획 심사안	의결	408			
		· 규제개혁 국민제안 심사안	의결	6			
	과기부	· 원자력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4	1		5
	해수부	·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의결	4			4
	해수부	· 항만인력 공급체계의 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의결		1		1
제255차 ('06.6.24 ~6.26) (서면심사)	노동부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결	2	1		3
제256차 ('06.7.5)	과기부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의결	5	1		6
	해수부	· 수산질병관리법 제정안	의결	4	6		10
	농림부	·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1	2		3
제257차 ('06.7.11)	해수부	·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의결	재 심 의			

차 수	부처별	상 정 안 건	회의결과				
			구분	원안의결	개선권고	철회권고	계
제258차 ('06.7.19)	해수부	·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의결	3			3
	환경부	·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안	의결	6	2	1	9
	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3			3
	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3			3
	노동부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의결	2	1		3
제259차 ('06.8.16)	정통부	· 전기통신사업법중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본회의 상정			
	정통부	· 소프트웨어진흥법시행령 개정령안	의결	1	1		2
	농림부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의결	9	3		12
	환경부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개정령안	의결	3	1		4
	환경부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령안	의결	4	1		5
제260차 ('06.8.23)	정통부	· 소프트웨어진흥법중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재 심 의			
	환경부	· 야생동 · 식물보호법중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1			1
	환경부	· 먹는 샘물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의결	1			1
제261차 ('06.8.30)	정통부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중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4	1	1	6
	농림부	· 비료관리법중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2	1	1	4
	노동부	· 석면함유제품 제조 · 수입 · 양도 · 제공 또는 사용금지 고시 제정안	의결	1			1
	과기부	·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예비심사	의결	1			1
	해수부	· 항로표지법중 일부개정법률안 예비심사	의결	4			4
	해수부	· 산적액체위험물운송선박의시설등에관한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의결	1			1
제262차 ('06.9.13)	공동입법 (환경, 산자, 건교)	· 전기 ·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의결	재 심 의			

차 수	부처별	상 정 안 건	회의결과				
			구분	원안의결	개선권고	철회권고	계
제263차 ('06.9.20)	환경부	· 전기 ·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의결	5	3		8
	해수부	· 내수면어업법중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재 심 의			
	해수부	· 수산업법중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2	1		3
	해수부	· 선박의 밸러스트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의결	2	2		4
	해수부	· 밸러스트수 관리시스템의 형식승인등에 관한 잠정기준 제정안	의결	1			1
	농림부	· 농어촌정비법중 일부개정법률안 예비심사	의결	2			2
	정통부	· 정보통신기반보호법중 일부개정법률안 예비심사	의결	3			3
	해수부	· 선박안전법시행규칙 개정령안 예비심사	의결	2			2
	해수부	· 선박기관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의결	1			1
	해수부	· 선박구명설비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의결	1			1
제264차 ('06.9.27)	노동부	· 최저임금법시행령 개정령안	의결		1		1
	노동부	·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 예비심사	의결	1	1		2
제265차 ('06.10.10)	노동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중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3			3
	노동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중 일부개정법률안 예비심사	의결	1			1
	노동부	· 근로기준법중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3	1		4
제266차 ('06.10.18)	농림부	· 가축전염병예방법중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9	1		10
	환경부	·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령안	의결	재 심 의			
	환경부	·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령안 예비심사	의결	1			1
	환경부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령안 예비심사	의결	2			2
	환경부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령안 예비심사	의결	2			2
	환경부	· 수질환경보전법중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2	3		5

차 수	부처별	상 정 안 건	회의결과				
			구분	원안의결	개선권고	철회권고	계
제267차 ('06.11.2)	노동부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법률중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2	2		4
	해수부	·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 개정령안	의결	3			3
	해수부	· 선박 및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시험 및 검정에 관한 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의결	1			1
	정통부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개정령안 예비심사	의결	1			1
	환경부 해수부	· 경제자유구역 규제개선방안	보고				
제268차 ('06.11.8)	해수부	· 내수면어업법중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1		1
	환경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중 일부 개정법률안	의결	1	1		2
제269차 ('06.11.15)	정통부	·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개정령안 예비심사	의결	1			1
	환경부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개정령안	의결	1	1		2
	환경부	· 폐기물관리법중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4	1		5
	환경부	· 환경 · 교통 ·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전부 개정 법률안	의결	재 심 의			
	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중 일부개정 법률안	의결	재 심 의			
제270차 ('06.11.29)	환경부	· 환경 · 교통 ·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전부 개정법률안	의결	본회의 상정			
	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중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1	2	2	5
	노동부	· 국가기술자격법중 일부개정법률안 예비심사	의결	2			2
	정통부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	의결	2	1		3
	환경부	·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 정도검사 고시 개정안 예비심사	의결	1			1
	해수부	· 항만 및 주변공간의 지속적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	의결	5	1		6
제271차 ('06.12.13)	환경부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령안	의결	재 심 의			
	환경부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령안	의결	4	2		6
	환경부	· 수도시설 운영 · 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예비심사	의결	1			1

차 수	부처별	상 정 안 건	회의결과				
			구분	원안의결	개선권고	철회권고	계
제271차 ('06.12.13)	농림부	· 농업유전자원의 보존 ·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 예비심사	의결	3			3
	해수부	· 공유수면관리법중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4	3		7
	해수부	· 공유수면매립법중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2	4		6
제272차 ('06.12.20)	노동부	·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개정령안	의결	5			5
	정통부	· 전기통신사업법시행규칙 개정령안	의결	1			1
	환경부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제정안 예비심사	의결	3			3
	해수부	· 항만공사법시행령 개정령안 예비심사	의결	1			1
	해수부	·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예비심사	의결	1			1
	해수부	· 해상교통안전법시행령 개정령안 예비심사	의결	1			1
	해수부	· 선박 전기설비기준 개정안 예비심사	의결	1			1
	해수부	· 강선의 선체구조기준 개정안	의결		1		1
			총계	207	92	9	308

라 . 행정사회분과위원회

차 수	부처별	상 정 안 건	안건 구분	회의결과			
				원안의결	개선권고	철회권고	계
제280차 ('06.1. 20)	법무부	· 변호사법 개정안	의결	재 심 의			
제281차 ('06.1.27)	법무부	· 변호사법 개정안	의결		2		2
제282차 ('06.3.10)	방송위	· 지상파DMB방송사업자등의방송프로그램편성비율 고시 제정안	의결	7	1		8
	여성부	· 영유아보육법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1		2
제283차 ('06.3.17)	복지부	·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본회의 상정			
제284차 ('06.3.31)	식약청	· 식품중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잔류허용기준 개정안	의결		1		1
	식약청	· 화장품원료지정과기준 및 시험방법등에관한규정 전부개정안	의결		1		1
제285차 ('06.4.21)	경찰청	· 도로교통법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본회의 상정			
	문화부	· 전통사찰보존법시행령 개정안	의결		1		1
	교육부	· 경영전문대학원관련 보고	보고				
제286차 ('06.5.12)	교육부	· 사립학교법시행령 개정안	의결	본회의 상정			
	복지부	· 모자보건법시행령 개정안	의결	1	3		4
제287차 ('06.5.19)	복지부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의결	6		1	7
	교육부	· 학교법인임시이사선임방법 및 운영등에관한규정 제정안	의결	4			4
	교육부	· 학교법인임원의인적사항공개등에관한고시 제정안	의결	1			1
	행자부	·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개정안	의결	2	1		3
	공 통	· 경제5단체건의과제	보고				
제288차 ('06.5.26)	문화부	· 문화예술교육지원법시행령 제정안	의결	4			4
	복지부	· 모자보건법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1		2
	식약청	· 신고대상의약품지정고시 개정안	의결	1			1
	복지부	· 전문간호사자격인정등에관한규칙 제정안	의결	재 심 의			

차 수	부처별	상 정 안 건	안건 구분	회의결과			
				원안의결	개선권고	철회권고	계
제289차 ('06.6.9)	교육부	·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관한규칙 개정안	의결	1			1
	문화부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의결	2			2
	복지부	· 전문간호사자격인정등에관한규칙 제정안	의결	3			3
	방송위	· 방송법시행에관한방송위원회규칙 개정안	의결	재 심 의			
제290차 ('06.6.16)	방송위	· 방송법시행에관한방송위원회규칙 개정안	의결		1		1
	공 통	· 규제개혁국민제안과제	보고				
제291차 ('06.6.23)	행자부	· 온천법시행령 개정안	의결	3	1	1	5
제292차 ('06.6.30)	문화부	· 경륜 · 경정법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2			2
제293차 ('06.7.6)	공 통	· 2006년도규제정비계획안	보고				
	복지부	· 장사등에관한법률 개정안	의결	재 심 의			
	복지부	·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개정안	의결	2			2
제294차 ('06.7.11)	복지부	· 장사등에관한법률 개정안	의결	2	본회의 상정		2
제295차 ('06.7.20)	복지부	· 노인복지법 개정안	의결	6	1		7
	문화부	· 체육시설의설치 · 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5	1		6
	외교부	· 한국국제협력단법 개정안	의결	본회의 상정			
	교육부	· 동북아역사재단설립 · 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정안	의결	1			1
제296차 ('06.8.17)	행자부	·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시행령 제정안	의결	6			6
	문화부	· 영화 및 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규칙 제정안	의결	5	1		6
	복지부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3			3
	복지부	· 한약재수급 및 유통관리규정 개정안	의결	1			1
제297차 ('06.8.24)	행자부	· 행정정보공동이용법 제정안	의결	3			3
	복지부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2		3
	복지부	· 식품기부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규칙 제정안	의결	6			6
	국조실	·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검토보고	보고				

차 수	부처별	상 정 안 건	안건 구분	회의결과			
				원안의결	개선권고	철회권고	계
제298차 ('06.8.31)	문화부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규칙 제정안	의결	3	재 심 의		3
	행자부	· 기부금품모집규제법시행령 개정안	의결	4			4
	교육부	·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개정안	의결	4			4
	식약청	· 식품등의표시기준 개정안	의결		1		1
	식약청	· 의약품임상시험계획승인지침 개정안	의결		1		1
제299차 ('06.9.7)	문화부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규칙 제정안	의결	본회의 상정			
제300차 ('06.9.11)	청소년위	·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	의결	5			5
제301차 ('06.9.14)	방재청	· 지진재해경감대책법 제정안	의결	재 심 의			
	복지부	· 정신보건법 개정안	의결	4			4
	식약청	· 원료의약품신고지침 개정안	의결	1			1
제302차 ('06.9.20)	통일부	· 군사정전에관한협정체결이후납북피해자등의구제 및 지원에관한법률 제정안	의결	3			3
	문화부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3			3
제303차 ('06.9.21)	교육부	· 초 · 중등교육법 개정안	의결		1		1
	방송위	· 방송발전기금징수에관한규칙 제정안	의결	1		1	2
	방송위	· 방송법 개정안	의결	1			1
	국방부	· 군인연금법시행령 개정안	의결	1			1
	복지부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	의결	1			1
	식약청	· 의약품소량포장단위공급에관한규정 제정안	의결	1			1
제304차 ('06.9.28)	통일부	· 반출 · 반입승인대상물품 및 승인절차에관한고시 개정안	의결	1			1
	복지부	· 대한적십자사조직법 개정안	의결	1			1
	복지부	· 유전자변형생물체의인체위해성심사규정 제정안	의결	1			1
	방재청	· 지진재해경감대책법 제정안	의결	본회의 상정			
	여성부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4	3		7
	문화부	·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규칙 제정안	의결	5	1		6

차 수	부처별	상 정 안 건	안건 구분	회의결과			
				원안의결	개선권고	철회권고	계
제305차 ('06.10.19)	행자부	·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1	1	3
	복지부	·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전부개정안	의결	1	1		2
	영등위	· 등급분류소위원회등급분류기준 및 심의절차규정 개정안	의결	1	2		3
	문화부	· 게임제공업소의경품취급기준 개정안	의결		1		1
	복지부	·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2	1		3
제306차 ('06.10.26)	문화부	· 게임물등급위원회등급분류심의규정 제정안	의결	1	3		4
	문화부	· 관광진흥법시행령 개정안	의결	2			2
	청소년위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전부개정안	의결	3	1		4
	복지부	· 식품위생법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7			7
	식약청	· 식품의기준 및 규격 개정안(김치류 관련 등)	의결	1	1		2
	식약청	· 식품의기준 및 규격 개정안(참기름 관련 등)	의결	2			2
	식약청	·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개정안	의결		1		1
	방재청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 개정안	의결	2			2
제307차 ('06.11.2)	국조실	· 경제자유구역규제개선방안	보고				
	복지부	·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1	2
	복지부	· 위생용품의규격 및 기준 개정안	의결	1			1
	청소년위	·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	의결	1	1		2
제308차 ('06.11.9)	복지부	· 전염병병원체검사 · 보존 및 관리규정 전부개정안	의결	1			1
	복지부	· 국외여행자의예방접종에관한수수료고시 제정안	의결	1			1
	복지부	· 특수의료장비의설치 및 운영에관한규칙 개정안	의결	4	1		5
	복지부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개정안 및 신의료기술등의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	의결	재 심 의			
	교육부	· 초 · 중등교육법 개정안	의결		2		2
제309차 ('06.11.16)	복지부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개정안 및 신의료기술등의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	의결	본회의 상정			
	복지부	· 피부양자인정기준 개정안	의결	1			1

차 수	부처별	상 정 안 건	안건 구분	회의결과			
				원안의결	개선권고	철회권고	계
제309차 ('06.11.16)	식약청	· 의약품등기준 및 시험방법심사의뢰서심사규정 개정안	의결	1			1
	보훈처	·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관한법률 개정안 ·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개정안 ·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개정안	의결	1			1
	보훈처	· 가점합격자상한제운용결과보고	보고				
	교육부	· 특수교육진흥법 전부개정안	의결	7	3		10
제310차 ('06.11.30)	방송위	· 방송프로그램의등급분류 및 표시등에관한규칙 개정안	의결		1		1
	인사위	·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의결	1			1
	행자부	· 지적법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1
	교육부	·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의결	본회의 상정			
	식약청	· 의료기기임상시험실시기관지정에관한규정 제정안	의결	1		1	2
제311차 ('06.12.14)	문화부	· 공연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1		2
	방재청	·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의결	1			1
	복지부	·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	의결	1			1
	식약청	· 의약품동등성확보필요대상의약품지정고시 제정안	의결	1			1
	식약청	· 식품첨가물의기준 및 규격 개정안	의결	1			1
	식약청	· 식품의기준 및 규격 개정안	의결	1			1
	복지부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3			3
제312차 ('06.12.19)	국조실	· 방송통신위원회설립 및 운영에관한법률 제정안	의결	3			3
	교육부	· 학교급식법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의결	8	4		12
	복지부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5			5
	복지부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1
	복지부	· 약사법 개정안	의결	8			8
	복지부	· 의료기기법 개정안	의결	3			3
	복지부	· 화장품법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2	1		3

차 수	부처별	상 정 안 건	안건 구분	회의결과			
				원안의결	개선권고	철회권고	계
제312차 ('06.12.19)	방재청	· 소방기본법시행령 개정안	의결	3			3
	방재청	·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개정안	의결	3	1		4
제313차 ('06.12.28)	문화부	· 체육진흥투표권규제일몰제관련운영현황 보고	보고				
	문화재청	· 매장문화재의보호 및 조사에관한법률 제정안	의결		2	1	3
	문화재청	·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제정안	의결	재 심 의			
	복지부	· 혈액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6			6
	복지부	·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	의결	1		1	2
	식약청	· 의약품의국가검정면제등에관한처리규정 개정안	의결		1		1
			총계	220	57	8	285